정책 22-03

OPEN 공공누리 KO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022 장애통계연보

김현지 · 최정원 · 김용진 · 김태용 · 최효임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김현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장)
공동연구원 : 최정원 (오클랜드(Auckland)대학 사회복지학 박사)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특수교육학 박사)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선임연구원)
최효임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연구원)

발 간 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따른 데이터 구축과 세분화된 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에서는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장애통계연보를 2015년 첫 발간한 이후 8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에 기반을 둔 핵심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정책과 관련한 투입 및 산출지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통계와 OECD 국가들의 통계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2 장애통계연보에서는 장애영유아 현황과 사회적 고립도 지표, 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 등을 추가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EU, 독일, 뉴질랜드의 장애통계를 수집하여 해당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통계연보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의 발판이 되어 정책수립 및 관련 학술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장애통계연보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 및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통계연보를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0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목 차

Ⅰ. 2022 장애통계연보 체계 ····· 1
1. 작성배경 ····· 3
2. 작성목표 ····· 4
3. 작성방향 및 체계 ····· 5
4. 세부작성원칙 ····· 7
5. 장애통계연보 체계 ····· 8
1) 국내지표 ····· 8
2) 국외지표 ····· 16

Ⅱ. 국내통계 ····· 23
1. 장애인구 ····· 25
1) 장애인구 ····· 27
2. 건강 및 보건 ····· 41
1) 건강상태 ····· 42
2) 건강관리 ····· 51
3) 보건의료이용 ····· 65
4) 정신건강 ····· 76
3. 가족 ····· 79
1) 가구구성 ····· 80
2) 가족형성 ····· 82
3) 다문화 가족 ····· 87
4. 주거 ····· 89
1) 주거 ····· 91
2) 주택 환경 ····· 95
3) 주거복지사업 ····· 99
5. 교육 ····· 101
1) 교육수준 ····· 103
2) 보육 ····· 105
3) 유치원 ····· 109
4) 특수교육 ····· 111
5) 교육기관 편의시설 ····· 118
6. 노동과 직업재활 ····· 12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경제활동 ····· 123
2) 의무고용 ····· 135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 137
4) 장애인기업 ····· 139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 143
6) 직업재활 ····· 145
7. 재정 ····· 155
1) 재정 ····· 156
8. 소득과 소비 ····· 161
1) 소득 ····· 163
2) 소비 ····· 166
3) 빈곤 ····· 172
9. 문화 및 사회참여 ····· 175
1) 문화 및 여가활동 ····· 176
2) 사회참여 ····· 178
10. 사회보장 ····· 187
1) 사회보험 ····· 189
2) 공공부조 ····· 195
3) 사회서비스 ····· 207
11. 인권보호 ····· 235
1) 사회적 차별 ····· 237
2) 장애인 인권보호 ····· 248
3) 학대·폭력 경험 ····· 257
4) 성폭력 ····· 260
12. 접근성 ····· 273
1) 물리적 접근성 ····· 275
2) 정보 접근성 ····· 287
3) 사법 접근성 ····· 290
13. 재난 및 안전 ····· 291
1) 장애인 응급안전망 ····· 292
2) 장애인 안전시설 ····· 293
3) 장애인 보호구역 ····· 296
4)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297

Ⅲ. 국외통계 ····· 299
1. OECD 회원국 ····· 301
1) 장애인구 ····· 303
2) 교육 ····· 307
3) 고용 ····· 309
4) 재정 ····· 313

5) 복지 ····· 325
6) 정신건강 ····· 326
2. EU ····· 333
1) 장애인구 ····· 335
2) 건강 ····· 337
3) 주거 ····· 338
4) 교육 ····· 341
5) 고용 ····· 343
6) 빈곤 ····· 347
3. 뉴질랜드 ····· 353
1) 장애인구 ····· 355
2) 교육 ····· 359
3) 고용 ····· 362
4) 재정 ····· 368
5) 복지 ····· 371
6) 사회적 환경 ····· 374
7) 정신건강 ····· 380
4. 독일 ····· 393
1) 장애인구 ····· 395
2) 교육 ····· 399
3) 고용 ····· 403
4) 재정 ····· 412
5) 복지 ····· 414
6) 정신건강 ····· 417
5. 일본 ····· 421
1) 장애인구 ····· 423
2) 교육 ····· 427
3) 고용 ····· 435
4) 재정 ····· 447
5) 복지 ····· 449
6) 정신건강 ····· 452

Ⅳ. 지표설명 ····· 453
1. 국내통계 지표 ····· 455
2. 국외통계 지표 ····· 469
1) OECD ····· 469
2) EU ····· 472
3) 뉴질랜드 ····· 473
4) 독일 ····· 476
5) 일본 ····· 482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목 차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 27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8
〈표 1-1-3〉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29
〈표 1-1-4〉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 30
〈표 1-1-5〉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 31
〈표 1-1-6〉 장애영유아 현황 - 연도별 ····· 32
〈표 1-1-7〉 장애영유아 현황(2021) - 장애유형별 ····· 33
〈표 1-1-8〉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 34
〈표 1-1-9〉 장애아동 현황 - 장애유형별 ····· 35
〈표 1-1-10〉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 36
〈표 1-1-11〉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장애유형별 ····· 37
〈표 1-1-12〉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 38
〈표 1-1-13〉 장애정도심사 - 장애유형별 ····· 39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 42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 43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4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 45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 46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7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 48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계속) ····· 49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0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 51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계속) ····· 52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3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계속) ····· 54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 55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 56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7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 58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58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 59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계속) ····· 60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1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 62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63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 64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65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 66
〈표 2-3-3〉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 67
〈표 2-3-4〉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68
〈표 2-3-5〉 장애인 진료비 현황 ····· 69
〈표 2-3-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 70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1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 72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3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 74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75
〈표 2-3-12〉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 76
〈표 2-3-13〉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 77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 80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계속) ····· 80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 81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 82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2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 83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3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 84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4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 85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5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 86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86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 87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 87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 91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연도별 ····· 91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 91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 92
〈표 4-1-5〉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 92
〈표 4-1-6〉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 93
〈표 4-1-7〉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 93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94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 95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5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 96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6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 97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98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 99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 99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 100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 103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 104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04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05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06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07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 108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 109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10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 111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 112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 113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 114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 115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16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 117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 118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계속) ····· 119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 123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 124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 125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126
〈표 6-1-5〉 취업자의 산업 ····· 127
〈표 6-1-6〉 취업자의 직업 ····· 128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 ····· 129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 130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 131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 132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 133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 134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 135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 136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37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138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 139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40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41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 142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 143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 144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45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 146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계속) ····· 147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 148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149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 150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 151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 152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 153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 153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156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157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 158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 159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163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164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165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166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167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 168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169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170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계속) ····· 171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172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173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 176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77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 178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78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 179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180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 181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 182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 183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184
〈표 9-2-9〉 낙심,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 185
〈표 9-2-10〉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 185
〈표 9-2-11〉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 185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189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190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계속) ····· 191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 192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 194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 195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 196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소득별 ····· 197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소득별(계속) ····· 198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소득별 ····· 199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소득별(계속) ····· 200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 201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 202
〈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203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 204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 205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 206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207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208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계속) ····· 209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연령별, 성별, 장애정도별 ····· 210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 211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종합조사 실시현황 ····· 212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 213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 214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 215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216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217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218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수 ····· 219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220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221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222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223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223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224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224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225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 225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 226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27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계속) ····· 228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 229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계속) ····· 230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231
〈표 10-3-26〉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 232
〈표 10-3-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233
〈표 10-3-28〉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 234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 237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 238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39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 240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1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 242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3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244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245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 246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47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248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249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250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 251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 252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 253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각·각하 사유별 ····· 254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 255
〈표 11-3-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장애유형별 ····· 257
〈표 11-3-2〉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58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 25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 260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261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 262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 263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264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265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266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267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268
〈표 11-5-1〉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269
〈표 11-5-2〉 장애인학대 유형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 270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 275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 276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 277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 278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279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 280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 281
〈표 12-1-7〉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 282
〈표 12-1-8〉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 283
〈표 12-1-9〉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 284
〈표 12-1-10〉 저상버스 도입 현황 ····· 285
〈표 12-1-11〉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286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 287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288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 289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 290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 292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 293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 294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 295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296
〈표 13-4-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 297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1) ····· 303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21년) ····· 305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21년): 16-64세 ····· 307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1년): 16-29세 이하 ····· 308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 309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310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 311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11년) ····· 312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 313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 314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 315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 316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 317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 318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 319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4년) ····· 320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5년) ····· 321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6년) ····· 322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7년) ····· 323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8년) ····· 324
〈표 14-5-1〉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325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326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327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 328
〈표 14-6-4〉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29
〈표 14-6-5〉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330
〈표 14-6-6〉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 331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국가별, 연도별 ····· 335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 - 국가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336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국가별, 연도별 ····· 337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율 - 연도별, 국가별 ····· 338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 339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 340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41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30-39세)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 342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43
〈표 15-5-2〉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 344
〈표 15-5-3〉 EU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45
〈표 15-5-4〉 EU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46
〈표 15-6-1〉 EU국가 내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47
〈표 15-6-2〉 EU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49
〈표 15-6-3〉 EU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 350
〈표 16-1-1〉 장애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 연령별(2001/2013년) ····· 355
〈표 16-1-2〉 장애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 성별, 연령별 ····· 355

〈표 16-1-3〉 2018년 장애인 및 비장애인 수 추정 결과 - 연령별, 장애유무별 ····· 356
〈표 16-1-4〉 넓은 범위의 장애 유형별 장애 인구 - 성별, 연령별 (2013년) ····· 357
〈표 16-1-5〉 장애 발생 요인별 장애 인구 - 성별, 연령별 (2013년) ····· 358
〈표 16-2-1〉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최고 학력 - 성별, 연령별 (2013년) ····· 359
〈표 16-2-2〉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최고 학력 비율 -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0
〈표 16-2-3〉 ORS 지원을 받는 학생 수 - 지원 필요 수준별, 성별, 연도별 (2018-2021) ····· 361
〈표 16-2-4〉 4분위 이하 학교 학생 수 (2009/2018년) ····· 361
〈표 16-3-1〉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 실업자 수 및 비율 -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2
〈표 16-3-2〉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연도별 ····· 363
〈표 16-3-3〉 만 15세 이상 업종별 고용률 -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4
〈표 16-3-4〉 만 15세 이상 취업자 취업 형태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5
〈표 16-3-5〉 만 15세 이상 취업자 근로형태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6
〈표 16-3-6〉 실업자 주요 활동 - 장애유무별, 연도별 ····· 367
〈표 16-4-1〉 장애 복지 관련 지출 ····· 368
〈표 16-4-2〉 장애인부 (Ministry for Disabled People) 설립 ····· 369
〈표 16-4-3〉 가구 내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급금 ····· 369
〈표 16-4-4〉 뉴질랜드 소득 보험제도 수립 ····· 369
〈표 16-4-5〉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접근성 확대 ····· 369
〈표 16-4-6〉 장애 지원 서비스 비용 압박 해소 ····· 369
〈표 16-4-7〉 장애 지원 제도 전환 ····· 369
〈표 16-5-1〉 보건부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성별, 연령별 (2016/2018년) ····· 371
〈표 16-5-2〉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서비스 유형별 (2016/2018년) ····· 372
〈표 16-5-3〉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2016/2018년) ····· 373
〈표 16-5-4〉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지원 패키지 할당 수준별 (2016/2018년) ····· 373
〈표 16-6-1〉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결혼 상태- 성별 (2016/2018년) ····· 374
〈표 16-6-2〉 지난 4주간 외로움을 느낀 정도 -장애유무별 ····· 374
〈표 16-6-3〉 주요 공공시설 이용 어려움- 장애유무별 ····· 374
〈표 16-6-4〉 지난 12개월 간 차별 경험 -장애유무별 ····· 375
〈표 16-6-5〉 지난 12개월 간 차별 경험 빈도 - 성별, 연령별 ····· 375
〈표 16-6-6〉 만 5세 이상 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 소유 주택 거주 비율 - 연령별 (2018년) ····· 376
〈표 16-6-7〉 보건부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 인구 주거 형태 - 성별 (2016/20108년) ····· 376
〈표 16-6-8〉 주택 가격 적정성 평가 - 장애유무별, 연령별 ····· 377
〈표 16-6-9〉 습기 및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사는 인구 - 장애유무 (2018년) ····· 377
〈표 16-6-10〉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소득 수준 ····· 378
〈표 16-6-11〉 빈곤 기준 이하 가구 소득 ····· 379
〈표 16-6-12〉 일상생활 관련 소득 적정성 평가 ····· 379
〈표 16-7-1〉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 380
〈표 16-7-2〉 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 381
〈표 16-7-3〉 지역 보건 위원회 (DHBs)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 382
〈표 16-7-4〉 NGOs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 383

〈표 16-7-5〉 지역박탈 5분위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2020년) ····· 384
〈표 16-7-6〉 인구 대비 지역박탈 5분위 서비스 이용자 비율 - 연령별, 성별 (2020년) ····· 385
〈표 16-7-7〉 서비스 제공 팀별 이용자 수 - DHB/NGO (2020년) ····· 386
〈표 16-7-8〉 서비스 장기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2020년) ····· 387
〈표 16-7-9〉 DHB 제공 활동 유형별 이용자 및 활동 수 (2020년) ····· 388
〈표 16-7-10〉 NGOs 제공 활동 유형별 이용자 및 활동 수 서비스 제공 기관별. ····· 389
〈표 16-7-11〉 정신 건강법, 특수환자, 약물중독법 상의 이용자 수 ····· 390
〈표 16-7-12〉 격리 대상자 수 -성별, 인구집단별 (마오리), 연도별 ····· 391
〈표 17-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395
〈표 17-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 396
〈표 17-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1년) ····· 397
〈표 17-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 398
〈표 17-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 399
〈표 17-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현황-연도별 ····· 400
〈표 17-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2018/2019 대비 2019/2020년) ····· 401
〈표 17-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 402
〈표 17-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 403
〈표 17-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9년 평균) ····· 404
〈표 17-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9년) ····· 406
〈표 17-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9년) ····· 407
〈표 17-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8/2019년) ····· 408
〈표 17-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 410
〈표 17-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9년) ····· 410
〈표 17-3-8〉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2019년 평균) ····· 411
〈표 17-4-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2020년) ····· 412
〈표 17-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 414
〈표 17-5-2〉 장애인 편입급여 항목별 이용자 및 지출액(2020년) ····· 415
〈표 17-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20년) ····· 417
〈표 17-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수 및 병상 수(2020년) ····· 418
〈표 17-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0년) ····· 420
〈표 17-1-1〉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 423
〈표 17-1-2〉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 423
〈표 17-1-3〉 일본 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 424
〈표 17-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25
〈표 17-1-5〉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 425
〈표 17-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25
〈표 17-1-7〉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 425
〈표 17-1-8〉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 426
〈표 17-1-9〉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 426
〈표 17-2-1〉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 42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2-2〉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 427
〈표 17-2-3〉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단임교원, 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합계 ····· 429
〈표 17-2-4〉 특별지원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 ····· 429
〈표 17-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 430
〈표 17-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 430
〈표 17-2-7〉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431
〈표 17-2-8〉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 학교 수 ····· 431
〈표 17-2-9〉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 432
〈표 17-2-10〉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 433
〈표 17-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 433
〈표 17-2-12〉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 434
〈표 17-2-13〉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 434
〈표 17-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 435
〈표 17-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435
〈표 17-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 437
〈표 17-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 438
〈표 17-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 438
〈표 17-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 439
〈표 17-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 439
〈표 17-3-8〉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 441
〈표 17-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41
〈표 17-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441
〈표 17-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42
〈표 17-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442
〈표 17-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442
〈표 17-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442
〈표 17-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443
〈표 17-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 443
〈표 17-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444
〈표 17-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장애별 ····· 444
〈표 17-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별(2021년) ····· 445
〈표 17-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별 ····· 446
〈표 17-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이유별 ····· 446
〈표 17-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1~2022년도 ····· 447
〈표 17-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 449
〈표 17-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 450
〈표 17-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 450
〈표 17-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451
〈표 17-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 451
〈표 17-6-1〉 정신과병원의 상황 (병원수 · 병상수 · 병동수 · 휴상중병동수) ····· 452

그 림 목 차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 7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 25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 25
[그림 2-1-3]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6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 41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19년) ····· 41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0년) ····· 79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 79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 89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 89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90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년) ····· 90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 101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1년) ····· 101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1년) ····· 102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102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1년) ····· 121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 121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1년) ····· 122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1년) ····· 122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 122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 155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155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1년) ····· 161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1년) ····· 161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0년) ····· 162
[그림 2-8-4] 연도별 상대적 빈곤율 - 전체가구 비교 ····· 162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0년) ····· 175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 175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 187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 187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 188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 188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 235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 235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 연도별 ····· 236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 236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2021년) ····· 273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1년) ····· 273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1년) ····· 274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연도별 ····· 291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1년) ····· 301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 301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2017년) ····· 302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302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출현율 - 장애정도별(2019년) ····· 333
[그림 3-2-2]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장애유무별(2018년) ····· 333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 334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18년) ····· 334
[그림 3-3-1] 장애인 및 비장애인 현황 - 연령별(2018년) ····· 353
[그림 3-3-2]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최고 학력 현황(2021년) ····· 353
[그림 3-3-3]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장애유무별(2021년) ····· 354
[그림 3-4-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 393
[그림 3-4-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19년) ····· 393
[그림 3-4-3]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20년) ····· 394
[그림 3-4-4]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 394
[그림 3-5-1] 일본 장애인 수 ····· 421
[그림 3-5-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421
[그림 3-5-3]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2022년) ····· 422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Ⅰ

2022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2. 작성목표
3. 작성방향 및 체계
4. 세부작성원칙
5. 장애통계연보 체계

Ⅰ. 2022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ability: 이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써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2. 작성목표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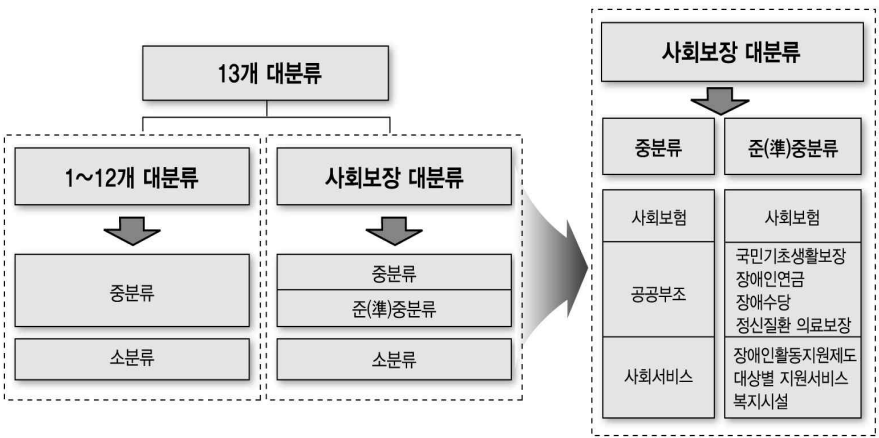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4. 세부작성원칙

□ 2022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국내지표[1)]

(1) 장애인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수	연도별	표 1-1-1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제1조 제2조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1-2		
		신규 등록장애인 수		표 1-1-3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	연도별	표 1-1-4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출현율	연도별	표 1-1-5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영유 현황	연도별	표 1-1-6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7		
		장애아동 현황	연도별	표 1-1-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9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연도별	표 1-1-10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11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정도심사	연도별	표 1-1-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표 1-1-13		

(2) 건강 및 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장애유형별	표 2-1-1	장애인실태조사	제25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장애유형별	표 2-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4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유형별	표 2-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6		
	건강관리	스트레스 정도	장애유형별	표 2-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2		
		흡연 및 금연 여부	장애유형별	표 2-2-3		
				표 2-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4		

1) 2022 장애통계연보에 추가된 지표는 굵은 글씨로 표기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표 2-2-6		
		음주 빈도 및 음주량	장애유형별	표 2-2-7		
				표 2-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2-8		
				표 2-2-10		
		생활체육 참여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2-2-11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보건의료 이용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2-3-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암검진 수검률		표 2-3-2		
		구강검진 수검률		표 2-3-3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기간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별	표 2-3-4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5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장애유형별	표 2-3-6	장애인실태조사	
				표 2-3-7		
				표 2-3-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3-11		
				표 2-3-8		
				표 2-3-10		
	정신건강	정신의료기관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2-3-1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연도별, 지역별	표 2-3-13		

(3) 가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가족	가구구성	가구구성 및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표 3-1-1	장애인실태조사	제6조 제7조 제23조
				표 3-1-2		
	가족형성	결혼상태	장애유형별	표 3-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2		
		평균초혼연령	장애유형별	표 3-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4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유형별	표 3-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6		
		자녀 현황	장애유형별	표 3-2-7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8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장애유형별	표 3-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1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연도별,	표 3-3-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표 3-3-2		

(4) 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주거	주거	주택유형	연도별	표 4-1-1	주거실태조사	제19조
		주택사용면적		표 4-1-2		
		사용 방 수		표 4-1-3		
		무주택 기간		표 4-1-4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5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표 4-1-6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8		
	주택 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장애유형별	표 4-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장애유형별	표 4-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4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장애유형별	표 4-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6		
	주거 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행정구역, 점유형태별, 소득별	표 4-3-1	주거실태조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표 4-3-2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실적	연도별	표 4-3-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교육	교육수준	교육수준	연도별	표 5-1-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7조 제24조 제26조
			장애유형별	표 5-1-2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1-3		
	보육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형별	표 5-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2-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여부, 지역별	표 5-2-3	보육통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역별	표 5-2-4		
	유치원	유치원 이용	장애유형별	표 5-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3-2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표 5-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학급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2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연도별, 시도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영역별	표 5-4-3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표 5-4-4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5		
		졸업생 진로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6		
				표 5-4-7		
	교육기관 편의시설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 편의시설 유형별	표 5-5-1		

⑹ 노동과 직업재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2		
		취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3		
			종사상지위별	표 6-1-4		
			산업별	표 6-1-5		
			직업별	표 6-1-6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여부별	표 6-1-7		
			(취업자 중 임금근로 장애인)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8		
		실업자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9		
			구직기간, 구직경로, 구직방법	표 6-1-10		
			희망 고용형태, 산업, 직업, 사업체, 근로시간, 월 평균 소득	표 6-1-11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2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도별	표 6-2-2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업체 장애인 고용	기업체 장애인 고용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표 6-3-1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수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표 6-4-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업종별	표 6-4-4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표 6-5-2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도별, 지역별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벌	표 6-6-2		
			시설유형별	표 6-6-3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6-6-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5		
			연도별, 사업별	표 6-6-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연도별, 생산시설 유형별	표 6-6-8		
			연도별, 지역별	표 6-6-9		

(7) 재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정	재정	장애인 복지 예산	(GDP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1	SOCX Statistics	–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연도별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	
		장애인 정책국 예산 추이	연도별	표 7-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세부항목별	표 7-1-4		

(8) 소득과 소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소득과 소비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1-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1-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구간별 비중	연도별, 소득구간별	표 8-1-3		
	소비	월 평균 가구지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비목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2	가계금융·복지조사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연도별, 비목별	표 8-2-3		
		최소 생활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8-2-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연도별, 추가비용 항목별, 장애유형별	표 8-2-5		
소득과 소비	빈곤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연도별, 소득원천별	표 8-3-1	가계금융·복지조사	제28조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연도별, 소득분위별	표 8-3-2		

(9) 문화 및 사회참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문화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1-1	장애인실태조사	제29조 제30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1-2		
	사회참여	장애인 투표 여부	장애유형별	표 9-2-1		
				표 9-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2		
				표 9-2-4		
		장애인 공무원 수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표 9-2-5	인사혁신통계연보	
		장애인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시도별	표 9-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연도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장애유형별	표 9-2-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도	연도별	표 9-2-9	사회조사	
				표 9-2-10		
				표 9-2-11		
				표 9-2-12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0) 사회보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산재보험 수급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표 10-1-3	산재보험 사업연보	
			건강보험 가입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4	장애인실태조사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수급자 비교)연도별	표 10-2-1	보건복지통계연보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2-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연도별, 성별, 소득별	표 10-2-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수당	장애수당 수급		표 10-2-4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5		
		정신질환의료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연도별	표 10-2-6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정신질환 의료급여	연도별, 상병별	표 10-2-7	의료급여통계	
			정신보건 의료보장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0-2-8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 내부자료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실적	연도별	표 10-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9조 제28조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표 10-3-2		
					표 10-3-3		
					표 10-3-4		
			인정조사 · 종합조사 실시	연도별	표 10-3-5		
			기본급여(활동지원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이용시간별	표 10-3-6		
			추가급여(특별지원급여) 이용	급여종류별, 연도별	표 10-3-7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연도별, 장애정도별	표 10-3-8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인정조사등급별, 종합조사구간별	표 10-3-9		
			본인부담금 수준	연도별, 소득별	표 10-3-10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연도별, 시도별	표 10-3-11		
			활동보조인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0-3-12		
		대상별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월별	표 10-3-13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연도별	표 10-3-1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표 10-3-18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표 10-3-1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표 10-3-2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표 10-3-2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표 10-3-22		
		복지	장애인 거주시설	연도별, 시도별	표 10-3-23	장애인복지시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표 10-3-24	일람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7		
		정신보건기관	기관유형별	표 10-3-28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11) 인권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1	장애인실태조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유형별	표 11-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4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장애유형별	표 11-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연도별, 지역별, 성별, 장애유무별, 연령별, 학력별, 직종별, 소득별	표 11-1-7	사회조사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9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10		
	장애인 인권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연도별	표 11-2-1	인권통계	
				표 11-2-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연도별, 영역별, 기각·각하 사유별	표 11-2-4		
				표 11-2-5		
				표 11-2-6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연도별, 기관유형별	표 11-2-7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가정폭력	장애인 가정폭력	장애유형별	표 11-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3-2		
		가정폭력 관련 시설	시도별	표 11-3-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장애유형별	표 11-4-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4-2		
		성폭력 상담소	시도별	표 11-4-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연도별, 상담 유형	표 11-4-4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 실적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연도별, 피해유형별,	표 11-4-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피해자 장애유형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도별	표 11-4-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연도별	표 11-4-7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 실적	
			연도별, 연령별	표 11-4-8		
			연도별, 보호기간별	표 11-4-9		
	학대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1-5-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장애인학대 유형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11-5-2		

(12)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보조기구 종류별, 장애유형별	표 12-1-1	장애인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장애인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정부 부처별	표 12-1-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연도별	표 12-1-3	건강보험통계연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실적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표 12-1-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표 12-1-5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2-1-6		
				표 12-1-7		
		이동 편의시설 설치	연도별,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표 12-1-8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표 12-1-9		
			연도별, 시도별	표 12-1-10		
			시도별	표 12-1-11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도별 디지털정보격차 지수 유형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활용 유형별	표 12-2-2		
		정보 접근성	연도별, 정보 접근성 유형별	표 12-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연도별	표 12-3-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 재난 및 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난 및 안전	장애인 응급안전망	응급 출동 실적	연도별, 월별, 응급상황별	표 13-1-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10조 제11조 제14조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 설치	연도별	표 13-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3-2-2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연도별, 시도별	표 13-3-1	재난안전통계연보	
	장애인 실종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표 13-4-1	경찰청 내부자료	

2) 국외지표

(1) OECD 회원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국가별, 성별	표 14-1-1	Eurostat, EU-SILC, 국가별 통계	–
			국가별, 연령별	표 14-1-2	Eurostat, EU-SILC	
	교육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1	Eurostat, EU-SILC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2	Eurostat, EU-SILC	
	고용	고용율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국가별, 근로형태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2		
				표 14-3-3		
		실업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4		
	재정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국가별, 연도별	표 14-4-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금급여		표 14-4-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국가별,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4-4-4		
				표 14-4-5		
				표 14-4-6		
				표 14-4-7		
				표 14-4-8		
				표 14-4-9		
				표 14-4-10		
				표 14-4-11		
				표 14-4-12		
	복지	빈곤위험률	국가별, 장애여부	표 14-5-1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정신건강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1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국가별	표 14-6-2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국가별, 의료공급기관 별	표 14-6-3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정신질환 별	표 14-6-4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표 14-6-5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6-5		

(2) EU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EU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1-1	EU-SILC	–
			국가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5-1-2	EU-SILC	
	건강	만성질환자 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2-1	Eurostat, EU-SILC	
	주거	주거박탈률	국가별, 연도별	표 15-3-1	Eurostat, EU-SILC	
		주거비 부담률		표 15-3-2		
		주거지내 환경 문제	연도별	표 15-3-3		
	교육	학업중단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4-1	EU-SILC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고용	고용률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표 15-5-1	EU-SILC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표 15-5-2		
		실업률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표 15-5-3		
		경제활동참가율		표 15-5-4		
	빈곤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표 15-6-1	EU-SILC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 위험		표 15-6-2		
		물질적 박탈		표 15-6-3		

(3) 뉴질랜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뉴질랜드	장애인구	장애출현율	연령별, 연도별	표 16-1-1	Disability Survey	
			성별, 연령별	표 16-1-2		
		장애인구 수	연령별, 장애유무별	표 16-1-3		
			성별, 연령별	표 16-1-4		
			성별, 연령별, 장애발생 요인별	표 16-1-5		
	교육	최고학력	성별, 연령별	표 16-2-1	Disability Survey	
			장애유무별, 연도별	표 16-2-2		
		특수교육	ORS 지원 필요 수준별, 성별, 연도별	표 16-2-3	Ministry of Education	
			연도별	표 16-2-4		
	고용	경제활동 현황	장애유무별, 연도별	표 16-3-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장애유무별, 성별, 연도별	표 16-3-2		
		고용 현황 및 근로 형태	장애유무별, 연도별	표 16-3-3 표 16-3-4 표 16-3-5		
		실업	장애유무별, 연도별	표 16-3-6		
	재정	장애 복지 관련 지출	연도별	표 16-4-1	Half Year Economic and Siscal Update	
		장애 복지 관련 예산	연도별	표 16-4-2 표 16-4-3 표 16-4-4 표 16-4-5 표 16-4-6 표 16-4-7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복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 연령별	표 16-5-1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서비스유형별	표 16-5-2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16-5-3		
			지원 패키지 할당 수준별	표 16-5-4		
	사회적 환경	사회적 지지	성별	표 16-6-1		
			장애유무별	표 16-6-2	General Social Survey	
				표 16-6-3		
				표 16-6-4		
			성별, 연령별	표 16-6-5	Disability Survey	
		주거환경	연령별	표 16-6-6	2018 Census	
			장애유무별	표 16-6-9		
			성별	표 16-6-7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장애유무별, 연령별	표 16-6-8	General Social Survey	
		소득 수준	장애유무별, 연도별	표 16-6-10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장애자녀 유무별	표 16-6-11	Disability Survey	
			장애유무별, 연령별	표 16-6-12	General Social Survey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표 16-7-1 표 16-7-2 표 16-7-3 표 16-7-4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연령별, 성별	표 16-7-5 표 16-7-6 표 16-7-8		
			DGB/NGO	표 16-7-7 표 16-7-9 표 16-7-10		
			DUSEHQUF	표 16-7-11		
			성별, 인구집단별, 연도별	표 16-7-12		

(4) 독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독일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연도별,성별,연령별	표 17-1-1	연방건강보고, 중증장애인통계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7-1-2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7-1-3		
			연도별, 장애원인별	표 17-1-4		
	교육	특수교육	연도별	표 17-2-1	독일에서의 통합-정보와 요소, 교육문화부 장관협의회의 통계적 출판 - 학교에서의 특수 교육적 지원 - 세밀한 분석	
			연도별, 장소별	표 17-2-2		
			연도별, 지원영역별	표 17-2-3		
			연도별	표 17-2-4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연도별	표 17-3-1	고용통계(노동시장의 통계), 연방노동에이전트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	표 17-3-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연도별	표 17-3-3		
			민간, 공공부문별	표 17-3-4		
		고용 관련 지출	지출항목별	표 17-3-5	연방노동에이전트 통합청연례보고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연도별	표 17-3-6	BIH 연례보고서	
			성별, 연령별, 국적별	표 17-3-7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기간별, 연령별	표 17-3-8	연방노동에이전트 통계	
	재정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7-4-1	재활정보	
	복지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연도별, 유형별, 연령별	표 17-5-1	연방건강보고, 사회적 급여 통계-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성별, 연령별, 이용시설유형별	표 17-5-2		
			급여내용별	표 17-5-3		
	정신건강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성별, 연령별, 장소별	표 17-6-1	아동 및 청소년 급여의 통계 - 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정신질환 관련병원 및 병상수	병원유형별, 연도별	표 17-6-2	병원기본통계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환자 유형별, 병원유형별	표 17-6-3		

(5)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장애인구	전체 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령별	표 18-1-1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
			성별, 장애유형별	표 18-1-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표 18-1-3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장애유형별 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4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1-5		
			연도별, 연령별	표 18-1-6		
			장애정도별	표 18-1-7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연도별, 연령별	표 18-1-8	환자조사	
			성별, 연령별	표 18-1-9	환자조사	
	교육	특별지원교육	수혜 유형별	표 18-2-1	특별지원교육자료	
			장애별, 학교별	표 18-2-2		
			국립, 공립, 사립	표 18-2-3		
				표 18-2-4		
			교원유형별	표 18-2-5		
		방문교육 및 통급에 의한 지도	연도별	표 18-2-6		
			장애유형별	표 18-2-7		
				표 18-2-7-1		
				표 18-2-8		
		특별지원학교 졸업 후 진로	국립, 공립, 사립	표 18-2-9		
				표 18-2-10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표 18-2-11		
		특별지원교육 관련 예산	연도별, 예산 항목별	표 18-2-12		
	고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	주요지표별	표 18-3-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연도별	표 18-3-2		
			기업규모별	표 18-3-3		
			산업별	표 18-3-4		
			제조업별	표 18-3-5		
			기업규모별	표 18-3-6		
			장애유형별	표 18-3-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주요지표별	표 18-3-8		
				표 18-3-9		
			장애유형별	표 18-3-10		
			주요지표별	표 18-3-11		
			장애유형별	표 18-3-12		
			주요지표별	표 18-3-13		
			장애유형별	표 18-3-14		
			주요지표별	표 18-3-15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장애유형별	표 18-3-16		
			주요지표별	표 18-3-17		
			장애유형별	표 18-3-18		
		공공직업안내소 "Hello Work"	연도별	표 18-3-19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장애유형별	표 18-3-20		
		장애인 해고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3-21		
			해고이유별	표 18-3-22		
	재정 재정	장애인시책 관계 예산	연도별	표 18-4-1	2019년 장애인백서	
				표 18-4-2		
	복지	거주환경 배리어프리화	연도별	표 18-5-1		
		이동환경 배리어프리화	여객유형별	표 18-5-2	2019년 장애인백서, 이동 원활화 실적보고서	
			차량유형별	표 18-5-3		
			장치유형별	표 18-5-4	2019년 장애인백서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수	연도별	표 18-6-1	환자조사	
			질병별	표 18-6-2		
			연령별	표 18-6-3		
			질병별	표 18-6-4		
			연령별	표 18-6-5		
			질병별	표 18-6-6		
			연령별	표 18-6-7		
			질병별	표 18-6-8		
			연령별	표 18-6-9		
			재원기간별	표 18-6-10		
			입원상황별	표 18-6-11		
		정신질환관련시설	연도별, 유형별	표 18-6-12	의료시설조사	
				표 18-6-13	의료시설조사, 병원보고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유형별, 기간별	표 18-6-14	환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Ⅱ

국내통계

1. 장애인구
2. 건강 및 보건
3. 가족
4. 주거
5. 교육
6. 노동과 직업재활
7. 재정
8. 소득과 소비
9. 문화 및 사회참여
10. 사회보장
11. 인권보호
12. 접근성
13. 재난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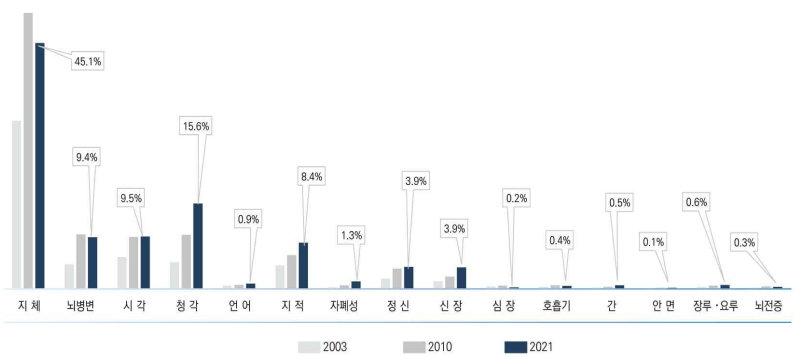
Ⅱ. 국내통계

1. 장애인구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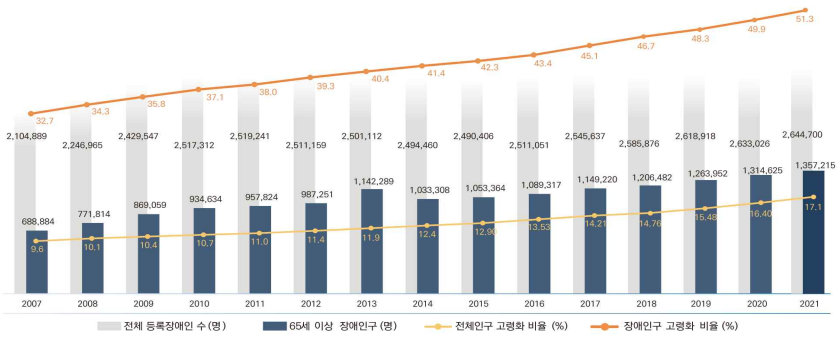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장애유형별



- 2021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1%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4% 순임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그림 2-1-3]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644,700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357,215명(51.3%)으로 고령화수준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0%를 돌파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장애인구 중 5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1) 장애인구

(1) 등록장애인 수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1	1,134,177	682,325	64,950	115,911	105,711	94,951	2,516	32,581	28,118	7,114	-	-	-	-	-	
2002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	-	-	-	-	
2003	1,454,215	813,916	117,514	152,857	126,488	12,837	112,043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73	6,585	3,262
2004	1,610,994	883,296	142,804	170,107	141,908	13,474	119,207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1,114	8,182	5,180
2005	1,789,443	965,014	168,585	189,933	160,565	15,022	127,881	9,518	63,642	41,823	12,807	11,728	5,160	1,490	9,575	6,700
2006	1,967,326	1,049,396	195,253	196,507	182,361	22,794	137,596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863	10,461	7,891
2007	2,104,889	1,114,094	214,751	216,881	203,324	14,882	142,589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2,149	11,184	8,721
2008	2,246,965	1,191,013	232,389	228,126	223,102	15,458	146,898	12,954	86,624	50,474	14,732	14,984	6,968	2,337	11,740	9,166
2009	2,429,547	1,293,331	251,818	241,237	245,801	16,249	154,953	13,933	94,776	54,030	15,127	15,860	7,730	2,505	12,437	9,760
2010	2,517,312	1,337,722	261,746	249,259	260,403	17,207	161,249	14,888	95,821	57,142	12,864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11	2,519,241	1,333,429	260,718	251,258	261,067	17,463	167,479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2012	2,511,159	1,322,131	257,797	252,564	258,589	17,743	173,257	16,906	94,638	63,434	7,744	13,879	8,588	2,709	13,374	7,806
2013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2014	2,494,460	1,295,608	251,543	252,825	252,779	18,275	184,355	19,524	96,963	70,434	6,401	12,445	9,668	2,689	13,867	7,084
2015	2,490,406	1,281,497	250,862	252,874	250,334	18,813	189,75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2016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2017	2,545,637	1,254,130	252,819	252,632	302,003	20,321	200,903	24,698	101,175	83,562	5,399	11,807	11,843	2,692	14,718	6,935
2018	2,585,876	1,238,532	253,083	252,957	342,582	20,744	206,917	26,703	102,140	87,892	5,304	11,761	12,524	2,689	15,027	7,021
2019	2,618,918	1,223,135	252,188	253,055	377,094	21,485	212,936	28,678	102,980	92,408	5,266	11,522	13,154	2,673	15,290	7,054
2020	2,633,026	1,207,368	250,407	252,324	395,789	22,391	217,108	30,802	103,525	97,530	5,233	11,544	13,808	2,677	15,427	7,093
2021	2,644,700	1,191,462	248,308	251,620	411,749	23,064	221,557	33,650	104,214	102,135	5,166	11,541	14,433	2,712	16,012	7,077
	(100.0)	(45.1)	(9.4)	(9.5)	(15.6)	(0.9)	(8.4)	(1.3)	(3.9)	(3.9)	(0.2)	(0.4)	(0.5)	(0.1)	(0.6)	(0.3)

주: 202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21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등록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1%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5.6%, 시각장애 9.5%, 뇌병변장애 9.4%, 지적장애 8.4% 순임

장애유형 변천사

- 1982년 2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자(「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조)
- 1990년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변경(「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2000년 1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1단계 확대: 5유형 → 10유형)
- 2003년 7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단계 확대: 10유형 → 15개 유형)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2007년 10월 시행),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2014년 6월 시행)

〈표 1-1-2〉 등록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644,700	1,191,462	248,308	251,620	411,749	23,064	221,557	33,650	104,214	102,135	5,166	11,541	14,433	2,712	16,012	7,077
	(100.0)	(45.1)	(9.4)	(9.5)	(15.6)	(0.9)	(8.4)	(1.3)	(3.9)	(3.9)	(0.2)	(0.4)	(0.5)	(0.1)	(0.6)	(0.3)
남	1,528,280	691,136	142,600	149,321	216,505	16,374	133,375	28,218	52,958	60,527	3,340	8,503	10,119	1,582	9,856	3,866
	(57.8)	(58.0)	(57.4)	(59.3)	(52.6)	(71.0)	(60.2)	(83.9)	(50.8)	(59.3)	(64.7)	(73.7)	(70.1)	(58.3)	(61.6)	(54.6)
여	1,116,420	500,326	105,708	102,299	195,244	6,690	88,182	5,432	51,256	41,608	1,826	3,038	4,314	1,130	6,156	3,211
	(42.2)	(42.0)	(42.6)	(40.7)	(47.4)	(29.0)	(39.8)	(16.1)	(49.2)	(40.7)	(35.3)	(26.3)	(29.9)	(41.7)	(38.4)	(45.4)
9세 이하	32,304	756	5,390	638	1,718	4,321	10,827	8,208	0	46	99	11	144	8	66	72
	(1.2)	(0.1)	(2.2)	(0.3)	(0.4)	(18.7)	(4.9)	(24.4)	(0.0)	(0.0)	(1.9)	(0.1)	(1.0)	(0.3)	(0.4)	(1.0)
10-19세	59,684	2,996	5,640	1,986	2,645	822	33,372	11,034	66	205	230	39	294	37	98	220
	(2.3)	(0.3)	(2.3)	(0.8)	(0.6)	(3.6)	(15.1)	(32.8)	(0.1)	(0.2)	(4.5)	(0.3)	(2.0)	(1.4)	(0.6)	(3.1)
20-29세	97,342	11,312	7,427	5,779	4,771	523	51,836	10,352	2,534	1,216	473	88	297	107	142	485
	(3.7)	(0.9)	(3.0)	(2.3)	(1.2)	(2.3)	(23.4)	(30.8)	(2.4)	(1.2)	(9.2)	(0.8)	(2.1)	(3.9)	(0.9)	(6.9)
30-39세	116,907	32,500	8,271	11,272	6,048	894	39,250	3,625	8,407	4,510	316	143	355	275	242	799
	(4.4)	(2.7)	(3.3)	(4.5)	(1.5)	(3.9)	(17.7)	(10.8)	(8.1)	(4.4)	(6.1)	(1.2)	(2.5)	(10.1)	(1.5)	(11.3)
40-49세	231,388	102,907	15,737	25,088	11,968	2,028	34,295	358	21,509	12,799	368	452	1,183	534	557	1,605
	(8.7)	(8.6)	(6.3)	(10.0)	(2.9)	(8.8)	(15.5)	(1.1)	(20.6)	(12.5)	(7.1)	(3.9)	(8.2)	(19.7)	(3.5)	(22.7)
50-59세	429,842	222,571	33,382	41,879	27,925	3,691	28,240	64	36,964	24,511	690	1,426	4,031	651	1,811	2,006
	(16.3)	(18.7)	(13.4)	(16.6)	(6.8)	(16.0)	(12.7)	(0.2)	(35.5)	(24.0)	(13.4)	(12.4)	(27.9)	(24.0)	(11.3)	(28.3)
60-69세	624,139	339,931	62,737	58,856	65,972	5,109	17,515	9	26,534	30,100	1,210	4,000	5,976	626	4,063	1,501
	(23.6)	(28.5)	(25.3)	(23.4)	(16.0)	(22.2)	(7.9)	(0.0)	(25.5)	(29.5)	(23.4)	(34.7)	(41.4)	(23.1)	(25.4)	(21.2)
70-79세	578,463	286,645	64,813	60,289	118,666	3,781	4,937	0	6,951	19,518	1,198	4,020	2,025	365	4,917	338
	(21.9)	(24.1)	(26.1)	(24.0)	(28.8)	(16.4)	(2.2)	(0.0)	(6.7)	(19.1)	(23.2)	(34.8)	(14.0)	(13.5)	(30.7)	(4.8)
80세 이상	474,631	191,844	44,911	45,833	172,036	1,895	1,285	0	1,249	9,230	582	1,362	128	109	4,116	51
	(17.9)	(16.1)	(18.1)	(18.2)	(41.8)	(8.2)	(0.6)	(0.0)	(1.2)	(9.0)	(11.3)	(11.8)	(0.9)	(4.0)	(25.7)	(0.7)
심한 장애	984,813	232,362	146,435	47,022	90,756	11,464	221,557	33,650	103,981	76,865	4,039	11,137	747	1,398	1,552	1,848
	(37.2)	(19.5)	(59.0)	(18.7)	(22.0)	(49.7)	(100.0)	(100.0)	(99.8)	(75.3)	(78.2)	(96.5)	(5.2)	(51.5)	(9.7)	(26.1)
심하지 않은 장애	1,659,887	959,100	101,873	204,598	320,993	11,600	0	0	233	25,270	1,127	404	13,686	1,314	14,460	5,229
	(62.8)	(80.5)	(41.0)	(81.3)	(78.0)	(50.3)	(0.0)	(0.0)	(0.2)	(24.7)	(21.8)	(3.5)	(94.8)	(48.5)	(90.3)	(73.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등록 장애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은 57.8%로 여성 등록장애인 42.2%보다 15.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69세가 23.6%로 가장 높았으며, 70-79세 21.9%, 80세 이상 17.9%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62.8%로 심한 장애인 37.2%보다 25.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표 1-1-3〉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9	97,699	14,690	14,287	7,126	38,347	1,823	5,966	1,427	2,280	8,141	247	920	945	22	1,255	223
2020	83,297	13,801	12,817	6,394	28,080	1,822	4,649	1,557	2,120	8,402	262	925	995	19	1,236	218
2021	86,957	14,428	13,217	6,497	28,525	2,001	5,214	2,085	2,123	8,948	236	871	944	54	1,594	220
	(100.0)	(16.6)	(15.2)	(7.5)	(32.8)	(2.3)	(6.0)	(2.4)	(2.4)	(10.3)	(0.3)	(1.0)	(1.1)	(0.1)	(1.8)	(0.3)
남	49,929	7,796	7,673	3,774	15,118	1,446	3,212	1,655	1,045	5,539	162	672	665	41	1,007	124
	(57.4)	(54.0)	(58.1)	(58.1)	(53.0)	(72.3)	(61.6)	(79.4)	(49.2)	(61.9)	(68.6)	(77.2)	(70.4)	(75.9)	(63.2)	(56.4)
여	37,028	6,632	5,544	2,723	13,407	555	2,002	430	1,078	3,409	74	199	279	13	587	96
	(42.6)	(46.0)	(41.9)	(41.9)	(47.0)	(27.7)	(38.4)	(20.6)	(50.8)	(38.1)	(31.4)	(22.8)	(29.6)	(24.1)	(36.8)	(43.6)
9세 이하	6,447	117	725	79	174	1,347	2,110	1,814	0	6	17	1	8	0	32	17
	(7.4)	(0.8)	(5.5)	(1.2)	(0.6)	(67.3)	(40.5)	(87.0)	(0.0)	(0.1)	(7.2)	(0.1)	(0.8)	(0.0)	(2.0)	(7.7)
10–19세	2,744	338	82	123	53	6	1,773	242	33	25	8	4	4	1	29	23
	(3.2)	(2.3)	(0.6)	(1.9)	(0.2)	(0.3)	(34.0)	(11.6)	(1.6)	(0.3)	(3.4)	(0.5)	(0.4)	(1.9)	(1.8)	(10.5)
20–29세	1,993	501	165	200	90	8	390	22	351	133	17	10	15	5	39	47
	(2.3)	(3.5)	(1.2)	(3.1)	(0.3)	(0.4)	(7.5)	(1.1)	(16.5)	(1.5)	(7.2)	(1.1)	(1.6)	(9.3)	(2.4)	(21.4)
30–39세	2,671	555	320	264	131	15	266	7	507	426	9	16	55	12	55	33
	(3.1)	(3.8)	(2.4)	(4.1)	(0.5)	(0.7)	(5.1)	(0.3)	(23.9)	(4.8)	(3.8)	(1.8)	(5.8)	(22.2)	(3.5)	(15.0)
40–49세	5,285	1,255	911	529	295	45	305	0	516	1,047	27	45	154	13	97	46
	(6.1)	(8.7)	(6.9)	(8.1)	(1.0)	(2.2)	(5.8)	(0.0)	(24.3)	(11.7)	(11.4)	(5.2)	(16.3)	(24.1)	(6.1)	(20.9)
50–59세	10,816	2,655	2,248	1,110	1,306	148	272	0	450	1,772	47	117	369	10	280	32
	(12.4)	(18.4)	(17.0)	(17.1)	(4.6)	(7.4)	(5.2)	(0.0)	(21.2)	(19.8)	(19.9)	(13.4)	(39.1)	(18.5)	(17.6)	(14.5)
60–69세	18,515	4,592	3,538	1,541	4,850	220	79	0	233	2,300	62	347	288	12	436	17
	(21.3)	(31.8)	(26.8)	(23.7)	(17.0)	(11.0)	(1.5)	(0.0)	(11.0)	(25.7)	(26.3)	(39.8)	(30.5)	(22.2)	(27.4)	(7.7)
70–79세	21,563	3,484	3,300	1,492	10,265	155	16	0	31	2,055	44	276	48	1	391	5
	(24.8)	(24.1)	(25.0)	(23.0)	(36.0)	(7.7)	(0.3)	(0.0)	(1.5)	(23.0)	(18.6)	(31.7)	(5.1)	(1.9)	(24.5)	(2.3)
80세 이상	16,923	931	1,928	1,159	11,361	57	3	0	2	1,184	5	55	3	0	235	0
	(19.5)	(6.5)	(14.6)	(17.8)	(39.8)	(2.8)	(0.1)	(0.0)	(0.1)	(13.2)	(2.1)	(6.3)	(0.3)	(0.0)	(14.7)	(0.0)
심한 장애	28,315	1,613	6,134	547	573	643	5,214	2,085	1,959	8,336	176	807	113	6	75	34
	(32.6)	(11.2)	(46.4)	(8.4)	(2.0)	(32.1)	(100.0)	(100.0)	(92.3)	(93.2)	(74.6)	(92.7)	(12.0)	(11.1)	(4.7)	(15.5)
심하지 않은 장애	58,642	12,815	7,083	5,950	27,952	1,358	0	0	164	612	60	64	831	48	1,519	186
	(67.4)	(88.8)	(53.6)	(91.6)	(98.0)	(67.9)	(0.0)	(0.0)	(7.7)	(6.8)	(25.4)	(7.3)	(88.0)	(88.9)	(95.3)	(84.5)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21년 신규 등록장애인 수는 86,957명으로 2012년 대비 3,660명 증가함
- 성별로는 남성 신규 등록장애인은 57.4%로 여성 신규 등록장애인 42.6%보다 1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70–79세가 24.8%로 가장 높았으며, 60–69세 21.3%, 80세 이상 19.5% 순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67.4%로 심한 장애인 32.6%보다 34.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4
2002	48,229,948	1,294,254	2.7
2003	48,386,823	1,454,215	3.0
2004	48,583,805	1,610,994	3.3
2005	48,782,274	1,789,443	3.7
2006	48,991,779	1,967,326	4.0
2007	49,268,928	2,104,889	4.3
2008	49,540,367	2,246,965	4.5
2009	49,773,145	2,429,547	4.9
2010	50,515,666	2,517,312	5.0
2011	50,734,284	2,519,241	5.0
2012	50,948,272	2,511,159	4.9
2013	51,141,463	2,501,112	4.9
2014	51,327,916	2,494,460	4.9
2015	51,529,338	2,490,406	4.8
2016	51,696,216	2,511,051	4.9
2017	51,778,544	2,545,637	4.9
2018	51,826,059	2,585,876	5.0
2019	51,849,861	2,618,918	5.1
2020	51,829,023	2,633,026	5.1
2021	51,638,809	2,644,700	5.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비율은 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장애인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나,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644,700명으로 전체인구(51,638,809명) 대비 약 5.1%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장애인 출현율

〈표 1-1-5〉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복장애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2017	5.39	2.51	0.52	0.51	0.52	0.03	0.38	0.03	0.22	0.15	0.01	0.02	0.02	0.01	0.03	0.02	0.42

주: 1) 2011년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중복 장애를 반영함
2) 2014, 2016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4년 5.59%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출현율이 0.52%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3) 장애영유아 현황

〈표 1-1-6〉 장애영유아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인구	장애영유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2010	2,734,976	8,448	36	493	1,170	1,880	2,122	2,747	0.31
2011	2,777,209	7,933	37	401	1,023	1,569	2,322	2,581	0.29
2012	2,816,103	7,886	33	508	1,097	1,473	1,967	2,808	0.28
2013	2,769,255	7,442	29	437	1,088	1,549	1,908	2,431	0.27
2014	2,741,835	7,657	31	446	1,067	1,583	2,032	2,498	0.28
2015	2,739,901	8,122	26	459	1,066	1,566	2,196	2,809	0.30
2016	2,680,088	8,598	46	521	1,047	1,583	2,293	3,108	0.32
2017	2,568,516	8,983	46	517	1,157	1,640	2,313	3,310	0.35
2018	2,415,349	9,175	41	482	1,066	1,804	2,482	3,300	0.38
2019	2,285,605	9,679	43	483	1,014	1,721	2,898	3,520	0.42
2020	2,121,390	9,729	36	381	916	1,614	2,825	3,957	0.46
2021	1,943,208	9,692	28	409	801	1,599	2,734	4,121	0.50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영유아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2-08-18)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2-08-18)

–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인구(1,943,208명) 대비 장애영유아 인구(9,692명)는 0.5%로 나타남
- 연도별로 장애영유아 인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2014까지 소폭 증가함.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장애영유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함.

〈표 1-1-7〉 장애영유아 현황(2021)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장애인	장애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유아 비율
전체	2,644,700	9,692	28	409	801	1,599	2,734	4,121	0.37
지체	1,191,462	314	2	23	40	63	90	96	0.03
시각	251,620	182	3	12	23	41	46	57	0.07
청각	411,749	846	21	125	159	175	170	196	0.21
언어	23,064	1,969	0	0	0	270	671	1,028	8.54
지적	221,557	1,648	0	0	45	198	452	953	0.74
뇌병변	248,308	2,774	0	237	490	638	706	703	1.12
자폐	33,650	1,784	0	0	18	184	551	1,031	5.30
정신	104,214	0	0	0	0	0	0	0	0.00
신장	102,135	20	2	0	3	5	5	5	0.02
심장	5,166	32	0	4	2	6	8	12	0.62
호흡기	11,541	4	0	0	2	0	0	2	0.03
간	14,433	64	0	5	9	13	18	19	0.44
안면	2,712	3	0	0	0	2	1	0	0.11
장루·요루	16,012	29	0	2	6	2	12	7	0.18
뇌전증	7,077	23	0	1	4	2	4	12	0.32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함: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장애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2-08-18)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2-08-18)

- 2021년 기준 장애유형별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 영유아 중 뇌병변장애가 2,744명으로 가장 많고, 언어장애 1,969명, 자폐성장애 1,784명, 지적장애 1,648명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이 대비 영유아 비율을 살펴보면, 어어 장애가 8.54%가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 5.30%, 뇌병변장애 1.12% 순으로 나타남

(4) 장애아동 현황

〈표 1-1-8〉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인구	장애아동 인구	비율
2008	10,655,575	77,594	0.73
2009	10,396,743	81,687	0.79
2010	10,156,455	80,075	0.79
2011	9,921,012	78,186	0.79
2012	9,691,876	76,191	0.79
2013	9,431,699	74,617	0.79
2014	9,186,841	73,195	0.80
2015	8,961,805	72,583	0.81
2016	8,736,051	72,139	0.83
2017	8,480,447	72,260	0.85
2018	8,176,335	72,618	0.89
2019	7,928,907	74,362	0.94
2020	7,710,946	75,482	0.98
2021	7,483,944	77,961	1.04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통계청·각시도(정책)기획관리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시도)」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7,483,944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77,961명)는 1.04%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장애아동 인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임
-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 추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는 전체 아동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임

〈표 1-1-9〉 장애아동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77,961	2,716	9,748	2,009	3,738	5,015	36,085	17,387	12	185	257	40	365	27	139	238
	(100.0)	(3.5)	(12.5)	(2.6)	(4.8)	(6.4)	(46.3)	(22.3)	(0.0)	(0.2)	(0.3)	(0.1)	(0.5)	(0.0)	(0.2)	(0.3)
남	51,904	1,487	5,528	1,154	2,016	3,537	23,367	14,150	5	106	149	29	146	11	78	141
	(66.6)	(54.7)	(56.7)	(57.4)	(53.9)	(70.5)	(64.8)	(81.4)	(41.7)	(57.3)	(58.0)	(72.5)	(40.0)	(40.7)	(56.1)	(59.2)
여	26,057	1,229	4,220	855	1,722	1,478	12,718	3,237	7	79	108	11	219	16	61	97
	(33.4)	(45.3)	(43.3)	(42.6)	(46.1)	(29.5)	(35.2)	(18.6)	(58.3)	(42.7)	(42.0)	(27.5)	(60.0)	(59.3)	(43.9)	(40.8)
0–13세	55,284	1,467	7,525	1,236	2,709	4,786	22,956	13,817	0	95	157	19	257	13	97	150
	(70.9)	(54.0)	(77.2)	(61.5)	(72.5)	(95.4)	(63.6)	(79.5)	(0.0)	(51.4)	(61.1)	(47.5)	(70.4)	(48.1)	(69.8)	(63.0)
14–17세	22,677	1,249	2,223	773	1,029	229	13,129	3,570	12	90	100	21	116	14	42	88
	(29.1)	(46.0)	(22.8)	(38.5)	(27.5)	(4.6)	(36.4)	(20.5)	(100.0)	(48.6)	(38.9)	(52.5)	(31.8)	(51.9)	(30.2)	(37.0)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자료: 보건복지부(2021) "등록장애인현황"

– 2021년 장애아동 수는 77,961명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46.3%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22.3%, 뇌병변장애 12.5% 순임
- 성별로는 남성 장애아동은 66.6%로 여성 장애아동 33.4%보다 33.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0–13세가 70.9%, 14–17세는 29.1%로 나타남

(5)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표 1-1-10〉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수	65세 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07	2,104,889	688,884	32.7	9.9
2008	2,246,965	771,814	34.3	10.2
2009	2,429,547	869,059	35.8	10.6
2010	2,517,312	934,634	37.1	10.9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142,289	45.7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2
2016	2,511,051	1,089,317	43.4	13.5
2017	2,545,637	1,149,910	45.2	14.2
2018	2,585,876	1,206,482	46.7	14.8
2019	2,618,918	1,263,952	48.3	15.5
2020	2,633,026	1,314,625	49.9	16.4
2021	2,644,700	1,357,215	51.3	17.1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용어조회 '고령화율')이므로 전체 등록장애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로 비율을 구성하였음
3)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당해연도 65세 이상 장애인구/ 당해연도 전체 등록장애인 수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등록장애인현황"
2) 통계청.(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2,644,700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357,215명(51.3%)으로 고령화수준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0%를 돌파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장애인구 중 5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고령화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 사용한 용어로 각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만큼 기형적인 연령 구조를 말함.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함(권혁남, 전상길, 2009, 고령자의 고용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과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 지역연구 18권 2호, 여름 pp.39-78)

〈표 1-1-11〉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357,215	643,661	142,248	134,997	326,523	8,186	12,720	2	18,390	42,703	2,415	7,680	4,754	768	11,207	961
	(100.0)	(47.4)	(10.5)	(9.9)	(24.1)	(0.6)	(0.9)	(0.0)	(1.4)	(3.1)	(0.2)	(0.6)	(0.4)	(0.1)	(0.8)	(0.1)
남	662,056	289,295	72,665	69,560	167,575	5,729	6,792	0	7,688	24,134	1,588	6,053	3,270	396	6,806	505
	(48.8)	(44.9)	(51.1)	(51.5)	(51.3)	(70.0)	(53.4)	(0.0)	(41.8)	(56.5)	(65.8)	(78.8)	(68.8)	(51.6)	(60.7)	(52.5)
여	695,159	354,366	69,583	65,437	158,948	2,457	5,928	2	10,702	18,569	827	1,627	2,457	372	4,401	456
	(51.2)	(55.1)	(48.9)	(48.5)	(48.7)	(30.0)	(46.6)	(100.0)	(58.2)	(43.5)	(34.2)	(21.2)	(14840)	(48.4)	(39.3)	(47.5)
65세-74세	594,150	314,245	64,901	59,312	85,756	4,613	9,726	2	14,848	25,002	1,276	4,485	4,068	515	4,575	826
	(43.8)	(48.8)	(45.6)	(43.9)	(26.3)	(56.4)	(76.5)	(100.0)	(80.7)	(58.5)	(52.8)	(58.4)	(85.6)	(67.1)	(40.8)	(86.0)
75세 이상	763,065	329,416	77,347	75,685	240,767	3,573	2,994	0	3,542	17,701	1,139	3,195	686	253	6,632	135
	(56.2)	(51.2)	(54.4)	(56.1)	(73.7)	(43.6)	(23.5)	(0.0)	(19.3)	(41.5)	(47.2)	(41.6)	(14.4)	(32.9)	(59.2)	(14.0)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 "등록장애인현황"

- 고령장애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7.4%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24.1%, 뇌병변장애 10.5%, 시각장애 9.9% 순임
  - 성별로는 여성 고령장애인은 51.2%로 남성 고령장애인 48.8%보다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74세가 43.8%, 75세 이상이 56.2%로 나타남

(6) 장애정도심사

〈표 1-1-12〉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총계	장애정도결정			미해당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누계	2,840,194	2,392,219	1,356,542	1,035,677	403,015	6,939	38,021
	(100.0)	(84.2)	(47.8)	(36.5)	(14.2)	(0.2)	(1.3)
2007	15,204	14,414	13,874	540	370	29	391
	(100.0)	(94.8)	(91.3)	(3.6)	(2.4)	(0.2)	(2.6)
2008	26,683	25,113	23,697	1,416	811	71	688
	(100.0)	(94.1)	(88.8)	(5.3)	(3.0)	(0.3)	(2.6)
2009	37,230	35,365	33,581	1,784	917	154	794
	(100.0)	(95.0)	(90.2)	(4.8)	(2.5)	(0.4)	(2.1)
2010	163,943	152,058	136,134	15,924	7,996	837	3,052
	(100.0)	(92.8)	(83.0)	(9.7)	(4.9)	(0.5)	(1.9)
2011	211,371	169,602	111,850	57,752	36,653	1,325	3,791
	(100.0)	(80.2)	(52.9)	(27.3)	(17.3)	(0.6)	(1.8)
2012	239,854	192,724	113,568	79,156	42,105	762	4,263
	(100.0)	(80.4)	(47.3)	(33.0)	(17.6)	(0.3)	(1.8)
2013	232,655	189,433	111,898	77,535	39,102	656	3,464
	(100.0)	(81.4)	(48.1)	(33.3)	(16.8)	(0.3)	(1.5)
2014	237,548	194,901	118,091	76,810	38,406	768	3,473
	(100.0)	(82.0)	(49.7)	(32.3)	(16.2)	(0.3)	(1.5)
2015	226,931	189,156	114,087	75,069	34,502	289	2,984
	(100.0)	(83.4)	(50.3)	(33.1)	(15.2)	(0.1)	(1.3)
2016	236,419	200,616	102,999	97,617	33,208	130	2,465
	(100.0)	(84.9)	(43.6)	(41.3)	(14.0)	(0.1)	(1.0)
2017	237,330	203,844	96,360	107,484	31,021	227	2,238
	(100.0)	(85.9)	(40.6)	(45.3)	(13.1)	(0.1)	(0.9)
2018	253,075	216,230	95,393	120,837	34,016	318	2,511
	(100.0)	(85.4)	(37.7)	(47.7)	(13.4)	(0.1)	(1.0)
2019	256,154	215,778	96,952	118,826	36,761	572	3,043
	(100.0)	(84.2)	(37.8)	(46.4)	(14.4)	(0.2)	(1.2)
2020	231,502	194,948	94,080	100,868	33,615	431	2,508
	(100.0)	(84.2)	(40.6)	(43.6)	(14.5)	(0.2)	(1.1)
2021	234,295	198,037	93,978	104,059	33,532	370	2,356
	(100.0)	(84.5)	(40.1)	(44.4)	(14.3)	(0.2)	(1.0)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장애 정도 심사건수는 234,295건, 미해당 비율은 14.3%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 정도 심사는 총 2,840,194건이 있었고, 이 중 84.2%(2,392,219명)가 장애 정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장애 정도 결정 건수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4,05건으로 심한 장애인 93,978건보다 10,081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13〉 장애정도심사 - 장애유형별

구분	총계	장애정도 결정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전체	2,840,194	2,392,220	1,356,542	1,035,678	403,014	6,939	38,021
	(100.0)	(84.2)	(47.8)	(36.5)	(14.2)	(0.2)	(1.3)
뇌병변	502,612	445,878	245,446	200,432	48,850	1,319	6,565
(17.7)	(100.0)	(88.7)	(48.8)	(39.9)	(9.7)	(0.3)	(1.3)
지체	572,877	358,011	64,753	293,258	209,395	697	4,774
(20.2)	(100.0)	(62.5)	(11.3)	(51.2)	(36.6)	(0.1)	(0.8)
정신	316,833	273,166	272,891	275	36,753	310	6,604
(11.2)	(100.0)	(86.2)	(86.1)	(0.1)	(11.6)	(0.1)	(2.1)
지적	243,309	227,309	227,309	0	14,216	1,451	333
(8.6)	(100.0)	(93.4)	(93.4)	(0.0)	(5.8)	(0.6)	(0.1)
신장	334,619	333,947	323143	10,804	115	8	549
(11.8)	(100.0)	(99.8)	(96.6)	(3.2)	(0.0)	(0.0)	(0.2)
시각	194,749	168,200	41,898	126,302	20,016	1,356	5,177
(6.9)	(100.0)	(86.4)	(21.5)	(64.9)	(10.3)	(0.7)	(2.7)
청각	401,489	367,625	45,168	322,457	30,355	621	2,888
(14.1)	(100.0)	(91.6)	(11.3)	(80.3)	(7.6)	(0.2)	(0.7)
중복	32,401	31,758	28,685	3,073	525	41	77
(1.1)	(100.0)	(98.0)	(88.5)	(9.5)	(1.6)	(0.1)	(0.2)
자폐성	48,145	45,053	45,053	0	3,044	29	19
(1.7)	(100.0)	(93.6)	(93.6)	(0.0)	(6.3)	(0.1)	(0.0)
뇌전증	35,998	23,465	5,005	18,460	9,321	66	3,146
(1.3)	(100.0)	(65.2)	(13.9)	(51.3)	(25.9)	(0.2)	(8.7)
호흡기	35,706	27,747	27,298	449	5,538	573	1,848
(1.3)	(100.0)	(77.7)	(76.5)	(1.3)	(15.5)	(1.6)	(5.2)
언어	48,294	37,598	17,172	20,426	7,151	385	3,160
(1.7)	(100.0)	(77.9)	(35.6)	(42.3)	(14.8)	(0.8)	(6.5)
장루,요루	30,221	28,099	1,733	26366	647	2	1,473
(1.1)	(100.0)	(93.0)	(5.7)	(87.2)	(2.1)	(0.0)	(4.9)
심장	19,604	7,292	6,223	1,069	11,495	50	767
(0.7)	(100.0)	(37.2)	(31.7)	(5.5)	(58.6)	(0.3)	(3.9)
간	20,881	16,090	4,439	11,651	4,136	31	624
(0.7)	(100.0)	(77.1)	(21.3)	(55.8)	(19.8)	(0.1)	(3.0)
안면	2,456	982	326	656	1,457	0	17
(0.1)	(100.0)	(40.0)	(13.3)	(26.7)	(59.3)	(0.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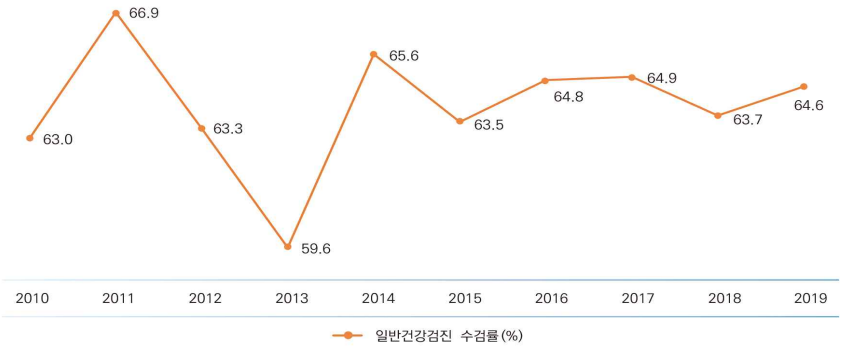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정도 심사현황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심장장애 37.2%, 안면장애 40.0%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적, 신장, 청각, 중복, 자폐성, 장루·요루 장애의 장애인정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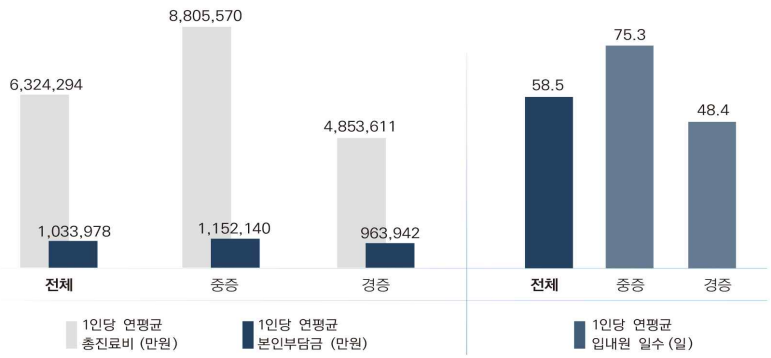
장애정도심사: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정도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부터 의사중심의 장애정도심사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재심사로 변경됨

2. 건강 및 보건

[그림 2-2-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그림 2-2-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19년)



- 2019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4.6%로 2018년에 비해 0.9%p 증가함
- 2019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8.5일이며,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6,324,294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033,978원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더 크게 나타남

1) 건강상태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4.0	88.9	48.1	91.3	92.7	81.9	72.7	48.1
	일부 지원필요	8.0	6.5	18.3	5.2	3.9	10.3	14.3	33.6
	상당 지원필요	4.3	2.5	16.7	2.0	2.0	4.7	7.0	13.0
	전적 지원필요	3.7	2.1	16.8	1.5	1.4	3.2	6.0	5.2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8.2	83.6	39.3	87.2	87.1	75.5	65.1	38.2
	일부 지원필요	10.0	9.0	19.3	6.7	6.4	9.8	15.4	27.8
	상당 지원필요	6.0	3.8	17.5	3.8	4.3	10.3	9.1	23.8
	전적 지원필요	5.8	3.6	23.9	2.3	2.3	4.4	10.4	10.2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1	93.7	61.7	94.3	93.9	85.9	71.5	47.6
	일부 지원필요	5.5	3.2	13.5	3.0	3.7	8.2	12.8	31.1
	상당 지원필요	3.2	1.5	10.2	1.3	1.1	4.2	9.2	13.2
	전적 지원필요	3.3	1.6	14.6	1.4	1.2	1.8	6.4	8.1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3.8	96.5	75.7	96.6	96.5	92.6	92.2	82.0
	일부 지원필요	3.0	2.0	9.0	2.0	1.8	3.2	3.6	12.0
	상당 지원필요	1.2	0.4	6.5	0.4	1.0	2.6	1.2	2.4
	전적 지원필요	1.9	1.1	8.8	1.0	0.7	1.6	3.0	3.7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0.7	94.4	67.8	93.3	94.9	90.5	85.4	71.3
	일부 지원필요	4.8	3.2	13.7	3.5	2.8	4.7	8.5	16.6
	상당 지원필요	2.1	1.1	8.1	1.7	1.2	3.2	2.7	7.0
	전적 지원필요	2.4	1.3	10.4	1.5	1.1	1.6	3.5	5.1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1.3	93.6	64.1	96.2	96.5	92.1	92.2	83.4
	일부 지원필요	4.5	3.8	15.5	2.1	2.0	3.4	4.0	11.5
	상당 지원필요	1.7	1.1	8.5	0.8	0.7	2.3	1.0	1.9
	전적 지원필요	2.4	1.5	11.9	0.9	0.8	2.1	2.8	3.3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0.3	92.9	61.1	95.1	95.2	91.4	91.7	85.8
	일부 지원필요	4.8	3.8	15.1	2.8	3.1	4.2	4.1	8.7
	상당 지원필요	2.2	1.4	11.6	0.9	0.7	2.9	1.4	2.5
	전적 지원필요	2.7	2.0	12.2	1.1	1.0	1.6	2.9	3.0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0.5	92.7	62.2	96.0	95.6	92.4	91.8	86.5
	일부 지원필요	4.9	4.1	16.2	2.2	2.6	3.4	4.2	8.0
	상당 지원필요	2.2	1.4	9.9	1.0	1.1	3.1	1.1	2.5
	전적 지원필요	2.5	1.7	11.7	0.9	0.7	1.0	2.9	3.0
보행	지원 불필요	80.5	82.2	43.7	84.6	88.9	81.9	85.0	79.2
	일부 지원필요	9.6	10.0	20.6	6.6	6.3	8.4	7.0	14.9
	상당 지원필요	5.1	4.1	16.8	5.0	2.8	6.7	3.4	3.6
	전적 지원필요	4.8	3.7	18.9	3.8	2.0	3.0	4.6	2.3
이동	지원 불필요	77.8	80.8	41.7	81.6	85.0	79.1	78.7	65.7
	일부 지원필요	8.7	8.4	16.2	6.4	7.9	8.2	6.8	17.2
	상당 지원필요	7.3	6.3	18.7	6.6	4.8	8.9	7.2	9.4
	전적 지원필요	6.2	4.5	23.4	5.3	2.4	3.8	7.4	7.7
배변	지원 불필요	90.5	93.9	64.7	95.8	95.7	90.4	85.8	74.5
	일부 지원필요	4.0	2.5	12.4	2.6	2.1	5.1	5.8	16.5
	상당 지원필요	2.6	1.6	10.3	0.7	0.9	3.5	4.0	5.1
	전적 지원필요	3.0	2.0	12.6	1.0	1.3	1.0	4.4	3.9
배뇨	지원 불필요	90.9	94.0	65.0	95.8	95.5	91.4	88.1	81.1
	일부 지원필요	3.8	2.4	13.0	2.5	2.1	4.6	4.9	11.8
	상당 지원필요	2.4	1.7	9.6	0.7	0.9	3.0	2.9	3.2
	전적 지원필요	2.9	1.9	12.4	1.1	1.4	1.0	4.1	3.9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77.8%, '보행'이 80.5%, '옷 갈아입기'가 84.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6.6	89.7	94.6	80.9	98.3	94.0	92.2	87.3
	일부 지원필요	7.9	5.4	3.8	8.6	1.7	6.0	4.4	5.5
	상당 지원필요	3.7	3.1	0.8	7.4	0.0	0.0	1.6	3.5
	전적 지원필요	1.8	1.8	0.8	3.1	0.0	0.0	1.8	3.7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82.0	84.6	88.3	70.8	96.4	93.8	85.8	81.5
	일부 지원필요	9.8	6.7	9.0	12.9	2.4	5.3	5.5	9.3
	상당 지원필요	4.8	5.8	1.8	12.0	1.2	0.9	5.3	4.7
	전적 지원필요	3.4	3.0	0.8	4.3	0.0	0.0	3.4	4.6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9	92.5	95.7	87.1	98.3	95.8	93.3	90.0
	일부 지원필요	4.5	3.8	1.7	6.2	1.7	3.0	2.5	5.3
	상당 지원필요	4.0	2.3	2.6	3.0	0.0	1.2	2.4	1.7
	전적 지원필요	2.7	1.3	0.0	3.7	0.0	0.0	1.8	2.9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5.1	95.6	95.7	89.0	98.0	97.3	94.8	91.7
	일부 지원필요	3.1	2.4	1.7	4.8	2.0	2.7	2.6	6.0
	상당 지원필요	1.3	0.9	2.6	3.1	0.0	0.0	1.5	0.9
	전적 지원필요	0.4	1.1	0.0	3.1	0.0	0.0	1.1	1.4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2.9	93.7	93.9	88.5	98.0	95.5	92.7	93.8
	일부 지원필요	4.3	3.4	5.3	5.3	2.0	4.5	3.4	2.4
	상당 지원필요	2.1	1.8	0.8	3.1	0.0	0.0	1.9	2.5
	전적 지원필요	0.7	1.1	0.0	3.1	0.0	0.0	2.0	1.4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5.2	94.7	94.6	88.0	98.3	94.9	94.6	95.3
	일부 지원필요	2.7	2.9	3.8	6.7	1.7	5.1	2.5	2.4
	상당 지원필요	1.4	1.0	1.6	2.2	0.0	0.0	1.2	0.9
	전적 지원필요	0.7	1.3	0.0	3.1	0.0	0.0	1.8	1.4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4.3	93.3	93.3	88.0	98.3	94.9	94.3	95.3
	일부 지원필요	3.8	4.0	3.8	6.7	1.7	5.1	2.8	3.4
	상당 지원필요	1.4	1.4	2.9	2.2	0.0	0.0	1.2	0.0
	전적 지원필요	0.5	1.3	0.0	3.1	0.0	0.0	1.8	1.4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4.2	92.9	94.6	89.1	98.3	92.8	94.6	95.3
	일부 지원필요	3.9	2.6	3.5	5.6	1.7	6.0	1.5	1.7
	상당 지원필요	1.7	0.0	1.8	2.2	0.0	1.2	2.1	1.7
	전적 지원필요	0.2	0.1	0.0	3.1	0.0	0.0	1.8	1.4
보행	지원 불필요	91.0	85.0	91.2	76.8	96.4	93.7	89.1	87.3
	일부 지원필요	5.3	8.5	5.1	12.6	3.4	4.2	4.6	6.7
	상당 지원필요	2.7	3.7	3.7	7.0	0.1	2.1	3.6	3.8
	전적 지원필요	1.1	2.8	0.0	3.6	0.0	0.0	2.7	2.2
이동	지원 불필요	85.7	82.8	89.3	76.1	95.4	92.2	86.3	82.3
	일부 지원필요	7.0	7.8	8.1	9.9	3.7	4.6	4.4	9.0
	상당 지원필요	5.0	6.4	1.6	6.6	0.9	2.3	5.5	4.1
	전적 지원필요	2.3	3.1	1.1	7.3	0.0	0.9	3.8	4.6
배변	지원 불필요	94.5	94.2	94.6	88.2	99.9	95.5	58.3	94.5
	일부 지원필요	3.5	2.8	3.5	8.3	0.1	3.3	16.6	4.1
	상당 지원필요	1.8	1.2	1.8	1.1	0.0	1.2	12.7	0.0
	전적 지원필요	0.2	1.8	0.0	2.5	0.0	0.0	12.4	1.4
배뇨	지원 불필요	94.3	93.9	94.6	88.2	99.9	95.5	70.0	94.5
	일부 지원필요	3.8	2.5	3.5	8.3	0.1	3.3	14.5	4.1
	상당 지원필요	1.8	1.7	1.8	1.1	0.0	1.2	8.9	0.0
	전적 지원필요	0.2	1.8	0.0	2.5	0.0	0.0	6.6	1.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77.8%, '보행'이 80.5%, '옷 갈아입기'가 84.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4.0	85.3	82.1	50.9	83.1	89.3	82.3	70.8	91.9
	일부 지원필요	8.0	7.5	8.7	25.4	7.8	5.2	9.1	12.7	5.2
	상당 지원필요	4.3	3.9	4.9	12.7	4.4	2.8	4.9	8.6	1.8
	전적 지원필요	3.7	3.3	4.2	11.1	4.7	2.6	3.7	7.9	1.1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8.2	80.6	74.8	38.2	78.5	86.2	74.7	63.2	87.1
	일부 지원필요	10.0	9.1	11.2	29.5	8.6	6.5	11.8	14.2	7.5
	상당 지원필요	6.0	5.2	7.1	16.0	5.9	3.1	7.5	10.5	3.3
	전적 지원필요	5.8	5	6.8	16.3	7.1	4.2	6.0	12.1	2.0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8.1	88.9	87.1	49.3	84.1	92.6	88.2	76.4	95.2
	일부 지원필요	5.5	5.3	5.6	24.9	7.0	3.1	5.6	9.6	3.0
	상당 지원필요	3.2	2.7	3.7	14.0	4.4	1.9	3.1	6.8	1.0
	전적 지원필요	3.3	3.0	3.6	11.8	4.5	2.4	3.1	7.2	0.9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3.8	94.5	92.9	81.6	94.1	96.2	92.8	88.1	97.3
	일부 지원필요	3.0	85.3	82.1	11.5	2.1	1.6	3.7	5.1	70.8
	상당 지원필요	1.2	7.5	8.7	2.1	1.0	0.8	1.5	2.5	0.5
	전적 지원필요	1.9	3.9	4.9	4.9	2.8	1.5	1.9	4.3	0.5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0.7	91.8	89.3	71.9	89.6	94.3	89.6	82.3	95.8
	일부 지원필요	4.8	80.6	74.8	16.2	4.9	2.7	5.5	8.5	2.6
	상당 지원필요	2.1	9.1	11.2	6.9	2.5	1.1	2.4	4.2	0.9
	전적 지원필요	2.4	2.2	2.6	5.0	3.0	1.8	2.4	5.1	0.7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1.3	92.2	90.2	87.8	92.5	93.7	89.6	83.8	95.9
	일부 지원필요	4.5	4.1	5.0	7.9	2.8	3.3	5.6	7.6	2.6
	상당 지원필요	1.7	1.6	1.9	1.0	1.2	1.1	2.3	3.3	0.8
	전적 지원필요	2.4	2.1	2.9	3.3	3.5	1.9	2.4	5.3	0.7
옮겨 앉기	지원 불필요	90.3	91.5	88.7	87.5	91.2	92.9	88.5	81.5	95.5
	일부 지원필요	4.8	85.3	82.1	7.2	3.1	3.4	6.0	70.8	2.6
	상당 지원필요	2.2	7.5	8.7	2.2	1.8	1.5	2.9	4.3	1.0
	전적 지원필요	2.7	3.9	4.9	3.1	3.9	2.2	2.7	5.8	0.8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0.5	91.6	89.0	86.6	91.4	92.8	88.9	82.7	95.2
	일부 지원필요	4.9	80.6	74.8	7.8	2.9	3.8	5.9	7.7	3.1
	상당 지원필요	2.2	9.1	11.2	2.5	1.9	1.4	2.7	4.1	1.0
	전적 지원필요	2.5	2.2	2.9	3.1	3.7	2.0	2.5	5.5	0.7
보행	지원 불필요	80.5	84.2	75.5	78.9	86.1	86.0	75.4	70.7	86.4
	일부 지원필요	9.6	7.8	12.1	11.9	4.6	6.8	12.8	11.1	8.8
	상당 지원필요	5.1	3.9	6.7	3.8	3.5	3.4	6.7	8.1	3.3
	전적 지원필요	4.8	4.1	5.7	5.5	5.8	3.8	5.1	10.2	1.5
이동	지원 불필요	77.8	81.7	72.5	68.6	83.0	84.1	72.6	66.5	84.5
	일부 지원필요	8.7	7.5	10.4	14.0	5.2	6.5	10.9	10.3	70.8
	상당 지원필요	7.3	5.6	9.6	7.3	5.4	4.6	9.6	10.9	5.1
	전적 지원필요	6.2	5.2	7.5	10.1	6.5	4.8	6.8	12.3	2.5
배변	지원 불필요	90.5	91.0	89.8	73.4	88.9	93.7	89.7	81.7	95.8
	일부 지원필요	4.0	3.6	4.5	11.6	4.3	2.5	4.5	6.9	2.2
	상당 지원필요	2.6	2.5	2.6	6.9	3.1	1.5	2.9	5.1	1.0
	전적 지원필요	3.0	2.9	3.1	8.2	3.8	2.3	3.0	6.3	1.0
배뇨	지원 불필요	90.9	91.5	90.0	78.0	90.3	94.0	89.6	82.4	95.9
	일부 지원필요	3.8	3.4	4.5	10.7	3.3	2.4	4.6	6.8	2.1
	상당 지원필요	2.4	2.4	2.3	4.6	2.8	1.4	2.9	4.7	1.0
	전적 지원필요	2.9	2.7	3.2	6.7	3.6	2.2	3.0	6.1	0.9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성별에 따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주요 항목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7세 이하에서 '목욕하기'38.2%, '구강청결'49.3%, '옷 갈아 입기' 50.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83.4	93.8	63.4	89.6	77.3	59.5	56.7	29.3
	일부 지원필요	7.2	3.6	13.2	6.4	9.7	12.8	13.8	29.4
	상당 지원필요	3.5	0.7	6.5	1.9	6.8	12.6	9.9	11.7
	전적 지원필요	5.9	1.9	16.9	2.1	6.2	15.2	19.5	29.6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1.9	82.5	37.4	79.7	76.9	56.0	38.4	17.3
	일부 지원필요	11.9	9.4	17.1	7.4	13.3	15.7	22.2	22.6
	상당 지원필요	7.1	4.1	16.2	6.4	5.2	13.4	14.9	23.8
	전적 지원필요	9.1	4.0	29.3	6.5	4.6	14.9	24.5	36.3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4.7	73.0	27.7	72.5	69.6	55.7	40.8	19.6
	일부 지원필요	15.9	15.3	19.7	11.3	17.1	14.3	18.5	17.5
	상당 지원필요	9.2	6.5	17.7	9.1	6.7	14.6	16.9	23.0
	전적 지원필요	10.2	5.2	34.8	7.1	6.6	15.4	23.8	39.8
청소	지원 불필요	64.7	72.3	27.3	73.6	69.7	57.6	42.8	23.3
	일부 지원필요	15.6	14.7	19.0	11.4	16.9	12.3	20.1	14.8
	상당 지원필요	9.6	7.5	19.2	7.9	7.4	14.1	15.7	26.3
	전적 지원필요	10.1	5.4	34.5	7.1	6.1	16.0	21.4	35.6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4.7	72.7	26.8	74.6	69.2	56.4	41.8	19.6
	일부 지원필요	15.5	14.5	18.9	10.2	17.6	13.4	19.0	16.9
	상당 지원필요	9.4	7.1	19.4	8.1	6.6	14.1	15.7	26.3
	전적 지원필요	10.4	5.7	34.9	7.1	6.6	16.0	23.6	37.2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2.2	89.7	55.3	86.7	86.9	74.0	54.8	34.7
	일부 지원필요	8.8	6.4	16.1	7.2	8.7	13.1	17.0	12.9
	상당 지원필요	3.9	1.8	10.4	3.4	1.8	5.4	11.8	24.2
	전적 지원필요	5.1	2.2	18.2	2.7	2.7	7.5	16.5	28.1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3.5	85.7	43.9	81.9	78.8	61.2	27.4	9.5
	일부 지원필요	10.7	7.8	17.3	7.9	11.7	12.7	20.5	17.1
	상당 지원필요	6.5	3.0	11.3	5.5	4.9	11.2	20.1	23.8
	전적 지원필요	9.3	3.5	27.6	4.6	4.5	15.0	31.9	49.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6.9	75.8	3.0	75.0	74.3	57.9	39.2	15.7
	일부 지원필요	11.4	9.8	13.9	8.2	12.6	15.4	18.1	18.1
	상당 지원필요	8.9	7.2	16.6	7.7	7.0	12.0	13.6	18.8
	전적 지원필요	12.7	7.2	39.2	9.1	6.0	14.7	29.1	47.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7.5	92.8	96.8	86.2	99.0	95.2	92.9	84.4
	일부 지원필요	11.3	3.8	2.4	9.3	1.0	2.9	4.3	7.6
	상당 지원필요	6.1	2.2	0.8	2.2	-	1.9	1.2	4.2
	전적 지원필요	5.2	1.2	-	2.3	-	-	1.6	3.8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64.7	83.0	87.0	64.2	94.6	94.6	83.2	75.5
	일부 지원필요	16.4	7.1	9.0	16.6	2.4	2.6	9.3	10.7
	상당 지원필요	10.5	5.1	3.2	10.0	3.0	1.9	3.0	5.4
	전적 지원필요	8.5	4.9	0.8	9.2	-	0.9	4.5	8.4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56.3	69.3	77.5	51.5	80.9	80.3	66.9	70.1
	일부 지원필요	16.9	14.7	8.2	19.6	12.2	12.5	15.4	14.0
	상당 지원필요	16.4	8.8	10.9	13.4	6.4	4.6	11.1	5.6
	전적 지원필요	10.4	7.2	3.4	15.5	0.5	2.6	6.5	10.4
청소	지원 불필요	59.8	69.2	70.6	49.0	79.4	82.6	67.3	71.0
	일부 지원필요	16.3	14.0	16.6	19.6	14.2	10.9	17.7	13.9
	상당 지원필요	13.4	9.2	10.4	14.4	5.8	2.9	8.1	7.6
	전적 지원필요	10.5	7.6	2.4	17.0	0.5	3.6	6.9	7.4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58.4	68.5	72.7	48.5	79.4	82.5	68.4	70.3
	일부 지원필요	18.3	15.7	14.6	20.1	14.3	10.1	16.3	13.4
	상당 지원필요	12.8	8.6	10.4	15.5	5.8	3.9	10.4	7.0
	전적 지원필요	10.6	7.3	2.4	15.9	0.5	3.6	4.9	9.3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70.7	89.0	91.0	80.0	97.1	95.3	89.6	82.5
	일부 지원필요	13.7	6.3	6.6	11.5	2.9	2.5	6.2	11.3
	상당 지원필요	10.6	2.4	-	3.6	-	1.0	1.8	2.8
	전적 지원필요	5.0	2.4	2.4	4.9	-	1.2	2.4	3.4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57.8	85.0	91.1	76.7	94.1	93.9	87.3	72.6
	일부 지원필요	15.9	6.4	6.7	8.7	4.6	4.2	4.1	9.5
	상당 지원필요	14.0	5.0	-	9.6	1.3	0.7	4.8	7.5
	전적 지원필요	12.3	3.6	2.2	5.1	-	1.2	3.8	10.4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3.0	75.7	85.7	64.8	91.4	94.3	77.0	73.0
	일부 지원필요	15.9	9.5	8.0	11.5	4.7	-	7.0	7.4
	상당 지원필요	11.0	7.6	3.0	9.2	1.6	3.6	9.5	6.0
	전적 지원필요	10.1	7.4	3.2	14.5	2.2	2.1	6.5	13.6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83.4	84.4	81.9	44.3	77.8	88.7	83.3	67.7	92.7
	일부 지원필요	7.2	6.9	7.7	22.9	7.4	4.8	7.9	12.0	4.4
	상당 지원필요	3.5	3.5	3.5	7.4	5.4	2.3	3.6	7.1	1.3
	전적 지원필요	5.9	5.2	6.8	25.4	9.3	4.2	5.2	13.2	1.6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71.9	75.3	67.3	21.8	67.9	81.4	69.1	51.2	84.2
	일부 지원필요	11.9	10.1	14.4	23.9	12.0	8.2	13.7	16.8	9.0
	상당 지원필요	7.1	6.6	7.9	20.5	7.6	4.5	8.1	12.6	3.9
	전적 지원필요	9.1	8.1	10.4	33.8	12.5	5.9	9.0	19.4	2.9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4.7	64.7	64.6	–	61.8	73.4	59.5	45.5	75.4
	일부 지원필요	15.9	15.5	16.3	–	11.8	12.3	19.3	18.8	14.2
	상당 지원필요	9.2	9.8	8.4	–	11.4	6.7	10.4	14.7	6.2
	전적 지원필요	10.2	9.9	10.6	–	15.0	7.6	10.8	21.1	4.2
청소	지원 불필요	64.7	65.6	63.6	–	62.7	73.6	59.2	46.2	75.1
	일부 지원필요	15.6	15.0	16.3	–	12.6	12.2	18.6	18.4	13.9
	상당 지원필요	9.6	9.7	9.6	–	10.6	6.9	11.3	14.5	6.9
	전적 지원필요	10.1	9.7	10.5	–	14.1	7.3	10.9	20.8	4.0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4.7	65.2	64.1	–	62.2	73.8	59.2	45.6	75.5
	일부 지원필요	15.5	14.9	16.2	–	12.2	12.1	18.6	18.5	13.8
	상당 지원필요	9.4	9.9	8.6	–	10.6	6.5	11.0	14.3	6.6
	전적 지원필요	10.4	10.0	11.1	–	15.0	7.6	11.2	21.6	4.2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2.2	83.9	79.8	–	74.7	87.7	80.3	66.3	91.0
	일부 지원필요	8.8	7.7	10.4	–	9.3	5.8	10.7	14.1	5.9
	상당 지원필요	3.9	3.9	4.1	–	6.6	2.8	4.1	8.1	1.6
	전적 지원필요	5.1	4.6	5.7	–	9.4	3.7	4.9	11.6	1.4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3.5	76.0	70.1	16.5	61.1	83.6	72.8	52.7	85.9
	일부 지원필요	10.7	9.3	12.6	19.1	12.8	6.1	12.7	15.0	8.1
	상당 지원필요	6.5	6.4	6.8	20.0	10.7	4.3	6.2	12.0	3.3
	전적 지원필요	9.3	8.4	10.6	44.4	15.3	5.9	8.2	20.4	2.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6.9	71.4	60.8	18.4	65.8	77.5	62.6	47.4	78.6
	일부 지원필요	11.4	10.3	13.0	21.5	10.3	8.0	13.6	14.1	9.8
	상당 지원필요	8.9	7.4	11.0	16.9	7.8	6.3	10.6	13.2	6.4
	전적 지원필요	12.7	10.9	15.1	43.2	16.1	8.2	13.2	25.2	5.2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7세 이하의 자립정도가 낮음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이란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3) 만성질환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연도별	2016	82.2	82.0	94.2	78.1	82.0	76.3	66.5	63.6
	2017	84.3	83.4	95.1	79.1	85.1	76.7	69.6	66.6
	2018	84.3	83.8	94.4	79.7	86.1	77.2	66.9	65.9
	2019	86.4	85.9	95.2	81.8	88.5	78.7	69.7	67.8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49.9	52.1	62.8	49.3	58.0	39.1	13.7	1.4
	당뇨병	30.3	30.9	33.5	31.4	31.7	21.5	11.8	2.7
	정신 및 행동장애	41.6	34.4	57.3	32.5	42.4	41.0	48.8	63.7
	호흡기결핵	0.6	0.5	0.5	0.6	0.8	0.5	0.3	0.1
	심장질환	18.2	18.0	20.6	17.1	22.6	16.0	4.5	1.0
	대뇌혈관질환	17.3	12.8	61.2	13.3	17.4	30.6	4.5	0.3
	신경계질환	39.1	37.2	63.2	32.1	39.2	33.8	23.1	15.3
	악성신생물	9.3	9.1	8.2	9.4	10.8	15.0	2.6	0.4
	갑상선의 장애	11.6	11.8	8.5	11.3	12.0	11.6	9.7	3.6
	간의 질환	24.4	26.6	17.7	24.2	23.7	17.3	16.2	6.3
	만성신부전증	5.6	2.2	3.3	3.2	3.1	2.4	0.6	0.1
	관절염	41.6	49.8	30.9	40.0	50.4	26.1	16.1	3.2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 2019년 만성질환 유병률은 86.4%로 2017년에 비해 2.1%p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가 99.0%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지적장애가 69.7%로 가장 낮음
  - 만성질환유형 및 장애유형별로는 살펴보면, 고혈압 유병률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유형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6	83.4	98.7	95.7	87.0	95.2	64.1	93.9	98.0
	2017	99.0	98.7	95.2	87.3	95.3	63.6	94.6	98.2
	2018	99.4	93.2	85.6	86.9	82.3	66.2	94.1	98.1
	2019	99.4	99.0	97.2	89.3	96.0	70.6	95.2	99.1
만성 질환 유형별	고혈압	24.2	81.8	69.0	50.8	40.9	30.0	52.0	20.7
	당뇨병	25.5	60.8	38.4	29.6	42.3	18.1	32.4	15.4
	정신 및 행동장애	98.5	30.2	30.5	37.0	18.8	25.7	33.4	97.5
	호흡기결핵	0.5	1.2	0.8	4.4	0.8	0.3	0.7	0.3
	심장질환	8.1	41.3	86.8	30.7	13.1	9.0	19.7	8.0
	대뇌혈관질환	5.0	14.8	14.4	10.7	6.4	6.1	11.2	13.3
	신경계질환	61.4	39.3	32.2	35.7	24.4	26.6	34.8	46.3
	악성신생물	4.4	12.9	12.8	15.0	49.3	8.8	68.9	7.0
	갑상선의 장애	13.7	20.3	16.9	11.2	9.5	10.4	11.1	13.9
	간의 질환	25.3	31.9	24.9	23.3	83.0	22.7	25.3	23.3
	만성신부전증	1.0	90.0	8.6	2.8	7.1	0.8	6.9	1.2
	관절염	22.3	30.0	32.3	35.2	25.7	32.4	38.7	35.4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 만성질환유형 및 장애유형별로는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의 장애, 만선신부전증 유병률은 신장장애유형이 각각 81.8%, 608%, 20.3%, 90.0%로 가장 높고,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유병률은 정신장애유형이 각각 98.5%, 61.4%로 가장 높고, 호흡기결핵 유병률은 호흡기장애유형 4.4%로 가장 높고, 심장질환 및 대뇌혈관질환 유병률은 심장장애유형이 각각 86.8%, 14.8%로 가장 높고, 악성신생물 유병률은 장루요루유형이 68.9%로 가장 높고, 간의 질환 유병률은 간장애유형이 83.0%로 가장 높고, 관절염 유병률은 뇌전증장애유형이 35.4%로 가장 높음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0-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연도별	2016	82.2	77.8	88.1	72.6	94.3	81.3	82.7
	2017	84.3	80.1	89.8	81.3	95.0	84.1	84.4
	2018	84.3	80.4	89.4	74.6	94.9	83.9	84.5
	2019	86.4	83.0	91.0	77.5	95.8	85.5	87.0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49.9	46.0	55.1	31.3	69.2	42.3	54.4
	당뇨병	30.3	29.4	31.6	21.8	39.2	27.4	32.1
	정신 및 행동장애	41.6	35.5	49.7	34.1	49.4	49.8	36.7
	호흡기결핵	0.6	0.7	0.5	0.4	0.8	0.6	0.6
	심장질환	18.2	17.2	19.5	9.7	27.0	16.3	19.3
	대뇌혈관질환	17.3	15.9	19.1	9.2	25.7	18.5	16.6
	신경계질환	39.1	33.9	46.2	30.8	47.8	41.5	37.7
	악성신생물	9.3	9.9	8.4	6.5	12.2	7.2	10.5
	갑상선의 장애	11.6	8.6	15.6	10.5	12.7	11.0	12.0
	간의 질환	24.4	25.1	23.4	23.5	25.3	21.5	26.1
	만성신부전증	5.6	5.8	5.2	4.9	6.2	9.2	3.4
	관절염	41.6	33.7	52.2	28.7	55.0	30.3	48.4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393.

- 2019년 만성질환 유병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1.0%, 남성이 83.0%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5.8%, 0-64세 77.5%임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87.0%, 중증 85.5%임

2) 건강관리

(1) 스트레스 정도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0.0	16.1	14.6	7.8	18.8	6.3	19.9	18.0	19.3	6.1	10.7	19.9	23.9	13.1	22.5
	많이 느끼는 편	41.2	41.4	46.2	36.6	38.1	44.5	36.1	45.2	44.0	43.4	68.6	52.7	19.3	31.0	48.0	57.9
	조금 느끼는 편	34.5	37.4	26.6	34.4	38.5	20.9	36.0	23.9	21.8	31.5	24.7	24.3	35.9	30.1	30.8	13.9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1.6	11.1	14.3	15.6	15.8	21.6	11.1	16.2	5.7	0.7	12.3	24.9	15.0	8.2	5.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20.9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느끼는 편	40.1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보통	21.1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 · 요루 장애의 경우 '대단히 많이 느낌'의 응답이 10.0%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시각장애의 경우 '대단히 많이 느낌'의 응답이 2.1%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낮음

〈표 2-2-1〉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18.0	18.7	23.1	16.0	14.2	19.6	9.6	21.2	20.6	23.1	16.3	34.0	13.1	4.7	16.1	20.9
	느끼는 편	40.1	40.4	41.2	41.5	37.5	29.9	37.6	41.1	39.5	39.9	52.7	36.3	41.8	53.4	50..0	45.8
	보통	20.6	20.1	16.5	22.3	24.8	34.9	22.9	24.4	15.9	20.2	16.2	20.1	22.4	27.9	13.5	15.6
	느끼지 않는 편	18.4	18.5	14.9	18.0	19.4	14.9	25.2	9.7	19.1	15.1	14.8	9.6	19.5	14.1	20.4	16.9
	전혀 느끼지 않음	3.0	2.3	4.3	2.1	4.2	0.8	4.6	3.6	4.9	1.7	0.0	0.0	3.2	0.0	0.0	0.8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5.1	7.4	4.1	2.1	9.7	4.5	3.3	6.7	8.9	5.4	8.2	5.6	3.8	6.4	10.0	5.0
	많이 느끼는 편	28.3	36.1	27.8	25.4	28.7	24.2	27.8	29.1	35.7	31.8	39.0	24.7	39.1	30.1	33.9	28.6
	조금 느끼는 편	52.8	46.9	55.3	54.7	50.6	49.7	45.3	49.6	45.7	50.9	43.6	53.4	48.8	54.0	49.3	52.0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3.8	9.6	12.8	17.8	10.9	21.6	23.5	14.5	9.6	11.9	9.2	16.3	8.3	9.5	6.8	14.4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 · 요루 장애의 경우 '대단히 많이 느낌'의 응답이 10.0%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시각장애의 경우 '대단히 많이 느낌'의 응답이 2.1%로 다른 장애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낮음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11.5	11.5	11.4	8.2	11.4	12.8	10.5	17.5	9.5	11.4
	많이 느끼는 편	41.2	40.6	42.1	34.8	41.2	43.6	39.3	42.7	41.0	41.4
	조금 느끼는 편	34.5	34.5	34.4	39.5	34.6	32.8	35.8	26.8	37.0	34.7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2.8	13.4	12.0	17.5	12.8	10.8	14.4	13.0	12.4	12.6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20.9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20.7
	느끼는 편	40.1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40.0
	보통	21.1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21.2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4.6	-	12.9	13.6	17.0	14.1	15.7	15.1
	전혀 느끼지 않음	2.9	2.8	3.0	-	2.9	2.1	3.5	3.4	2.8	3.0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정도 '대단히 많이 느낌'과 '많이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37.1%로 경증 3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2-2〉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7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느낌	18.0	17.7	18.5	15.2	16.4	21.6	15.8	20.7	16.2	17.9
	느끼는 편	40.1	40.5	39.5	47.5	43.8	40.2	38.6	39.4	40.5	40.1
	보통	20.6	20.2	21.1	13.7	20.8	19.7	21.4	19.5	21.4	20.7
	느끼지 않는 편	18.4	18.7	18.1	21.5	16.2	15.8	21	17.3	19.2	18.5
	전혀 느끼지 않음	3.0	3.0	2.9	2.0	2.8	2.8	3.2	3.0	2.8	2.9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대단히 많이 느낌	5.0	5.0	5.0	4.9	4.5	5.5	4.8	6.5	4.1	-
	많이 느끼는 편	28.6	29.4	27.5	23.6	31.2	31.7	26.0	30.6	27.5	-
	조금 느끼는 편	52.0	51.7	52.4	48.8	50.6	51.8	52.6	49.1	53.7	-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4.4	13.8	15.1	22.8	13.7	11.1	16.6	13.8	14.7	-

주: 1) 무응답제외
2) 가중치 반영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정도 '대단히 많이 느낌'과 '많이 느끼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37.1%로 경증 3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흡연 및 금연 여부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2.4	27.1	13.0	24.0	17.0	4.7	9.6	1.6
	가끔 피움	1.1	1.3	1.0	1.0	1.0	–	1.0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19.7	29.5	22.9	24.2	42.6	4.5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51.9	56.6	52.1	57.9	52.7	84.9	98.4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7.7	20.9	9.0	20.9	12.6	11.5	12.1	–
	가끔 피움	2.5	2.6	2.2	3.1	1.8	1.3	1.5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19.7	26.9	22.0	17.9	18.6	1.7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56.9	61.9	54.1	67.7	68.7	84.7	100.0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피움	15.7	18.3	6.8	19.1	10.1	20.1	8.1	0.0
	가끔피움	2.6	2.9	2.3	2.2	2.5	0.6	2.0	2.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3.0	22.8	34.5	22.8	26.6	27.4	4.9	0.0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8.7	56.1	56.4	55.9	60.8	51.9	85.1	97.7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피움	9.9	12.3	6.6	11.5	5.8	10.3	2.9	1.3
	가끔피움	2.5	2.8	1.4	3.3	2.2	0.8	2.2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0	20.8	21.0	18.4	21.6	26.6	3.1	0.6
	담배를 피운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8.6	64.1	71.0	66.8	70.4	62.3	91.9	98.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에서 '매일 피움'의 비율은 2020년 9.9%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는다'의 비율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3〉 현재 흡연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38.7	9.2	-	3.8	39.3	12.8	6.9	26.3
	가끔 피움	0.9	1.1	-	-	-	-	-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1	34.8	28.2	68.8	15.7	28.8	35.7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2	54.9	71.8	27.4	45.0	58.3	57.3	69.5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9.7	10.2	-	3.1	6.1	16.3	10.8	8.6
	가끔 피움	2.6	4.5	-	0.7	3.6	-	1.3	7.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4.8	26.7	39.2	58.6	49.8	22.6	30.2	17.3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2.9	58.7	60.8	37.6	40.5	61.1	57.7	66.7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35.6	11.7	0.0	13.5	10.3	21.2	6.7	21.6
	가끔 피움	3.4	2.6	0.8	4.0	6.6	0.0	0.0	0.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9.9	25.8	39.7	45.4	37.0	29.6	37.6	9.0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1.1	60.0	59.5	37.1	46.1	49.2	55.7	69.4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8.9	6.9	2.9	2.0	6.1	12.3	8.2	15.0
	가끔 피움	3.2	2.9	3.1	3.1	1.5	-	0.7	1.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0.1	23.2	23.5	41.3	28.0	26.4	28.6	5.5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7.9	66.9	70.5	53.6	64.5	61.3	62.5	78.2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흡연여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흡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1.9%, 98.1%로 매우 높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2-4〉 현재 흡연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22.4	36.1	3.7	0.5	34.1	28.8	11.6	15.7	24.6	22.6
	가끔 피움	1.1	1.7	0.3	-	1.6	1.1	0.9	1.2	1.0	1.1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1.3	34.8	2.7	0.0	8.6	22.5	26.6	19.7	21.7	21.3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5.2	27.4	93.3	99.5	55.7	47.6	60.9	63.3	52.6	55.0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7.7	28.3	3.2	-	24.4	27.0	7.7	14.9	19.7	17.8
	가끔 피움	2.5	3.8	0.7	-	3.2	3.2	1.6	2.4	2.5	2.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7	32.5	2.3	-	9.8	22.1	22.2	17.4	20.8	19.5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0.2	35.4	93.8	100.0	62.6	47.7	68.6	65.3	57.1	60.3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일 피움	15.7	25.9	2.0	0.0	19.7	24.9	7.9	14.0	16.7	15.7
	가끔 피움	2.6	3.8	1.1	0.0	4.0	3.2	1.9	2.3	2.8	2.6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23.0	38.2	2.6	0.0	11.0	23.8	26.7	21.6	24.0	23.1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58.7	32.1	94.3	100.0	65.3	48.1	63.5	62.0	56.4	58.5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매일 피움	9.9	16.2	1.4	-	11.0	16.2	5.5	8.9	10.5	-
	가끔 피움	2.5	4.1	0.4	-	2.7	4.3	1.4	2.4	2.6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19.0	32.1	1.3	-	9.6	18.7	22.2	15.9	20.9	-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현재도 피우지 않음	68.6	47.6	96.9	100.0	76.7	60.8	70.9	72.9	66.1	-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흡연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흡연율은 1.8%로 남성의 흡연율 20.3%보다 매우 낮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64세 이하의 흡연율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흡연율이 13.1%로 중증의 흡연율인 1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5〉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28.1	32.2	18.7	27.7	23.2	4.7	34.0	-	27.3	20.1	-	5.2	36.7	30.8	17.4	32.9
2014	예	28.5	30.8	23.8	28.2	24.3	37.3	17.5	-	23.5	34	32.3	20.4	28.1	41.9	21.4	33.3
	아니오	71.5	69.2	76.2	71.8	75.7	62.7	82.5	-	76.5	66	67.7	79.6	71.9	58.1	78.6	66.7
2017	예	22.8	24.5	16.8	21.4	16.5	34.2	34.2	0.0	25.9	26.3	0.0	35.8	22.1	38.7	0.0	27.7
	아니오	77.2	75.5	83.2	78.6	83.5	65.8	65.8	100	74.1	73.7	100	64.2	77.9	61.3	100	72.3
2020	예	23.9	23.8	20.1	29.7	22.3	26.6	22.8	-	20.1	22.3	28.5	34.6	33.6	13.5	27.2	36.2
	아니오	76.1	76.2	79.9	70.3	77.7	73.4	77.2	100.0	79.9	77.7	71.5	65.4	66.4	86.5	72.8	63.8

주: 1) 국민건강통계(2017)에 의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57.7%임
2) 2011년 수치는 금연을 시도한 비율을 의미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2-2-6〉 최근 1년 동안 하루 이상 금연시도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28.1	28.2	25.9	-	44.1	29.2	18.4	22.9	29.7	28.5
2014	예	28.5	28.2	32.9	-	34.2	30.4	23.1	27.9	28.7	28.4
	아니오	71.5	71.8	67.1	-	65.8	69.6	76.9	72.1	71.3	71.6
2017	예	22.8	22.7	23.4	-	32.2	25.5	17.0	22.4	23.0	22.8
	아니오	77.2	77.3	76.6	-	67.8	74.5	83.0	77.6	77.0	77.2
2020	예	23.9	23.5	31.1	-	28.7	24.6	22.1	22.0	24.7	-
	아니오	76.1	76.5	68.9	-	71.3	75.4	77.9	78.0	75.3	-

주: 1) 국민건강통계(2017)에 의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57.7%임
2) 2011년 수치는 금연을 시도한 비율을 의미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금연 시도율은 23.9%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장애유형이 36.2%로 가장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금연 시도율이 31.1%로 남성의 금연 시도율 2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의 금연 시도율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는 경증의 금연 시도율이 24.7%로 중증의 금연시도율 22.0%보다 높게 나타남

(3) 음주 빈도 및 음주량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0.1	51.9	76.0	53.1	60.7	55.9	82.9	95.4
	한 달에 1번미만	6.8	7.0	4.9	7.6	8.9	15.1	3.8	4.6
	한 달에 1번정도	5.5	6.6	4.3	6.0	4.6	4.8	2.3	–
	한 달에 2-4번	10.7	13.1	6.4	13.7	9.5	1.3	5.9	–
	일주일에 2-3번	9.7	13.1	4.2	9.9	8.8	17.9	1.3	–
	일주일에 4번이상	7.1	8.4	4.2	9.7	7.5	5.0	3.8	–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9	54.5	82.7	57.5	65.7	69.9	85.3	100.0
	한 달에 1번미만	4.8	5.1	4.0	5.4	6.0	3.9	4.8	–
	한 달에 1번정도	4.9	5.9	3.2	4.6	4.7	4.8	3.4	–
	한 달에 2-4번	9.7	12.6	4.6	11.3	7.4	13.6	3.0	–
	일주일에 2-3번	10.6	14.4	2.4	13.4	10.1	4.4	1.9	–
	일주일에 4번이상	6.1	7.5	3.2	7.7	6.1	3.4	1.6	–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5	54.7	81.7	57.6	65.1	60.4	80.8	95.3
	한 달에 1번미만	6.7	7.6	4.7	5.6	6.3	6.0	5.1	0.0
	한 달에 1번정도	5.2	6.0	2.7	6.8	4.6	4.1	3.8	0.0
	한 달에 2-4번	9.4	11.8	4.2	12.2	9.6	16.7	4.9	4.7
	일주일에 2-3번	9.5	12.4	4.2	12.4	7.9	11.5	3.6	0.0
	일주일에 4번이상	5.7	7.6	2.5	5.4	6.5	1.2	1.8	0.0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4.6	66.4	86.1	67.7	78.4	77.9	91.8	97.4
	한 달에 1번미만	5.9	7.3	3.8	6.1	6.3	5.6	2.5	0.6
	한 달에 1번정도	4.8	5.9	2.1	6.8	4.5	3.3	2.0	–
	한 달에 2-4번	7.3	10.0	3.5	10.0	6.0	6.3	1.4	–
	일주일에 2-3번	5.5	7.7	3.2	6.9	3.7	5.3	1.6	1.9
	일주일에 4번이상	1.9	2.7	1.3	2.4	1.1	1.6	0.7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에서 '전혀 마시지 않음'은 2020년 74.6%로 높아짐
• 술을 마시는 장애인의 음주빈도를 살펴보면, 주로 '한 달에 2-4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3.5	82.4	81.0	83.6	87.2	84.5	66.6	78.1
	한 달에 1번미만	7.8	6.6	5.4	6.8	1.5	-	7.5	5.6
	한 달에 1번정도	4.0	2.5	7.5	6.1	-	-	3.5	6.0
	한 달에 2-4번	5.2	5.2	6.1	-	6.9	15.5	1.3	7.4
	일주일에 2-3번	2.8	3.0	-	2.1	4.5	-	18.3	2.9
	일주일에 4번이상	6.7	0.3	-	1.4		-	2.7	-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9.8	91.1	77.2	85.7	84.4	87.9	76.5	94.8
	한 달에 1번미만	2.5	1.9	8.3	2.1	2.6	-	4.6	-
	한 달에 1번정도	3.2	5.0	3.0	3.9	2.6	-	-	-
	한 달에 2-4번	5.8	7.5	7.5	2.1	1.6	-	5.6	-
	일주일에 2-3번	2.4	3.9	4.0	6.3	8.9	-	6.6	0.8
	일주일에 4번이상	6.3	0.7	-	-	-	12.1	6.7	4.4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79.0	80.6	82.2	77.4	81.6	32.1	67.5	79.9
	한 달에 1번미만	5.2	8.0	3.6	11.1	8.5	18.4	7.5	5.7
	한 달에 1번정도	4.2	2.8	12.0	4.0	4.6	20.3	8.7	5.3
	한 달에 2-4번	2.4	4.3	0.0	4.0	0.0	23.0	7.2	0.0
	일주일에 2-3번	5.3	3.8	2.2	0.9	0.2	6.3	5.8	1.6
	일주일에 4번이상	3.9	0.6	0.0	2.5	5.1	0.0	3.3	7.5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85.1	92.5	93.0	91.7	90.3	68.2	87.9	85.1
	한 달에 1번미만	3.6	3.1	2.9	1.1	3.5	5.8	3.6	4.8
	한 달에 1번정도	4.4	1.9	1.7	1.3	3.3	8.3	0.9	4.7
	한 달에 2-4번	3.2	1.4	0.8	2.4	1.1	7.9	4.0	2.4
	일주일에 2-3번	2.9	0.7	1.6	2.4	1.4	8.0	1.5	3.1
	일주일에 4번이상	0.9	0.5	-	1.0	0.4	1.8	2.0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은 자폐성장애 97.4%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66.4%로 가장 낮음

〈표 2-2-8〉 최근 1년 동안 음주 빈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0.1	46.2	79.2	97.2	50.9	50.5	72.4	76.9	54.9	59.7
	한 달에 1번미만	6.8	6.0	8.0	0.0	7.7	7.8	5.7	5.4	7.3	6.8
	한 달에 1번정도	5.5	6.1	4.8	0.0	5.6	7.2	4.1	3.8	6.0	5.5
	한 달에 2-4번	10.7	14.9	4.9	2.8	16.7	12.6	6.3	5.1	12.4	10.8
	일주일에 2-3번	9.7	15.3	2.1	0.0	13.3	13.2	4.9	5.1	11.3	9.9
	일주일에 4번이상	7.1	11.5	1.1	0.0	5.8	8.6	6.5	3.9	8.1	7.2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9	49.9	82.9	100.0	57.7	51.8	75.3	74.2	56.4	63.3
	한 달에 1번미만	4.8	5.0	4.6	-	6.0	5.0	4.4	3.5	5.6	4.8
	한 달에 1번정도	4.9	5.7	3.9	-	6.2	6.3	3.4	4.6	5.2	5.0
	한 달에 2-4번	9.7	13.1	5.2	-	13.7	13.5	5.3	6.5	12.1	10.0
	일주일에 2-3번	10.6	16.5	2.5	-	12.9	15.1	6.2	6.9	13.3	10.9
	일주일에 4번이상	6.1	9.9	0.9	-	3.5	8.3	5.4	4.2	7.3	6.1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마시지 않음	63.5	50.9	80.4	100	59.8	50.2	73.7	74.6	56.2	63.2
	한 달에 1번미만	6.7	5.9	7.6	0.0	6.6	7.3	6.4	5.3	7.6	6.7
	한 달에 1번정도	5.2	6.0	4.1	0.0	6.3	7.0	3.6	4.3	5.8	5.2
	한 달에 2-4번	9.4	13.1	4.6	0.0	11.4	13.6	5.9	5.8	11.9	9.6
	일주일에 2-3번	9.5	14.8	2.4	0.0	12.5	14.2	5.3	6.7	11.5	9.7
	일주일에 4번이상	5.7	9.3	1.0	0.0	3.5	7.7	5.0	3.4	7.0	5.6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전혀 마시지 않음	74.6	62.1	91.4	98.2	69.7	64.2	82.3	83.4	69.5	-
	한 달에 1번미만	5.9	8.1	3.0	-	9.7	7.1	4.3	4.3	6.9	-
	한 달에 1번정도	4.8	6.8	2.2	1.4	6.2	6.9	3.1	2.9	5.9	-
	한 달에 2-4번	7.3	11.3	1.9	-	7.7	10.2	5.4	4.3	9.0	-
	일주일에 2-3번	5.5	8.6	1.3	0.4	5.7	9.2	3.0	4.1	6.3	-
	일주일에 4번이상	1.9	3.1	0.2	-	1.0	2.4	1.8	1.1	2.4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최근 1년 동안 음주빈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음주율은 37.9%로 여성의 음주율 8.6%보다 매우 높음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45-64세 이하의 음주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음주율이 30.6%로 중증의 음주율 16.6%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9〉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5	26.0	41.8	28.2	34.6	11.9	51.9	100.0	55.9	61.1	64.0	79.6	54.8	88.7	58.2	38.7
	3-4잔	23.1	22.1	23.8	25.1	26.1	57.3	16.3	–	25.3	12.2	10.3	5.5	45.2		29.1	2.7
	5-6잔	11.2	12.1	7.2	12.5	10.7	9.2	4.3	–	4.8	15.6	25.8	–	–	–	5.6	–
	7-9잔	24.2	27.2	17.7	25.8	18.6	12.6	15.4	–	9.8	9.2	–	14.9	–	11.3	5.6	47.9
	10잔 이상	11.1	12.6	9.6	8.3	10.0	9.0	12.1	–	4.2	1.9	–		–	–	1.5	10.7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5.8	49.8	25.8	44.7	31.6	49.8	–	33.9	23.4	50.1	49.3	84.5	–	39.9	85.2
	3-4잔	25.1	26.6	15.0	21.8	23.1	36.0	28.1	–	24.2	29.2	35.7	18.2	–	–	38.5	14.8
	5-6잔	14.3	14.1	13.9	18.5	8.7	13.3	7.7	–	28.4	25.7	–	5.0	–	–	–	–
	7-9잔	19.7	20.6	16.7	24.0	17.1	19.2	10.7	–	4.2	16.1	14.2	12.7	15.5	100.0	21.6	–
	10잔 이상	10.8	12.9	4.6	10.0	6.5	–	3.9	–	9.4	5.6	–	14.8	–	–	–	–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2.1	28.5	45.9	23.7	38.2	49.3	52.6	100.0	40.3	51.5	82.1	78.0	64.6	16.7	53.1	28.4
	3-4잔	22.9	22.8	23.0	23.5	27.7	10.7	16.9	0.0	27.3	16.3	0.0	8.0	22.7	25.0	12.0	17.9
	5-6잔	12.7	11.5	18.2	15.3	14.8	17.7	10.0	0.0	7.6	24.5	17.9	8.0	3.1	8.5	5.1	8.2
	7-9잔	22.4	26.0	8.7	27.1	12.8	17.9	10.9	0.0	16.4	5.8	0.0	0.0	0.0	49.7	20.3	37.3
	10잔이상	9.8	11.1	4.3	10.4	6.5	4.4	9.5	0.0	8.4	2.0	0.0	6.1	9.6	0.0	9.6	8.2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2	27.3	36.0	24.0	41.6	30.4	45.2	24.6	35.0	53.2	64.5	40.3	71.7	29.5	22.3	34.0
	3-4잔	35.2	34.9	32.6	39.2	34.9	46.3	25.8	75.4	29.9	40.6	35.5	47.9	25.0	41.2	38.3	40.0
	5-6잔	19.9	22.4	14.6	17.9	13.6	17.6	17.3	–	21.6	6.2	–	–	–	9.1	33.5	9.3
	7-9잔	11.1	11.7	14.5	13.6	8.3	3.3	6.5	–	4.3	–	–	11.7	3.3	15.8	1.0	3.3
	10잔이상	3.6	3.6	2.3	5.5	1.5	2.4	5.2	–	9.3	–	–	–	–	4.4	4.9	13.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이 3-4잔의 경우, 35.2%로 가장 높았으며 10잔 이상은 3.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0잔 이상의 음주량은 뇌전증장애 13.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음주량이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2-10〉 최근 1년 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5	21.0	64.1	100.0	21.3	25.0	47.8	42.0	28.6	30.3
	3-4잔	23.1	23.7	20.7	0.0	20.2	23.6	24.5	21.2	23.0	22.8
	5-6잔	11.2	12.6	6.2	0.0	14.3	12.0	7.2	12.4	11.0	11.2
	7-9잔	24.2	28.9	7.5	0.0	26.4	28.0	15.4	13.7	26.1	24.5
	10잔 이상	11.1	13.8	1.5	0.0	17.9	11.4	5.0	10.7	11.3	11.2
20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0.0	22.5	60.3	–	23.5	20.1	51.0	33.9	28.4	29.8
	3-4잔	25.1	25.3	24.4	–	22.8	26.3	24.6	27.4	24.4	25.2
	5-6잔	14.3	15.9	7.9	–	16.1	17.4	7.8	12.8	14.5	14.1
	7-9잔	19.7	23.1	6.3	–	22.3	22.9	12.6	18.4	20.8	20.1
	10잔 이상	10.8	13.3	1.1	–	15.3	13.2	3.9	7.6	11.9	10.8
20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잔	32.1	23.8	60.0	–	23.8	24.4	47.4	38.4	29.9	32.1
	3-4잔	22.9	22.6	23.8	–	17.7	23.9	23.8	23.3	22.9	23.0
	5-6잔	12.7	14.6	6.6	–	15.0	14.5	9.1	11.5	13.0	12.6
	7-9잔	22.4	27.3	6.1	–	28.0	26.9	13.4	18.7	23.8	22.5
	10잔이상	9.8	11.6	3.5	–	15.5	10.3	6.3	8.1	10.4	9.8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2잔	30.2	26.6	51.8	79.6	25.6	23.1	42.1	34.6	28.8	–
	3-4잔	35.2	35.9	30.9	20.4	34.3	36.5	33.8	31.4	36.4	–
	5-6잔	19.9	21.0	13.0	–	24.1	22.0	15.2	20.6	19.6	–
	7-9잔	11.1	12.3	3.8	–	10.0	13.9	7.7	7.8	12.1	–
	10잔이상	3.6	4.2	0.5	–	5.9	4.6	1.3	5.4	3.1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보통 한 번의 평균 음주량이 3-4잔의 경우, 35.2%로 가장 높았으며 10잔 이상은 3.6%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4.2%로 여성 0.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5.9%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10잔 이상 음주량이 5.4%로 경증 3.1%보다 높게 나타남

(4) 생활체육 참여형태

〈표 2-2-11〉 생활체육 참여형태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연도별	2008	100.0	6.3	55.5	24.3	13.9
	2009	100.0	7.0	62.8	19.5	10.7
	2010	100.0	8.6	56.0	22.9	12.3
	2011	100.0	9.6	60.8	15.9	13.7
	2012	100.0	10.6	49.0	25.7	14.7
	2013	100.0	12.3	57.0	21.8	8.9
	2014	100.0	14.1	51.7	20.5	13.7
	2015	100.0	15.8	54.6	16.5	13.1
	2016	100.0	17.7	57.1	13.2	12.0
	2017	100.0	20.1	55.8	12.8	11.3
	2018	100.0	23.8	52.5	12.3	11.4
	2019	100.0	24.9	52.1	12.1	10.9
	2020	100.0	24.2	25.2	35.1	15.5
장애 유형별	지체	100.0	24.6	25.6	36.0	13.8
	시각	100.0	30.8	24.7	32.5	11.9
	청각·언어	100.0	26.4	23.1	35.9	14.5
	지적·자폐	100.0	24.8	22.7	35.5	17.1
	뇌병변	100.0	12.3	26.1	37.2	24.5
	기타	100.0	23.9	27.0	31.6	17.4

주: 1) 15개 장애유형을 연구편의상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2) 참여형태 구분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미실시	-	-	-	-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미실시	-	-	-	-

3) 2020년 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 비율 : 2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20).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p.80-81

- 장애인 생활체육의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08년 6.3%, 2009년 7.0%, 2010년 8.6%, 2011년 9.6%, 2012년 10.6%, 2013년 12.3%, 2014년 14.1%, 2015년 15.8%, 2016년 17.7%, 2017년 20.1%, 2018년 23.8%, 2019년 24.9%, 2020년 24.2%로 2020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시각 장애에서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생활체육'이란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함**

3) 보건의료이용

(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연도별	2012	63.3
	2013	59.6
	2014	65.6
	2015	63.5
	2016	64.8
	2017	64.9
	2018	63.7
	2019	64.6
성별	남성	66.5
	여성	61.7
연령별	19세 이하	90.4
	20-44세	58.7
	45-64세	67.9
	65세 이상	63.2
장애기간	10년 미만	60.1
	10년-19년	66.5
	20년 이상	65.2
장애정도	중증	52.1
	경증	71.0

구분		수검률
장애유형	지체	72.2
	뇌병변	44.0
	시각	69.0
	청각	65.1
	언어	58.0
	지적	51.2
	자폐성	42.9
	정신	44.3
	신장	44.2
	심장	57.8
	호흡기	55.2
	간	61.0
	안면	74.3
	장루 · 요루	52.0
	뇌전증	56.2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4) 2012년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됨
5)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각년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4.6%로 전년 대비 0.9%p 증감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8%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72.2%로 수검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폐성장애 42.9%로 낮게 나타남

일반건강검진(출처: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

- 실시범위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9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2년에 1회

- 주요항목

•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 -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연도별	2013	37.4
	2014	41.1
	2015	42.4
	2016	43.6
	2017	43.6
	2018	45.1
	2019	45.5
성별	남성	47.0
	여성	43.7
연령별	20-44세	44.3
	45-64세	49.2
	65세 이상	43.1
장애기간	10년 미만	42.7
	10년-19년	46.9
	20년 이상	45.5
장애정도	중증	36.2
	경증	50.1
장애유형	지체	51.3
	뇌병변	30.0
	시각	48.0
	청각	44.3
	언어	38.8
	지적	32.1
	자폐성	6.7
	정신	35.0
	신장	34.1
	심장	42.8
	호흡기	41.2
	간	46.3
	안면	53.2
	장루 · 요루	34.2
	뇌전증	45.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구4~6급)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각년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45.5%로 전년도에 비해 0.4%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45-64세 연령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1.9%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안면 53.2%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반면, 자폐성 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암검진(출처: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

검진종류	검진대상	검진항목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전체	-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간지로한자 등) 중 만40세 이상인 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 간초음파검사, 혈청아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	- 유방촬영(양측)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	- 자궁경부세포검사

〈표 2-3-3〉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분		수검률	구분		수검률
연도별	2012	19.1	장애유형	지체	23.8
	2013	18.5		뇌병변	13.6
	2014	21.3		시각	22.1
	2015	21.5		청각	19.5
	2016	22.2		언어	20.9
	2017	22.0		지적	18.7
	2018	20.1		자폐성	19.1
	2019	21.1		정신	14.9
성별	남성	23.2		신장	15.1
	여성	18.0		심장	22.2
연령별	20-44세	26.6		호흡기	17.7
	45-64세	24.2		간	22.1
	65세 이상	16.2		안면	29.7
장애기간	10년 미만	19.0		장루 · 요루	15.5
	10년-19년	21.7		뇌전증	20.8
	20년 이상	22.3			
장애정도	중증	17.3			
	경증	23.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각년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1.1%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5.2%p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4.7%p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안면 29.7%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반면, 뇌병변 13.6%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임

(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표 2-3-4〉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단위: 명, 일, 원)

구분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회당 진료비
전체		2,537,439	152,377,661	58.5	89,788.1
성별	남성	1,452,390	78,223,197	52.0	94,462.8
	여성	1,085,049	74,154,464	67.4	84,856.8
연령별	0-19세	88,253	3,355,898	37.0	100,745.2
	20-44세	304,567	10,964,222	33.5	96,961.0
	45-64세	900,760	48,886,004	52.4	93,700.8
	65세 이상	1,243,859	89,171,537	71.1	86,348.7
장애기간	10년 미만	752,852	56,283,196	73.6	110,407.6
	10년-19년	1,373,871	78,006,472	55.3	78,322.9
	20년 이상	410,716	18,087,993	42.0	75,072.2
장애정도	중증	944,285	73,633,492	75.3	102,967.0
	경증	1,593,154	78,744,169	48.4	77,464.4
장애유형	지체	1,185,517	56,853,757	46.7	74,699.7
	뇌병변	245,246	26,013,248	104.2	104,651.7
	시각	244,692	10,536,560	41.8	71,847.6
	청각	369,376	19,272,246	51.4	69,001.1
	언어	20,764	1,225,286	57.4	91,020.5
	지적	197,909	8,508,682	40.1	62,384.8
	자폐성	26,828	652,001	22.8	49,219.9
	정신	101,811	13,225,603	128.8	58,456.3
	신장	91,248	13,349,980	146.2	199,303.6
	심장	5,158	256,036	49.5	216,111.1
	호흡기	11,256	648,723	57.3	136,757.9
	간	13,060	555,612	42.5	409,509.9
	안면	2,538	81,790	30.7	69,250.6
	장루 · 요루	15,031	827,733	54.7	135,332.1
	뇌전증	7,005	370,404	52.6	75,758.3
의료기관	입원	776,839	57,564,706	22.1	140,609.3
	외래	2,481,783	94,812,955	36.4	58,932.5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4) 입내원일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5)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6) 1회당 진료비 = 총진료비/입내원일수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 진료실 이용자 수는 총 2,537,439명이고, 입내원일수는 총 152,377,661일임. 이에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8.5일이며, 1회당 진료비는 89,788.1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4일 더 오래 입내원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회당 9,606원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65세 이상이 71.0일로 가장 높고, 1회당 진료비는 0-19세가 100,745.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와 1회당 진료비가 더 크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신장애인이 146.2일로 가장 높게 나타남. 1회당 진료비는 간 장애가 409,509.9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3-5〉 장애인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진료실인원 (명)	총진료비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원)	본인부담금 (원)
전체		2,538,341	16,053,215,192	2,624,587,972	6,324,294	1,033,978
성별	남성	1,453,087	8,649,481,246	1,362,331,208	5,952,487	937,543
	여성	1,085,254	7,403,733,946	1,262,256,763	6,822,121	1,163,098
연령별	0-19세	88,265	369,077,870	49,928,285	4,181,475	565,663
	20-44세	304,761	1,188,008,857	154,998,772	3,898,166	508,591
	45-64세	901,256	5,253,045,077	699,662,048	5,828,583	776,319
	65세 이상	1,244,059	9,243,083,388	1,719,998,866	7,429,779	1,382,570
장애기간	10년 미만	752,983	6,972,465,765	1,093,117,231	9,259,792	1,451,716
	10년-19년	1,374,395	7,404,090,875	1,263,749,147	5,387,164	919,495
	20년 이상	410,963	1,676,658,552	267,721,594	4,079,828	651,449
장애정도	중증	944,619	8,317,908,646	1,088,332,998	8,805,570	1,152,140
	경증	1,593,722	7,735,306,546	1,536,254,973	4,853,611	963,942
장애유형	지체	1,186,078	5,366,404,938	1,072,647,136	4,524,496	904,365
	뇌병변	245,323	3,004,884,487	530,281,795	12,248,686	2,161,566
	시각	244,769	988,809,810	192,274,918	4,039,767	785,536
	청각	369,439	1,715,208,234	354,960,862	4,642,737	960,810
	언어	20,771	129,795,448	21,852,943	6,248,878	1,052,089
	지적	198,013	623,790,743	68,244,040	3,150,251	344,644
	자폐성	26,831	41,106,383	9,515,973	1,532,048	354,663
	정신	101,816	828,648,201	53,118,776	8,138,684	521,713
	신장	91,248	2,749,879,474	247,640,348	30,136,326	2,713,926
	심장	5,158	67,534,791	7,669,121	13,093,213	1,486,840
	호흡기	11,256	108,432,049	17,269,951	9,633,267	1,534,288
	간	13,060	252,425,946	25,071,386	19,328,174	1,919,708
	안면	2,540	7,160,122	1,199,080	2,818,946	472,079
	장루·요루	15,033	127,103,093	18,362,815	8,454,939	1,221,500
	뇌전증	7,006	42,031,475	4,478,828	5,999,354	639,285
의료기관	입원	776,839	8,094,132,638	1,170,358,616	10,419,318	1,506,565
	외래	2,481,783	5,587,560,433	954,747,980	2,251,430	384,702
	약국	2,374,978	2,371,522,121	499,481,376	998,545	210,31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의료급여대상자, 직장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가입자 및 기타 보험료 결측 제외
3)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를 말함
4) 진료비는 용야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를 말함
5) 본인부담금은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함
6)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 총 진료비/진료실인원
7)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진료실인원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6조 이상이며, 그 중 본인부담금 총액인 약 2조 6천억여 원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6,324,294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033,978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225,555원 더 부담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382,57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큼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증증장애인이 1,152,140원으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음
  - 장애유형별로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신장 2,713,926원으로 가장 높고, 지적 344,644원으로 가장 낮음

(3)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표 2-3-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0.3	26.7	29.6	9.1	11.7	5.3	5.6	–	7.6	4.7	11.5	2.5	4.2	21.9	8.5	3.3
	작업치료	1.0	0.2	4.0	0.4	–	–	2.4	12.1	3.1	–	–	–	–	11.2	–	–
	언어치료	1.5	0.1	2.1	0.1	0.6	11.0	12.5	45.3	0.3	–	–	–	–	–	–	–
	음악치료	0.9	–	0.9	0.1	0.3	2.4	5.5	22.1	6.4	–	–	–	–	–	–	–
	놀이치료	0.5	–	0.6	–	0.1	5.2	3.9	11.9		–	–	–	–	–	–	–
	미술치료	1.1	–	1.6	0.1	0.3	5.1	7.9	23.6	4.6	–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5	0.1	–	7.5	5.8	8.8	8.8	–	–	–	–	11.2	–	11.2
	기타	1.2	0.5	1.9	0.4	0.1	5.2	6.4	23.1	2.3	–	–	–	–	–	–	–
2014	물리치료	22.4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16.8	20.6
	작업치료	1.6	0.2	7.4	–	0.2	–	5.1	14.1	4.6	–	–	4.6	–	–	–	4.2
	언어치료	1.7	–	3.5	0.2	1.7	5.3	9.9	42.6	–	–	–	–	–	–	–	4.0
	음악치료	1.0	–	0.6	–	0.4	–	7.8	17.4	6.9	–	–	–	–	–	–	–
	놀이치료	0.7	–	0..9	–	0.4	–	3.5	14.5	4.6	–	–	–	–	–	–	–
	미술치료	1.1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
	심리행동치료	1.1	0.2	0.7	0.2	–	–	4.8	23.1	6.6	–	1.4	–	–	–	–	3.3
	기타	1.1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
2017	물리치료	22.9	29.6	34.2	14.3	16.0	4.1	6.0	2.3	8.9	10.2	14.5	18.1	5.8	26.1	4.2	3.4
	작업치료	1.5	0.4	6.0	0.5	0.0	0.0	5.1	13.6	1.1	0.0	0.0	0.0	0.0	0.0	0.0	0.0
	언어치료	2.1	0.1	3.1	0.2	0.5	26.3	13.7	41.0	0.0	0.0	0.0	0.0	0.0	0.0	0.0	0.0
	음악치료	0.9	0.0	1.0	0.0	0.0	6.7	6.6	15.2	2.5	0.0	0.0	0.0	0.0	0.0	0.0	0.0
	놀이치료	0.9	0.1	0.7	0.1	0.0	13.1	5.2	19.2	2.3	0.0	0.0	0.0	0.0	0.0	0.0	0.0
	미술치료	0.9	0.0	0.6	0.2	0.0	7.4	6.6	17.0	2.9	0.0	0.0	0.0	0.0	0.0	0.0	0.0
	심리행동치료	1.0	0.1	0.6	0.0	0.0	4.2	8.2	17.7	2.9	0.0	0.0	0.0	0.0	0.0	0.0	0.0
	기타	1.4	0.3	3.8	0.2	0.0	4.1	7.2	19.4	2.0	0.0	0.0	0.0	0.0	0.0	0.0	0.0
2020	물리치료	20.1	29.7	9.2	11.8	7.9	7.1	0.7	4.9	6.9	9.9	11.4	5.7	13.8	5.6	9.8	28.9
	작업치료	1.6	7.6	0.0	0.2	3.8	3.4	12.6	0.4	0.7	0.0	0.4	0.0	0.0	0.0	2.9	0.7
	언어치료	2.0	2.9	0.0	0.9	21.6	11.5	37.5	0.0	0.0	0.0	0.0	0.0	0.9	0.0	3.2	0.1
	음악치료	0.6	0.6	0.1	0.3	1.0	3.7	11.2	0.5	0.0	0.0	0.0	0.0	0.0	0.0	1.6	0.0
	놀이치료	0.7	0.6	0.1	0.2	6.6	4.6	16.7	0.1	0.0	0.0	0.0	0.0	0.0	0.0	0.0	0.0
	미술치료	0.7	0.4	0.1	0.2	3.0	3.7	18.6	0.5	0.0	0.0	0.0	0.0	0.0	0.0	0.9	0.0
	심리행동치료	1.0	0.5	0.2	0.0	1.9	4.3	16.8	6.8	0.4	0.0	0.0	1.2	0.0	0.0	1.7	0.2
	기타	0.6	0.8	0.0	0.3	3.3	1.9	14.1	1.0	0.0	0.0	0.0	0.0	0.0	0.0	0.8	0.3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가 20.1%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지적장애를 제외하고 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3-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0.3	15.8	26.4	14.1	11.2	17.4	27.8	15.6	21.6	20.2
	작업치료	1.0	0.9	1.0	9.9	1.7	0.5	0.4	3.2	0.3	1.0
	언어치료	1.5	1.7	1.3	36.8	0.9	0.2	0.0	4.7	0.6	1.5
	음악치료	0.9	0.9	0.9	14.0	1.9	0.0	0.1	3.0	0.3	0.9
	놀이치료	0.5	0.5	0.4	9.3	0.6	0.1	0.1	1.6	0.2	0.5
	미술치료	1.1	1.1	1.0	20.6	1.8	0.1	0.1	3.2	0.5	1.1
	심리행동치료	1.0	1.1	0.8	13.7	1.9	0.4	0.0	2.1	0.7	1.0
	기타	1.2	1.2	1.2	15.6	1.3	0.6	0.4	2.9	0.7	1.2
2014	물리치료	22.4	16.2	30.8	16.8	7.1	19	31.4	16.8	25.7	22.2
	작업치료	1.6	1.9	1.2	24.3	2.3	0.8	0.6	9.7	0.3	1.6
	언어치료	1.7	1.9	1.3	45.9	1.4	0.2	0.2	3.9	0.2	1.6
	음악치료	1	1.1	0.9	14.5	2.9	0.4	–	2.7	–	1.1
	놀이치료	0.7	0.8	0.5	9.2	1.6	0.3	0.1	1.7	–	0.7
	미술치료	1.1	1.2	0.9	20.4	2.4	0.2	0.1	1.1	0.1	1.1
	심리행동치료	1	1.5	0.3	16.6	1.7	0.7	–	2.2	0.2	1
	기타	1.1	1.4	0.7	16.9	2	0.5	0.3	2.5	0.2	1.1
2017	물리치료	22.9	16.0	32.1	17.8	10.1	17.7	31.1	17.5	26.2	22.9
	작업치료	1.5	1.3	1.8	20.0	2.0	0.9	0.4	3.4	0.3	1.5
	언어치료	2.1	2.5	1.6	52.0	2.3	0.2	0.1	5.3	0.1	2.1
	음악치료	0.9	1.0	0.7	15.7	2.4	0.1	0.0	2.4	0.0	0.9
	놀이치료	0.9	1.1	0.7	17.7	1.7	0.1	0.1	2.2	0.1	0.9
	미술치료	0.9	0.9	0.9	15.7	2.7	0.1	0.0	2.4	0.0	0.9
	심리행동치료	1.0	1.1	1.0	18.4	2.3	0.3	0.0	2.5	0.1	1.0
	기타	1.4	1.4	1.5	21.8	2.2	0.7	0.3	3.0	0.4	1.4
2020	물리치료	20.1	15.9	25.9	16.6	10.1	19.0	23.7	15.2	23.1	–
	작업치료	1.6	1.5	1.7	20.9	2.0	1.0	0.7	3.1	0.6	–
	언어치료	2.0	2.5	1.3	55.6	1.3	0.4	0.1	4.7	0.4	–
	음악치료	0.6	0.6	0.6	13.8	0.7	0.1	0.1	1.4	0.1	–
	놀이치료	0.7	15.9	0.6	20.9	0.5	0.0	0.1	1.7	0.2	–
	미술치료	0.7	0.8	0.4	17.4	0.5	0.1	0.1	1.5	0.1	–
	심리행동치료	1.0	1.1	0.9	12.7	1.8	0.9	0.2	2.3	0.2	–
	기타	0.6	0.6	0.6	11.2	0.5	0.4	0.2	1.2	0.3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5.9%로 남성 15.9% 보다 월등히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23.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17세 이하는 언어치료 비율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3.1%로 중증에 17.5%에 비해 높은 반면,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중증이 경증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2.4	2.2	3.2	1.9	2.0	2.1	1.6	–	2.5	1.7	2.9	2.2	2.0	3.5	3.0	1.9
	작업치료	3.4	2.5	2.8	1.0	–	–	7.5	2.3	3.2	–	–	–	–	1.0	–	–
	언어치료	1.8	2.0	2.5	1.0	1.6	1.7	1.7	1.8	2.0	–	–	–	–	–	–	–
	음악치료	1.8	–	2.8	2.0	1.0	1.0	1.6	1.6	2.0	–	–	–	–	–	–	–
	놀이치료	2.7	–	3.1	–	1.0	1.2	2.4	1.5	4.2	–	–	–	–	–	–	–
	미술치료	1.8	2.0	2.4	1.0	1.0	1.3	1.4	1.6	2.4	–	–	–	–	–	–	–
	심리행동치료	1.5	1.0	1.1	1.0	–	1.2	1.5	1.9	1.6	–	–	–	–	1.0	–	1.0
	기타	2.9	4.0	3.7	5.0	1.0	2.0	2.3	2.6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4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1.6
	작업치료	4.5	3.9	3.5		1.6	–	7.3	2.8	6.3	–	–	1.0	–	–	–	1.0
	언어치료	2.0	2.0	2.3	2.7	2.7	1.5	1.7	1.8	–	–	–	–	–	–	–	1.0
	음악치료	2.2	1.0	2.4	–	4.0	–	2.4	1.2	2.0	–	–	–	–	–	–	–
	놀이치료	2.2	–	1.5	–	4.0	–	1.7	1.5	3.1	–	–	–	–	–	–	–
	미술치료	1.8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
	심리행동치료	2.3	1.2	1.6	2.0	–	–	2.1	1.8	3.6	–	1.0	–	–	–	–	1.0
	기타	6.0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
2017	물리치료	2.0	1.9	2.9	1.6	1.8	1.0	1.5	1.0	1.9	1.3	1.0	1.6	2.8	1.7	2.8	1.8
	작업치료	2.8	2.6	2.6	9.6	–	–	2.3	1.6	7.0	–	–	4.6	–	–	–	4.2
	언어치료	1.7	3.1	2.6	1.0	2.5	2.5	1.2	1.7	–	–	–	–	–	–	–	4.0
	음악치료	1.6	1.0	1.3	–	–	1.0	1.7	1.6	1.8	–	–	–	–	–	–	–
	놀이치료	2.0	1.0	1.7	5.0	1.0	1.5	1.6	3.3	2.1	–	–	–	–	–	–	–
	미술치료	1.8	–	0.6	2.0	1.0	1.0	1.9	2.7	1.4	–	–	–	–	–	–	–
	심리행동치료	1.4	1.7	1.7	–	1.0	0.5	1.4	1.3	2.1	–	–	–	–	–	–	–
	기타	2.9	2.8	2.8	1.0	–	1.1	2.7	2.0	5.2	–	–	–	–	–	–	–
2020	물리치료	2.7	2.6	3.1	2.9	2.7	3.5	2.6	1.0	3.6	3.2	1.8	2.0	1.6	2.3	19.9	2.0
	작업치료	4.0	7.5	3.5	–	1.4	1.3	2.2	2.1	2.7	14.6	–	2.0	–	–	–	2.5
	언어치료	2.4	8.5	1.5	–	2.0	6.2	1.9	2.1	–	–	–	–	–	4.0	–	2.0
	음악치료	1.4	–	1.7	2.0	0.8	1.3	1.5	1.5	1.0	–	–	–	–	–	–	1.5
	놀이치료	2.4	1	1.0	20.0	1.2	9.9	1.5	2.4	1.0	–	–	–	–	–	–	–
	미술치료	1.3	2.4	0.8	2.0	0.8	3.2	1.1	1.6	1.0	–	–	–	–	–	–	1.0
	심리행동치료	2.5	2.5	1.0	6.1	–	2.1	2.0	2.3	3.3	1.0	–	–	1.0	–	–	2.0
	기타	3.3	1.6	1.7	–	3.3	29.2	2.1	2.7	1.3	–	–	–		–	–	1.0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작업치료가 4.0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의 경우 놀이치료가 각각 20.0시간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신장장애의 경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14.6시간, 장루 · 요루의 경우 물리치료가 19.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3-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2.4	2.5	2.3	2.2	2.6	2.4	2.3	3.2	2.2	2.3
	작업치료	3.4	4.3	2.3	1.8	5.3	5.0	1.7	3.2	3.9	3.4
	언어치료	1.8	1.7	2.1	1.7	3.1	2.1	1.0	1.9	1.6	1.8
	음악치료	1.8	1.6	2.2	1.6	2.1	1.0	2.6	1.9	1.5	1.8
	놀이치료	2.7	1.9	4.1	1.9	3.4	7.5	4.4	3.0	2.0	2.7
	미술치료	1.8	1.5	2.2	1.4	1.9	7.5	3.3	2.1	1.2	1.8
	심리행동치료	1.5	1.4	1.6	1.5	1.7	1.0	-	1.8	1.1	1.4
	기타	2.9	2.7	3.2	2.3	2.9	3.8	3.7	3.1	2.8	2.9
2014	물리치료	2.4	2.4	2.4	2.9	2.1	2.5	2.4	2.6	2.4	2.5
	작업치료	5.4	4.6	4.4	2.9	7.6	4.2	4.8	4.5	5.6	4.6
	언어치료	2.0	2.0	1.9	1.8	1.7	3.3	3.8	2.0	2.3	2.0
	음악치료	2.2	2.4	1.8	3.0	1.7	1.8	1.0	2.2	2.4	2.2
	놀이치료	2.2	2.3	1.9	1.8	2.3	2.7	2.1	2.2	1.0	2.2
	미술치료	1.8	1.7	1.9	1.5	2.1	2.5	1.5	1.7	3.4	1.8
	심리행동치료	2.3	2.3	2.3	1.6	3.8	1.8	-	2.4	1.2	2.3
	기타	6.0	7.4	2.0	5.1	8.0	6.3	3.4	6.5	2.0	5.9
2017	물리치료	2.0	2.0	2.0	1.8	1.7	2.0	2.0	2.3	1.9	2.0
	작업치료	2.8	3.8	1.9	1.2	3.1	4.7	4.7	2.4	5.7	2.8
	언어치료	1.7	1.9	1.5	1.7	1.6	2.4	3.0	1.7	3.4	1.8
	음악치료	1.6	1.7	1.3	1.3	2.1	1.6	1.0	1.6	-	1.6
	놀이치료	2.0	2.0	2.1	1.6	2.7	4.2	1.0	2.1	0.7	2.0
	미술치료	1.8	2.0	1.5	1.7	1.8	2.6	-	1.8	1.0	1.8
	심리행동치료	1.4	1.2	1.8	1.3	1.6	1.7	1.0	1.5	0.6	1.4
	기타	2.9	2.6	3.2	1.8	3.6	4.2	3.8	3.0	2.4	2.9
2020	물리치료	2.7	2.6	2.8	3.2	3.2	2.5	2.8	3.1	2.6	-
	작업치료	4.0	2.5	5.7	2.5	2.4	7.3	4.4	3.2	6.2	-
	언어치료	2.4	1.9	3.7	2.4	1.7	4.1	2.4	1.9	5.9	-
	음악치료	1.4	1.4	1.5	1.5	1.6	1.0	1.0	1.5	0.9	-
	놀이치료	2.4	1.9	3.4	2.5	1.8	1.0	3.3	1.7	6.7	-
	미술치료	1.3	1.4	1.1	1.3	1.4	1.0	1.5	1.3	1.3	-
	심리행동치료	2.5	2.4	2.7	2.1	2.3	2.7	3.8	2.4	2.7	-
	기타	3.3	2.6	4.3	4.5	2.0	1.5	2.5	2.3	5.7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미술치료 시간이 0.3시간 많았고, 그 외의 치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에서는 기타치료, 18-44세 이하에서는 물리치료, 45-64세 이하, 65세 이상에서는 작업치료가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중증에 비해 작업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0〉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물리치료	4.4	4.0	7.0	3.6	1.9	4.4	7.3	–	1.4	3.2	1.0	1.0	–	–	4.8	180.0
	작업치료	11.2	18.0	9.3	20.0	–	–	10.2	12.9	2.0	–	–	–	–	–	–	–
	언어치료	13.0	16.5	17.0	6.0	9.4	6.7	10.2	18.3	–	–	–	–	–	–	–	–
	음악치료	7.8	–	2.3	24.0	4.0	6.8	8.8	12.0	1.2	–	–	–	–	–	–	–
	놀이치료	6.9	–	7.2	–	5.0	7.3	5.1	17.3	1.0	–	–	–	–	–	–	–
	미술치료	6.8	26.0	2.8	3.0	–	18.4	7.0	7.8	1.0	–	–	–	–	–	–	–
	심리행동치료	10.2	1.0	14.8	2.5	–	3.4	11.3	30.6	2.0	–	–	–	–	1.0	–	2.0
	기타	11.1	5.7	9.1	1.0	6.0	14.5	12.5	23.9	1.0	–	–	–	–	–	–	–
2014	물리치료	2.7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작업치료	5.2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언어치료	9.3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음악치료	2.5	–	5.5	–	–	–	2.5	6.4	0.8	–	–	–	–	–	–	–
	놀이치료	5.3	–	4.9	–	–	–	9.2	6.5	0.3	–	–	–	–	–	–	–
	미술치료	3.7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심리행동치료	4.0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기타	9.2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2017	물리치료	2.8	2.8	3.6	2.4	2.0	–	5.1	18.0	1.5	2.1	1.6	1.4	0.3	1.6	1.1	0.2
	작업치료	5.4	3.3	4.6	5.6	–	–	5.8	13.5	–	–	–	–	–	–	–	–
	언어치료	12.3	21.6	11.5	4.0	2.4	8.1	9.0	22.4	–	–	–	–	–	–	–	–
	음악치료	6.4	1.5	4.5	–	–	15.0	3.3	16.5	–	–	–	–	–	–	–	–
	놀이치료	7.1	0.1	1.7	4.0	24.0	17.0	3.3	14.7	–	–	–	–	–	–	–	–
	미술치료	7.0	–	4.4	4.0	24.0	12.0	4.5	16.9	0.7	–	–	–	–	–	–	–
	심리행동치료	7.6	–	11.6	–	60.0	–	5.6	16.7	2.9	–	–	–	–	–	–	–
	기타	8.7	5.1	10.1	1.0	–	4.6	7.1	18.1	2.7	–	–	–	–	–	–	–
2020	물리치료	2.4	2.5	2.3	2.9	2.5	4.6	1.5	16.8	0.7	0.9	1.6	1.2	2.3	2.3	1.4	0.6
	작업치료	5.6	4.4	3.0	–	0.5	4.7	11.6	12.6	3.4	1.2	–	1.0	–	–	–	2.1
	언어치료	8.0	41.9	5.3	–	4.7	12.2	6.0	9.8	–	–	–	–	–	5.0	–	3.8
	음악치료	5.1	–	10.7	5.0	0.8	4.0	4.2	7.2	0.0	–	–	–	–	–	–	0.9
	놀이치료	5.6	8.0	0.0	5.0	0.1	12.6	4.8	7.6	0.0	–	–	–	–	–	–	0.0
	미술치료	4.2	8.0	0.0	5.0	1.0	17.7	2.7	6.3	0.0	–	–	–	–	–	–	5.0
	심리행동치료	3.6	1.2	0.5	1.7	–	9.6	3.0	10.3	0.9	1.6	–	–	13.3	–	–	1.3
	기타	8.4	2.7	2.5	–	7.0	16.1	10.1	15.5	0.1	–	–	–	–	–	–	1.5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8.0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물리치료	4.4	4.6	4.2	15.0	4.7	5.5	3.1	6.5	3.9	4.3
	작업치료	11.2	13.2	8.8	11.9	5.7	23.7	8.5	11.8	9.3	11.2
	언어치료	13.0	12.8	13.3	13.1	13.7	12.2	5.0	15.0	9.9	13.3
	음악치료	7.8	7.8	7.9	9.5	4.7	4.0	3.0	6.9	10.6	7.8
	놀이치료	6.9	8.0	4.7	8.4	2.4	–	4.7	6.8	7.1	6.9
	미술치료	6.8	7.2	6.3	8.0	2.6	–	4.3	7.1	6.1	6.8
	심리행동치료	10.2	11.5	7.4	12.4	2.6	1.4	–	9.1	7.8	8.5
	기타	11.1	12.4	8.9	17.9	4.6	6.0	4.3	13.2	8.5	11.1
2014	물리치료	2.7	3	2.6	8.6	3.4	3.5	2.1	3.3	2.6	2.8
	작업치료	5.2	5.5	4.3	5.8	2.6	1.9	12.3	4	14.5	5
	언어치료	9.3	10.6	6.7	9.3	9.6	0.8	13.4	9.4	8.8	9.4
	음악치료	2.5	1.9	3.4	5.1	1	–	–	2.4	7.4	2.5
	놀이치료	5.3	5	5.8	9.3	3.4	–	3.2	4.6	20	4.8
	미술치료	3.7	4.5	2.2	5.8	1.5	–	4.7	3.4	12.0	3.7
	심리행동치료	4	4.3	2.3	4.7	4	2.7	–	3.5	5.6	3.8
	기타	9.2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8.6
2017	물리치료	2.8	3.0	2.7	7.2	5.2	3.4	2.2	3.4	2.7	2.9
	작업치료	5.4	5.6	5.2	6.3	5.7	1.3	8.1	6.0	0.6	5.4
	언어치료	12.3	12.4	12.0	11.8	12.4	13.0	36.0	12.3	13.9	12.4
	음악치료	6.0	7.7	2.4	7.2	4.9	–	1.5	6.0	–	6.0
	놀이치료	7.1	8.2	4.7	9.3	0.5	–	0.1	6.8	10.2	7.1
	미술치료	7.0	8.6	4.7	10.2	2.6	–	–	7.0	24.0	7.1
	심리행동치료	7.6	8.2	6.6	10.7	3.1	–	–	7.1	6.2	7.0
	기타	8.7	9.5	7.6	10.8	6.0	5.0	10.2	9.3	5.4	8.6
2020	물리치료	2.4	2.6	2.2	4.1	3.0	2.5	2.2	2.3	2.4	–
	작업치료	5.6	7.3	3.6	10.2	2.2	2.7	3.0	6.5	3.1	–
	언어치료	8.0	6.2	13.0	7.9	5.6	17.1	0.7	7.2	13.8	–
	음악치료	5.1	6.1	3.8	5.0	9.2	0.0	1.2	5.4	0.8	–
	놀이치료	5.6	7.0	3.2	6.2	1.3	0.0	3.7	5.4	6.8	–
	미술치료	4.2	4.6	3.1	4.4	4.8	0.0	3.7	4.3	3.9	–
	심리행동치료	3.6	4.4	2.3	7.1	2.1	0.9	1.9	3.9	2.3	–
	기타	8.4	9.2	7.3	12.1	7.7	2.4	4.1	10.0	4.7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언어치료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의 경우 의 경우 기타치료, 18–44세 이하의 경우 음악치료, 45–64세 이하의 경우 언어치료, 65세 이상의 경우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신건강

〈표 2-3-12〉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개소, 병상, 명)

구분		기관수	병상수	입원환자 수
2015년		1,449	83,696	70,628
2016년		1,515	83,405	69,220
2017년		1,554	81,734	67,441
2018년		1,670	79,257	66,108
2019년		1,839	78,739	65,436
2020년		1,936	79,432	62,702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15	6,187	3,202
	병원 정신과	195	38,718	31,770
	정신병원	123	31,090	24,782
	정신과의원	1,403	3,437	2,948
지역별	서울	540	4,836	3,410
	부산	163	6,592	4,894
	대구	98	4,569	3,882
	인천	89	3,856	3,398
	광주	62	2,363	2,038
	대전	81	1,702	1,164
	울산	29	1,514	1,269
	세종	11	120	99
	경기	399	16,041	12,973
	강원	44	2,172	1,761
	충북	51	3,861	2,559
	충남	61	5,314	4,049
	전북	69	2,862	2,457
	전남	51	4,773	3,714
	경북	69	8,127	6,597
	경남	93	10,334	8,127
	제주	26	396	311

주: 1) 기관수는 전체기관수임
2) 병상 수에는 개병병상을 포함함
3) 2020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79,432병상이며, 2019년 78,739병상에 비해 693 명상 늘어남
-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기관 수는 정신과의원이 1,403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수와 입원환자 수는 병원 정신과가 각각 38,718병상, 31,770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관 수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540개소, 3399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병상수와 입원환자 수는 경기가 각각 16,041병상, 12,973명으로 가장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2-3-13〉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단위: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4,873	4,361	4,075	5,326	5,309	5,587
부산	2,553	2,757	3,116	3,872	4,495	6,373
대구	2,697	2,906	3,427	3,788	3,939	4,382
인천	1,952	2,099	2,327	3,151	3,371	4,291
광주	6,993	6,707	7,224	7,995	7,787	8,314
대전	4,466	4,999	5,280	6,716	7,249	8,492
울산	2,552	2,730	3,048	3,836	4,193	4,669
세종	3,419	3,402	3,144	3,513	2,909	3,546
경기	2,790	3,222	3,334	4,376	5,312	5,298
강원	4,219	5,193	5,274	7,147	8,050	7,769
충북	4,096	4,547	5,660	6,051	7,021	7,693
충남	4,324	5,023	4,612	5,909	7,413	7,200
전북	5,199	6,150	7,730	7,554	8,865	9,609
전남	2,585	3,093	4,023	4,306	5,118	6,027
경북	4,309	2,605	3,308	4,121	5,406	6,148
경남	1,898	2,231	2,557	2,758	3,135	3,504
제주	3,667	3,948	4,125	5,985	6,423	6,062
전국(평균)	3,827	3,657	3,889	4,791	5,389	5,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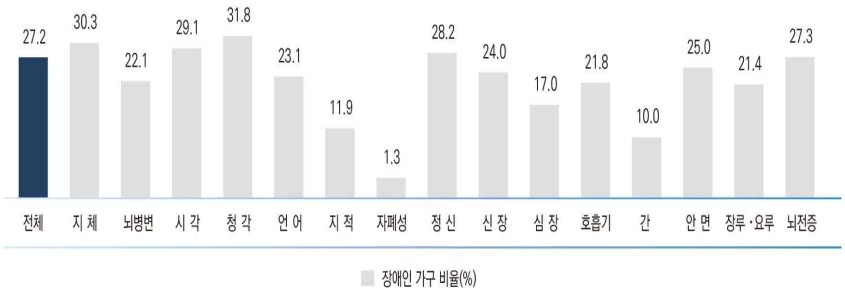
주: 1인당 정신보건 예산 = 당해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예산 총액/당해년도 주민등록인구 수. 이때 주민등록인구 수는 당해연도 12.31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임. 정신보건기관 예산에 정신요양시설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7)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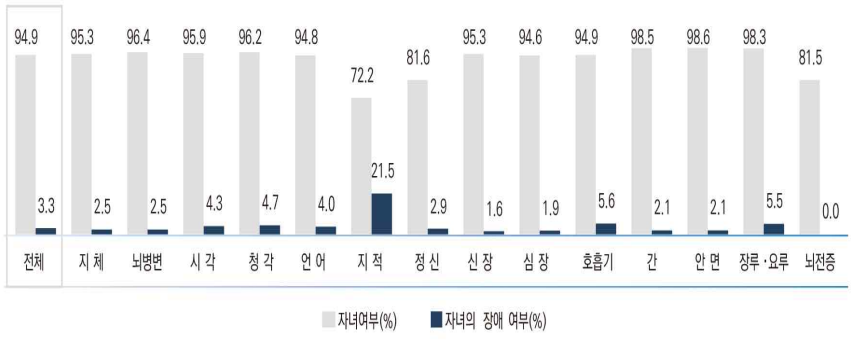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5,815원으로, 전년 대비 426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정신건강 예산은 전북이 9,609원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3,504원으로 가장 낮은 편임

3. 가족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0년)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7.2%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청각장애가 31.8%로 가장 높고, 지체장애 30.3^, 정신장애 28.2%, 시각장애 29/1%, 뇌전증장애 27.3% 등의 순임
- 2020년 기준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7.8%로 가장 높았고 뇌전증장애 18.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1.5%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장애 5.6%, 장루 · 요루 5.5% 순임

1) 가구구성

(1) 가구구성 및 규모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부부	29.0	32.3	34.5	26.7	35.1	25.8	5.4	–
기타1세대	1.4	0.8	0.4	0.5	0.4	1.7	4.7	0.8
부부+미기· 혼자녀	23.3	20.7	22.5	23.4	14.6	32.7	45.2	75.6
편부+미혼자녀	2.6	2.0	2.6	2.7	1.6	1.4	7.1	3.5
편모+미혼자녀	8.4	6.4	8.2	8.5	7.2	8.0	15.1	6.7
부부+양친	0.1	0.1	–	0.2	0.1	–	0.2	–
부부+편부모	0.5	0.7	0.4	0.6	0.4	0.3	0.3	–
조부모+손자녀	1.0	1.1	0.4	0.7	1.4	–	0.8	1.9
기타2세대	0.6	0.2	1.4	0.3	0.8	0.9	1.4	1.4
부부+자녀+양친	0.1	0.0	0.3	0.2	0.1	1.5	0.3	0.5
부부+자녀+편부모	0.9	0.8	1.1	0.9	0.7	1.4	1.8	2.4
기타3세대	4.5	4.2	5.2	5.7	5.2	2.9	5.0	5.0
비혈연가구	0.2	0.2	0.5	0.1	0.3	–	0.5	1.0
기타	0.2	0.1	0.3	0.3	0.3	0.3	0.4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장애인 실태조사」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인가구	28.2	24.0	17.0	21.8	10.0	25.0	21.4	27.3
부부	11.1	30.1	34.8	49.9	40.1	26.1	40.7	11.4
기타1세대	9.1	1.8	2.9	–	2.3	1.2	0.8	3.6
부부+미기· 혼자녀	20.6	27.9	29.8	17.2	29.5	24.4	16.8	28.2
편부+미혼자녀	3.9	2.3	2.5	1.8	4.6	–	2.4	4.0
편모+미혼자녀	23.1	7.8	7.4	4.3	6.2	14.7	5.1	22.2
부부+양친	–	–	–	–	1.5	–	–	–
부부+편부모	–	–	–	–	1.9	0.8	–	0.3
조부모+손자녀	0.6	0.4	1.0	–	0.5	1.5	1.1	–
기타2세대	1.0	0.7	–	0.3	–	1.0	1.5	1.6
부부+자녀+양친	–	0.3	–	–	–	–	0.2	–
부부+자녀+편부모	0.2	1.2	0.8	0.9	0.5	2.6	–	0.9
기타3세대	1.5	3.5	3.8	3.7	3.0	2.6	9.5	0.6
비혈연가구	0.5	–	–	–	–	–	–	–
기타	0.2	–	–	–	–	–	0.5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 가구가 29.0%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7.2%, 부부+미·기혼자녀 23.3%, 편모+미혼자녀 8.4%, 기타 3세대 4.5%, 편부+미혼자녀 2.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에서 부부+미·기혼자녀 비율이 75.6%로 높았고, 편모/편부+미혼자녀의 비율은 정신장애가 27.0%로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27.2	30.3	22.1	29.1	31.8	23.1	11.9	1.3
2인 가구	38.2	39.7	42.4	34.5	42.3	32.3	23.4	7.1	38.2	39.7	42.4	34.5	42.3	32.3	23.4	7.1
3인 가구	17.7	15.6	18.8	16.5	13.5	20.0	32.6	33.8	17.7	15.6	18.8	16.5	13.5	20.0	32.6	33.8
4인 가구	11.7	10.3	11.0	14.1	7.6	18.4	20.5	40.5	11.7	10.3	11.0	14.1	7.6	18.4	20.5	40.5
5인 이상 가구	5.2	4.1	5.7	5.8	4.9	6.2	11.6	17.4	5.2	4.1	5.7	5.8	4.9	6.2	11.6	17.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38.2%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7.2%, 3인 가구 17.7%, 4인 가구 11.7%, 5인 이상 가구 5.2%의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청각장애 31.8%, 지체장애 30.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장애유형에서 대부분 1인 가구 및 2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가구원 수가 3인 이상 경우가 각각 64.7%, 91.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가족형성

(1) 결혼상태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3	57.4	55.0	52.0	53.6	52.3	13.5	0.0	18.2	59.6	63.3	72.0	72.4	53.3	65.2	26.1
사별	20.8	22.3	16.0	23.8	34.6	11.6	2.8	0.0	5.0	9.9	11.7	12.4	6.8	13.8	23.2	3.5
이혼	9.7	10.7	12.1	9.5	6.3	8.9	3.3	0.0	16.1	14.0	5.7	8.1	9.5	6.1	6.8	14.5
별거	0.7	0.5	1.1	1.2	0.5	0.8	0.8	0.0	1.2	0.5	2.9	0.9	3.2	0.0	0.3	0.7
미혼	17.4	9.1	15.8	13.3	4.9	25.8	79.5	100.0	59.6	16.0	16.5	6.6	8.2	26.8	4.1	55.2
기타(미혼모/부)	0.1	0.1	0.0	0.2	0.1	0.6	0.1	0.0	0.0	0.0	0.0	0.0	0.0	0.0	0.4	0.0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3	60.4	39.1	–	26.1	57.1	53.9	40.1	57.6
사별	20.8	6.6	39.9	–	0.3	5.6	36.6	13.2	25.1
이혼	9.7	10.5	8.7	–	3.3	17.1	6.4	10.4	9.4
별거	0.7	0.7	0.7	–	0.2	0.9	0.7	0.8	0.6
미혼	17.4	21.8	11.5	–	70.1	19.2	2.4	35.4	7.3
기타(미혼모/부)	0.1	0	0.2	–	0.1	0.1	0.1	0.1	0.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현재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가 51.3%로 가장 많았고 사별 20.8%, 미혼 17.4%, 이혼 9.7%, 별거 0.7%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79.5%, 정신장애인 59.6%, 뇌전증 55.2%로 나타나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음
- 성별로는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0.4%로 여성 39.1%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한 비율이 39.9%로 남성 6.6%에 비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유배우자 비율이 57.6%로 중증 40.1%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평균초혼연령

〈표 3-2-3〉 평균초혼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6.6	6.8	6.2	5.8	9.4	0.5	2.6	–	0.5	2.1	4.6	1.9	1.3	4.3	3.0	2.1
만20–29세	72.4	71.4	72.4	73.8	75.8	74.4	63.0	–	71.2	71.2	66.7	74.6	70.7	67.8	79.0	67.5
만30–39세	18.5	18.8	19.2	18.5	13.3	23.5	27.1	–	24.7	24.7	28.1	19.9	27.1	26.6	16.0	21.8
만40–49세	1.8	2.1	1.8	1.5	0.5	1.6	7.2	–	2.8	1.7	0.6	1.8	1.0	1.3	0.0	8.6
만50세이상	0.7	0.9	0.4	0.4	0.9	0.0	0.0	–	0.8	0.3	0.0	1.7	0.0	0.0	0.0	0.0
평균연령	26.4	26.5	26.3	26.2	25.4	27.2	28.4	–	27.5	27.5	27.1	27.7	27.7	27.5	26.1	28.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4〉 평균초혼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10–19세	6.6	1.3	12.9	–	0.3	1.3	10.1	5.1	7.2	8.0
만20–29세	72.4	66.5	79.5	–	51.9	68.0	76.6	70.7	73.1	70.0
만30–39세	18.5	28.9	6.0	–	44.8	26.4	11.9	21.4	17.3	18.7
만40–49세	1.8	2.5	0.9	–	2.9	3.4	0.8	2.4	1.6	2.5
만50세이상	0.7	0.8	0.6	–	0.0	0.9	0.7	0.5	0.8	0.9
평균연령	26.4	28.5	23.8	–	29.5	28.3	25.0	26.8	26.2	26.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26.4세이며, 초혼연령 중 만20–29세가 72.4%로 가장 많았고 만30–39세 18.5%, 만10–19세 6.6%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만20–39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초혼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3)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표 3-2-5〉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배우자	2.5	1.7	0.8	3.1	4.7	2.4	25.4	-	4.4	0.6	0.0	9.0	0.0	0.0	4.6	1.3
2014 배우자	2.7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017 배우자	2.4	1.4	2.3	2.5	4.1	7.3	21.1	-	4.1	1.0	-	4.1	-	14.7	0.4	9.8
2020 배우자	3.7	3.0	1.7	3.7	4.6	4.3	33.6	-	6.1	0.3	-	3.7	1.3	7.2	-	4.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6〉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배우자	2.5	1.9	3.3	-	7.9	3.3	0.7	8.0	1.5	2.6
2014 배우자	2.7	2.1	3.4	-	10	3.8	0.7	7.1	0.8	2.7
2017 배우자	2.4	1.9	3.0	-	6.6	3.7	1.1	5.9	0.9	2.4
2020 배우자	3.7	3.2	4.3	-	7.8	7.0	1.5	8.0	2.0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여부는 3.7%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지적장애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면장애가 7.2%, 정신장애가 6.1% 순임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아짐
  - 장애정도별로 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중증이 8.0%로 경증 2.0%에 비해 높게 나타남

(4) 자녀 현황

〈표 3-2-7〉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4.9	95.3	96.4	95.9	96.2	94.8	72.2	-	81.6	95.3	94.6	94.9	98.5	98.6	98.3	81.5
	아니오	5.1	4.7	3.6	4.1	3.8	5.2	27.8	-	18.4	4.7	5.4	5.1	1.5	1.4	1.7	18.5
자녀 수	1명	15.1	15.1	17.2	13.0	10.3	16.1	33.1	-	39.0	21.5	18.3	18.6	16.2	22.3	9.8	22.4
	2명	43.3	44.7	45.6	45.2	33.6	47.5	49.9	-	39.8	52.3	47.2	48.2	64.3	51.3	44.8	62.0
	3명	22.5	22.2	23.3	23.6	25.4	19.7	13.9	-	14.3	15.8	24.8	21.8	15.4	17.3	24.2	14.1
	4명	10.1	9.3	7.1	11.1	15.7	10.1	3.1	-	4.0	7.3	3.8	8.2	4.1	9.1	11.6	1.5
	5명이상	8.9	8.7	6.8	7.1	15.1	6.5	0.0	-	3.0	3.1	5.9	3.3	0.0	0.0	9.6	0.0
자녀의 장애 여부	예	3.3	2.5	2.5	4.3	4.7	4.0	21.5	-	2.9	1.6	1.9	5.6	2.1	2.1	5.5	-
	아니오	96.7	97.5	97.5	95.7	95.3	96.0	78.5	-	97.1	98.4	98.1	94.4	97.9	97.9	94.5	100.0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8〉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여부	예	94.9	94.9	95.0	-	80.8	93.3	97.0	92.2	96.0	
	아니오	5.1	5.1	5.0	-	19.2	6.7	3.0	7.8	4.0	
자녀 수	1명	15.1	15.4	14.9	-	40.1	22.8	9.3	19.6	13.5	
	2명	43.3	49.5	36.0	-	49.2	63.5	32.0	43.8	43.2	
	3명	22.5	22.2	22.9	-	9.2	11.6	29.3	20.0	23.5	
	4명	10.1	8.0	12.5	-	1.4	1.5	15.3	9.4	10.3	
	5명이상	8.9	4.9	13.7	-	0.0	0.6	14.1	7.2	9.6	
자녀의 장애 여부	예	3.3	2.5	4.3	-	3.4	3.7	3.1	4.3	3.0	
	아니오	96.7	97.5	95.7	-	96.6	96.3	96.9	95.7	97.0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3%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7.8%로 가장 높았고 뇌전증장애 18.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1.5%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장애 5.6%, 장루 · 요루 5.5% 순임

(5)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	100.0	-	100.0
산후 조리 도우미	남편	9.4	4.1	54.0	10.5	3.5	11.9	8.5	-	26.0	-	-	-	-		-	-
	친정식구	55.2	69.2	21.6	40.5	53.1	-	60.7	-	44.6	64.3	-	-	-		-	55.0
	시댁식구	7.1	2.9	-	9.9	7.1	38.1	14.4	-	10.6	-	-	-	-		-	15.1
	복지기관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	22.0	23.8	24.5	31.6	16.8	-	16.4	-	-	35.7	-	-	-		-	14.8
	산후도우미	3.5	-	-	2.4	19.5	50.0	-	-	-	-	-	-	-		-	-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2.3	-	-	2.6	-	-	-	-	18.7	-			-	100.0		15.1
	기타	0.5	-	-	2.5	-	-	-	-	-	-	-	-	-		-	-
산후 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1.6	11.4	-	17.6	19.3	-	-	-	-	32.0	-	-	-	-	-	5.4
	충분하다	55.8	59.1	28.1	41.8	57.8	50.2	56.5	-	81.3	68.0	-	-	-	-	-	79.5
	부족하다	27.8	23.9	71.9	29.0	22.8	49.8	43.5	-	18.7	-	-	-	-	-	-	15.1
	매우 부족하다	4.7	5.6	-	11.7	-	-	-	-	-	-	-	-	-	100.0	-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계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
산후 조리 도우미	남편	9.4	-	9.4	-	9.6	9.1	-	11.5	7.8	-
	친정식구	55.2	-	55.2	-	62.8	46.2	-	49.8	59.0	-
	시댁식구	7.1	-	7.1	-	1.7	13.4	-	10.4	4.7	-
	복지기관	-	-	-	-	-	-	-	-	-	-
	산후조리원	22.0	-	22.0	-	21.4	22.7	-	17.4	25.4	-
	산후도우미	3.5	-	3.5	-	3.1	4.1	-	5.1	2.4	-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2.3	-	2.3	-	1.5	3.3	-	4.5	0.7	-
	기타	0.5	-	0.5	-	-	1.2	-	1.3	-	-
산후 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11.6	-	11.6	-	14.0	8.9	-	8.7	13.8	-
	충분하다	55.8	-	55.8	-	55.0	56.8	-	53.1	57.8	-
	부족하다	27.8	-	27.8	-	26.5	29.4	-	30.8	25.7	-
	매우 부족하다	4.7	-	4.7	-	4.5	4.9	-	7.4	2.7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55.2%로 가장 많았고 산후 조리원 22.0%, 남편 9.4%, 시댁식구 7.1%, 산후 도우미 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 장애인의 67.4%가 충분했던 것으로, 32.5%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인의 산후조리 충분도가 100.0%로 가장 높은 반면, 안면장애에서 산후조리의 부족함이 100%로 가장 높음
  - 연령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18-44세 이하가 45-64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보면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증 59.0%로 중증 49.8%에 비해 높음
  - 산후조리의 충분함은 경증이 71.6%로 중증 61.8%에 비해 높음

3) 다문화 가족

(1)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표 3-3-1〉 다문화 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2012	8.6	9.7	60.4	11.2	0.1	1.5	22.8	0.2	0.2	0.4	2.6	0.4	–
2015	6.4	10.7	61.6	9.5	–	1.7	14.9	–	0.1	0.4	–	1.0	0.1
2018	5.8	16.6	42.6	13.3	–	2.6	17.1	–	0.0	2.3	–	5.0	0.5

주: 1) 다문화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 39, 40

– 2018년 다문화 가족의 장애인 가구 비율은 5.8%로 2015년 6.4%에 비해 낮아졌으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전체 장애인 가구원의 비율인 1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에 비하여 2018년의 본인과 자녀의 등록장애 비율은 각각 6.1%p, 3.8%p증가함
- 반면, 배우자의 등록장애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단위: %, 가구)

		있음	없음	계
전체		5.8	94.2	100.0
		(17,767)	(289,228)	(278,036)
거주지역	동부	5.2	93.9	100.0
	읍면부	7.9	92.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4	89.6	100.0
	100~200만원 미만	6.8	93.2	100.0
	200~300만원 미만	5.9	94.1	100.0
	300~400만원 미만	4.0	96.0	100.0
	400~500만원 미만	4.8	95.2	100.0
	500~600만원 미만	3.3	96.7	100.0
	600만원 이상	3.3	9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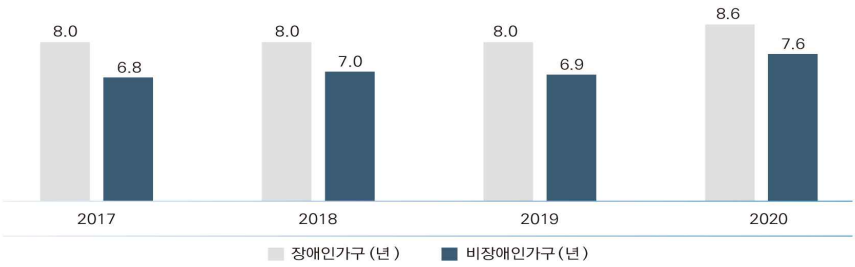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39.

– 2018년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 가구 분포는 는 동부가 5.2%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가 취약한 읍면부가 7.9%로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0.4%,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6.8% 등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 가구 집단에서는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가구와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장애인 비율이 각각 3.3%씩으로 조사되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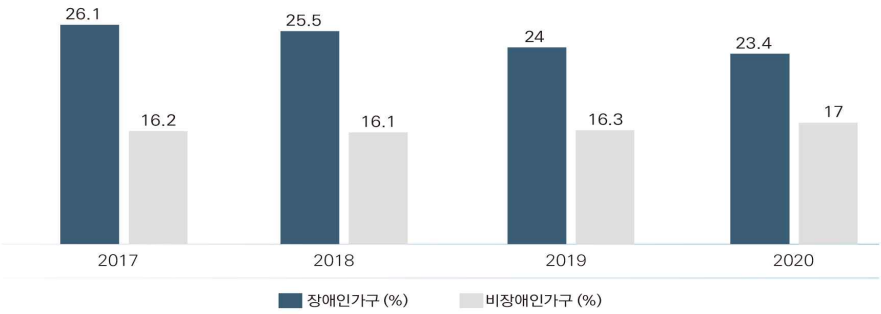
'다문화 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4. 주거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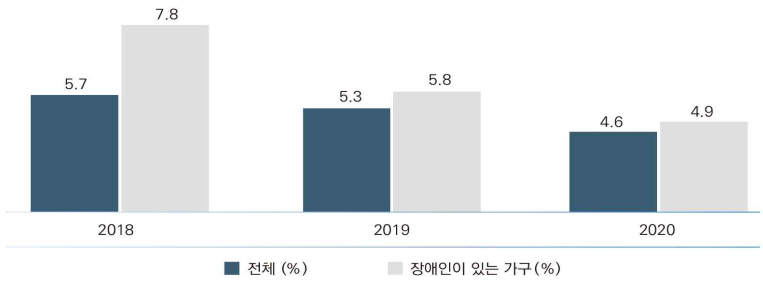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6년, 비장애인가구가 7.6년임
- 2020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3.4%, 비장애인가구가 17.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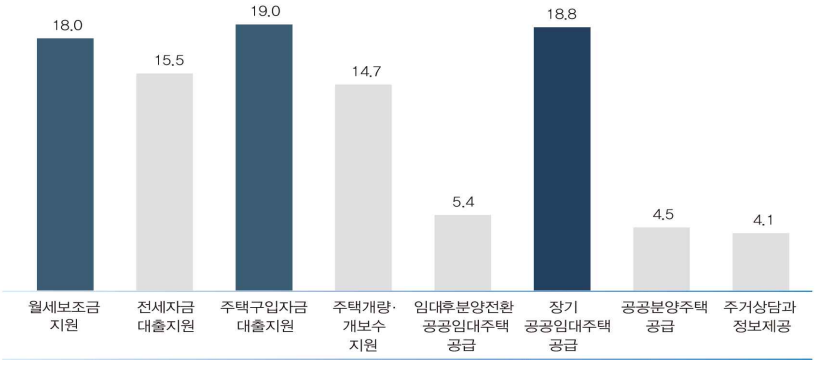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0년)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4.9%로 전체 4.6%에 비해 0.3%p 높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8%, 2019년 5.8%, 2020년 4.9%로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낮아지는 추이임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19.0%로 가장 높고,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18.8%, 월세 보조금 지원 18.0% 순임

1) 주거

(1) 주택유형

〈표 4-1-1〉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2018	100.0	43.8	40.9	2.7	8.1	1.8	2.7
2019	100.0	42.3	41.0	2.4	9.9	2.0	2.4
2020	100.0	44.8	35.9	2.0	9.2	1.3	6.8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2) 주택사용면적

〈표 4-1-2〉 주택사용면적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60㎡ 이하 (18평이하)	60㎡-85㎡ (18-25평)	85㎡-102㎡ (25-30평)	102㎡ 초과 (30평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2018	100.0	54.6	29.3	8.3	7.5	0.2	63.3
2019	100.0	49.8	30.0	11.4	8.7	0.2	65.0
2020	100.0	51.9	29.7	11.0	6.8	0.7	63.9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3) 사용 방 수

〈표 4-1-3〉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평균(개)
2018	100.0	5.5	7.4	32.3	44.1	9.3	1.4	3.5
2019	100.0	5.2	5.1	32.8	45.0	9.4	2.4	3.6
2020	100.0	5.9	6.1	33.2	45.0	8.4	1.4	3.5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사용 방 수는 침실, 거실, 식당을 포함한 방의 수를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4.8%로 가장 높고, 아파트 35.9%, 다세대주택 9.2%, 주택이외의 거처 6.8% 순임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은 60㎡ 이하가 51.9%로 과반수가 넘고, 평균은 63.9㎡임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사용 방 수는 4개가 45.0%로 가장 높고, 3개가 33.2%, 5개 8.4% 순이며, 평균 방 수는 3.5개임

(4) 무주택 기간

〈표 4-1-4〉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2018	100.0	3.1	3.2	4.0	6.9	10.8	72.0
2019	100.0	3.8	2.4	2.7	7.0	13.4	70.7
2020	100.0	2.3	2.6	1.7	6.0	13.3	74.1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무주택 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5)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5〉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단위: 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6.8	7.1	6.9	7.7
장애인가구	8.0	8.0	8.0	8.6
비장애인가구	6.8	7.0	6.9	7.6

주: 장애인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 74.1%로 가장 높고, 5-10년 13.3%, 3-5년 6.0% 순임
- 2020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6년, 비장애인가구가 7.6년임

(6) 주거비 부담 수준

〈표 4-1-6〉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2018	100	31.4	37.1	10.2	1.7	19.5
2019	100	19.0	41.8	16.7	3.5	18.9
2020	100	22.5	37.7	17.4	1.7	20.6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해당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이면서 주택마련 및 임차 당시 대출을 했더라도 현재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7)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7〉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17.1	15.8	16.1	16.8
장애인가구	26.1	25.5	24.0	23.4
비장애인가구	16.2	16.1	16.3	17.0

주: 1) 장애인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주택점유형태가 임차(전세, 월세 등)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월임대료(중위수)/월가구소득(중위수)×100 이며, 보증금은 월세이율을 적용함
4) 2022년 9월 19일 기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부담됨(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이 60.2%, 부담되지 않음(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19.1%임
- 2020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3.4%, 비장애인가구가 17.0%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주: 국토교통부(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7.8	5.7	5.8	5.3	4.9	4.6
면적기준미달가구	4.7	4.0	3.9	3.8	3.0	3.3
시설기준미달가구	4.5	3.1	3.3	3.0	3.2	2.8
침실기준미달가구	0.5	0.4	0.4	0.3	0.3	0.2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에 따라 면적기준미달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침실기준미달가구의 세부 유형으로 나뉨
2)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원자료를 연구진이 재분석함(통계청 MDIS에서 다운받음)
3)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과 방수기준은 가구원수 6인까지만 제시되어 있어 7인이상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의 최저주거기준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가구원수(명)	1	2	3	4	5	6
면적(m2)	14	26	36	43	46	55
방수(개)	1	1	2	3	3	4

- 2020년도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9%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3.0%, 시설기준미달가구는 3.2%, 침실기준미달가구는 0.3%인 것으로 나타남

2) 주택 환경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3.7	84.8	85.5	82.4	86.5	84.7	90.5	80.8	84.5	90.4	79.3	87	81.5	86.8	79.5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6.3	86.2	87	87.2	86.4	88.9	85.2	91.4	83.5	85.9	93.2	81.4	90.3	87	89.1	79.7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5.5	84.9	86.2	85.8	87.9	86.4	83.7	90.2	82	87	92.2	82.3	87.3	85.7	90.4	76.4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87.0	86.7	87.8	87.2	87.1	91	85.8	91.2	85.5	89.1	93.7	84	90.5	86.5	91.4	84.1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78.4	78	77.6	78.1	79.5	82.6	78.4	89.5	75.9	79.9	85.4	76.4	87.4	71.6	81.5	74.3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6-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3.9	84.0	83.8	87.6	88.6	84.2	82.2	84.3	83.6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춤	86.3	86.5	86.0	88.8	89.9	86.3	85.2	85.9	86.5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있음	85.5	85.1	86.1	86.9	87.0	85.2	85.2	85.2	85.7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87.0	86.9	87.1	90.4	90.0	87.4	85.7	87.3	86.8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	78.4	79.0	77.6	87.9	81.8	79.6	76.2	78.5	78.4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비함이 78.4%로 가장 열악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7세이하가 87.9%, 18-44세 이하가 81.8%, 45-64세 이하가 79.6%, 65세 이상이 76.2%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도가 낮아짐
  - 자폐성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한 비율이 89.5%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17.2	17.2	13.8	17.2	17.9	17.5	22.1	30.6	11.4	16.3	18.9	8.5	23.9	16.4	14.5	10.5
약간편리함	60.5	60.3	59.5	60.7	60.6	59.7	58.8	60.5	66.2	61.1	62.0	63.2	63.9	67.8	64.7	65.4
약간불편함	19.2	19.3	22.9	19.3	19.1	20.9	15.6	7.8	19.7	19.9	17.9	24.0	11.8	13.7	17.8	22.4
매우불편함	3.1	3.2	3.7	2.8	2.5	1.8	3.6	1.2	2.7	2.8	1.2	4.2	0.4	2.1	3.0	1.8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4.3	83.6
매우편리함	17.2	17.3	17.2	28.7	24.7	16.0	15.4	17.1	17.3
약간편리함	60.5	60.6	60.3	58.9	59.6	62.2	59.6	59.8	60.9
약간불편함	19.2	19.0	19.5	10.8	13.6	19.0	21.3	19.9	18.8
매우불편함	3.1	3.1	3.0	1.6	2.1	2.7	3.6	3.2	2.9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77.7%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3.3%는 불편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호흡기장애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자폐성장애가 9.0%로 가장 낮았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보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중증 23.1%로 경증 21.7%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2.8	2.5	5.3	2.7	2.9	2.2	3.3	2.6	2.1	1.7	1.4	5.1	2.0	-	0.9	2.3
	가급적 개조 원함	12.8	13.7	15.4	9.8	12.1	12.3	12.2	6.3	13.1	9.2	9.8	12.4	5.8	18.3	9.0	12.9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3.0	41.8	41.4	45.3	45.8	45.6	40.6	39.7	48.5	43.7	41.5	50.1	35.8	51.3	42.7	48.6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6.1	36.3	33.3	37.1	33.9	37.0	37.2	48.9	33.9	40.5	45.2	28.2	48.8	23.2	40.1	30.4
	이미 개조 하였음	5.4	5.7	4.7	5.1	5.2	2.9	6.7	2.6	2.4	4.9	2.0	4.2	7.6	7.2	7.2	5.8
희망 개조 장소 (1순위)	침실	10.1	9.7	12.0	7.2	6.5	11.9	13.0	8.0	17.1	17.5	7.6	9.0	18.8	6.5	14.0	16.6
	거실	12.9	14.4	8.9	12.5	10.9	24.8	15.9	27.9	6.5	8.1	4.6	6.2	23.1	20.0	23.4	30.5
	주방	15.6	12.9	8.0	26.1	20.8	22.4	16.4	12.0	32.9	17.8	24.7	11.3	0.0	19.6	9.4	7.4
	화장실	34.7	32.2	43.6	30.7	37.9	28.4	30.6	31.9	35.7	41.1	48.3	49.7	40.5	38.7	37.8	24.9
	현관 (출입구)	17.3	20.5	20.7	16.6	13.8	5.8	12.2	10.2	4.7	7.3	14.7	3.6	12.8	4.1	8.8	11.3
	기타	9.3	10.3	7.0	6.9	10.0	6.8	11.9	10.1	3.1	8.2	0.0	20.2	4.7	11.2	6.6	9.2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개조를 원치 않는 비율이 84.4%로 개조를 원한다고 답한 15.6%에 비해 현저히 높음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는 화장실이 34.7%로 가장 많았고, 현관(출입구) 17.3%, 주방 15.6%, 거실 12.9%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 주택개조 의사(반드시 개조 원함 + 가급적 개조 원함)를 살펴보면, 뇌병변장애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면장애 18.3%, 호흡기장애 17.5% 순임
  - 장애유형별 희망개조장소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화장실 개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뇌전증장애인만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거실 개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음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주택개조 의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드시 개조 원함	2.8	2.9	2.7	1.1	2.6	3.0	2.9	4.0	2.1
	가급적 개조 원함	12.8	12.5	13.1	14.8	9.0	11.0	14.8	13.4	12.4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3.0	42.3	44	42.1	38.5	41.7	45.1	41.9	43.6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6.1	37.1	34.6	37.9	44.2	38.4	32.2	34.9	36.8
	이미 개조 하였음	5.4	5.2	5.6	4.2	5.6	5.8	5.0	5.8	5.1
희망 개조장소 (1순위)	침실	10.1	8.3	12.6	11.8	8.5	9.9	10.5	11.5	9.2
	거실	12.9	15.5	9.5	19.5	16.9	12.3	12.2	11.1	14.3
	주방	15.6	13.2	18.9	8.9	17.7	17.3	14.8	14.6	16.3
	화장실	34.7	38.6	29.5	24.0	34.4	34.3	35.5	37.2	32.9
	현관 (출입구)	17.3	14.8	20.6	22.1	7.5	18.3	18.2	17.0	17.5
	기타	9.3	9.7	8.8	13.8	15.0	7.9	8.9	8.6	9.9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주택 개조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개조의사가 15.8%로 남성 15.4%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주택개조의사가 17.7%로 가장 높고, 18-44세 이하가 11.6%로 가장 낮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의 개조의사가 17.4%로 경증 14.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희망개조장소를 보면 평균적으로 화장실 34.7%로 가장 높고, 현관(출입구) 17.3%, 거실 12.9% 순임

3) 주거복지사업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단위: %)

구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 임대 주택	공공 분양 주택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	기타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주거 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2018	17.8	52.7	58.2	71.4	50.4	27.0	26.8	11.4	10.5	-
2019	26.5	62.4	73.6	83.6	65.0	38.8	30	15.2	23.3	20.4
2020	25.3	64.1	75.3	81.5	62.4	36.8	29.5	15.9	17.6	17.1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인지하고 있닫고 응답한 비율임
3)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은 2019년 부터 문항에 포함됨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2)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분야 주택 공급	주거 상담과 정보제공 등
2018	100.0	13.2	14.1	17.4	14.5	9.8	23.1	5.2	2.7
2019	100.0	16.1	12.6	16.9	16.0	6.0	24.6	5.6	2.2
2020	100.0	18.0	15.5	19.0	14.7	5.4	18.8	4.5	4.1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81.5%로 가장 높고,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75.3%,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64.1%, 공공분양주택 62.4% 순임. 반면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17.1%, 기타 주태 개량/개보수 지원 17.6%는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편임
- 2020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19.0%로 가장 높고,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18.8%, 월세 보조금 지원 18.0% 순임

(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표 4-3-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6	4,000	2,000	2,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3,800	1,900	1,9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3,800	1,900	1,900	1,075	491	111	193	160	291
2009	3,800	1,900	1,900	1,093	544	94	143	111	432
2010	3,800	1,900	1,900	1,090	487	128	151	137	444
2011	3,800	1,900	1,9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3,800	1,900	1,9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3,800	1,900	1,900	1,048	408	128	50	132	443
2014	3,420	1,710	1,710	934	387	102	69	120	385
2015	3,028	1,514	1,514	806	384	109	76	108	312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기타
2016	1,508	753	755	413	188	76	81	59	145
2017	2,788	1,394	1,394	754	345	106	182	105	277
2018	3,318	1,659	1,659	877	424	119	181	111	231
2019	3,272	1,636	1,636	907	418	144	167	124	440
2020	3,326	1,663	1,663	921	369	145	217	131	403
2021	3,680	1,676	2,004	951	298	167	188	152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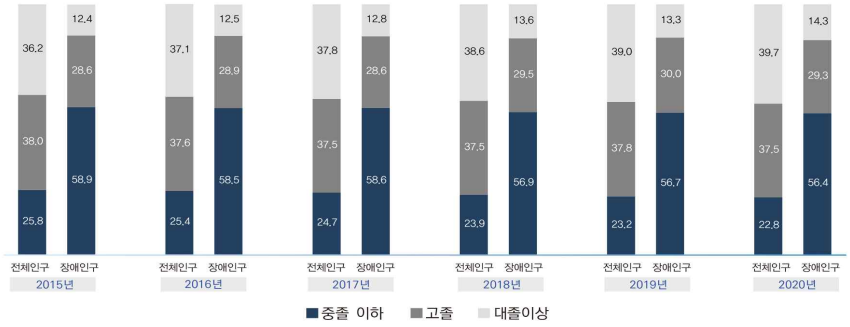
주: 1) 한 가구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 이에 세부지원 합과 총 지원가구의 합이 다름
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함
3)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액은 3,6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4백만원 증가하고 총 지원가구는 951가구로 전년대비 30가구 증가함
- 세부지원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359가구로 가장 많고, 화장실 개조 298가구, 경사로 설치 188가구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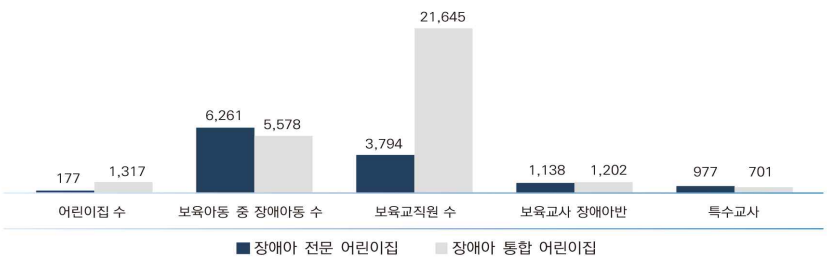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책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 교육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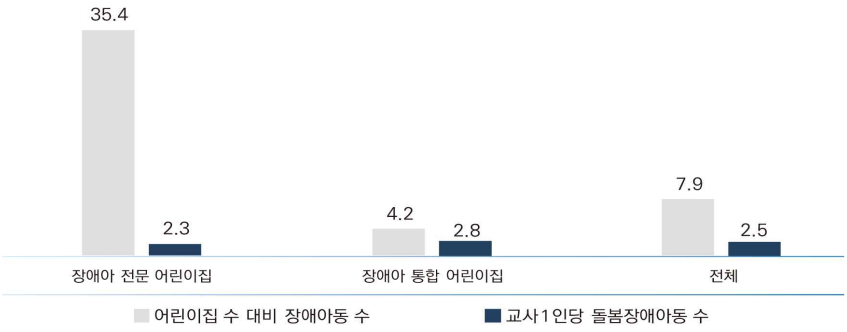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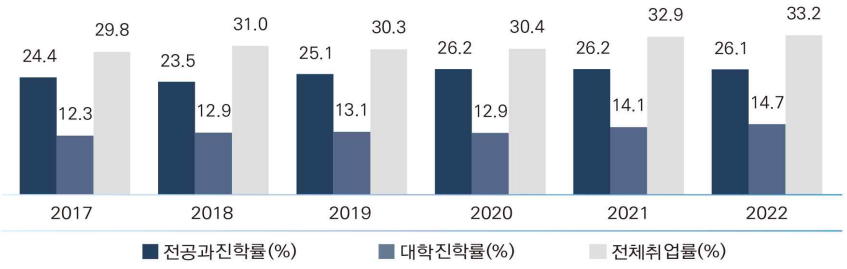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1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3%, 대졸 이상 14.3%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9.7%로 가장 높고, 고졸이 37.5%, 중졸 이하 22.8%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2021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은 전체 177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6,261명, 보육교직원 수 3,794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138명, 특수교사 수 977명임
- 2021년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1,317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 5,578명, 보육교직원 수 21,645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202명, 특수교사 수 701명임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1년)



주: 교사수는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합한 수임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곳 당 약 35.4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반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1곳당 4.2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1인당 돌봄 장애아동수는 전문 어린이집은 1명 당 2.3명, 통합 어린이집은 1명당 2.8명으로 나타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전공과진학률, 대학진학률, 전체취업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1) 교육수준

(1) 교육수준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명	%	명	%	명	%
장애 인구	2014년	2,449,437	1,473,017	60.1	692,724	28.3	283,696	11.6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2017년	2,460,079	1,439,784	58.5	712,167	28.9	308,128	12.5
	2018년	2,495,043	1,462,403	58.6	713,451	28.6	319,187	12.8
	2019년	2,526,200	1,437,603	56.9	745,769	29.5	342,828	13.6
	2020년	2,562,873	1,453,052	56.7	769,660	30.0	340,160	13.3
	2021년	2,574,907	1,453,046	56.4	753,280	29.3	368,581	14.3
	증 감	12,034	-6	-0.3	-16,380	-0.7	28,421	1
전체 인구	2014년	42,513,000	11,642,000	27.4	16,269,000	38.6	14,601,000	34.7
	2015년	42,975,000	11,422,000	26.6	16,330,000	38.0	15,223,000	35.4
	2016년	43,387,000	11,192,000	25.8	16,487,000	38.0	15,708,000	36.2
	2017년	43,735,000	11,095,000	25.4	16,435,000	37.6	16,205,000	37.1
	2018년	44,141,000	10,882,000	24.7	16,569,000	37.5	16,690,000	37.8
	2019년	44,460,000	10,605,000	23.9	16,682,000	37.5	17,173,000	38.6
	2020년	44,756,000	10,377,000	23.2	16,916,000	37.8	17,463,000	39.0
	2021년	45,049,000	10,264,000	22.8	16,908,000	37.5	17,877,000	39.7
	증 감	293,000	-113,000	-0.4	-8,000	-0.3	414,000	0.7

주: 1)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증감은 '20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5월)」

- 2021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39.7%는 장애인구 14.3%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편임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1년 기준 중졸 이하가 56.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9.3%, 대졸 이상 14.3%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9.7%로 가장 높고, 고졸이 37.5%, 중졸 이하 22.8%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5-1-2〉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9	9.1	6.6	7.5	16.4	5.3	6.5	0.0	1.6	4.2	1.5	1.1	0.0	3.2	5.8	2.3
초등학교	28.6	28.9	28.3	27.5	37.6	28.2	25.2	41.9	13.9	16.1	17.4	30.8	13.9	19.3	29.5	14.9
중학교	17.8	20.1	18.2	14.7	16.5	18.2	13.4	8.2	15.2	14.1	16.1	24.2	15.8	13.0	20.2	16.0
고등학교	30.5	27.9	32.3	31.7	19.9	36.5	45.6	38.3	47.1	39.5	47.4	34.5	41.6	39.8	32.1	45.7
대학이상	14.3	14.0	14.7	18.4	9.7	11.8	9.3	11.6	22.3	26.2	17.7	9.4	28.7	24.8	12.4	21.1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표 5-1-3〉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3급)	경증(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9	2.9	16.9	2.1	0.7	2.9	15.4	7.0	9.9
초등학교	28.6	22	37.6	64.1	2.5	14.3	43.4	26.3	30.0
중학교	17.8	19.3	15.7	21.0	6.3	20.3	18.9	15.6	19.1
고등학교	30.5	37.1	21.5	11.9	52.8	44.1	16.3	35.9	27.3
대학이상	14.3	18.7	8.2	0.8	37.8	18.4	6.0	15.2	13.7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0.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8.9%, 중학교 17.8%, 대학이상 14.3%, 무학 8.9%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비율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각각 16.4%, 9.1%로 가장 높음
  - 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5.6%로 여성 29.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90.6%로 가장 높고, 45-46세 이하 62.5%, 65세 이상 22.3%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중증이 51.1%로 경증 41.0%보다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2) 보육

(1) 보육시설 이용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100.0
	일반보육시설	11.3	-	6.5	41.9	32.7	21.0	9.4	5.8	-	-	-	-	27.3	-	-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9	-	2.5	-	-	14.3	3.2	4.4	-	-	-	-	-	-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5.5	-	5.0	-	-	-	-	5.0	-	-	-	-	-	-	-	-
	기타	5.5	-	6.9	-	-	10.6	8.2	1.4	-	-	-	-	-	-	-	-
	다니지 않음	77.2	-	79.1	58.1	67.3	54.1	79.1	83.4	-	100.0	100.0	-	72.7	100.0	100.0	100.0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	-
	1-5시간	32.4	-	45.1	-	-	40.9	24.7	48.6	-	-	-	-	100.0	-	-	-
	6-10시간	67.6	-	54.9	100.0	100.0	59.1	75.3	51.4	-	-	-	-	-	-	-	-
	평균이용시간	5.9	-	4.7	8.0	7.4	5.7	6.5	5.0	-	-	-	-	5.0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	100	100	100	100	100	-	-	-	-	100	-	-	-
	무료	56.0	-	63.8	-	100.0	46.8	54.9	51.9	-	-	-	-	100.0	-	-	-
	1-5만원	28.6	-	36.2	100.0	-	25.1	28.0	21.2	-	-	-	-	-	-	-	-
	6-10만원	10.5	-	-	-	-	13.8	17.1	12.2	-	-	-	-	-	-	-	-
	11-15만원	0.9	-	-	-	-	6.0	-	-	-	-	-	-	-	-	-	-
	16-20만원	0.7	-	-	-	-	-	-	3.7	-	-	-	-	-	-	-	-
	평균비용	3.3	-	-	-	-	8.3	-	11.1	-	-	-	-	-	-	-	-

주: 1)'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7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는 일반보육시설 11.3%,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각각 3.9%, 5.5% 순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보육시설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는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 8시간, 청각장애가 7.4시간 순임
  -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56.0%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28.6%, 6-10만원 10.5% 순임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자폐성애가 1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장애가 8.3만원 순임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보육시설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일반보육시설	11.3	14.0	3.2	11.3	–	–	–	9.9	19.1
	장애아통합보육시설	3.9	4.7	1.5	3.9	–	–	–	3.4	6.8
	장애아전담보육시설	2.1	2.8	–	2.1	–	–	–	2.5	–
	기타	5.5	3.8	10.6	5.5	–	–	–	6.0	3.0
	다니지 않음	77.2	74.7	84.7	77.2	–	–	–	78.3	71.1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5시간	32.4	29.8	45.1	32.4	–	–	–	32.1	33.7
	6–10시간	67.6	70.2	54.9	67.6	–	–	–	67.9	66.3
	평균이용시간	5.9	5.9	6.1	5.9	–	–	–	5.9	6.3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무료	56.0	50.9	80.7	56.0	–	–	–	58.1	46.6
	1–5만원	28.6	33.5	4.4	28.6	–	–	–	27.7	32.4
	6–10만원	10.5	12.1	2.7	10.5	–	–	–	10.8	9.1
	11–15만원	0.9	1.1	–	0.9	–	–	–	–	5.0
	16–20만원	0.7	0.8	–	0.7	–	–	–	0.8	–
	21만원 이상	3.3	1.5	12.1	3.3	–	–	–	2.5	6.9
	평균비용	3.9	3.1	7.7	3.9	–	–	–	3.6	5.3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3.2%로 남성 14.0%보다 낮음

- 여성의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시간으로 남성 5.9시간보다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도 여성은 7.7만원, 남성은 3.1만원으로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은 71.1% 중증은 78.3%로 경증이 보육시설을 더 많이 다니지 않음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174	8,339	6,751	5,860	891	3,297	174	876	233	1,146	483	180	205
2015년	175	8,441	6,845	5,895	950	3,306	174	821	231	1,190	488	185	217
2016년	177	8,504	7,121	6,158	963	3,486	177	810	277	1,279	501	187	255
2017년	176	8,468	7,023	6,105	918	3,529	176	829	291	1,258	524	187	264
2018년	176	8,397	7,065	6,211	854	3,596	176	909	318	1,202	549	187	255
2019년	176	8,444	7,095	6,301	794	3,730	176	948	400	1,185	567	189	265
2020년	176	8,447	6,923	6,205	718	3,737	176	1,028	414	1,099	562	190	268
2021년	177	8,427	6,912	6,261	651	3,794	177	1,138	465	977	567	192	278
서울	8	290	215	193	22	124	8	28	10	39	12	8	19
부산	16	602	530	528	2	299	16	72	20	103	52	16	20
대구	17	989	808	771	37	433	17	140	37	117	78	20	24
인천	6	126	117	117	0	96	6	31	24	9	11	6	9
광주	11	640	556	502	54	283	11	79	22	87	48	14	22
대전	4	100	94	92	2	64	4	25	9	7	9	5	5
울산	10	506	410	365	45	224	10	86	34	39	34	11	10
세종시	1	39	24	24	0	18	1	6	4	2	2	1	2
경기도	21	821	708	626	82	425	21	95	79	123	57	23	27
강원	4	199	128	125	3	67	4	28	9	12	6	4	4
충북	7	342	277	224	53	144	7	47	29	24	17	7	13
충남	10	441	378	312	66	199	10	70	29	32	24	9	25
전북	10	463	359	335	24	184	10	66	5	54	24	10	15
전남	13	804	625	538	87	332	13	98	40	84	59	18	20
경북	14	940	809	708	101	429	14	120	61	118	69	15	32
경남	21	924	684	667	17	383	21	125	39	99	53	21	25
제주	4	201	190	134	56	90	4	22	14	28	12	4	6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임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 2021년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전체 177개소이며, 경기와 경남이 21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구 17개소, 부산 16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대구가 77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708명, 경남이 667명 순이었음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가 1,138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현황을 보였으며, 지역별 전체 보육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가 433명으로 가장 많고, 당음으로 경북 429명, 경기 425명 순임

(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872	80,573	72,007	3,835	68,172	12,944	868	616	8,399	698	56	1,296	1,011
2015년	899	82,991	73,212	3,929	69,283	13,466	894	552	8,794	785	55	1,344	1,042
2016년	911	84,019	75,122	4,079	71,043	13,796	905	544	9,011	827	58	1,398	1,053
2017년	946	86,673	77,339	4,066	73,273	14,446	940	558	9,535	833	64	1,435	1,081
2018년	1,000	90,431	79,250	4,189	75,061	15,355	984	610	10,266	809	72	1,515	1,099
2019년	1,100	97,770	85,163	4,568	80,595	17,303	1,096	720	11,772	821	87	1,668	1,139
2020년	1,211	105,805	89,691	4,959	84,732	19,639	1,201	919	13,630	802	83	1,787	1,217
2021년	1,317	113,084	93,828	5,578	88,250	21,645	1,308	1,202	15,051	701	85	1,940	1,358
서울	404	36,870	30,208	1,810	28,398	7,075	404	309	4,829	342	57	602	532
부산	64	4,495	3,648	190	3,458	852	64	37	594	29	0	76	52
대구	9	793	635	74	561	160	9	16	102	8	0	12	13
인천	98	7,720	6,384	512	5,872	1,623	96	133	1,156	28	13	146	51
광주	5	307	238	12	226	68	5	0	49	4	0	6	4
대전	26	1,569	1,278	75	1,203	373	25	18	271	7	0	37	15
울산	18	1,686	1,382	117	1,265	321	18	28	214	12	0	32	17
세종	8	1,601	1,341	33	1,308	318	8	7	238	3	0	25	37
경기	468	40,067	34,830	1,969	32,861	7,592	465	446	5,387	222	12	726	334
강원	24	2,199	1,667	107	1,560	403	24	28	267	6	0	34	44
충북	10	923	661	34	627	142	10	9	97	3	0	13	10
충남	34	2,564	1,827	92	1,735	438	34	25	277	4	0	34	64
전북	9	950	517	45	472	132	9	11	85	4	3	9	11
전남	21	2,159	1,601	56	1,545	339	21	18	239	1	0	31	29
경북	26	1,995	1,489	129	1,360	370	23	32	244	7	0	24	40
경남	32	2,717	2,211	156	2,055	506	32	43	340	10	0	45	36
제주	61	4,469	3,911	167	3,744	933	61	42	662	11	0	88	69

주: 1) 각년도 12월 말 기준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 2021년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은 전체 1,317개소이며, 경기도가 468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04개소, 인천 98개소 순임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경기도가 1,81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810명, 인천이 512명명 순이었음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1,202명, 특수교사는 701명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유치원

(1) 유치원 이용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
	일반유치원	6.5	–	3.6	41.9	37.9	10.1	4.0	–	–	–	34.5	–	–	–	–	–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6	–	–	–	–	23.8	2.0	7.9	–	–	–	–	–	–	–	–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	–	–	–	–	2.7	3.2	–	–	–	–	–	–	–	–
	기타	0.1	–	–	–	–	1.4	–	–	–	–	–	–	–	–	–	–
	다니지 않음	86.9	–	96.4	58.1	62.1	64.8	91.3	89.0	–	100.0	65.5	–	100.0	100.0	100.0	100.0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
	1–5시간	37.0	–	–	–	–	28.4	69.3	61.8	–	–	–	–	–	–	–	–
	6–10시간	63.0	–	100.0	100.0	100.0	71.6	30.7	38.2	–	–	100.0	–	–	–	–	–
	평균이용시간	6.0	–	8.0	8.0	6.3	5.6	5.9	5.1	–	–	6.0	–	–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	–	–	–
	무료	44.4	–	–	–	27.3	53.8	46.4	77.8	–	–	–	–	–	–	–	–
	1–5만원	33.2	–	–	100.0	72.7	27.7	22.9	–	–							
	6~10만원	13.3	–	100.0	–	–	3.9	30.7	–	–	–	–	–	–	–	–	–
	11~15만원	–	–	–	–	–	–	–	–	–	–	–	–	–	–	–	–
	16~20만원	2.5	–	–	–	–	–	–	5.5	–	–	100.0	–	–	–	–	–
	21만원이상	6.6	–	–	–	–	14.7		16.7	–	–	–	–	–	–	–	–
	평균비용	4.9	–	10.0	5.0	2.2	6.0	3.3	6.1	–	–	20.0	–	–	–	–	–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8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일반유치원 6.5%,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4.6%, 특수학교 유치원(부)가 1.8%로 순임

- 장애유형별로 일반유치원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에는 언어장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는 자폐성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0시간이 6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가 8.0시간, 청각장애 6.3시간 순임
-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1–5만원이 33.2%로 가장 많았고, 무료가 44.4%임
- 장애유형별 월 평균 비용은 심장장애가 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각장애가 2.2만원으로 가장 낮음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유치원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일반유치원	6.5	7.9	2.4	6.5	-	-	-	4.3	19.8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4.6	4.0	6.3	4.6	-	-	-	3.6	10.4
	특수학교 유치원(부)	1.8	1.1	4.1	1.8	-	-	-	2.2	-
	기타	0.1	-	0.4	0.1	-	-	-	0.1	-
	다니지 않음	86.9	87.0	86.8	86.9	-	-	-	89.9	69.8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1-5시간	37.0	35.1	42.6	37.0	-	-	-	47.0	17.4
	6-10시간	63.0	64.9	57.4	63.0	-	-	-	53.0	82.6
	평균이용시간	6.0	5.9	6.4	6.0	-	-	-	5.9	6.3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무료	44.4	49.8	28.6	44.4	-	-	-	53.9	25.9
	1-5만원	33.2	42.8	5.1	33.2	-	-	-	13.3	72.1
	6~10만원	13.3	-	52.3	13.3	-	-	-	20.1	-
	11~15만원	-	-	-	-	-	-	-	-	-
	16~20만원	2.5	3.4	-	2.5	-	-	-	3.8	-
	21만원 이상	6.6	4.1	14.0	6.6	-	-	-	9.0	2.0
	평균비용	4.9	3.3	9.6	4.9	-	-	-	5.7	3.5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86.8%, 남성은 87.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낮음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이 6.4시간, 남성은 5.9시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시간이 더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중증이 89.9%, 경증이 69.8%로 경증에 비해 중증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

4)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수

〈표 5-4-1〉 특수학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 교)

구분	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2009	150	5	55	90	12	18	94	18	8	–	–	–	–	–	–
2010	150	5	55	90	12	18	95	18	7	18	118	140	139	136	83
2011	155	5	59	91	12	18	100	18	7	23	118	145	145	141	100
2012	156	5	60	91	12	16	102	19	7	23	116	145	146	143	108
2013	162	5	66	91	12	16	107	20	7	25	119	150	152	149	115
2014	166	5	69	92	12	15	112	20	7	22	120	154	157	155	121
2015	167	5	70	92	12	15	113	20	7	23	118	155	158	155	127
2016	170	5	74	91	12	14	119	18	7	24	124	158	161	160	133
2017	173	5	76	92	12	14	121	19	7	21	122	159	162	162	137
2018	175	5	78	92	13	14	121	20	7	26	125	161	164	163	143
2019	177	5	81	91	13	14	122	21	7	28	127	163	166	164	147
2020	182	5	87	90	13	14	126	22	7	28	133	167	170	169	154
2021	187	5	92	90	13	14	132	21	7	29	135	172	176	174	158
서울	32	3	11	18	3	4	16	6	3	8	24	28	28	28	26
부산	15	0	8	7	1	1	12	1	0	7	10	12	13	11	9
대구	10	0	4	6	1	1	5	2	1	0	4	10	10	10	9
인천	10	0	6	4	1	1	7	1	0	1	7	9	10	9	8
광주	5	0	3	2	1	0	3	1	0	3	4	5	5	5	4
대전	6	0	4	2	1	0	4	1	0	2	6	6	6	6	6
울산	4	0	2	2	0	1	3	0	0	0	3	4	4	4	4
세종	1	0	1	0	0	0	1	0	0	1	1	1	1	1	1
경기	38	2	14	22	0	2	32	3	1	3	32	33	35	35	28
강원	8	0	7	1	1	1	6	0	0	0	6	8	8	8	7
충북	10	0	3	7	2	1	4	2	1	2	10	10	10	10	10
충남	9	0	7	2	0	0	8	1	0	1	3	8	8	9	8
전북	10	0	6	4	1	1	6	2	0	1	5	9	9	9	9
전남	8	0	3	5	1	1	6	0	0	0	6	8	8	8	8
경북	8	0	3	5	0	0	7	0	1	0	5	8	8	8	8
경남	10	0	8	2	0	0	10	0	0	0	6	10	10	10	10
제주	3	0	2	1	0	0	2	1	0	0	3	3	3	3	3

주: 2021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21년 특수학교의 수는 187개교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수학교의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개교, 부산 15개교 순임
  -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92개교로 가장 많으며, 사립 90개교, 국립 5개교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32개교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21개교, 청각장애 14개교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중학교가 176개교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74개교, 초등학교 172개교 순임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특수학급 수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단위: 교, 개)

구분	학교수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5,797	7,792	40	7,641	111	274	4,682	1,748	1,088
2011	6,243	8,415	41	8,236	138	287	4,897	1,971	1,260
2012	6,595	8,927	45	8,726	156	344	4,999	2,144	1,440
2013	6,915	9,343	46	9,102	195	380	5,085	2,268	1,610
2014	7,136	9,617	48	9,363	206	464	5,073	2,353	1,709
2015	7,378	9,868	46	9,590	232	551	5,121	2,378	1,789
2016	7,543	10,065	46	9,781	238	640	5,155	2,353	1,917
2017	7,799	10,325	46	10,036	243	731	5,281	2,364	1,916
2018	8,200	10,676	46	10,377	253	853	5,380	2,372	1,971
2019	8,200	11,105	46	10,807	252	949	5,807	2,384	1,965
2020	8,523	11,661	46	11,351	264	1,086	6,132	2,468	1,975
2021	8,729	12,042	46	11,725	271	1,228	6,330	2,518	1,966
서울	–	1,468	7	1,430	31	126	774	302	266
부산	–	600	2	586	12	42	342	124	92
대구	–	465	4	459	2	38	256	94	77
인천	–	717	1	708	8	87	384	135	111
광주	–	301	4	287	10	21	166	64	50
대전	–	378	0	367	11	54	178	86	60
울산	–	304	0	304	0	37	156	64	47
세종	–	129	0	129	0	32	58	25	14
경기	–	3,224	0	3,162	62	396	1,578	680	570
강원	–	388	3	385	0	31	219	80	58
충북	–	509	8	497	4	64	261	102	82
충남	–	738	4	724	10	84	388	150	116
전북	–	462	3	450	9	51	259	89	63
전남	–	626	1	618	7	47	353	135	91
경북	–	676	1	621	54	31	386	149	110
경남	–	912	3	860	49	75	492	208	137
제주	–	145	5	138	2	12	80	31	22

주: 1) 학교 수 :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수
2) 2010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학급 포함(인천)
3) 2011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학급 포함(인천 1, 경기 1)
4) 2012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5학급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3)
5) 2013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7학급 고등학교에 포함(인천 공립 2, 경기 공립4, 충북공립 1)
6) 2014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18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2, 경기 12, 충북 3)
7) 2015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9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8) 2016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2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3)
9) 2017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10) 2019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11) 2020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4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6, 충북 4)
12) 2021년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4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2, 인천 2, 경기 25, 충북 4)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21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수는 8,729개교, 특수학급 수는 12,042개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수를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11,725개로 가장 많았고 사립 271개, 국립 46개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6,330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518개, 고등학교 1,966개, 유치원 1,228개 순임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3)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2009	23,606	1,470	1,257	15,353	3,206	860	983	92	13	16	356
2010	23,776	1,563	1,150	15,316	3,238	895	1,267	79	15	24	229
2011	24,580	1,495	1,153	15,819	3,371	429	1,917	86	20	35	255
2012	24,720	1,479	1,060	15,513	3,548	340	2,459	79	12	19	211
2013	25,138	1,468	1,053	15,172	3,584	279	3,191	113	38	33	207
2014	25,288	1,380	976	15,235	3,615	217	3,531	76	23	29	206
2015	25,531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016	25,467	1,313	863	14,285	3,889	97	4,639	97	18	12	254
2017	25,798	1,307	819	14,379	3,858	229	4,747	88	15	33	323
2018	25,919	1,260	762	14,390	3,680	214	6,065	124	20	30	374
2019	26,084	1,221	709	14,205	3,730	210	5,424	134	17	16	418
2020	26,299	1,188	647	14,230	3,751	69	5,727	148	12	13	514
2021	27,027	1,130	605	14,356	3,826	79	6,247	159	19	7	599
서울	4,473	319	263	1,648	907	11	1,123	7	0	0	195
부산	1,872	75	27	878	302	15	469	8	2	2	94
대구	1,738	55	43	959	266	2	329	12	1	0	71
인천	1,765	93	39	970	221	11	398	23	2	0	8
광주	1,036	94	11	532	175	1	209	4	0	0	10
대전	1,039	122	16	527	99	0	269	0	0	0	6
울산	759	16	31	473	69	4	161	1	2	0	2
세종	175	1	0	78	29	0	58	0	0	0	9
경기	5,153	38	34	2,921	607	1	1,449	34	2	0	67
강원	812	55	8	508	52	3	154	3	1	0	28
충북	1,286	139	86	681	164	7	190	5	0	0	14
충남	1,129	5	9	669	176	2	238	9	4	0	17
전북	1,085	50	9	676	140	2	159	21	0	0	28
전남	1,122	51	11	734	113	13	190	2	1	0	7
경북	1,433	0	5	1,002	106	3	280	19	0	5	13
경남	1,670	14	10	870	318	4	421	5	3	0	25
제주	480	3	3	230	82	0	150	6	1	0	5

주: 1) 정신지체: 2016.2.3.부터 지적장애로 개정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 구분과 다름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21년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7,02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5,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73명, 부산 1,872명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356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과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6,247명, 지체장애 3,826명 순임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9	23,606	958	10,641	12,007
2010	23,776	948	10,842	11,986
2011	24,580	946	11,313	12,321
2012	24,720	904	11,536	12,280
2013	25,138	892	12,232	12,014
2014	25,288	858	12,706	11,724
2015	25,531	856	13,087	11,588
2016	25,467	855	13,416	11,196
2017	25,798	853	13,874	11,071
2018	25,919	857	14,091	10,971
2019	26,084	877	14,455	10,752
2020	26,299	862	14,940	10,497
2021	27,027	838	15,740	10,449
서울	4,473	457	1,733	2,283
부산	1,872	-	1,327	545
대구	1,738	-	985	753
인천	1,765	-	1,357	408
광주	1,036	-	786	250
대전	1,039	-	746	293
울산	759	-	521	238
세종	175	-	175	-
경기	5,153	381	2,619	2,153
강원	812	-	735	77
충북	1,286	-	477	809
충남	1,129	-	911	218
전북	1,085	-	647	438
전남	1,122	-	546	576
경북	1,433	-	411	1,022
경남	1,670	-	1,451	219
제주	480	-	313	167

자료: 교육부(각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전체 27,027명 중 국 · 공립학교에 다니는 수가 총 16,578명으로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전남, 경북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국 · 공립학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립학교 대상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단위: 명)

구분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9	39,380	-	-	-	720	22,469	9,197	6,994
2010	42,021	256	41,087	678	815	22,886	10,230	8,090
2011	43,183	266	42,112	805	924	22,414	10,951	8,894
2012	44,433	261	43,248	924	1,138	21,695	11,659	9,941
2013	45,181	262	43,762	1,157	1,394	21,087	12,023	10,677
2014	45,803	267	44,349	1,187	1,675	20,586	11,973	11,569
2015	46,351	254	44,808	1,293	2,039	20,991	11,312	12,009
2016	46,645	233	45,123	1,289	2,504	21,192	10,602	12,347
2017	47,564	250	46,012	1,302	2,763	22,400	10,256	12,145
2018	48,848	256	47,295	1,298	3,058	24,169	9,990	11,631
2019	50,812	265	49,323	1,224	3,422	26,282	9,907	11,201
2020	52,744	253	51,204	1,287	3,866	27,713	10,327	10,838
2021	54,266	258	52,723	1,285	4,444	28,484	10,755	10,583
서울	6,358	49	6,146	163	421	3,343	1,352	1,242
부산	2,878	12	2,804	62	159	1,617	537	565
대구	2,085	29	2,053	3	146	1052	413	474
인천	3,435	4	3,379	52	305	1,879	672	579
광주	1,435	25	1,361	49	87	793	279	276
대전	1,749	0	1,691	58	197	843	357	352
울산	1,462	0	1,462	0	144	767	307	244
세종	479	0	479	0	120	223	72	64
경기	14,836	0	14,560	276	1,377	7,454	2,871	3,134
강원	1,687	19	1,668	0	131	940	323	293
충북	2,267	44	2,203	20	253	1115	407	492
충남	3,296	18	3,238	40	333	1,709	648	606
전북	1,968	11	1,918	39	181	1079	383	325
전남	2,593	4	2,550	39	155	1,449	526	463
경북	2,775	3	2,524	248	110	1,530	567	568
경남	4,141	12	3,910	219	272	2,228	892	749
제주	822	28	777	17	53	463	149	157

주: 1) 2010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5명 포함
2) 2011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6명 포함
3) 2012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30명(인천 10명, 경기 20명) 포함
4) 2013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46명(인천 13명, 경기 27명, 충북 6명) 고등학교에 포함
5) 2014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15명(인천 22명, 대구 11명, 경기 65명, 충북 17명) 고등학교에 포함
6) 2015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고등학교에 포함
7) 2016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5명(대구 11명, 인천 27명, 경기 155명, 충북 22명) 고등학교에 포함
8) 2017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고등학교에 포함
9) 2019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23명(대구 11명, 인천 25명, 경기 151명, 충북 36명) 고등학교에 포함
10) 2020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13명(대구 11명, 인천 19명, 경기 147명, 충북 36명) 고등학교에 포함
11) 2021년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2020명(대구 22명, 인천 15명, 경기 149명, 충북 34명) 고등학교에 포함

자료: 교육부(각년도).「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특수학급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2015년과 2016년에 학생 수가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났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듦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학생이 14,836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 수 보다 많았으며, 그 중 공립학교 학생수가 14,5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졸업생 진로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전공과	대학 (전문대 포함)	
2009	5,317	2,018	1,258	759	38.0
2010	6,937	2,359	1,391	968	34.0
2011	6,663	2,509	1,577	932	37.7
2012	7,493	2,828	1,803	1,025	37.7
2013	8,103	2,992	1,967	1,025	36.9
2014	8,672	3,266	2,139	1,127	37.7
2015	8,979	3,358	2,212	1,146	37.4
2016	9,482	3,471	2,246	1,225	36.6
2017	9,786	3,595	2,391	1,204	36.8
2018	10,063	3,668	2,367	1,301	36.5
2019	9,961	3,835	2,503	1,309	38.5
2020	9,586	3,752	2,513	1,239	39.1
2021	9,308	3,751	2,437	1,314	40.7
2022	9,378	3,831	2,450	1,381	40.9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167	1,307	1,234	73	60.3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497	1,795	1,179	616	51.3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098	698	37	661	63.6
전공과 졸업자	2,616	31	0	25	1.7

주: 1)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2)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5) 2022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통계」. pp.8.

– 2022년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와 진학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2021년 40.7%에서 2021년 40.9%로 다소 증가함. 고등학교 졸업이후 진로는 전공과에 비하여 절반 정도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진학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63.6%로 갖아 높고,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60.3%,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51.3%, 전공자 졸업자 1.7%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진학률 보다 전공과로의 진학의 비율이 더 높으며, 그 비율은 특수학교가 특수학급에 비해 높음.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전체 진학자 698명중 661명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취업													취업률
		전체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임업 어업	제과 제빵	IT정보 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 등	기타	
2009	5,317	1,632	29	245	37	21	16	7	133	122	14	90	863	55	49
2010	6,937	1,937	16	196	121	62	13	10	126	121	32	385	933	225	42
2011	6,663	2,100	14	405	21	30	16	7	118	143	40	66	749	491	51
2012	7,493	2,338	19	412	26	33	26	5	120	208	63	98	711	617	50
2013	8,103	1,788	17	451	19	53	16	2	105	314	138	139	–	534	36
2014	8,672	2,187	8	512	24	48	35	10	110	334	170	168	–	768	40

구분	졸업생 수	취업													취업률
		전체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2015	8,979	1,710	43	522	21	15	119	64	17	150	211	12	125	68	343	30.4
2016	9,482	1,639	44	611	22	14	127	63	31	122	168	10	120	49	258	27.3
2017	9,786	1,847	73	633	14	10	109	80	59	153	262	10	140	29	275	29.8
2018	9,694	1,903	49	641	9	14	148	93	51	193	283	16	139	29	238	31.0
2019	9,961	1,773	59	252	279	8	41	42	77	131	283	19	167	34	251	30.3
2020	9,586	1,774	97	482	10	7	101	62	26	219	255	29	234	40	212	30.4
2021	9,308	1,826	102	477	9	16	117	38	24	245	244	23	232	49	250	32.9
2022	9,378	1,843	99	471	8	13	95	65	24	301	263	40	211	27	226	33.2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2,167	59	1	21	0	2	4	1	1	1	2	4	8	0	14	6.9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497	559	29	110	6	2	39	0	11	85	94	9	84	14	76	32.8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1,098	53	3	10	1	0	6	0	1	1	9	3	4	0	15	13.3
전공과 이수자	2,616	1,172	66	330	1	9	46	64	11	214	158	24	115	13	121	45.3

주: 1)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2) 복지관 등: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3) 취업률 기준 변경: 2013년부터 취업자에 복지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등의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제외
4)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부터 취업 분류가 세분화 됨
5) 2021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통계」 pp.8

– 2022년 전체 졸업생 수 9,378 명 중 취업한 경우는 1,843명으로 33.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함. 취업분야는 제품제조 분야가 4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음료 서비스 분야 263명, 사무보조 분야 211명 순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공과 이수자가 4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이 32.8%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연도별	2009	12,145	82.8	88.1	79.8	79.2	64.3	51.2
	2010	11,655	84.8	87.9	80.3	81.9	62.1	51.1
	2011	11,788	89.1	93.7	87.0	86.1	71.0	64.3
	2012	11,897	93.2	97.2	93.4	90.7	80.4	72.0
	2013	12,122	91.6	94.7	93.2	92.8	78.1	73.6
	2014	12,253	93.6	96.0	94.1	94.5	89.6	82.5
	2015	12,332	95.5	97.4	95.8	96.0	93.0	88.0
	2016	12,442	96.6	97.9	96.9	97.3	95.7	90.4
	2017	12,292	94.5	95.4	94.5	95.0	93.1	89.7
	2018	12,117	95.6	97.5	95.3	91.7	85.6	79.8
	2019	12,116	96.4	97.8	95.9	92.9	87.2	81.8
	2020	12,174	96.9	98.2	96.6	94.3	89.2	85.8
설립별	국공립	10,381	97.9	98.5	97.6	95.4	91.6	89.0
	사립	1,793	91.4	96.4	90.8	88.1	75.0	67.7
학교급별	초등학교	6,287	97.3	97.7	96.9	94.9	91.6	87.2
	중학교	3,242	96.9	98.9	96.9	94.4	87.5	84.3
	고등학교	2,389	95.9	98.8	95.6	92.7	84.7	83.8
	특수학교	182	99.5	97.8	100.0	100.0	100.0	97.8
	각종학교	74	90.5	87.8	83.8	83.8	75.7	70.3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7,809	98.9	99.3	98.8	96.9	93.5	93.6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4,365	93.4	96.2	92.7	89.8	81.4	71.8

자료: 교육부(각 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2020년 교육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2.7%로써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추가 추세를 보임. 편의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가 용이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98.2%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단 또는 승강기 85.8%, 경보 및 피난설비 86.5%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안내시설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설치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평균 99.0%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종학교는 7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계속)

(단위: 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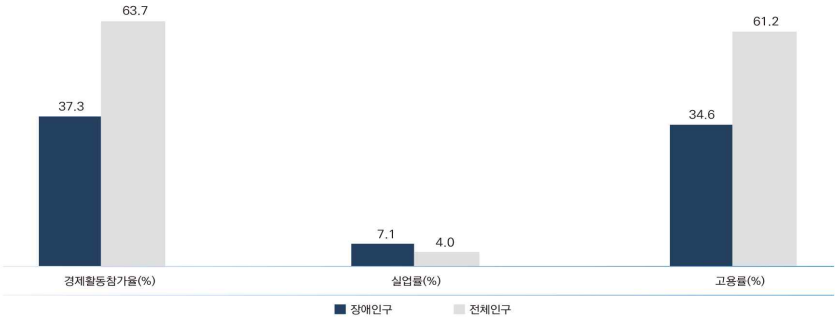
구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연도별	2009	81.9	-	-	-	-	75.3
	2010	80.4	67.9	35.8	37.1	48.0	65.2
	2011	88.8	81.1	57.5	51.9	67.2	76.2
	2012	94.0	87.6	72.9	70.1	80.3	84.7
	2013	92.3	79.8	68.8	55.8	75.0	81.4
	2014	93.0	82.6	72.6	64.8	77.8	85.6
	2015	94.7	89.4	80.1	70.8	84.2	89.5
	2016	95.8	90.0	83.4	75.5	85.4	91.4
	2017	93.9	89.5	89.0	82.6	89.5	91.5
	2018	96.3	90.7	90.0	85.5	81.9	90.0
	2019	96.9	91.8	91.7	87.7	84.3	91.3
	2020	92.8	97.4	93.4	89.7	86.5	92.7
학교별	국공립	93.3	97.9	94.3	9038.0	87.7	94.0
	사립	87.7	94.0	86.3	83.1	79.5	85.5
학교급별	초등학교	93.7	97.2	93.6	90.1	87.0	93.4
	중학교	91.6	97.9	93.0	89.4	85.5	92.4
	고등학교	90.5	97.1	92.0	88.8	86.2	91.5
	특수학교	98.9	99.5	96.7	98.9	99.5	99.0
	각종학교	74.3	87.8	79.7	67.6	67.6	79.0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94.5	99.3	95.9	92.2	89.6	95.7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88.8	93.9	88.1	85.1	81.1	87.5

자료: 교육부(각 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학급설치 여부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99.3%로 가장 높은 반면, 경보 및 피난설비(89.6%)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수학급 미설치 초 · 중 · 고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율이 96.2%로 가장 높은 반면, 계단 또는 승강기(71.8%)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수학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7%이상의 설치율을 보였음

6. 노동과 직업재활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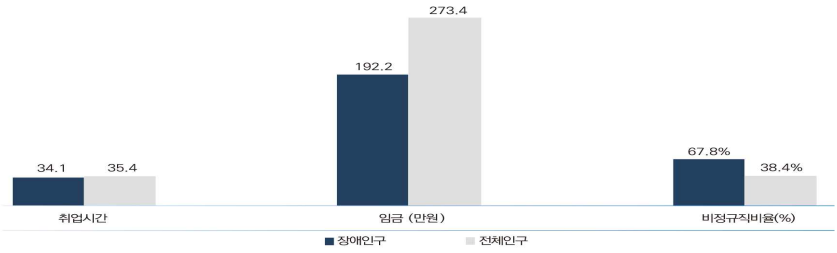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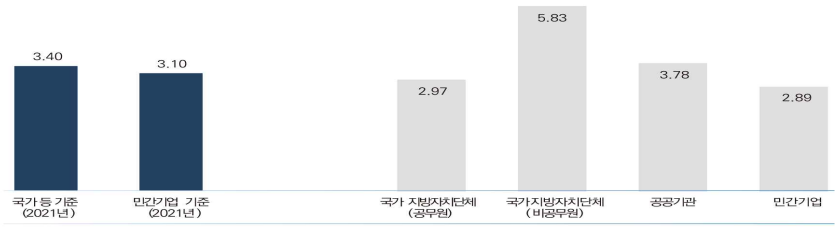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63.7% 보다 26.4%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7.1%로 전체인구 4.0%보다 3.1%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7.3%로 전체인구 63.7% 보다 26.6%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2019년-2021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실업률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 감소하나, 2021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였고, 고용률은 0.5%p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5%p 증가했음.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각각 0.5%p, 1.1%p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정체함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1년)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1년)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4%, 민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

-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인 35.4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73.4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92.2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70.3%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고용률은 3.10%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의무고용률 3.10%에 미치지 못함

1) 경제활동

(1) 경제활동상태

〈표 6-1-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전체	2,574,907	100.0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남성	1,482,416	57.6	697,101	649,036	48,065	785,315	47.0	6.9	43.8
	여성	1,092,491	42.4	262,849	242,768	20,081	829,642	24.1	7.6	22.2
	15-29세	129,917	5.0	51,385	46,965	4,420	78,532	39.6	8.6	36.2
	30-39세	122,303	4.7	76,695	68,937	7,758	45,608	62.7	10.1	56.4
	40-49세	242,691	9.4	143,630	133,464	10,166	99,061	59.2	7.1	55.0
	50-59세	451,634	17.5	241,544	227,320	14,225	210,090	53.5	5.9	50.3
	60세 이상	1,628,362	63.2	446,696	415,118	31,578	1,181,666	27.4	7.1	25.5
	서울	385,485	15.0	120,204	111,763	8,441	265,281	31.2	7.0	29.0
	경기도	554,220	21.5	215,182	194,897	20,285	339,038	38.8	9.4	35.2
	광역시도	628,137	24.4	227,502	213,052	14,449	400,635	36.2	6.4	33.9
	기타시도	1,007,065	39.1	397,063	372,092	24,970	610,002	39.4	6.3	36.9
	중졸이하	1,453,046	56.4	377,908	351,007	26,902	1,075,138	26.0	7.1	24.2
	고졸	753,280	29.3	348,714	323,537	25,177	404,566	46.3	7.2	43.0
	대졸이상	368,581	14.3	233,328	217,260	16,067	135,254	63.3	6.9	58.9
전체인구	전체	45,049,000	100.0	28,698,000	27,550,000	1,148,000	16,351,000	63.7	4.0	61.2
	남성	22,184,000	49.2	16,298,000	15,645,000	653,000	5,886,000	73.5	4.0	70.5
	여성	22,865,000	50.8	12,400,000	11,905,000	495,000	10,465,000	54.2	4.0	52.1
	15-29세	8,799,000	19.5	4,310,000	3,908,000	402,000	4,488,000	49.0	9.3	44.4
	30-39세	6,996,000	15.5	5,472,000	5,291,000	181,000	1,524,000	78.2	3.3	75.6
	40-49세	8,170,000	18.1	6,513,000	6,327,000	186,000	1,657,000	79.7	2.9	77.4
	50-59세	8,540,000	19.0	6,638,000	6,447,000	191,000	1,902,000	77.7	2.9	75.5
	60세 이상	12,544,000	27.8	5,764,000	5,576,000	188,000	6,780,000	46.0	3.3	44.5
	서울	8,538,000	19.0	5,370,000	5,088,000	282,000	3,168,000	62.9	5.3	59.6
	경기도	11,664,000	25.9	7,503,000	7,179,000	324,000	4,161,000	64.3	4.3	61.5
	광역시도	11,120,000	24.7	6,870,000	6,587,000	283,000	4,252,000	61.8	4.1	59.2
	기타시도	13,728,000	30.5	8,956,000	8,695,000	261,000	4,772,000	65.2	2.9	63.3
	중졸이하	10,264,000	22.8	4,076,000	3,950,000	125,000	6,188,000	39.7	3.1	38.5
	고졸	16,908,000	37.5	10,749,000	10,268,000	482,000	6,159,000	63.6	4.5	60.7
	대졸이상	17,877,000	39.7	13,873,000	13,332,000	541,000	4,005,000	77.6	3.9	74.6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4)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2019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 경기 구분하고, 인천 광역시도에 넣어 통계 집계)
5)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19-124.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63.7% 보다 26.4%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구 7.1%로 전체인구 4.0%보다 3.1%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구 34.6%로 전체인구 61.2% 보다 26.4%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3.8%로 여성 22.2%에 비해 21.6%p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58.9%로 가장 높고, 고졸 43.0%, 중졸이하 24.2% 순임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비교

(단위: 명,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전체	38.7	37.0	37.3	37.0	37.3	0.3	5.7	6.6	6.3	5.9	7.1	1.2	36.5	34.5	34.9	34.9	34.6	-0.3
남성	49.5	47.1	48.5	46.5	47.0	0.5	5.5	6.3	6.0	5.8	6.9	1.1	46.8	44.1	45.6	43.8	43.8	0.0
여성	23.9	23.1	21.9	24.1	24.1	0.0	6.3	7.4	7.2	6.1	7.6	1.5	22.4	21.4	20.3	22.7	22.2	-0.5
15~29세	31.8	33.9	36.0	32.6	39.6	7.0	9.8	12.3	15.1	14.7	8.6	-6.1	28.7	29.7	30.6	27.8	36.2	8.4
30~39세	56.4	57.7	58.6	60.1	62.7	2.6	6.5	8.2	8.9	5.4	10.1	4.7	52.7	53.0	53.4	56.8	56.4	-0.4
40~49세	59.3	60.1	61.3	60.5	59.2	-1.3	4.7	6.4	4.8	5.7	7.1	1.4	56.5	56.3	58.4	57.0	55.0	-2.0
50~59세	55.1	56.1	57.0	52.4	53.5	1.1	4.6	5.7	6.5	6.6	5.9	-0.7	52.6	52.9	53.2	49.0	50.3	1.3
60세 이상	26.9	24.5	25.2	27.1	27.4	0.3	6.5	6.5	5.2	4.7	7.1	2.4	25.2	22.9	23.9	25.8	25.5	-0.3
중증	21.1	22.1	22.6	21.3	23.8	2.5	7.7	8.4	7.3	6.9	8.2	1.3	19.5	20.2	20.9	19.9	21.8	1.9
경증	46.9	43.9	43.3	44.2	43.3	-0.9	5.3	6.2	6.1	5.6	6.8	1.2	44.4	41.1	40.6	41.7	40.3	-1.4
신체 외부 지체장애	48.3	45.1	46.9	46.6	45.9	-0.7	5.0	5.8	5.4	4.9	6.6	1.7	45.9	42.5	44.3	44.4	42.8	-1.6
신체 외부 지체 외	12.8	14.5	13.4	14.9	16.2	1.3	5.7	12.5	6.7	11.5	15.6	4.1	12.1	12.7	12.5	13.2	13.7	0.5
감각 시각장애	46.5	44.6	45.6	44.6	43.0	-1.6	7.4	7.2	8.0	5.4	7.8	2.4	43.1	41.4	41.9	42.3	39.7	-2.6
감각 시각 외	35.0	33.9	29.5	32.3	34.0	1.7	5.2	5.9	7.7	6.5	5.5	-1.0	33.2	31.8	27.2	30.2	32.2	2.0
정신적	20.9	23.1	23.9	21.0	24.4	3.4	10.7	10.6	8.8	10.7	8.5	-2.2	18.7	20.6	21.8	18.7	22.3	3.6
발달	-	-	-	-	30.1	4.9	-	-	-	-	7.1	-1.1	-	-	-	-	28.0	4.8
신체내부	27.1	26.4	28.0	27.1	28.8	1.7	6.0	6.0	5.9	6.4	6.5	0.1	25.5	24.8	26.4	25.4	27.0	1.6
수도권	38.2	36.9	38.0	-	-	-	5.5	5.2	7.7	-	-	-	36.1	34.9	35.1	-	-	-
서울	-	-	34.1	34.0	31.2	-2.8	-	-	8.0	7.9	7.0	-0.9	-	-	31.3	31.3	29.0	-2.3
경기도	-	-	41.4	37.3	38.8	1.5	-	-	8.2	6.8	9.4	2.6	-	-	38.0	34.8	35.2	0.4
광역시도	35.8	36.4	35.3	33.6	36.2	2.6	5.1	10.8	6.7	7.7	6.4	-1.3	34.0	32.5	33.0	31.0	33.9	2.9
기타시도	40.7	37.4	37.5	40.1	39.4	-0.7	6.2	6.2	4.3	3.8	6.3	2.5	38.2	35.1	35.9	38.6	36.9	-1.7
중졸이하	27.6	25.9	24.8	25.9	26.0	0.1	5.2	7.0	5.6	5.5	7.1	1.6	26.2	24.0	23.4	24.5	24.2	-0.3
고졸	51.7	50.1	50.7	46.1	46.3	0.2	7.0	7.1	6.3	6.3	7.2	0.9	48.1	46.5	47.5	43.2	43.0	-0.2
대졸이상	60.9	58.7	60.3	64.0	63.3	-0.7	4.3	5.1	7.5	5.9	6.9	1.0	58.2	55.7	55.8	60.3	58.9	-1.4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4)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5)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7) 증감은 2021년 수치에서 2020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각 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감소하였다가 2021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실업률은 2021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고용률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감소함
- 2020년 대비 2021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0.3%p, 실업률은 1.2%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였고, 고용률은 0.5%p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5%p 증가했음.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모두 각각 0.5%p, 1.1%p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정체함

(2) 취업자 특성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27,550,000	100.0	891,804	100.0
성별	남성		15,645,000	56.8	649,036	72.8
	여성		11,905,000	43.2	242,768	27.2
연령별	15-29세		3,908,000	14.2	46,965	5.3
	30-39세		5,291,000	19.2	68,937	7.7
	40-49세		6,327,000	23.0	133,464	15.0
	50-59세		6,447,000	23.4	227,320	25.5
	60세 이상		5,576,000	20.2	415,118	46.5
장애정도별	중증		-	-	173,008	19.4
	경증		-	-	718,796	80.6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	-	516,256	57.9
		지체 외	-	-	33,549	3.8
	감각	시각	-	-	99,600	11.2
		시각 외	-	-	132,120	14.8
	정신적		-	-	69,903	7.8
	발달		-	-	58,602	6.6
	신체내부		-	-	40,376	4.5
지역별	서울		5,088,000	18.5	111,763	12.5
	경기		7,179,000	26.1	194,897	21.9
	광역시도		6,587,000	23.9	213,052	23.9
	기타 시도		8,695,000	31.6	372,092	41.7
학력별	중졸 이하		3,950,000	14.3	351,007	39.4
	고졸		10,268,000	37.3	323,537	36.3
	대졸 이상		13,332,000	48.4	217,260	24.4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2019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 경기 구분하고, 인천 광역시도에 넣어 통계 집계)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34
2)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취업률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남녀 성비는 56.8% 대 43.2%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구의 남녀성비는 72.8% 대 27.2%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른 취업률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49세까지는 전체인구의 취업률이 낮은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장애인구의 취업률이 전체인구의 취업률보다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취업률은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의 취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91,804	100.0	27,550,000	100.0
임금근로자	소계	618,515	69.4	20,887,000	75.8
	상용근로자	323,157	36.2	14,819,000	53.8
	임시근로자	205,590	23.1	4,760,000	17.3
	일용근로자	89,767	10.1	1,309,000	4.8
비임금근로자	소계	273,289	30.6	6,663,000	24.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932	4.5	1,317,000	4.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1,464	22.6	4,270,000	15.5
	무급 가족 종사자	31,894	3.6	1,075,000	3.9

주: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35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경우, 75.8%가 임금근로자인 반면에 장애인구는 69.4% 수준임
-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각각 53.8%, 36.2%이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각각 15.5%와 22.6%로 가장 높음
  - 임금근로자중 일용근로자 비율이 전체 인구 4.8%에 비해 장애인구는 10.1%로 더 높음

〈표 6-1-5〉 취업자의 산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91,804	100.0	618,515	100.0	273,289	100.0	27,550,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12,529	12.6	7,210	1.2	105,319	38.5	1,560,000	5.7
제조업	122,053	13.7	96,017	15.5	26,036	9.5	4,397,000	1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744	0.3	1,519	0.2	1,225	0.4	67,000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3,895	0.4	3,365	0.5	531	0.2	169,000	0.6
건설업	74,219	8.3	63,000	10.2	11,219	4.1	2,111,000	7.7
도매 및 소매업	67,541	7.6	32,899	5.3	34,643	12.7	3,385,000	12.3
운수 및 창고업	63,262	7.1	35,083	5.7	28,180	10.3	1,556,000	5.6
숙박 및 음식점업	37,865	4.2	21,025	3.4	16,840	6.2	2,140,000	7.8
정보통신업	11,463	1.3	8,988	1.5	2,475	0.9	893,000	3.2
금융 및 보험업	19,563	2.2	18,169	2.9	1,394	0.5	806,000	2.9
부동산업	22,583	2.5	18,748	3.0	3,835	1.4	533,000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507	1.6	12,794	2.1	1,713	0.6	1,208,000	4.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82	5.7	47,228	7.6	3,554	1.3	1,412,000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2,191	8.1	72,191	11.7	0	0.0	1,172,000	4.3
교육 서비스업	35,399	4.0	30,911	5.0	4,488	1.6	1,857,000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386	12.6	108,341	17.5	4,045	1.5	2,573,000	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029	1.8	8,627	1.4	7,402	2.7	472,000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070	5.2	27,235	4.4	18,834	6.9	1,137,000	4.1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6,723	0.8	5,166	0.8	1,557	0.6	104,000	0.4

주: 1)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2) 기타=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 17, 18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2021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제조업이 16.0%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12.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한편, 장애인구에서도 제조업이 13.7%로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6%로 나타남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5%, 제조업 15.5% 순이었고,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8.5%, 도매 및 소매업 12.7% 순임

〈표 6-1-6〉 취업자의 직업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91,804	100.0	618,515	100.0	273,289	100.0	27,550,000	100.0
관리자	3,585	0.4	1,449	0.2	2,136	0.8	377,000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710	9.8	70,034	11.3	17,676	6.5	5,562,000	20.2
사무 종사자	111,860	12.5	96,847	15.7	15,012	5.5	4,758,000	17.3
서비스 종사자	66,242	7.4	43,676	7.1	22,566	8.3	3,114,000	11.3
판매종사자	57,113	6.4	28,373	4.6	28,740	10.5	2,804,000	1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9,611	12.3	4,095	0.7	105,515	38.6	1,480,000	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987	8.1	47,022	7.6	24,965	9.1	2,404,000	8.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6,723	13.1	74,828	12.1	41,895	15.3	2,971,000	10.8
단순노무 종사자	252,535	28.3	238,901	38.6	13,633	5.0	4,080,000	14.8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14,438	1.6	13,289	2.1	1,149	0.4	–	–

주: 1)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2)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pp.19-20.
2) 통계청(2021).「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2021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2%로 가장 높으며 사무종사자 17.3%, 단순노무 종사자 14.8% 순임
– 반면, 장애인구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8.3%로 가장 높았고 장치,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1%, 사무 종사자 12.5%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명, %, 시간, 만원)

구분		추정 수	비율	취업시간	임금
전체인구		20,992,000	100.0	35.4	273.4
장애인구		621,042	100.0	34.1	19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3,157	–	40.5	261.6
	임시근로자	205,590	–	25.0	98.5
	일용근로자	89,767	–	28.7	140.3
산업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7,210	1.2	33.7	129.2
	제조업	96,017	15.5	40.0	282.8
	건설업	63,000	10.2	35.5	220.0
	도소매, 음식 숙박업	53,923	8.7	34.0	154.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329,398	53.3	29.5	148.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67,123	10.9	42.4	268.1
	모름/응답거절	1,843	0.3		
직업	관리자, 전문가	71,483	11.6	39.2	332.0
	사무 종사자	96,847	15.7	37.7	262.2
	서비스, 판매 종사자	72,049	11.6	31.4	14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095	0.7	41.9	172.0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121,850	19.7	39.7	237.3
	단순노무 종사자	238,901	38.6	28.3	114.6
	모름/응답거절	13,289	2.1	–	–
사업체 규모	1-4인	131,430	–	29.1	134.8
	5-49인	324,496	–	33.9	178.9
	50-299인	107,702	–	36.1	226.4
	300인 이상	51,362	–	38.4	326.4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419,575	–	29.4	139.0
	정규직	198,940	–	42.5	298.9

주: 1) 취업시간은 '지난 주 평균 실제로 일한 시간',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2) 취업시간과 임금의 임금노동자 추정 수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시간의 추정 수를 표기함.
3) 평균 취업시간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대입하여 산정함
4)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대해 모름/ 응답 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6)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7)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본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50, 151, 152, 159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

–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인 35.4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73.4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92.2만원으로 전체인구의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38.6%로 가장 높으며, 월 평균 임금은 114.6만원임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67.8	38.4
남성		61.8	31.0
여성		82.5	47.4
15-29세		69.0	42.1
30-39세		48.0	23.0
40-49세		48.5	28.6
50-59세		57.4	35.9
60세 이상		88.0	73.7
중증		73.1	-
경증		66.4	-
신체외부	지체	65.0	-
	지체 외	70.2	-
감각	시각	62.4	-
	시각 외	74.5	-
정신적		82.3	-
발달		81.4	-
신체내부		60.7	-
서울		73.9	38.5
경기		65.9	37.1
광역시도		68.0	38.9
기타 시도		66.6	39.3
중졸 이하		89.4	73.6
고졸		65.6	46.0
대졸 이상		44.8	25.7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64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

- 2021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67.8%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8.4%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에서는 남성이 31.0%, 여성이 47.4%이며 장애인구에서는 남성이 61.8%, 여성이 82.5%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에서 60세 이상이 비율이 각각 73.7%, 88.0%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73.1%, 경증 66.4%로 중증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장애가 82.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89.4%, 73.6%로 가장 높음. 고졸과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가 높게 나타남

(3) 실업자 특성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68,146	100.0	1,148,000	100.0
성별	남성		48,065	70.5	653,000	56.9
	여성		20,081	29.5	495,000	43.1
연령별	15-29세		4,420	6.5	402,000	35.0
	30-39세		7,758	11.4	181,000	15.8
	40-49세		10,166	14.9	186,000	16.2
	50-59세		14,225	20.9	191,000	16.6
	60세 이상		31,578	46.3	188,000	16.4
장애정도별	중증		15,415	22.6	–	–
	경증		52,731	77.4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36,609	53.7	–	–
		지체 외	6,205	9.1	–	–
	감각	시각	8,372	12.3	–	–
		시각 외	7,627	11.2	–	–
	정신적		6,530	9.6	–	–
	발달		4,512	6.6	–	–
	신체내부		2,802	4.1	–	–
지역별	서울		8,441	12.4	282,000	24.6
	경기도		20,285	29.8	324,000	28.2
	광역시도		14,449	21.2	283,000	24.7
	기타 시도		24,970	36.6	261,000	22.7
학력별	중졸 이하		26,902	39.5	125,000	10.9
	고졸		25,177	36.9	482,000	42.0
	대졸 이상		16,067	23.6	541,000	47.1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82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실업자를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56.9%, 여성이 43.1%이며, 장애인구는 남성이 70.5%, 여성이 29.5%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 그러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장애인구는 41.0%p로 전체 인구의 13.8%p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15-29세가 35.0%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는 60세 이상이 46.3%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이 77.4%로 중증 22.6%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의 비율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대졸이상이 47.1%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구는 중졸 이하가 39.5%로 가장 높음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68,146	100.0	1,148,000	100.0
구직 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0,409	44.6	641,000	55.8
		3-6개월 미만	25,422	37.3	381,000	33.2
		모름 / 응답 거절	0	0.0	-	-
		소계	55,831	81.9	1,022,000	89.0
	6개월 이상	6-12개월 미만	7,731	11.3	117,000	10.2
		12개월 이상	4,584	6.7	10,000	0.9
		소계	12,315	18.1	127,000	11.1
구직 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33,707	49.5	-	-
	민간 취업알선기관		15,568	22.8	-	-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16,943	24.9	-	-
	학교, 학원		2,587	3.8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30,769	45.2	-	-
	기타		0	0.0	-	-
구직 방법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39,898	58.5	-	-
	시험접수, 시험응시		3,804	5.6	-	-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13,791	20.2	-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2,992	4.4	-	-
	자영업 준비		1,591	2.3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		36,273	53.2	-	-

주: 1)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가 포함됨
2)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은 두 개까지 응답받음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1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31, 32, 187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경우 6개월 이상이 18.1%로 전체인구 11.1%에 비해 7.0%p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의 구직경로는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49.5%로 가장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45.2%, 대중매체 24.9%순임
  - 구직방법은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가 58.5%로 가장 많았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이 53.2% 두 번째로 많음
  -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에서 취업알선기관(공공 및 민간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장애인의 구직활동이 직접 취업(사업주-구직자)보다는 주로 간접취업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전체		239,522	100.0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219,247	91.5
	비 임금근로	20,275	8.5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4,117	1.7
	제조업	35,636	14.9
	건설업	10,956	4.6
	도소매, 음식 숙박업	21,666	9.0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152,035	63.5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5,066	6.3
	모름/응답거절	46	0.0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21,998	9.2
	사무 종사자	23,626	9.9
	서비스, 판매 종사자	55,052	2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48	0.8
	기능, 기계조직 종사자	26,468	11.1
	단순노무 종사자	110,430	46.1
희망 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등)	3,503	5.6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20,325	32.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806	7.6
	그 외 일반사업체(공무원 등 포함)	34,244	54.5
희망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39,215	62.4
	시간제 근로	23,663	37.6
희망 월 평균소득	49만원 이하	2,789	4.1
	50-99만원	6,685	9.8
	100-149만원	10,978	16.1
	150-199만원	18,619	27.3
	200-299만원	21,787	32.0
	300만원 이상	7,287	10.7

주: 1) 희망 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를대상으로 질문함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3)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89, 190, 203

- 실업자의 희망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6.1%로 가장 많음
  - 희망사업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보다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체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54.5%로 가장 많음
  - 희망 근로시간은 전일제 근로 62.4%, 시간제 근로 37.6%로 전일제 근로를 더 선호함
  - 월 평균 희망소득은 200-299만원이 32.0%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27.3%로 두 번째로 많음

(4)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1,614,957	100.0	16,351,000	100.0
성별	남성		785,315	48.6	5,886,000	36.0
	여성		829,642	51.4	10,465,000	64.0
연령별	15-29세		78,532	4.9	4,488,000	27.4
	30-39세		45,608	2.8	1,524,000	9.3
	40-49세		99,061	6.1	1,657,000	10.1
	50-59세		210,090	13.0	1,902,000	11.6
	60세 이상		1,181,666	73.2	6,780,000	41.5
장애정도별	중증		604,098	37.4	-	-
	경증		1,010,859	62.6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652,714	40.4	-	-
		지체 외	205,092	12.7	-	-
	감각	시각	142,887	8.8	-	-
		시각 외	271,077	16.8		-
	정신적		236,586	14.6	-	-
	발달		146,383	9.1	-	-
	신체내부		106,602	6.6	-	-
지역별	서울		265,281	16.4	3,168,000	19.4
	경기도		339,038	21.0	4,161,000	25.4
	광역시도		400,635	24.8	4,252,000	26.0
	기타시도		610,002	37.8	4,772,000	29.2
학력별	중졸		1,075,138	66.6	6,188,000	37.8
	고졸		404,566	25.1	6,159,000	37.7
	대졸이상		135,254	8.4	4,005,000	24.5
구직단념자 수	통계청 기준		15,629	1.0	829,642	3.7
	EDI 기준		785,315	3.9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2019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 경기 구분하고, 인천 광역시도에 넣어 통계 집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p.192, 198
2)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남성이 36.0%, 여성이 64.0%로 나타났고 장애인구는 남성이 48.6%, 여성이 51.4%로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장애인구는 73.2%, 전체인구는 41.5%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의 비율이 62.6%로 중증 37.4%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0.4%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중졸이 37.8%로 가장 높거, 장애인구도 중졸이 66.6%로 가장 높음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2) 의무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개소)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수(명)	고용률(%)
연도별		2008	22,106	6,035,950	104,132	1.73
		2009	22,209	6,091,555	114,053	1.87
		2010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	27,349	7,499,665	153,955	2.48
		2014	27,488	7,570,281	158,388	2.54
		2015	28,218	7,713,036	164,876	2.62
		2016	28,708	7,852,861	168,614	2.66
		2017	28,018	7,912,772	175,935	2.76
		2018	29,018	8,177,401	180,328	2.78
		2019	29,777	8,389,402	245,184	2.92
		2020	29,890	8,467,076	260,826	3.08
		2021	30,478	8,674,826	268,663	3.10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	317	931,368	27,618	2.97
		중앙행정기관	53	193,564	7,120	3.68
		헌법기관	4	24,929	730	2.93
		지방자치단체	243	300,045	11,772	3.92
		교육청	17	412,830	7,996	1.94
	근로자	계	305	401,933	23,418	5.83
		중앙행정기관	41	73,223	2,253	3.08
		헌법기관	4	3,808	120	3.15
		지방자치단체	243	141,500	14,054	9.93
		교육청	17	183,402	6,991	3.81
공공기관		소계	764	586,801	22,179	3.78
		공기업	36	150,950	5,643	3.74
		준정부기관	95	129,619	5,657	4.36
		기타공공기관	204	175,027	6,069	3.47
		지방공기업	146	79,348	3,181	4.01
		출자출연기관	283	51,857	1,629	3.14
민간기업			29,092	6,754,724	195,448	2.8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3) 장애인 근로자수는 순인원임
4) 2010년 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고용률은 3.10%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제27조, 제28조의2, 시행 2017.1.1.)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2%
- 2019년 이후: 3.4%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7%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9%
- 2019년 이후: 3.1%

(2)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34,211,401	4,946,920	27,008,461	4,392,935	7,202,940	553,985	88.8
2008 이전	1,473,915	216,807	1,206,418	208,736	267,497	8,071	91.3
2009	1,419,766	116,962	1,148,841	110,999	270,925	5,963	94.9
2010	1,473,915	216,807	1,206,418	208,736	267,497	8,071	96.3
2011	2,036,103	276,771	1,761,092	247,896	275,011	28,875	89.6
2012	2,108,628	330,375	1,538,637	296,783	569,991	33,592	89.8
2013	1,878,622	360,254	1,497,781	319,838	380,841	40,416	88.8
2014	2,077,067	393,315	1,643,885	343,501	433,182	49,814	87.3
2015	2,195,035	413,766	1,815,305	361,008	379,730	52,758	87.2
2016	2,324,683	348,155	1,885,609	301,331	439,074	46,824	86.6
2017	2,387,579	348,629	1,946,891	301,805	440,688	46,824	86.6
2018	2,448,841	371,785	2,003,450	322,930	445,391	48,855	86.9
2019	2,538,165	389,821	2,069,207	338,899	468,958	50,922	86.9
2020	2,567,083	386,712	2,033,159	336,242	533,924	50,470	86.9
2021	2,739,286	396,024	2,149,078	347,122	590,208	48,902	87.7

주: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2022).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p.628.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021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건수는 2,739,2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2,203건 증가함
  • 부가금액 대비 징수금액인 징수율은 2011년 이후 매년 90.0%를 밑돌고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신설)」 제32조의2. 시행 2017.1.1.)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1) 기업체 장애인 고용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19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전 체		1,800,156	100	76,593	100	1,723,563	100	4.3	3.9
고용의무 기업체	계	1,755,138	97.5	46,456	60.7	1,708,682	99.1	2.6	2.3
	1-4명	1,310,515	72.8	22,151	28.9	1,288,364	74.8	1.7	1.4
	5-49명	444,624	24.7	24,305	31.7	420,319	24.4	5.5	5.1
고용 의무기업체	계	45,018	2.5	30,137	39.3	14,881	0.9	66.9	69.4
	50-299명	41,427	2.3	26,648	34.8	14,779	0.9	64.3	66.5
	300-999명	2,909	0.2	2,810	3.7	99	0.0	96.6	96.9
	1,000명 이상	682	0.0	679	0.9	3	0.0	99.5	99.9
산업별	계	1,800,156	100	76,593	100	1,723,563	100	4.3	3.9
	제조업	285,904	15.9	22,342	29.2	263,563	15.3	7.8	7.5
	서비스업 1	801,474	44.5	15,702	20.5	785,771	45.6	2.0	1.7
	서비스업 2	589,031	32.7	34,222	44.7	554,809	32.2	5.8	5.0
	기타	123,747	6.9	4,327	5.6	119,420	6.9	3.5	3.5
지역별	계	1,800,156	100.0	76,593	100.0	1,723,563	100.0	4.3	3.9
	수도권	1,260,205	70.0	27,474	35.9	1,232,731	71.5	2.2	1.9
	광역시권	476,498	26.5	37,210	48.6	439,288	25.5	7.8	7.4
	기타 지역	63,453	3.5	11,908	15.5	51,544	3.0	18.8	16.6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 전체기업체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1). 「2021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p.132-134.

– 2020년 기준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 고용 기업비율은 2019년 3.9%에서 0.4%p 증가한 4.3%임

–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2.6%인 46,456개 기업체, 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66.9%인 30,137개 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2'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29.2%, '서비스업 1'은 20.5%, '기타'는 5.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광역시권'의 고용기업체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은 35.9%, '기타'는 15.5% 순으로 나타남

(2)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19년 장애인 고용률
		전 체	비 율	장애인	비 율		
전 체		14,974,809	100.0	221,710	100.0	1.5	1.5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7,849,045	52.4	67,268	30.3	0.9	0.9
	1-4명	2,844,079	19.0	23,971	10.8	0.8	0.8
	5-49명	5,004,967	33.4	43,297	19.5	0.9	0.9
고용 의무기업체	계	7,125,763	47.6	154,442	69.7	2.2	2.2
	50-299명	4,002,610	26.7	83,093	37.5	2.1	2.2
	300-999명	1,440,939	9.6	33,431	15.1	2.3	2.3
	1,000명 이상	1,682,214	11.2	37,918	17.1	2.3	2.0
산업별	계	14,974,809	100.0	221,710	100.0	1.5	1.5
	제조업	3,501,530	23.4	59,192	26.7	1.7	1.6
	서비스업 1	3,294,636	22.0	26,268	11.8	0.8	0.8
	서비스업 2	7,038,248	47.0	125,020	56.4	1.8	1.9
	기 타	1,140,394	7.6	11,230	5.1	1.0	1.1
지역별	계	14,974,809	100.0	221,710	100.0	1.5	1.5
	수도권	8,816,534	58.9	129,207	58.3	1.5	1.5
	광역시권	2,533,854	16.9	33,505	15.1	1.3	1.5
	기타 지역	3,624,421	24.2	58,998	26.6	1.6	1.7

주: 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2)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3)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1). 「2021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p.137-139.

- 1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체 221,710명이며,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5%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임
- 고용비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9%로 2019년과 같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2%로 2019년과 같음
  - 고용의무기업체 중 '300~999명', '1000명 이상' 규모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2.3%로 가장 높았고, '50~299명'은 2.1%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 '서비스업 2'은 1.8%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1.5%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1'은 0.8%, '기타 산업'은 1.0%로 낮게 나타남

4)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 수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소, %)

구분			2016		2018		2020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39,967	100.0	95,589	100.0	115,347	100.0
규모별	소상공인		37,049	92.7	89,133	93.2	103,794	90.0
	중소기업		2,918	7.3	6,456	6.8	11,553	10.0
업종별	제조업		7,989	20.0	15,565	16.3	20,610	17.9
	도매 및 소매업		12,002	30.0	29,939	31.3	34,435	29.9
	숙박 및 음식점업		6,024	15.1	19,856	20.8	22,490	19.5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339	20.9	269	0.3	418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3	2.1	2,999	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829	9.2	9,875	8.6
	기타	건설업	5,613	14.0	4,925	5.2	6,632	5.7
		정보통신업			592	0.6	896	0.8
		부동산업			3,997	4.2	5,022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70	2.0	2,468	2.1
		교육 서비스업			1,981	2.1	2,432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7	1.4	2,012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36	4.6	5,058	4.4
		운수업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22,577	56.5	41,037	42.9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099	15.3	20,071	21.0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292	18.2	23,226	24.3	–	–
	5억원 이상		3,999	10.0	11,255	11.8	–	–
	5억원 이하		–	–	–	–	94,210	81.7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	–	9,403	8.2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	–	–	9,226	8.0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	–	–	1,458	1.3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	–	850	0.7
	300억원 초과		–	–	–	–	200	0.2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 수 및 비율임
3) 2016년 조사에서는 업종에 운수업가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4) 2020년 조사부터 매출액 규모범주가 변경됨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19).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p.32.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기업 수는 115,347개소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90.0%, 중소기업 10.0%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비율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19.5%, 제조업 17.9% 순임.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원 이하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함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전 체			96.0	4.0	93.6	6.4	86.9	13.1
규모별	소상공인		98.1	1.9	96.8	3.2	92.8	7.2
	중소기업		69.2	30.8	49.2	50.8	34.1	65.9
업종별	제조업		92.4	7.6	88.4	11.6	78.5	21.5
	도매 및 소매업		98.7	1.3	95.3	4.7	89.8	10.2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	99.8	0.2	99.1	0.9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7.6	2.4	73.7	26.3	43.1	5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	18	74.3	25.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8.3	1.7	97.0	3.0
	기타	건설업	88.5	11.5	72.1	27.9	48.8	51.2
		정보통신업			64.2	35.8	49.8	50.2
		부동산업			97.1	2.9	91.4	8.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7.1	22.9	57.5	42.5
		교육 서비스업			94.6	5.4	95.5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7.1	2.3	95.6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2	0.8	98.4	1.6
		운수업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99.7	0.3	98.8	1.2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9.3	0.7	99.0	1.0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7.4	2.6	94.8	5.2	–	–
	5억원 이상		67.3	32.7	62.1	37.9	–	–
	5억원 이하		–	–	–	–	94.6	5.4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	–	75.0	25.0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	–	–	41.8	58.2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	–	–	11.8	88.2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	–	5.5	94.5
	300억원 초과		–	–	–	–	2.0	98.0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2016년 조사에서는 업종에 운수업가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었으나, 2018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3) 2020년 조사부터 매출액 규모범주가 변경됨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1). 「202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p.48.

– 장애인기업의 조직형태 비율은 개인사업체가 86.9%, 회사법인이 13.1%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92.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5.9%가 회사법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회사법인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억원 이하에서 개인사업체 비율이 대다수이고, 300억원 초과에서는 회사법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모름/ 무응답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모름/ 무응답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모름/ 무응답
전 체			89.7	5.5	4.8	78.9	9.0	12.2	97.6	2.4	–
규모별	소상공인		87.9	7.1	5.0	74.3	10.3	15.4	98.2	1.8	–
	중소기업		91.2	4.3	4.6	82.8	7.8	9.4	92.1	7.9	–
업종별	제조업		90.1	8.3	1.6	79.2	12.1	8.7	96.6	3.4	–
	도매 및 소매업		100.0	–	–	68.8	8.3	22.9	97.4	2.6	–
	숙박 및 음식점업		–	–	–	38.9	61.1	–	98.6	1.4	–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9.2	8.2	2.5	84.9	5.0	10.1	95.2	4.8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6.8	8.5	4.6	93.8	6.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6.6	–	13.4	99.3	0.7	–
	기타	건설업	87.0	3.4	9.6	86.2	5.0	8.8	96.2	3.8	–
		정보통신업				77.6	8.2	14.2	92.6	7.4	–
		부동산업				61.5	7.7	30.8	98.3	1.7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6.3	6.3	7.3	94.4	5.6	–
		교육 서비스업				66.7	33.3	–	96.7	3.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5	–	16.5	99.3	0.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	–	99.7	0.3	–
		운수업				–	–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73.8	8.5	17.8	92.1	3.3	4.5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	–	30.0	95.5	2.4	2.1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0	–	–	73.1	14.8	12.1	–	–	–
	5억원 이상		89.9	6.3	3.8	78.2	8.3	13.5	–	–	–
	5억원 이하		–	–	–	–	–	–	98.3	1.7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	–	–	–	96.4	3.6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	–	–	–	–	93.2	6.8	–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	–	–	–	–	91.1	8.9	–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	–	–	–	85.3	14.7	–
	300억원 초과		–	–	–	–	–	–	79.3	20.7	–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2016년 조사에서는 업종에 운수업가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었으나, 2018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3) 2020년 조사부터 매출액 규모범주가 변경됨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1). 「202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p.214.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단독사업체가 97.6%이며, 다수사업체가 2.4%임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규모, 업종 및 전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체의 비율이 다수사업체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단위: %)

구분		2016			2018			2020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 체		117,237	42,560	36.3	332,183	102,362	30.8	402,232	120,683	30.0
규모별	소상공인	77,366	38,457	49.7	206,615	93,971	45.5	267,726	108,614	40.6
	중소기업	39,871	4,103	10.3	125,568	8,392	6.7	134,505	12,069	9.0
업종별	제조업	34,022	8,626	25.4	71,401	17,556	24.6	109,654	22,428	20.5
	도매 및 소매업	24,561	12,484	50.8	66,743	31,344	47.0	90,398	35,275	39.0
	숙박 및 음식점업	14,920	6,165	41.3	52,614	20,674	39.3	58,058	23,208	40.0
	개인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8,078	8,953	49.5	2,038	298	14.6	2,392	379	15.8
	개인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576	2,086	18.0	14,505	3,029	20.9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360	9,907	54.0	20,671	10,928	52.9
	기타 건설업	25,655	6,332	24.7	50,538	5,145	10.2	47,171	6,689	14.2
	기타 정보통신업				3,183	627	19.7	4,542	957	21.1
	기타 부동산업				9,300	4,086	43.9	11,507	5,023	43.6
	기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889	2,569	11.2	16,274	2,973	18.3
	기타 교육 서비스업				5,824	2,028	34.8	7,137	2,394	33.5
	기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85	1,503	16.0	9,913	2,207	22.3
	기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332	4,538	54.5	10,010	5,193	51.9
	기타 운수업				–	–	–	–	–	–
	기타 금융 및 보험업				–	–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35,959	23,247	64.6	71,254	42,703	59.9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2,799	6,354	49.6	42,494	20,850	49.1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3,222	7,715	33.2	72,838	24,858	34.1	–	–	–
	5억원 이상	45,257	5,245	11.6	145,597	13,950	9.6	–	–	–
	5억원 이하	–	–	–	–	–	–	226,280	98,893	43.7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	–	–	–	–	52,758	10,085	19.1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	–	–	–	–	100,675	9,989	9.9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	–	–	–	–	18,533	1,428	7.7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	–	–	–	3,975	284	7.1
	300억원 초과	–	–	–	–	–	–	10	3	33.3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2016년 조사에서는 업종에 운수업가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었으나, 2018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3) 2020년 조사부터 매출액 규모범주가 변경됨

자료: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1). 「2021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p.256

- 장애인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402,232명이며, 그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20,683명으로 30.0%를 차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40.6%로 거의 절반 가까이 장애인 종사자임.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9.0%임.
  - 업종별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2.9%로 가장 높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9%, 부동산업 43.6% 순임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종사자 비율이 줄어들다가, 300억원 초과에서 장애인정시지 비율이 높아짐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1) 취업 관련 활동 경험 현황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5.3	4.4	5.2	7.1	7.7	8.2	6.9	7.2	8.1
2.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	4.0	2.7	2.9	3.5	4.3	4.5	4.1	3.1	5.3
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5.8	6.3	5.1	5.3	8.4	7.0	12.6	12.4	6.6
4.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2	4.1	4.4	5.6	6.8	5.6	10.2	9.4	5.6
5. 민간 취업알선업체 구직등록, 취업알선	3.3	1.8	3.5	2.6	3.7	3.5	4.1	5.1	3.0
6.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	11.1	11.1	12.5	12.9	15.7	15.1	17.4	18.7	14.4
7. 직접 일자리에 채용 문의	3.4	3.3	4.9	4.7	4.2	3.8	5.2	5.5	3.5
8.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1.7	1.4	1.6	1.5	1.2	1.2	1.4	1.3	1.2
9.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1.5	1.1	1.2	1.4	1.2	1.1	1.2	1.4	1.1
10. 공공/민간/사업체/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0.6	0.5	0.5	0.8	0.5	0.4	0.6	0.9	0.1
11. 사설학원 외국어, 자격 취득, 채용시험 등 준비	0.2	0.1	0.1	0.3	0.3	0.3	0.2	0.6	0.1
12. 자격증 취득 준비	0.9	0.7	1.2	0.7	0.8	0.7	1.0	1.4	0.4
13. 일자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인턴	0.5	0.4	0.2	0.5	0.3	0.4	0.2	0.6	0.1
14. 채용시험 준비	0.4	0.4	0.2	0.3	0.7	0.9	0.2	1.0	0.4
15. 창업을 위한 활동	0.7	0.9	0.4	2.1	1.6	1.4	2.2	1.1	1.8
16. 장애인 자립, 창업 자금 등 지원, 융자	0.3	0.9	0.4	0.4	0.4	0.5	0.4	0.7	0.2
17. 기타	0.0	0.0	0.1	0.1	0.0	0.0	0.0	0.0	0.0

주: 1) 3,4,5,6,7,15는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없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응답 받음
2) 8, 9는 취업자에게 응답 받음
3) "활동 경험 비율"은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여 산출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2).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6차조사)」. pp.185, 356

- 전체 장애인 중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은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이 15.7%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7.7%,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8.4%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지난조사 이후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경험은 1.2%,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경험은 1.2%로 나타남

(2) 직업교육훈련 경험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단위: %)

구 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횟수	1회	97.0	83.6	99.4	93.8	97.9	100.0	95.4	100.0	89.7
	2회 이상	3.0	16.4	0.6	6.2	2.1	0.0	4.6	0.0	10.3
종류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14.7	15.4	9.6	13.2	16.1	8.8	24.1	10.8	33.9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22.0	17.1	48.6	8.3	60.3	67.1	49.6	68.8	24.0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6.7	0.0	4.5	24.2	5.0	3.6	6.5	3.8	9.0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40.4	24.8	10.6	14.4	8.9	7.8	9.9	9.5	5.9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0.5	9.8	1.8	1.0	0.7	0.0	1.6	0.0	3.3
	학교 직업교육훈련	1.9	8.2	7.8	4.7	3.5	6.3	0.0	2.3	7.5
	사설학원 교육훈련	11.8	10.7	9.9	12.7	0.2	0.4	0.0	0.0	1.0
	기타	–	–	0.8	0.1	2.9	5.2	0.0	0.0	13.0
	모름/응답거절	5.0	1.3	6.4	21.4	4.4	1.0	8.2	4.8	2.4
분야	농림어업, 광업 분야	0.0	0.0	1.4	0.0	12.4				
	섬유 분야	0.0	0.0	–	0.0	0.0				
	기계장비 및 금속 분야	1.8	0.0	0.8	0.0	0.0				
	건설 및 운송 분야	13.1	1.3	–	2.2	0.0				
	전기·전자 분야	4.6	6.5	3.1	2.6	0.0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8.2	8.5	17.1	20.2	9.4				
	서비스 분야	42.1	32.6	27.6	42.1	17.0				
	사무, 업무관리 분야	3.2	12.6	8.8	7.4	6.3				
	의료 분야	13.3	9.5	38.0	16.8	6.9				
	산업응용 분야	3.0	0.0	–	0.0	4.9				
	공예 분야	0.0	0.0	–	0.6	0.0				
	공무원·교원, 일반 입사 준비	6.7	1.9	–	0.4	0.0				
	토익, 토플 등 외국어 학습	1.8	4.9	2.6	1.0	0.0				
	기타	–	0.5	–	0.0	3.0				
	모름/응답거절	2.3	21.7	0.7	7.0	40.1				

주: 1)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및 성과"에서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사설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받음
2) 경험횟수는 훈련자 수 기준이며, 훈련 종류 및 분야는 훈련 총 수 기준임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2).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6차조사). pp.191-193, 360

-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횟수 중 1회는 97.9%인 반면, 2회 이상은 2.1%로 현저히 낮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순으로 나타남

6)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인원	시설 평균	
2014	541	3,160	5.8	15,651
2015	560	3,133	5.6	16,414
2016	582	3,256	5.6	17,131
2017	625	3,732	6.0	17,841
2018	651	4,024	6.2	18,205
2019	683	4,362	6.4	19,056
2020	720	4,688	6.5	19,734
2021	773	5,021	6.5	20,504
서울	138	961	7.0	4,196
부산	42	231	5.5	1,149
대구	41	190	4.6	1,171
인천	37	215	5.8	948
광주	30	232	7.7	873
대전	30	179	6.0	777
울산	17	76	4.5	306
세종	7	39	5.6	190
경기	171	1,251	7.3	4,268
강원	40	210	5.3	823
충북	27	226	8.4	931
충남	26	189	7.3	745
전북	28	159	5.7	625
전남	22	127	5.8	528
경북	48	287	6.0	1,295
경남	59	306	5.2	1,279
제주	10	143	14.3	400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3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수, 종사자수, 이용 장애인 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시설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71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138개소), 경남(59개소), 경북(48개소), 부산(42개소) 순임
- 시설 평균 종사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4.3명으로 가장 높으며, 충북(8.4명), 광주(7.7명) 순임
- 이용 장애인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268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4,196명), 경북(1,295명), 경남(1,279명) 순임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4	계	15,651	11,353	1,386	843	737	483	424	292	56	43	34
		(100.0)	(72.5)	(8.9)	(5.4)	(4.7)	(3.1)	(2.7)	(1.9)	(0.4)	(0.3)	(0.2)
	근로사업장	2,721	1,541	535	164	74	155	89	124	23	9	7
		(100.0)	(56.6)	(19.7)	(6.0)	(2.7)	(5.7)	(3.3)	(4.6)	(0.8)	(0.3)	(0.3)
	보호작업장	12,930	9,812	851	679	663	328	335	168	33	34	27
		(100.0)	(75.9)	(6.6)	(5.3)	(5.1)	(2.5)	(2.6)	(1.3)	(0.3)	(0.3)	(0.2)
2015	계	16,414	12,001	1,294	895	871	509	442	291	45	33	33
		(100.0)	(73.1)	(7.9)	(5.5)	(5.3)	(3.1)	(2.7)	(1.8)	(0.3)	(0.2)	(0.2)
	근로사업장	2,798	1,653	456	170	85	164	99	135	17	12	7
		(100.0)	(59.1)	(16.3)	(6.1)	(3.0)	(5.9)	(3.5)	(4.8)	(0.6)	(0.4)	(0.3)
	보호작업장	13,616	10,348	838	725	786	345	343	156	28	21	26
		(100.0)	(76.0)	(6.2)	(5.3)	(5.8)	(2.5)	(2.5)	(1.1)	(0.2)	(0.2)	(0.2)
2016	계	17,131	12,582	1,285	930	986	539	434	290	42	38	32
		(100.0)	(73.4)	(7.3)	(5.4)	(5.8)	(3.1)	(2.5)	(1.7)	(0.2)	(0.2)	(0.2)
	근로사업장	2,762	1,650	427	160	96	162	92	136	19	14	6
		(100.0)	(59.7)	(15.5)	(5.8)	(3.5)	(5.9)	(3.3)	(4.9)	(0.7)	(0.5)	(0.2)
	보호작업장	14,335	10,905	831	769	884	377	342	154	23	24	26
		(100.0)	(76.1)	(5.8)	(5.4)	(6.2)	(2.6)	(2.4)	(1.1)	(0.2)	(0.2)	(0.2)
2017	계	17,841	13,236	1,086	1151	949	568	419	310	40	43	39
		(100.0)	(74.2)	(6.5)	(5.3)	(2.3)	(0.2)	(0.2)	(1.7)	(0.2)	(0.2)	(0.3)
	근로사업장	2,724	1,618	112	404	162	162	77	145	19	15	9
		(100.0)	(66.7)	(4.6)	(16.6)	(6.7)	(6.7)	(3.2)	(6.0)	(0.8)	(0.6)	(0.4)
	보호작업장	14,960	11,494	947	747	784	404	341	164	21	28	30
		(100.0)	(76.8)	(6.3)	(5.0)	(5.2)	(2.7)	(2.3)	(1.1)	(0.1)	(0.2)	(0.2)
2018	계	18,205	13,642	1,073	894	1,220	523	432	301	39	48	33
		(100.0)	(74.9)	(5.9)	(6.6)	(6.7)	(2.9)	(2.4)	(1.7)	(0.2)	(0.3)	(0.2)
	근로사업장	11,498	8,355	900	621	722	233	294	277	32	34	30
		(100.0)	(72.7)	(7.8)	(7.4)	(6.3)	(2.0)	(2.6)	(2.4)	(0.3)	(0.3)	(0.3)
	보호작업장	6,707	5,287	173	273	498	290	138	24	7	14	3
		(100.0)	(78.8)	(2.6)	(5.2)	(7.4)	(4.3)	(2.1)	(0.4)	(0.1)	(0.2)	(0.0)
2019	계	19,056	14328	1055	945	1317	509	445	324	45	50	38
		(100.0)	(75.2)	(6.9)	(5.5)	(5.0)	(2.7)	(2.3)	(1.7)	(0.3)	(0.2)	(0.2)
	근로사업장	12,088	8797	888	664	807	242	300	289	36	37	28
		(100.0)	(72.8)	(7.3)	(5.5)	(6.7)	(2.0)	(2.5)	(2.4)	(0.3)	(0.3)	(0.2)
	보호작업장	6,968	5531	167	281	510	267	145	35	9	13	10
		(100.0)	(79.4)	(2.4)	(4.0)	(7.3)	(3.8)	(2.1)	(0.5)	(0.1)	(0.2)	(0.1)
2020	계	19,734	14815	1427	1073	940	502	470	365	46	48	48
		(100.0)	(0.8)	(0.1)	(0.8)	(0.9)	(0.5)	(0.9)	(0.8)	(0.1)	(1.0)	(1.0)
	근로사업장	12,712	9251	854	905	682	261	320	329	33	40	37
		(100.0)	(0.7)	(0.1)	(1.1)	(0.8)	(0.4)	(1.2)	(1.0)	(0.1)	(1.2)	(0.9)
	보호작업장	7,022	5564	573	168	258	241	150	36	130	8	11
		(100.0)	(0.8)	(0.1)	(0.3)	(1.5)	(0.9)	(0.6)	(0.2)	(3.6)	(0.1)	(1.4)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4.

– 2020년 대비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19,734 명에서 20,504명으로 소폭 상승함
- 장애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지적 장애인이 75.2%로 가장 높으며, 지체장애인(7.5%), 정신장애인(5.2%), 자폐성장애인(4.6%) 순임
- 시설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근로사업장이 13,600명, 보호작업장 6,904명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지체	정신	자폐성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21	계	20,504	15,421	1,534	1,072	952	490	489	400	43	56	47
		(100.0)	75.2	7.5	5.2	4.6	2.4	2.4	2.0	0.2	0.3	0.2
	근로사업장	13,600	9,954	962	924	686	247	346	363	31	48	39
		(100.0)	73.2	7.1	6.8	5.0	1.8	2.5	2.7	0.2	0.4	0.3
	보호작업장	6,904	5,467	572	148	266	243	143	37	12	8	8
		(100.0)	79.2	8.3	2.1	3.9	3.5	2.1	0.5	0.2	0.1	0.1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4.

– 2020년 대비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19,734 명에서 20,504명으로 소폭 상승함
- 장애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지적 장애인이 75.2%로 가장 높으며, 지체장애인(7.5%), 정신장애인(5.2%), 자폐성장애인(4.6%) 순임
- 시설유형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률은 근로사업장이 13,600명, 보호작업장 6,904명으로 나타남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수치)	전년대비증감 (비율)
전체시설	근로장애인임금	567	591	617	527	△90	△14.6
	훈련장애인수당	96	86	97	104	▽7	▽7.2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임금	1057	1,131	1,160	1,172	▽12	▽1
	훈련장애인수당	106	108	181	166	△15	△8.3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임금	423	439	464	456	△8	△1.7
	훈련장애인수당	95	87	100	104	▽4	▽4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장애인수당	135	39	13	4	△9	△69.2

주: 1) 월 평균 임금 및 수당 계산 시 임금을 받지 않는 이용장애인 제외
2)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금 및 수당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p.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527천원이며, 근로시설은 1,172천원, 보호시설은 456천원임. 반면 전체 훈련장애인의 월 평균수당은 104천원이며, 근로시설은 166천원, 보호시설은 104천원, 훈련시설은 4천원임.
  - 시설유형에 따라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 및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며, 근로시설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보호시설, 훈련시설 순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뉨.
-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시설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Ⅲ권.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2021년 배정인원		24,896	9,465	13,644	1,787
참여인원		24,773	9,233	13,724	1,816
참여율		99.5	97.5	100.6	101.6
성별	남	13,796	4,981	7,698	1,117
	여	10,977	4,252	6,026	699
연령별	29세 이하	4,994	1,702	2,639	653
	39세 이하	2,756	1,303	1,215	238
	49세 이하	2,959	1,678	1,129	152
	59세 이하	3,805	2,169	1,430	206
	65세 미만	2,552	1,247	1,106	199
	65세 이상	7,707	1,134	6,205	368
장애유형	지체장애	8,754	4,013	4,741	–
	뇌병변장애	2,217	1,035	1,182	–
	시각장애	2,652	663	1,048	941
	청각장애	1,977	674	1,303	–
	언어장애	193	82	111	–
	안면장애	24	19	5	–
	신장장애	572	316	256	–
	심장장애	65	44	21	–
	호흡기장애	79	37	42	–
	간장애	62	45	17	–
	장루 · 요루장애	82	32	50	–
	뇌전증(간질)장애	124	71	53	–
	지적장애	6,115	1,601	3,689	825
	자폐성장애	523	152	321	50
	정신장애	1,304	449	855	–
	기타(특수교육대상)	30	–	30	–
장애정도	심한	15,499	5,442	8,340	1,717
	심하지 않은	9,244	3,791	5,354	99
	등급 외	30	–	30	–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24,773명으로 참여율은 99.5%임. 일자리 유형별로는 복지일자리의 참여인원이 13,724명으로 가장 많고, 참여율은 100.6%임
- 성별 전체 참여인원은 남성이 13,796명으로 여성 10,977명보다 더 많으며, 일자리유형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남성의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전체 참여인원은 65세 이상이 7,707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일자리에서는 59세 이하의 중장년층의 참여인원이 많은 반면 복지일자리에서는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즉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짐
- 장애유형별 전체 참여인원은 지체장애인이 8,754명으로 가장 많았음. 일자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화형일자리를 제외한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에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함
- 장애정도별 전체 참여인원은 심한 장애가 15,499명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더 많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전담지원 행정도우미/복지서비스지원요원/직업재활 시설지원 요원),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안내」)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계	직업 재활센터	직업 평가센터	장애인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직업적응 훈련기관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직업 훈련시설	작업 활동시설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2008	182	34	6	32	8	29	43	–	10	12	8	–
2009	184	34	6	32	8	29	43	–	10	12	10	–
2010	186	34	6	32	8	29	43	–	10	14	10	–
2011	186	34	6	32	8	28	43	–	10	15	10	–
2012	190	34	6	32	8	28	43	–	10	19	10	–
2013	192	34	6	32	8	–	43	–	10	21	10	–
2014	191	34	6	32	–	–	88	–	–	21	10	–
2015	185	34	6	32	–	–	83	–	–	21	9	–
2016	176	34	6	32	–	–	75	–	–	20	9	–
2017	176	34	6	32	–	–	74	1	–	20	9	–
2018	177	34	6	30	–	–	74	1	–	20	5	7
2019	161	33	6	30	–	–	73	1	–	–	5	13
2020	166	33	6	30	–	–	73	1	–	–	5	18
2021	171	33	6	30	–	–	71	3	–	–	5	23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체 수행기관 수는 171개로 전년도에 비해 5개소 증가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단위: 명)

구분	계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지원고용		적응훈련		
								계	취업	계	수료	취업
2001	53,376	10,323	10,825	6,660	6,134	2,665	13,770	779	–	2,220	415	–
2002	90,485	13,076	28,450	10,996	7,692	3,467	22,912	565	438	3,327	415	163
2003	108,926	12,671	35,201	11,356	8,402	3,655	33,600	662	423	3,379	375	138
2004	107,173	18,366	36,283	16,608	8,563	3,678	21,022	488	364	2,165	512	90
2005	109,660	18,771	36,638	17,181	8,300	3,731	22,193	696	488	2,150	773	190
2006	104,539	12,583	31,516	16,886	8,593	3,977	28,134	734	524	2,116	798	235
2007	88,663	10,924	24,833	15,598	9,178	4,266	21,275	869	640	1,720	533	119
2008	96,371	13,336	32,671	13,167	11,471	4,846	18,145	905	498	1,830	719	173
2009	98,949	15,820	35,251	11,756	12,604	5,385	14,573	948	552	2,612	1,024	287
2010	98,915	16,179	31,576	12,750	13,884	5,500	15,017	1,195	690	2,814	752	300
2011	97,037	16,388	32,823	16,054	10,182	6,067	10,441	1,342	676	3,740	1,473	554
2012	96,125	16,559	31,041	16,282	10,526	6,312	10,253	1,497	807	3,655	1,340	481
2013	99,071	14,878	32,731	17,739	11,423	6,571	10,406	1,524	920	3,799	754	504
2014	90,072	11,958	32,205	15,116	9,309	6,780	9,463	1,155	609	4,086	1,089	318
2015	89,958	12,047	30,300	15,670	9,525	6,909	9,608	1,313	638	4,586	908	405
2016	90,028	12,365	28,900	17,065	9,089	7,001	9,889	1,442	777	4,277	933	455
2017	79,404	10,927	25,046	13,574	8,213	6,462	9,474	1,190	507	4,518	599	322
2018	82,890	11,644	25,464	14,005	9,009	7,102	10,104	957	444	4,605	568	356
2019	82,911	11,864	25,662	14,270	9,179	7,236	10,294	–	–	4,406	350	822
2020	57,509	9,281	17,166	7,897	6,788	4,925	8,095	–	–	3,357	116	311
2021	59,954	9,676	17,469	8,547	6,926	5,073	8,134	–	–	4,129	205	388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자 수는 59,954명으로 전년도에 증가함
- 사업 내용 중 각 연도별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구직상담으로, 2021년에 총 17,469명이 구직상담을 지원 받음
- 한편 취업이 확정된 지원자는 2021년 5,0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 연도별, 기관유형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2007	155,702	–	48,158	–	1,153	–	30,454	–	44,513	–	32,577	–
2008	132,016	–	41,950	–	1,927	–	39,063	–	30,119	–	20,884	–
2009	165,811	–	44,153	–	3,576	–	56,113	–	39,545	–	26,000	–
2010	190,179	–	28,018	–	670	–	71,250	–	42,584	–	48,327	–
2011	235,808	0.55	45,780	0.47	1,288	1.06	59,286	0.53	50,672	1.19	80,070	0.46
2012	251,828	0.49	52,437	0.62	979	0.89	52,864	0.40	37,361	0.68	109,166	0.62
2013	295,836	0.72	40,144	0.62	1,563	1.12	84,422	0.71	36,814	0.68	134,456	0.76
2014	352,998	0.91	59,541	1.06	1,729	1.27	90,416	0.83	34,299	0.72	168,742	0.97
2015	464,046	1.02	74,709	1.10	2,569	1.36	97,124	0.80	43,740	0.89	248,473	1.15
2016	531,214	1.13	96,447	1.41	4,384	2.37	111,123	0.90	46,307	0.89	277,337	1.23
2017	538,701	1.01	107,893	1.17	1,822	1.12	87,860	0.76	49,198	0.81	293,750	1.11
2018	575,701	1.07	111,662	1.18	2,370	1.36	105,712	0.85	51,018	0.80	307,308	1.21
2019	641,720	1.14	126,506	1.32	2,695	1.45	131,979	0.92	65,006	0.93	318,229	1.25
2020	702,391	1.12	137,521	1.21	2,521	1.18	150,340	0.92	73,230	1.11	341,300	1.20
2021	704,391	0.99	131,670	0.76	2,506	1.26	164,282	0.98	75,914	1.06	332,525	1.10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3) 보건복지부는 본부 구매실적에 한함(소속 및 산하기관 제외)
4)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및 지자체 관할 지방공기업 실적 포함
5) 국가기관 실적에 보건복지부 실적인 포함된 관계로 합계에는 보건복지부 구매실적이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04,39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반면,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0.99%로 전년도 1.12%에 비해 0.13% 감소하였고, 의무구매비율인 1.0%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 2021년 구매액이 131,6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851백만원 감소하였고,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0.76%로 전년대비 0.45% 감소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1년 구매액이 164,2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942백만원 증가하였고,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인 0.98%로 전년대비 0.06% 증가하였으나, 의무우선구매비율인 1.0%를 아직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조)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 6-6-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형 – 연도별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2009	153	22	108	23	–
2010	196	28	130	38	–
2011	260	34	178	48	–
2012	352	48	213	91	–
2013	379	49	227	103	–
2014	402	53	246	103	–
2015	417	54	253	110	–
2016	492	55	304	133	–
2017	544	56	333	149	6
2018	580	57	375	142	6
2019	630	57	406	161	6
2020	674	59	437	171	7
2021	722	61	469	185	7

주: 1)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
2)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2항3호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부터 포함됨(자료의 한계상 해당 표에는 2017년부터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02	100.0	417	100.0	492	100.0	544	100.0	580	100.0	630	100.0	674	107	722	100.0
서울	78	19.4	80	19.2	93	18.9	99	18.2	102	17.6	106	16.8	108	17.1	116	16.1
부산	19	4.7	21	5.0	26	5.3	26	4.8	30	5.2	34	5.4	35	5.6	36	5.0
대구	13	3.2	14	3.4	20	4.1	23	4.2	29	5.0	31	4.9	34	5.4	35	4.8
인천	21	5.2	20	4.8	21	4.3	25	4.6	29	5.0	32	5.1	33	5.2	39	5.4
광주	14	3.5	15	3.6	18	3.7	19	3.5	22	3.8	25	4.0	27	4.3	31	4.3
대전	10	2.5	10	2.4	10	2.0	10	1.8	13	2.2	13	2.1	15	2.4	18	2.5
울산	8	2.0	8	1.9	10	2.0	12	2.2	12	2.1	13	2.1	12	1.9	12	1.7
경기	114	28.4	119	28.5	135	27.4	147	27.0	142	24.5	153	24.3	168	26.7	184	25.5
강원	18	4.5	18	4.3	20	4.1	22	4.0	25	4.3	29	4.6	30	4.8	33	4.6
충북	15	3.7	16	3.8	21	4.2	22	4.0	22	3.8	23	3.7	26	4.1	27	3.7
충남	17	4.2	17	4.1	18	3.7	19	3.5	22	3.8	25	4.0	27	4.3	29	4.0
전북	16	4.0	16	3.8	20	4.1	25	4.6	26	4.5	29	4.6	33	5.2	32	4.4
전남	9	2.2	12	2.9	14	2.8	13	2.4	17	2.9	20	3.2	23	3.7	24	3.3
경북	19	4.7	19	4.6	20	4.1	27	5.0	31	5.3	33	5.2	34	5.4	36	5.0
경남	20	5.0	19	4.6	30	6.1	37	6.8	39	6.7	44	7.0	48	7.6	49	6.8
제주	8	2.0	8	1.9	9	1.8	10	1.8	10	1.7	11	1.7	11	1.7	11	1.5
세종	3	0.7	5	1.2	7	1.4	8	1.5	9	1.6	9	1.4	10	1.6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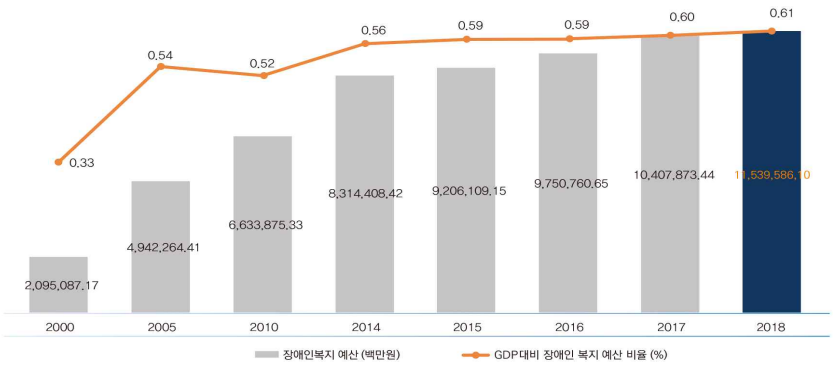
주: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21년 722개소로 전년도 대비 48개소 증가함. 유형별로는 보호사업장이 469개소로 가장 많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역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5.5%(184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지역이 16.1%(116개소)로 두 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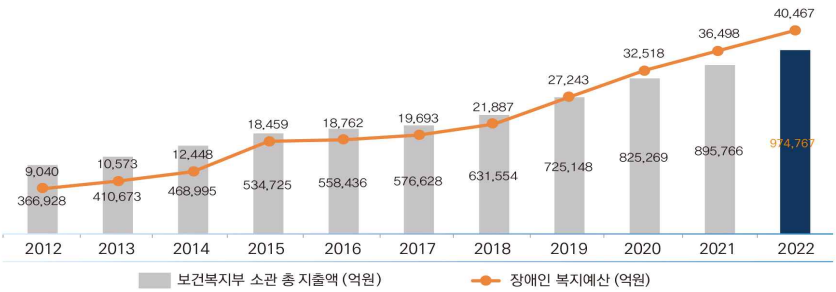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7. 재정

[그림 2-7-1] 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2018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1,539,586.1백만원으로 GDP대비 0.61%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2000년 0.33%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0.54% 차지하였음. 2010년에는 0.52%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 0.59%, 2018년에는 0.61%으로 증가함
-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4,046,710백백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6.50%로 나타남
  -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4.15%로 2021년 4.07%에서 0.08%p 증가함

1) 재정

(1) 장애인 복지 예산

〈표 7-1-1〉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635,184,600	919,797,300	1,265,308,000	1,486,079,300	1,564,123,900	1,641,786,000	1,835,698.2	1,898,192.6
장애인 복지 예산	2,095,087.17	4,942,264.41	6,633,875.33	8,314,408.42	9,206,109.15	9,750,760.65	11,019,111.2	11,539,586.1
비율	0.33	0.54	0.52	0.56	0.59	0.59	0.60	0.61

주: 장애인복지예산은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s)만을 합한 것으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2021). 「SOCX Statistics」(2021년 08월 검색)

- 2018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1,539,586.1백만원으로 GDP대비 0.61%임
-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은 2000년 0.33%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0.54% 차지하였음. 2010년에는 0.52%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 0.59%, 2018년에는 0.61%으로 증가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총 지출액(A)		410,673	468,995	534,725	558,436	576,628	631,554	725,148	825,269	895,766	974,767
	예산	총계(B)	254,056	294,705	332,300	331,784	339,450	376,546	450,879	515,094	559,035	622,729
		일반회계	251,761	292,416	327,236	326,938	334,589	371,598	445,362	509,011	553,030	617,592
		특별회계	2,295	2,289	5,064	4,846	4,861	4,948	5,517	6,083	6,005	5,137
	기금	총계	156,617	174,290	202,425	226,652	237,178	255,008	274,269	310,175	336,731	352,038
		건강증진기금	19,007	20,030	27,357	31,834	33,001	33,926	34,363	33,700	34,242	34,630
		국민연금기금	135,534	152,187	172,775	192,507	201,977	218,788	237,582	274,110	300,025	314,649
		응급의료기금	2,076	2,073	2,293	2,311	2,200	2,294	2,323	2,365	2,464	2,759
장애인 복지 예산	총계(C)		1,057,306	1,244,820	1,845,876	1,876,213	1,969,345	2,188,659	2,724,292	3,251,800	3,649,788	4,046,710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1,038,572	1,225,528	1,825,234	1,856,284	1,949,184	2,167,865	2,724,292	3,251,800	3,649,788	4,046,710
	장애인재활지원		18,734	19,292	20,642	19,929	20,161	20,794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57	2.65	3.45	3.44	3.42	3.47	3.76	3.94	4.07	4.15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4.16	4.22	5.55	5.65	5.80	5.81	6.04	6.31	6.53	6.50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애인복지예산은 예산을 기반으로 책정됨
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의 단위는 '억원'이며, 장애인복지예산 단위는 '백만원'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대한민국 국회.(각 년도).「예산」

–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4,046,71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6,922백만원 증가함
-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4.15%로 2021년 4.07%에서 0.08%p 증가함
-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6.50%로 2021년 6.53%에서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694,582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1,881,636	1,909,078
증가액	-	119,492	123,575	88,625	245,160	610,202	27,442
증가율	-	17.2	15.2	9.5	23.9	48.0	4.4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예산액	2,067,026	2,221,333	2,782,493	3,276,229	3,678,543	4,085,394	
증가액	101,869	154,307	561,160	493,736	402,314	406,851	15.9
증가율	5.2	7.5	25.3	17.7	12.3	11.1	

주: 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2) 연평균증가율(%) = (2022년 예산/2010년 예산)^(1/12)-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안)은 4,085,39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 증가함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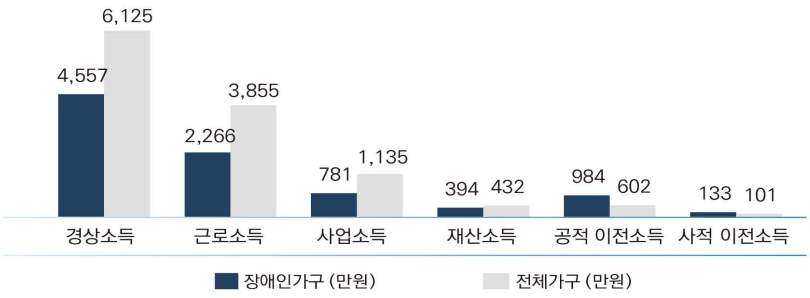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액	증감율
합계	2,221,333	2,782,493	3,276,229	3,678,543	4,085,394	406,851	11.1
(일반회계) 계	2,211,917	2,774,368	3,252,007	3,649,971	4,062,222	412,251	11.3
장애수당(기초)	74,985	75,490	76,589	80,021	81,633	1,612	2.0
장애수당 (차상위등)	54,779	54,253	55,240	57,314	60,785	3,471	6.1
장애정도심사 제도운영	26,902	32,422	30,543	34,740	38,821	4,081	11.7
장애인연금	600,877	719,735	786,181	829,084	832,631	3,547	0.4
장애인의료비	23,072	43,524	36,366	36,366	32,729	△3,637	△10.0
장애인실태조사	–	–	1,435	–	–	–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242	4,204	4,560	4,451	4,660	209	4.7
장애인지원관리	1,379	889	889	889	889	0	0.0
장애인자립자금지원	208	156	156	126	149	23	18.3
장애인활동지원	690,674	1,003,461	1,305,672	1,506,974	1,740,523	233,549	15.5
장애아동가족지원	88,072	100,952	110,668	117,326	149,151	31,825	27.1
여성장애인지원	2,842	2,759	2,731	2,744	2,764	20	0.7
발달장애인지원	8,572	42,720	91,611	152,352	208,017	55,665	36.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721	38,850	30,007	27,631	35,476	7,845	28.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70,933	480,881	525,275	580,436	622,396	41,960	7.2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7,277	8,057	8,918	9,212	9,602	390	4.2
장애인단체지원	7,111	7,111	7,338	7,338	7,338	0	0.0
장애인일자리지원	95,745	120,787	141,520	159,593	185,315	25,722	16.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387	6,286	6,534	6,668	8,918	2,250	33.7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3,177	5,165	4,835	4,902	4,367	△535	△10.9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942	2,945	4,817	8,946	10,579	1,633	18.3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	–	1,589	1,603	14	0.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8,939	16,669	18,025	19,115	21,428	2,313	12.1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	1,855	1,840	1,890	1,971	2,268	297	15.1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89	89	89	79	79	0	0.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97	114	118	104	101	△3	△2.9
장애인운전교육	590	609	–	–	–	–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	–	4,400	–	–	–	–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450	–	–	–	–	–	–
(증진기금) 계	9,416	8,125	24,222	28,572	23,172	△5,400	△18.9
재활병원 건립	8,000	4,006	7,000	14,500	500	△14,000	△96.6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616	619	722	782	782	0	0.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800	3,500	16,500	13290	21,890	8,600	64.7

주: 1) 증감액과 증감율은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을 비교한 수치임
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운전교육',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종료된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미편성 대상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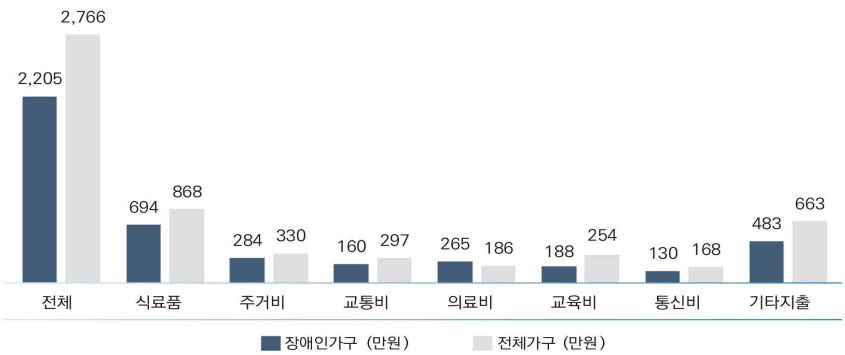
– 2022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은 4,085,39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6,851백만원(11.1%) 증가함
- 2021년 대비 2022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8개의 항목 중 4개의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예산 미편성 대상 사업 제외)
- 2022년 장애인정책국의 예산 세부항목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이 1,740,523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장애인연금 832,631백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622,396백만 원 순임
- 증감률을 살펴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64.7%로 가장 높고, 발달장애인지원 36.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33.7%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4% 순임. 반면 재활병원 건립 예산은 △96.6%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10.9%, 장애인의료비 △10.0% 순으로 나타남

8. 소득과 소비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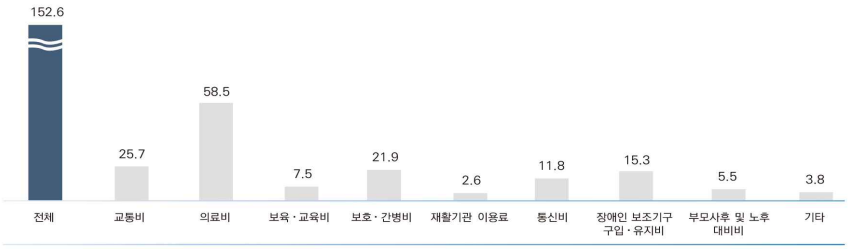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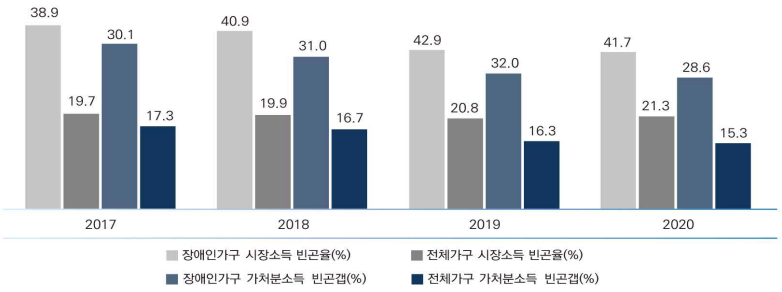


- 2021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4,557만원으로 전체가구 6,125만원의 74.4%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49.7%, 공적이전 소득은 2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3.0%, 9.8%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 2021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2,20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는 2,766만원으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약 1.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3%로 전체가구 약 10.7%에 비하여 약 3.5%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거 약 12.0%로 전체가구 약 6.7%에 비해 약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0년)



[그림 2-8-4] 연도별 상대적 빈곤율 – 전체가구 비교



– 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52.6천원으로 나타남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8.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교통비 25.7천원, 보호 · 간병비 21.9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 유지비 15.3천원 등의 순임
– 시장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7년 38.9%에서 2020년 41.7%로 약2.8%p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2017년 19.7%에서 2020년 21.3%로 약1.6%p 증가함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8.6%로 전체가구의 15.3%에 비하여 약 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소득

(1) 월평균 가구소득

〈표 8-1-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108.2	–	–	–	–	–	–	–	–	–	–	–	–	–	–	–	–
2005	157.2	–	–	–	–	–	–	–	–	–	–	–	–	–	–	–	283.7
2011	198.2	204.4	179.4	198.2	185.6	227.1	215.8	297.7	148.1	230.2	181.1	208.2	243.7	108.0	128.4	148.0	371.3
2014	223.5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415.2
2017	242.1	243.2	227.7	239.9	209.2	310.9	294.0	435.6	180.4	251.4	283.4	239.3	376.3	428.3	209.4	304.5	423.1
2020	199.0	197.1	185.5	207.0	174.2	212.8	239.8	416.5	141.6	223.3	222.0	175.9	303.2	239.0	209.2	164.7	385.6

주: 1)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9년 6월 기준임
2)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까지는 전국 가구(2인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인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2017년 보고서 부터는 전국 가구(1인가구 이상)의 자료를 사용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99.0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9년 6월 기준 385.6만원)의 51.6% 수준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416.5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 장애 303.2만원, 지적장애 239.8만원, 안면장애 239.0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41.6만원, 뇌전증장애 164.7만원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2012	2,708	1,407	610	156	406	128	4,233	2,645	1,135	189	180	84
2013	2,864	1,511	683	141	415	114	4,479	2,889	1,125	204	187	74
2014	3,113	1,632	785	153	434	109	4,658	3,025	1,159	190	211	73
2015	3,423	1,832	853	148	497	94	4,770	3,130	1,142	191	240	67
2016	3,513	1,778	894	185	554	102	4,883	3,199	1,122	220	274	67
2017	4,093	2,170	894	305	609	114	5,478	3,499	1,217	353	328	81
2018	4,150	2,209	834	326	659	123	5,705	3,640	1,243	380	351	91
2019	4,153	2,180	795	305	722	152	5,828	3,781	1,177	380	387	102
2020	4,246	2,091	794	379	831	150	5,924	3,791	1,151	417	457	107
2021	4,557	2,266	781	394	984	133	6,125	3,855	1,135	432	602	101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3)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5)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6)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9)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연간)을 살펴보면, 2017년 4,093만원에서 2021년 4,55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전체가구 역시 2017년 5,478만원에서 2021년 6,12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21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전체가구의 74.4% 수준에 불과함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49.7%, 공적이전 소득은 2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2.9%, 9.8%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12	100.0	30.6	36.5	17.6	8.1	5.0	2.3	100.0	14.2	29.9	25.1	14.4	9.8	6.5
2013	100.0	27.5	37.9	17.8	8.2	6.1	2.6	100.0	12.9	27.9	25.2	15.9	10.8	7.3
2014	100.0	27.8	33.7	19.8	9.1	6.1	3.5	100.0	12.8	25.5	25.6	15.9	12.0	8.1
2015	100.0	22.9	34.1	19.9	10.4	7.9	4.8	100.0	12.2	25.6	25.0	15.9	12.5	8.8
2016	100.0	22.5	34.8	18.9	10.9	8.1	4.9	100.0	12.0	24.7	24.3	16.4	13.2	9.3
2017	100.0	17.3	34.9	19.5	11.4	9.0	7.9	100.0	10.0	25.1	22.0	16.2	14.0	12.7
2018	100.0	16.5	35.3	19.1	12.2	8.9	8.0	100.0	9.3	24.5	22.0	15.9	14.4	13.9
2019	100.0	15.6	36.4	19.3	11.4	9.6	7.9	100.0	8.6	24.5	21.4	16.4	14.3	14.8
2020	100.0	12.5	38.3	19.9	11.4	10.5	7.4	100.0	7.8	24.7	20.9	16.2	15.3	15.2
2021	100.0	11.6	36.5	18.6	13.4	10.3	9.7	100.0	6.2	24.4	21.1	16.5	16.2	15.7

주: 1)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연간 기준임
3)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소득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48.1%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는 2021년 장애인 가구의 36.5%(전체가구 24.4%)가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 구간에 11.6%(전체가구 6.2%)의 분포를 보여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소비

(1) 월평균 가구지출

〈표 8-2-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98.9	–	–	–	–	–	–	–	–	–	–	–	–	–	–	–	–
2005	134.5	–	–	–	–	–	–	–	–	–	–	–	–	–	–	–	227.6
2011	161.8	165.0	156.7	156.2	149.4	200.1	177.8	244.3	121.9	189.0	137.8	171.4	253.3	100.8	118.3	125.2	300.4
2014	170.6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324.9
2017	190.8	188.4	192.8	158.2	163.6	223.5	232.0	349.7	150.5	217.2	232.9	202.7	295.7	296.1	183.4	238.0	361.7
2020	178.5	176.2	181.4	180.4	150.2	188.9	220.0	338.8	134.0	207.6	201.3	153.5	239.9	180.0	176.9	154.8	245.7

주: 1) 전체가구는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며,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9년 6월 기준임
2)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까지는 전국 가구(2인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장애인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하여 2017년 보고서 부터는 전국 가구(1인가구 이상)의 자료를 사용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지출은 178.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19년 6월 기준 245.7만원)의 72.6% 수준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338.8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 장애 239.9만원, 지적장애 220.0만원, 신장장애 207.6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지출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134.0만원, 청각장애 150.2만원, 뇌전증장애 154.8만원임

(2) 비목별 소비지출액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2012	1,664	505	244	179	158	171	111	296	2,302	638	292	349	132	267	161	463
2013	1,702	461	261	176	177	192	124	311	2,303	624	302	340	138	269	173	456
2014	1,722	483	254	178	186	189	128	303	2,306	633	303	335	148	268	175	445
2015	1,821	532	264	166	199	203	136	322	2,327	661	303	321	151	266	176	449
2016	1,753	529	264	139	195	183	133	309	2,339	671	306	313	153	257	174	465
2017	1,858	559	257	150	217	187	132	356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8	1,969	605	266	161	220	187	132	397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9	2,022	625	264	143	225	196	122	447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2020	2,078	659	269	140	241	188	122	459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2021	2,205	694	284	160	265	188	130	483	2,766	868	330	297	186	254	168	663

주: 1)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3)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7)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8)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9) 연간 기준으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의미함
10)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 지출액은 2017년 1,858만원에서 2021년 2,205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 역시 2017년 2,473만원에서 2021년 2,76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21년 장애인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79.7%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7.3%로 전체가구 약 10.7%에 비하여 약 3.5%p 적으며, 이에 반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가 약 12.0%로 전체가구 약 6.7%에 비해 약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비목별 비 소비지출액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2012	378	71	124	23	44	116	757	186	239	75	77	181
2013	459	81	137	44	52	146	828	193	259	99	85	192
2014	480	103	149	40	53	135	839	206	274	91	85	183
2015	511	111	172	43	60	124	843	213	283	88	89	170
2016	509	104	168	32	63	142	860	215	294	89	86	177
2017	577	153	191	63	48	123	958	307	307	104	70	171
2018	614	167	197	77	46	127	1,034	343	322	125	66	179
2019	626	172	196	92	49	117	1,098	354	338	151	62	194
2020	659	169	204	99	42	144	1,106	357	353	146	55	195
2021	667	181	229	88	31	139	1,122	368	380	135	46	193

주: 1) 비 소비지출: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
2)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3)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6)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7)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8) 연간 기준으로 평균 비소비지출액을 의미함
9)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비 소비지출액은 주요 지출(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비, 기타 소비지출 등) 외의 지출로서 2017년 577만원에서 2021년 667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 또한 2017년 958만원에서 2021년 1,122만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2021년 장애인가구 전체 비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59.4% 수준임

비 소비지출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4) 최소 생활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단위: %, 만원)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년	154.0	157.5	152.2	149.4	139.6	159.2	168.4	270.3	119.1	169.0	145.7	147.6	237.5	99.8	134.9	139.3
2014년	164.9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2017년	187.9	185.6	196.9	177.4	165.5	183.2	219.4	341.7	157.0	204.8	231.3	191.6	264.3	241.1	196.8	181.8
2020년	196.3	192.5	198.7	196.6	171.7	221.5	237.6	352.3	158.2	221.7	223.9	187.7	253.4	188.7	204.2	186.7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2020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196.3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352.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 장애 253.4만원, 지적장애 237.6만원, 언어장애 221.5만원, 장루·요루장애 204.2만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158.2만원, 청각장애 171.7만원임

(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05년		155.4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2011년		160.7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2014년		164.2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2017년		165.1	121.5	342.2	87.0	83.1	146.9	287.0	608.4
2020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52.6	117.9	290.2	125.2	87.2	222.3	173.4	455.6
	교통비	25.7	25.6	33.1	19.1	7.8	26.8	30.1	60.4
	의료비	58.5	53.3	131.8	34.9	13	80.2	30.1	70.8
	보육·교육비	7.5	0.7	8.9	0.5	0.5	44.9	27.3	164.4
	보호·간병비	21.9	20.2	72.4	16.9	12.8	15.1	11.3	31
	재활기관 이용료	2.6	0.9	4.8	0	0.1	11.2	10.5	19.2
	통신비	11.8	1.1	1.4	37.5	14.5	27.6	38	32.4
	보조기구 구입·유지비장애인	15.3	10.8	13.8	14.8	37.4	5	0.8	0.1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5.5	0.2	8.9	1.3	0.9	9.9	23.4	76.8
	기타	3.8	5	15.3	0	0.2	1.4	1.9	0.3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2020년 152.6천원임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8.5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교통비 25.7천원, 보호 · 간병비 21.9천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 유지비 15.3천원 등의 순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계속)

(단위: 천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5년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2011년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2014년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2017년		85.9	293.6	112.4	176.4	462.2	329.2	234.7	118.9
2020년	월 평균 총 추가비용	99.3	332.3	269.6	148.5	293.0	225.4	212.0	116.6
	교통비	18.2	96.5	47	23.6	42.3	28	34.5	18.1
	의료비	69.1	217.4	172.6	97.3	234.9	167.3	91.6	76.9
	보육·교육비	0	0.2	11.8	0	1.3	1.9	0.2	4.3
	보호·간병비	4.9	12.9	20.4	15	1.4	2.4	13.1	4.5
	재활기관 이용료	2	2	0	0	0	0	0	1.4
	통신비	0.5	0.3	0	0	0.7	3.1	0.2	3.6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0.7	1.7	1.4	12.6	0	21.6	71.8	0.3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6	1.3	12.6	0	1.9	1	0.3	7
	기타	1.1	0	3.8	0	10.5	0	0.4	0.4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455.6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은 신장장애 332.3천원, 간장애 293.0천원, 뇌병변장애 290.2천원, 심장장애 269.6천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이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청각장애 87.2천원, 정신장애 99.3천원임

3) 빈곤

(1)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표 8-3-1〉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시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갭	시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빈곤갭
2012	44.4	36.3	37.0	19.0	18.3	37.2
2013	43.2	35.6	38.3	19.1	18.4	37.0
2014	41.5	34.5	39.9	19.6	18.2	36.1
2015	39.0	30.8	37.3	19.5	17.5	35.4
2016	41.2	31.5	37.0	19.8	17.6	35.1
2017	38.9	30.1	35.3	19.7	17.3	35.5
2018	40.9	31.0	34.8	19.9	16.7	34.2
2019	42.9	32.0	30.6	20.8	16.3	32.7
2020	41.7	28.6	28.0	21.3	15.3	30.2

주: 1)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빈곤갭: 빈곤인구(소득수준이 빈곤선 보다 적은 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값
3)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 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4)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공적 이전 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5)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빈곤율 및 빈곤갭은 전년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지표

- 시장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2017년 38.9%에서 2020년 41.7%로 약2.8%p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2017년 19.7%에서 2020년 21.3%로 약1.6%p 증가함
- 2020년 장애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8.6%로 전체가구의 15.3%에 비하여 약 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하여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내에 속한 전체인구 중 어느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지를 파악할 수 있음

주: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이해하기」

빈곤갭 :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빈곤선 이하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빈곤갭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주: 통계청(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이해하기」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만원, 배)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분위별 소득					전체	분위별 소득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12	2,708	766	1,947	3,348	4,955	9,050	4,233	761	1,991	3,344	5,040	10,029
2013	2,864	817	2,134	3,557	5,312	9,443	4,479	814	2,179	3,589	5,389	10,420
2014	3,113	818	2,226	3,758	5,613	10,513	4,658	827	2,299	3,794	5,635	10,735
2015	3,456	867	2,319	3,872	5,747	10,257	4,767	862	2,354	3,895	5,791	10,930
2016	3,513	904	2,327	3,900	5,896	10,901	4,883	890	2,409	3,989	5,953	11,171
2017	4,093	1,013	2,533	4,303	6,537	12,407	5,478	1,001	2,556	4,323	6,590	12,921
2018	4,150	1,069	2,630	4,425	6,771	12,762	5,705	1,057	2,657	4,464	6,825	13,520
2019	4,153	1,097	2,650	4,525	7,021	13,104	5,828	1,104	2,725	4,577	6,977	13,754
2020	4,246	1,188	2,735	4,595	7,110	13,333	5,924	1,155	2,763	4,671	7,126	13,903

주: 1) 경상소득 기준임
2)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3) 해당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소득은 전년 기준 자료임
4)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5)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하고, 전년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7년 자료부터 적용함. 이에 2016년 이전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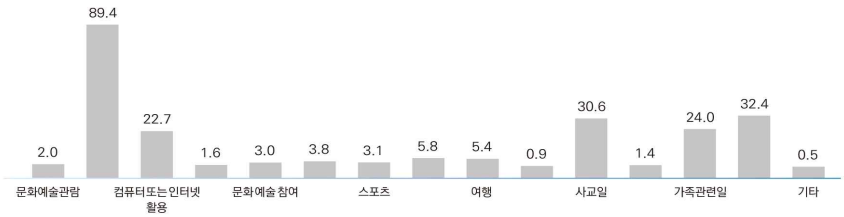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장애인가구의 2020년 1분위소득(연간)은 1,188만원으로 2017년 1,013만원에 비해 175만원 증가함. 5분위소득은 2020년 13,333만원으로 2017년 12,407만원에 비해 926만원 증가함
  - 전체가구의 2020년 1분위소득은 1,155만원으로 2017년 1,001만원에 비해 154만원 증가함
-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5분위소득간의 격차가 다른 분위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5분위 평균 소득은 13,333만원으로 전체가구 13,903만원에 비해 63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5분위 배율(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
- 소득 5분위 평균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
-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함

9. 문화 및 사회참여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0년)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89.4%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32.4%, 사교일 30.6%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기부나 봉사활동 외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함

1) 문화 및 여가활동

(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문화예술관람	2.0	2.4	1.7	2.1	0.9	2.4	2.1	3.5	1.0	2.3	2.9	0.0	5.8	3.3	0.8	1.2
TV시청 (유선방송,비디오포함)	89.4	91.8	84.1	85.2	88.6	93.4	86.7	86.8	89.9	92.3	94.6	90.2	94.2	92.2	91.4	91.5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2.7	24.0	15.1	22.2	13.4	27.4	33.1	48.6	21.3	30.5	36.3	14.1	44.3	38.3	17.0	33.8
승부놀이 (바둑,당구,경마등)	1.6	1.9	1.2	1.5	1.5	2.7	1.1	1.4	0.9	2.9	2.2	0.9	1.0	1.5	1.5	0.6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0	3.2	2.4	2.9	1.3	3.6	3.9	5.5	5.0	3.2	6.0	2.2	5.2	5.2	1.3	2.6
취미, 자기 계발 활동	3.8	4.0	2.3	5.6	2.4	3.9	3.4	6.0	3.5	5.5	8.3	2.1	7.9	4.6	1.7	3.3
스포츠 (축구,테니스,수영등)	3.1	3.1	1.5	3.2	2.6	4.7	4.5	14.2	0.6	3.5	2.2	0.8	7.5	5.2	2.5	3.9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5.8	6.8	3.6	6.2	5.8	3.2	4.6	5.5	3.9	4.5	6.7	4.2	6.6	4.2	6.2	7.5
여행 (관광,등산,낚시,하이킹등)	5.4	6.6	2.4	7.2	4.6	5.3	2.8	10.1	1.6	3.8	3.9	0.7	11.6	12.1	2.5	2.0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0.9	1.1	0.8	1.6	0.4	0.0	0.1	1.8	0.0	0.4	0.8	0.6	0.6	0.9	0.0	1.3
사교일 (친구,친척만남,모임등)	30.6	36.9	16.0	35.6	32.6	24.9	15.2	15.0	13.0	27.5	39.1	17.5	45.0	30.2	31.4	20.7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1.4	1.1	1.4	2.0	1.2	0.2	2.4	3.8	1.0	1.2	0.9	0.6	1.0	0.0	1.4	2.1
가족관련일 (외식,쇼핑,주말농장등)	24.0	26.3	13.8	29.1	25.1	28.2	17.5	27.6	14.8	23.3	29.3	15.3	38.9	29.1	27.9	15.4
휴식(사우나 등)	32.4	34.5	24.6	35.0	35.3	29.0	22.3	28.9	31.0	31.7	37.8	20.2	43.5	41.9	36.7	29.2
기타	0.5	0.5	0.2	0.8	0.3	1.3	0.5	0.6	1.4	0.2	1.3	0.0	0.0	0.0	0.5	0.0

주: 1) 중복 응답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1 장애인 실태조사」 p.352.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TV 시청이 89.4%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32.4%, 사교일 30.6% 순으로 나타남
  - 기타를 제외하고 해외여행이 0.9%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감상·관람 (연극, 영화 등)	2.0	2.4	1.5	2.0	3.6	2.7	1.1	1.8	2.2	6.6
TV시청 (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89.4	89.9	88.8	86.6	89.0	91.4	88.4	86.9	91.0	96.6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22.7	29.0	14.0	48.9	57.1	31.5	6.0	25.0	21.3	30.9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1.6	2.5	0.5	1.0	2.1	2.1	1.3	1.6	1.7	4.2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3.0	3.6	2.2	7.5	6.0	3.3	1.7	3.3	2.8	3.6
취미, 자기 계발 활동	3.8	4.0	3.4	6.6	8.4	4.8	1.7	3.8	3.7	6.1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3.1	4.4	1.2	12.7	6.7	3.4	1.3	3.1	3.1	8.5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5.8	5.4	6.4	6.4	5.2	7.2	3.3	4.6	6.6	2.5
사회(자원)봉사 활동	5.4	7.0	3.1	8.1	8.1	7.2	3.3	3.2	6.7	17.8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0.9	1.0	0.7	1.0	2.3	0.9	0.5	0.3	1.2	17.8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30.6	32.6	28.0	21.8	31.3	36.9	26.7	21.1	36.4	51.5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1.4	1.7	0.9	2.0	2.7	1.6	0.9	2.3	0.8	5.6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4.0	25.9	21.3	33.4	29.3	27.0	19.9	18.1	27.5	34.7
휴식(사우나 등)	32.4	33.9	30.3	20.0	33.3	36.7	29.9	26.2	36.1	44.8
기타	0.5	0.5	0.5	0.9	0.2	0.4	0.7	0.6	0.5	0.9

주. 1) 중복응답임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18.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TV시청이 89.4%로 가장 높음
  - TV시청을 제외하고 남성(33.9%)과 여성(30.3%) 모두 휴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TV시청을 제외하고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17세 이하 48.9%, 18세~44세 이하는 57.1%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5세~64세 이하는 사교일 36.9% 이며, 65세 이상은 휴식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사회참여

(1) 장애인 투표 여부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71.6	80.9	50.5	77.4	82.2	52.9	32.6	8.7	48.4	72.5	70.6	71.2	75.6	58.3	74.1	51.3
2014	74.8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2017	84.1	89.9	64.9	88.3	91.9	88.2	61.3	55.9	66.1	88.3	99.2	81.9	96.0	92.1	82.5	69.1
2020	78.4	86.3	56.4	81.3	85.5	72.7	48.2	42.3	52.0	82.8	85.1	75.5	87.9	85.5	89.4	72.5

주: 1) 2011년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7년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비 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20년 조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 비해당(투표권없음)은 제외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1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9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71.6	73.7	68.8	0.0	54.6	80.1	76.9	47.4	78.9	71.7
2014	74.8	77.1	71.7	-	61.8	79.1	80.6	57.9	86.4	75.3
2017	84.1	86.8	80.6	-	77.0	87.3	83.7	73.0	91.0	84.4
2020	78.4	81.2	74.6	-	63.6	80	81.1	63.4	86.8	

주: 1) 2011년의 경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4년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2017년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비 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함
3)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여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비 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4.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투표를 했는지에 대장애인의 선거 참여율은 78.4%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장루요루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89.4%로 가장 높으며 간 장애 87.9%, 지체장애 86.3%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자폐성 장애가 42.3%로 선거 참여율이 가장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 투표 참여율은 81.2%로 여성의 투표 참여율 74.6%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보면 심한장애 투표 참여율은 63.4%,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의 투표 참여율 86.8%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투표율이 심한장애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9-2-3〉 투표 미 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4.1	5.7	4.0	5.8	4.4	–	1.3	–	1.9	7.3	–	10.4	3.1	–	8.0	7.5
편의시설 부족	2.2	2.1	2.9	3.7	1.9	–	1.9	3.8	0.7	2.9	–	–	–	–	–	–
몸이 불편해서	49.5	53.5	72.2	44.8	53.0.	65.1	25.7	21.9	31.9	53.2	38.4	80.1	27.9	14.5	48.3	38.7
도우미가 없어서	1.8	1.3	1.2	2.0	2.4	–	3.6	1.8	0.9	0.7	–	0.4	–	–	5.2	4.1
정보 부족	2.9	0.9	0.9	2.4	6.2	3.1	6.5	1.0	4.4	3.3	–	–	–	–	1.7	1.8
시간이 없어서	2.2	2.8	0.3	6.9	0.8	6.6	1.9	2.6	0.5	1.7	8.3	–	20.5	–	10.7	–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0	30.4	14.9	26.1	25.8	23.1	48.0	46.3	48.7	26.2	53.2	6.9	34.4	62.1	14.0	42.0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	–	1.1	1.3	–	3.2	8.3	1.8	1.9	–	–	7.9	23.4	–	2.7
코로나19로 인해서	2.7	2.4	2.5	4.1	2.9	2.2	2.0	5.3	3.4	2.9	–	–	6.2	–	7.0	3.2
기타	2.5	1.0	1.2	2.9	1.2	–	6.0	9.0	5.8	–	–	2.2	–	–	5.0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9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가 49.5%,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31.0%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몸이 불편해서'가 호흡기질환 장애 80.1%, 뇌병변 장애 72.2%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9-2-4〉 투표 미 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4.1	4.2	4.1	–	0.8	2.7	6.9	3.9	4.6	
편의시설 부족	2.2	1.9	2.5	–	2.3	1.9	2.4	2.0	2.5	
몸이 불편해서	49.5	43.1	55.8	–	26.7	41.2	66.7	46.9	53.4	
도우미가 없어서	1.8	2.1	1.4	–	1.7	2.8	1.0	2.6	0.5	
정보 부족	2.9	3.4	2.3	–	6.1	2.3	1.7	3.4	2.0	
시간이 없어서	2.2	2.7	1.6	–	4.4	2.7	0.7	1.1	3.8	
본인이 원치 않아서	31.0	34.4	27.6	–	44.5	39.6	18.2	32.6	28.6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1.6	0.6	–	2.8	1.2	0.3	1.6	0.5	
코로나19로 인해서	2.7	2.9	2.5	–	5.0	2.9	1.4	2.7	2.7	
기타	2.5	3.4	1.6	–	5.7	2.8	0.7	3.3	1.3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4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43.1%, 55.8%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8–44세 이하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44.5%,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41.2%, 66.7%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몸이 불편해서'가 각각 46.9%, 53.4%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장애인 공무원 수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의무고용대상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2009	45	171,713	4,037	2.35
2010	45	171,421	4,479	3.01
2011	45	168,146	4,665	3.20
2012	46	169,615	4,805	3.27
2013	47	169,872	4,830	3.29
2014	49	171,828	4,832	3.26
2015	49	170,443	5,000	3.41
2016	49	169,971	5,014	3.44
2017	50	171,995	5,107	3.47
2018	50	176,790	5,184	3.43
2019	50	186,982	5,697	3.56
2020	52	187,439	5,862	3.67
2021	53	193,564	6,034	3.68

주: 1) 의무고용대상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의 정원
2) 고용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고용한 장애인 수
3) 고용률은 의무고용대상인원 대비 고용인원 비율임. 단, 뜯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뜰G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2배로 산정(2010년부터 시행)
4) 국가뜻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08년까지 2% 이상, ∨16년까지 3% 이상, ∨17년~∨18년 3.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자료: 2021 인사혁신통계연보 P.32.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9년 4,037명에서 2021년 6,03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용률 또한 2009년 2.35%에서 2020년 3.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2018		9,417	298	583	575	2,423	1,103	2,163	267	667	1,338
2019		9,542	327	629	671	2,446	1,070	2,149	250	682	1,318
2020		9,872	367	647	822	2,466	1,021	2,186	259	632	1,472
2021		9,710	361	652	740	2,419	977	2,264	240	652	1,405
고위공무원		1				1					
소계		9,691	354	651	735	2,416	977	2,261	240	652	1,405
일반직	1급										
	2급										
	3급	6		3	2	1					
	4급	87	3	27	25	21	6	4		1	
	5급	579	23	93	129	133	69	63	4	29	36
	6급	2,770	113	206	220	763	354	513	72	271	258
	7급	3,300	155	220	199	810	350	869	79	181	437
	8급	1,714	19	58	56	434	101	536	34	98	378
	9급	1,033	26	21	55	205	49	265	49	71	292
	시간선택제	23		1		11	6	3		1	1
	전문경력관	11	1	1		2	3	3	1		
	전담직위	1						3			
일반임기제	5급 이상	12	1	4	4		2	1			
	6급 이하	41	5	5	3	7	14	3	1		3
	연구관	19	1	3	14	1					
	연구사	40	5	7	24	4					
	지도관	10	1		2	2	5				
	지도사	45	1	2	2	22	18				
특정직	소계	12	7		5						
	교육직	12	7		5						
	자치경찰										
별정직	소계	5		1		2		2			
	5급 상당 이상	1				1					
	6급 상당 이하	4		1		1		2			
정무직		1						1			

주: 1)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2) 더블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음(중증장애인의 겨우, 더블카운트 적용 시 10,987명)
3) 2021 더블카운트 적용하지 않음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블카운트 적용 시 11,555명)
자료: 행정자치부(각 년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8년 6,551명에서 2021년 9,7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7급이 3,300명으로 가장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시도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08	6,551		1,040			3,983			1,528	
2009	7,553		1,292			4,761			1,500	
2010	7,859		1,360			4,703			1,796	
2011	8,117	282	559	552	2,169	1,123	1,590	235	689	918
2012	8,323	278	492	645	2,223	1,087	1,679	256	694	969
2013	8,488	277	576	575	2,316	1,118	1,813	220	692	901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2018	9,471	304	584	577	2,454	1,105	2,164	269	671	1,343
2019	9,542	327	629	671	2,446	1,070	2,149	250	682	1,318
2020	9,872	367	647	822	2,466	1,021	2,186	259	632	1,472
2021	9,710	361	652	740	2,419	977	2,264	240	652	1,405
서울	1,985	361					1,176			448
부산	690		147				383	4		156
대구	414		112	23		23	167	8	5	76
인천	407		135	19	189		7	57		
광주	283		79				166			38
대전	233		76				119			38
울산	202		66			27	64	8	5	32
세종	55		37					2	7	9
경기	1,530			137	994	49		54	62	234
강원	483			70	176	113		27	55	42
충북	389			61	122	101		24	56	25
충남	448			80	173	75		13	70	37
전북	482			83	180	103		9	70	37
전남	573			67	149	198		24	108	27
경북	678			62	264	144		41	110	57
경남	695			87	304	125		17	93	69
제주	163			70	57			9	4	23

주: 1) 일반직 기준
2)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2021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985명, 경기도 1,530명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시 55명을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63명으로 가장 적음

(3) 온라인 사회참여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단위: %)

구분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연도별	2017	24.1	11.2	8.8	13.8
	2018	30.2	18.2	13.4	15.8
	2019	30.8	25.4	17.3	20.0
	2020	42.7	31.9	23.3	33.4
	2021	31.5	27.0	24.4	26.5
성별	남성	38.9	36.7	33.2	33.5
	여성	27.0	23.7	20.6	23.2
연령별	20대 이하	65.1	56.2	53.8	54.9
	30대	53.7	53.1	50.9	51.9
	40대	51.5	52.1	45.6	47.2
	50대	40.8	37.1	33.2	33.4
	60대 이상	19.3	16.6	14.8	15.9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	36.5	34	30.1	32.4
	뇌병변장애	28.5	27.6	20.9	21.5
	시각장애	34.1	31.6	31	25.3
	청각/언어장애	36.8	32.6	32.9	31.9

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가끔 이용 + 자주이용)로 측정함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p289.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p.31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p.36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1).「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7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1.

- 2021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기부나 봉사활동 외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참여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보다 미만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사회적 고립도

〈표 9-2-9〉 낙심,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단위: %, 명)

구분		2015			2017			2019			2021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전체		82.4	2.94	17.6	83.6	3.12	16.4	83.3	2.94	16.7	79.6	2.94	20.4
장애인	전체	71.4	2.34	28.6	71.4	2.50	28.6	72.3	2.26	27.7	66.0	2.25	34.0
	65세 미만	72.4	2.43	27.6	73.1	2.64	26.9	74.7	2.37	25.3	68.9	2.43	31.1
	65세 이상	69.8	2.18	30.2	69.1	2.31	30.9	69.9	2.15	30.1	63.4	2.07	36.6
비장애인	전체	82.9	2.97	17.1	84.2	3.15	15.8	83.9	2.97	16.1	80.3	2.97	19.7
	65세 미만	84.5	3.05	15.5	85.8	3.27	14.2	85.8	3.09	14.2	82.2	3.10	17.8
	65세 이상	73.0	2.36	27.0	74.5	2.35	25.5	73.1	2.22	26.9	71.2	2.24	28.8

〈표 9-2-10〉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단위: %, 명)

구분		2015			2017			2019			2021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전체		76.8	2.18	23.2	78.5	2.40	21.5	79.6	2.30	20.4	72.8	2.34	27.2
장애인	전체	71.3	1.98	28.7	67.8	2.16	32.2	73.4	2.03	26.6	68.5	2.08	31.5
	65세 미만	70.4	2.02	29.6	67.6	2.24	32.4	73.6	2.04	26.4	67.2	2.18	32.8
	65세 이상	72.9	1.92	27.1	68.0	2.05	32.0	73.2	2.02	26.8	69.7	1.99	30.3
비장애인	전체	77.1	2.19	22.9	79.1	2.41	20.9	79.9	2.31	20.1	73.0	2.35	27.0
	65세 미만	77.6	2.22	22.4	79.6	2.47	20.4	80.9	2.36	19.1	73.9	2.41	26.1
	65세 이상	74.1	2.01	25.9	75.9	2.09	24.1	74.7	2.04	25.3	69.0	2.03	31.0

〈표 9-2-11〉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

(단위: %, 명)

구분		2015			2017			2019			2021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전체		50.1	2.36	49.9	51.9	2.35	48.1	51.4	2.22	48.6	50.1	2.23	49.9
장애인	전체	35.1	2.10	64.9	36.6	1.99	63.4	33.8	2.10	66.2	33.0	2.01	67.0
	65세 미만	36.0	2.13	64.0	39.0	1.95	61.0	39.2	2.10	60.8	38.2	2.17	61.8
	65세 이상	33.5	2.05	66.5	33.6	2.06	66.4	28.2	2.10	71.8	28.2	1.81	71.8
비장애인	전체	50.8	2.37	49.2	52.7	2.36	47.3	52.4	2.22	47.6	51.0	2.24	49.0
	65세 미만	53.3	2.40	46.7	55.5	2.40	44.5	55.6	2.25	44.4	54.3	2.28	45.7
	65세 이상	35.4	2.05	64.6	36.4	2.02	63.6	34.2	1.91	65.8	34.1	1.90	65.9

주: 1) 사회조사(통계청)의 2015년-2021년 원자료를 재분석함
2)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인으로 재분석함
자료: 2022년-2호. KODDI 통계 뉴스레터(e-letter).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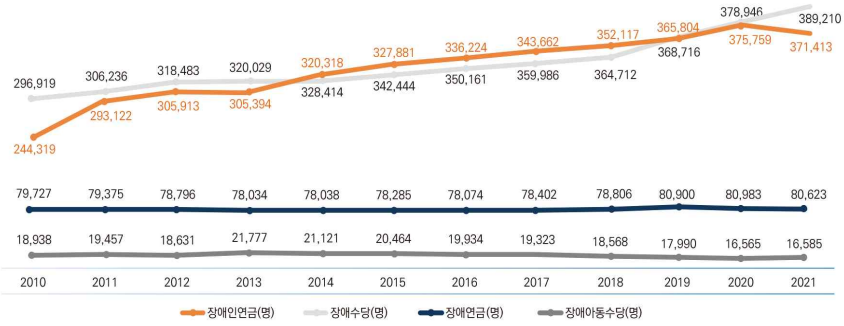
– 낙심,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상태가 필요할 경우 대화 상대 여부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34.0%('21년 기준)로 비장애인 19.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30.2%('15년), 30.9%('17년), 30.1%('19년), 36.6%('21년)로 증가 추이를 보임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31.5%('21년 기준)로 비장애인 27.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32.8%('21년 기준)로 높게 나타남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여부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67.0%('21년 기준)로 비장애인 49.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없음'의 비율이 66.5%('15년), 66.4%('17년), 71.8%('19년), 71.8%('21년)로 증가 추이를 보임
  •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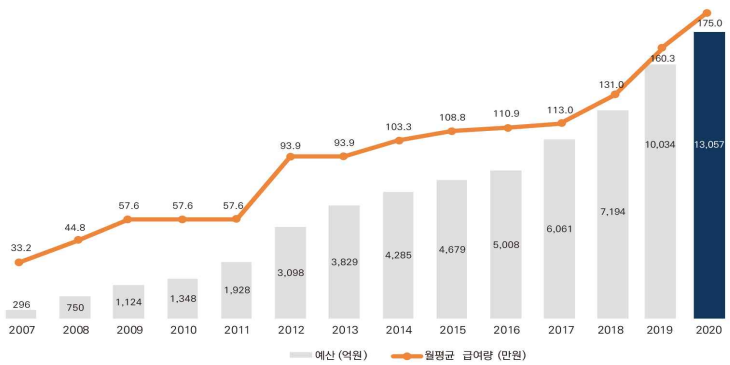
–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출처: e-나라지표)

10. 사회보장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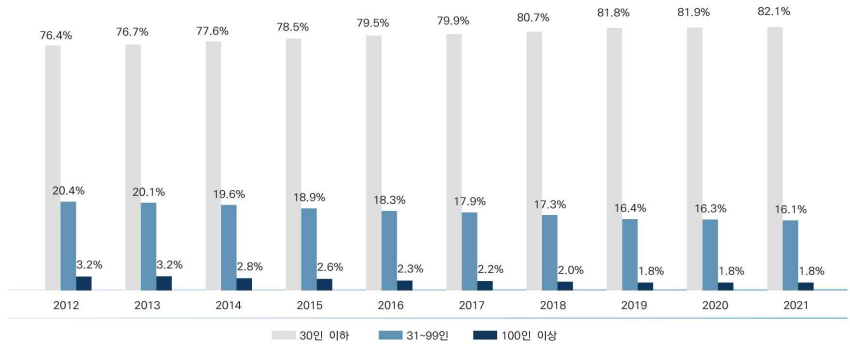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79,727명에서 2021년 80,623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244,319명에서 2021년 371,413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 296,919명에서 2021년 389,210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0년 18,938명에서 2021년 16,585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1년 15,217억원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20년 181.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규모(이용인원)는 2011년 33,667명에서 2021년 102,5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95,046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시설 비율'의 경우, 정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2012년 76.4% 대비 2021년 82.1%)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① 가입한 연금 종류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	20.8	0.8	-	-	0.1		2.1	-
2011	32.9	1.4	0.2	0.4	1.9		3.2	0.1
2014	35.0	2.1	0.4	0.3	1.9		3.8	0.2
2017	37.7	2.1	0.4	0.3	1.5		3.0	-
2020	33.3	1.7	0.3	0.4	-	0.0	2.4	
남	40.9	2.1	0.2	0.3	-	0.0	2.6	-
여	23.0	1.1	0.3	0..7	-	0.1	2.2	-
계	33.3	1.7	0.3	0.4	-	0.1	2.4	-
심한 장애	26.1	1.5	0.2	0.4	-	0.05	1.7	-
심하지 않은 장애	37.3	1.8	0.3	0.5	-	0.05	2.4	-
지체	38.5	1.7	0.4	0.6	-	0.0	3.2	-
뇌병변	29.1	0.9	0.0	0.3	-	0.0	1.8	-
시각	38.9	1.7	0.1	0.4	-	0.2	3.3	-
청각	27.4	2.6	0.2	0.4	-	0.0	1.2	-
언어	28.7	1.0	0.0	0.0	-	0.0	1.5	-
지적	21.7	0.5	0.0	0.2	-	0.0	0.5	-
자폐성	27.8	0.6	0.0	0.0	-	0.0	2.4	-
정신	8.1	0.0	0.0	0.3	-	0.0	1.0	-
신장	34.2	3.0	0.2	0.4	-	0.2	2.4	-
심장	44.8	3.0	0.0	0.0	-	0.0	1.1	-
호흡기	36.6	1.9	0.0	0.0	-	0.0	1.3	-
간	44.7	3.8	0.6	0.0	-	0.4	3.9	-
안면	42.9	2.5	0.0	0.0	-	0.0	2.9	-
장루 · 요루	33.2	1.3	0.0	0.0	-	0.0	2.9	-
뇌전증	18.9	0.5	0.0	0.0	-	0.0	0.7	-

주: 1) 중복응답임
2)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함
3) 2020년은 만18세 이상 기준(개인연금은 전체기준)
4) 2020년에는 보훈연금 대신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조사됨
5)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343, 49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0, 558.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99, 59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68, 722.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p.471 p.705

- 연급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33.3%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2.4% 이하의 낮은 가입률을 보임
  -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연금의 가입률이 높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 또한 심한장애보다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연금 종류에 따른 장애유형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지체, 시각, 심장, 간장애가 높은 가입률을 보임
  -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시각, 정신, 간 장애만 가입되어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 지체, 뇌병변, 청각, 신장, 장루 · 요루 장애만 가입되어 있으며 두 연금 모두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별정우체국연금은 간장애 0.4%, 개인연금도 간장애가 3.9%로 높은 가입률을 보임

② 장애연금 수급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소계		1급		2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76,280	296,304,705	11,007	57,972,283	25,145	107,518,566
2011	79,375	347,466,360	75,895	305,547,438	11,229	61,569,109	25,218	112,288,852
2012	78,796	349,116,465	75,934	314,462,857	11,307	64,383,918	25,400	116,872,640
2013	78,034	364,904,555	75,041	326,167,915	11,292	66,879,131	25,302	121,795,089
2014	78,038	366,074,576	75,387	331,603,350	11,357	68,102,787	25,749	124,895,468
2015	78,285	372,089,942	75,688	336,567,621	11,393	69,260,983	26,081	127,855,760
2016	78,074	373,380,465	75,497	337,332,457	11,657	70,885,857	26,820	132,030,529
2017	78,402	391,147,481	75,486	349,016,676	12,099	76,657,680	27,517	140,482,777
2018	78,806	405,867,495	75,734	359,198,132	12,863	83,692,092	27,719	144,285,004
2019	80,900	427,566,465	77,872	378,719,802	13,021	86,120,020	29,109	156,912,842
2020	80,983	431,397,074	78,079	383,030,714	12,668	84,433,252	29,946	163,410,649
2021	80,623	434,689,722	77,726	384,943,732	12,147	80,511,745	30,590	169,296,495
남	62,874	345,895,364	60,724	306,649,574	9,873	66,728,760	23,088	131,466,391
여	17,749	88,794,359	17,002	78,294,158	2,274	13,782,985	7,502	37,830,104
20세 미만	-	-	-	-	-	-	-	-
20-24세	59	367,516	41	156,210	9	51,386	11	50,599
25-29세	308	1,771,357	250	1,131,670	49	306,784	94	417,453
30-34세	937	4,865,189	834	3,551,176	158	855,417	323	1,433,268
35-39세	2,563	13,525,823	2,389	11,065,543	432	2,554,839	967	4,928,415
40-44세	5,018	27,238,162	4,693	22,321,068	758	4,673,736	1,894	9,833,035
45-49세	8,145	45,711,027	7,761	39,182,643	1,283	8,272,234	3,141	17,627,207
50-54세	12,478	72,126,776	11,855	61,137,236	1,853	12,317,581	4,697	27,571,940
55-59세	16,734	100,108,530	15,934	84,582,641	2,386	16,956,738	6,274	37,860,032
60-64세	15,558	81,215,469	15,147	74,057,822	2,580	17,093,596	5,858	32,160,212
65-69세	7,332	34,566,301	7,331	34,564,150	1,255	8,443,236	2,991	15,097,031
70세 이상	11,491	53,193,573	11,491	53,193,573	1,384	8,986,200	4,340	22,317,304

주: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2)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3)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4) 2021년 평균급여액의 경우 장애연금은 월평균 급여액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1인당 평균급여액이며 병급조정자는 조정전 금액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전체 장애연금 수급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2021년 수급액은 434,689,722천원으로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계속)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3급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2010	79,727	333,603,890	40,128	130,813,857	3,447	37,299,185
2011	79,375	347,466,360	39,448	131,689,477	3,480	41,918,922
2012	78,796	349,116,465	39,227	133,206,299	2,862	34,653,608
2013	78,034	364,904,555	38,447	137,493,695	2,993	38,736,640
2014	78,038	366,074,576	38,281	138,605,095	2,651	34,471,226
2015	78,285	372,089,942	38,214	139,450,878	2,597	35,522,321
2016	78,074	373,380,465	37,020	134,416,071	2,577	36,048,008
2017	78,402	391,147,481	35,870	131,876,219	2,916	42,130,805
2018	78,806	405,867,495	35,152	131,221,036	3,072	46,669,363
2019	80,900	427,566,465	35,742	135,686,939	3,028	48,846,663
2020	80,983	431,397,074	35,465	135,186,814	2,904	48,366,360
2021	80,623	434,689,722	34,989	135,135,492	2,897	49,745,990
남	62,874	345,895,364	27,763	108,454,423	2,150	39,246,790
여	17,749	88,794,359	7,226	26,681,069	747	10,500,201
20세 미만	-	-	-	-	-	-
20-24세	59	367,516	21	54,225	18	211,306
25-29세	308	1,771,357	107	407,433	58	639,687
30-34세	937	4,865,189	353	1,262,492	103	1,314,013
35-39세	2,563	13,525,823	990	3,582,289	174	2,460,280
40-44세	5,018	27,238,162	2,041	7,814,298	325	4,917,094
45-49세	8,145	45,711,027	3,337	13,283,203	384	6,528,383
50-54세	12,478	72,126,776	5,305	21,247,715	623	10,989,540
55-59세	16,734	100,108,530	7,274	29,765,870	800	15,525,889
60-64세	15,558	81,215,469	6,709	24,804,015	411	7,157,647
65-69세	7,332	34,566,301	3,085	11,023,883	1	2,151
70세 이상	11,491	53,193,573	5,767	21,890,070	0	0

주: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2)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3)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 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전체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나, 2018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의 수가 62,874명 여성 수급자 17,74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체 수급자 중 55-59세가 16,734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15,558명, 50-54세가 12,478명 순으로 나타남

③ 산재보험 수급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단위: 명, 원)

구 분	수급자	금액
2005	55,781	922,185,208,280
2006	61,894	1,067,385,111,250
2007	67,227	1,170,646,840,950
2008	70,580	1,265,916,132,330
2009	74,584	1,291,083,501,960
2010	88,863	1,397,872,234,060
2011	91,906	1,509,244,845,760
2012	95,229	1,712,958,058,080
2013	93,524	1,629,026,710,510
2014	93,689	1,667,219,394,800
2015	93,953	1,710,783,723,310
2016	93,383	1,772,502,714,970
2017	93,407	1,832,567,545,940
2018	96,493	1,998,757,627,330
2019	101,942	2,157,725,159,300
2020	103,768	2,257,946,875,660
남	92,064	2,114,346,481,930
여	11,704	143,600,393,730
1급	3,738	175,072,102,240
2급	3,852	147,105,858,550
3급	4,750	169,526,338,400
4급	2,815	87,235,713,480
5급	9,022	228,501,713,540
6급	15,269	338,899,713,260
7급	17,392	326,804,101,930
8급	1,148	59,903,535,850
9급	1,907	71,840,551,070
10급	3,244	109,576,218,330
11급	8,453	180,777,369,440
12급	6,988	122,644,680,990
13급	7,573	109,587,114,450
14급	18,583	117,553,717,760
20세미만	71	576,434,390
20-29세	2,081	23,952,006,170
30-39세	5,346	76,841,543,510
40-49세	13,809	258,238,714,750
50-59세	28,225	630,335,486,190
60-69세	32,385	749,095,489,250
70-79세	16,992	399,659,027,640
80-89세	4,642	113,419,395,480
90-99세	210	5,672,457,800
100세~	7	156,320,480

주: 1) 2021년 10월 말 기준
2)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3)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2020년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103,768명이며, 수급액은 2,257,946,875,660원으로 나타남
  • 남성 수급자 수는 92,064명으로 여성 수급자 수 11,704명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장해등급은 14급이 18,583명으로 가장 많고 7급 17,392명, 6급 15,269명 순임
  • 산재보험 수급자의 연령은 60-69세가 32,385명으로 가장 많고 50-59세 28,225명, 70-79세 16,992명 순으로 나타남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단, 장해 1~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함

④ 건강보험 가입

〈표 10-1-4〉 건강보험 가입현황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미가입
2005	100.0	44.8	40.4	9.7	4.8	0.3	
2011	100.0	53.1	29.4	14.4	2.7	0.4	
2014	100.0	53.6	30.6	14.3	1.3	0.2	
2017	100.0	56.9	28.3	13.1	1.6	0.1	
2020	100.0	46.2	28.4	18.7	4.9	1.3	0.4
남	100.0	56.3	29.6	12.4	1.7	0.1	0.1
여	100.0	57.8	26.5	14.1	1.5	0.1	0.1
심한 장애	100.0	38.8	23.9	30	5.9	1.0	0.4
심하지 않은 장애	100.0	50.7	31.1	11.9	4.3	1.5	0.4
지체	100.0	50.7	29.7	14.0	4.1	1.3	0.3
뇌병변	100.0	43.8	23.8	25.5	5.6	1.2	0.1
시각	100.0	46.4	32.8	13.0	5.3	1.6	0.9
청각	100.0	49.3	30.7	12.6	4.5	1.8	1.0
언어	100.0	41.9	31.7	14.2	8.5	2.5	1.2
지적	100.0	34.3	21.3	37.0	5.8	1.1	0.5
자폐성	100.0	52.0	32.5	10.6	3.6	1.4	-
정신	100.0	15.6	14.5	58.1	11.3	0.5	-
신장	100.0	42.2	30.8	21.5	5.0	0.2	0.3
심장	100.0	46.8	30.6	17.9	1.6	0.8	2.3
호흡기	100.0	43.8	26.9	20.3	7.4	1.6	-
간	100.0	54.7	30.0	9.3	4.5	1.6	-
안면	100.0	42.5	38.4	11.1	5.8	-	2.1
장루요루	100.0	50.0	33.2	13.0	2.4	1.4	-
뇌전증	100.0	26.1	18.4	41.0	13.9	0.6	-

주: 1) 전체 계와 장애정도 계의 차이는 추정 수 차이에 의해 발생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7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1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24, 517.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5, p.505.

- 2020년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74.6%로 나타남.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2020년 23.6%로 나타남
  - 연금 종류별로는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률이 46.2%로 가장 높고, 지역건강보험 28.4%, 의료급여 1종 18.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2종의 가입률이 각각 3.1%p, 0.1%p 높고, 직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1종의 가입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1.5%p, 1.7%p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심하지 않은 장애가 높은 반면 의료급여(1종+2종)의 경우 심한 장애의 가입률이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은 간장애가 54.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지역건강보험은 안면장애 38.4%, 의료급여 1종은 정신장애 58.1%, 의료급여 2종은 뇌전증장애 13.9%로 각각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수(전체 수급자 비교)

(단위: 가구, 명, %, 백만원)

구분	전체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총수급자		수급률	급여액			가구 (비율)
	가구	인원		계	국비	지방비	
2004	753,681	1,424,088	2.9	2,366,116	1,797,823	568,293	123,418 (16.38)
2005	809,745	1,513,352	3.1	2,818,411	2,139,727	678,684	136,892 (16.91)
2006	831,692	1,534,950	3.1	3,175,667	2,406,967	768,700	144,747 (17.40)
2007	852,420	1,549,848	3.1	3,437,763	2,599,698	838,065	154,066 (18.07)
2008	854,205	1,529,939	3.1	3,676,117	2,882,107	794,011	162,527 (19.03)
2009	882,925	1,568,533	3.2	3,923,031	3,082,479	840,552	171,330 (19.40)
2010	878,799	1,549,820	3.1	3,997,766	3,160,556	837,210	173,322 (19.72)
2011	850,689	1,469,254	2.9	4,017,270	3,200,277	816,992	173,751 (20.42)
2012	821,879	1,394,042	2.7	3,930,268	3,151,909	778,359	174,112 (21.18)
2013	810,544	1,350,891	2.6	4,088,384	3,275,973	812,411	175,867 (21.70)
2014	814,184	1,328,713	2.6	4,071,549	3,276,898	794,651	178,397 (21.91)
2015	1,014,117	1,646,363	3.2	3,409,522	2,770,603	638,919	191,723 (18.90)
2016	1,035,435	1,630,614	3.2	4,156,506	3,410,734	745,772	193,585 (18.70)
2017	1,032,996	1,581,646	3.1	4,437,654	3,644,287	793,368	197,081 (19.08)
2018	1,165,175	1,743,690	3.4	4,488,771	3,664,684	824,087	211,010 (18.11)
2019	1,281,759	1,881,357	3.6	4,428,135	3,602,354	825,781	219,889 (17.16)
2020	1,459,059	2,134,186	4.1	–	–	–	229,395 (15.72)
2021	1,459,059	2,134,186	4.1	4,840,558	3,965,171	875,387	229,395 (15.72)

주: 1) 전체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 주민등록인구 수) * 100
2) 비율 = (장애인 수급자 가구 수 / 총수급자 가구 수) * 100
3) 총수급자의 가구 총계는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 수임. 인원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한 수치임
4)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국토부), 교육급여(교육부) 업무가 각 부처로 이관되어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로 변경

자료: 1)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p. 391, 395, 396
2)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134,186명(수급률 4.1%)으로 2019년에 비해 약 25만명이 증가함
• 2021년 장애인수급가구는 229.395가구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비율은 15.72%로 전년도 대비 감소함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7	15.0	16.2	14.4	1.4
2020	19.1	25.0	14.7	1.8
남	18.2	23.3	14.6	2.0
여	20.4	27.2	15.0	1.6
심한 장애	29.2	37.8	21.8	2.9
심하지 않은 장애	13.0	17.3	10.5	1.2
지체	14.6	18.9	12.2	1.2
뇌병변	24.4	33.2	18.4	2.5
시각	13.7	19.0	11.0	1.6
청각	13.3	18.9	10.1	0.9
언어	20.0	24.7	15.5	3.6
지적	36.3	44.4	25.5	6.2
자폐성	10.4	16.2	8.2	8.4
정신	60.0	70.8	40.9	0.8
신장	20.4	29.8	15.6	1.4
심장	15.2	21.3	7.6	1.0
호흡기	23.9	30.3	20.5	0.9
간	10.1	14.7	8.0	1.4
안면	13.6	18.3	11.3	3.1
장루요루	9.9	16.5	9.6	0.0
뇌전증	45.1	57.6	34.7	4.3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p.461-463, 719-720.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462~463, 700~ 701

- 2020년의 급여현황은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순이며 교육급여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급여를 제외한 급여현황에서 높으며 장애등급에서는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정신장애가 교육급여를 제외한 급여현황에서 가장 높고 뇌전증, 지적, 뇌병변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정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
  -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상),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상),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상)

(2) 장애인연금

① 장애인연금 수급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수급자 수	305,394	56,339	24,614	27,465	1,534	69,406	58,142	3,165
2014	수급자 수	328,414	59,308	26,279	30,621	1,881	73,795	63,495	4,000
2015	수급자 수	342,444	59,661	26,935	32,380	2,156	78,755	65,542	4,953
2016	수급자 수	350,161	59,269	27,089	33,408	2,294	82,465	65,894	5,792
2017	수급자 수	359,986	59,311	27,478	34,196	2,426	86,338	67,164	6,728
2018	수급자 수	364,712	58,420	27,523	34,511	2,416	89,948	66,391	7,706
2019	수급자 수	368,716	57,390	27,268	34,484	2,513	93,318	65,247	8,696
2020	수급자 수	375,759	56,542	26,715	34,216	2,675	99,496	63,588	11,023
	수급권자 수	518,705	95,887	36,125	49,566	4,121	114,032	90,570	13,144
2021	수급자 수	371,413	54,517	25,921	33,078	2,717	101,153	60,371	11,712
	수급률	(71.6)	(56.9)	(71.8)	(66.7)	(65.9)	(88.7)	(66.7)	(89.1)
남	수급권자 수	303,657	63,637	18,413	25,701	2,821	66,393	48,001	11,172
	수급자 수	207,749	33,326	12,440	16,028	1,842	57,949	29,957	9,937
	수급률	(68.4)	(52.4)	(67.6)	(62.4)	(65.3)	(87.3)	(62.4)	(88.9)
여	수급권자 수	215,048	32,250	17,712	23,865	1,300	47,639	42,569	1,972
	수급자 수	163,664	21,191	13,481	17,050	875	43,204	30,414	1775
	수급률	(76.1)	(65.7)	(76.1)	(71.4)	(67.3)	(90.7)	(71.4)	(90.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수	167,708	28,653	11,156	11,711	1049	47,410	22,293	2633
	수급률	(32.3)	(29.9)	(30.9)	(23.6)	(25.5)	(41.6)	(24.6)	(20.0)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21,393	2,983	2,046	2,309	154	4,091	4,887	391
	수급률	(4.1)	(3.1)	(5.7)	(4.7)	(3.7)	(3.6)	(5.4)	(3.0)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154,173	20,971	11,849	18,561	1,440	33,640	29,389	8,302
	수급률	(29.7)	(21.9)	(32.8)	(37.4)	(34.9)	(29.5)	(32.4)	(63.2)
시설수급자	수급자 수	28,139	1,910	870	497	74	16,012	3,802	386
	수급률	(5.4)	(2.0)	(2.4)	(1.0)	(1.8)	(14.0)	(4.2)	(2.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 (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21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4)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2020년부터 장애등급별 수급자수 통계를 산정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현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518,705명, 수급자는 371,413명으로 수급률은 71.6%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76.1%로 남성의 수급률 68.4%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분위별 수급률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3%로 가장 높고 차상위초과계층 29.7%, 시설수급자 5.4% 순임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수급자 수	32,971	26,527	531	3,006	356	241	56	404	637
2014	수급자 수	31,533	32,028	557	3,316	322	244	63	372	600
2015	수급자 수	31,184	35,879	536	3,468	295	64	248	372	16
2016	수급자 수	30,853	38,074	512	3,514	255	68	261	397	16
2017	수급자 수	30,517	40,716	540	3,586	226	73	269	408	10
2018	수급자 수	29,921	42,785	525	3,565	215	82	278	417	9
2019	수급자 수	29,557	45,177	515	3,543	202	85	280	418	23
2020	수급자 수	28,892	47,489	502	3,580	184	88	284	469	16
	수급권자 수	30,265	76,750	907	5,564	373	193	628	580	-
2021	수급자 수	28,308	48,620	498	3,452	164	97	284	509	12
	수급률	(93.5)	(63.3)	(54.9)	(62.0)	(44.0)	(50.3)	(45.2)	(87.8)	-
	수급권자 수	16,002	45,686	585	4,183	263	122	363	315	-
남	수급자 수	14,940	27,858	302	2,586	111	50	149	269	5
	수급률	(93.4)	(61.0)	(51.6)	(61.8)	(42.2)	(41.0)	(41.0)	(85.4)	-
	수급권자 수	14,263	31,064	322	1,381	110	71	265	265	-
여	수급자 수	13,368	20,762	196	866	53	47	135	240	7
	수급률	(93.7)	(66.8)	(60.9)	(62.7)	(48.2)	(66.2)	(50.9)	(90.6)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수	19,616	20,833	211	1,570	79	32	173	284	5
	수급률	(64.8)	(27.1)	(23.3)	(28.2)	(21.2)	(16.6)	(27.5)	(49.0)	-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1,206	3,081	38	168	9	5	6	19	-
	수급률	(4.0)	(4.0)	(4.2)	(3.0)	(2.4)	(2.6)	(1.0)	(3.3)	-
차상위초과	수급자 수	3,032	24,602	247	1,696	76	58	105	199	6
	수급률	(10.0)	(32.1)	(27.2)	(30.5)	(20.4)	(30.1)	(16.7)	(34.3)	-
시설수급자	수급자 수	4,454	104	2	18	-	2	-	7	1
	수급률	(14.7)	(0.1)	(0.2)	(0.3)	-	(1.0)	-	(1.2)	-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소득별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득별 수급률은 (수급자 수(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 2021년 수급권자 수) * 100으로 구함
4)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2020년부터 장애등급별 수급자수 통계를 산정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유형별 수급률은 정신장애가 93.5%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 89.1%, 지적장애 88.7%, 뇌전증 8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 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함.
  - 급여액은 2021년 1월~2021년 12월 : 기초급여-최고(월) 300,000원(65세 이상은 기초급여는 미지급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월 2만원)을 지급함

(3)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수급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320,029	157,255	28,339	30,327	2,972	22,385	29,827	117
	(100.0)	(49.1)	(8.9)	(9.5)	(0.9)	(7.0)	(9.3)	(0.0)
2014	320,318	154,315	28,356	29,999	2,979	22,962	30,304	98
	(100.0)	(48.2)	(8.9)	(9.4)	(0.9)	(7.2)	(9.5)	(0.0)
2015	327,881	155,880	29,123	30,404	3,081	24,100	31,560	112
	(100.0)	(47.5)	(8.9)	(9.3)	(0.9)	(7.4)	(9.6)	(0.0)
2016	336,224	156,134	29,775	33,319	3,156	25,168	32,801	134
	(100.0)	(46.4)	(8.9)	(9.9)	(0.9)	(7.5)	(9.8)	(0.0)
2017	343,662	154,867	30,128	38,475	3,182	25,808	33,640	150
	(100.0)	(45.1)	(8.8)	(11.2)	(0.9)	(7.5)	(9.8)	(0.0)
2018	352,117	152,144	30,570	46,200	3,169	26,375	34,461	163
	(100.0)	(43.2)	(8.7)	(13.1)	(0.9)	(7.5)	(9.8)	(0.0)
2019	365,804	151,785	31,407	55,435	3,205	27,235	35,785	175
	(100.0)	(41.5)	(8.6)	(15.2)	(0.9)	(7.4)	(9.8)	(0.0)
2020	378,946	153,385	32,610	61,567	3,258	28,392	37,067	209
	(100.0)	(40.5)	(8.6)	(16.2)	(0.9)	(7.5)	(9.8)	(0.1)
2021	389,210	153,745	33,568	67,354	3,254	29,415	38,034	239
	(100.0)	(39.5)	(8.6)	(17.3)	(0.8)	(7.6)	(9.8)	(0.1)
남	185,568	68,001	16,542	26,322	2,179	16,002	23,129	215
	(100.0)	(36.6)	(8.9)	(14.2)	(1.2)	(8.6)	(12.5)	(0.1)
여	203,642	85,744	17,026	41,032	1,075	13,413	14,905	24
	(100.0)	(42.1)	(8.4)	(20.1)	(0.5)	(6.6)	(7.3)	(0.0)
기초생활 수급자	266,655	100,470	21,708	38,926	2,525	24,202	26,719	155
	(100.0)	(37.7)	(8.1)	(14.6)	(0.9)	(9.1)	(10.0)	(0.1)
차상위 계층	109,193	49,992	11,187	26,773	644	3,493	9,620	83
	(100.0)	(45.8)	(10.2)	(24.5)	(0.6)	(3.2)	(8.8)	(0.1)
시설수급자	13,362	3,283	673	1,655	85	1,720	1,695	1
	(100.0)	(24.6)	(5.0)	(12.4)	(0.6)	(12.9)	(12.7)	(0.0)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종전3~6급)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389,21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인 17.3%, 정신장애인 13.0% 순임
  -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 수가 203,642명으로 남성 수급자 185,568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10-2-4〉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37,731	2,214	850	1,668	818	1,940	371	3,215	-
	(11.8)	(0.7)	(0.3)	(0.5)	(0.3)	(0.1)	(0.6)	(1.0)	-
2014	40,487	2,166	771	1,529	807	2,003	365	3,176	1
	(12.6)	(0.7)	(0.2)	(0.5)	(0.3)	(0.1)	(0.6)	(1.0)	(0.0)
2015	42,596	2,273	722	1,472	867	2,100	360	3,231	-
	(13.0)	(0.7)	(0.2)	(0.4)	(0.3)	(0.6)	(0.1)	(1.0)	-
2016	44,213	2,581	694	1,460	976	2,197	363	3,253	-
	(13.1)	(0.8)	(0.2)	(0.4)	(0.3)	(0.7)	(0.1)	(1.0)	-
2017	45,487	2,776	673	1,458	1087	2,297	354	3,280	-
	(13.2)	(0.8)	(0.2)	(0.4)	(0.3)	(0.7)	(0.1)	(1.0)	-
2018	46,833	2,880	686	1,481	1123	2,408	335	3,289	-
	(13.3)	(0.8)	(0.2)	(0.4)	(0.3)	(0.7)	(0.1)	(0.9)	-
2019	48,314	2,980	692	1,460	1197	2,529	329	3,276	-
	(13.2)	(0.8)	(0.2)	(0.4)	(0.3)	(0.7)	(0.1)	(0.9)	-
2020	49,500	3,180	681	1,473	1,324	313	2,709	3,278	-
	(13.1)	(0.8)	(0.2)	(0.4)	(0.3)	(0.1)	(0.7)	(0.9)	-
2021	50,441	3,204	673	1,499	1,401	322	2,821	3,240	-
	(13.0)	(0.8)	(0.2)	(0.4)	(0.4)	(0.1)	(0.7)	(0.8)	-
남	25,643	1,761	405	1,054	896	149	1,502	1,768	-
	(13.8)	(0.9)	(0.2)	(0.6)	(0.5)	(0.1)	(0.8)	(1.0)	-
여	24,798	1,443	268	445	505	173	1,319	1,472	-
	(12.2)	(0.7)	(0.1)	(0.2)	(0.2)	(0.1)	(0.6)	(0.7)	-
기초생활 수급자	41,879	2,473	489	1,145	1059	1,790	254	2,861	-
	(15.7)	(0.9)	(0.2)	(0.4)	(0.4)	(0.7)	(0.1)	(1.1)	-
차상위 계층	4,413	730	179	335	342	991	66	34	-
	(4.0)	(0.7)	(0.2)	(0.3)	(0.3)	(0.9)	(0.1)	(0.0)	-
시설수급자	4,149	1	5	19	0	40	2	345	-
	(31.1)	(0.0)	(0.0)	(0.1)	(0.0)	(0.3)	(0.0)	(2.6)	-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3~6급)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지체장애의 비율이 각각 37.7%, 45.8%로 가장 높은 반면,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정신장애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함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3	21,777	1,240	654	886	323	13,105	3,374	1,819
	(100.0)	(5.7)	(3.0)	(4.1)	(1.5)	(60.2)	(15.5)	(8.4)
2014	21,121	1,026	619	773	307	13,130	3,189	1,754
	(100.0)	(4.9)	(2.9)	(3.7)	(1.5)	(62.2)	(15.1)	(8.3)
2015	20,464	835	542	727	320	12,975	2,989	1,782
	(100.0)	(4.1)	(2.6)	(3.6)	(1.6)	(63.4)	(14.6)	(8.7)
2016	19,934	730	496	700	344	12,834	2,739	1,799
	(100.0)	(3.7)	(2.5)	(3.5)	(1.7)	(64.4)	(13.8)	(9.0)
2017	19,323	669	455	654	361	12,577	2,485	1849
	(100.0)	(3.5)	(2.4)	(3.4)	(1.9)	(65.1)	(12.9)	(9.6)
2018	18,568	583	411	632	373	12,211	2,247	1,869
	(100.0)	(3.1)	(2.2)	(3.4)	(2.0)	(65.8)	(12.1)	(10.1)
2019	17,990	523	377	581	402	11,920	2,065	1892
	(100.0)	(2.9)	(2.1)	(3.2)	(2.2)	(66.3)	(11.5)	(10.5)
2020	16,565	458	330	537	486	10,914	1,758	1,859
	(100.0)	(2.8)	(2.0)	(3.2)	(2.9)	(65.9)	(10.6)	(11.2)
2021	16,585	413	318	499	497	11,017	1,633	1994
	(100.0)	(2.5)	(1.9)	(3.0)	(3.0)	(66.4)	(9.8)	(12.0)
남	10,490	233	170	268	340	6,833	939	1600
	(100.0)	(2.2)	(1.6)	(2.6)	(3.2)	(65.1)	(9.0)	(15.3)
여	6,095	180	148	231	157	4,184	694	394
	(100.0)	(3.0)	(2.4)	(3.8)	(2.6)	(68.6)	(11.4)	(6.5)
기초생활 수급자	8,245	227	129	209	198	5,816	665	887
	(100.0)	(2.8)	(1.6)	(2.5)	(2.4)	(70.5)	(8.1)	(10.8)
차상위 계층	5,979	162	141	230	264	3,459	621	1008
	(100.0)	(2.7)	(2.4)	(3.8)	(4.4)	(57.9)	(10.4)	(16.9)
시설수급자	2,361	24	48	60	35	1,742	347	99
	(100.0)	(1.0)	(2.0)	(2.5)	(1.5)	(73.8)	(14.7)	(4.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 16,585명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비율이 66.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수급자 수가 10,490명으로 여성 수급자 6,09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2-5〉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장루 요루	안면	뇌전증	장애유형 미상
2013	53	68	95	8	65	12	33	42	-
	(0.2)	(0.3)	(0.4)	(0.0)	(0.3)	(0.2)	(0.1)	(0.2)	-
2014	32	56	80	9	66	25	17	38	-
	(0.2)	(0.3)	(0.4)	(0.0)	(0.3)	(0.1)	(0.1)	(0.2)	-
2015	21	51	73	8	62	10	24	45	-
	(0.1)	(0.2)	(0.4)	(0.0)	(0.3)	(0.0)	(0.1)	(0.2)	-
2016	24	49	66	9	63	15	22	44	-
	(0.1)	(0.2)	(0.3)	(0.0)	(0.3)	(0.1)	(0.1)	(0.2)	-
2017	24	49	66	9	63	15	22	44	-
	(0.1)	(0.2)	(0.3)	(0.0)	(0.3)	(0.1)	(0.1)	(0.2)	-
2018	19	39	44	8	53	19	16	44	-
	(0.1)	(0.2)	(0.2)	(0.0)	(0.3)	(0.1)	(0.1)	(0.2)	-
2019	23	31	42	7	52	19	13	43	-
	(0.1)	(0.2)	(0.2)	(0.0)	(0.3)	(0.1)	(0.1)	(0.2)	-
2020	18	31	39	6	51	10	17	51	-
	(0.1)	(0.2)	(0.2)	(0.0)	(0.3)	(0.1)	(0.1)	(0.3)	-
2021	14	26	42	5	49	8	17	53	-
	(0.1)	(0.2)	(0.3)	(0.0)	(0.3)	(0.0)	(0.1)	(0.3)	-
남	7	12	26	3	15	5	7	32	-
	(0.1)	(0.1)	(0.2)	(0.0)	(0.1)	(0.0)	(0.1)	(0.3)	-
여	7	14	16	2	34	3	10	21	-
	(0.1)	(0.2)	(0.3)	(0.0)	(0.6)	(0.0)	(0.2)	(0.3)	-
기초생활 수급자	10	14	23	1	24	6	9	27	-
	(0.1)	(0.2)	(0.3)	(0.0)	(0.3)	(0.1)	(0.1)	(0.3)	-
차상위 계층	2	10	19	4	24	2	8	25	-
	(0.0)	(0.2)	(0.3)	(0.1)	(0.4)	(0.0)	(0.1)	(0.4)	-
시설수급자	2	2	-	-	1	-	-	1	-
	(0.1)	(0.1)	-	-	(0.0)	-	-	(0.0)	-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245명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 계층 5,979명, 시설수급자 2,361명 순임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정신질환 의료보장

① 만성 정신질환 급여

〈표 10-2-6〉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단위: 명, 일, 백만원)

구분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2006	1,852,458	35,471,637	147,359,332	1,328,246	1,114,468
2007	2,035,340	39,248,921	165,934,362	1,569,897	1,299,998
2008	2,098,927	42,709,802	180,075,209	1,991,178	1,599,179
2009	2,232,036	45,499,925	264,792,899	2,339,252	1,913,671
2010	2,345,642	48,704,589	289,496,830	2,658,294	2,179,126
2011	2,480,688	52,577,776	318,171,495	2,964,484	2,428,036
2012	2,640,366	57,388,812	351,814,052	3,267,902	2,666,329
2013	2,679,975	60,573,044	351,255,548	3,476,993	2,835,071
2014	2,741,609	63,965,263	404,192,088	3,848,742	3,122,054
2015	2,857,828	67,069,255	429,546,532	4,130,656	3,335,307
2016	3,039,137	71,005,336	467,315,609	4,511,888	3,625,008
2017	3,185,509	74,146,666	495,101,365	4,834,917	3,859,761
2018	3,421,605	77,668,892	542,754,520	5,280,105	4,225,370
2019	3,643,813	79,265,873	596,357,805	5,687,080	4,573,192
2020	3,747,397	79,684,042	646,772,399	6,029,052	4,864,183

주: 1) 만성질환 중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현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주요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연말 실거주지 기준임
3)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이며, 급여비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임
4) 수진기준(의료이용은 약국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이며, 의료급여 포함함
5) 기타는 주민등록 주소지 불분명한 건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1). 「202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p.50

-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 실인원은 2006년 1,852,458명에서 2020년 3,747,397명으로 내원일수는 2006년 35,471,637일에서 2020년 79,684,042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일수는 2006년 147,359,332일에서 2020년 646,772,399일로, 급여비는 2006년 1,114,468원에서 2020년 4,864,183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 · 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2010		340,108	2,892,149	20,462,726	937,881,221	927,907,778	324	321	46	45	14	14
2011		351,427	2,862,985	21,226,595	995,154,335	985,786,593	348	344	47	46	15	15
2012		356,636	3,232,063	22,281,478	1,061,020,556	1,052,194,508	328	326	48	47	15	15
2013		353,289	3,302,454	22,903,389	1,106,842,965	1,098,006,186	335	332	48	48	15	15
2014		362,945	3,459,377	23,628,260	1,159,758,861	1,150,887,083	335	333	49	49	15	15
2015	계	381,137	3,616,648	24,264,510	1,198,994,952	1,189,894,900	332	329	49	49	15	15
2016		405,465	3,935,040	25,352,961	1,268,469,767	1,258,487,913	322	320	50	50	15	15
2017		415,077	4,374,889	25,756,717	1,303,508,991	1,284,404,519	298	294	51	50	15	15
2018		438,490	4,766,890	26,411,105	1,374,792,724	1,350,448,759	288	283	52	51	15	15
2019		457,744	5,181,844	26,769,979	1,456,978,718	1,430,783,061	281	276	54	53	15	15
2020		470,003	5,489,809	27,025,367	1,563,962,188	1,535,565,267	285	280	58	57	15	15
2021		489,271	5,819,567	27,238,927	1,771,572,636	1,718,342,823	304	295	65	63	16	16
1.치매 (F00-F03)	계	119,341	1,131,129	7,940,882	615,364,012	595,878,245	544	526	77	75	29	28
	입원	35,211	263,970	7,078,075	542,406,973	523,952,068	2,054	1,984	76	74	75	73
	외래	87,455	587,779	583,427	29,284,015	28,376,090	49	48	50	48	7	7
	약국	49,810	279,380	279,380	43,673,024	43,550,087	156	155	156	155	4	4
2.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 (F10)	계	27,755	268,880	2,759,266	165,206,537	159,630,924	614	593	59	57	29	28
	입원	14,119	107,668	2,596,243	154,499,142	149,263,334	1,434,	1,386	59	57	55	53
	외래	19,217	147,454	149,265	9,767,606	9,434,039	66	63	65	63	4	3
	약국	2,637	13,758	13,758	939,788	933,551	68	67	68	67	2	2
3. 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계	1,629	7,789	16,097	1,594,149	1,538,156	204	197	99	95	12	12
	입원	513	898	9,222	1,082,665	1,040,544	1,205	1,158	117	112	96	92
	외래	908	5,467	5,451	395,519	382,381	72	69	72	70	5	4
	약국	485	1,424	1,424	115,965	115,230	81	80	81	80	2	2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2021 의료급여 주요통계」.

– 정신질환 의료급여 진료 실인원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체로 증가 추이임
- 2021년 진료 실인원 수는 489,271명으로 2020년 470,003명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진료건수, 입 · 내원일수, 총 진료비, 기관부담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0-2-7〉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진료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관 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일당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진료비	기관 부담금
4.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계	99,441	1,330,205	10,644,637	638,565,898	620,369,397	480	466	59	58	22	21
	입원	36,297	344,065	9,556,406	561,156,149	544,822,415	1,630	1,583	58	57	57	56
	외래	73,448	926,702	1,028,793	72,578,724	70,742,902	78	76	70	69	4	4
	약국	8,309	59,438	59,438	4,831,025	4,804,080	81	80	81	81	3	3
5. 기분 (정동성 장애 (F30-F39)	계	140,595	1,630,890	2,721,321	162,737,764	158,148,347	99	96	59	58	6	6
	입원	8,735	46,933	1,124,090	68,314,547	66,116,771	1,455	1,408	60	59	56	55
	외래	133,405	1,416,796	1,430,070	84,476,236	82,189,166	59	58	59	57	4	4
	약국	26,566	167,161	167,161	9,946,981	9,842,411	59	58	59	58	2	2
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F40-F48)	계	81,494	629,099	711,486	37,393,615	36,335,040	59	57	52	51	4	4
	입원	1,735	4,750	87,201	5,720,867	5,520,244	1,204	1,162	65	63	58	56
	외래	76,519	530,362	530,298	27,270,845	26,463,908	51	49	51	49	4	4
	약국	23,149	93,987	93,987	4,401,904	4,350,889	46	46	46	46	2	2,036
7. 정신 발육지체 (F70-F79)	계	19,172	186,340	1,252,286	73,196,585	70,980,714	392	380	58	56	17	17
	입원	4,624	40,023	1,099,245	64,382,780	62,408,856	1,608	1,559	58	56	57	55
	외래	15,439	130,299	137,023	7,646,031	7,410,364	58	56	55	54	3	3
	약국	2,403	16,018	16,018	1,167,774	1,161,494	72	72	72	72	2	2
8.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F50-F69, F80-F99)	계	87,944	615,423	1,126,962	64,904,363	63,106,870	105	102	57	55	7	7
	입원	3,500	20,616	533,823	32,814,820	31,713,872	1,591	1,538	61	59	59	57
	외래	81,573	456,934	455,266	23,091,523	22,448,010	50	49	50	49	5	5
	약국	33,529	137,873	137,873	8,998,020	8,944,988	65	64	65	64	2	2,
9. 간질 (G40-G41)	계	4,117	19,812	65,990	12,609,711	12,355,129	636	623	191	187	15	14
	입원	680	2,478	48,891	9,224,342	8,981,157	3,722	3,624	188	183	159	155
	외래	1,092	6,540	6,305	397,387	389,997	60	59	63	61	7	7
	약국	3,151	10,794	10,794	2,987,982	2,983,975	276	276	276	276	4	4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검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2021 의료급여 주요통계」.

- 상병별 진료 실인원은 기분(정동성)장애가 140,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치매 119,341명,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99,441명 순임
- 건당 진료비는 간질이 63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알콜 사용에 의한 행동장애 614천원, 치매 544천원 순으로 나타남

③ 정신보건 의료보장 이용

〈표 10-2-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2010	정신의료기관 실인원	75,282 (100.0)	23,740 (31.5)	46,126 (61.3)	3,149 (4.2)	2,267 (3.0)
2011		78,637 (100.0)	25,784 (32.8)	48,323 (61.5)	2,627 (3.3)	1,903 (2.4)
2012		80,569 (100.0)	27,286 (33.9)	48,897 (60.7)	2,321 (2.9)	2,065 (2.6)
2013		80,462 (100.0)	27,117 (33.7)	49,141 (61.1)	2,227 (2.8)	1,977 (2.5)
2014		81,625 (100.0)	27,212 (33.3)	50,222 (61.5)	2,206 (2.7)	1,985 (2.4)
2015		81,105 (100.0)	25,896 (31.9)	50,385 (62.1)	2,760 (3.4)	2,064 (2.5)
2016		79,401 (100.0)	25,051 (31.5)	50,375 (63.4)	2,187 (2.8)	1,788 (2.3)
2017		77,161 (100.0)	23,794 (30.8)	49,546 (64.2)	2,083 (2.7)	1,738 (2.3)
2018		143,156 (100.0)	77,773 (54.3)	64,112 (44.8)	6,949 (4.9)	503 (0.4)
2020		122,829 (100.0)	63,844 (52.0)	57,317 (46.7)	5,633 (4.6)	379 (0.3)
정신 의료기관	정신병원	28,794 (100.0)	13,074 (45.4)	15,271 (51.2)	1,448 (5.0)	187 (0.6)
	종합병원정신과	22,440 (100.0)	18,271 (81.4)	3,797 (18.1)	481 (2.1)	48 (0.2)
	병원 정신과	73,236 (100.0)	32,939 (45.0)	39,199 (51.5)	3,762 (5.1)	150 (0.2)
	정신과의원	4,618 (100.0)	2,824 (61.2)	1,723 (39.5)	178 (3.9)	–
정신요양시설		8,828 (100.0)	1,002 (11.4)	7,797 (87.4)	20 (0.2)	9 (0.1)

주: 1) 연도별 데이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2) 정신의료기관별 현황은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동안 연간 자료이며, 치매 제외 F코드 전체의 실인원임
3)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4) 2회 이상 입원환자는 입원 시점별로 의료보장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종류별 합계는 정신의료기관 전체 실인원의 값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5)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시·도별 현황을 분석하였음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pp78, 86.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p81, 87

– 정신의료기관 실인원은 2020년 기준으로 총 122,829명임
- 정신의료기관 실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2.0%이며, 의료급여(1종+2종) 수급자는 51.3%임
- 정신의료기관별 입원 · 입소자 수는 병원정신과 73,236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병원 28,794명, 종합병원정신과 22,440명 순임

3) 사회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예산 및 실적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단위: 억원, 명, 만원, 시간)

구분	예산	지원 규모(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월평균 지원시간
2007	296	14,515	33.2	46
2008	750	19,498	44.8	56
2009	1,124	27,818	57.6	72
2010	1,348	29,409	57.6	72
2011	1,928	33,667	57.6	83
2012	3,098	38,266	93.9	83
2013	3,829	48,335	93.9	110
2014	4,285	53,870	103.3	120
2015	4,679	64,523	108.8	123
2016	5,008	71,636	110.9	123
2017	6,061	72,193	113.0	123
2018	7,194	78,202	131.0	122
2019	10,034	86,730	160.3	124
2020	13,057	93,115	170.0	126
2021	15,217	102,575	181.0	12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3) 월평균 지원시간은 월평균 급여량을 시간당 단가(14,020원)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1년 15,217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21년 102,5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월평균 급여량은 2020년 170.0만원에서 2021년 181.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월 평균 지원시간은 129시간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개정) 참고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선정되며, 심의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을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됨.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됨(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② 수급자 수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2011		46,502	10,606	8,383	297	8	12,798	8,775	4,621
2012		50,520	11,097	9,143	322	5	14,396	9,157	5,344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2017		86,926	13,232	11,044	476	284	33,128	12,744	12,141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19		105,569	14,857	12,123	612	477	42,090	14,702	15,226
2020		115,017	16,045	12,461	729	704	45,964	16,248	16,346
2021		127,363	17,640	12,925	843	1,023	50,764	18,157	18,043
		(100.0)	(13.9)	(10.1)	(0.7)	(0.8)	(39.9)	(14.3)	(14.2)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23,803	16,579	12,558	780	755	50,764	16,550	18,043
		(100.0)	(13.4)	(10.1)	(0.6)	(0.6)	(41.0)	(13.4)	(14.6)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60	1,061	367	63	268	0	1,607	0
		(100.0)	(29.8)	(10.3)	(1.8)	(7.5)	(0.0)	(45.1)	(0.0)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21년 127,36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50,764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 18,157(14.3%), 자폐성장애 18,043명(14.2%), 지체장애 17,640명(13.9%), 시각장애 12,925명(10.1%) 순임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266	436	17	264	24	7	-	47
2012		253	455	18	253	19	8	-	50
2013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2017		1,668	1,638	46	297	20	13	14	181
2018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019		2,607	2,190	50	295	26	15	28	271
2020		3,208	2,452	57	335	31	18	43	376
2021		3,950	2,989	65	374	36	21	68	465
		(3.1)	(2.3)	(0.1)	(0.3)	(0.0)	(0.0)	(0.1)	(0.4)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946	2,955	63	368	20	21	35	366
		(3.2)	(2.4)	(0.1)	(0.3)	(0.0)	(0.0)	(0.0)	(0.3)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34	2	6	16	0	33	99
		(0.1)	(1.0)	(0.1)	(0.2)	(0.4)	(0.0)	(0.9)	(2.8)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23,80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97.2%를 차지함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도별, 연령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2011		46,549	907	11,450	8,000	5,771	6,907	8,307	3,226	1,981
2012		50,520	2,659	12,956	8,222	6,171	7,449	8,584	3,417	1,062
2013		60,435	4,084	16,614	10,074	6,834	8,194	9,694	3,660	1,281
2014		64,906	4,519	17,668	11,639	7,026	8,496	10,064	3,877	1,617
2015		72,212	5,399	18,790	13,619	7,648	9,176	10,983	4,596	2,001
2016		79,926	4,912	19,966	16,408	8,556	9,464	12,045	5,474	3,101
2017		92,535	7,961	21,674	18,939	9,883	10,399	14,008	6,572	3,099
2018		94,496	8,074	21,867	19,426	10,128	10,514	14,385	6,833	3,269
2019		105,569	8,999	23,072	21,644	11,436	11,848	16,279	8,270	4,021
2020		115,017	8,846	24,237	23,537	12,636	12,969	18,159	9,841	4,792
2021		127,363	9,348	26,218	25,003	14,154	14,406	20,236	11,784	6,214
		(100.0)	(7.3)	(20.6)	(19.6)	(11.1)	(11.3)	(15.9)	(9.3)	(4.9)
성별	남	78,556	6,510	17,603	16,027	8,638	8,129	11,665	6,666	3,318
		(100.0)	(8.3)	(22.4)	(20.4)	(11.0)	(10.3)	(14.8)	(8.5)	(4.2)
	여	48,807	2,838	8,615	8,976	5,516	6,277	8,571	5,118	2,896
		(100.0)	(5.8)	(17.7)	(18.4)	(11.3)	(12.9)	(17.6)	(10.5)	(5.9)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23,803	8,974	26,010	24,929	14,015	13,958	19,017	10,825	6,075
		(100.0)	(7.2)	(21.0)	(20.1)	(11.3)	(11.3)	(15.4)	(8.7)	(4.9)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60	374	208	74	139	448	1,219	959	139
		(100.0)	(10.5)	(5.8)	(2.1)	(3.9)	(12.6)	(34.2)	(26.9)	(3.9)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기준으로 연령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0-19세가 26,218명(20.6%)로 가장 많고 20-29세 25,003명(19.6%), 50-59세 20,236명(15.9%) 순임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단위: 명)

구분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총계		127,363	123,803	3,560
인정조사(등급)	소계	15,175	15,172	3
	1	5,082	5,082	-
	2	4,225	4,223	2
	3	3,557	3,557	-
	4	2,311	2,310	1
종합조사(구간)	소계	112,188	108,631	3,557
	1	7	7	-
	2	113	113	-
	3	624	623	1
	4	377	374	3
	5	67	67	-
	6	373	369	4
	7	1,059	1,043	16
	8	1,111	1,110	1
	9	2,620	2,594	26
	10	3,175	3,157	18
	11	5,222	5,192	30
	12	14,304	14,133	171
	13	30,664	30,042	622
	14	29,153	27,379	1,774
	15	9,769	8,910	859
	산정특례	13,550	13,518	3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종합조사 결과 15개 구간으로 분류되며, 각 구간별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음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종합점수	465점 이상	464점 ~ 435점	434점 ~ 405점	404점 ~ 375점	374점 ~ 345점	344점 ~ 315점	314점 ~ 285점	284점 ~ 255점	254점 ~ 225점	224점 ~ 195점	194점 ~ 165점	164점 ~ 135점	134점 ~ 105점	104점 ~ 75점	74점 ~ 42점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급자는 15,175명이고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는 112,188명임
  -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 분류된 15구간별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3구간이 30,664명으로 가장 많고, 14구간 29,153명, 12구간 14,304명, 산정특례 13,550명 순임
  - 인정조사 등급별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등급이 5,082명으로 가장 많고, 2등급 4,225명, 3등급 3,557명, 4등급 2,311명 순임

③ 인정조사 실시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 종합조사 실시현황

구분	계		적합		부적합		재조사		각하	
	11,721	(100.0)	11,164	(95.2)	283	(2.4)	45	(0.4)	229	(2.0)
2012	18,021	(100.0)	17,344	(96.2)	389	(2.2)	57	(0.3)	231	(1.3)
2013	34,970	(100.0)	32,477	(92.9)	2,167	(6.2)	92	(0.3)	234	(0.7)
2014	45,097	(100.0)	41,864	(92.8)	2,886	(6.4)	110	(0.2)	237	(0.5)
2015	60,227	(100.0)	53,597	(89.0)	6,240	(10.4)	148	(0.2)	242	(0.4)
2016	74,425	(100.0)	65,106	(87.5)	8,903	(12.0)	170	(0.2)	246	(0.3)
2017	89,360	(100.0)	77,193	(86.4)	11,913	(13.3)	186	(0.2)	254	(0.3)
2018	105,207	(100.0)	89,996	(85.5)	14,944	(14.2)	198	(0.2)	267	(0.3)
2019	125,657	(100.0)	105,770	(84.2)	19,608	(15.6)	213	(0.2)	279	(0.2)
2020	143,989	(100.0)	120,087	(83.4)	23,613	(16.4)	217	(0.2)	289	(0.2)

주: 연도별 자료는 누적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0년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를 받은 장애인은 143,989명이며, 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은 83.4%,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6.4%임

④ 기본급여(활동지원급여) 이용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계	일반	심야	공휴	소계	차량 내	가정 내	소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11	636,801	607,145	-	29,656	1,067	636	431	345	43	79	223
2012	616,905	589,922	26,983	29,804	2,127	1,519	608	422	42	165	215
2013	1,014,725	984,494	30,231	85,260	4,510	3,289	1,221	787	107	307	373
2014	1,175,466	1,136,746	38,720	85,434	5,426	3,965	1,461	853	64	356	433
2015	1,341,188	1,292,820	48,368	103,886	6,440	4,839	1,601	958	113	324	521
2016	1,594,834	1,442,438	54,023	98,373	6,827	5,299	1,533	816	-	-	-
2017	1,687,877	1,485,285	54,280	148,312	6,823	5,221	1,602	697	79	309	309
2018	2,082,360	1,828,073	59,574	194,713	7,229	5,626	1,603	778	135	281	362
2019	2,676,601	2,338,223	72,461	265,917	8,524	6,853	1,671	777	60	314	403
2020	2,996,563	2,654,297	83,008	259,258	9,773	7,926	1,847	922	112	324	486
2021	3,453,504	3,053,422	97,615	302,467	11,019	9,253	1,766	1,092	176	379	537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방문목욕 소계는 중복제거 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급여(활동지원급여)의 중 활동보조의 이용건수는 2021년 3,453,50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56,941건 증가함
  - 2021년 방문목욕 이용건수는 11,01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6건 증가하고, 방문간호는 1,0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건 증가함

⑤ 추가급여(특별지원급여) 이용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인			취약			출산가구	자립지원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최중증	1등급	2등급 이하						
2011	15,852	1,392	4,023	–	625	–	–	40	28	8,583	1,161	–	–
2012	22,642	1,570	4,758	–	151	1,275	–	59	47	12,926	1,856	–	–
2013	34,424	1,787	1,571	4,485	711	705	2,248	41	25	18,755	3,317	74	705
2014	39,081	1,958	1,669	4,738	904	894	2,832	41	40	20,576	4,176	76	1,177
2015	45,816	2,214	1,832	5,764	1,036	989	3,432	46	66	23,302	5,445	115	1,575
2016	54,169	2,441	1,971	7,185	1,287	1,194	4,615	24	50	26,289	6,975	91	2,047
2017	59,817	2,605	2,059	8,207	1,348	1,263	5,456	36	63	28,234	8,142	100	2,304
2018	61,417	2,879	2,201	9,704	1,428	1,368	6,475	33	66	30,342	9,634	85	2,504
2019	59,518	2,551	1,968	8,704	1,202	1,204	5,883	55	255	26,270	9,138	200	2,088
2020	30,996	1,553	1,117	4,752	694	607	3,267	32	160	12,661	4,938	219	996
추가급여	30,651	1,553	1,117	4,752	694	607	3,267	7	32	12,661	4,938	27	996
특별지원급여	345	–	–	–	–	–	–	25	128	–	–	192	–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추가급여는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며, 특별지원급여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임
3) 기존 추가급여는 8종(1인, 취약, 출산가구, 자립지원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가족의 직장생활)이며, 특별지원급여는 8종 중 3종(출산, 자립지원, 보호자 일시부재)을 제공하고 나머지 5종은 활동지원급여로 편입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추가급여(특별지원급여) 이용건수는 2020년 39,996건으로 2019년 59,518건에 비해 감소함. 이는 2019년 제도개편에 따라 기존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추가급여로 제공된 30,651건 중 학교생활이 12,661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원급여로 제공된 345건 중 보호자 일시부재가 192건으로 가장 많고, 자립지원 128건, 출산가구 39건임

⑥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긴급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계	계	처	남편	부	모	자	제	형수	매부	제부	시누이	기타
2011		1	7	–	1	–	4	–	–	–	–	–	–	1
2012		33	27	–	10	–	5	2	–	–	–	–	–	10
2013		50	47	15	1	2	3	3	–	–	1	–	–	20
2014		97	67	25	1	1	2	1	1	4	1	1	1	29
2015		166	68	20	–	2	2	1	1	1	3	1	1	36
2016		258	90	7	–	–	–	1	–	1	–	–	–	81
2017		341	100	5	–	–	–	–	–	1	–	–	–	94
2018		380	116	–	–	–	–	–	–	–	–	–	–	116
2019		489	127	–	–	–	–	–	–	–	–	–	–	127
2020		571	81	–	–	–	–	–	–	–	–	–	–	81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571	81	–	–	–	–	–	–	–	–	–	–	81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기타'는 행복e음 시스템 상 관계코드 없이 입력 된 자료임
3)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됨
4)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상황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안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0년 기준 긴급지원이용자는 57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2명 증가함
- 2020년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이용자는 8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명 감소함

⑦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계	급여 이용률					1인 평균 생성액	1인 평균 이용액
			미사용	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전체		100,605	1,226	1,172	2,776	51,972	43,459	1,878,372	1,863,759
인정조사(등급)	소계	12,181	56	94	230	7,342	4,459		
	1	4,709	17	41	109	2,680	1,862	3,064,782	3,031,125
	2	3,699	17	29	48	2,252	1,353	1,521,459	1,532,105
	3	2,559	15	14	45	1,594	891	1,188,821	1,192,412
	4	1,214	7	10	28	816	353	896,405	907,641
종합조사(구간)	소계	77,149	1,069	983	2,275	38,253	34,569		
	1	7		2		3	2	6,730,000	5,495,107
	2	106		1	3	58	44	6,309,000	6,269,287
	3	568	2	13	17	283	253	5,874,438	5,751,740
	4	304	4	9	18	143	130	5,461,780	5,296,971
	5	64		1	3	41	19	5,052,391	5,038,454
	6	319	2	3	25	170	119	4,624,152	4,517,452
	7	877	16	19	71	277	494	4,190,595	4,012,982
	8	971	2	16	67	385	501	3,767,993	3,668,247
	9	2,252	24	33	143	1,392	660	3,349,142	3,248,541
	10	2,761	20	37	91	1,690	923	2,927,379	2,880,246
	11	4,310	27	58	143	2,717	1,365	2,505,431	2,479,703
	12	12,035	112	120	312	2,753	8,738	2,086,601	2,080,011
	13	24,955	274	302	673	10,815	12,891	1,662,289	1,658,530
	14	21,550	433	286	572	13,575	6,684	1,249,537	1,246,639
	15	6,070	153	83	137	3,951	1,746	834,883	832,286
긴급활동지원		46	20	2	6	13	5	1,683,000	904,942
산정특례		11,229	81	93	265	6,364	4,426	2,212,796	2,195,08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족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부재한 경우,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함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80-100% 미만 이용자가 51,972명으로 가장 많고, 100% 43,459명, 50-80% 미만 2,776명 순임. 미사용자의 경우 1,226명임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인 평균 생성액과 이용액은 각각 1,878,372원, 1,863,759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⑧ 본인부담금 수준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전체	면제	2만원	2-4 만원	4-6 만원	6-8 만원	8-10 만원	10-12 만원	12만원 이상	1인 평균 부담액
2011	40,894	13,856	4,250	4,778	8,102	6,025	3,776	58	49	24,851
2012	50,212	15,751	5,663	6,257	10,127	7,200	5,059	88	67	25,597
2013	60,524	28,738	5,430	2,334	4,875	7,220	10,045	1,147	675	34,887
2014	64,419	28,634	6,005	2,666	5,949	8,239	10,637	1,461	828	36,870
2015	71,707	21,811	7,858	4,315	9,407	11,275	9,918	5,784	1,339	46,731
2016	79,233	24,292	8,121	3,866	10,882	13,006	6,640	10,544	1,882	47,459
2017	86,388	26,476	8,633	4,655	12,453	11,224	8,076	12,376	2,495	48,040
2018	93,823	29,303	8,891	2,481	7,548	16,367	9,421	15,662	4,110	53,065
2019	104,218	33,740	10,104	2,518	7,991	10,882	10,917	19,273	8,793	57,628
2020	113,952	38,863	10,870	2,583	8,590	13,830	13,550	7,229	18,437	56,173
2021	126,175 (100.0)	44,834 (35.5	11,740 (9.3)	3,627 (2.9)	10,976 (8.7)	15,431 (12.2)	6,899 (5.5)	11,051 (8.8)	21,617 (17.1)	55,354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1인 평균 부담액은 55,354원으로 2020년 56,173원에 비해 소폭 감소함
  - 면제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으로 12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가 21,617건(17.1%)으로 가장 많았고, 6-8만원 15,431건(12.2%), 2만원 11,740건(9.3%) 순임

⑨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전체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관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타	
2011	931	592	214	125	590	117	137	83	114	25	35	43	36	39
2012	959	614	223	122	614	128	140	87	110	32	32	47	38	41
2013	1,039	689	229	121	689	138	148	110	106	30	45	54	56	41
2014	1,057	723	224	110	723	157	143	114	108	47	31	59	64	42
2015	1,083	751	227	105	751	164	143	120	104	49	33	59	79	42
2016	945	756	143	33	756	130	125	158	80	20	23	4	216	53
2017	964	767	142	26	798	69	107	125	73	20	25	66	313	51
2018	973	774	138	26	799	69	105	127	70	20	24	66	318	56
2019	982	802	146	34	755	68	98	122	64	20	22	64	297	58
2020	1,008	834	145	29	837	74	110	133	69	22	26	69	334	60
2021	1,061	883	152	26	978	100	111	142	64	24	27	94	416	62
서울	138	123	12	3	168	7	16	54	11	1	6	15	58	10
부산	74	72	1	1	80	10	6	13	3	–	3	16	29	4
대구	36	33	3	–	40	5	4	2	4	–	1	8	16	3
인천	55	43	10	2	49	3	4	6	3	4	–	2	27	2
광주	33	30	3	–	35	4	2	8	–	2	1	2	16	2
대전	23	23	–	–	28	5	3	2	1	–	–	2	15	2
울산	13	10	1	2	16	–	–	2		2		2	10	2
세종	7	7	–	–	6	–	–	–	–	–	–	–	6	2
경기	212	182	23	7	161	11	22	30	4	–	6	14	74	12
강원	51	35	15	1	38	3	9	2	6	3	2	–	13	2
충북	40	29	7	4	34	5	8	5	–	1	–	–	15	2
충남	60	46	13	1	52	9	9	5	4	1	–	5	19	3
전북	64	41	22	1	44	10	7	1	6	–	2	4	14	3
전남	78	65	11	2	71	4	6	4	6	6	2	6	37	3
경북	71	57	13	1	62	6	10	1	10	2	2	10	21	5
경남	96	80	16	–	86	16	5	7	6	2	2	6	42	3
제주	10	7	1	1	8	2	–	–	–	–	–	2	4	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활동지원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활동보조기관(유형별)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시스템 내 자료 기준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등록된 현황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활동지원기관은 1,061개소, 활동보조기관은 978개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62개소임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883개소로 가장 많은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목욕 제공기관은 152개소,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26개소임
  - 활동보조기관의 경우 기타가 416개소로 가장 많으며, IL센터 142개소, 장애인복지관 111개소, 장애인단체 100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 94개소, 지역자활센터 64개소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기관은 각각 서울, 경기, 경남이 많았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경우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남

⑩ 활동지원사 현황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수

(단위: 명)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2011	31,234	23,653
2012	42,467	28,003
2013	67,823	40,448
2014	56,531	46,812
2015	61,366	52,761
2016	64,145	58,102
2017	68,167	62,629
2018	72,981	68,673
2019	82,448	78,044
2020	88,551	84,854
2021	98,873	95,046
남	12,152	11,562
여	86,721	83,484
20대 미만	58	56
20대	1,591	1,504
30대	4,176	3,973
40대	17,855	17,236
50대	40,057	38,615
60대	31,755	30,462
70대 이상	3,381	3,200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95,046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활동지원 활동인원이 83,484명으로 남성 11,562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 활동인원은 40-60대가 전체의 약 90.8%로 나타남

(2) 대상별 지원서비스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42,779	801	3,070	28,313
2011	48,111	996	4,166	35,119
2012	56,111	1,178	4,647	39,486
2013	63,811	1,520	5,166	46,979
2014	62,911	1,570	5,526	50,769
2015	65,192	1,646	5,025	51,609
2016	70,019	1,791	5,358	52,200
2017	69,813	1,882	5,398	52,830
2019	82,970	2,153	5,503	62,361
2020	88,999	2,197	5,380	60,410
2021	94,968	2,190	14,688	58,524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2010년 42,779백만원에서 2021년 94,968백만원으로, 제공기관은 2010년 801개소에서 2021년 2,190개소로, 이용자는 2010년 28,313명에서 2021년 58,524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제공인력은 2021년 14,68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603	80	-	196
2011	2,412	517	64	1,083
2012	2,412	500	102	1,087
2013	1,930	503	249	924
2014	624	585	123	313
2015	1,930	636	145	398
2016	507	655	152	421
2017	507	682	128	387
2018	507	658	110	353
2019	796	699	104	327
2020	796	668	121	323
2021	796	698	118	435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796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제공기관은 69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30개소 증가하였고, 제공인력은 118명, 이용자는 435명임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자격기준은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무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양쪽 부모(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음
  -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③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돌보미		이용자	
			등록	활동	계획	실 인원
2010	1,570	16	509	282	688	714
2011	4,038	17	1,372	994	2,500	3,149
2012	4,038	17	1,485	1,335	2,500	3,259
2013	4,663	18	1,647	1,443	3,000	3,684
2014	7,091	18	1,962	1,836	3,000	3,012
2015	8,043	18	2,205	2,073	3,300	3,331
2016	8,206	18	2,137	2,022	3,300	3,318
2017	8,960	17	2,252	2,013	3,725	3,349
2019	17,186	17	2,800	2,452	4,005	3,711
2020	20,873	17	2,848	2,608	4,005	3,907
2021	21,562	17	3,413	2,979	4,005	4,071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0년 1,570백만원에서 2021년 21,562백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의 수는 2010년 282명에서 2021년 2,979명으로, 이용 실 인원은 2010년 714명에서 2021년 4,07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④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	연 인원
2009	640	16	230	61,786
2010	640	16	300	70,000
2011	640	28	340	63,682
2012	640	30	336	62,542
2013	576	31	307	50,024
2014	893	31	383	50,187
2015	612	35	296	45,782
2016	1,596	48	419	55,196
2017	1,596	42	421	69,888
2018	1,620	42	412	99,930
2019	1,637	42	414	106,850
2020	1,772	42	414	76,000
2021	1,785	43	448	106,000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2	876	388	579
2013	876	391	587
2014	639	410	610
2015	1,426	779	1,160
2016	1,124	850	1,271
2017	1,222	942	1,404
2018	1,222	812	1,219
2019	1,122	829	1,235
2020	959	737	1,100
2021	959	684	1,006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2021년 예산은 1,78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백만원 증가함.
  - 제공기관은 43개소, 제공인력은 118명, 프로그램 수는 448개, 연 이용인원 수는 106,000명임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959백만원, 684백만원이며, 집행건수는 1,006건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양성인원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
2013	646	211	868	27	15
2014	1,158	504	714	290	127
2015	1,023	704	924	177	182
2016	1,501	776	815	119	211
2017	1,176	789	900	366	278
2018	1,176	1,061	721	399	337
2019	1,531	1,531	720	467	492
2020	1,541	1,541	1,537	710	643
2021	1,668	2,075	1,433	763	807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제공기관	이용인원
2013	1,279	108	60	367
2014	1,608	360	247	682
2015	1,608	332	162	858
2016	900	335	137	661
2017	900	413	234	673
2018	601	450	287	847
2019	730	730	200	790
2020	730	730	202	783
2021	730	730	203	812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1,541백만원, 2,075백만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양성인원은 1,433명, 심판청구 건수는 763건, 활동인원은 807명임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730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제공기관은 1개소 증가하였고, 이용인원은 29명 증가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겨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함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지단서)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함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총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2015	500	386	4,712	1,567	2,261	884
2016	1,000	905	9,028	2,816	4,592	1,620
2017	1,000	989	8,993	3,308	4,360	1,896
2018	1,210	1,104	10,556	2,979	6,025	1,552
2019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0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1	1,478	1,416	12,352	11,803		549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됨
3) 기존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19,103	17,823	183	2,506
2020	43,417	43,417	284	4,335
2021	91,304	76,319	366	6,366

주: 1) 2021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21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78백만원이며, 결산액은 1,41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백만원 감소함.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는 2021년 12,35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명 증가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2021년 예산액은 91,30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87백만원 증가하였고, 결산액은 76,31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902백만원 증가함.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제공기관은 2021년 366기관으로 전년도에 비해 82기관 증가하였고, 지원인원은 6,36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31명 증가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9,169	6,146	212	2,015
2020	19,406	19,406	273	4,123
2021	44,637	35,710	297	6,241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2021년 예산액은 44,63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231백만원 증가하였고, 결산액은 35,71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304백만원 증가함.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제공기관은 2021년 297기관으로 전년도에 비해 24기관 증가하였고, 지원인원은 6,24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118명 증가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임.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3) 복지시설

①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397	26,912	23,243	38	2,697	2,230	14	1,096	760	11	792	519	172	10,733	9,539
2010	452	28,571	24,39	40	2,640	2,055	14	1,092	744	10	732	462	196	11,463	10,178
2011	490	29,419	25,345	39	2,594	2,102	15	1,122	787	9	552	361	226	12,161	10,788
2012	1,348	35,545	30,640	40	2,563	2,057	16	1,151	786	8	519	335	278	13,366	11,748
2013	1,397	35,813	31,152	39	2,468	1,978	16	1,151	770	8	482	320	293	13,422	12,001
2014	1,457	35,860	31,406	44	2,627	2,208	15	991	632	7	373	270	309	13,562	12,136
2015	1,484	35,746	31,222	39	1,933	1,668	16	970	628	7	373	255	321	13,971	12,369
2016	1,505	35,232	30,980	40	2,178	1766	17	1010	711	7	373	228	317	13,450	12,112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7	1,011	700	7	363	232	313	13,394	12,008
2018	1,527	34,345	30,152	33	1,754	1,418	16	907	662	7	363	223	320	13,319	11,865
2019	1,557	33,954	29,662	33	1,600	1,304	15	866	615	7	373	216	313	12,858	11,485
2020	1,539	33,071	29,086	28	1367	1121	16	798	579	7	373	205	317	12713	11349
2021	1,535	32,969	28,565	28	1,415	1,055	15	790	569	7	363	196	310	12,691	11,205
서울	262	3,778	3,247	2	105	86	3	142	94	1	62	25	14	699	621
부산	67	1,467	1,273	3	135	111	0	0	0	0	0	0	14	701	616
대구	51	1,752	1,381	2	300	198	0	0	0	0	0	0	7	606	483
인천	72	1,224	975	2	109	71	1	70	46	1	50	18	7	237	199
광주	79	1,086	945	4	130	88	1	30	29	0	0	0	14	454	408
대전	78	1,410	1,176	1	70	53	1	70	44	0	0	0	8	428	372
울산	28	754	657	0	0	0	0	0	0	1	55	19	1	57	55
세종	6	178	157	0	0	0	0	0	0	0	0	0	3	110	98
경기	316	6,558	5,759	7	164	126	4	118	90	2	86	61	77	2,690	2,383
강원	68	1,689	1,486	0	0	0	1	80	58	0	0	0	18	684	612
충북	91	2,066	1,844	1	68	64	2	130	78	1	85	57	21	800	714
충남	55	1,897	1,704	0	0	0	0	0	0	0	0	0	18	1,064	939
전북	71	1,873	1,597	3	146	104	1	50	44	0	0	0	30	1,059	922
전남	68	1,601	1,367	1	50	31	1	100	86	1	25	16	27	901	769
경북	90	2,883	2,536	2	138	123	0	0	0	0	0	0	28	1,171	1,073
경남	96	2,104	1,884	0	0	0	0	0	0	0	0	0	15	765	702
제주	37	649	577	0	0	0	0	0	0	0	0	0	8	265	239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2021년 12월 말 기준임
3) 장애인수는 훈련장애인수 포함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p.3
2) 보건복지부(각 년도).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3

– 2021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1,535소로 나타나 전년도인 2020년보다 4개소가 감소하였음.
• 유형별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전년도에 비하여 7개소가 증가함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계속)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153	11,042	9,728	9	552	467	–	–	–	–	–	–
2010	182	12,052	10,364	10	592	491	–	–	–	–	–	–
2011	191	12,404	10,798	10	586	509	–	–	–	–	–	–
2012	201	12,536	11,006	10	592	510	128	1,683	1,438	667	3,140	2,760
2013	216	12,904	11,412	9	528	473	131	1,724	1,432	685	3,134	2,766
2014	223	12,802	11,344	9	539	466	137	1,766	1,495	713	3,200	2,855
2015	233	12,762	11,314	10	622	541	141	1,783	1,548	717	3,276	2,862
2016	233	12,514	11,192	9	522	452	146	1,902	1,616	736	3,283	2,903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47	1,011	700	752	363	232
2018	239	12,221	10,995	9	522	398	150	1,975	1,671	753	3,284	2,920
2019	251	12,335	10,978	9	522	382	159	2,064	1,733	770	3,336	2,949
2020	251	12069	10866	9	514	361	157	2002	1733	754	3235	2872
2021	249	11,843	10,568	9	507	357	164	2,126	1,792	753	3,234	2,823
서울	23	1,475	1,272	2	95	82	41	462	422	176	738	645
부산	8	352	321	2	91	68	3	40	34	37	148	123
대구	9	580	505	1	96	48	2	26	22	30	144	125
인천	11	479	414	1	50	32	5	55	47	44	174	148
광주	5	209	166	0	0	0	4	59	58	51	204	196
대전	11	450	374	0	0	0	20	244	207	37	148	126
울산	9	495	458	0	0	0	7	107	92	10	40	33
세종	1	60	51	0	0	0	0	0	0	2	8	8
경기	52	2,418	2,208	1	100	71	26	330	249	147	652	571
강원	15	702	629	0	0	0	9	110	85	25	113	102
충북	12	716	696	0	0	0	5	65	53	49	202	182
충남	16	663	633	0	0	0	7	98	76	14	72	56
전북	12	463	395	1	35	30	2	25	21	22	95	81
전남	9	380	327	0	0	0	4	45	47	25	100	91
경북	33	1,319	1,120	0	0	0	11	180	155	16	75	65
경남	17	854	778	1	40	26	11	194	161	52	251	217
제주	6	228	221	0	0	0	7	86	63	16	70	54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202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각 지역별 전체 시설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16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이 262개소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753개소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거주시설 310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49개소,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64개소 순임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시설유형	시설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장애유형별 시설	30인 이하	235	42.5	4,893	18.5	256	44.1	5,412	20.1	280	46.1	5,987	22.1	308	49.2	6,579	24.5	314	50.4	7,078	26.7
	31~99인	275	49.7	14,936	56.5	280	48.2	14,870	55.2	286	47.1	14,991	55.4	279	44.6	14,499	54.1	275	44.1	14,316	54.1
	100인 이상	43	7.8	6,613	25.0	45	7.7	6,672	24.8	41	6.8	6,078	22.5	39	6.2	5,734	21.4	34	5.5	5,067	19.1
	소계	553	100.0	26,442	100.0	581	100.0	26,954	100.0	607	100.0	27,056	100.0	626	100.0	26,812	100.0	623	100.0	26,461	100.0
단기거주 시설	30인 이하	128	100.0	1,438	100.0	131	100.0	1,432	100.0	137	100.0	1,495	100.0	141	100.0	1,548	100.0	146	100.0	1,616	100.0
	31~99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28	100.0	1,438	100.0	131	100.0	1,432	100.0	137	100.0	1,495	100.0	141	100.0	1,548	100.0	146	100.0	1,616	100.0
공동생활 가정	30인 이하	667	100.0	2,760	100.0	684	99.9	2,735	98.9	713	100.0	2,855	100.0	716	99.9	2,786	97.3	736	100.0	2,903	100.0
	31~99인	0	0.0	0	0.0	1	0.1	31	1.1	0	0.0	0	0.0	1	0.1	76	2.7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667	100.0	2,760	100.0	685	100.0	2,766	100.0	713	100.0	2,855	100.0	717	100.0	2,862	100.0	736	100.0	2,903	100.0
계	30인 이하	1,030	76.4	9,091	29.7	1,071	76.7	9,579	30.7	1,130	77.6	10,337	32.9	1,165	78.5	10,913	35.0	1,196	79.5	11,597	37.4
	31~99인	275	20.4	14,936	48.7	281	20.1	14,901	47.8	286	19.6	14,991	47.7	280	18.9	14,575	46.7	275	18.3	14,316	46.2
	100인 이상	43	3.2	6,613	21.6	45	3.2	6,672	21.4	41	2.8	6,078	19.4	39	2.6	5,734	18.4	34	2.3	5,067	16.4
	계	1,348	100.0	30,640	100.0	1397	100.0	31152	100.0	1,457	100.0	31,406	100.0	1,484	100.0	31,222	100.0	1,505	100.0	30,980	100.0

주 1) '시설유형' 구분에서 '장애유형별 시설'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을 포함
2)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비율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방안 연구」(2017). 참고)
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재산출 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1년 12월 말 기준, 30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1,261개소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비율은 82.1%로 전년도 대비 0.2%p 증가함. 30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012년 9,091명(전체의 29.7%)에서 2021년 12,855명(전체의 45.0%)으로 3,764명(15.3%p) 증가함
- 30인 이하 규모 장애유형별 시설의 경우, 2012년 235개소(4,893명)에서 2021년 344개소(8,239명)로, 단기거주 시설의 경우 2012년 128개소(1,438명)에서 2021년 164개소(1,792명)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12년 667개소(2,760명)에서 2021년 753개소(2,824명)로 각각 증가 함
- 31~99인 규모 및 100인 이상 규모 장애유형별 시설의 경우, 전자는 2012년 275개소(14,936명)에서 2021년 247개소(12,031명)로, 후자는 2012년 43개소(6,613명)에서 2021년 27개소(3,680명)로 각각 감소함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유형별, 규모별, 연도별(계속)

(단위: 개소, 명, %)

시설 유형	시설 규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개소	비율	현원	비율
장애 유형별 시설	30인 이하	313	50.6	7,280	27.9	329	52.7	7,665	30.0	345	54.9	8,116	32.5	350	55.7	8,214	33.6	344	55.7	8,239	34.4
	31~99인	272	44.0	13,941	53.5	264	42.3	13,393	52.4	255	40.6	12,846	51.4	251	40.0	12,457	50.9	247	40.0	12,031	50.2
	100인 이상	33	5.3	4,834	18.6	31	5.0	4,503	17.6	28	4.5	4,018	16.1	27	4.3	3,809	15.6	27	4.4	3,680	15.4
	소계	618	100.0	26,055	100.0	624	100.0	25,561	100.0	628	100.0	24,980	100.0	628	100.0	24,480	100.0	618	100.0	23,950	100.0
단기 거주 시설	30인 이하	147	100.0	1,699	100.0	150	100.0	1,671	100.0	159	100.0	1,726	100.0	157	100.0	1,734	100.0	164	100.0	1,792	100.0
	31~99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147	100.0	1,699	100.0	150	100.0	1,671	100.0	159	100.0	1,726	100.0	157	100.0	1,734	100.0	164	100.0	1,792	100.0
공동 생활 가정	30인 이하	752	100.0	2,939	100.0	753	100.0	2,920	100.0	770	100.0	2,949	100.0	754	100.0	2,872	100.0	753	100.0	2,824	100.0
	31~99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인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752	100.0	2,939	100.0	753	100.0	2,920	100.0	770	100.0	2,949	100.0	754	100.0	2,872	100.0	753	100.0	2,824	100.0
계	30인 이하	1,212	79.9	11,918	38.8	1,232	80.7	12,256	40.6	1,274	81.8	12,791	43.1	1,261	81.9	12,820	44.1	1,261	82.1	12,855	45.0
	31~99인	272	17.9	13,941	45.4	264	17.3	13,393	44.4	255	16.4	12,846	43.3	251	16.3	12,457	42.8	247	16.1	12,031	42.1
	100인 이상	33	2.2	4,834	15.7	31	2.0	4,503	14.9	28	1.8	4,018	13.5	27	1.8	3,809	13.1	27	1.8	3,680	12.9
	계	1,517	100.0	30,693	100.0	1,527	100.0	30,152	100.0	1,557	100.0	29,655	100.0	1,539	100.0	29,086	100.0	1,535	100.0	28,566	100.0

주: 1) '시설유형' 구분에서 '장애유형별 시설'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을 포함
2)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비율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수립방안 연구」 (2017). 참고)
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3년~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이 재산출 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규모로 소규모화 하고 체험홈 등 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지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분리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권장하여 전체 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시설의 경우 30인 이하 규모가 54.9%,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 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③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체육시설		이동지원 센터		수화통역 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수련시설		재활 치료시설		의료재활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2010	1,708	10,004	191	5,372	443	1,472	27	312	154	870	176	684	23	103	2	11	0	0	–	–	–	–
2011	1,834	10,803	199	5,825	485	1,624	27	327	156	875	180	700	27	106	4	10	0	0	–	–	–	–
2012	1,140	9,741	205	5,856	526	1,715	28	374	156	895	191	771	30	117	4	13	0	0	–	–	–	–
2013	1,184	10,437	219	6,271	558	1,958	29	334	155	946	199	830	23	92	1	6	0	0	–	–	–	–
2014	1,213	10,716	223	6,359	592	2,111	29	369	156	944	193	835	19	92	1	6	0	0	–	–	–	–
2015	1,248	11,037	224	6,423	625	2,291	30	388	156	959	193	877	19	93	1	6	0	0	–	–	–	–
2016	1,303	11,914	231	6,920	663	2,534	34	421	159	979	194	897	20	103	2	60	0	0	–	–	–	–
2017	1,333	12,229	237	7,041	690	2,743	33	414	157	961	194	911	20	106	1	53	0	0	–	–	–	–
2018	1,373	12,556	241	7,041	724	2,980	33	428	159	997	195	945	19	107	1	54	1	4	–	–	–	–
2019	1,486	15,058	254	7,511	769	3,366	28	427	164	995	197	982	21	118	2	56	1	4	32	247	32	247
2020	1,519	–	258	–	797	–	28	–	164	–	119	–	19	–	1	–	1	–	52	–	52	–
2021	1,568	–	261	–	818	–	31	–	165	–	202	–	22	–	2	–	1	–	66	–	18	–
서울	222	–	51	–	132	–	7	–	1	–	26	–	2	–	1	–	1	–	1	–	6	–
부산	90	–	17	–	65	–	1	–	1	–	5	–	1	–	0	–	0	–	0	–	1	–
대구	66	–	6	–	51	–	2	–	1	–	5	–	1	–	0	–	0	–	0	–	1	–
인천	63	–	11	–	42	–	0	–	1	–	1	–	1	–	0	–	0	–	7	–	2	–
광주	47	–	7	–	38	–	1	–	1	–	0	–	0	–	0	–	0	–	0	–	0	–
대전	72	–	8	–	47	–	3	–	1	–	5	–	1	–	0	–	0	–	7	–	2	–
울산	52	–	4	–	39	–	2	–	1	–	2	–	1	–	0	–	0	–	3	–	0	–
세종	7	–	1	–	3	–	0	–	1	–	1	–	1	–	0	–	0	–	0	–	0	–
경기	276	–	38	–	148	–	4	–	31	–	32	–	5	–	0	–	0	–	18	–	0	–
강원	69	–	11	–	19	–	0	–	19	–	19	–	1	–	0	–	0	–	0	–	1	–
충북	60	–	12	–	22	–	1	–	11	–	12	–	1	–	0	–	0	–	1	–	1	–
충남	66	–	16	–	19	–	0	–	15	–	15	–	1	–	0	–	0	–	0	–	0	–
전북	96	–	13	–	34	–	5	–	15	–	15	–	1	–	0	–	0	–	13	–	0	–
전남	88	–	18	–	27	–	0	–	21	–	20	–	2	–	0	–	0	–	0	–	0	–
경북	126	–	22	–	53	–	3	–	24	–	23	–	1	–	0	–	0	–	0	–	1	–
경남	123	–	21	–	52	–	2	–	20	–	20	–	1	–	1	–	0	–	6	–	2	–
제주	45	–	5	–	27	–	0	–	1	–	1	–	1	–	0	–	0	–	10	–	1	–

주: 1)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2)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8.3., 일부개정)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따름.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있음
4) 2021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수는 미조사됨
5) 202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1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수는 1,568개소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이 818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은 1개소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 276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2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체육시설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그 수가 다른 시설들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는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광주에 1개소도 없었으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시설이 없음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10-3-26〉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시설 수	종사자수
2009	18	868
2010	18	921
2011	17	889
2012	18	-
2013	18	946
2014	18	892
2015	18	1,076
2016	20	1,279
2017	19	1,397
2018	19	1,397
2019	18	1,392
2020	18	1,392
2021	18	-
서울	6	
부산	1	
대구	1	
인천	2	
광주	-	
대전	2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1	
충북	1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1	
경남	2	
제주	1	

주: 1) 2012년 종사자 수는 미 조사됨
2) 2021년 12월 말 기준임
3) 2021년 의료재활시설 종사자수 데이터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1년 기준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수는 18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6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은 의료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시설 수	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종사자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정원	현원
2010	417	11,770	44	1,761	373	10,009	–	–	2,395	2,052
2011	456	12,870	53	2,190	403	10,680	–	–	2,504	2,260
2012	478	13,758	56	2,384	422	11,374	–	–	2,763	2,488
2013	511	14,739	64	2,653	447	12,086	–	–	3,187	2,820
2014	541	15,651	64	2,721	477	12,930	–	–	3,553	3,160
2015	560	16,414	64	2,798	496	13,616	–	–	3,590	3,133
2016	582	17,131	63	2,762	516	14,335	–	–	4,115	3,256
2017	625	17,841	62	2,724	553	14,960	–	–	4,534	3,732
2018	651	18,205	63	2,690	573	15,262	15	253	4,770	4,024
2019	683	19,056	65	2,823	593	15,796	25	437	5,139	4,362
2020	720	19,734	67	2,875	619	16,147	34	712	5,360	4,688
2021	773	20,504	68	2,923	667	16,791	38	790	5,709	5,021
서울	138	4,226	13	695	116	3,320	9	207	1,060	938
부산	41	1,121	1	28	39	1,062	1	32	277	220
대구	42	1,164	5	211	37	953	0	0	264	193
인천	34	932	3	146	31	786	0	0	234	214
광주	29	852	5	209	24	643	0	0	236	228
대전	28	754	4	157	20	536	4	66	226	165
울산	15	289	1	30	13	238	1	30	91	77
세종	6	171	1	28	5	143	0	0	42	31
경기	145	3,832	14	641	118	2,938	15	289	1,182	1,112
강원	36	797	5	131	29	633	2	30	240	185
충북	27	897	1	72	23	740	3	93	219	210
충남	23	713	0	0	23	713	0	0	198	174
전북	22	564	2	62	19	485	3	43	159	130
전남	22	514	3	72	19	442	0	0	140	119
경북	46	1,270	2	95	44	1,175	0	0	322	274
경남	56	1,237	4	142	52	1,095	0	0	337	279
제주	10	401	3	156	7	245	0	0	133	139

주: 1) 종사자는 근로장애인을 관리 감독하는 비장애인 직원을 의미함
2) 2020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773개소, 종사자 수는 5,0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시설 수와 근로장애인의 수 또한 202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3개소 중 283개소(약 36.6%)가 서울 · 경기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⑤ 정신보건기관

〈표 10-3-28〉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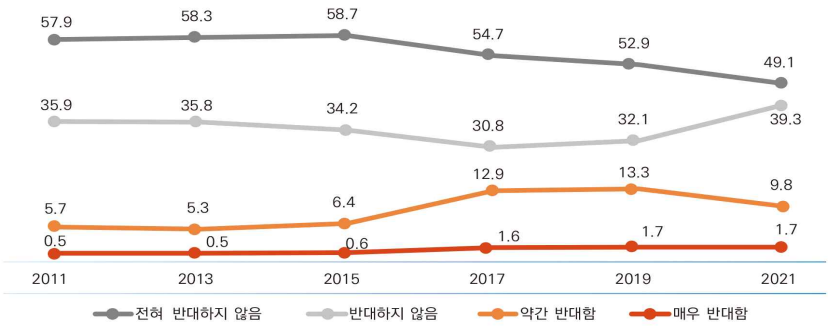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합계				2,069	2,144	2,214	2,270	2,386	2,562	2,661	3.72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소계			1,769	1,841	1,910	1,962	2,077	2,247	2,345	4.18
	의료기관	병원	국립정신병원	6	6	6	6	6			
			공립정신병원	12	12	12	12	12	84	123	31.71
			사립정신병원	174	174	164	136	126			
			종합병원정신과	186	185	197	198	202	200	215	6.98
			병원정신과	129	134	140	181	176	256	195	-31.28
		의원	정신과의원	895	938	996	1,021	1,148	1,299	1,403	7.41
		의료기관 소계		1,402	1,449	1,515	1,554	1,670	1,839	1,936	5.01
	정신요양시설			59	59	59	59	59	59	59	0.00
	사회복귀시설			308	333	336	349	348	-	350	
지역사회재활기관	지역사회재활기관 소계			300	303	304	308	309	315	316	0.32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2	15	16	16	16	16	16	0.00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200	209	210	227	235	241	244	1.2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	50	50	50	50	49	50	2.00
	기본형정신건강증진사업[2]			38	29	28	15	8	2	-	
	자살예방센터			-	-	-	-	-	7	6	-16.67

주 1) 2015년부터 국고미지원 시설을 포함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의미함
3) 증감률 = (당해연도 합계 - 직전년도 합계)/직전년도 합계) × 100%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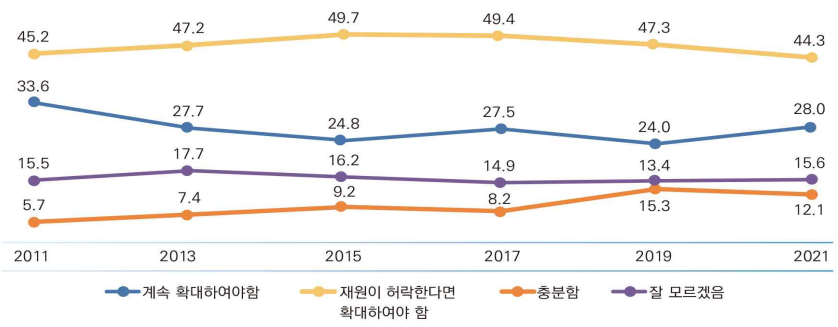
- 2020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은 2,661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의료기관이 1,936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정신과의원이 1,403개소로 가장 많음
  - 지역사회재활기관에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24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11. 인권보호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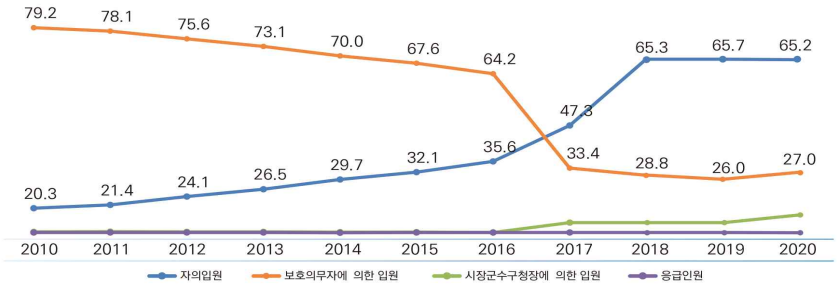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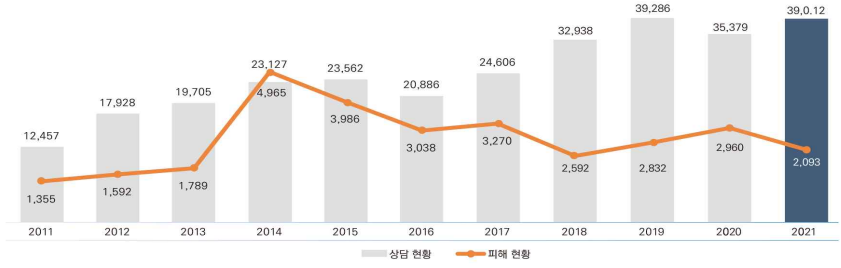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88.5%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2%에서 2021년 11.5%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47.3%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11년 33.6%에서 2021년 28.0%로 감소 추이를 보임

[그림 2-11-3] 정신보건시설 입원 유형 - 연도별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 정신보건시설입원 현황은 2020년 자의에 의한 입원이 65.2%로 201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39,012건으로 201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건수는 2,093건으로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 사회적 차별

(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4.7	17.0	21.2	7.4	10.4	14.5	33.8	42.2
	초등학교	37.2	41.8	44.8	22.1	32.6	29.8	39.0	34.5
	중학교	33.5	32.6	43.7	15.7	23.9	36.4	41.8	33.7
	고등학교	26.5	22.5	37.6	9.8	19.8	38.5	35.8	32.0
	대학교	8.8	7.4	19.1	5.8	16.0	-	13.8	12.9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6.9	4.8	17.9	4.8	7.8	5.3	18.3	-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27.6	30.1	24.0	26.6	33.2	55.2	68.6
	학부모로부터	12.1	10.1	15.1	7.7	18.3	5.9	21.3	-
결혼		17.7	18.5	26.3	12.5	17.0	15.0	-	39.7
자녀 양육교육		2.7	2.3	2.4	2.6	2.7	5.8	-	10.5
취업		21.5	21.9	18.6	19.2	18.8	24.9	17.3	28.1
직장 생활	소득(임금)	13.6	14.2	13.8	10.5	10.6	8.5	26.5	14.9
	동료와의 관계	13.5	12.1	12.5	14.2	15.4	14.9	26.4	5.0
	승진	7.8	7.7	7.5	8.2	6.7	8.3	13.3	9.2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2.8	2.8	3.0	4.5	1.6	1.6	7.2	2.5
보험제도 상(계약 시)		13.9	12.9	12.0	14.4	10.5	14.8	21.6	22.3
의료기관 이용 시		3.7	2.5	6.2	2.7	3.9	2.9	7.1	6.4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4.6	3.1	4.8	3.5	6.0	3.9	8.7	3.4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6.8	3.6	7.2	3.7	8.1	12.0	22.7	28.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3) 2020년 사회차별경험 구분에서 자녀 양육·교육 항목이 추가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19.

-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시' 37.2%, '중학교 입학 · 전학 시' 33.5%,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29.4%의 순으로 나타남
  - 지체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초등학교 입학 · 전학 시와 중학교 입학 · 전학시 각각 41.8%, 32.6%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뇌병변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 · 전학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학교 입학 · 전학 시가 43.7%순으로 나타남. 시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과 초등학교 입학 · 전학시가 각각 24.0%, 22.1%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청각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 · 전학 시 32.6%,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 26.6%,언어장애인은 고등학교 입학 · 전학시 38.5%,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33.2%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55.2%, 중학교 입학 및 전학과정에서 41.8%,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68.6%, 유치원(보육시설) 입학 · 전학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42.2%로 높게 나타남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1.3	33.7	–	–	19.2	8.0	–	32.5
	초등학교	47.1	44.2	22.9	32.0	20.1	29.7	45.5	37.9
	중학교	54.5	37.3	21.4	12.5	–	25.2	41.7	36.7
	고등학교	40.9	24.3	10.0	15.8	10.1	19.7	28.2	36.5
	대학교	2.9	1.6	–	–	–	–	–	–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2.5	3.5	–	12.9	–	12.9	–	9.8
	또래학생으로부터	24.9	4.7	36.1	18.8	19.3	54.1	–	33.7
	학부모로부터	9.3	4.7	–	18.8	–	29.8	–	18.1
결혼		8.4	–	9.4	–	20.6	–	24.0	17.7
자녀 양육교육		0.9	–	2.6	–	10.8	–	9.1	2.7
취업		13.0	17.3	14.1	–	54.5	18.6	32.9	21.5
직장 생활	소득(임금)	16.3	7.7	12.8	10.8	15.6	24.4	7.1	16.9
	동료와의 관계	16.9	4.8	10.1	9.8	11.8	37.0	10.2	27.8
	승진	10.2	4.6	5.9	5.9	6.5	24.9	6.6	14.6
운전면허제도 상(취득 시)		4.7	1.2	1.6	2.1	3.8	3.7	1.1	10.8
보험제도 상(계약 시)		19.6	23.8	20.1	10.8	20.3	29.3	15.5	22.2
의료기관 이용 시		8.0	2.5	3.1	2.1	2.7	6.3	4.1	3.8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9.9	6.6	5.7	1.5	3.1	6.2	7.1	7.0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13.1	1.6	1.2	4.0	3.2	10.6	3.3	10.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3) 2020년 사회차별경험 구분에서 자녀 양육·교육 항목이 추가됨
4)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19

- 정신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입학 · 전학과정에서 54.5%가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24.9%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신장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 · 전학과정 중 44.2%가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과정에서 17.3%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험제도 상(계약 시) 23.8%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 장애인은 초등학교 입학 · 전학과정 중 32.0%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간 장애인은 취업시 54.5%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면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54.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루·요루장애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 전학시 각각 45.5%, 41.7%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과정에서도 32.9%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4.7	24.0	25.9	39.7	29.2	9.2	12.0	28.7	13.2
	초등학교	37.2	33.8	42.8	30.6	37.1	33.7	45.5	37.1	37.5
	중학교	33.5	32.0	36.5	27.1	36.5	31.1	32.6	36.8	28.2
	고등학교	26.5	25.8	28.3	9.1	29.1	24.2	24.5	30.7	19.6
	대학교	8.8	6.5	14.6	-	10.1	7.4	6.8	11.3	6.1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6.9	7.4	6.2	-	13.9	5.2	7.5	9.3	4.9
	또래학생으로부터	29.4	27.9	31.7	-	34.5	29.6	27.4	34.3	25.0
	학부모로부터	12.1	11.7	12.7	-	11.0	10.7	14.4	13.5	10.8
결혼		17.7	18.5	16.6	-	14.3	18.8	17.8	25.4	12.6
자녀 양육 · 교육		2.7	2.3	3.2	-	3.3	4.0	1.9	7.0	1.1
취업		21.5	23.5	17.5	-	32.4	26.0	14.9	27.5	18.7
직장 생활	소득(임금)	13.6	15.3	10.2	-	17.8	17.5	9.2	19.2	11.1
	동료와의 관계	13.5	15.3	10.1	-	18.8	17.3	9.1	17.1	11.7
	승진	7.8	9.6	4.6	-	13.8	11.0	3.9	11.7	6.1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2.9	3.2	2.1	-	4.9	4.1	1.2	4.9	2.1
보험제도상(계약 시)		13.9	14.4	13.0	23.1	22.3	16.7	8.8	20.4	10.6
의료기관 이용 시		3.7	3.4	4.2	8.3	4.2	3.6	3.4	6.4	2.1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4.6	4.3	4.9	6.5	5.5	4.6	4.3	6.7	3.4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6.8	7.5	5.7	18.4	14.5	5.7	4.8	13.1	3.0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3~657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특히 보험제도 상(계약 시)의 경우, 17세 이하의 차별 경험 비율이 23.1%이고, 65세 이상은 8.8%로 다른 영역에 비해 연령별 비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결혼, 고등학교 입학 · 전학시, 그리고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의 경우 중증이 경증에 비해 15.5%p, 12.8%p, 11.1%p, 10.1%p 정도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항상 느낀다	8.7	5.8	11.1	7.9	10.5	27.7	18.1	29.5	18.7	5.1	1.1	4.9	7.8	25.9	10.0	19.4
	가끔 느낀다	31.2	27.3	35.2	30.6	39.7	40.8	40.5	31.6	38.6	24.4	23.3	26.1	27.0	72.4	17.2	39.1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8.4	38.4	34.9	36.5	25.8	24.5	17.0	28.5	36.2	30.3	46.6	40.6	-	47.1	34.3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8.6	15.4	26.5	13.3	5.7	16.9	21.9	14.2	34.3	45.3	22.5	24.5	1.7	25.7	7.2
2014	항상 느낀다	6.2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	5.8	4.3
	가끔 느낀다	31.6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4.5	13.7	4.5	7.8	11.1	16.6	27.2	13.3	7.4	4.6	4.2	4.9	18.4	1.2	13.2
	가끔 느낀다	27.2	21.6	34.8	25.2	34	41.5	39.5	59.4	38.5	16.9	24.7	23.2	9.3	19.1	26.6	36.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8.2	39.1	47.8	46.4	42.3	35.1	11.2	43.6	53.5	46.7	50.0	51.0	26.0	46.1	3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25.6	12.3	22.5	11.8	5.1	8.8	2.3	4.7	22.2	24.1	22.7	34.7	36.5	26.0	15.3
2020	항상 느낀다	1.7	1.0	1.1	0.8	1.0	2.4	7.2	7.0	2.8	0.6	1.2	0.7	0.7	2.8	1.0	1.8
	가끔 느낀다	27.6	21.5	39.0	26.7	25.5	38.7	45.1	42.9	48.0	19.8	16.0	23.0	14.4	45.5	21.8	39.5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8.8	49.4	54.0	59.5	49.9	41.6	43.8	43.0	62.6	63.1	63.1	58.4	45.7	63.3	48.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8.6	10.6	18.4	13.9	9.0	6.1	6.3	6.1	17.0	19.6	13.2	26.5	6.1	13.9	10.6

주: 1) 무응답 제외
2)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 409

- 2020년에 장애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인식한 장애인의 비율은 29.3%이며,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55.4%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중 52.3%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고, 정신장애인 50.8%, 자폐성장애 49.9% 안면장애 48.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항상 느낀다	8.8	9.8	7.4	14.8	9.3	10.8	5.9	16.0	6.7	8.8
	가끔 느낀다	31.2	31.5	30.7	39	37.8	30.6	28.1	40.6	28.8	31.5
	별로 느끼지 않는다	36.4	34.8	38.5	21.0	30.5	36.0	40.7	28.8	38.3	3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3.7	23.9	23.4	25.1	22.3	22.6	25.3	14.7	26.2	23.6
2014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0	7.2	3.0	11.6	2.9	6.3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0	32.1	26.1	43.9	23.3	31.4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0	21.8	30.6	40.1	48.6	33.9	46.6	41.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8.2	6.7	20.5	13.2	8.2	4.4	13.9	4.0	8.0
	가끔 느낀다	27.2	28.4	25.6	40.0	33.0	28.2	23.9	37.2	20.7	27.2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3.5	48.2	28.6	37.1	43.2	51.0	38.2	50.5	45.8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19.8	19.5	10.9	16.7	20.4	20.6	10.7	25.2	19.6
2020	항상 느낀다	1.7	1.6	1.8	4.6	6.3	1.4	0.5	3.6	0.5	–
	가끔 느낀다	27.6	28.1	26.9	43.3	37.1	30.4	22.3	39.7	20.4	–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5.1	55.8	42.4	44.4	53.6	60.3	47.4	60.2	–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5.2	15.5	9.6	12.2	14.7	16.9	9.3	18.9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3.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5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 657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7세 이하는 47.9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별로 차별을 인식한 비율은 중증이 43.3%, 경증이 20.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전혀 없다	0.8	1.0	0.7	0.9	0.6	1.1	1.4	-	0.3	-	-	-	-	-	-	-
	별로 없다	18.5	20.0	16.9	15.6	20.1	16.5	10.5	1.6	17.5	20.8	28.4	20.1	9.6	-	34.1	12.6
	약간 많다	48.3	48.3	47.1	50.9	51.1	27.1	45.0	41.2	45.6	43.9	44.8	62.2	66.8	61.2	52.2	49.0
	매우 많다	32.4	30.7	35.2	32.6	28.2	55.2	43.1	57.2	36.6	35.3	26.8	17.7	23.6	38.8	13.8	38.4
2014	전혀 없다	1.0	1.2	0.8	0.2	0.4	-	0.6	0.7	0.7	3.6	-	9.4	-	-	2.4	-
	별로 없다	26.4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21.0	15.3	26.4	23.4	33.2	31.7
	약간 많다	46.2	46.0	46.5	43.9	51.4	41.7	43.5	42.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37.9
	매우 많다	26.4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23.6	30.4
2017	전혀 없다	1.8	2.1	2.2	1.3	2.0	1.6	1.0	-	1.6	0.6	-	-	0.9	-	1.2	0.8
	별로 없다	18.3	20.8	15.3	19.2	18.5	14.0	7.1	-	16.6	21.6	26.6	25.3	17.0	27.7	14.8	11.1
	약간 많다	46.0	46.2	44.8	48.9	50.7	42.2	41.6	24.0	40.5	44.9	45.6	48.6	55.9	19.1	53.2	37.2
	매우 많다	33.9	30.9	37.7	30.6	28.8	42.2	50.4	76.0	41.3	32.9	27.9	26.0	26.1	53.2	30.8	51.0
2020	전혀 없다	3.6	4.2	1.7	5.2	3.7	2.2	1.5	2.1	1.0	4.5	4.9	4.6	3.9	-	2.5	3.6
	별로 없다	32.9	34.9	27	35.5	36.4	27.9	24.1	20.5	25.3	33.1	34.7	34.8	35.0	32.5	34.8	24.8
	약간 많다	53.8	52.7	61.3	49.5	52.6	54.8	54	53.4	61.5	53.6	55.9	49.9	58.0	58	57.1	60.7
	매우 많다	9.8	8.2	10.0	9.8	7.4	15.1	20.4	24.0	12.2	8.9	4.4	10.7	3.1	9.5	5.2	12.1

주: 1) -는 인원이 없는 것을 의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09

- 장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조사 결과, '약간 많다'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별로 없다' 32.9%,순으로 나타남
- 2020년은 '매우 많다'가 9.8%로 나타났으며 약간 많다의 경우 53.8%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63.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의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2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지적장애 20.4%, 언어장애 15.1%, 정신장애 12.2%순임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전혀 없다	0.8	0.8	0.9	1.2	0.9	0.4	1.3	0.8	0.8	0.8
	별로 없다	18.5	17.0	20.5	9.4	11.6	16.2	24.7	14.0	19.6	18.3
	약간 많다	48.3	48.1	48.6	42.6	48.5	48.0	49.0	45.4	49.0	48.2
	매우 많다	32.4	34.1	30.0	46.9	39.0	35.4	25.0	39.8	30.6	32.7
2014	전혀 없다	1.0	0.8	1.3	0.4	0.3	0.4	1.9	1.1	0.9	1.0
	별로 없다	26.4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26.5
	약간 많다	46.2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45.8
	매우 많다	26.4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6.7
2017	전혀 없다	1.8	2.0	1.6	1.3	1.2	1.6	2.2	1.3	2.2	1.8
	별로 없다	18.3	17.4	19.5	7.1	10.8	14.9	24.0	13.6	21.4	18.3
	약간 많다	46.0	45.7	46.4	31.4	43.5	44.1	49.2	42.3	48.4	46.0
	매우 많다	33.9	34.9	32.5	60.2	44.5	39.4	24.6	42.8	28.1	33.9
2020	전혀 없다	3.6	3.6	3.6	2.2	1.8	3.5	4.2	2.2	4.5	-
	별로 없다	32.9	32.3	33.6	26.2	23.2	28.9	38.5	26.3	36.8	-
	약간 많다	53.8	54.6	52.6	51	56.6	56.8	51.1	57	51.8	-
	매우 많다	9.8	9.5	10.2	20.6	18.4	10.8	6.2	14.5	6.9	-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매우 많다'의 비율이 20.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매우 많다'의 비율은 6.2%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이 경증에 비해 '매우 많다'의 비율이 7.6%p정도 높게 나타남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구분	계	전혀 반대하지 않음	반대하지 않음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5.9	57.9	5.7	0.5
2013	100.0	35.8	58.3	5.3	0.5
2015	100.0	34.2	58.7	6.4	0.6
2017	100.0	30.8	54.7	12.9	1.6
2019	100.0	32.1	52.9	13.3	1.7
2021	100.0	39.3	49.1	9.8	1.7
도시(동부)	100.0	39.4	48.9	9.9	1.8
농어촌(읍면부)	100.0	38.8	50.2	9.5	1.5
남자	100.0	40.3	48.8	9.1	1.7
여자	100.0	38.3	49.5	10.5	1.7
장애인	100.0	45.0	45.7	7.9	1.4
비장애인	100.0	39.0	49.3	9.9	1.7
13 – 19세	100.0	45.5	44.6	8.1	1.7
20 – 29세	100.0	41.7	47.6	9.0	1.7
30 – 39세	100.0	40.0	47.6	10.3	2.0
40 – 49세	100.0	41.0	48.2	9.4	1.4
50 – 59세	100.0	40.3	49.2	9.0	1.5
60세 이상	100.0	34.5	52.8	11.0	1.7
65세 이상	100.0	33.5	52.5	12.0	1.9
초졸 이하	100.0	37.2	50.0	10.6	2.1
중졸	100.0	38.9	48.7	10.7	1.6
고졸	100.0	39.9	49.3	9.5	1.4
대졸 이상	100.0	39.6	48.9	9.6	1.9
전문 관리	100.0	40.8	47.9	9.7	1.7
사무	100.0	40.9	48.1	9.4	1.6
서비스판매	100.0	39.4	49.6	9.5	1.5
농어업	100.0	33.7	52.1	11.3	2.9
기능노무	100.0	39.3	50.2	9.1	1.4
100만원 미만	100.0	40.0	48.9	9.5	1.6
100-200만원 미만	100.0	40.2	48.3	9.8	1.8
200-300만원 미만	100.0	40.3	49.3	9.3	1.1
300-400만원 미만	100.0	39.0	50.7	8.6	1.7
400-500만원 미만	100.0	37.5	51.4	9.9	1.3
500-600만원 미만	100.0	38.5	47.8	11.4	2.3
600만원 이상	100.0	39.3	47.5	10.9	2.4

주: 1)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2015년 사회조사까지 '장애인 관련 시설'의 문항에서 시설의 예시를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명시한 반면, 2017년 사회조사에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함
자료: 통계청(2021).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p.65

-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88.4%가 반대하지 않는 것(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11.5%로 2019년 15.0%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인이 90.7%로 비장애인 88.3%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상의 경우 10.0%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65세이상이 13.9%, 60세이상이 12.7%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이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구분	계	계속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	100.0	34.4	59.8	5.4	0.4
2009	100.0	37.9	55.4	6.2	0.5
2011	100.0	33.6	45.2	5.7	15.5
2013	100.0	27.7	47.2	7.4	17.7
2015	100.0	24.8	49.7	9.2	16.2
2017	100.0	27.5	49.4	8.2	14.9
2019	100.0	24.0	47.3	13.4	15.3
2021	100.0	28.0	44.3	12.1	15.6
도시(동부)	100.0	28.7	44.9	10.8	15.6
농어촌(읍면부)	100.0	24.7	41.5	18	15.7
남자	100.0	27.9	44.1	12.6	15.4
여자	100.0	28.1	44.5	11.5	15.9
장애인	100.0	33.1	40.0	14.8	12.1
비장애인	100.0	27.8	44.5	11.9	15.8
13 – 19세	100.0	33.0	36.7	9.9	20.5
20 – 29세	100.0	27.8	44.5	9.6	18.2
30 – 39세	100.0	28.2	46.8	8.8	16.2
40 – 49세	100.0	34.0	46.1	8.5	11.5
50 – 59세	100.0	29.7	45.8	11.9	12.6
60세 이상	100.0	21.8	42.5	18.2	17.5
65세 이상	100.0	21.5	41.5	18.8	18.2
초졸 이하	100.0	22.6	36.9	18.9	21.6
중졸	100.0	25.2	41.5	15.2	18.0
고졸	100.0	28.2	44.1	11.8	16.0
대졸 이상	100.0	30.4	47.5	9.3	12.8
전문 관리	100.0	32.0	47.3	8.9	11.9
사무	100.0	30.9	47.7	8.8	12.6
서비스판매	100.0	28.5	44.8	12.3	14.5
농어업	100.0	17.6	42.9	26.3	13.2
기능노무	100.0	26.6	44.3	12.9	16.2
100만원 미만	100.0	25.0	37.7	18.1	19.2
100 – 200만원 미만	100.0	25.1	42.1	15.6	17.3
200 – 300만원 미만	100.0	26.5	45.3	12.2	16.1
300 – 400만원 미만	100.0	28.9	45.1	11.0	15.0
400 – 500만원 미만	100.0	29.3	44.8	10.4	15.6
500 – 600만원 미만	100.0	29.9	47.1	8.6	14.4
600만원 이상	100.0	31.5	46.8	9.0	12.7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21). 「사회조사(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p.63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4.3%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21년 28.0%로 2019년 24.0%에 비해 증가함
- 장애 여부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장애인이 33.1%로 비장애인 27.8%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50대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알고 있다	7.8	8.6	5.3	8.5	5.8	9.8	7.5	16.6	4.7	11.8	7.9	6.9	24.7	15.3	2.0	13.2
2011 들어본 적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7	21.9	14.5	15.6	17.9	31.8	15.7	25.9	10.4	37.0	35.9	17.0	20.9	8.4
2011 알지 못한다	70.8	67.3	77.0	69.6	79.7	74.6	74.6	51.6	79.6	62.3	81.7	56.1	39.4	67.7	77.2	78.4
2014 알고 있다	8.3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2014 들어본 적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2014 알지 못한다	68.7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2017 알고 있다	13.9	13.6	15.9	13.1	10.5	20.4	15.5	43.8	7.1	20.2	13.0	9.2	29.2	23.4	11.8	19.3
2017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6.1	26.0	22.3	21.0	27.2	25.1	35.8	27.3	28.0	31.0	30.9	37.0	44.1	25.8	17.9
2017 알지 못한다	60.7	60.4	58.1	64.6	68.5	52.4	59.4	20.3	65.6	51.8	56.0	59.9	33.8	32.5	62.5	62.8
2020 알고 있다	10.5	11.2	9.7	11.3	7.6	8.4	11.0	20.0	6.6	15	19.4	8.6	12.4	12.4	7.7	17.2
2020 들어본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7.5	23.6	28.2	21.7	32	20.7	23.3	20.5	36.3	32.2	35.1	36.8	35.2	28.7	25.6
2020 알지 못한다	63.6	61.4	66.7	60.5	70.7	59.5	68.3	56.7	72.8	48.8	48.4	56.2	50.7	52.5	63.6	57.2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5.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7.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10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지 못한다'가 63.6%로 가장 많았고 반면 '알고 있다'는 10.5%에 불과함
  - 장애유형별로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가 72.8%로 가장 많도 청각장애 70.7%, 지적장애 68.3%, 뇌병변장애 66.7%, 장루 · 요루장애 63.6%순으로 나타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2011	알고 있다	7.8	10.4	4.3	10.3	12.8	9.4	3.8	10.5	7.2	8.0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3	24.1	17.5	23.4	29.2	24.3	14.5	21.6	21.7	21.6
	알지 못한다	70.8	65.5	78.2	66.3	58	66.3	81.7	68	71.1	70.4
2014	알고 있다	8.3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알지 못한다	68.7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2017	알고 있다	13.9	16.7	10.2	28.9	22.9	18.0	7.1	17.5	12.0	14.1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9.0	20.3	34.8	29.4	30.7	19.2	26.0	25.0	25.4
	알지 못한다	60.7	54.2	69.5	36.3	47.7	51.2	73.7	56.5	62.9	60.4
2020	알고 있다	10.5	13.0	7.2	18.0	20.0	13.8	5.4	12.6	9.3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9.0	21.7	25.1	29.4	31.5	21.2	24.1	27.0	
	알지 못한다	63.6	58.0	71.1	56.9	50.6	54.7	73.4	63.3	63.7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3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 성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71.1%로 남성 58.0%에 비해 높음
- 연령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이상이 장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장차법을 모르는 경우가 7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경증이 63.7%로 중증 63.3%으로 유사한 수준임

2) 장애인 인권보호

(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계	137	60	75	2
2010	6	–	6	–
2011	5	2	3	–
2012	4	3	1	–
2013	7	6	1	–
2014	7	3	3	1
2015	9	3	5	1
2016	15	10	5	–
2017	12	7	5	–
2018	87	49	38	2
2019	15	5	10	–
2020	17	2	15	–
2021	18	4	14	0

주: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0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권고, 의견표명,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총 누계 건수는 137건으로 그중 60건이 권고, 75건이 의견표명, 2건이 의견제출로 나타남
  • 2021년도 현황은 권고 4건, 의견표명 14건으로 총 18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단위: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 중	권고 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 수용	불수용		
누계	60	44	25	19	–	16	100.0
2010	0	0	0	0	0	0	–
2011	2	2	0	2	0	0	100.0
2012	3	2	0	2	0	1	100.0
2013	6	5	3	2	0	1	100.0
2014	3	3	2	1	0	0	100.0
2015	3	1	0	1	0	2	100.0
2016	10	2	2	0	0	8	100.0
2017	7	0	0	0	0	7	100.0
2018	5	0	0	0	0	5	–
2019	5	2	2	–	–	3	100.0
2020	2	1	1	–	–	1	100.0
2021	4	1	1	0	0	3	100.0

주: 1)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4)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2) 검토중인 경우 권고수용률에 포함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1

–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1년까지의 누적 권고건수 총 60건 중 수용은 25건, 일부 수용은 19건, 검토 중은 16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에는 총 4건이 권고되어 1건이 수용되고, 3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563	1,695	886	1,340	1,312	1,139	1,142	1,511	1,113	1,103	1,212	1,050	745
장애 유형별	지체	4,903	508	297	492	380	402	334	629	313	305	277	413	194
	시각	3,952	427	142	193	299	290	439	329	371	403	296	352	234
	뇌병변	1,068	136	57	87	71	92	93	101	97	93	60	48	29
	청각	1,550	275	72	142	251	112	101	93	98	79	75	95	66
	지적(발달)	1,731	181	214	231	115	104	100	246	102	126	96	50	65
	언어	112	8	8	13	7	13	5	7	12	13	4	6	4
	정신장애	599	73	48	47	50	55	30	62	52	22	49	24	28
	기타	1,648	87	48	135	139	71	43	44	68	62	355	62	125
차별 영역별	고용	1,000	82	64	82	75	94	69	56	81	57	79	80	71
	교육	1,425	55	62	96	45	66	55	535	90	58	77	85	91
	재화 · 용역	9,535	1,269	487	808	706	677	731	643	677	756	719	805	496
	사법행정	455	26	77	36	30	42	37	46	27	22	28	0	0
	참정권	179	13	3	57	41	19	–	16	4	11	1	0	0
	괴롭힘 등	1,740	176	105	111	303	123	121	89	91	108	199	80	87
	기타	1,229	74	88	150	112	118	131	126	143	91	109	0	0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120-121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11건, 2017년 1,113건, 2018년 1,103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1,2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50건, 2021년 745건으로 감소 추이에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234건, 지체장애가 194건으로 많이 나타남. 한편 기타장애의 경우 2020년 62건에서 2021년 125건으로 증가함
- 2021년 기준으로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 · 용역 496건으로 가장 많으며, 반면 사법행정, 참정권은 0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누 계		15,571	1,226	7	5	746	11	10	10	437	14,335	8,611	55	5,657	12	10
2008		347	25	–	–	14	–	–	–	11	322	190	–	131	1	–
2009		716	55	–	–	8	–	–	–	47	661	351	6	300	4	–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
2012		1,508	136	1	–	115	–	–	–	20	1,371	616	1	754	–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
2016		1,640	51	–	3	19	–	–	–	29	1,589	1199	7	383	–	–
2017		1,089	91	–	–	67	1	2	–	21	996	631	4	361	–	2
2018		1,324	39	2	–	23	–	2	1	11	1,285	779	1	505	–	–
2019		904	83	2	–	65	–	–	1	15	821	556	1	254	–	–
2020		1,350	203	–	–	175	–	2	8	18	1,141	765	–	376	–	6
2021		830	67	1	–	49	–	–	–	17	762	461	4	297	–	1
고용	소계	77	10	–	–	8	–	–	–	2	66	46	1	19	–	1
	모집·채용	21	5	–	–	5	–	–	–	–	16	10	–	6	–	–
	임금·복리후생	6	1	–	–	1	–	–	–	–	5	2	–	3	–	–
	배치	17	–	–	–	–	–	–	–	–	17	11	–	6	–	–
	승진	1	–	–	–	–	–	–	–	–	1	–	–	1	–	–
	직무관련	6	2	–	–	1	–	–	–	1	4	4	–	–	–	–
	퇴직·해고	2	1	–	–	1	–	–	–	–	1	–	1	–	–	–
	교육	11	1	–	–	–	–	–	–	1	10	7	–	3	–	–
	기타	13	–	–	–	–	–	–	–	–	12	12	–	–	–	1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3) -는 건수가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28, 230-231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830건으로 2020년 1,350건에 비해 52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체 차별 진정건수는 830건으로 이중 인용된 사건은 67건, 진정접수 후 각하, 이송, 기각 등의 사유로 인용된 사건은 762건으로 전체 91.8% 수준임.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교육	소계	107	4	-	-	3	-	-	1	1	103	69	-	34	-	-
	전·입학 거부	2	1	-	-	1	-	-	-	-	1	-	-	1	-	-
	시설물 접근·이용	49	1	-	-	1	-	-	-	-	48	40	-	8	-	-
	수업·시험 편의제공	22	1	-	-	1	-	-	-	-	21	11	-	10	-	-
	수업 등교 내 활동배제	5	-	-	-	-	-	-	-	-	5	1	-	4	-	-
	특수학급설치	2	-	-	-	-	-	-	-	-	2	2	-	-	-	-
	괴롭힘	16	1	-	-	-	-	-	-	1	15	9	-	6	-	-
	기타	11	-	-	-	-	-	-	-	-	11	6	-	5	-	-
재화용역	소계	545	40	-	-	27	-	-	-	13	505	291	3	211	-	-
	재화·용역	186	16	-	-	9	-	-	-	7	170	102	-	68	-	-
	보험·금융	40	5	-	-	4	-	-	-	1	35	19	2	14	-	-
	시설물 접근	78	6	-	-	3	-	-	-	3	72	56	1	15	-	-
	이동교통수단	40	6	-	-	6	-	-	-	-	34	17	-	17	-	-
	정보접근·의사소통	145	3	-	-	2	-	-	-	1	142	62	-	80	-	-
	문화·예술·체육	11	1	-	-	1	-	-	-	-	10	5	-	5	-	-
	기타	45	3	-	-	2	-	-	-	1	42	30	-	12	-	-
사법행정		4	1	-	-	1	-	-	-	-	3	1	-	2	-	-
참정권		-	-	-	-	-	-	-	-	-	-	-	-	-	-	-
괴롭힘 등	소계	86	11	1	-	-	-	-	-	1	75	51	-	25	-	-
	따돌림	5	1	-	-	1	-	-	-	-	4	3	-	1	-	-
	유기·방치	3	2	-	-	2	-	-	-	-	1	1	-	1	-	-
	성폭행	-	-	-	-	-	-	-	-	-	-	-	-	-	-	-
	폭행·학대	10	-	-	-	-	-	-	-	-	10	7	-	3	-	-
	금전착취	3	-	-	-	-	-	-	-	-	3	3	-	-	-	-
	모욕·비하	48	6	1	-	5	-	-	-	-	42	25	-	17	-	-
	기타	17	2	-	-	1	-	-	-	1	15	12	-	3	-	-
기타		11	1	-	-	1	-	-	-	-	10	3	-	7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3) -는 건수가 없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28, 230-231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545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 107건, 괴롭힘 등 86건,, 고용 77건, 기타 19건 순으로 나타남
- 각영역별 진정건수 대비 미인용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 85.7%, 교육 96.3%, 재화용역 92.7%, 괴롭힘 87.2%수준으로 나타남.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누 계	1,226	86	94	814	42	18	124	48
2008	25	1	8	10	1	4	1	0
2009	55	5	5	35	1	0	8	1
2010	85	14	11	44	2	0	12	2
2011	156	8	1	126	4	0	14	3
2012	136	1	4	117	3	1	3	7
2013	108	4	6	78	2	0	8	10
2014	79	8	10	33	1	8	12	7
2015	36	7	1	18	0	0	8	2
2016	51	3	2	39	0	0	6	1
2017	91	5	10	34	24	0	12	6
2018	39	7	9	15	1	0	6	1
2019	83	3	3	58	1	4	8	6
2020	203	8	14	160	1	1	15	4
2021	67	10	4	40	1	–	11	1

주: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p. 230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재화·용역이 81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괴롭힘 등이 124건, 교육 94, 고용 86, 사법 · 행정 42건 참정권 18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기각·각하 사유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각하(제32조)											법 제32조 제3항	기각(제33조)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누 계	14,268	8,611	1,262	44	158	98	182	12	111	6,607	114	6	17	5,657	870	1,581	3,206
2008	321	190	50	1	6	10	1	1	1	116	4	0	0	131	16	48	67
2009	651	351	56	0	9	5	14	1	10	236	19	1	0	300	39	107	154
2010	995	663	227	2	10	19	16	0	6	369	13	1	0	332	61	94	177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0	410	59	146	205
2012	1,370	615	62	3	14	9	16	4	9	495	3	0	1	754	74	115	565
2013	1,454	754	215	5	37	2	20	0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4	1,009	556	52	3	8	11	17	1	2	452	10	0	4	449	86	123	240
2015	1,043	661	49	1	8	7	14	1	12	561	8	0	2	380	62	139	179
2016	1,582	1,198	100	12	11	4	16	0	3	1,048	3	0	1	383	66	119	198
2017	1,255	633	60	1	11	7	13	1	5	526	6	0	1	631	81	119	198
2018	1,279	779	127	1	13	4	6	0	7	615	5	0	2	505	70	129	306
2019	820	564	58	10	6	5	15	1	7	460	3	–	1	253	68	94	91
2020	1,138	763	46	1	14	5	4	1	10	676	5	–	1	375	68	133	174
2021	758	461	62	1	4	5	12	–	24	342	8	–	3	297	54	111	132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20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29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을 기각 ·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각하는 8,611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2조 제8호가 6,607건으로 가장 많고, 제1호 1,262건 등의 순임. 기각은 5,657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3조 제3호가 3,206호로 가장 많음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4) 정신보건시설 입원현황

〈표 11-2-7〉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시설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A+B)	자의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인원	기타[주3]	비자의 입원율 B/(A+B)[주4]
			계(A)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계(B)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2001		60,079	4,041	4,041	-	56,038	39,167	16,871	-	-	-	93.3
		(100.0)	(6.7)	(6.7)	-	(93.3)	(65.2)	(28.1)	-	-	-	
2002		61,066	3,946	3,946	-	57,120	40,263	16,857	-	-	-	93.5
		(100.0)	(6.5)	(6.5)	-	(93.5)	(65.9)	(27.6)	-	-	-	
2003		64,083	4,182	4,182	-	59,146	41,853	17,293	-	-	755	92.3
		(100.0)	(6.6)	(6.6)	-	(92.2)	(65.9)	(26.3)	-	-	(1.2)	
2004		65,349	5,024	5,024	-	59,642	44,024	15,618	-	-	683	91.3
		(100.0)	(7.7)	(7.7)	-	(91.3)	(67.4)	(23.9)	-	-	(1.0)	
2005		67,895	6,036	6,036	-	61,274	45,958	15,316	-	-	585	90.2
		(100.0)	(8.9)	(8.9)	-	(90.3)	(67.7)	(22.6)	-	-	(0.9)	
2006		70,967	6,534	6,534	-	63,854	49,935	13,919	-	-	579	90.0
		(100.0)	(9.2)	(9.2)	-	(90)	(70.4)	(19.6)	-	-	(0.8)	
2007		70,516	6,841	6,841	-	62,989	51,028	11,961	-	-	686	89.3
		(100.0)	(9.7)	(9.7)	-	(89.4)	(72.4)	(17.0)	-	-	(0.9)	
2008		68,110	9,387	9,387	-	57,901	50,425	7,476	-	-	822	85.0
		(100.0)	(13.8)	(13.8)	-	(85)	(74.0)	(11.0)	-	-	(1.2)	
2009		74,919	12,087	12,087	-	61,905	50,575	11,154	176	76	851	82.6
		(100.0)	(16.1)	(16.1)	-	(82.6)	(67.5)	(14.9)	(0.2)	(0.1)	(1.1)	
2010		75,282	15,271	15,271	-	58,992	51,714	7,027	251	109	910	78.4
		(100.0)	(20.3)	(20.3)	-	(78.3)	(68.7)	(9.3)	(0.3)	(0.1)	(1.2)	
2011		78,637	16,833	16,833	-	60,709	53,533	6,853	323	50	1,045	77.2
		(100.0)	(21.4)	(21.4)	-	(77.2)	(68.1)	(8.7)	(0.4)	(0.1)	(1.3)	
2012		80,569	19,441	19,441	-	60,072	53,105	6,737	230	43	1,013	74.6
		(100.0)	(24.1)	(24.1)	-	(74.6)	(65.9)	(8.4)	(0.3)	(0.1)	(1.3)	
2013		80,462	21,294	21,294	-	57,714	51,132	6,320	262	53	1,401	71.7
		(100.0)	(26.5)	(26.5)	-	(71.7)	(63.5)	(7.9)	(0.3)	(0.1)	(1.7)	
2014		81,625	24,266	24,266	-	56,174	49,792	6,235	147	26	1,159	68.8
		(100.0)	(29.7)	(29.7)	-	(68.8)	(61.0)	(7.6)	(0.2)	(0.0)	(1.4)	
2015		81,105	26,064	26,064	-	53,798	47,235	6,432	131	43	1,200	66.3
		(100.0)	(32.1)	(32.1)	-	(66.3)	(58.2)	(7.9)	(0.2)	(0.1)	(1.5)	
2016		79,401	28,285	28,285	-	49,758	43,643	6,021	94	58	1,300	62.7
		(100.0)	(35.6)	(35.6)	-	(62.7)	(55.0)	(7.6)	(0.1)	(0.1)	(1.6)	
2017		77,161	36,465	36,465	12,325	26,748	24,234	-	2,514	53	1,570	34.7
		(100.0)	(47.3)	(47.3)	(16.0)	(34.7)	(31.4)	-	(3.3)	(0.1)	(2.0)	
2018		66,108	43,170	30,092	13,078	21,795	19,049		2,746	65	1,078	33.5
		(100.0)	(65.3)	(45.5)	(19.8)	(33.0)	(28.8)		(4.2)	(0.1)	(1.6)	
2019		66,436	43,665	29,792	13,873	20,616	17,298		3,318	107	1,048	32.1
		(100.0)	(65.7)	(44.8)	(20.9)	(31.0)	(26.0)		(5.0)	(0.2)	(1.6)	
2020		62,702	40,873	27,430	13,443	20,710	16,912		3,798	25	1,094	33.6
		(100.0)	(65.2)	(43.7)	(21.4)	(33.0)	(27.0)		(6.1)	(0.0)	(1.7)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24,782	13,899	9,143	4,756	9,850	-		-	-	-	41.5
		(100.0)	(56.1)	(36.9)	(19.2)	(39.7)						
	종합병원 정신과	3,202	2,320	1,532	788	881	-		-	-	-	27.5
		(100.0)	(72.5)	(47.8)	(24.6)	(27.5)						
	병원정신과	31,770	22,167	15,087	7,080	9,528	-		-	-	-	30.1
		(100.0)	(69.8)	(47.5)	(22.3)	(30.0)						
	정신과의원	2,948	2,487	1,668	819	451	-		-	-	-	15.4
		(100.0)	(84.4)	(56.6)	(27.8)	(15.3)						
정신요양시설		8,828	7,499	5,307	2,192	1,329	1,329		-	-	-	15.1
		(100.0)	(84.9)	(60.1)	(24.8)	(15.1)						

주: 1) 2020.12.31 기준
2) 개인 식별 문제로 인하여 일부 값은 비공개 처리함
3) 2017년까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에 기타입소가 포함됨(분류: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자, 기타입소). 본 표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제시함
4) 비자의 입원률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자의·비자의 입원자 중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대상자의 비율임. 이때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미포함: 비자의 입원률(%) = (해당시점 비자의적 입원환자수 / 해당시점 자의적·비자의적 입원환자수)×100.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 2016.5.29., 전부개정]에서는 입원유형을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으로 분류함
· 2018년 이전의 비자의 입원율은 비자의입원율(%) 산출식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재산정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pp35.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p.129.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pp35, 89

–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은 2020년 기준, 62,702명이며, 비자의 입원율은 33.0% 수준임
- 자의에 의한 입원은 65.2%로 비자의적 입원 33.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정신의료기관별로 입원환자 수를 살펴보면, 병원 정신과 31,770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병원이 24,782명, 종합병원 정신과 3,202명, 정신과의원 2,948명 순임
- 정신의료기관별로 비자의 입원율을 살펴보면, 정신병원이 39.7%로 가장 높고, 병원 정신과 30.0%, 종합병원 정신과 27.5% 순임

– 정신요양시설 전체 입원환자 수는 8,828명이며, 비자의 입원율은 15.1% 수준임

3) 학대·폭력 경험

(1) 학대·폭력 경험

〈표 11-3-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있음	1.4	0.5	1.4	0.6	1.3	2.0	7.2	4.4	1.8	–	–	–	–	1.8	0.2	2.9
	가끔있음	9.5	5.9	10.8	8.1	8.6	17.7	23.6	26.7	24.2	5.9	8.3	7.1	4.4	15.7	4.6	18.9
	없음	89.1	93.6	87.8	91.3	90.1	80.2	96.2	68.9	74.0	94.1	91.7	92.9	95.6	82.5	95.2	78.1
학대·폭력 유형	언어폭력	68.5	57.9	67.6	57.3	75.7	81.3	79.2	84.8	69.7	50.7	56.0	86.6	–	84.2	22.7	79.7
	신체적학대	16.1	12.3	11.2	7.9	9.7	11.2	30.9	23.3	14.9	3.0	–	–	15.5	–	–	21.1
	정서적학대	49.9	53.1	51.6	50.6	46.9	41.4	46.7	61.1	44.0	57.3	77.6	80.0	81.4	63.5	77.3	28.7
	경제적착취	4.3	2.9	6.5	6.2	1.6	–	7.1	3.7	2.7	3.0	–	–	–	–	–	4.9
	성적학대	3.5	2.2	3.4	1.0	1.5	2.0	7.9	2.3	2.9	–	–	–	–	–	3.8	3.8
	방임 및 유기	4.5	3.2	11.6	2.5	2.0	2.3	4.7	7.8	4.2	6.9	–	–	–	5.3	6.1	4.5
	기타	1.9	3.2	1.2	3.3	2.2	–	0.8	0.7	–	4.9	5.0	4.4	3.2	–	–	3.8
주 가해자	동거 가족	4.3	6.1	6.1	1.1	3.6	–	2.0	0.7	7.3	5.1	29.9	13.0	–	–	–	15.2
	비동거 가족	3.9	3.8	4.7	–	2.6	8.9	3.0	2.7	11.7	–	–	–	–	5.1	–	–
	친인척	1.6	1.0	1.9	4.1	1.0	–	0.5	2.7	4.7	3.3	–	–	–	–	–	1.6
	이웃 및 지인	29.3	30.8	32.3	34.0	31.1	20.1	24.9	24.4	27.5	36.1	32.0	66.9	51.2	21.1	5.4	21.0
	고용주 및 직장동료	5.3	7.5	2.6	6.1	8.0	2.7	5.0	2.5	–	6.1	–	–	–	7.0	–	5.0
	(복지) 기관 종사자	0.9	–	1.0	2.5	0.3	–	1.7	0.7	–	4.4	–	–	–	–	–	1.8
	모르는 사람	48.8	49.6	44.1	51.4	46.4	59.4	50.7	49.3	47.6	41.7	38.1	20.0	48.8	65.7	90.8	54.1
	기타	5.8	1.2	7.3	0.9	6.9	8.9	12.1	17.0	1.2	3.3	–	–	–	–	3.8	2.9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학대·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391-394.

- 2020년 장애을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없으미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9%는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68.5%로 가장 많으며, 정서적 학대가 49.9%, 신체적 학대가 16.1%순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 및 지인이 29.3%, 고용주 및 직장 동료가 5.3%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자주 있음)를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인 31.1%, 지적장애인 30.8%, 정신장애 26.0%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 ·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언어적 폭력(84.8%)과 정서적 학대(61.1%)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81.3%, 84.8%, 86.6%, 84.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호흡기 장애의 경우 이웃 및 지인으로부터의 차별 · 폭력 경험이 66.9%로 나타났으며, 심장장애의 경우 동거 가족으로부터의 차별 · 폭력 경험이 29.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3-2〉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학대·폭력 정도	자주있음	1.4	1.3	1.5	3.5	4.1	1.3	0.6	3.0	0.4
	가끔있음	9.5	10.7	7.9	24.0	18.1	10.9	5.5	16.3	5.5
	없음	89.1	88.0	90.6	72.6	77.7	87.8	94.0	80.7	94.2
학대·폭력 유형	언어폭력	68.5	70.2	65.4	72.7	78.7	64.7	62.6	72.2	61.1
	신체적학대	16.1	17.9	13.1	18.5	26.4	12.7	10.3	19.9	8.5
	정서적학대	49.9	47.7	53.7	59.8	46.3	45.4	56.8	49.0	51.6
	경제적착취	4.3	5.2	2.7	1.6	8.1	4.1	1.6	4.8	3.3
	성적학대	3.5	1.3	7.3	–	8.4	2.6	1.0	4.5	1.5
	방임 및 유기	4.5	3.3	6.6	8.5	3.9	4.3	4.4	5.5	2.5
	기타	1.9	1.6	2.4	0.0	2.5	2.5	1.0	1.3	3.1
주 가해자	동거 가족	4.3	1.4	9.3	2.7	2.1	6.2	4.2	3.7	5.5
	비동거 가족	3.9	3.6	4.5	1.1	1.8	7.0	2.5	4.4	3.0
	친인척	1.6	1.6	1.6	2.2	1.0	1.9	1.8	1.4	2.1
	이웃 및 지인	29.3	28.2	31.3	15.5	22.2	29.2	40.2	27.0	33.9
	고용주 및 직장동료	5.3	6.3	3.5	–	8.0	6.0	3.1	4.6	6.7
	(복지) 기관 종사자	0.9	1.2	0.3	2.5	0.8	0.3	1.2	1.1	0.3
	모르는 사람	48.8	51.1	44.8	50.3	54.8	47.2	45.0	50.2	46.2
	기타	5.8	6.5	4.6	25.6	9.2	2.2	2.0	7.6	2.2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학대·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647-650

– 연령별로 가족 내 차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19.3%, 경증장애인이 5.9%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차별 · 폭력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서적 학대의 경우 17세 이하(59.8%)와 65세 이상(56.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낱ᄂᆞ으며, 신체적 학대의 경우 18-44세 이하가 26.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가정폭력 관련 시설

〈표 11-3-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128 (30)	13 (2)	10 (5)	3 (2)	5 (1)	4 (1)	3 (1)	3 (1)	21 (4)	10 (4)	5 (1)	8 (3)	8 (1)	9 (1)	10 (2)	13 (0)	3 (1)	0 (0)
보호시설	계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
	일반시설	44	8	2	2	1	3	–	1	11	4	1	2	2	2	2	2	3	–
	가족보호시설	21	3	1	1	–	1	1	–	–	1	2	2	2	2	–	3	2	–

주: 1) ( )는 통합상담소 개소 수, 통합상담소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에 포함
2) 장애인 상담소 4개소 : 일반 1개소(광주), 통합 3개소(부산, 대구, 제주)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 1 (1. 설치현황) p. 5 (2.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는 128개소이며, 그 중 장애인 상담소는 4곳으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매우 적은 설치율을 보임
- 전국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65개소로 그 중 장애인보호시설은 2(광주, 경기)곳에 불과함

4) 성폭력

(1) 장애인 성폭력

〈표 11-4-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경험 여부	있다	0.7	0.3	0.7	0.1	0.3	0.4	3.9	0.7	2.4	-	-	0.8	-	-	0.2	1.4
	없다	99.3	99.7	99.3	99.9	99.7	99.6	96.1	99.3	97.6	100	100	99.2	100	100	99.8	98.6
주 가해자	근친(가족)	2.0	-	-	-	-	-	4.2	-	-	-	-	-	-	-	-	-
	이웃	31.2	28.4	-	-	43.3	-	39.2	-	35.0	-	-	-	-	-	-	-
	먼 친척	-	-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38.5	59.0	40.2	-	-	100.0	38.2	-	31.4	-	-	-	-	-	-	100.0
	학교, 학원 관계자	1.2	-	-	-	-	-	-	100.0	-	-	-	-	-	-	-	-
	이성친구	2.0	-	-	-	-	-	4.1	-	-	-	-	-	-	-	-	-
	종교인	2.1	-	-	-	-	-	-	-	14.7	-	-	-	-	-	-	-
	채팅상대자	-	-	-	-	-	-	-	-	-	-	-	-	-	-	-	-
	서비스제공자(복지인력 등)	2.3	-	22.5	-	-	-	-	-	-	-	-	-	-	-	-	-
	직장 상사 및 동료	12.2	12.6	21.7	100.0	56.7	-	3.8	-	5.7	-	-	100.0	-	-	-	-
	기타	8.6	-	15.7	-	-	-	10.4	-	13.2	-	-	-	-	-	100.0	-
대처 방법	그냥 있었음	37.8	48.4	37.3	100.0	43.4	-	33.1	100.0	30.6	-	-	-	-	-	100.0	-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7.2	23.2	-	-	-	100.0	20.3	-	20.3	-	-	-	-	-	-	-
	그 자리에서 항의함	3.2	-	-	-	15.4	-	3.8	-	-	-	-	100.0	-	-	-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8.6	-	-	-	41.3	-	7.0	-	17.9	-	-	-	-	-	-	60.2
	몰라서 그냥 넘어감	13.9	28.4	19.8	-	-	-	4.9	-	31.1	-	-	-	-	-	-	-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19.2	-	42.9	-	-	-	30.9	-	-	-	-	-	-	-	-	39.8
	기타	-	-	-	-	-	-	-	-	-	-	-	-	-	-	-	-

주: 1)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질문
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394, 396~397.

- 2020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의 응답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0.7%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8.5%로 가장 많으며, 이웃 31.2%, 직장동료 12.2% 순임.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있었음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정, 고발 등의 도치를 취함이 19.2%,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17.2%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각각 3.9%, 2.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뇌전증의 경우 직장 상사 및 동료로 부터가 100.0%, 언어장애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100.0%, 자폐성장애의 경우 학교, 학원관계자가 100.0%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와 자폐썽장애의 경우 그냥 있었음의 응답이 모두 100.0%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1-4-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경험 여부	있다	0.7	0.1	1.4	-	3.1	0.6	0.1	1.4	0.2
	없다	99.3	99.9	98.6	100.0	96.9	99.4	99.9	98.6	99.8
주 가해자	근친(가족)	2.0	16.6	-	-	3.3	-	-	2.6	-
	이웃	31.2	-	35.5	-	40.1	17.0	18.5	33.6	23.2
	먼 친척	-	-	-	-	-	-	-	-	-
	모르는 사람	38.5	31.7	39.4	-	25.9	51.1	76.9	31.9	61.1
	학교, 학원 관계자	1.2	9.8	-	-	1.9	-	-	1.5	-
	이성친구	2.0	-	2.2	-	3.2	-	-	2.5	-
	종교인	2.1	-	2.4	-	-	7.4	-	2.7	-
	채팅상대자	-	-	-	-	-	-	-	-	-
	서비스제공자(복지인력 등)	2.3	-	2.6	-	-	8.1	-	-	10.2
	직장 상사 및 동료	12.2	10.1	12.5	-	14.9	9.2	4.6	14.2	5.4
	기타	8.6	31.8	5.4	-	10.7	7.2	-	11.0	-
대처 방법	그냥 있었음	37.8	37.8	37.8	-	33.7	30.7	79.4	38.7	34.6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7.2	28.9	15.6	-	11.3	34.8	4.5	16.1	21.2
	그 자리에서 항의함	3.2	15	1.6	-	4.5	-	4.6	4.1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8.6	2.8	9.4	-	9.4	5.8	11.4	10.7	1.5
	몰라서 그냥 넘어감	13.9	15.6	13.7	-	19.8	6.6	-	11.2	23.2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19.2	-	21.8	-	21.3	21.9	-	19.1	19.5
	기타	-	-	-	-	-	-	-	-	-

주: 1)'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650-651.

- 성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4%로 남성 0.1%에 비해 피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주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기타가 31.8%, 모르는 사람이 31.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모르는 사람 39.4%, 이웃이 35.5%로 나타남
  - 성별 대처방법은 남성의 경우 그냥 있었음이 37.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28.9%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그냥 있었음 37.8%,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이 21.8% 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18-44세 이하의 피해경험 비율이 3.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주 가해자는 18-44세 이하는 이웃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는 모르는 사람이 5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대처방법은 18-4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그냥 있었음이 각각 33.7%와 79.4%로 가냥 많았으며, 45-64세 이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34.8%로 가장 높음

(2) 성폭력 상담소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 수	166	20	6	4	5	7	5	4	2	31	9	8	19	7	9	11	15	4
	(27)	(4)	(1)	(1)	(2)	(1)	(2)	(1)	(0)	(4)	(1)	(1)	(2)	(2)	(1)	(2)	(1)	(1)

주: 1)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2) 2022년 1월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2022년 8월 검색)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2022년 1월 기준)

- 각 시도별로 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66개 상담소 중 경기가 31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20개소로 두 번 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 상담소는 전국에 총 27개소가 있으며,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1-4개소가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장애인 성폭력 상담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0	14,310	9,044	5,266	1,047	214	94	106	770	286	26	2,723
	100.0	63.2	36.8	7.3	1.5	0.7	0.7	5.4	2.0	0.2	19.0
2011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2014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28,203	20,886	7,317	1,090	113	86	234	2,241	496	7	3,050
	100.0	74.1	25.9	14.9	1.5	1.2	3.2	30.6	6.8	0.1	41.7
2017	34,418	24,606	9,812	1,774	195	25	77	2,793	651	95	4,202
	100.0	71.5	28.5	5.2	0.6	0.1	0.2	8.1	1.9	0.3	12.2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2018	44,030	32,938	11,092	1,822	347	71	1,044	3,344	52	4,412
	100.0	74.8	25.2	4.1	0.8	0.2	2.4	7.6	0.1	10.0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학교 폭력	기타
2019	48,683	39,286	9,397	3,423	172	69	64	2,017	584	5	53	5	68	2,937
	100.0	80.7	19.3	7.1	0.4	0.1	0.1	4.2	1.2	0.0	0.1	0.0	0.1	6.0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2020	46,785	35,379	11,406	3,678	149	131	2	974	1,906	62	4,504
	100.0	75.6	24.4	7.9	0.3	0.3	0.0	2.1	4.1	0.1	9.6
2021	52,543	39,012	13,531	5,331	417	80	97	1,117	2,222	103	4,164
	100.0	74.2	25.8	10.2	0.8	0.2	0.2	2.1	4.2	0.2	7.9

주: 1)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가족문제는 부부갈등, 이혼 등 가족간 발생한 문제를 의미함
2)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기타에는 중독 등이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보고」. P.2.

– 2021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391012건으로 2020년에 비해 증가함
- 2021년 장애인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74.2%로 2020년 보다 감소함
- 기타 상담에서는 가정폭력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7.9%, 성상담 4.2%순임

(4) 장애인 성폭력 피해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965	3,986	3,038	3,270	2,592	2,832	2,960	2,0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해유형	강간	2,489	2,141	1,509	1,759	1,361	–		
		(50.1)	(53.7)	(49.7)	(54.0)	(52.5)	–		
	강제추행	1,743	1,441	1,211	1,130	870	11,293	9,550	
		(35.1)	(36.2)	(39.9)	(34.6)	(33.6)	(28.7)	(27.0)	
	기타	733	404	318	381	361	2035	825	686
		(14.8)	(10.1)	(10.4)	(11.6)	(13.9)	(5.2)	(2.3)	(1.8)
	강간 및 유사강간	–	–	–	–	–	23,375	22,085	22,964
		–	–	–	–	–	(59.4)	(62.4)	(58.9)
	강제추행						11293		10,666
							(28.7)		(27.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	–	–	–	420	704	1,074
		–	–	–	–	–	(1.1)	(2.0)	(2.8)
	통신매체 이용음란	–	–	–	–	–	1793	1,772	2,923
		–	–	–	–	–	(4.6)	(5.0)	(7.5)
	성희롱	–	–	–	–	–	400	443	699
		–	–	–	–	–	(1.0)	(1.3)	(1.8)
장애유형	지체	418	251	169	127	198	118	90	86
		(8.4)	(6.3)	(5.6)	(3.9)	(7.6)	(4.2)	(3.0)	(4.1)
	뇌병변	153	97	101	54	66	64	109	55
		(3.1)	(2.4)	(3.3)	(1.7)	(2.5)	(2.3)	(3.7)	(2.6)
	시각	218	72	45	36	42	28	50	36
		(4.4)	(1.8)	(1.5)	(1.1)	(1.6)	(1.0)	(1.7)	(1.7)
	청각, 언어	114	67	82	61	69	53	67	71
		(2.3)	(1.7)	(2.7)	(1.9)	(2.7)	(1.8)	(2.3)	(3.4)
	정신 지체 (발달)	3,108	3,031	2,321	2,504	1,946	2,217	2,195	1,534
		(62.6)	(76.0)	(76.4)	(76.6)	(75.1)	(78.3%)	(74.2)	(73.3)
	정신 장애	413	339	176	277	177	252	340	169
		(8.3)	(8.5)	(5.8)	(8.5)	(6.8)	(8.9%)	(11.5)	(8.1)
	기타장애	541	129	144	211	94	24	29	80
		(10.9)	(3.2)	(4.7)	(6.5)	(3.6)	(0.8%)	(1.0)	(3.8)
	중복장애	–	–	–	–	–	76	80	62
		–	–	–	–	–	(2.7%)	(2.7)	(3.0)

주 1) 2013년까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건수이며, 2014년부터는 장애인 전체 피해 건수임
2) 피해유형 중 기타에는 성희롱, 스토킹, 카메라 등 이용촬용,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이 포함됨
3) 장애유형 중 기타장애에는 내부 장기 장애 등이 포함됨
4) 2019년부터 성폭력 피해 유형 중 강간에 유사강간이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보고」. P.3.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0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보다 감소함
  •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4	2	3	1	2	2	2	1	–	5	1	3	1	2	2	2	2	3
일반	17	2	1	1	1	1	–	1	–	3	1	1	–	2	1	–	–	2
장애인	8	–	1	–	–	1	1	–	–	1	–	1	1	–	1	–	–	1
특별지원(친족피해 청소년)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5	–	1	–	1	–	–	–	–	–	–	1	–	–	–	1	1	–

주: 1) 2020년 12월 기준
2) 34개소 모두 국비 지원 시설임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4개소 중 장애인 시설은 8곳이며,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지역에만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9개 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2017	전체	201	203	285
	장애인	91	97	173
2018	전체	180	181	284
	장애인	79	92	164
2019	전체	190	185	287
	장애인	94	90	168
2020	전체	159	153	295
	장애인	62	68	166
2021	전체	147	184	256
	장애인	61	83	145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보고」. P.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장애인의 연도 중 입소인원은 61명으로 전체인원의 41.5%를 차지함
  - 연도 중 퇴소인원은 장애인 83명으로 전체 145명의 57.2% 수준임
  - 보호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체 256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45명(56.6%)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5세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0)	–	(2.9)	(35.0)	(25.2)	(35.9)	(1.0)
2014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0)	–	(2.4)	(39.5)	(25.1)	(32.3)	(0.6)
2015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0)	(1.4)	(7.0)	(46.2)	(26.9)	(18.5)	(0.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0)	(0.0)	(2.4)	(37.6)	(32.7)	(27.3)	(0.0)
2016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0)	(0.0)	(1.1)	(30.0)	(38.3)	(30.6)	(0.0)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0)	(1.7)	(31.2)	(34.7)	(32.4)	(0.0)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장애인	168	–	6	47	52	60	3
		(100.0)	–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장애인	166	0	4	46	48	59	9
		(100.0)	(0.0)	(2.4)	(27.7)	(28.9)	(35.5)	(5.4)
2021	전체	256	0	14	99	73	70	0
		(100.0)	(0.0)	(5.5)	(38.7)	(28.5)	(27.3)	(0.0)
	장애인	145	0	5	39	41	60	0
		(100.0)	(0.0)	(3.4)	(26.9)	(28.3)	(41.4)	(0.0)

주: 2021년 12월 말 기준 현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보고」. P.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입소자 중 13-18세 이하의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우 25-64세 이하의 비율이 41.4%로 가장 높음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2~6개월 이하	7개월~1년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초과
2013년	전체	230	67	86	30	24	19	4
		(100.0)	(29.1)	(37.4)	(13.0)	(10.4)	(8.3)	(1.7)
	장애인	79	13	37	12	7	9	1
		(100.0)	(16.5)	(46.8)	(15.2)	(8.9)	(11.4)	(1.3)
2014년	전체	222	62	77	31	31	10	11
		(100.0)	(28.0)	(34.7)	(14.0)	(14.0)	(4.5)	(5.0)
	장애인	92	14	38	16	14	6	4
		(100.0)	(15.2)	(41.3)	(17.4)	(15.2)	(6.5)	(4.3)
2015년	전체	262	70	95	33	33	11	20
		(100.0)	(26.7)	(36.3)	(12.6)	(12.6)	(4.2)	(7.6)
	장애인	107	21	33	15	17	8	13
		(100.0)	(19.6)	(30.8)	(14.0)	(15.9)	(7.5)	(12.1)
2016년	전체	193	43	48	33	37	14	18
		(100.0)	(22.3)	(24.9)	(17.1)	(19.2)	(7.3)	(9.3)
	장애인	70	9	21	13	13	7	7
		(100.0)	(12.9)	(30.0)	(18.6)	(18.6)	(10.0)	(10.0)
2017년	전체	203	43	54	36	26	23	21
		(100.0)	(21.2)	(26.6)	(17.7)	(12.8)	(11.3)	(10.3)
	장애인	97	15	23	15	15	18	12
		(100.0)	(15.5)	(23.7)	(14.4)	(15.5)	(18.6)	(12.4)
2018년	전체	181	28	51	30	26	14	32
		(100.0)	(15.5)	(28.2)	(16.6)	(14.4)	(7.7)	(17.7)
	장애인	92	11	26	14	9	9	23
		(100.0)	(12.0)	(28.3)	(15.2)	(9.8)	(9.8)	(25.0)
2019년	전체	185	25	64	18	27	17	34
		(100.0)	(13.5)	(34.6)	(9.7)	(14.6)	(9.2)	(18.4)
	장애인	90	8	30	5	11	10	26
		(100.0)	(8.9)	(33.3)	(5.6)	(12.2)	(11.1)	(28.9)
2020	전체	153	23	38	32	21	18	21
		(100.0)	(15.0)	(24.8)	(20.9)	(13.7)	(11.8)	(13.7)
	장애인	68	11	18	10	9	8	12
		(100.0)	(16.2)	(26.5)	(14.7)	(13.2)	(11.8)	(17.6)
2021	전체	184	27	41	27	29	20	40
		(100.0)	(14.7)	(22.3)	(14.7)	(15.8)	(10.9)	(21.6)
	장애인	83	10	9	14	8	15	27
		(100.0)	(12.1)	(10.8)	(16.9)	(9.6)	(18.1)	(32.5)

주: 연도중 퇴소인원 대상 보호기간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1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보고」. P.5..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전체입소자 중 2-6개월 이하의 비율이 22.3%로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 3년 초과가 32.5%로 높게 나타나 전체입소자에 비하여 장애인의 보호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5) 학대피해 현황

〈표 11-5-1〉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건, %)

구분		수	비율
연도별	2019년	945	100.0
	2020년	1,008	100.0
성별	남성	498	48.5
	여성	519	51.5
연령	17세 이하	133	13.2
	18~19세	31	3.1
	20대(20~29세)	276	27.4
	30대(30~39세)	173	17.2
	40대(40~49세)	176	17.5
	50대(50~59세)	124	12.3
	60~64세	60	6.0
	65세 이상	35	3.5
장애유형	지체장애	99	9.8
	뇌병변장애	55	5.5
	시각장애	27	2.7
	청각장애	41	4.1
	언어장애	2	0.2
	지적장애	658	65.3
	자폐성장애	25	2.5
	정신장애	36	3.6
	신장장애	3	0.3
	뇌전증장애	4	0.4
	미등록	58	5.8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896	94.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54	5.7

주: 1)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008건의 피해자 현황임
2)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008건의 사례 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50건(94.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58건(5.8%)임. 이에 피해장애인 장애정도의 합은 950건임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이며, 그 중 학대피해자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임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945건에서 2020년 1,008건으로 63건 증가함
- 장애인학대 피해자 중 남성은 498건(48.5%), 여성은 519건(51.5%)으로 여성이 좀 더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76건(27.4%)로 가장 많고 40대 176건(17.5%), 30대 173건(17.2%), 17세 이하가 133건(13.2%)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658건(65.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896건(94.3%)로 경증보다 중증일수록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등의 장애인학대 대응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표 11-5-2〉 장애인학대 유형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전체		1,264	378	311	134	321	-	120
		(100.0)	(29.9)	(24.6)	(10.6)	(25.4)	-	(9.5)
피해자 성별	남성	614	196	139	20	195	-	64
		(100.0)	(31.9)	(22.6)	(3.3)	(31.8)	-	(10.4)
	여성	650	182	172	114	126	-	56
		(100.0)	(28.0)	(26.5)	(17.5)	(19.4)	-	(8.6)
피해자 연령	17세 이하	154	55	49	23	1	-	26
		(100.0)	(35.7)	(31.8)	(14.9)	(0.6)	-	(16.9)
	18~19세	42	16	12	3	5	-	6
		(100.0)	(38.1)	(28.6)	(7.1)	(11.9)	-	(14.3)
	20대(20~29세)	358	96	88	52	93	-	29
		(100.0)	(26.8)	(24.6)	(14.5)	(26.0)	-	(8.1)
	30대(30~39세)	229	62	58	24	59	-	26
		(100.0)	(27.1)	(25.3)	(10.5)	(25.8)	-	(11.4)
	40대(40~49세)	224	77	50	14	70	-	13
		(100.0)	(34.4)	(22.3)	(6.3)	(31.3)	-	(5.8)
	50대(50~59세)	140	40	31	10	50	-	9
		(100.0)	(28.6)	(22.1)	(7.1)	(35.7)	-	(6.4)
	60~64세	74	25	18	3	22	-	6
		(100.0)	(33.8)	(24.3)	(4.1)	(29.7)	-	(8.1)
	65세 이상	43	7	5	5	21	-	5
		(100.0)	(16.3)	(11.6)	(11.6)	(48.8)	-	(11.6)
피해자 장애유형	지체장애	123	27	41	9	30	-	16
		(100.0)	(22.0)	(33.3)	(7.3)	(24.4)	-	(13.0)
	뇌병변장애	78	16	27	7	11	-	17
		(100.0)	(20.5)	(34.6)	(9.0)	(14.1)	-	(21.8)
	시각장애	36	14	9	3	8	-	2
		(100.0)	(38.9)	(25.0)	(8.3)	(22.2)	-	(5.6)
	청각장애	48	16	8	6	16	-	2
		(100.0)	(33.3)	(16.7)	(12.5)	(33.3)	-	(4.2)
	언어장애	2	1	0	0	0	-	1
		(100.0)	(50.0)	(0.0)	(0.0)	(0.0)	-	(50.0)
	지적장애	823	261	195	87	220	-	60
		(100.0)	(31.7)	(23.7)	(10.6)	(26.7)	-	(7.3)
	자폐성장애	35	15	8	2	1	-	9
		(100.0)	(42.9)	(22.9)	(5.7)	(2.9)	-	(25.7)
	정신장애	45	11	7	5	18	-	4
		(100.0)	(24.4)	(15.6)	(11.1)	(40.0)	-	(8.9)
	신장장애	3	1	1	-	1	-	-
		(100.0)	(33.3)	(33.3)	-	(33.3)	-	-
	뇌전증장애	4	1	2	-	-	-	1
		(100.0)	(25.0)	(50.0)	-	-	-	(25.0)
	미등록	67	15	13	15	16	-	8
		(100.0)	(22.4)	(19.4)	(22.4)	(23.9)	-	(11.9)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복학대(226건)을 미분류하여 전체 학대 유형은 1,264건임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1,008건을 학대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총 1,264건임(중복학대 226건 미분류)
–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78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1건(25.4%), 정서적 학대 311건(24.6%), 성적학대 134건(10.6%), 방임 120건(9.5%) 순임
  •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은 신체적 학대가 196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가 195건(31.8%) 정서적 학대 139건(22.6%) 순임. 여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82건(28.0%)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172건(26.5%), 경제적 착취 126건(19.4%)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신체적 학대가 많이 발생하였고, 40대 이상은 경제적 착취 비율이 높음
  • 피해자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신체적 학대이 비율이 높음. 정신장애의 경우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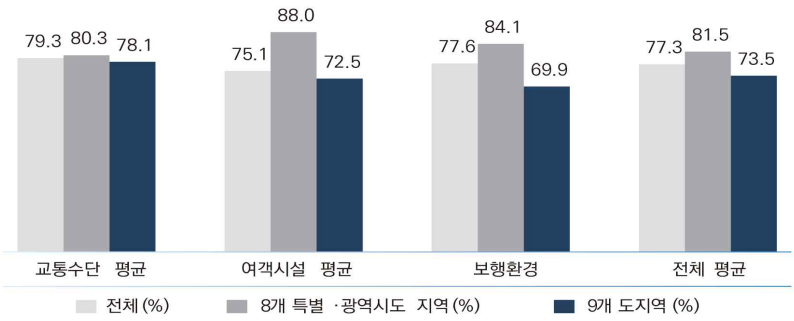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 · 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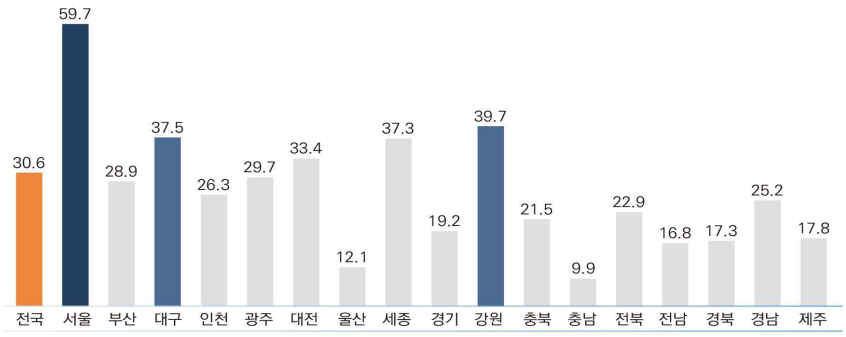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2. 접근성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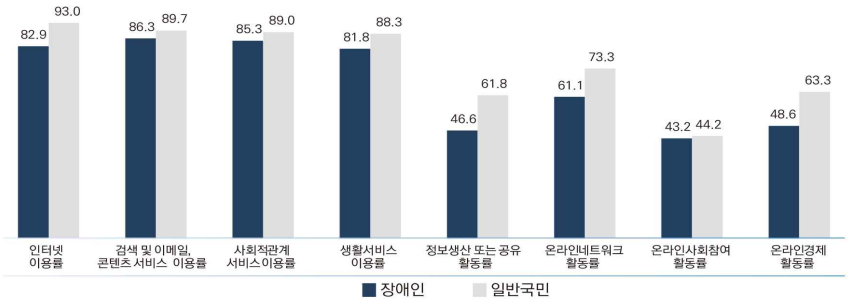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1년)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77.3%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평균 기준 적합률은 79.3%, 여객시설 평균 기준 적합률은 75.1%, 보행환경 기준 적합률은 77.6%임
  - 8개 특별·광역시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9개 도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0.6%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59.7%로 가장 높았고 강원 39.7%, 대구 37.5% 순임. 반면 충남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9.9%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1년)



- 2021년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5.3%, 생활서비스 이용률 81.8%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이며(15.2%p), 온라인 경제활동률,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1) 물리적 접근성

(1) 장애인 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여부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의지	2.7	1.8	시각장애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9	1.6
	하지의지	4.1	2.5		음성손목/탁상시계	4.4	2.6
	척추보조기	5.8	3.9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5	0.1
	상지보조기	1.9	0.8		점자프린터	0.6	0.2
	하지보조기	5.3	3.5		화면해설기	1.8	0.8
	맞춤형 교정용신발	3.2	2.0		음성유도장치	2.4	1.0
	지팡이	16.8	15.8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0.8	0.4
	목발	2.6	2.6		점자라벨기	0.7	0.3
	보행기	7.5	6.5		데이지플레이어	0.5	0.2
	전동휠체어	5.9	3.9		기타	0.5	0.2
	수동휠체어	6.1	5.4	청각장애	보청기	13.2	12.4
	전동스쿠터	3.3	2.2		화상전화기	3.3	1.4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0.9	0.5		골도전화기	1.4	0.5
	자세보조용구	2.8	1.8		해드폰(청취증폭기)	2.9	0.9
	상하지운동기구	2.7	0.8		인공와우	4.1	2.4
	팔받침대	1.1	0.6		자막수신기	4.2	1.6
	기타	1.0	0.9		신호표시(시각,음향)	1.8	0.6
시각장애	안경(콘텍트렌즈)	22.1	20.0		진동시계	3.4	1.6
	저시력보조기	6.4	3.2		기타	–	0.1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7.6	6.3				
	의안	6.0	5.4				
	스크린 리더	2.1	1.2				
	화면 확대기	5.3	3.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 286-290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기 7.5%, 수동휠체어 6.1%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15.8%, 보행기 6.5%, 수동휠체어 5.4%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안경(콘텍트렌즈)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가 7.6%, 저시력보조기가 6.4%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안경(콘텍트렌즈) 20.0,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6.3%, 의안 5.4%순으로 나타남
-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구 필요여부는 보청기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소지여부도 보청기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호흡기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필요여부는 산소발생기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소지여부도 32.7%로 산소발생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나남
-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기구 중 침대(전동 및 수동)의 필요도가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욕창방지용매트와 이동변기가 모두 0.9% 순으로 나타남.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구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적, 자폐성장애	의사소통보조기구	0.4	0.2	전체	기저귀매트	0.7	0.4
	교육과목훈련용보조기구	1.7	0.2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0.8	0.6
	터치모니터	2.0	0.4		이동변기	0.9	0.7
	기타	0.7	0.2		특수 키보드	0.0	-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5.8	4.4		특수 마우스	0.0	-
	기타	0.7	0.6		각종 스위치	0.1	0.0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43.3	32.7		음성인식장치	0.1	0.0
	인공호흡기	26.3	18.4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0	-
	호흡근육훈련기	5.6	6.6		환경제어장치	0.1	-
	기타	0.4	0.6		이동식 전동리프트	0.2	0.0
안면장애	압력옷	-	-		주택개조	0.3	0.1
					승강용보조기기	0.0	-
	기타	0.6	0.6		장애인용 의복	0.1	-
장루, 요루장애	장루주머니	71.5	70.8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1	0.0
	피부보호판	32.7	33.2		경보 시스템	0.1	0.0
	기타	4.8	5.0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구	0.0	-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1.0	0.6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구	0.0	0.0
	음성증폭기	1.9	0.8		배회 감지기	0.0	0.0
	기타	0.4	0.4		안전 손잡이	0.4	0.3
전체	욕창방지용매트	0.9	0.6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0.1	0.1
	욕창방지용방석	0.8	0.5		기타	0.2	0.2
	침대 (전동 및 수동)	1.1	0.8	호흡 보조기	산소발생기	0.3	0.3
	기립보조기구	0.4	0.2		인공호흡기	0.2	0.1

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안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p. 286-290

- 지적, 자폐성 장애관련 보조기구의 필요도는 터치모니터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 관련 보조기구는 인공후두(성대)가 1.0%로 나타남.

(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실적

〈표 12-1-2〉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운영 현황 - 정부 부처별

(단위: 억원, 개수, 건수)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과기정통부
과	보험급여과	요양보험제도과	기초의료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	장애인고용과	보훈의료과	정보활용 지원팀
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	산재보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정보격차 해소지원
지원기관	건보공단	건보공단	시·군·구	시·군·구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보훈병원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2020년 결산	85,100	217,000	27,500	1,500	6,200	11,700	6,300	3,500
2021년 예산	기금사업	기금사업	기금사업	1,300	기금사업	14,437	7,800	1,576
2021년 품목 수	88	18	88	32	218	50	51	27
지급실적	105,445	4,985,047	33,180	3,687	25,019	10,084	7,630	3,450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	산재보험 가입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주요 지급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석 목욕의자	의지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욕창방석, 음성시계 등	의지보조기, 직업용 특수 휠체어	정보접근, 보조기구, 작업기구	의지보조기, 욕창방석 등	정보통신보조 기기
DB 관리체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행복e음		통합노동보험 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업무 시스템	통합보훈 시스템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임
2) 기금사업의 경우 보험재정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이 2,1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이 851억원, 의료급여가 275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17억원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 품목수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이 218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각각 88개,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이 51개임
  -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이 4,985,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105,445건 , 의료급여 33,180건 순임

〈표 12-1-3〉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천원)

구 분	전 체	
	건수	금액
2001	22,150	6,489,959
2002	24,566	6,693,043
2003	27,067	7,149,238
2004	32,079	8,599,146
2005	48,957	21,669,161
2006	68,359	37,969,972
2007	96,844	61,536,703
2008	89,155	44,046,494
2009	77,106	34,286,658
2010	66,132	28,902,450
2011	68,125	27,180,231
2012	64,407	27,362,806
2013	71,350	32,306,026
2014	74,268	34,240,129
2015	83,077	46,323,900
2016	131,731	110,073,298
2017	129,193	106,487,216
2018	137,685	119,224,002
2019	131,564	110,539,182
2020	105,599	85,230,494

주: 지급 기준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2020 건강보험통계연보」. pp118-119.

- 2020년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건수는 105,599건이며 지급액은 85,230,494천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2017.9.19., 일부개정)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적

〈표 12-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2014	650,542	81,352	104,946	107,331	96,178	187,506	73,138	91
2015	638,285	81,227	105,256	105,014	96,905	186,465	63,399	19
2016	498,164	66,161	88,891	85,064	76,646	146,446	34,946	10
2017	502,777	71,224	94,147	88,085	80,861	152,329	16,126	5
2018	517,458	73,438	99,064	90,027	83,931	156,763	14,232	3

구분		소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기타
2019		514,636	261,916	252,717	3
2020		513,361	262,102	251,259	–
2021		507,031	260,040	246,991	–
지체	지체(전환대상)	77	44	33	–
	지체(상지절단)	1,688	913	775	–
	지체(하지절단)	9,516	5,887	3,629	–
	지체(상지관절)	2,403	439	1,964	–
	지체(하지관절)	83,944	5,920	78,024	–
	지체(상지기능)	6,744	4,647	2,097	–
	지체(하지기능)	99,273	55,898	43,375	–
	지체(척추)	95,764	13,458	82,306	–
	지체(변형)	929	96	833	–
시각		28,705	16,895	11,810	–
청각	청각(전환대상)	2	2	–	–
	청각(청력)	5,923	2,034	3,889	–
	청각(평형기능)	257	60	197	–
언어		2,047	1,404	643	–
지적장애		22,259	22,259	–	–
뇌병변장애		81,396	66,475	14,921	–
자폐성장애		20,496	20,496	–	–
정신		908	906	2	–
신장		39,994	38,191	1,803	–
심장		574	533	41	–
호흡기		2,960	2,914	46	–
간		382	210	172	–
안면		88	45	43	–
장루.요루		435	127	308	–
뇌전증		267	187	80	–
기타		–	–	–	–

주: 1)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2) 202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1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07,03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하지기능)장애가 99,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장애 95,764건, 지체(하지관절)이 83,944건 순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4) 편의시설 설치

〈표 12-1-5〉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2013년도					201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3,486,425	2,726,127	78.2	2,391,468	68.6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매개시설	1,455,010	1,202,226	82.6	1,063,331	73.1	3,791,947	3,116,303	82.2	2,950,482	77.8
내부시설	1,030,043	969,146	94.1	867,051	84.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808,790	414,059	51.2	336,763	41.6	1,489,298	1,055,077	70.8	959,091	64.4
안내시설	77,309	43,077	55.7	35,019	45.3	295,558	197,551	66.8	181,197	61.3
기타시설	115,273	97,619	84.7	89,304	77.5	124,179	93,540	75.3	84,392	68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268.

-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78.2%, 적정설치율은 68.6%이었으나, 2018년도의 설치율은 80.2%, 적정 설치율은 74.8%로 증가함
  - 2018년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내부시설이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내시설이 6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1-6〉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단위: 개, %)

구분		2013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시도별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세종	-	-	-	-	-	-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 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묘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주: 2013년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대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71.5%, 강원 71.4%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울산이 66.8%로 가장 높았고 부산 65.9%, 제주 64.7%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 설치율(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이 민간보다 6.4%p 높으며, 적정 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0.8%%로 가장 높았고, 교정시설 78.0%, 문화 · 집회시설 75.3% 순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72.8%로 가장 높았고 문화 · 집회시설 66.9%, 판매시설 66.2% 순임

〈표 12-1-7〉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단위: 개, %)

구분		2018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93.3
시도별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3,352	916,007	734,622	80.2	663,373	72.4
	민간시설	172,595	8,118,883	6,508,672	80.2	6,091,328	75.0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3,656	1,485,132	1,177,667	79.3	1,088,170	73.3
	2종 근린생활시설	13,760	422,324	319,236	75.6	302,960	71.7
	문화·집회시설	2,101	160,677	135,851	84.5	126,715	78.9
	종교시설	5,449	188,172	147,054	78.1	136,018	72.3
	판매시설	1,824	120,309	102,656	85.3	96,985	80.6
	의료시설	3,830	320,052	267,648	83.6	251,111	78.5
	교육연구시설	19,243	1,422,689	1,190,633	83.7	1,105,823	77.7
	노유자 시설	23,950	1,324,789	966,538	73.0	884,849	66.8
	수련시설	518	39,212	31,932	81.4	29,142	74.3
	운동시설	1,653	60,604	49,979	82.5	47,096	77.7
	업무시설	12,323	861,319	720,108	83.6	671,801	78.0
	숙박시설	3,623	204,736	162,601	79.4	152,955	74.7
	공장	7,027	327,578	224,206	68.4	210,509	64.3
	자동차관련시설	1,546	38,250	32,241	84.3	30,840	80.6
	방송통신시설	208	12,818	10,420	81.3	9,561	74.6
	교정시설	47	2,829	2,299	81.3	2,074	73.3
	묘지관련시설	138	6,589	5,023	76.2	4,603	69.9
	관광휴게시설	297	14,724	12,704	86.3	11,893	80.8
	장례식장	338	25,305	20,589	81.4	18,787	74.2
	공원	1,949	66,393	43,989	66.3	41,474	62.5
	공동주택	51,753	1,888,072	1,587,369	84.1	1,501,216	79.5
	기숙사	714	42,317	32,551	76.9	30,119	7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34,221,372,385.

-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87.9%, 울산 85.1%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세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6%, 울산 82.0%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각각 80.2%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 85.3%, 자동차관련시설 84.3%, 공동주택 84.1%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이 80.6%, 공동주택 79.5 %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5) 이동 편의시설 설치

〈표 12-1-8〉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8개 특별 · 광역시도 지역					9개 도지역			
		2021	2016	2017	2019	2021	증감율	2018	2020	2021	증감율
교통수단	버스차량	90.0	89.1	90.7	94.1	95.1	▲1.0	86.7	88.4	86.6	▽1.8
	철도차량	96.0	91.7	94.2	95.4	96.0	▲0.6	79.6	86.6	93.1	▲6.5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	98.9	93.8	93.3	98.6	98.9	▲0.3	98.6	98.6	98.9	▲0.3
	항공기	73.7	98.7	79.9	72.6	73.7	▲1.1	69.7	73.7	73.7	–
	여객선	37.8	17.6	52	30.5	37.8	▲7.3	34.3	35.4	38.4	▲3.0
	평균	79.3	78.2	82	78.3	80.3	▲2.0	73.8	76.5	78.1	▲1.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4.0	56.6	59.7	66	69.2	▲3.2	63.3	67.1	62.5	▽4.6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9.9	83.6	88.5	90.9	90.9	–	85.8	87.4	87.6	▲0.2
	철도역사	82.5	78.8	81.1	86.5	88.4	▲1.9	84.1	85.2	81.2	▽4.0
	공항여객터미널	86.8	82.9	80	83.1	86.0	▲2.9	84.3	88.3	88.2	▽0.1
	여객선터미널	82.2	71.3	87.4	87.8	88.3	▲0.5	81.8	81.2	80.6	▽0.6
	버스정류장	45.4	44.4	52.6	56.9	57.1	▲0.2	32.8	34.6	34.9	▲0.3
	평균	75.1	69.3	74.9	78.5	88.0	▲9.5	72.0	74.0	72.5	▽1.5
보행 환경		77.6	72	78	81.3	84.1	▲2.8	64.2	65.9	69.9	▲4.0
전체 평균		77.3	73.1	78.3	79.4	81.5	▲2.1	70.2	72.1	73.5	▽1.4

주: 1) 2016년(전국)의 기준적합설치율은 2019년(8개 특별·광역시) 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재산정한 수치임
2) 2018년의 기준적합설치율은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서비스 제공" 수치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3) 2019년(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도지역)
4) 2021년(8개 특별,광역시 및 9개 도지역)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 89..
2)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 91.
3)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 54.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전체 평균 기준 적합률은 77.3%임
- 2021년 기준으로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79.3%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 98.9%, 철도차량 96.0% 순임
- 2021년 기준으로 여객시설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평균 75.1%이며,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가 89.9%, 공항여객터미널 86.8% 순임

〈표 12-1-9〉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단위: %)

구분				버스	걸어서 (또는 휠체어 이용)	자가용	장애인 택시	지하철	특별교통 수단 (특장차)	택시	무료셔틀 버스	기타
지역 내	전체			53.7	14.7	13.4	8.3	3.1	2.5	2.1	2.0	0.2
	비교통약자			58.7	15.8	11.6	11.2	0.1	1.8	0.3	0.2	0.3
	교통약자	전체		51.6	14.2	14.2	7.0	4.4	2.8	2.9	2.7	0.1
		장애인		40.4	13.1	13.9	6.0	10.7	2.1	7.1	6.7	0.0
			지체	38.9	15.4	12.3	7.0	8.1	0.9	11.9	5.5	0.0
			시각	34.6	7.2	13.5	4.3	20.2	5.3	2.4	12.5	0.0
			청각	50.8	14.1	18.6	5.1	6.2	1.7	0.6	2.8	0.0
		임산부		60.7	13.3	8.6	12.9	0.0	4.5	0.0	0.0	0.0
		고령자		58.2	15.8	17.3	5.1	0.4	2.6	0.1	0.1	0.4

구분				승용자	고속 (시외) 버스	기차	장애인 택시	비행기	택시	지자체 운영 특별교통 수단	여객선	기타
지역 간	전체			65.7	16.5	9.3	2.4	1.5	1.6	0.8	0.3	1.9
	비교통약자			64.7	18.9	10.7	0.3	0.0	2.2	0.7	0.5	2.1
	교통약자	전체		66.2	15.5	8.7	3.3	2.1	1.4	0.8	0.2	1.8
		장애인		63.0	10.7	8.1	8.1	5.3	0.8	0.9	0.0	3.3
			지체	59.8	10.6	8.7	5.7	8.7	0.7	0.5	0.0	5.2
			시각	67.7	7.1	5.6	14.1	2.0	1.0	1.5	0.0	1.0
			청각	65.5	14.9	9.2	6.9	0.6	0.6	1.1	0.0	1.1
		임산부		87.9	7.4	3.2	0.0	0.0	0.7	0.0	0.2	0.5
		고령자		57.9	24.7	12.3	0.1	0.1	2.4	1.2	0.4	1.0

자료: 2) 국토교통부. (2022)「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부록-」 p. 371

- 지역 내 이동 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1.6%로 가장 높고, 걸어서/휠체어와 자가용이 14.2% 순임
  -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이동에서 버스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자가용 13.9%, 걸어서/휠체어가 13.1%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 모두 지역내 이동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의 경우 걸어서/휠체아가 15.4%, 시각장애의 경우 지하철이 20.2%, 청각장애는 자가용이 18.6%순으로 나타남
- 지역 간 이동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6.2%로 가장 높고, 고속(시외)버스 15.5%, 기차 8.7%순임
  - 장애인 또한 승용차의 이용비율이 63.0%로 가장 높고, 고속(시외)버스 10.7%, 기차와 장애인택시가 8.1%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0.6%와 14.9%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의 이용비율이 14.1% 순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2-1-10〉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대,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8,038	23.4	9,016	26.2	9,840	27.8	10,828	30.6
서울특별시	3,332	45.0	3,945	53.3	4,272	57.8	4,412	59.7
부산광역시	557	22.1	638	25.3	687	27.3	728	28.9
대구광역시	526	34.6	546	33.8	565	34.9	608	37.5
인천광역시	423	17.9	469	19.9	528	22.7	580	26.3
광주광역시	213	20.5	215	20.6	261	25	297	29.7
대전광역시	279	27.5	289	28.4	318	31.3	339	33.4
울산광역시	96	11.6	101	12.1	104	12.3	103	12.1
세종특별자치시	54	23.0	66	23.2	68	27.9	100	37.3
경기도	1,343	12.7	1,422	13.4	1,608	14.1	2,112	19.2
강원도	193	34.8	187	34.3	187	36.1	203	39.7
충청북도	122	20.8	131	20.6	128	20.1	137	21.5
충청남도	61	7.0	74	9.2	88	10	89	9.9
전라북도	182	22.0	186	22.4	195	23.5	187	22.9
전라남도	87	12.1	97	13.4	101	11.5	124	16.8
경상북도	164	13.9	177	15	196	16.2	222	17.3
경상남도	318	18.7	370	21.6	406	23.6	439	25.2
제주특별자치도	88	22.6	103	26.5	128	32.9	148	17.8

주: 1) 2021년 12월 기준임
2)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3) 실제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국토교통부.(2021).「2020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p.195.
2) 국토교통부(2022).「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p. 269.

– 2021년 저상버스는 총 10,828대로 2019년 대비 824대가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은 또한 2020년 27.8%에서 2021년 30.6%로 향상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59.7%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9.1%, 대구광역시 97.5%, 세종시 37.3%순임

〈표 12-1-11〉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단위: 명, 대, %)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2013		2,780	1,752	63.0
2014		2,692	2,298	85.4
2015		2726	2601	95.4
2016		2,731	2,820	103.3
2017		2,327	2,932	126
2018		2,699	3,187	118.1
2019		4,697	3,457	73.6
2020		4,694	3,914	83.4
2021		4,738	4,074	86.0
소계		1,888	1,469	77.8
8개 특별 광역시	서울	725	622	85.8
	부산	319	206	64.6
	대구	216	163	75.5
	인천	254	169	66.5
	광주	128	116	90.6
	대전	134	96	71.6
	울산	90	76	84.4
	세종	22	21	95.5
소계		2,850	2,605	91.4
9개도	경기	1027	1157	112.7
	강원	195	149	76.4
	충북	180	116	64.4
	충남	236	163	69.1
	전북	236	192	81.4
	전남	247	179	72.5
	경북	317	214	67.5
	경남	344	369	107.3
	제주	68	66	97.1

주: 1) 2021년 12월 기준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법정기준대수

· 법정기준대수 산정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하였음

· 제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①항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정의)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 276.

- 2021년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074대로 법정대수 4,738대 대비 86.0%의 보급률로 나타남
- 8개 특별 · 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77.8%(1,469대)로 광주가 90.6%로 가장 높고, 세종이 95.5%, 서울 85.8% 순임
- 9개 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91.4%(2,605대)로 경기도가 112.7%, 경남이 107.3%로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그 외로 제주 97.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64.4%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가장 낮음

2) 정보 접근성

(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단위: %)

구분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정보격차지수)	디지털정보접근지수	디지털정보역량지수	디지털정보활용지수
2014	60.2	79.9	45.0	59.7
2015	62.5	83.5	47.0	62.4
2016	65.4	88.1	49.8	64.6
2017	70.0	91.6	57.7	71.5
2018	74.6	92.0	66.9	73.6
2019	75.2	92.6	67.8	74.0
2020	81.3	95.4	74.2	81.4
2021	81.7	95.6	74.9	81.5

주: 1)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 + 디지털정보역량지수(0.4) + 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2)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3)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긱 년도).「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 지수는 2014년이후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수준(100)과 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격차가 가장 적은 지수는 디지털 정보접근 지수로 95.6%이며, 디지털 역량지수는 74.9%로 가장 낮음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인터넷 이용률	91.8	78.3	▽13.5	91.9	80.3	▽11.6	93.0	82.9	▽10.1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2.5	91.4	▽1.1	91.9	92.2	0.3	89.7	86.3	▽3.4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1.2	92.0	0.8	91.2	91.2	–	89.0	85.3	▽3.7
생활서비스 이용률	88.7	84.3	▽4.4	90.3	87.5	▽2.8	88.3	81.8	▽6.5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63.0	41.7	▽21.3	66.3	53.9	▽12.4	61.8	46.6	▽15.2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82.5	67.5	▽15.0	75.9	67.9	▽8.0	73.3	61.1	▽12.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36.7	38.9	2.2	45.5	50.4	4.9	44.2	43.2	▽1.0
온라인 경제활동률	59.2	39.0	▽20.2	54.3	46.5	▽7.8	63.3	48.6	▽14.7

주: 1)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2) 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기타주변기기 중 하나) 보유율
3)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4)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5)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6)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7)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 (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8)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 (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10)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각 년도).「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2021년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5.3%, 생활서비스 이용률 81.8%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2020년도에 비하여 격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음
- 영역별로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이며(15.2%p), 온라인 경제활동률,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정보 접근성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단위: 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전체	53.7	60.7	60.8	0.1
도매 및 소매업	57.9	55.3	58.8	3.5
숙박 및 음식점업	59.2	53.6	63.4	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8	63.0	60.2	▽2.8
금융 및 보험업	60.7	71.5	69.5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8.7	60.8	52.6	▽8.2
교육 서비스업	58.2	62.9	64.4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6	59.3	57.5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2	61.1	68.2	7.1

주: 1)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최신 전국 산업체 조사 산업 분류(대분류 8개) 및 종사자 규모(9개 구간) 기반 모집단 구성
2) 웹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조사가이드에 따라 2개 전문가 그룹이 교차 평가
3)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24개 항목 준수 조사
4) 2018년도와 동일기준 미 적용(2019년 이전 연도와 기준 차이가 있어 비교불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각 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2020년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8개 분야와 종사자 규모(9개 구간)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총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60.8점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2020년에 비해 평균 0.1점 증가하였음
-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6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8.2점), 교육 서비스업(64.4점), 숙박 및 음식점업(63.4점)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년도에 비하여 점수가 낮아진 분야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8.2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8점) 순임.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 ·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 ·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기관 · 기업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3) 사법 접근성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96.10. 1. -'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민사	건	29,422	2,987	2,692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1,968	2,233	1,951	1,979	1,179	1,223	82,894
	금액	5,921	785	645	1,072	1,143	1,101	1,009	1,062	1,084	841	430	547	524	488	316	347	17,315
형사	건	4,356	516	317	461	384	359	362	393	343	279	187	166	80	64	10	7	8,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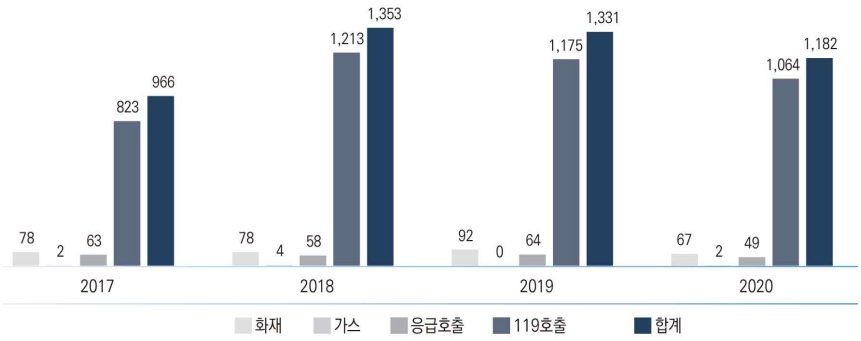
주: 1)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자부담)
2) 대상자 증빙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3) 무료법률구조 범위: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무료는 1-6급),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4)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증빙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 명세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신체감정서,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기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2022. 8. 검색) 법률정보>전문자료실>법률구조실적>대상자별 상세실적

- 2021년 민사 등의 건수는 1,223건이며 금액은 34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2021년 형사 등의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 감소함

13. 재난 및 안전

[그림 2-13-1] 응급출동 현황 - 연도별



- 응급출동 현황은 2020년 1,18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1,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67건, 응급호출 49건 순으로 나타남

1) 장애인 응급안전망

(1) 응급 출동 실적

〈표 13-1-1〉 응급 출동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응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호출	119호출
2013년		25	2	-	7	16
2014년		339	53	-	99	187
2015년		509	28	1	69	411
2016년		448	67	7	66	308
2017년		966	78	2	63	823
2018년		1,353	78	4	58	1,213
2019년		1,331	92	-	64	1,175
2020년		1,192	67	2	32	1,091
2021년	계	1,281	47	-	20	1,214
	1월	78	8	-	3	67
	2월	80	1	-	0	79
	3월	112	3	-	1	108
	4월	114	5	-	4	105
	5월	93	2	-	3	88
	6월	101	3	-	0	98
	7월	109	0	-	1	108
	8월	122	1	-	2	119
	9월	140	5	-	3	132
	10월	124	9	-	2	113
	11월	92	5	-	1	86
	12월	116	5	-	0	1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응급출동 현황은 2021년 1,28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응급상황별로 살펴보면 119호출이 1,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47건, 응급호출 20건 순으로 나타남

2) 장애인 안전시설

(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구분	2008년도					2013년도					2018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295,558	197,551	66.8	181,197	61.3
유도 및 안내 설비	5,612	1,389	24.8	896	16.0	16,237	8,523	52.5	7,720	47.5	116,670	67,068	57.5	63,334	54.3
경보 및 피난 설비	5,612	3,824	68.1	1,339	23.9	32,564	25,522	78.4	19,840	60.9	97,673	79,105	81.0	70,247	71.9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17,770	9,137	51.4	5,263	29.6	28,508	9,032	31.7	7,459	26.2	81,215	51,378	63.3	47,616	58.6
승강기	173,763	152,065	87.5	138,852	79.9	73,350	70,813	96.5	68,211	93.0	-	-	-	-	-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승강기 설치현황은 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20.

-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은 2008년 49.5%에서 2013년 55.7%, 2018년 66.8%로 증가하였음. 적정 설치율 또한 2008년 25.9%에서 2013년 45.3%, 2018년 61.3%로 증가하였음
  -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은 81.0%로 가장 높으며 접근로 점자블록 63.3%, 유도 및 안내설비 57.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
-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았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10,641	67,047	55.3	63,313	52.4	97,663	79,095	75.9	55,915	66.5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7,285	9,028	52.2	8,556	49.6	26,274	17,000	64.7	14	54.6
	민간시설	93,356	58,019	58.4	54,757	55.1	71,389	62,095	87.0	55,901	78.3
	계	109,077	66,588	52.6	63,001	49.8	97,673	79,105	78.5	70,247	68.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	–	–	–	–	19,948	11,393	57.0	9,271	47.0
	2종 근린생활시설	–	–	–	–	–	128	108	84.4	84	65.6
	문화 및 집회시설	3,354	1,544	46.0	1,461	43.6	4,159	3,724	89.5	3,362	80.8
	종교시설	–	–	–	–	–	10,685	8,486	79.4	7,432	69.6
	판매시설	–	–	–	–	–	3,613	3,179	88.0	2,888	79.9
	의료시설	19,865	9,403	47.3	8,877	44.7	7,618	6,665	87.5	6,061	79.6
	교육연구시설	58,149	41,870	72.0	39,598	68.1	31,267	28,025	89.6	25,472	81.5
	노유자시설	10,395	4,722	45.4	4,488	43.2	4,226	3,608	85.4	3,232	76.5
	수련시설	–	–	–	–	–	1,000	844	84.4	689	68.9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17,314	9,049	52.3	8,577	49.5	6,754	5,855	86.7	5,232	77.5
	숙박시설	–	–	–	–	–	7,190	6,239	86.8	5,657	78.7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413	369	89.3	325	78.7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672	610	90.8	542	80.7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p.283.359.

- 2018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
  -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은 교육연구시설 72.0%, 업무시설 52.3%, 문화 및 집회시설 46.0%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 설비의 설치율은 장례식장 90.8%, 교육연구시설 89.6%, 문화 및 집회시설 89.5% 순으로 높음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79.4%, 의료시설 71.8%, 숙박시설 67.6% 순으로 높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점자블록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81,203	51,366	63.6	47,604	58.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28,540	18,455	64.7	16,790	58.8
	민간시설	52,663	32,911	62.5	30,814	58.5
계		78,390	50,130	63.8	46,690	59.7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4,206	13,864	57.0	12,449	51.0
	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4,084	2,676	65.5	2,488	60.9
	종교시설	–	–	–	–	–
	판매시설	–	–	–	–	–
	의료시설	7,691	5,519	71.8	5,284	68.7
	교육연구시설	27,026	17,080	63.2	16,168	59.8
	노유자시설	4,534	2,939	64.8	2,753	60.7
	수련시설	–	–	–	–	–
	운동시설	–	–	–	–	–
	업무시설	7,942	6,302	79.4	5,906	74.4
	숙박시설	2,097	1,417	67.6	1,336	63.7
	공장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교정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장례식장	810	333	41.1	306	37.8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기타안전시설 4.1.3 용어의 정리'에 따라 '장애인등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을 의미함. 장애인 안전시설의 종류는 동 지침 4.2.2 종류에 따라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p.283.359.

– 2018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
-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은 교육연구시설 72.0%, 업무시설 52.3%, 문화 및 집회시설 46.0%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 설비의 설치율은 장례식장 90.8%, 교육연구시설 89.6%, 문화 및 집회시설 89.5% 순으로 높음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79.4%, 의료시설 71.8%, 숙박시설 67.6% 순으로 높음

3) 장애인 보호구역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06	8,346	8,346	-	-
2007	8,429	8,429	-	-
2008	9,096	8,999	97	-
2009	9,789	9,584	205	-
2010	13,472	13,207	265	-
2011	15,338	14,921	417	-
2012	15,730	15,136	566	28
2013	16,105	15,444	626	35
2014	16,537	15,799	697	41
2015	16,995	16,085	859	51
2016	17,531	16,355	1,107	69
2017	17,939	16,555	1,299	85
2018	18,494	16,765	1,639	90
2019	18,941	16,912	1,932	97
2020	19,269	16,896	2,287	86
서울	1,921	1,751	163	7
부산	988	901	86	1
대구	835	771	58	6
인천	825	737	82	6
광주	650	589	50	11
대전	590	474	114	2
울산	432	347	83	2
세종	123	118	5	-
경기	4,121	3,815	289	17
강원	827	757	69	1
충북	977	732	243	2
충남	1,616	1,051	553	12
전북	1,046	1,001	45	-
전남	1,118	1,045	72	1
경북	1,464	1,246	217	1
경남	1,287	1,217	70	-
제주	449	344	88	17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보호구역은 어린이(1995년), 노인(2008년), 장애인(2012년) 순으로 지정됨
3)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19.]'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2021).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pp.252-253

-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호구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 16,896개로 가장 많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86개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보호구역이 한 개도 없는 지역은 세종, 전북, 경남이며 경기와 제주가 17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 12개소 순임

4)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표 13-4-1〉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단위: 명,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	전체 인구수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7,483,944
	신고접수	19,956	21,980	21,551	19,146	21,379
	미해제	4	4	8	13	79
	비율	0.24	0.27	0.27	0.25	0.29
지적 · 자폐성 · 정신 장애인	전체 인구수	326,776	335,760	344,594	351,435	359,421
	신고접수	8,525	8,881	8,360	7,078	7,166
	미해제	2	7	15	10	33
	비율	2.61	2.65	2.43	2.01	1.99

주: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 아동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연령불문)를 포함함
2) 전체 인원수는 해당년도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총 인구수를 의미함
3) 비율은 전체 인구수 대비 신고접수 비율로, 내부연구진에서 산출함
4) 미해제 현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7,166건으로 2020년에 비해 88건 증가함
  - 실종된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의 미해제 건수는 2021년 33건임
  - 전체 인구 대비 실종 신고접수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인은 2021년 1.99%로 아동 0.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Ⅲ

국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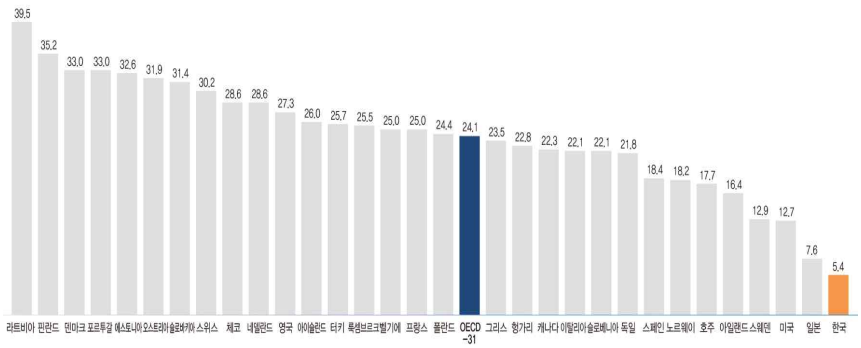
1. OECD
2. EU
3. 뉴질랜드
4. 독일
5. 일본

한국장애인개발원 KOR
www.kod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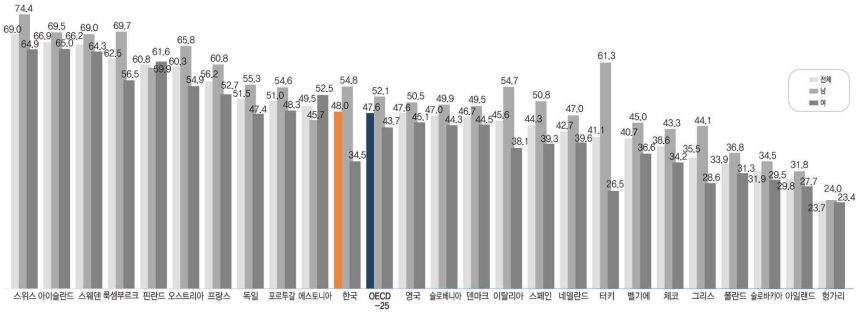
Ⅲ. 국외통계

1. OECD 회원국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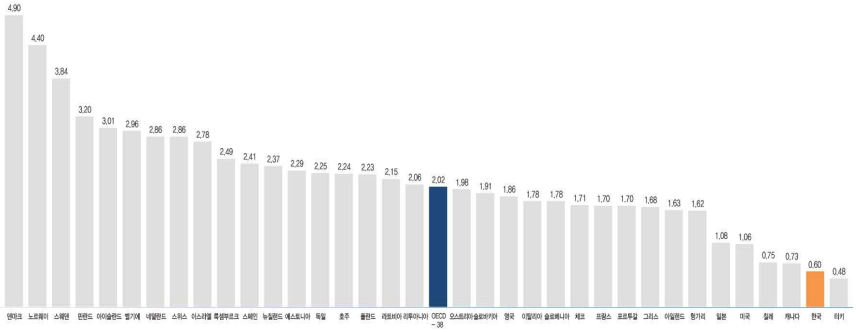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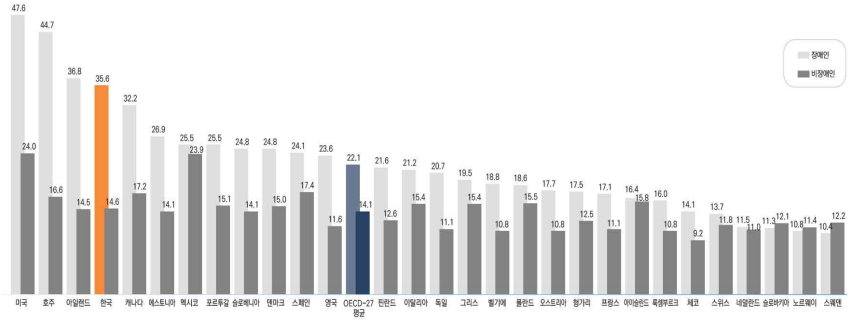


- 2021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4.3%이며, 한국 장애인 출현율(2017년 기준)은 5.39%임
  - 유럽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임. 한국 5.39%, 일본 7.6%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임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49.0% 이며, 남성 56.0%, 여성 34.4%임(2021년 기준)

[그림 3-1-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2017년)



[그림 3-1-4]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 2017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02%로 한국의 0.60%에 비해 약 3.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8%(2017년)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22.1%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하여 약 1.6배 높음.
  - 한국의 경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평균 22.1%보다 약 1.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1)

(단위: %)

구 분	전체(16세이상)			16-64세 이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벨기에	24.4	21.9	26.9	19.0	17.3	20.7
체코	24.8	22.9	26.5	15.7	15.1	16.2
덴마크	33.4	30.3	36.5	28.6	25.5	31.9
독일	24.6	23.2	26.0	17.0	16.3	17.7
에스토니아	33.5	30.3	36.3	24.9	24.1	25.6
아일랜드	19.2	18.6	19.8	15.3	15.3	15.4
그리스	23.4	21.9	24.8	10.4	10.4	10.4
스페인	28.0	25.0	30.8	21.7	20.3	23.2
프랑스	24.9	23.0	26.7	17.9	16.4	19.3
이탈리아[p]	22.3	19.9	24.5	12.6	12.3	13.0
라트비아	37.2	32.7	40.8	25.7	24.4	26.9
룩셈브르크	24.7	21.9	27.4	21.1	18.0	24.1
헝가리	22.8	19.8	25.5	14.6	13.5	15.6
네델란드	29.9	27.6	32.2	23.8	21.8	25.8
오스트리아	29.6	28.5	30.7	23.8	23.8	23.9
폴란드	24.4	22.6	26.0	16.0	16.1	16.0
포르투갈	32.2	26.9	36.7	22.1	19.1	24.9
슬로베니아	22.1	20.9	23.4	16.1	15.7	16.6
슬로바키아	32.2	29.1	35.1	21.9	20.8	23.1
핀란드	28.5	25.2	31.7	22.5	20.0	25.2
스웨덴	19.4	16.6	22.2	16.7	14.4	19.1
아이슬란드	26.0	20.0	32.3	23.4	17.6	29.6
노르웨이	20.0	15.7	24.5	18.4	14.5	22.5
스위스	28.6	25.7	31.5	24.1	21.1	27.0
영국	27.3	25.0	29.5	21.8	19.7	23.8
터키	23.5	19.7	27.3	17.9	15.3	20.6
미국	12.7(전연령)	12.55	12.82	10.3[주3)]	10.4[주3)]	10.16[주3)]
캐나다	22.3	20.2	24.3	18.8	16.9	20.6
한국	5.39(전연령)	6.0[주6)]	4.44[주6)]	–	–	–
일본	7.6	–	–	23.6[주7)]	–	–
호주	17.7	17.6	17.8	12.8	12.6	13.1
OECD-31	24.3	22.4	27.2	19.3	17.5	20.8

주: 1) OECD평균은 31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호주 : 활동 및 핵심활동제한(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및 참여제한(학교 또는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 있는 사람
- 미국 : 듣기, 보기, 집중 및 기억/의사결정(인지), 걷거나 계단오르기(보행), 옷입거나 목욕하기(자기관리), 병원 및 쇼핑(자립생활)의 어려움 등에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한국 :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등록장애인과 15개 법정장애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추가등록이 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함),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포함

- 캐나다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보기, 듣기, 걷거나 계단 사용(이동)/손 및 손가락 사용, 허리굽히기 및 물건집기 등, 학습, 발달, 인지, 기억, 통증, 정서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예상되어야 함)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의 빈도가 '때때로', '자주', '항상' 있으며, 일상생활의 제한의 난이도 정도가 '어려움', '할 수 없음'과 결합되어야 함)
- 일본 : 신체장애인(재가, 시설 포함-고령자 시설입소자 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포함)을 의미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율 연령 기준 및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연령은 16세 이상, 2021년 기준(2022.08.16.인출).
  • 단, 프랑스, 룩셈브르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2020년 자료 (2022.08.16.인출).
  • 아이슬란드: 2018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2022.08.16.인출).
- 미국: 전 연령 및 18-64세 2020년 (2022.08.16.인출).
- 한국: 전 연령 2017년
- 호주: 전연령 및 15-64세. 2018년 자료(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0),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한국, 호주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15-64세 장애출현율은 각 국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산출하였음
6) 한국의 경우, 성별 장애출현율은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외한, 재가장애인임
7) 일본: 18세이상-65세미만, 2016년
8) p: 잠정치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2-08-16)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0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4) 한국 -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2017
5) 미국 - U.S. Census Bureau,「American Community Survey」: (검색일 2022-08-16)
.https://data.census.gov/cedsci/table?q=disability&tid=ACSST5Y2020.S1810: 2020: ACS 5-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6) 일본 - 내각부,「2021 障碍者白書」, 2021.

– 2021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4.3%이며, 한국 장애인 출현율(2017년 기준)은 5.39%임
• 유럽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임. 한국 5.39%, 일본 7.6%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임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

–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재가+시설장애인 포함)은 5.39%로 2014년 5.59%, 2011년 5.61%에 비해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전체 연령 기준).
•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 증가율이 낮으며,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라 감소추이를 보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성별 장애인출현율은(재가장애인 기준) 남성 6.0%, 여성 4.4%임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출현율은 제시되지 않음(장애인실태조사, 2020)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비교 시 주의사항

–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별 장애정의 및 조사된 장애측면(손상 중심 또는 활동 및 참여제한 중심 등),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목적, 자연재해,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추세, 전쟁 및 폭력 사태, 인구학적 노인 증가, 경제 및 빈곤, 접근가능한 환경 부재, 교육 및 건강상의 기회 부족,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장애출현율 단순 비교 시 유의해야 함(WHO & World Bank, 2011; Al Ju'beh, 2017; Thompson, 2017).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2021년)

(단위: %)

구 분	65세 이상	16-24	25-34	35-44	45-64	65-74	75세 이상
벨기에	42.8	8.0	10.4	15.5	28.6	35.1	52.4
체코	53.0	6.2	8.1	11.6	24.4	44.4	66.3
덴마크	47.6	21.9	24.3	27.3	34.4	42.7	53.6
독일	43.8	6.6	7.9	11.6	25.6	35.1	53.0
에스토니아	59.7	14.0	17.9	20.4	34.1	51.6	69.2
아일랜드	36.2	9.9	11.3	12.1	21.7	30.8	43.6
그리스	59.1	2.4	4.3	6.9	16.7	40.5	80.2
스페인	49.1	10.2	14.4	18.6	29.5	38.9	60.0
프랑스	45.0	7.1	10.5	13.8	27.2	34.4	57.8
이탈리아[P]	47.8	4.5	7.2	9.8	18.0	36.1	59.2
라트비아	70.3	9.5	14.3	18.6	37.6	61.1	81.9
룩셈브르크	43.2	10.8	11.1	17.1	31.9	36.6	53.6
헝가리	51.0	5.1	5.6	10.2	22.3	43.0	63.9
네델란드	49.9	13.5	16.4	20.0	33.0	44.7	57.3
오스트리아	51.1	10.4	16.6	16.5	34.2	42.7	61.7
폴란드	50.7	6.3	7.8	11.9	24.7	41.8	65.1
포르투갈	60.8	8.9	12.9	18.5	31.6	52.6	69.5
슬로베니아	42.9	6.3	8.3	11.2	25.2	35.5	53.5
슬로바키아	69.6	6.7	9.8	16.4	36.0	63.3	81.2
핀란드	43.9	16.7	16.1	18.3	29.6	36.6	53.5
스웨덴	27.7	12.8	14.9	12.8	21.2	20.2	35.7
아이슬란드	38.5	19.9	19.7	20.9	28.7	32.9	45.9
노르웨이	25.8	11.4	14.2	17.7	23.6	22.9	29.2
스위스	45.1	16.6	18.5	20.4	31.3	37.9	53.3
영국	45.6	16.0	16.2	17.7	28.6	37.6	55.3
터키	61.6	5.8	8.9	15.8	32.3	55.0	72.9
미국	34.05	6.6[주4]			12.5	24.4	48.1
캐나다	37.8	13.1[주5]		15.3	24.3	32.0	47.4
호주	49.7	9.3[주5]	7.2	9.9	19.8	39.1	63.7
OECD-30(28[주2])	47.9	10.3	12.4	15.6	27.8	40.5	59.0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30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세부 연령별 평균은 미국, 캐나다는 제외한 27개국 단순 평균함

3) (P)는 잠정치를 의미함

4) 미국: 18-34세
U.S. Census Bureau,「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data.census.gov/cedsci/table?q=disability&tid=ACSST5Y2020.S1810: 2020: ACS 5-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5) 캐나다: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 호주: 15-24세-2018년 자료(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0),
- 유럽국가 : 연령은 16세 이상, 2021년 기준(2022.8.16.인출).
  • 단, 프랑스, 룩셈브르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2020년 자료(2022.08.16.인출).
  • 아이슬란드: 2018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 미국, 한국, 일본 : 전 연령, 미국 2020년, 한국 2017년, 일본 2017년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한국, 호주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15-64세, 65세 이상의 장애출현율은 각 국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재산출하였음

6) 한국의 경우, 성별 장애출현율은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외한, 재가장애인임. 2017년 기준. 장애인실태조사 2017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2-08-18)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0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4) 미국 - U.S. Census Bureau,「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data.census.gov/cedsci/table?q=disability&tid=ACSST5Y2020.S1810: 2020: ACS 5-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 OECD 국가(30개 국가)의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16-24세 10.3%, 25-34세 12.4%, 35-44세 15.6%, 45-64세 27.8%, 65-74세 40.5%, 75세 이상 59.0%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음

한국 2017년 연령별 장애출현율

- 2017년 한국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9세 1.67%, 30-39세 1.70%, 40-49세 3.18%, 50-59세 6.36%, 60-69세 11.13%, 70세 이상 20.07%임(재가장애인 기준)(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미국, 캐나다, 호주 연령별 장애출현율

- 미국은 2019년 18-34세 6.7%, 35-64세 12.4%, 65-74세 24.1%, 75세 이상 47.1% 임
- 캐나다는 2017년 15-24세 13.1%, 25-44세 15.3%, 45-64세 24.3%, 65세-74세 32%, 75세 이상 47.4% 임
- 호주는 2018년 15-24세 9.3%, 25-34세 7.2%, 35-44세 9.9%, 45-64세 19.8%, 65-74세 39.1%, 75세 이상 63.7% 임

※ 참고자료

- 미국 : U.S. Census Bureau, 「2019 American Community Survey」
-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7, 2018
-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0

2) 교육

(1)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2021년): 16-64세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30.7	21.0	12.0
체코	18.1	17.6	9.3
덴마크	41.9	31.3	25.9
독일	21.6	19.0	10.5
에스토니아	32.1	26.4	19.0
아일랜드	30.8	13.1	10.0
그리스	17.1	8.6	7.9
스페인	27.6	21.1	16.0
프랑스	25.4	19.5	11.5
이탈리아	17.2	10.4	9.1
라트비아	24.9	29.7	20.1
리투아니아	21.1	27.6	13.8
룩셈브르크	33.0	21.9	13.3
헝가리	22.1	15.2	7.7
네델란드	33.8	26.4	16.8
오스트리아	31.6	26.3	13.0
폴란드	23.5	17.7	9.4
포르투갈	31.2	14.7	14.5
슬로베니아	24.9	17.7	9.5
슬로바키아	27.9	23.4	14.7
핀란드	31.1	24.0	16.2
스웨덴	20.6	17.7	13.4
아이슬란드	27.3	23.9	20.4
노르웨이	25.3	18.7	13.1
스위스	30.0	25.6	20.8
영국	34.8	22.4	17.0
터키	23.9	11.1	7.3
구분	무학·초등이하	중·고등	대학이상
한국(전연령)	37.6	48.0	14.4
OECD-27	27.4	21.4	13.8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4) * : 프랑스, 리투아니아, 룩셈브르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위스: 2020년 자료(2022-08-16 인출)
5) **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6) 한국 외: 16-64세 기준임
7) 한국: 2020년 자료(장애인실태조사 2020). 전체 장애 인구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0-08-17)

- OECD 국가의 2021년 근로가능연령대(16-64세) 학력 수준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ISCED 0-2) 졸업 인구 중 27.4%, 중등교육(ISCED levels 3~4)은 21.4%, 고등교육(ISCED levels 5~8)은 중 13.8%로 나타남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장애인 비율은 낮은 편임

OECD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청년장애인(16-29세) 교육수준별 인구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1년): 16-29세 이하

(단위: %)

구 분	low(ISCED 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10.0	8.2	5.6
체코	7.5	6.7	4.1
덴마크	26.6	23.0	20.1
독일	9.0	6.9	4.1
에스토니아	16.8	14.0	13.1
아일랜드	15.8	9.9	5.9
그리스	3.6	2.8	2.4
스페인	13.8	11.8	9.1
프랑스	11.6	6.7	7.0
이탈리아	4.8	4.7	4.8
라트비아	14.1	10.3	11.6
리투아니아	11.7	10.9	6.9
룩셈브르크	21.6	14.5	8.5
헝가리	8.2	3.7	3.4
네델란드	16.8	16.6	11.7
오스트리아	11.7	13.5	12.9
폴란드	10.1	7.0	4.1
포르투갈	15.1	8.6	7.3
슬로베니아	8.4	6.5	7.2
슬로바키아	7.0	6.8	4.6
핀란드	21.8	15.1	10.2
스웨덴	16.2	13.8	10.2
아이슬란드	23.0	20.0	16.2
노르웨이	14.9	11.5	9.2
스위스	19.0	17.8	14.1
영국	25.4	16.3	12.9
터키	8.8	5.7	3.6
OECD-26	13.3	10.2	8.8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16-29세 기준임
4)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5) * : 프랑스, 리투아니아, 룩셈브르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위스: 2020년 자료(2022-08-16 인출)
6) ** 아이슬란드, 영국: 2018년 자료
7) 한국 외: 16-64세 기준임
8) 한국: 2020년 자료(장애인실태조사 2020). 전체 장애 인구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1-08-30)

- OECD 국가의 2020sus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졸업 이하(ISCED levels 0-2)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13.3%, 중등 교육 10.2%, 고등교육 8.8%임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장애인 비율은 낮은 편임

OECD국가의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고용

(1) 고용률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40.7	45.0	36.6	66.4	71.7	61.0
체코	38.6	43.3	34.2	68.5	77.1	59.6
덴마크	46.7	49.5	44.5	78.1	79.8	76.3
독일	51.5	55.3	47.4	72.1	77.7	66.7
에스토니아	49.5	45.7	52.5	68.6	71.8	65.6
아일랜드	29.8	31.8	27.7	60.9	64.6	57.1
그리스	35.5	44.1	28.6	58.5	69.3	47.5
스페인	44.3	50.8	39.3	60.5	66.3	54.5
프랑스	56.2	60.8	52.7	66.1	71.1	60.9
이탈리아	45.6	54.7	38.1	58.9	69.6	48.2
룩셈부르크	62.5	69.7	56.5	64.9	72.1	57.0
헝가리	23.7	24.0	23.4	61.1	66.9	55.3
네델란드	42.7	47.0	39.6	80.1	84.3	75.7
오스트리아	60.3	65.8	54.9	75.6	81.2	70.1
폴란드	33.9	36.8	31.3	63.9	71.1	56.6
포르투갈	51.0	54.6	48.3	67.8	70.9	64.5
슬로베니아	47.0	49.9	44.3	68.4	71.4	65.3
슬로바키아	31.9	34.5	29.5	62.6	69.6	55.5
핀란드	60.8	59.9	61.6	73.2	75.4	70.9
스웨덴	66.2	69.0	64.3	75.7	77.4	73.8
영국	47.6	50.5	45.1	75.4	80.4	70.3
아이슬란드	66.9	69.5	65.0	84.0	83.7	84.3
스위스	69.0	74.4	64.9	81.6	87.3	75.4
터키	41.1	61.3	26.5	51.0	71.2	29.5
한국[주4)]	49.0	56.0	34.4	–	–	–
OECD-25	47.7	52.2	43.6	68.5	74.2	62.6

주: 1)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LFS(2011) 및 한국의 연령 기준은 15-64세임
3)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2011년에 조사된 LFS(2011)자료로 장애정의는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뻗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
- 한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이며, 동 조사에서의 장애는 2020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4)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임(2021년 기준)
5)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취업자 비율임

자료: 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1-08-31)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49.0% 이며, 남성 56.0%, 여성 34.4%임(2021년 기준)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위스 69.0%, 아이슬란드 66.9%, 스웨덴 66.2% 등임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2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15-64세 이하)은 69.2%, 남성 77.6%, 여성 60.6% 임

(2)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65.2	34.8	76.0	24.0
체코	86.4	13.6	96.0	4.0
덴마크	62.7	37.3	75.6	24.4
독일	68.5	31.5	75.0	25.0
에스토니아	88.2	11.8	91.3	8.7
아일랜드	69.3	30.7	77.3	22.7
그리스	92.2	7.8	93.9	6.1
스페인	83.2	16.8	85.6	14.4
프랑스	75.6	24.4	83.7	16.3
이탈리아	81.3	18.7	84.8	15.2
룩셈부르크	76.7	22.6	83.1	16.7
헝가리	74.1	25.9	94.7	5.3
네델란드	39.3	60.7	52.6	47.4
오스트리아	77.0	23.0	77.0	23.0
폴란드	83.8	16.2	93.5	6.5
포르투갈	82.0	18.0	91.5	8.5
슬로베니아	85.1	14.9	91.8	8.2
슬로바키아	87.3	12.7	96.4	3.6
핀란드	83.0	16.9	86.7	13.2
스웨덴	65.0	35.0	77.2	22.8
영국	68.4	31.2	75.4	24.4
아이스란드	74.9	24.8	82.3	17.7
스위스	58.6	40.8	69.6	30.1
터키	79.9	20.1	89.9	10.1
한국[주4]	73.0	27.0	–	–
OECD-24	75.2	24.7	83.4	16.6

주: 1) 24개국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임(2021년 기준)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9-12-30)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75.3%로 비장애인 8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국가는 취업 장애인 중 100명중 24.6명이, 비장애인은 100명 중 약 16.6명이 평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함
- 2018년 한국 임금근로 장애인(15-64세) 중 전일제 근로는 74.0%, 시간제 근로는 26.0%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82.6	17.4	44.5	55.5
체코	92.2	7.8	79.4	20.6
덴마크	77.8	22.2	50.0	50.0
독일	84.8	15.2	48.5	51.5
에스토니아	95.0	-	83.4	16.6
아일랜드	81.0	19.0	55.5	44.5
그리스	95.5	4.5	88.1	11.9
스페인	94.4	5.6	72.1	27.9
프랑스	90.8	9.2	62.5	37.5
이탈리아	91.1	8.9	69.9	30.1
룩셈부르크	94.5	5.0	58.5	40.7
헝가리	77.0	23.0	71.5	28.5
네델란드	63.8	36.2	17.5	82.5
오스트리아	92.3	7.7	59.1	40.9
폴란드	85.5	14.5	82.1	17.9
포르투갈	87.0	13.0	77.7	22.3
슬로베니아	89.4	10.6	80.6	19.4
슬로바키아	90.6	9.4	84.0	16.0
핀란드	87.4	12.5	79.4	20.5
스웨덴	82.0	18.0	52.6	47.4
영국	83.6	15.9	53.9	45.7
아이스란드	91.1	-	62.4	37.6
스위스	83.0	16.6	36.8	62.4
터키	89.8	10.2	63.3	36.7
OECD-24	86.8	13.7	63.9	36.0

주: 1) 24개국의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19-12-30)

- OECD 국가 2011년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86.8%, 여성 장애인은 63.9%로 여성장애인의 전일제 비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은 평균 13.7%, 여성 장애인은 36.0%로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이 높음

(3) 실업률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10.1	9.0	11.4	6.1	6.1	6.1
체코	15.7	14.5	17.1	6.3	5.4	7.4
덴마크	10.8	11.3	10.4	7.1	7.5	6.7
독일	12.2	12.4	12.0	6.4	6.7	6.1
에스토니아	18.4	23.2	14.6	11.5	12.0	11.0
아일랜드	17.9	19.5	16.0	14.8	18.1	10.7
그리스	14.6	13.3	16.2	16.7	13.9	20.6
스페인	23.3	23.6	23.1	21.9	21.5	22.5
프랑스	12.3	10.5	13.8	8.7	8.2	9.3
이탈리아	8.1	8.6	7.5	8.0	7.0	9.3
룩셈부르크	4.9	3.6	6.1	5.3	4.2	6.7
헝가리	19.4	20.2	18.6	10.3	10.3	10.3
네델란드	8.6	10.4	7.0	4.1	4.0	4.1
오스트리아	6.0	6.1	5.9	3.8	3.6	4.0
폴란드	11.5	12.0	11.0	9.4	8.8	10.2
포르투갈	14.4	14.2	14.6	12.5	12.4	12.6
슬로베니아	9.9	10.7	9	7.5	7.7	7.3
슬로바키아	19.0	19.4	18.6	12.9	13.2	12.5
핀란드	9.1	10.8	7.6	7.5	8.1	6.9
스웨덴	9.6	9.9	9.3	7.3	7.4	7.2
영국	10.6	12.0	9.3	7.9	8.5	7.1
아이슬란드	9.8	12.2	7.8	8.2	9.1	7.2
스위스	6.1	6.1	6.1	3.8	3.5	4.2
터키	7.5	8.1	6.5	8.9	8.3	10.6
한국[주3)]	7.5	7.0	8.8	–	–	–
OECD-25	11.9	12.3	11.5	9.0	9.0	9.2

주: 1) 25개국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결과임(2021년 기준)
3) LFS(2011) 및 한국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장애인 실업률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실업자 비율임

자료: 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1-08-31)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11.9%로 비장애인 90.%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2020년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6.2% 이며, 남성 6.0%, 여성 6.5%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실업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페인 23.3%, 헝가리 19.4% 등임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0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15-64세 이하)은 4.7%, 남성 4.7%, 여성 4.6% 임.

4) 재정

(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1.73	2.36	2.56	2.27	2.33	2.39	2.44	2.50	2.56	2.54	2.35	2.24	–	–
오스트리아	2.60	2.83	2.70	2.41	2.33	2.30	2.28	2.26	2.22	2.14	2.05	1.98	–	–
벨기에	2.60	2.92	2.01	2.10	2.52	2.58	2.68	2.77	2.85	2.89	2.91	2.96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
칠레	0.87	0.89	0.80	0.70	0.81	0.76	0.74	0.72	0.69	0.73	0.74	0.75	0.74	0.75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
코스타리카	–	–	–	–	..	0.05	0.05	0.05	0.06	0.06	0.07	0.06	0.06	–
체코	2.16	2.22	2.42	2.20	1.97	1.91	1.83	1.83	1.75	1.73	1.74	1.71	–	–
덴마크	3.67	4.11	3.81	4.43	5.90	5.83	5.81	5.59	5.41	5.21	4.94	4.90	–	–
에스토니아	–	–	1.54	1.76	2.27	2.14	2.10	2.15	2.13	2.23	2.33	2.29	–	–
핀란드	4.15	4.91	3.66	3.64	3.87	3.76	3.80	3.81	3.78	3.59	3.40	3.20	–	–
프랑스	2.05	2.06	1.68	1.80	1.62	1.63	1.66	1.66	1.67	1.68	1.69	1.70	1.70	–
독일	1.95	2.23	2.11	1.95	1.98	1.93	1.98	2.03	2.04	2.08	2.11	2.25	–	–
그리스	1.19	0.79	1.43	1.42	1.83	1.98	1.97	1.85	1.85	1.87	1.76	1.68	–	–
헝가리	–	–	2.61	2.80	2.38	2.13	2.02	1.92	1.91	1.77	1.68	1.62	1.48	–
아이슬란드	1.27	1.79	2.16	2.59	2.42	2.56	2.67	2.73	2.85	2.70	2.67	3.01	–	–
아일랜드	1.72	1.89	1.33	1.66	2.61	2.49	2.35	2.35	2.18	1.67	1.67	1.63	–	–
이스라엘	–	1.83	2.10	2.45	2.52	2.49	2.51	2.49	2.54	2.59	2.64	2.78	2.92	2.94
이탈리아	1.89	1.49	1.36	1.54	1.73	1.65	1.80	1.83	1.85	1.83	1.80	1.78	–	–
일본	0.55	0.64	0.69	0.67	0.90	0.94	0.97	0.98	0.98	1.04	1.06	1.08	–	–
한국	0.24	0.30	0.32	0.52	0.50	0.52	0.55	0.54	0.53	0.56	0.56	0.60	0.61	–
라트비아	–	0.00	1.54	1.35	2.08	1.82	1.73	1.80	1.87	2.08	2.17	2.15	–	–
리투아니아	–	–	1.87	1.77	2.25	1.95	1.91	1.81	1.82	2.00	2.04	2.06	–	–
룩셈부르크	2.78	2.96	2.98	3.34	2.73	2.63	2.72	2.69	2.72	2.61	2.43	2.49	–	–
멕시코	0.02	0.05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3	0.05	0.05	0.05
네덜란드	5.87	4.67	3.30	3.31	3.24	3.18	3.19	3.07	2.95	3.38	3.33	2.86	–	–
뉴질랜드	2.79	2.61	2.61	2.77	2.57	2.47	2.44	2.51	2.52	2.51	2.45	2.37	2.37	–
노르웨이	4.63	4.56	4.56	4.30	4.18	3.80	3.72	3.73	3.84	4.32	4.51	4.40	–	–
폴란드	3.28	5.54	3.45	2.90	2.46	2.39	2.36	2.40	2.34	2.35	2.33	2.23	–	–
포르투갈	2.30	2.31	2.24	2.11	1.93	1.94	1.80	1.90	1.81	1.78	1.73	1.70	–	–
슬로바키아	–	1.96	2.19	1.42	1.80	1.81	1.86	1.86	1.85	1.82	1.87	1.91	–	–
슬로베니아	–	–	2.59	2.37	2.26	2.19	2.12	2.07	1.99	1.95	1.88	1.78	–	–
스페인	2.22	2.41	2.32	2.49	2.50	2.48	2.41	2.42	2.43	2.40	2.41	2.41	–	–
스웨덴	5.17	4.68	4.81	5.23	4.14	4.02	4.11	4.19	4.14	4.07	3.95	3.84	–	–
스위스	2.42	2.92	2.93	3.26	2.85	2.91	2.80	2.90	2.71	2.77	2.80	2.86	2.82	–
터키	0.17	0.18	0.21	0.21	0.37	0.41	0.45	0.45	0.45	0.43	0.52	0.48	–	–
영국	2.00	2.52	2.20	2.09	1.97	1.98	1.97	1.93	1.81	1.83	1.82	1.86	–	–
미국	0.97	0.97	0.89	1.01	1.21	1.21	1.23	1.21	1.18	1.14	1.10	1.06	1.01	–
OECD – Total	2.18	2.25	2.07	2.09	2.15	2.10	2.09	2.09	2.07	2.07	2.05	2.02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이며,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의미함
2) 현금급여(cash benefits) 〈표 14-4-2〉 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표 14-4-3〉 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7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02%로 한국의 0.60%에 비해 약 3.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8%(2017년)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3.84%, 노르웨이 4.40% 수준임(2017년)

OECD 사회지출 데이타베이스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복지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장애인관련 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현금급여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되며,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2)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1.71	2.01	2.06	1.83	1.94	1.99	2.02	2.08	2.11	2.06	1.95	1.90	–	–
오스트리아	2.39	2.60	2.43	2.08	1.88	1.86	1.83	1.80	1.74	1.66	1.57	1.50	–	–
벨기에	2.55	2.12	1.67	1.70	2.05	2.09	2.16	2.26	2.33	2.34	2.36	2.42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
칠레	0.70	0.70	0.79	0.70	0.80	0.76	0.74	0.71	0.69	0.72	0.74	0.74	0.73	0.74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
코스타리카	–	–	–	–	–	0.05	0.05	0.05	0.06	0.06	0.06	0.06	0.06	–
체코	2.16	2.07	2.23	2.04	1.88	1.81	1.73	1.73	1.65	1.65	1.65	1.61	–	–
덴마크	2.96	3.23	2.77	3.19	3.59	3.50	3.45	3.30	3.16	3.02	2.81	2.78	–	–
에스토니아	–	–	1.39	1.61	1.94	1.85	1.83	1.87	1.85	1.94	1.99	1.97	–	–
핀란드	3.75	4.19	2.94	2.79	2.82	2.66	2.63	2.59	2.50	2.37	2.20	2.07	–	–
프랑스	1.66	1.62	1.54	1.63	1.54	1.55	1.57	1.58	1.59	1.60	1.61	1.62	1.62	–
독일	1.60	1.61	1.44	1.27	1.24	1.20	1.23	1.26	1.25	1.26	1.27	1.28	–	–
그리스	1.15	0.77	1.40	1.40	1.82	1.96	1.95	1.83	1.83	1.85	1.75	1.67	–	–
헝가리	–	–	2.37	2.57	2.16	1.93	1.82	1.71	1.61	1.54	1.49	1.44	1.30	–
아이슬란드	0.76	1.14	1.33	1.60	1.72	1.85	1.87	1.90	1.95	1.84	1.94	2.22	–	–
아일랜드	1.68	1.83	1.31	1.62	2.54	2.42	2.29	2.30	2.14	1.63	1.63	1.59	–	–
이스라엘	–	1.39	1.67	1.96	2.07	2.05	2.06	2.03	2.06	2.08	2.11	2.14	2.27	2.27
이탈리아	1.85	1.44	1.29	1.46	1.62	1.56	1.71	1.74	1.76	1.75	1.72	1.71	–	–
일본	0.49	0.53	0.53	0.55	0.62	0.64	0.64	0.63	0.61	0.62	0.62	0.62	–	–
한국	0.22	0.24	0.23	0.34	0.33	0.33	0.34	0.34	0.34	0.34	0.33	0.33	0.34	–
라트비아	–	0.00	1.23	1.13	1.80	1.54	1.45	1.51	1.55	1.71	1.79	1.80	–	–
리투아니아	–	–	1.48	1.50	1.98	1.70	1.68	1.60	1.57	1.73	1.78	1.80	–	–
룩셈부르크	2.59	2.75	2.43	2.37	1.64	1.55	1.60	1.54	1.59	1.53	1.45	1.41	–	–
멕시코	0.02	0.04	0.06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3	0.05	0.05	0.05
네덜란드	5.87	4.51	3.10	3.14	2.90	2.86	2.88	2.79	2.63	2.56	2.52	2.07	–	–
뉴질랜드	2.70	2.61	2.61	2.77	2.52	2.42	2.39	2.47	2.49	2.48	2.42	2.34	2.34	–
노르웨이	3.93	3.55	3.71	3.54	3.63	3.29	3.22	3.20	3.29	3.75	3.91	3.80	–	–
폴란드	3.07	5.27	3.42	2.71	2.28	2.21	2.17	2.21	2.15	2.15	2.14	2.09	–	–
포르투갈	2.25	2.26	2.20	2.06	1.88	1.92	1.77	1.88	1.79	1.77	1.71	1.68	–	–
슬로바키아	–	1.84	2.03	1.25	1.61	1.61	1.66	1.65	1.63	1.61	1.64	1.68	–	–
슬로베니아	–	–	2.35	2.16	2.01	1.94	1.83	1.78	1.68	1.66	1.62	1.50	–	–
스페인	2.17	2.35	2.20	2.29	2.25	2.21	2.16	2.18	2.20	2.17	2.20	2.20	–	–
스웨덴	4.75	3.45	3.38	3.47	2.21	2.05	2.06	2.07	2.04	2.00	1.94	1.81	–	–
스위스	2.03	2.31	2.27	2.48	2.25	2.30	2.19	2.29	2.11	2.14	2.15	2.22	2.17	–
터키	0.12	0.12	0.23	0.27	0.28	0.27	0.29	0.29	0.27	0.27	0.29	0.26	–	–
영국	1.81	2.26	1.95	1.73	1.52	1.50	1.49	1.46	1.50	1.51	1.51	1.55	–	–
미국	0.97	0.97	0.89	1.01	1.21	1.21	1.23	1.21	1.18	1.14	1.10	1.06	1.01	–
OECD - Total	2.03	1.95	1.77	1.75	1.76	1.70	1.68	1.68	1.65	1.64	1.63	1.60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장애인복지 관련 현금급여의 비중은 1990년대 2.0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1.60%로 나타남
  - 한국은 2017년 0.33%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60%의 약 1/5 수준임
  - 한국은 1990년 0.22%에서 2005년에 약 0.34%로 증가하여, 2018년 0.34%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0.02	0.36	0.50	0.44	0.39	0.40	0.42	0.43	0.45	0.48	0.40	0.34	–	–
오스트리아	0.21	0.23	0.27	0.33	0.45	0.45	0.45	0.46	0.48	0.48	0.48	0.48	–	–
벨기에	0.05	0.80	0.34	0.40	0.48	0.49	0.53	0.51	0.52	0.54	0.55	0.54	–	–
캐나다	–	–	–	–	–	–	–	–	–	–	–	–	–	–
칠레	0.17	0.19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콜롬비아	–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0.00	0.00	0.00	0.00	0.00	0.00
체코	–	0.15	0.18	0.16	0.10	0.09	0.10	0.10	0.10	0.09	0.09	0.09	–	–
덴마크	0.71	0.88	1.04	1.24	2.30	2.32	2.36	2.29	2.25	2.19	2.13	2.13	–	–
에스토니아	–	–	0.15	0.15	0.33	0.29	0.27	0.28	0.28	0.30	0.34	0.32	–	–
핀란드	0.40	0.72	0.72	0.86	1.05	1.09	1.17	1.22	1.28	1.22	1.20	1.13	–	–
프랑스	0.38	0.43	0.15	0.17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9	–
독일	0.35	0.62	0.67	0.69	0.74	0.73	0.75	0.78	0.78	0.82	0.84	0.98	–	–
그리스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0.01	–	–
헝가리	–	–	0.24	0.23	0.22	0.20	0.21	0.21	0.31	0.23	0.20	0.19	0.18	–
아이슬란드	0.51	0.65	0.84	0.99	0.70	0.70	0.80	0.84	0.90	0.86	0.73	0.79	–	–
아일랜드	0.04	0.06	0.03	0.04	0.07	0.07	0.06	0.06	0.05	0.03	0.04	0.03	–	–
이스라엘	–	0.43	0.44	0.50	0.45	0.44	0.46	0.47	0.48	0.51	0.53	0.64	0.66	0.67
이탈리아	0.03	0.05	0.08	0.08	0.11	0.09	0.09	0.09	0.09	0.08	0.08	0.07	–	–
일본	0.06	0.11	0.15	0.12	0.27	0.30	0.34	0.36	0.37	0.42	0.44	0.46	–	–
한국	0.02	0.07	0.09	0.18	**0.17**	0.19	0.21	0.20	0.19	**0.21**	0.23	**0.27**	0.27	–
라트비아	–	–	0.31	0.22	0.28	0.28	0.28	0.29	0.33	0.36	0.37	0.35	–	–
리투아니아	–	–	0.39	0.27	0.27	0.25	0.23	0.21	0.25	0.27	0.26	0.25	–	–
룩셈부르크	0.19	0.22	0.55	0.98	1.08	1.08	1.12	1.15	1.12	1.08	0.98	1.08	–	–
멕시코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네덜란드	0.00	0.16	0.20	0.16	0.34	0.33	0.31	0.27	0.32	0.83	0.82	0.80	–	–
뉴질랜드	0.08	0.00	0.00	0.00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
노르웨이	0.70	1.01	0.85	0.76	0.55	0.51	0.49	0.53	0.55	0.57	0.60	0.60	–	–
폴란드	0.21	0.28	0.03	0.19	0.19	0.18	0.19	0.19	0.19	0.20	0.19	0.14	–	–
포르투갈	0.05	0.05	0.04	0.05	0.05	0.02	0.02	0.02	0.02	0.01	0.02	0.02	–	–
슬로바키아	–	0.12	0.16	0.17	0.19	0.20	0.20	0.21	0.22	0.21	0.22	0.23	–	–
슬로베니아	–	–	0.24	0.21	0.25	0.25	0.29	0.29	0.31	0.29	0.27	0.27	–	–
스페인	0.04	0.06	0.12	0.20	0.25	0.26	0.24	0.24	0.24	0.23	0.22	0.21	–	–
스웨덴	0.42	1.24	1.44	1.76	1.92	1.97	2.05	2.12	2.10	2.08	2.01	2.03	–	–
스위스	0.39	0.60	0.67	0.78	0.60	0.61	0.61	0.61	0.60	0.63	0.65	0.64	0.65	–
터키	0.05	0.07	0.01	0.01	0.15	0.20	0.23	0.23	0.23	0.22	0.23	0.22	–	–
영국	0.19	0.25	0.25	0.36	0.45	0.48	0.48	0.47	0.31	0.31	0.31	0.31	–	–
미국	–	–	–	–	–	–	–	–	–	–	–	–	–	–
OECD – Total	0.18	0.32	0.33	0.37	0.43	0.43	0.44	0.45	0.45	0.47	0.42	0.42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는 2017년 0.42%로 2014년 0.45%에 비해 0.03%p감소하였으며, 한국은 2017년 0.27%로 OECD 평균(0.42%)에 비하여 약 절반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10년 0.17% 2015년 0.21%로 약 0.04%p 증가하였으며, 2018년 0.27%로 증가함
※ 한국은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정책 대상자는 2급('13) → 3급('15)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음

(4)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0년)

(단위: %)

구분	201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4	1.41	–	0.53	–	0.01	0.39	–	0.00	0.39
오스트리아	1.88	1.36	0.13	–	0.21	0.19	0.45	0.30	0.05	0.11
벨기에	2.05	1.43	–	0.03	0.57	0.02	0.48	0.42	0.03	0.03
캐나다	0.88	0.38	0.43	–	0.06	–	–	–	–	–
칠레	0.80	0.53	0.01	0.01	0.25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
체코	1.88	1.23	0.01	0.08	0.47	0.11	0.10	0.07	0.00	0.03
덴마크	3.59	2.22	–	0.20	1.02	0.16	2.30	1.01	0.80	0.49
에스토니아	1.94	1.18	–	–	0.26	0.50	0.33	0.28	0.05	0.00
핀란드	2.82	1.95	0.15	0.08	0.47	0.18	1.05	0.36	0.29	0.40
프랑스	1.54	0.91	0.00	–	0.50	0.13	0.08	0.01	0.00	0.07
독일	1.24	0.08	0.07	0.02	0.30	0.77	0.74	0.50	0.22	0.03
그리스	1.82	1.26	–	–	0.21	0.34	0.02	–	0.01	0.01
헝가리	2.16	1.09	–	–	0.51	0.56	0.22	0.12	0.05	0.05
아이슬란드	1.72	1.67	–	–	0.03	0.01	0.70	0.46	0.01	0.24
아일랜드	2.54	1.10	–	–	1.06	0.38	0.07	–	–	0.07
이스라엘	2.07	1.48	0.29	–	–	0.30	0.45	0.01	0.17	0.26
이탈리아	1.62	0.59	–	–	0.17	0.86	0.11	0.05	0.01	0.04
일본	0.62	0.39	0.09	0.02	0.07	0.06	0.27	0.23	0.00	0.04
한국	0.33	0.11	0.12	0.06	–	0.04	0.17	0.01	0.00	0.16
라트비아	1.80	0.93	–	–	0.53	0.34	0.28	0.18	0.02	0.08
리투아니아	1.98	1.28	0.15	0.04	0.39	0.12	0.27	0.12	0.03	0.13
룩셈부르크	1.64	1.00	0.25	–	0.29	0.10	1.08	1.08	–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01	–	–	0.01
네덜란드	2.90	1.86	–	–	0.81	0.23	0.34	–	0.34	0.00
뉴질랜드	2.52	0.91	–	–	–	1.61	0.04	0.00	0.00	0.04
노르웨이	3.63	2.13	0.00	–	1.33	0.17	0.55	0.19	0.26	0.10
폴란드	2.28	1.15	0.04	–	0.71	0.38	0.19	0.17	0.02	–
포르투갈	1.88	1.56	–	–	0.30	0.02	0.05	0.00	0.04	0.01
슬로바키아	1.61	0.99	–	–	0.39	0.23	0.19	0.19	0.00	0.00
슬로베니아	2.01	0.77	0.00	0.00	0.97	0.27	0.25	0.19	0.06	0.00
스페인	2.25	1.24	–	0.90	0.00	0.12	0.25	0.15	0.08	0.03
스웨덴	2.21	1.51	0.10	0.00	0.61	0.00	1.92	1.45	0.15	0.32
스위스	2.25	1.03	0.20	0.27	0.63	0.11	0.60	0.48	0.08	0.04
터키	0.28	0.21	0.03	–	0.04	0.01	0.15	0.00	0.14	0.01
영국	1.52	1.36	0.00	–	0.13	0.03	0.45	0.24	0.02	0.20
미국	1.21	0.84	0.05	–	0.03	0.29	–	–	–	–
OECD-Total	1.76	1.09	0.11	0.15	0.41	0.25	0.43	0.28	0.0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0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6%로 장애연금 1.09% 기타상병보조금 0.41%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7%로 기타 현물급여 0.16%, 거주 돌봄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1년)

(단위: %)

구분	201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9	1.45	–	0.52	–	0.02	0.40	–	0.00	0.40
오스트리아	1.86	1.34	0.12	–	0.21	0.19	0.45	0.30	0.05	0.10
벨기에	2.09	1.46	–	0.02	0.60	0.02	0.49	0.43	0.03	0.03
캐나다	0.84	0.37	0.41	–	0.06	–	–	–	–	–
칠레	0.76	0.50	0.01	0.01	0.24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0.00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00	–	0.00	0.00
체코	1.81	1.20	0.01	0.08	0.42	0.11	0.09	0.06	0.00	0.03
덴마크	3.50	2.25	–	0.12	0.99	0.14	2.32	0.97	0.87	0.49
에스토니아	1.85	1.12	–	–	0.27	0.47	0.29	0.24	0.05	0.00
핀란드	2.66	1.82	0.14	0.08	0.46	0.16	1.09	0.37	0.29	0.43
프랑스	1.55	0.93	0.00	–	0.50	0.13	0.08	0.01	–	0.07
독일	1.20	0.08	0.06	0.02	0.31	0.73	0.73	0.49	0.22	0.02
그리스	1.96	1.36	–	–	0.21	0.40	0.02	–	0.01	0.01
헝가리	1.93	0.98	–	–	0.41	0.54	0.20	0.10	0.06	0.05
아이슬란드	1.85	1.81	–	–	0.03	0.01	0.70	0.60	0.01	0.09
아일랜드	2.42	1.05	–	–	0.99	0.38	0.07	–	–	0.07
이스라엘	2.05	1.45	0.29	–	–	0.32	0.44	0.01	0.16	0.27
이탈리아	1.56	0.55	–	–	0.17	0.84	0.09	0.04	0.02	0.04
일본	0.64	0.39	0.09	0.02	0.07	0.06	0.30	0.26	0.00	0.05
한국	0.33	0.11	0.13	0.05	–	0.04	0.19	0.02	0.01	0.17
라트비아	1.54	1.07	0.13	0.04	0.37	0.09	0.25	0.11	0.03	0.12
리투아니아	1.70	0.82	–	–	0.37	0.35	0.28	0.18	0.02	0.08
룩셈부르크	1.55	0.93	0.26	–	0.29	0.08	1.08	1.08	–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86	1.83	–	–	0.81	0.22	0.33	–	0.32	0.00
뉴질랜드	2.42	0.87	–	–	–	1.55	0.04	0.00	0.00	0.04
노르웨이	3.29	2.03	0.00	–	1.11	0.16	0.51	0.19	0.22	0.10
폴란드	2.21	1.08	0.03	–	0.69	0.42	0.18	0.16	0.02	–
포르투갈	1.92	1.59	–	–	0.31	0.02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1	0.99	–	–	0.39	0.23	0.20	0.20	0.00	0.00
슬로베니아	1.94	0.74	0.00	0.00	0.93	0.27	0.25	0.19	0.06	0.00
스페인	2.21	1.27	–	0.84	0.00	0.11	0.26	0.15	0.08	0.03
스웨덴	2.05	1.30	0.09	0.00	0.66	0.00	1.97	1.49	0.16	0.33
스위스	2.30	1.02	0.20	0.27	0.70	0.11	0.61	0.49	0.09	0.04
터키	0.27	0.20	0.02	–	0.04	0.01	0.20	0.19	0.00	0.00
영국	1.50	1.28	0.00	–	0.18	0.04	0.48	0.23	0.01	0.24
미국	1.21	0.84	0.05	–	0.04	0.29	–	–	–	–
OECD-Total	1.70	1.03	0.10	0.14	0.39	0.24	0.43	0.30	0.09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0%로 장애연금 1.03%, 기타상병보조금 0.39%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0%의 가장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2년)

(단위: %)

구분	201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2	1.48	–	0.52	–	0.02	0.42	–	0.00	0.42
오스트리아	1.83	1.30	0.12	–	0.21	0.20	0.45	0.30	0.05	0.10
벨기에	2.16	1.52	–	0.02	0.61	0.02	0.53	0.46	0.03	0.03
캐나다	0.82	0.36	0.40	–	0.07	–	–	–	–	–
칠레	0.74	0.48	0.01	0.01	0.2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0.00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00	–	0.00	0.00
체코	1.73	1.17	0.01	0.08	0.40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45	2.23	–	0.16	0.94	0.13	2.36	0.99	0.86	0.51
에스토니아	1.83	1.13	–	–	0.25	0.46	0.27	0.23	0.05	0.00
핀란드	2.63	1.79	0.15	0.08	0.45	0.16	1.17	0.39	0.30	0.48
프랑스	1.57	0.98	0.00	–	0.49	0.11	0.08	0.01	–	0.08
독일	1.23	0.08	0.06	0.02	0.33	0.74	0.75	0.51	0.22	0.02
그리스	1.95	1.33	–	–	0.19	0.42	0.02	–	0.01	0.01
헝가리	1.82	1.17	–	–	0.38	0.26	0.21	0.11	0.06	0.04
아이슬란드	1.87	1.83	–	–	0.04	0.01	0.80	0.66	0.01	0.14
아일랜드	2.29	1.02	–	–	0.90	0.37	0.06	–	–	0.06
이스라엘	2.06	1.47	0.30	–	–	0.29	0.46	0.01	0.17	0.27
이탈리아	1.71	0.69	–	–	0.17	0.85	0.09	0.04	0.02	0.03
일본	0.64	0.39	0.09	0.02	0.07	0.06	0.34	0.30	0.00	0.04
한국	0.34	0.11	0.14	0.05	–	0.04	0.21	0.01	0.01	0.19
라트비아	1.68	1.04	0.13	0.03	0.38	0.09	0.23	0.10	0.03	0.10
리투아니아	1.45	0.77	–	–	0.33	0.35	0.28	0.18	0.02	0.08
룩셈부르크	1.60	0.94	0.24	–	0.34	0.08	1.12	1.12	–	–
멕시코	0.04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88	1.81	–	–	0.85	0.22	0.31	–	0.31	0.00
뉴질랜드	2.39	0.85	–	–	–	1.55	0.04	0.00	0.00	0.04
노르웨이	3.22	2.03	0.00	–	1.04	0.16	0.49	0.19	0.21	0.10
폴란드	2.17	1.08	0.02	–	0.69	0.38	0.19	0.17	0.02	–
포르투갈	1.77	1.45	–	–	0.30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6	1.02	–	–	0.41	0.23	0.20	0.19	0.00	0.00
슬로베니아	1.83	0.62	0.00	0.00	0.96	0.26	0.29	0.21	0.08	0.00
스페인	2.16	1.34	–	0.72	0.00	0.10	0.24	0.14	0.08	0.03
스웨덴	2.06	1.24	0.08	0.00	0.74	0.00	2.05	1.56	0.15	0.33
스위스	2.19	0.99	0.19	0.28	0.62	0.11	0.61	0.48	0.09	0.04
터키	0.29	0.21	0.03	–	0.04	0.01	0.23	0.23	0.00	0.01
영국	1.49	1.20	0.00	–	0.26	0.03	0.48	0.23	0.01	0.23
미국	1.23	0.85	0.05	–	0.04	0.29	–	–	–	–
OECD-Total	1.68	1.03	0.10	0.14	0.39	0.23	0.44	0.31	0.0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8%로 장애연금 1.03%, 기타상병보조금 0.39%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4%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0%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4%,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1%로 기타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3년)

(단위: %)

구분	2013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족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8	1.54	–	0.52	–	0.02	0.43	–	0.00	0.43
오스트리아	1.80	1.26	0.12	–	0.22	0.19	0.46	0.31	0.05	0.10
벨기에	2.26	1.58	–	0.02	0.64	0.02	0.51	0.45	0.03	0.03
캐나다	0.79	0.35	0.38	–	0.07	–	–	–	–	–
칠레	0.71	0.47	0.01	0.01	0.22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0.00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00	–	0.00	0.00
체코	1.73	1.16	0.01	0.08	0.43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30	2.22	–	0.11	0.86	0.11	2.29	0.91	0.84	0.54
에스토니아	1.87	1.14	–	–	0.26	0.47	0.28	0.22	0.06	0.00
핀란드	2.59	1.76	0.15	0.08	0.44	0.15	1.22	0.41	0.30	0.50
프랑스	1.58	0.99	0.00	–	0.48	0.12	0.08	0.00	–	0.08
독일	1.26	0.08	0.06	0.02	0.34	0.76	0.78	0.54	0.21	0.02
그리스	1.83	1.25	–	–	0.17	0.41	0.02	–	0.01	0.01
헝가리	1.71	1.13	–	–	0.37	0.21	0.21	0.11	0.06	0.04
아이슬란드	1.90	1.85	–	–	0.04	0.01	0.84	0.70	0.01	0.13
아일랜드	2.30	1.08	–	–	0.83	0.39	0.06	–	–	0.06
이스라엘	2.03	1.43	0.30	–	–	0.30	0.47	0.01	0.17	0.29
이탈리아	1.74	0.70	–	–	0.16	0.88	0.09	0.04	0.01	0.03
일본	0.63	0.39	0.09	0.02	0.07	0.07	0.36	0.31	0.00	0.04
한국	0.34	0.12	0.13	0.05	–	0.04	0.20	0.01	0.01	0.19
라트비아	1.60	0.95	0.12	0.02	0.43	0.08	0.21	0.08	0.02	0.11
리투아니아	1.51	0.76	–	–	0.36	0.39	0.29	0.18	0.03	0.08
룩셈부르크	1.54	0.90	0.23	–	0.34	0.08	1.15	1.15	–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79	1.84	–	–	0.80	0.16	0.27	–	0.27	0.00
뉴질랜드	2.47	0.85	–	–	–	1.62	0.04	0.00	0.00	0.04
노르웨이	3.20	1.98	0.00	–	1.06	0.16	0.53	0.19	0.24	0.10
폴란드	2.21	1.07	0.02	–	0.74	0.39	0.19	0.17	0.02	–
포르투갈	1.88	1.57	–	–	0.28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5	1.04	–	–	0.37	0.24	0.21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78	0.59	0.00	0.00	0.96	0.24	0.29	0.21	0.08	0.00
스페인	2.18	1.40	–	0.69	0.00	0.10	0.24	0.14	0.08	0.02
스웨덴	2.07	1.17	0.08	0.00	0.82	0.00	2.12	1.62	0.17	0.34
스위스	2.29	0.97	0.18	0.27	0.76	0.10	0.61	0.48	0.10	0.04
터키	0.29	0.21	0.03	–	0.05	0.01	0.23	0.22	0.00	0.00
영국	1.46	1.05	0.00	–	0.38	0.03	0.47	0.22	0.02	0.23
미국	1.21	0.84	0.04	–	0.04	0.29	–	–	–	–
OECD-Total	1.68	1.02	0.10	0.13	0.39	0.23	0.45	0.31	0.0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3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8%로 장애연금 1.02% 기타상병보조금 0.39%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5%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0%로 기타 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4년)

(단위: %)

구분	2014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11	1.57	–	0.52	–	0.02	0.45	–	0.00	0.45
오스트리아	1.74	1.17	0.12	–	0.23	0.22	0.48	0.33	0.05	0.11
벨기에	2.33	1.62	–	0.02	0.67	0.02	0.52	0.47	0.01	0.04
캐나다	0.77	0.33	0.37	–	0.07	–	–	–	–	–
칠레	0.69	0.43	0.01	0.01	0.25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6	0.00	–	0.06	–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2	0.00	–	0.00	0.00
체코	1.65	1.09	0.01	0.08	0.42	0.06	0.10	0.07	0.00	0.03
덴마크	3.16	2.12	–	0.11	0.82	0.11	2.25	0.90	0.79	0.56
에스토니아	1.85	1.14	–	–	0.27	0.44	0.28	0.23	0.05	0.00
핀란드	2.50	1.70	0.15	0.07	0.44	0.14	1.28	0.43	0.31	0.54
프랑스	1.59	0.99	0.00	–	0.49	0.11	0.08	0.00	–	0.08
독일	1.25	0.08	0.06	0.02	0.35	0.75	0.78	0.55	0.21	0.02
그리스	1.83	1.22	–	–	0.17	0.44	0.02	–	0.01	0.01
헝가리	1.61	1.03	–	–	0.41	0.17	0.31	0.18	0.09	0.04
아이슬란드	1.95	1.89	–	–	0.04	0.02	0.90	0.77	0.00	0.13
아일랜드	2.14	1.02	–	–	0.75	0.37	0.05	–	–	0.05
이스라엘	2.06	1.42	0.31	–	–	0.33	0.48	0.01	0.17	0.30
이탈리아	1.76	0.70	–	–	0.16	0.91	0.09	0.04	0.02	0.03
일본	0.61	0.38	0.09	0.02	0.07	0.07	0.37	0.32	0.00	0.05
한국	0.34	0.12	0.12	0.05	–	0.05	0.19	0.01	0.00	0.18
라트비아	1.57	0.90	0.12	0.02	0.44	0.09	0.25	0.11	0.02	0.12
리투아니아	1.55	0.78	–	–	0.36	0.40	0.33	0.21	0.02	0.09
룩셈부르크	1.59	0.81	0.22	–	0.31	0.25	1.12	1.12	–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63	1.80	–	–	0.70	0.13	0.32	–	0.32	0.00
뉴질랜드	2.49	0.83	–	–	–	1.66	0.03	0.00	0.00	0.03
노르웨이	3.29	2.03	0.00	–	1.09	0.18	0.55	0.20	0.25	0.10
폴란드	2.15	1.03	0.02	–	0.69	0.41	0.19	0.18	0.02	–
포르투갈	1.79	1.47	–	–	0.29	0.03	0.02	0.00	0.00	0.01
슬로바키아	1.63	1.04	–	–	0.35	0.25	0.22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68	0.52	0.00	0.00	0.94	0.23	0.31	0.23	0.08	0.00
스페인	2.20	1.37	–	0.72	0.00	0.10	0.24	0.14	0.08	0.02
스웨덴	2.04	1.10	0.07	0.00	0.88	0.00	2.10	1.61	0.15	0.33
스위스	2.11	0.95	0.18	0.28	0.61	0.10	0.60	0.46	0.10	0.04
터키	0.27	0.21	0.00	–	0.05	0.01	0.23	0.23	0.00	0.01
영국	1.50	1.20	0.00	–	0.27	0.02	0.31	0.09	0.01	0.21
미국	1.18	0.82	0.04	–	0.03	0.28	–	–	–	–
OECD-Total	1.65	1.00	0.10	0.13	0.39	0.24	0.45	0.31	0.0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4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5%로 장애연금 1.0% 기타상병보조금 0.39%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5%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8%,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5년)

(단위: %)

구분	2015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족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6	1.55	–	0.50	–	0.02	0.48	–	0.00	0.48
오스트리아	1.66	1.04	0.12	–	0.23	0.27	0.48	0.33	0.05	0.11
벨기에	2.34	1.65	–	0.02	0.66	0.02	0.54	0.47	0.02	0.05
캐나다	0.76	0.32	0.36	–	0.07	–	–	–	–	–
칠레	0.72	0.42	0.01	0.01	0.29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0.00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2	0.00	–	0.00	0.00
체코	1.65	1.06	0.01	0.07	0.44	0.06	0.09	0.06	0.00	0.02
덴마크	3.02	2.03	–	0.13	0.77	0.10	2.19	0.88	0.73	0.58
에스토니아	1.94	1.18	–	–	0.30	0.46	0.30	0.25	0.05	0.00
핀란드	2.37	1.60	0.15	0.07	0.43	0.12	1.22	0.81	0.33	0.08
프랑스	1.60	0.99	0.00	–	0.49	0.11	0.08	0.00	–	0.08
독일	1.26	0.08	0.06	0.02	0.35	0.75	0.82	0.59	0.21	0.02
그리스	1.85	1.25	–	–	0.18	0.42	0.01	–	0.00	0.01
헝가리	1.54	0.92	–	–	0.41	0.21	0.23	0.10	0.10	0.03
아이슬란드	1.84	1.77	–	–	0.03	0.03	0.86	0.74	0.00	0.12
아일랜드	1.63	0.77	–	–	0.57	0.30	0.03	–	–	0.03
이스라엘	2.08	1.40	0.31	–	–	0.36	0.51	0.01	0.17	0.32
이탈리아	1.75	0.69	–	–	0.16	0.90	0.08	0.04	0.01	0.03
일본	0.62	0.38	0.08	0.02	0.07	0.08	0.42	0.36	0.00	0.06
한국	0.34	0.11	0.12	0.05	–	0.06	0.21	0.04	0.00	0.17
라트비아	1.73	0.89	0.12	0.02	0.62	0.09	0.27	0.11	0.02	0.14
리투아니아	1.71	0.78	–	–	0.48	0.46	0.36	0.24	0.02	0.10
룩셈부르크	1.53	0.78	0.21	–	0.30	0.24	1.08	1.08	–	–
멕시코	0.04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56	1.76	–	–	0.69	0.11	0.83	–	0.82	0.00
뉴질랜드	2.48	0.79	–	–	–	1.69	0.03	0.00	0.00	0.03
노르웨이	3.75	2.46	0.00	–	1.13	0.16	0.57	0.21	0.26	0.10
폴란드	2.15	0.97	0.01	–	0.77	0.40	0.20	0.18	0.02	–
포르투갈	1.77	1.41	–	–	0.32	0.03	0.01	0.00	0.00	0.01
슬로바키아	1.61	1.00	–	–	0.37	0.24	0.21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66	0.47	0.00	0.00	0.97	0.22	0.29	0.21	0.08	0.00
스페인	2.17	1.33	–	0.77	0.00	0.08	0.23	0.14	0.07	0.02
스웨덴	2.00	1.01	0.06	0.00	0.92	0.00	2.08	1.59	0.16	0.33
스위스	2.14	0.93	0.17	0.28	0.65	0.10	0.63	0.49	0.10	0.04
터키	0.27	0.21	0.00	–	0.05	0.01	0.22	0.21	0.00	0.01
영국	1.51	1.27	0.00	–	0.23	0.02	0.31	0.09	0.01	0.22
미국	1.14	0.79	0.04	–	0.03	0.27	–	–	–	–
OECD-Total	1.64	0.98	0.09	0.13	0.40	0.24	0.47	0.33	0.11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5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4%로 장애연금 0.98% 기타상병보조금 0.40%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7%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3%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 등이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1%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4%로 나타남

–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4%로 동일한 반면에,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에서 0.2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가 2014년 0.01%에서 2015년 0.04%로 증가함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6년)

(단위: %)

구분	2016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가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5	1.47	–	0.47	–	0.01	0.40	–	0.00	0.40
오스트리아	1.57	0.95	0.12	–	0.22	0.28	0.48	0.33	0.05	0.11
벨기에	2.36	1.71	–	0.01	0.63	0.02	0.55	0.48	0.03	0.05
캐나다	0.74	0.32	0.35	–	0.08	–	–	–	–	–
칠레	0.74	0.41	0.01	0.01	0.31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7	0.00	–	0.07	–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2	0.00	–	0.00	0.00
체코	1.65	1.02	0.02	0.08	0.47	0.07	0.09	0.06	0.00	0.02
덴마크	2.81	1.92	–	0.08	0.71	0.09	2.13	0.86	0.67	0.60
에스토니아	1.99	1.21	–	–	0.31	0.47	0.34	0.29	0.05	0.00
핀란드	2.20	1.49	0.14	0.06	0.40	0.11	1.20	0.77	0.32	0.11
프랑스	1.61	1.00	0.00	–	0.51	0.11	0.08	0.00	–	0.08
독일	1.27	0.08	0.05	0.02	0.35	0.76	0.84	0.61	0.21	0.02
그리스	1.75	1.13	–	–	0.20	0.42	0.01	–	0.00	0.01
헝가리	1.49	0.86	–	–	0.42	0.21	0.20	0.09	0.07	0.04
아이슬란드	1.94	1.90	–	–	0.03	0.01	0.73	0.58	0.00	0.16
아일랜드	1.63	0.77	–	–	0.55	0.31	0.04	–	–	0.04
이스라엘	2.11	1.40	0.32	–	–	0.39	0.53	0.02	0.17	0.34
이탈리아	1.72	0.69	–	–	0.15	0.88	0.08	0.04	0.01	0.03
일본	0.62	0.38	0.08	0.02	0.07	0.08	0.44	0.37	0.00	0.06
한국	0.33	0.11	0.12	0.05	–	0.06	0.23	0.05	0.00	0.17
라트비아	1.78	0.87	0.12	0.02	0.68	0.09	0.26	0.11	0.02	0.12
리투아니아	1.79	0.75	–	–	0.55	0.49	0.37	0.23	0.02	0.12
룩셈부르크	1.45	0.75	0.20	–	0.28	0.22	0.98	0.98	–	–
멕시코	0.03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52	1.75	–	–	0.68	0.09	0.82	–	0.81	0.00
뉴질랜드	2.42	0.74	–	–	–	1.68	0.03	0.00	0.00	0.03
노르웨이	3.91	2.58	0.00	–	1.18	0.15	0.60	0.22	0.28	0.10
폴란드	2.14	0.88	0.01	–	0.83	0.42	0.19	0.13	0.06	0.01
포르투갈	1.71	1.34	–	–	0.34	0.03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4	1.00	–	–	0.40	0.24	0.22	0.22	0.00	0.00
슬로베니아	1.62	0.43	0.00	0.00	0.98	0.21	0.27	0.20	0.07	0.00
스페인	2.20	1.30	–	0.83	0.00	0.07	0.22	0.13	0.07	0.02
스웨덴	1.94	0.95	0.05	0.00	0.94	0.00	2.01	1.53	0.15	0.32
스위스	2.15	0.93	0.17	0.29	0.66	0.11	0.65	0.50	0.11	0.04
터키	0.29	0.22	0.00	–	0.06	0.01	0.23	0.22	0.00	0.01
영국	1.51	1.30	0.00	–	0.19	0.02	0.31	0.08	0.01	0.22
미국	1.10	0.77	0.04	–	0.03	0.26	–	–	–	–
OECD-Total	1.63	0.96	0.05	0.05	0.34	0.23	0.42	0.25	0.09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6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3%로 장애연금 0.96% 기타상병보조금 0.34%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5%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3%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5%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7년)

(단위: %)

구분	2017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0	1.43	–	0.46	–	0.01	0.34	–	0.00	0.34
오스트리아	1.50	0.89	0.11	–	0.22	0.28	0.48	0.33	0.05	0.11
벨기에	2.42	1.75	–	0.02	0.61	0.04	0.54	0.48	0.01	0.05
캐나다	0.73	0.30	0.35	–	0.08	–	–	–	–	–
칠레	0.74	0.40	0.01	0.01	0.3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8	0.00	–	0.08	–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2	0.00	–	0.00	0.00
체코	1.61	0.97	0.02	0.08	0.48	0.07	0.09	0.07	0.00	0.02
덴마크	2.78	1.85	–	0.14	0.70	0.09	2.13	0.84	0.66	0.62
에스토니아	1.97	1.20	–	–	0.32	0.45	0.32	0.27	0.05	0.00
핀란드	2.07	1.38	0.14	0.06	0.38	0.11	1.13	0.75	0.25	0.12
프랑스	1.62	1.00	0.00	–	0.51	0.10	0.08	0.00	–	0.08
독일	1.28	0.08	0.05	0.02	0.36	0.76	0.98	0.74	0.21	0.02
그리스	1.67	1.09	–	–	0.16	0.42	0.01	–	0.00	0.01
헝가리	1.44	0.77	–	–	0.46	0.20	0.19	0.09	0.06	0.03
아이슬란드	2.22	2.18	–	–	0.03	0.01	0.79	0.61	0.00	0.17
아일랜드	1.59	0.75	–	–	0.52	0.32	0.03	–	–	0.03
이스라엘	2.14	1.43	0.34	–	–	0.38	0.64	0.02	0.22	0.40
이탈리아	1.71	0.67	–	–	0.16	0.87	0.07	0.03	0.01	0.03
일본	0.62	0.38	0.08	0.02	0.07	0.07	0.46	0.39	0.00	0.07
한국	0.33	0.11	0.11	0.05	–	0.06	0.27	0.10	0.01	0.16
라트비아	1.80	0.87	0.12	0.02	0.71	0.09	0.25	0.10	0.02	0.14
리투아니아	1.80	0.74	–	–	0.56	0.50	0.35	0.22	0.02	0.11
룩셈부르크	1.41	0.73	0.20	–	0.27	0.22	1.08	1.08	–	–
멕시코	0.05	0.01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07	1.65	–	–	0.32	0.10	0.80	–	0.80	0.00
뉴질랜드	2.34	0.70	–	–	–	1.65	0.03	0.00	0.00	0.03
노르웨이	3.80	2.51	0.00	–	1.14	0.14	0.60	0.22	0.28	0.10
폴란드	2.09	0.83	0.01	–	0.84	0.41	0.14	0.09	0.05	0.01
포르투갈	1.68	1.29	–	–	0.36	0.04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8	0.98	–	–	0.44	0.26	0.23	0.23	0.00	0.00
슬로베니아	1.50	0.30	0.00	0.00	0.99	0.21	0.27	0.20	0.07	0.00
스페인	2.20	1.27	–	0.86	0.00	0.07	0.21	0.13	0.07	0.02
스웨덴	1.81	0.88	0.05	0.00	0.88	0.00	2.03	1.57	0.14	0.32
스위스	2.22	0.92	0.16	0.29	0.74	0.11	0.64	0.49	0.10	0.04
터키	0.26	0.20	0.00	–	0.06	0.01	0.22	0.22	0.00	0.01
영국	1.55	1.35	0.00	–	0.19	0.02	0.31	0.09	0.01	0.21
미국	1.06	0.74	0.04	–	0.03	0.25	–	–	–	–
OECD-Total	1.60	0.94	0.05	0.06	0.33	0.22	0.42	0.25	0.08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 2017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0%로 장애연금 0.94% 기타상병보조금 0.33%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5%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1%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7%로 2016년에 비해 0.04%p 증가하였으며, 기타 현물급여 0.16%,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1%로 나타남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유형별 현금 및 현물급여(2018년)

(단위: %)

구분	2018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재)	상병급여(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돌봄서비스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0.72		0.36	–	0.08	–	–	–	–	–
칠레	0.73		0.01	0.01	0.3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9		–	0.09	–	–	0.00	–	–	–
코스타리카	0.06		–	–	–	0.02	0.00	–	0.00	0.00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1.62	0.28	0.00	–	0.52	0.10	0.09	0.00	–	0.08
독일	–	0.39	–	–	–	–	–	–	–	–
그리스	–	0.00	–	–	–	–	–	–	–	–
헝가리	1.30	0.04	–	–	0.43	0.20	0.18	0.10	0.07	0.01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2.27	–	0.34	–	–	0.39	0.66	0.02	0.22	0.42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1.00	–	–	–	–	–	–	–	–
한국	0.34	–	0.12	0.06	–	0.06	0.27	0.10	0.01	0.16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0.67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0.05	–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	1.53	–	–	–	–	–	–	–	–
뉴질랜드	2.34	–	–	–	–	1.67	0.03	0.00	0.00	0.03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0.10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0.00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2.17	0.67	0.15	0.29	0.72	0.11	0.65	0.50	0.11	0.04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1.01	–	0.03	–	0.03	0.24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2-08-2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5) 복지

(1) 빈곤위험률

〈표 14-5-1〉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 장애인 빈곤율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상대적 비율
미국	47.6	24.0	2.0
호주	44.7	16.6	2.7
아일랜드	36.8	14.5	2.5
한국	35.6	14.6	2.4
캐나다	32.2	17.2	1.9
에스토니아	26.9	14.1	1.9
멕시코	25.5	23.9	1.1
포르투갈	25.5	15.1	1.7
슬로베니아	24.8	14.1	1.8
덴마크	24.8	15.0	1.7
스페인	24.1	17.4	1.4
영국	23.6	11.6	2.0
핀란드	21.6	12.6	1.7
이탈리아	21.2	15.4	1.4
독일	20.7	11.1	1.9
그리스	19.5	15.4	1.3
벨기에	18.8	10.8	1.7
폴란드	18.6	15.5	1.2
오스트리아	17.7	10.8	1.6
헝가리	17.5	12.5	1.4
프랑스	17.1	11.1	1.5
아이슬란드	16.4	15.8	1.0
룩셈부르크	16.0	10.8	1.5
체코	14.1	9.2	1.5
스위스	13.7	11.8	1.2
네덜란드	11.5	11.0	1.0
슬로바키아	11.3	12.1	0.9
노르웨이	10.8	11.4	0.9
스웨덴	10.4	12.2	0.9
OECD-27	22.1	14.1	1.6

주: 1) 2000년대 중반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2) OECD-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미국: 2018년. 21-64세, 2018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자료: OECD(2010).「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OECD 국가의 2000년대 중반 장애인 빈곤위험률은 평균 22.1%로 비장애인의 14.1%에 비하여 약 1.6배 높음.
  - 한국의 경우, 장애인 빈곤율은 35.6%로 OECD 국가의 평균 22.1%보다 약 1.6배, 비장애인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음
  - 특히 미국 47.6%, 호주 44.7%, 아일랜드 36.8%, 한국 35.6% 등의 순으로, 동 국가들은 높은 장애인 빈곤율을 보이는 동시에 두 집단 간(장애인 vs 비장애인) 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됨
- 이에 반해 스웨덴의 장애인 빈곤율은 10.4%, 노르웨이 10.8%, 네델란드 11.5%로, 북유럽 국가들의 빈곤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빈곤율의 격차 역시 낮은 국가로 나타남

OECD 국가의 빈곤위험률

- OECD 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표에서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함

6) 정신건강

(1)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표 14-6-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단위: 수/인구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0.39	0.39	0.4	0.41	0.41	0.41	0.42	–	–	–	–	
오스트리아	0.71	0.71	0.74	0.75	0.74	0.75	0.75	0.75	0.73	0.69	0.69	–
벨기에	1.47	1.45	1.44	1.41	1.4	1.4	1.38	1.36	1.35	1.41	1.41	1.41
캐나다	0.36	0.36	0.37	0.37	0.35	0.35	0.35	0.34	0.37	0.36	0.37	–
칠레	0.17	0.14	0.1	0.1	0.1	0.1	0.1	0.1	0.15	0.14	0.14	0.09
체코	0.01	0.01	0.02	0.03	0.04	0.02	0.03	0.04	0.06	0.07	0.09	–
콜럼비아	0.21	0.2	0.2	0.19	0.19	0.18	0.18	0.18	0.16	0.15	0.13	0.06
코스타리카	1.01	0.99	0.98	0.96	0.95	0.96	0.95	0.94	0.93	0.92	0.88	–
덴마크	0.57	0.53	–	0.54	–	–	0.4	0.47	0.48	0.52	0.52	0.52
에스토니아	0.53	0.54	0.54	0.52	0.52	0.52	0.51	0.51	0.52	0.51	0.5	–
핀란드	0.75	0.71	0.69	0.64	0.61	0.62	0.58	0.39	0.54	0.59	0.38	–
프랑스	0.88	0.87	0.88	0.88	0.87	0.86	0.86	0.84	0.83	0.82	0.8	–
독일	1.18	1.23	1.25	1.26	1.27	1.27	1.28	1.28	1.3	1.31	1.3	–
그리스	0.75	0.73	0.77	0.7	0.72	0.73	0.71	0.74	0.74	0.72	–	–
헝가리	0.89	0.9	0.9	0.9	0.87	0.87	0.87	0.87	0.85	0.84	0.75	–
아이슬란드	0.48	0.48	0.47	0.46	0.44	0.44	0.43	0.38	0.37	0.36	0.35	–
아일랜드	0.38	0.35	0.35	0.35	0.35	0.35	0.34	0.34	0.34	0.33	0.32	–
이스라엘	0.42	0.42	0.41	0.4	0.41	0.4	0.4	0.39	0.38	0.39	0.39	0.38
이탈리아	0.1	0.1	0.1	0.1	0.09	0.09	0.09	0.09	0.09	0.08	0.08	–
일본	2.71	2.69	2.68	2.67	2.66	2.65	2.63	2.62	2.61	2.59	2.57	–
한국	0.89	0.88	0.91	0.91	1.18	1.25	1.25	1.31	1.26	1.24	–	–
라트비아	1.28	1.29	1.29	1.25	1.26	1.26	1.28	1.25	1.22	1.19	1.12	–
리투아니아	1.07	1.11	1.11	1.1	1.08	1.03	1.01	0.99	0.98	0.97	0.87	0.96
룩셈부르크	0.88	0.88	0.86	0.83	0.81	0.79	0.77	0.76	0.74	0.81	0.8	0.81
멕시코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0.03	0.03	–
네덜란드	1.35	1.25	1.12	1.09	1.03	0.99	0.97	0.94	0.86	0.8	0.79	–
뉴질랜드	0.22	0.2	0.2	0.17	0.23	0.24	0.3	0.3	0.3	0.32	0.32	0.36
노르웨이	1.34	1.3	1.21	1.16	1.16	1.14	1.11	1.07	1.05	1.04	1.01	–
폴란드	0.63	0.64	0.64	0.64	0.65	0.65	0.66	0.65	0.62	0.63	0.62	–
포르투갈	0.65	0.64	0.63	0.65	0.63	0.64	0.64	0.64	0.64	0.63	0.64	–
슬로바키아	0.8	0.77	0.78	0.82	0.82	0.81	0.81	0.81	0.81	0.81	0.8	–
슬로베니아	0.65	0.65	0.67	0.66	0.66	0.67	0.66	0.66	0.66	0.65	0.64	–
스페인	0.4	0.38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5	–
스웨덴	0.48	0.47	0.46	0.46	0.45	0.44	0.43	0.43	0.41	0.41	0.4	–
스위스	1.01	0.97	0.97	0.96	0.92	0.93	0.93	0.94	0.93	0.93	0.94	–
터키	0.06	0.06	0.06	0.06	0.06	0.05	0.05	0.05	0.05	0.05	0.05	–
영국	0.54	0.52	0.5	0.48	0.46	0.42	0.4	0.38	0.37	0.35	0.34	0.34
미국	0.25	0.23	0.22	0.22	0.21	0.21	0.21	0.25	0.25	0.31	–	–
OECD-평균 (38)	0.70	0.69	0.68	0.67	0.68	0.67	0.66	0.66	0.66	0.66	0.63	–

주: 1)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2) OECD 평균은 당해년도(혹은 인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평균한 값임
3) 2022년 7월 4일 기준 데이터이며, 일부 국가의 값이 추가되어 OECD 평균이 이전 보고서와 다를 수 있음
4) 자료 검색일 기준(검색일: 2022-08-17) 한국의 값이 누락되어, 2021년 인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2-08-17)

–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평균(2019년 기준) 0.67 병상으로, 한국 1.24병상에 비해 적은 수준임
•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수는 1991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OECD, 2014)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인구 10만명 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표 14-6-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단위: 개)

구 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멕시코	0.01
한국	0.01
폴란드	0.03
미국	0.06
포르투갈	0.07
일본	0.30
호주	0.67
독일	1.57
프랑스	4.73
아이슬란드	16.67
아일랜드	17.89
OECD	3.18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원자료: OECD Mental Health Questionnaire 2012; WHO Mental Health Atlas 2011

- OECD 국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수는 평균 3.18개소에 반해 한국은 0.01개소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OECD 국가들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지원을 치료적 접근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변경하고 있음

(3)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표 14-6-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단위: 1인당 USD, %)

구분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병의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외래진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조제약	55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지출	445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주: 1) 네덜란드: 병원지출의 89%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2) 체코: 병원지출의 75%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 주요 국가 및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과 체코의 경우 비교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108.1$로 대부분의 비용이 병원에 집중되어 있음(OECD, 2014)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을 의미함.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표 14-6-4〉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칠레	전체	–	–	–	–	–	–	2.2	2.6	2.3	1.3	–	–	–
	남	–	–	–	–	–	–	2.3	2.8	2.4	1.3			
	여	–	–	–	–	–	–	1.9	2.3	2.2	1.4	–	–	–
덴마크	전체	3.4	2.8	2.9	2.8	2.9	2.9	2.9	2.8	2.7	2.7	–	–	–
	남	3.3	2.8	3	2.8	3	2.8	2.8	2.6	2.6	2.7	–	–	–
	여	3.6	2.8	2.6	2.8	2.8	3.1	3.1	3	2.7	2.6	–	–	–
핀란드	전체	–	2.6	2.6	2.6	2.6	2.3	2.4	2.3	2.3	2.8	2.5	2.5	–
	남	–	2.5	2.3	2.4	2.6	2.2	2.3	2.1	2.2	2.6	2.5	2.5	–
	여	–	2.7	3.1	2.9	2.6	2.5	2.7	2.6	2.4	3	2.6	2.4	–
이스라엘	전체	3	3.4	3.4	2.9	3.4	3.4	2.8	3.2	3.6	3.8	4.1	3.7	3.5
	남	2.7	3.3	3	2.7	3.4	3	2.9	3.1	3.5	3.2	3.8	3.4	3.2
	여	3.4	3.5	3.9	3.1	3.2	4.1	2.6	3.2	3.6	4.7	4.5	4	4
한국	전체	3.2	3.5	3.6	3.7	3.8	4	4	4.2	4.2	4.2	4.4	4.4	–
	남	3	3.1	3.4	3.4	3.6	3.9	3.9	4	4.2	4.1	4.2	4.3	–
	여	3.8	4.3	4.1	4.3	4.3	4.3	4.2	4.5	4.4	4.4	4.7	4.6	–
리투아니아	전체	1.1	1.6	1.4	1.3	1.6	1.2	1.5	1.4	1.2	1.4	1.5	1.1	1.2
	남	0.9	1.5	1.2	1.1	1.5	1.1	1.4	1.5	1.1	1.2	1.2	1	1.3
	여	1.5	1.9	1.8	2.1	1.9	1.4	1.6	1.3	1.4	2.1	2.2	1.1	1
라트비아	전체	–	–	2	1.3	1.7	2.4	3.2	1.3	2.7	2.7	–	–	–
	남	–	–	2.1	1.5	1.4	1.5	2.9	1.4	2.4	2.6	–	–	–
	여	–	–	1.7	0.8	2.2	4.5	3.9	1.2	3.5	2.8	–	–	–
네델란드	전체	–	–	–	–	–	–	–	–	2.6	2.9	3.1	2.8	–
	남	–	–	–	–	–	–	–	–	2.5	2.7	3	2.9	–
	여	–	–	–	–	–	–	–	–	2.8	3.2	3.1	2.7	–
뉴질랜드	전체	1.3	2.7	2.6	2.4	3.6	3.3	5.7	3.2	–	–	–	–	–
	남	1.1	3.2	3	2.4	3.5	2.9	6.3	2.4	–	–	–	–	–
	여	1.6	2	2	2.4	3.5	3.7	4.9	4.2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3.3	2.9	4.2	5.3	4	4.6	3.2	3.5	–
	남	–	–	–	–	3.3	2.6	3.9	5.8	3.1	4.5	3.8	2.9	–
	여	–	–	–	–	3.2	3.2	4.7	4.4	5.3	4.8	2.5	4.3	–
스웨덴	전체	2.7	2.7	3	2.7	2.8	2.6	2.9	2.7	2.8	2.5	2.5	2.5	–
	남	2.6	2.8	3.1	2.7	2.9	2.5	2.9	2.7	3	2.7	2.4	2.6	–
	여	2.9	2.5	2.9	2.8	2.6	2.8	2.8	2.8	2.5	2.3	2.6	2.3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2-08-29 현재 OECD 미제공. 제시된 표는 2021-08-29 인출)

– OECD 인구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1번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질환의 부담이 상당히 큼(OECD, 2014a).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는 입원진료와 지역사회연계, 환자관리에 초점을 둔 지표임
-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음. 1 보다 높은 '초과 사망비'는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음을 의미함
- 2019년 조울증의 초과 사망비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한국 4.4로 노르웨이 3.5, 이스라엘 3.7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14-6-5〉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캐나다	전체	3.8	3.8	3.7	3.7	3.7	3.9	3.8	4.1	4	–	–	–	–
	남	3.8	3.7	3.7	3.5	3.7	3.7	3.7	3.8	3.9	–	–	–	–
	여	3.9	4	3.8	4.1	3.9	4.1	4	4.4	4.1	–	–	–	–
칠레	전체	4.3	6	7.2	8.4	8.9	8.9	8.1	7.4	5.5	3	–	–	–
	남	4	5.6	6.6	7.8	8.6	8.3	7.5	6.6	4.9	2.9	–	–	–
	여	4.9	6.7	8.2	9.3	9.3	9.8	9.2	8.7	6.5	3.3	–	–	–
덴마크	전체	3.8	4	3.7	4.1	4.1	3.9	4.5	4.1	4	4.7	–	–	–
	남	3.9	4.2	3.5	4.1	4	4	4.5	3.7	3.9	4.4	–	–	–
	여	3.7	3.8	3.9	4.1	4.2	3.6	4.6	4.6	4.1	5.1	–	–	–
핀란드	전체	–	3	3.1	3	3	3	3.3	3	3.3	3.2	3.4	3.4	–
	남	–	2.7	2.8	2.5	2.7	3	2.6	2.5	3.1	2.9	3	3.2	–
	여	–	3.6	3.7	3.9	3.5	3.1	4.5	3.8	3.6	3.8	4.1	3.7	–
이스라엘	전체	3.4	3.5	3.4	3.5	3.4	3.6	3.4	3.4	3.8	3.9	3.9	4.3	4.1
	남	3.3	3.5	3.1	3.4	3.3	3.4	3.5	3.3	3.6	3.7	3.5	4.1	3.8
	여	3.6	3.5	3.8	3.7	3.5	4.1	3.2	3.5	4	4.2	4.4	4.7	4.7
한국	전체	4.1	4.3	4.3	4.3	4.4	4.4	4.4	4.4	4.5	4.5	4.6	4.5	–
	남	3.7	3.9	4	3.9	4.1	4	4	4	4.1	4.1	4.2	4.2	–
	여	5	5.2	5.1	5.3	5.3	5.3	5.4	5.3	5.3	5.2	5.5	5.3	–
리투아니아	전체	1.8	1.8	1.8	1.8	1.7	1.8	1.9	1.8	1.7	2	1.7	1.8	2.1
	남	1.5	1.5	1.5	1.6	1.4	1.6	1.6	1.6	1.5	1.7	1.4	1.6	1.8
	여	2.4	2.5	2.6	2.3	2.6	2.3	2.5	2.2	2.4	2.6	2.5	2.3	2.7
라트비아	전체	–	–	1.9	1.9	1.9	1.9	2	1.9	1.9	2	–	–	–
	남	–	–	1.9	1.5	1.8	1.7	1.7	1.7	1.5	1.7	–	–	–
	여	–	–	2	2.9	2.2	2.4	2.7	2.1	3	2.8	–	–	–
네델란드	전체	–	–	–	–	–	–	–	–	3.1	3.7	3.9	3.8	–
	남	–	–	–	–	–	–	–	–	3.2	3.7	3.9	3.9	–
	여	–	–	–	–	–	–	–	–	2.9	3.7	3.8	3.8	–
뉴질랜드	전체	4.5	4.7	3.7	5.2	5.3	4.9	4.9	4.5	–	–	–	–	–
	남	6.3	3.5	4.2	3.5	4.8	3.5	4.1	3.1	–	–	–	–	–
	여	2.2	6.3	3	7.3	6	6.9	6.1	6.6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4.6	4.9	6.3	5.7	5.7	6.7	5.3	3.4	–
	남	–	–	–	–	4.7	4.5	6.4	4.9	5.4	7	5.9	4	–
	여	–	–	–	–	4.3	5.6	6.3	6.8	6.1	6.3	4.4	2.4	–
스웨덴	전체	4	4.3	4	4	5	4.5	4.3	4.8	5	4.4	4.6	4.6	–
	남	3.9	4	4	3.9	4.8	3.9	4.3	4	4.4	4.1	4.4	3.8	–
	여	4.2	4.6	4	4.2	5.1	5.2	4.2	6	5.8	4.9	5	5.7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2-08-29 현재 OECD 미제공. 제시된 표는 2021-08-29 인출)

- 2019년 한국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는 4.5로, 스웨덴 4.6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임

(5)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표 14-6-6〉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단위: 일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호주	24.9	25.5	22.8	23.4	23	31.3	41.3	24	25.4	26.5	–
오스트리아	31.5	31	31.1	29.4	35.2	34.5	28.8	34.7	32.1	36.5	38.7
벨기에	11.2	11.7	11.8	11.9	11.7	–	9.9	9.9	10.1	9.6	10.2
캐나다	23.7	23.4	23.9	42	41.9	44.3	42.6	40.4	38.2	37.9	32.2
칠레	108.1	88	76.3	70.5	57.8	87	94.6	64.9	61.6	75.9	65.1
코스타리카	90.9	36	41.4	66.9	69.2	96.6	91.9	40.2	53.6	27.1	22
체코	113.7	71.1	74.1	71.4	70.2	69.5	70.4	73.3	72.5	68.8	78.4
덴마크	35.6	36.3	34.6	29.7	28.7	27.9	29.3	–	–	–	–
핀란드	58.9	51.7	56.3	59.4	57.8	52.1	57.7	50.9	40.4	–	47.1
프랑스	4.7	4.5	4.6	4.5	4.4	4.3	36.5	37.2	37.1	37.9	43.2
독일	33.9	33.3	32.2	32	32.8	33.3	34.3	35.2	35.9	36.3	36.1
그리스	358.2	219	190	163	143	109	–	–	–	–	–
헝가리	37.9	39.9	41	37.6	38.2	41.5	40.4	42.5	42.6	41.8	47.2
아이슬란드	–	16	17.6	18	16.2	–	19.1	17.2	–	17.2	–
아일랜드	27.8	26.6	32	23.1	21.2	30.8	27.4	23.6	25.6	24.2	20.6
이스라엘	70.5	65	63.7	68.4	59.6	70.1	70.8	61.5	58.9	68.9	63.9
이탈리아	16.3	16.5	16.1	16.1	15.9	15.9	16	15.9	15.1	15	15.9
한국	204	199.7	196.2	207.2	201.2	251.9	223.3	237.8	234.3	216.1	242.3
라트비아	–	–	–	32.7	32.9	33.6	34.5	33.1	46.6	47.1	47.4
리투아니아	–	–	30.9	29.3	29.4	29	28	27.3	28	34.7	34.4
룩셈부르크	47.9	46.8	42.8	46.2	46.5	45.7	49.4	–	–	–	–
멕시코	46.5	44.9	48.7	55.1	54.6	70.5	65.1	46	64.8	48.5	72.8
네델란드	28.5	25.7	27.8	31	27.9	27.8	31.2	29.4	27.4	27.7	26.8
뉴질랜드	46.2	53.4	49.6	45.6	43.8	47.9	40.8	43.4	38.7	38.4	–
노르웨이	3	29	26.5	26.4	25.1	25.7	23.3	21.6	21.1	21.7	21.6
폴란드	61.6	57.6	43.6	42.8	43.2	59.5	60.5	61.7	57.8	58.4	57.3
포그투갈	21.5	21.5	20.8	21.5	20.9	21.7	–	–	22.5	23.9	25.4
슬로바키아	36.5	34.6	35.8	–	34.6	35.4	35.7	36.2	35.6	36.1	36.7
슬로베니아	53.9	52.5	55.4	52	54.9	53.2	55.1	50.8	49.4	47.4	39.2
스페인	33.7	30.8	31.2	32.1	30.5	31.6	34.7	56.6	87	83.5	97.2
스웨덴	35.3	–	–	38.5	33.9	47.1	48.2	48.8	46.9	46.8	43.1
스위스	53.9	50	42.9	42.5	38.7	36.7	36.5	34.5	36	36.8	37.3
터키	–	24.8	16.3	22.6	29.1	14.3	15	14.5	15.8	–	–
영국	106.3	104.5	106.1	109.4	98.2	98	100.4	–	94.8	–	–
미국	10.1	–	–	–	–	–	–	–	–	–	–
OECD-평균	60.89	50.69	48.25	48.55	46.24	52.43	49.77	45.28	48.53	46.10	5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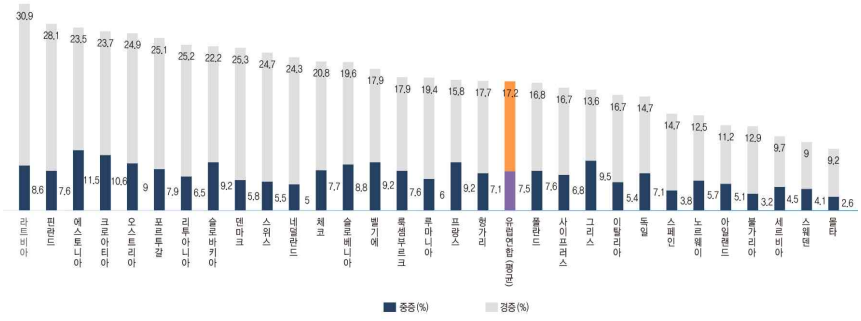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검색일 2022-08-18)

- 2020년 한국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42일로 OECD 평균 50일의 약 4.8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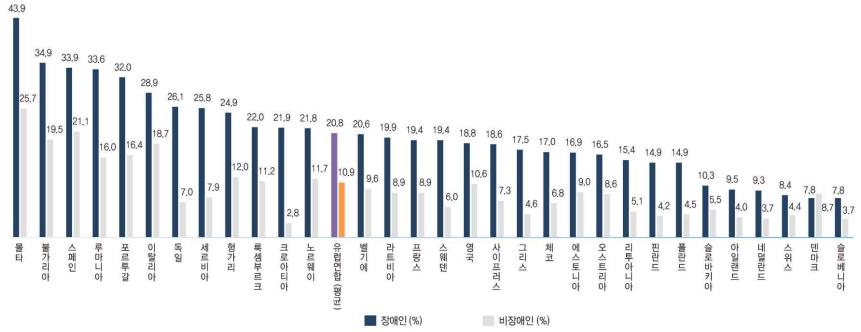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EU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출현율 - 장애정도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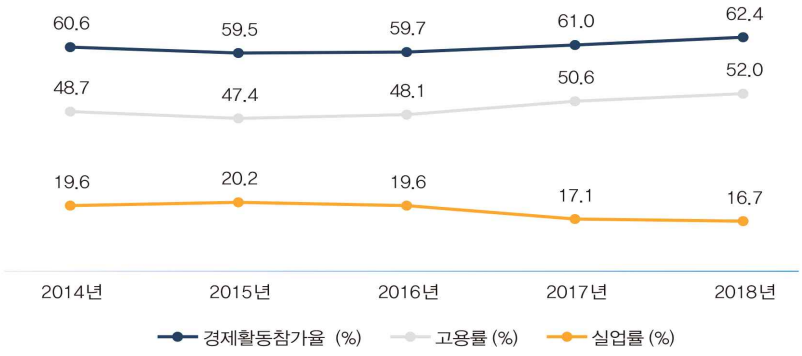
[그림 3-2-2]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장애유무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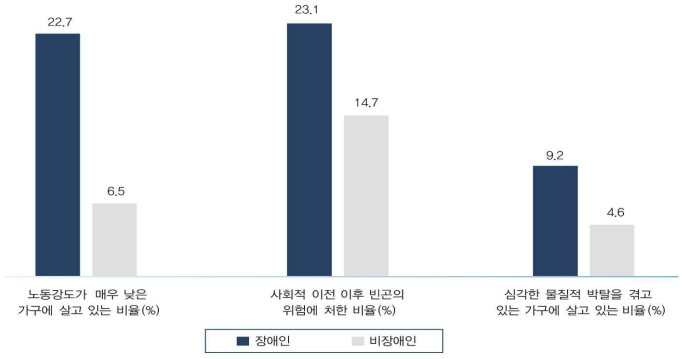
- 2019년 유럽연합 국가(26개 국가 평균, 영국 · 아이슬란드 제외)의 장애출현율은 24.5%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 39.5%, 핀란드 35.7%, 에스토니아 35.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율을 보인 반면, 몰타 11.8%, 스웨덴 13.1%, 세르비아 14.2%로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낮은 편임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20.8%로 비장애인의 10.9% 보다 9.9%p 높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불가리아 34.9%, 스페인 33.9%, 루마니아 33.6%, 포르투칼 32.0%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덴마크 7.8%, 슬로베니아 7.8%, 스위스 8.4% 등은 낮은 편임
  - 독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덴마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임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18년)



-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60.6%에서 2015년 59.5%로 소폭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62.4%임
  - 고용률 또한 2014년 48.7%에서 2015년 47.4%로 소폭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52.0%임
  - 실업률은 2014년 19.6%에서 2015년 20.2%로 소폭 증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6.7%임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6개 국가 평균, 영국 · 아이슬란드 제외)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이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2.7%로 비장애인의 6.5%에 비해 16.2%p 높음
  - 장애인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23.1%로 비장애인의 14.7%에 비해 8.4%p 높음
  - 장애인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9.2%로 비장애인의 4.6%에 비해 4.6%p 높음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국가별, 연도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럽연합(평균)	27.4	25.4	24.2	24.6	25.0	24.5e	–	–
오스트리아	33	33.1	34.2	34.2	34.1	33.9	31.9	29.5
벨기에	24	23.6	24.7	24.8	25.2	27.2b	25	24.4
불가리아	18	19.3	16.2	18.8	16.6	16.1	16.2	17.7
크로아티아	28.9	35.1	32.3	32.9	33.4	34.4	32.6	31.9
사이프러스	18.3	20.8	16	19.8	24	23.5	23.1	–
체코	23.6	24.9	25.2	28.1	28	28.6	29.4	24.7
덴마크	28.2	30.5	28.7	30.2	29	31.1	33	35.2
에스토니아	34.1	35	32.3	34.4	39.5	35	32.6	33.4
핀란드	32.6	33.1	32.6	33.5	34.2	35.7	35.2	28.3
프랑스	24.8	25.2	25.7	25.4	25.2	25	25b	–
독일	36.2	21.2b	21.3	22.1	22.3	21.8	24.5b	24.6
그리스	24	24.8	24.7	24.3	23.8	23.1	23.5	23.3
헝가리	26.4	27.7	26.9	26.1	25.4	24.8	22.8	–
아이슬랜드	17.9	18.2	20.2	25.6	26	–	–	–
아일랜드	17.6	17.6	16.4	17	15.8	16.4	20.3b	19.1
이탈리아	29	29	22.3	23.9	23.7	22.1	22.4	22.2p
라트비아	37.4	38.4	37.4	41.3	40	39.5	39.7	37.1
리투아니아	25.8	30.7	29.3	30.1	30.6	31.7	32.6	–
룩셈부르크	23.8	25.7	27	28.3	27.2	25.5	24.7b	–
몰타	10	9.8	12.9	11.8	11.9	11.8	14.1	–
네델란드	28.4	30.7	29.5	30.4	31.2	29.3	28.6	29.9
노르웨이	15.7	15.9	16.9	16.3	16.9	19.6	20	–
폴란드	24.2	24.4	22.8	24	24	24.4	24.4	–
포르투갈	35.2b	36.1	33	33.3	33.5	33	32.1	–
루마니아	26.4	26.1	26.1	27.6	26.5	25.4	25.9	29.4
세르비아	16.2	17.3	15.9	18.7	13.4	14.2	12.7	–
슬로바키아	32	31.5	29.4	31.9	31.2	31.4	32.1	–
슬로베니아	29.8	31.5	31.2	36.3	35.4	28.5	22.1	–
스페인	23.6	24.8	22.4	18.6	20.6	18.4	22.8	28
스웨덴	12.8b	12.9	12.6	13.1	13	13.1	12.9	19.4
스위스	31.6	29.9	31.3	29.8	30.4	30.2	28.7	–
영국	23	23.4	24.2	25.2b	27.3	–	–	–

주: 1)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19년 유럽연합 국가의 장애출현율은 24.5%로, 2018년에 비하여 감소함
  -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 37.1%, 덴마크 35.2%, 에스토이아 33.4%, 크로아티아 31.9%로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출현율을 보임. 반면, 불가리아(17.7%), 아일랜드(19.1%), 스웨덴(19.4%)은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임.

EU SILC 장애 개념
- EU SILC 문항 중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제한됨', '제한됨'에 응답한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정의함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 - 국가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성	여성	16-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	-	-	-	-	-	-
오스트리아	29.5	28.3	30.6	23.8	51.1	49.1	1.9
벨기에	24.4	21.8	26.8	18.9	42.7	14.4	16.1
불가리아	17.7	15.0	20.2	10.0	40.3	8.5	14.3
크로아티아	31.9	29.3	34.4	19.8	68.6	22.6	23.8
사이프러스	-	-	-	-	-	-	-
체코	24.7	22.9	26.4	15.7	52.9	16.3	17.5
덴마크	35.2	31.5	38.9	31.0	48.1	9.3	28.2
에스토니아	33.4	30.2	36.2	24.8	59.6	25.0	22.3
핀란드	28.3	25.2	31.4	22.4	43.8	14.3	21.1
프랑스	-	-	-	-	-	-	-
독일	24.6	23.1	26.0	17.0	43.8	21.7	13.8
그리스	23.3	21.8	24.7	10.4	59.1	23.4	13.9
헝가리	-	-	-	-	-	-	-
아이슬랜드	-	-	-	-	-	-	-
아일랜드	19.1	18.5	19.7	15.2	36.3	9.9	13.9
이탈리아	22.2p	19.9(p)	24.4(p)	12.6(p)	47.7(p)	16.1(p)	15.7(p)
라트비아	37.1	32.6	40.7	25.7	70.2	19.2	29.4
리투아니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몰타	-	-	-	-	-	-	-
네델란드	29.9	27.6	32.2	23.8	49.9	8.4	25.6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루마니아	29.4	25.1	33.5	16.3	73.2	16.8	23.8
세르비아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28	24.9	30.8	21.7	49.0	11.9	22.6
스웨덴	19.4	16.8	22.0	16.7	27.6	7.0	15.1
스위스	-	-	-	-	-	-	-
영국	-	-	-	-	-	-	-

주: 1) 2019년 기준이며,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규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기준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 성별 장애출현율은 라트비아에서 남성이 32.6%, 여성이 40.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16-64세의 경우 덴마크가 3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루마니아가 7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경우 오스트리아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증장애의 경우 라트비아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의 장애출현율이 50.0%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루마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이아, 그리스, 체코, 오스트리아이며, 특히 루마니아와 라트비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장애출현율이 70.0%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2) 건강

(1) 만성질환자 비율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국가별, 연도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럽연합(평균)	85.9e	85.6e	84.6e	85.2e	85.9e	–	–
오스트리아	79.3	80.3	82.3	78.8	81	81.8	82.4
벨기에	79.8	80.5	78.4	77.5	77.6b	80.2	80.2
불가리아	72.9	84.4	86	86.9	85.5	83.6	76.6
크로아티아	79.7	85.3	87.5	84	84.7	83.6	79.1
사이프러스	94.9	94	94.5	97.4	97.4	98.3	–
체코	95.7u	95.2u	93u	94.3u	93.9u	94.3u	97.2
덴마크	68.3	71.7	70.7	71.8	71.6	72	72.8
에스토니아	94.5	93.3	92.4	87.7	86.6	87.9	90.7
핀란드	83	84.9	84.7	84.6	83.6	82.3	93.1
프랑스	85.5	87.2	86.7	86	85.7	86.3b	–
독일	98.8	98.5	98.8	98.4	98.6	u	u
그리스	78.2	80.1	80.8	84.4	87	88.5	95.8
헝가리	96.4	94	93.5	94	96.8	97.8	–
아이슬랜드	100	100	74.4	72.6	–	–	–
아일랜드	90.8	91.5	90.7	88.7	89.9	87b	91.9
이탈리아	70.1	57.1	50.2	55.2	56.5	63.5	64.1p
라트비아	91.9	90.7	87.1	86.1	90.2	88.4	87
리투아니아	86.5	88.7	86.4	87.6	84.4	84.5	–
룩셈부르크	59.7	66.6	64.6	65.2	68.7	69.6b	–
몰타	88.8	87.5	84.3	82.9	85.9	84.9	–
네델란드	78.5	78.2	77.8	74.8	79.9	79.2	80.4
노르웨이	91.4	90.7	90.1	93.7	91.4	92.2	–
폴란드	90.3	94.1	94.3	94	94	93.4	–
포르투갈	80.9	80.8	82.1	80.9	81.6	83	–
루마니아	71.2	68	69.2	68.9	68.4	70.6	64.9
세르비아	81	83	83.8	81.9	80.8	82.2	–
슬로바키아	84.3	83.8	80.7	82.4	85.2	88.9	–
슬로베니아	77.7	80.5	79.6	80.8	76.1	90.1	–
스페인	86.9	86.1	85.5	88.8	87.5	82.4	78.1
스웨덴	90.6	90.4	90.6	90	91.9	89.3	88.3
스위스	73.9	75.1	73.8	73.3	74.7	73.5	–
영국	100	100	100b	100	–	–	–

주: 1) 16세 이상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기준 국가별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 체고가 9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 95.8%, 핀란드 93.1%, 아일랜드 91.9%, 에스토이가 90.7%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루마니아 64.9%, 덴마크 72.8%, 불가리아 76.6%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주거

(1) 주거박탈율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율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럽연합(평균)	4.4	4.1	3.7	3.8	3.8e	-
오스트리아	3.9	4.6	4.4	4.1	3.5	2.9
벨기에	0.9	1.5b	1.8	1.9	1.7b	2
불가리아	10.8	9.1	8.5	7.9	6.1	6.7
크로아티아	7.7	7.3	7.1	6.4	5.9	5.2
사이프러스	0.6	0.7	1.3	0.8	1.1	0.3
체코	2.9	2.9	1.5	1.9	1.9	2.2
덴마크	2.9	2.2	2.8	3	2.3	2.9
에스토니아	2.7	4	3.5	2.4	3.3	2.8
핀란드	1	1	0.8	0.8	1	0.9
프랑스	1.8	2.2	1.7	2.5	2.1	3b
독일	1.3	1.4	1.5	1.7	1.8	1.9b
그리스	6.6	6.3	5.9	5.4	5.7	5.9
헝가리	13.8	14.7	14.3	6.1	5.9	6.1
아이슬랜드	2.1	2	1.2	1.3	-	-
아일랜드	1.4	0.8	0.6	1.2	0.9	1.3b
이탈리아	7.8	6.1	4.4	5.7	5.2	6.2
라트비아	14.9	13.9	14.4	13.9	12.5	11.3
리투아니아	8.3	6.5	6.4	6.1	6.8	4.7
룩셈부르크	1.6	1.7	2	2	2.6	2.5b
몰타	1	0.8	0.9	1.7	2	0.7
네델란드	0.4	1.4	0.9	1.1	1.1	1.4
노르웨이	1.6	1.1	1.3	1.2	0.7	0.7
폴란드	11.1	11.5	10.3	10.5	9.2	-
포르투갈	4.2	4.6	3.5	3.4	3.4	3.1
루마니아	15	13.5	12.6	12.5	10.8	10.7
세르비아	20.2	19.4	20.8	15.7	17.9	12.7
슬로바키아	3.7	3.9	5.5	4	4	3.6
슬로베니아	5.8	4.2	4.1	4.4	3	4.2
스페인	1	1.5	0.7	1.8	1.8	3.5
스웨덴	3.6	4.9	4.5	4.9	3	1.9
스위스	1.2	1.9	1.1	1.3	1.4	1.2
영국	1.4	1.3	1b	1.6	-	-

주: 1) 16세 이상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0년 기준 국가별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살펴보면,
  - 세르비아 12.7%, 라트비아 11.3%, 루마니아 10.7%로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보인 반면, 사이프러스(0.3%), 노르웨이(0.7%), 몰타(0.7%), 핀란드(0.9%)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박탈률을 보임

EU SILC 주거박탈의 정의

- EU SILC에서 주거박탈은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함을 의미함(내용 출처-EUROSTAT statistics explained)

(2) 주거비 부담률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럽연합(평균)	12.5	12.5	12.5	12.4	12.1e	-
오스트리아	6.6	7.5	7.3	7.2	7.6	7.5
벨기에	15	15.9	14.4	15	12.9b	13.5
불가리아	21.6	27.2	29	25	22.4	22
크로아티아	10.2	9.8	8.9	8.3	7.9	7.6
사이프러스	2.5	2.4	2.7	1.3	1.5	2.2
체코	16.8	15.1	15.8	-	12.5	11.6
덴마크	20.3	20.7	22.1	21.9	21	19.1
에스토니아	6.9	5.6	5.3	5.5	5.1	4.8
핀란드	7.1	4.4	5.1	-	5.2	6
프랑스	7.3	5.9	6	5.4	7	8.3b
독일	21.6	22.6	20.8	19.2	17.7	10.2b
그리스	39.7	34.1	34.9	34.5	33.7	29.4
헝가리	9.6	10.6	12.2	-	4.5	3.7
아이슬랜드	9.8	6.2	10.2	8.2	-	-
아일랜드	4.7	5.6	4.6	3.2	4.2	3.4b
이탈리아	7.8	9	7.4	8.3	8.9	6.9
라트비아	9.6	9.4	8.8	-	7.3	6
리투아니아	12.9	11.8	8.9	7.2	6.3	3.3
룩셈부르크	8	8.5	7.4	12.3	12.2	10.7b
몰타	1.4	3	1.8	1.3	2.4	3.1
네델란드	18	15.5	14.2	13.4	14.8	11.5
노르웨이	14.5	12.6	11.4	12	18.5	12.7
폴란드	9.9	9.3	9	8.7	7.9	7.8b
포르투갈	8.2	6.8	6.9	5.9	5.6	3.7
루마니아	16.5	15.4	13.8	-	11.1	8.9
세르비아	36.4	-	38.7	36	24.7	23.8
슬로바키아	8.9	9.1	12.2	5.3	5	4.7
슬로베니아	7	6.7	6.1	6.6	5.1	6.3
스페인	8.4	8.1	8.1	7.8	7.1	8
스웨덴	11	11.7	15.1	14.7	17.1	13.6
스위스	17.2	18.6	18.1	19.5	21.6	20.6
영국	11.8	12.1	14.6b	18.5	-	-

주: 1) 16세 이상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0년 기준 국가별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살펴보면,
  - 그리스(29.4%), 세르비아(23.8%), 불가리아(22.0%), 스위스(20.6%)로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이 높은 반면, 사이프러스(2.2%), 몰타(3.1%), 리투아니아(3.3%)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보이고 있음. 한편, 전반적인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년도(2019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U SILC 주거비 과다부담률의 정의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내용출처-EUROSTAT(2019) Disability statistics-/housing conditions)

(3) 주거지 내 환경 문제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9.1	18.8	17.2(e)	17.8(e)	16.9(e)
목욕 및 샤워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0	2.9	3.0(e)	2.6(e)	2.5(e)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0	3.1	3.3(e)	2.8(e)	2.7(e)
너무 어두운 주거지에 살고 있음	7.2	7.1	6.8(e)	7.3(e)	7.1(e)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	21.5	20.9	21.1(e)	21.6(e)	21.0(e)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3	13.2	13.0(e)	13.8(e)	14.1(e)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6.6	13.3	15.0(e)	15.2(e)	14.9(e)
적절하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6	13.4	11.4	11.0	10.3(e)

주: 1) 16세 이상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19년 유럽연합 국가(26개 국가 평균, 영국 · 아이슬란드 제외)의 주거 내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6.9%,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4.9%,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4.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목욕 및 샤워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2.5%,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2.7%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남

4) 교육

(1) 학업중단율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18-29세)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3.9	24.3	24.0	20.3	20.8	10.9	9.9
오스트리아	18.5	22.1	22.6	22.6	16.5	8.6	7.9
벨기에	30.5	24.5	19.9	20.5	20.6	9.6	11.0
불가리아	44.0	40.0	42.8	41.0	34.9	19.5	15.4
크로아티아	15.9	15.0	19.4	17.0	21.9	2.8	19.1
사이프러스	18.0	23.5	21.7	16.5	18.6	7.3	11.3
체코	12.1	10.9	13.4	19.1	17.0	6.8	10.2
덴마크	17.1	13.6	11.6	12.2	7.8	8.7	-0.9
에스토니아	21.0	22.7	22.6	26.9	16.9	9.0	7.9
핀란드	11.9	17.0	13.6	16.1	14.9	4.2	10.7
프랑스	18.7	15.5	16.1	21.0	19.4	8.9	10.5
독일	22.9	26.8	27.7	26.3	26.1	7.0	19.1
그리스	28.5	17.3	12.4	17.1	17.5	4.6	12.9
헝가리	28.4	21.9	28.3	27.6	24.9	12.0	12.9
아이슬란드	37.2	16.7	-	-	-	-	-
아일랜드	16.7	24.1	40.0	25.6	9.5	4.0	5.5
이탈리아	24.4	22.1	30.8	25.6	28.9	18.7	10.2
라트비아	29.4	27.1	25.1	17.3	19.9	8.9	11.0
리투아니아	51.1	43.2	42.9	25.1	15.4	5.1	10.3
룩셈부르크	28.2	14.3	21.5	17.3	22.0	11.2	10.8
몰타	(64.5)	(49.6)	(63.0)	(44.9)	(43.9)	25.7	18.2
네덜란드	18.2	14.0	15.5	12.3	9.3	3.7	5.6
노르웨이	22.4	-	-	36.7	21.8	11.7	10.1
폴란드	14.0	18.8	16.7	11.8	14.9	4.5	10.4
포르투갈	39.6	35.9	31.6	32.8	32.0	16.4	15.6
루마니아	39.4	41.1	42.7	31.3	33.6	16.0	17.6
세르비아	28.6	22.3	33.4	21.6	25.8	7.9	17.9
슬로바키아	12.8	8.9	12.1	9.4	10.3	5.5	4.8
슬로베니아	5.4	8.1	8.8	6.0	7.8	3.7	4.1
스페인	47.3	45.7	45.5	31.2	33.9	21.1	12.8
스웨덴	(14.1)	(13.4)	(20.2)	11.7	(19.4)	6.0	13.4
스위스	10.6	10.0	7.3	-	8.4	4.4	4.0
영국	25.3	30.0	24.9	12.6	18.8	10.6	8.2

주: 1) 18-29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 ) 수치는 관찰자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20.8%로, 2017년 20.3% 대비 0.5%p 증가함
  -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은 10.9%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9.9%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불가리아 34.9%, 스페인 33.9%, 루마니아 33.6%, 포르투칼 32.0%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덴마크 7.8%, 슬로베니아 7.8%, 스위스 8.4%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독일 19.1%, 크로아티아 19.1%, 세르비아 17.9%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덴마크는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장애인에 비해 0.9% 높음

(2)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30-39세)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6.9	27.5	29.3	30.9	32.6	43.2	-10.6
오스트리아	21.8	28.6	29.7	32.4	36.0	45.7	-9.7
벨기에	28.5	30.6	33.4	32.3	36.3	54.0	-17.7
불가리아	14.4	12.5	14.4	15.1	13.7	32.6	-18.9
크로아티아	5.3	17.6	15.3	22.2	19.2	3.3	15.9
사이프러스	43.3	38.3	44.2	34.3	37.7	54.0	-16.3
체코	18.4	16.6	15.5	24.4	32.7	39.3	-6.6
덴마크	43.7	40.4	44.8	43.2	44.3	55.1	-10.8
에스토니아	28.0	36.8	34.4	30.8	45.1	51.0	-5.9
핀란드	45.6	41.4	42.2	40.3	41.1	48.8	-7.7
프랑스	35.4	32.4	35.0	37.8	38.0	48.9	-10.9
독일	20.7	18.7	15.6	20.6	18.7	40.4	-21.7
그리스	17.8	28.7	26.3	26.8	26.5	41.1	-14.6
헝가리	12.0	20.5	19.8	19.5	20.7	33.4	-12.7
아이슬란드	47.0	37.9	-	-	-	-	-
아일랜드	43.8	46.5	39.9	44.6	45.4	65.3	-19.9
이탈리아	17.3	20.7	20.7	18.0	22.3	26.1	-3.8
라트비아	22.2	24.8	26.5	41.1	37.3	46.9	-9.6
리투아니아	26.6	24.4	23.0	25.8	37.0	63.1	-26.1
룩셈부르크	31.6	33.1	34.4	27.4	34.4	49.5	-15.1
몰타	(9.9)	4.2	13.5	(15.9)	18.4	31.9	-13.5
네덜란드	36.7	36.4	42.0	43.6	47.0	58.2	-11.2
노르웨이	40.0	25.7	32.8	34.9	31.8	53.8	-22.0
폴란드	27.5	22.0	26.7	31.9	27.5	47.6	-20.1
포르투갈	18.3	21.3	22.1	27.0	29.1	33	-3.9
루마니아	12.4	15.4	25.5	22.5	21.7	26.2	-4.5
세르비아	17.2	10.7	13.6	15.3	17.7	29.9	-12.2
슬로바키아	26.8	33.1	30.0	25.4	22.7	31.8	-9.1
슬로베니아	28.9	29.2	33.6	35.1	36.9	44.8	-7.9
스페인	32.6	27.6	33.4	34.3	31.0	46.9	-15.9
스웨덴	33.9	31.3	44.8	33.0	29.0	51.1	-22.1
스위스	38.0	40.1	40.1	-	40.7	54.8	-14.1
영국	34.2	34.5	34.4	41.4	46.2	58.6	-12.4

주: 1) 30-39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 ) 수치는 관찰자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32.6%로, 2014년부터 증가추이임
  -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3.2%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0.6%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47.0%, 영국 46.2%, 아일랜드 45.4%, 에스토니아 45.1%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불가리아 13.7%, 세르비아 17.7%, 몰타 18.4%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리투아니아 26.1%, 스웨덴 22.1%, 노르웨이 22.0%, 독일 21.7%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크로아티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5.9%p 높음

5) 고용

(1) 고용률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48.7	47.4	48.1	50.6	52.0	76.2	-24.2
오스트리아	54.2	53.4	56.4	56.3	56.5	77.5	-21.0
벨기에	38.7	38.5	40.5	42.5	43.8	75.6	-31.8
불가리아	33.5	38.8	34.2	39.5	35.4	75.5	-40.1
크로아티아	28.3	33.8	35.0	33.8	34.3	68.3	-34.0
사이프러스	45.2	45.7	43.5	47.3	49.7	75.2	-25.5
체코	40.0	43.0	43.9	49.4	51.9	80.6	-28.7
덴마크	50.6	56.1	55.9	57.7	60.9	81	-20.1
에스토니아	55.1	58.5	56.8	62.2	64.3	85.2	-20.9
핀란드	55.2	53.8	53.9	54.4	58.3	75.9	-17.6
프랑스	52.0	52.5	56.3	55.5	57.2	75.4	-18.2
독일	59.7	50.8	48.9	51.8	50.0	81.4	-31.4
그리스	27.8	34.3	36.2	36.7	31.1	60.7	-29.6
헝가리	34.2	39.6	41.6	46.7	48.3	78.9	-30.6
아이슬란드	51.2	50.1	–	–	–	–	–
아일랜드	28.3	29.1	26.2	32.2	37.3	77.6	-40.3
이탈리아	49.8	49.5	48.9	51.8	51.9	67.1	-15.2
라트비아	54.9	57.3	58.2	61.8	61.1	80	-18.9
리투아니아	35.7	40.5	46.4	47.3	49.8	80.3	-30.5
룩셈부르크	57.8	53.7	52.2	53.0	51.1	70.1	-19.0
몰타	28.2	25.8	29.0	37.2	42.5	74.8	-32.3
네덜란드	48.3	52.2	53.6	58.5	60.6	83.5	-22.9
노르웨이	52.3	48.4	47.8	49.0	47.8	84.1	-36.3
폴란드	37.9	37.8	37.6	42.5	40.2	75.2	-35.0
포르투갈	48.1	51.1	50.5	56.1	58.4	77.4	-19.0
루마니아	41.9	43.4	43.5	43.7	45.5	74.2	-28.7
세르비아	25.8	23.6	22.9	25.2	25.7	54.1	-28.4
슬로바키아	52.8	53.4	52.3	57.7	56.5	79.7	-23.2
슬로베니아	46.4	51.8	51.2	53.7	55.6	74.5	-18.9
스페인	38.5	42.1	40.5	40.1	43.1	69.8	-26.7
스웨덴	56.6	52.2	52.0	52.6	52.7	81	-28.3
스위스	70.4	68.1	67.6	–	67.2	81.3	-14.1
영국	47.3	46.8	48.9	52.9	58.2	85.1	-26.9

주: 1) 20-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은 52.0%로, 2017년 50.6%에 비해 1.4%p 증가함
•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6.2%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4.2%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스위스 67.2%, 에스토니아 64.3%, 라트비아 61.1%, 덴마크 60.9% 네덜란드 60.6%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르비아 25.7%, 그리스 31.3%, 크로아티아 34.3%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40.3% 불가리아 40.1%, 노르웨이 36.3%, 폴란드 35.0%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임. 반면, 스위스 14.1%, 이탈리아 15.2%, 핀란드 17.6%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율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표 15-5-2〉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52.0	55.1	49.3	29.9	60.4
오스트리아	56.5	61.9	51.3	28.3	64.2
벨기에	43.8	47.6	40.5	20.2	55.5
불가리아	35.4	34.3	36.5	18.3	39.5
크로아티아	34.3	36.2	32.3	17.7	39.5
사이프러스	49.7	53.6	45.8	30.4	58.1
체코	51.9	54.1	50.7	31.1	59.6
덴마크	60.9	66.3	56.8	42.8	65.6
에스토니아	64.3	63.2	65.3	42.9	71.8
핀란드	58.3	54.4	61.7	25.7	65.4
프랑스	57.2	57.3	57.1	40.9	64.9
독일	50.0	54.4	46.1	23.8	61.7
그리스	31.1	36.1	26.7	23.4	36.9
헝가리	48.3	49.7	47.1	23.3	57
아일랜드	37.3	40.7	34.2	29.4	40.5
이탈리아	51.9	62.3	42.5	26.2	57.8
라트비아	61.1	59.5	62.4	28.8	67.5
리투아니아	49.8	48.4	50.9	20.1	54.8
룩셈부르크	51.1	59.6	44.2	40.7	56.4
몰타	42.5	53.7	31.3	34.2	44.5
네덜란드	60.6	65	57.1	30.7	67.5
노르웨이	47.8	46.9	48.4	23.3	58.5
폴란드	40.2	43	37.6	22.4	47.1
포르투갈	58.4	59.2	57.9	42.9	62.4
루마니아	45.5	56.2	37.1	12.7	52.9
세르비아	25.7	29.2	22.7	21.5	27.3
슬로바키아	56.5	59.1	54.2	31.2	64.7
슬로베니아	55.6	56.4	54.9	39.4	60.2
스페인	43.1	44.6	41.8	25.3	46.9
스웨덴	52.7	50.4	54.4	35.9	61.6
스위스	67.2	72.8	62.8	39.8	73.5
영국	58.2	59.6	57.1	33.9	74.0

주: 1) 2018년 기준이며, 20-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을 성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성이 55.1%로 여성 49.3%보다 5.8%p 높게 나타남
  • 경증은 60.4%로 중증의 29.9%보다 30.5%p 높게 나타남

– 국가별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42.9%, 포르투칼 42.9%, 덴마크 42.8%, 프랑스 40.9%, 룩셈부르크 40.7%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루마니아 12.7%, 크로아티아 17.7%, 불가리아 1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실업률

〈표 15-5-3〉 EU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19.6	20.2	19.6	17.1	16.7	8.0	8.7
오스트리아	18.4	18.1	16.7	15.4	15.6	5.0	10.6
벨기에	23.1	22.5	19.8	19.9	17.5	5.7	11.8
불가리아	34.2	28.8	26.7	22.4	21.8	12.9	8.9
크로아티아	39.1	36.9	34.0	34.7	33.0	16.9	16.1
사이프러스	26.3	26.5	28.1	21.9	24.7	11.3	13.4
체코	26.3	23.8	25.0	18.7	15.6	3.6	12.0
덴마크	16.2	15.0	15.3	15.8	12.6	5.1	7.5
에스토니아	10.5	9.5	10.3	8.3	8.9	4.8	4.1
핀란드	18.6	20.4	20.8	21.3	18.8	8.2	10.6
프랑스	17.1	16.8	17.1	17.1	17.1	8.5	8.6
독일	18.0	23.5	23.9	20.9	22.8	3.7	19.1
그리스	40.2	34.7	32.2	32.0	32.8	21.8	11.0
헝가리	25.6	20.2	17.9	14.7	15.4	5.3	10.1
아이슬란드	7.1	7.4	–	–	–	–	–
아일랜드	31.7	28.1	32.0	26.1	22.1	7.0	15.1
이탈리아	18.5	20.0	22.1	17.5	16.7	13.3	3.4
라트비아	18.9	16.2	15.7	14.1	13.6	8.3	5.3
리투아니아	31.7	25.0	20.3	20.9	20.0	8.9	11.1
룩셈부르크	11.0	12.8	12.1	12.2	13.4	6.2	7.2
몰타	18.7	17.6	14.4	9.0	5.6	1.6	4.0
네덜란드	12.5	11.2	10.0	7.0	6.9	2.6	4.3
노르웨이	5.9	9.4	9.9	11.9	10.5	3.3	7.2
폴란드	19.5	20.8	19.4	15.3	14.3	7.0	7.3
포르투갈	28.8	24.1	24.2	19.5	18.6	11.0	7.6
루마니아	5.1	4.3	3.9	2.9	0.9	0.8	0.1
세르비아	48.6	53.6	57.1	57.1	51.9	34.3	17.6
슬로바키아	18.3	17.0	17.0	13.3	13.2	6.9	6.3
슬로베니아	27.6	22.9	24.1	20.6	19.0	8.9	10.1
스페인	38.1	34.7	34.2	31.6	32.8	17.4	15.4
스웨덴	16.3	16.9	20.6	20.3	22.7	5.1	17.6
스위스	5.0	6.6	7.3	–	7.2	3.4	3.8
영국	10.4	11.2	8.7	8.5	6.6	2.8	3.8

주: 1) 20-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실업률은 16.7%로, 2017년 17.1%에 비해 0.4%p 감소함
  •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8.0%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8.7%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세르비아 51.9%, 크로아티아 33.0%, 그리스 32.8%, 스페인 32.8%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루마니아 0.9%, 몰타 5.6%, 영국 6.6%, 네덜란드 6.9%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률 차이를 살펴보면, 독일 19.1%, 스웨덴 17.6%, 세르비아 17.6%, 크로아티아 16.1%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루마니아 0.1%, 이탈리아 3.4%, 영국 3.8%, 스위스 3.8% 등은 실업율의 차이가 적은 편임

(3) 경제활동참가율

〈표 15-5-4〉 EU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60.6	59.5	59.7	61.0	62.4	82.9	-20.5
오스트리아	66.5	65.2	67.7	66.6	66.9	81.6	-14.7
벨기에	50.4	49.7	50.4	53.1	53.1	80.2	-27.1
불가리아	50.9	54.5	46.7	50.9	45.3	86.7	-41.4
크로아티아	46.5	53.5	53.1	51.7	51.2	82.2	-31.0
사이프러스	61.3	62.1	60.5	60.6	66.0	84.7	-18.7
체코	54.3	56.5	58.5	60.7	61.5	83.7	-22.2
덴마크	60.4	66.0	66.0	68.5	69.7	85.3	-15.6
에스토니아	61.6	64.6	63.3	67.8	70.6	89.5	-18.9
핀란드	67.8	67.5	68.1	69.1	71.8	82.6	-10.8
프랑스	62.7	63.0	67.9	66.9	69.0	82.4	-13.4
독일	72.8	66.3	64.3	65.4	64.7	84.6	-19.9
그리스	46.5	52.5	53.4	54.0	46.3	77.6	-31.3
헝가리	45.9	49.6	50.7	54.7	57.1	83.3	-26.2
아이슬란드	55.1	54.2	-	-	-	-	-
아일랜드	41.5	40.5	38.5	43.5	47.9	83.5	-35.6
이탈리아	61.1	62.0	62.7	62.8	62.3	77.5	-15.2
라트비아	67.6	68.3	69.0	72.0	70.6	87.3	-16.7
리투아니아	52.3	54.1	58.2	59.8	62.2	88.2	-26.0
룩셈부르크	64.9	61.6	59.4	60.3	59.0	74.7	-15.7
몰타	34.7	31.3	33.9	40.8	45.1	76.1	-31.0
네덜란드	55.2	58.7	59.5	62.9	65.0	85.8	-20.8
노르웨이	55.6	53.5	53.0	55.6	53.4	87	-33.6
폴란드	47.1	47.8	46.7	50.2	46.9	80.8	-33.9
포르투갈	67.5	67.3	66.7	69.7	71.8	86.9	-15.1
루마니아	44.1	45.3	45.3	45.0	45.9	74.8	-28.9
세르비아	50.3	50.9	53.3	58.7	53.5	82.4	-28.9
슬로바키아	64.6	64.3	63.0	66.5	65.1	85.6	-20.5
슬로베니아	64.1	67.2	67.4	67.7	68.6	81.8	-13.2
스페인	62.3	64.5	61.5	58.5	64.1	84.5	-20.4
스웨덴	67.6	62.9	65.4	66.0	68.1	85.4	-17.3
스위스	74.1	72.9	72.9	-	72.4	84.2	-11.8
영국	52.8	52.7	53.6	57.8	62.4	87.6	-25.2

주: 1) 20-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1) ANED(2018)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
2) ANED(2019)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EU SILC 2017)
3) ANED(2020)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 tables(EU SILC 2018)

- 2018년 유럽연합 국가(28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2017년 61.0%에 비해 1.4%p 증가함
  -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9%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20.5%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스위스 72.4%, 핀란드 71.8%, 포르투갈 71.8%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몰타 45.1%, 불가리아 45.3%, 루마니아 45.9% 등은 낮은 편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를 살펴보면, 불가리아 41.4%, 아일랜드 35.6%, 폴란드 33.9%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편임. 반면, 핀란드 10.8%, 스위스 11.8%, 슬로베니아 13.2% 등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6) 빈곤

(1)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표 15-6-1〉 EU국가 내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25.2	25.4	25.7	23.8	22.7	22.8e	–	–	–	–
오스트리아	19.7	17.2	16.6	16.7	16.1	17.8	17.3	20.7	5.6	15.1
벨기에	38.4	40.2	39.1	33.6	31.5	31.8b	33.5	34.3	7.9	26.4
불가리아	27.4	22.9	27.6	26.3	25.3	24.1	22.7	20.8	7.0	13.8
크로아티아	30.6	29.8	27.7	27.3	26.4	24.4	24.6	22.7	6.9	15.8
사이프러스	22.3	24.5	23.4	26.4	19.1	18.8	17.5	–	–	–
체코	27.1	23.1	22.3	20.1	16.6	18.7	19.6	18.3	2.8	15.5
덴마크	26.9	23.3	26.3	24.1	20.6	18.4	18.9	18.3	7.1	11.2
에스토니아	20.6	18.8	19.3	18.3	15.1	16.4	15.5	13.4	2.8	10.6
핀란드	20.5	22.3	22.7	20.0	20.8	19.5	19.1	19.6	7.2	12.4
프랑스	22.8	20.4	17.4	17.7	17.6	19.3	22.9b	–	–	–
독일	22.8	29.4	30.2	28.9	28.2	25.7	29.1b	28.9	7.0	21.9
그리스	37.0	30.1	33.8	32.4	35.2	39.6	34.0	31.9	12.8	19.1
헝가리	30.3	25.2	23.8	20.6	20.8	19.3	16.6	–	–	–
아이슬랜드	16.6	19.2	16.4	11.9	11.2	–	–	–	–	–
아일랜드	48.9	45.1	47.4	39.7	34.5	38.8	31.5b	38.2	8.6	29.6
이탈리아	19.5	20.4	22.1	21.2	22.1	23.0	22.3	23.6	11.4	12.2
라트비아	18.7	16.2	16.2	15.2	16.3	16.4	15.5	15.1	4.4	10.7
리투아니아	32.8	27.3	29.9	26.2	21.5	18.2	18.2	–	–	–
룩셈부르크	15.6	15.5	15.5	14.5	19.3	19.4	21.5b	–	–	–
몰타	39.0	34.6	34.5	28.3	21.4	15.1	19.9	–	–	–
네델란드	26.8	25.3	24.0	24.1	19.8	25.1	25.0	24.0	5.2	18.8
노르웨이	22.6	27.7	27.6	27.3	28.8	32.5	25.4	–	–	–
폴란드	20.7	21.6	21.8	19.4	21.5	17.9	17.5	–	–	–
포르투갈	23.1	21.2	19.8	16.3	15.8	14.3	11.0	–	–	–
루마니아	19.2	20.1	18.3	17.7	17.9	15.0	15.6	17.8	3.7	14.1
세르비아	38.3	36.6	41.7	36.1	34.6	39.2	39.3	–	–	–
슬로바키아	13.8	13.2	11.8	9.8	10.4	12.0	12.1	–	–	–
슬로베니아	18.0	13.9	15.0	13.4	12.4	12.8	16.9	–	–	–
스페인	34.2	30.6	32.9	31.4	28.7	34.0	24.0	21.4	10.2	11.2
스웨덴	29.8	27.3	27.3	24.4	26.3	21.9	24.6	19.4	7.4	12
스위스	10.8	11.8	13.4	13.5	13.6	14.6	12.7	–	–	–
영국	32.3	31.6	31.5	26.7b	22.9	–	–	–	–	–

주: 1) 16-59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의 격차가 큰 국가들을 살펴보면,
  • 아일랜드(29.6%p), 벨기에(26.4%p), 독일(21.9%p)순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10.6%p), 라트비아(10.7%p), 스페인(11.2%p)순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중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38.2%, 벨기에 34.3%, 그리스 31.9%순으로 나타났음

Europe 2020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 Europe 2020은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인구'의 구성요소로 낮은 노동강도를 포함시켰으며,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전에 의존하고 공통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기에 사회적 배제와 비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
– 낮은 노동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2)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 이후 빈곤 위험

〈표 15-6-2〉 EU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19.6	20	20.2	20.5	21.3	21.5e	–	–	–	–
오스트리아	16.1	16.6	16.1	15.7	16.3	16.5	16.5	17.8	11.8	6.0
벨기에	22.1	22.2	22.4	20.9	23.5	20.3b	21.2	19.5	10.7	8.8
불가리아	24	30.3	30.8	35.5	31.2	34.5	37.5	31.6	21.0	10.6
크로아티아	25.3	28.5	27.7	29	29.5	30	31.4	31.8	14.1	17.7
사이프러스	21.9	21.8	22.3	22.6	22.8	23.1	22.3	–	–	–
체코	14.1	13.7	14.1	16.2	19.1	20.2	19	12.7	6.5	6.2
덴마크	14.1	13.9	14.3	14.6	15.6	12.9	13.9	14.6	11.8	2.8
에스토니아	31.1	32.8	35	34.8	38.5	35.7	35.9	34	16.3	17.7
핀란드	17.7	16.7	15.4	14.2	15.4	15.6	15.7	13.5	10.3	3.2
프랑스	15.3	16	13.6	13.2	13.7	15.6	16.1b	–	–	–
독일	22.7	26	26.4	26.3	26.2	24.2	23.1b	22.1	13.9	8.2
그리스	19.8	19.8	18.9	18.9	16.6	17.7	17.7	18	19.0	–1.0
헝가리	14.3	14.4	14.9	15.3	16.6	18.3	19.7	–	–	–
아이슬랜드	9	9.1	9.2	12	9.6	–	–	–	–	–
아일랜드	20.3	22.3	26.6	24.5	28.4	23.5	22.6b	25.9	9.7	16.2
이탈리아	19.1	18.8	19.6	18.6	20.0	21.1	20.5	19.2p	19.6	–0.4
라트비아	27.3	30.3	33.6	32.8	37.3	36.7	33.7	37.5	17.7	19.8
리투아니아	24.5	30.6	31.8	35.1	35.0	31.3	32	–	–	–
룩셈부르크	16	16.5	17.8	18.3	20.3	20.2	19.9b	–	–	–
몰타	21	23.9	25.7	23.2	23.6	26.1	26.1	–	–	–
네델란드	14	12.7	15	15.3	15.5	17.1	17.9	21.4	11.1	10.3
노르웨이	14.7	18.8	16.6	14.9	16.4	20.1	17.6	–	–	–
폴란드	18.3	19	20.7	20.3	22.1	22.5	22.6	–	–	–
포르투갈	21.5	22.4	23.5	22.4	22.2	22.4	20.3	–	–	–
루마니아	20.4	21.6	21.7	22.2	25.4	26.4	26.1	26.1	19.1	7.0
세르비아	28.9	30.4	30.2	32.8	31.3	30.0	33.1	–	–	–
슬로바키아	11.2	10.9	10.2	11.4	11.4	11.1	13.0	–	–	–
슬로베니아	19.2	17.8	17.8	17.6	18.7	18.9	21.7	–	–	–
스페인	20.9	20.5	21.9	22.4	23.4	23.6	24.4	23.1	19.4	3.7
스웨덴	19.7	23	24.6	26.0	25.5	23.5	24.5	22.6	13.4	9.2
스위스	18.6	20.5	18.3	19.6	19	20.8	19.1	–	–	–
영국	21.5	21	19.8	22.9b	23.9	–	–	–	–	–

주: 1) 16-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위험 정도의 격차가 큰 국가들을 살펴보면,

- 라트비아(19.8%p), 크로아티아 · 에스토니아(17.7%p), 아일랜드(16.2%p),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리스의 경우 사회적 이전 이후 장애인이 빈곤해질 위험에 처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1.0%p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역시 장애인이 빈곤위험에 처해질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0.4%p낮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빈곤 비율의 경우 단순히 두 집단간의 차이가 적거나 많은 것에 대한 의미 보다는 전체적인 빈곤비율의 비교 또한 고려해서 해석해야함

– 2020년에 비하여 빈곤위험에 처할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라트비아,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이며, 스페인, 벨기에,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체코는 2020년에 비하여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위험에 처할 비율이 더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3) 물질적 박탈

〈표 15-6-3〉 EU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장애인(A)	비장애인(B)	차이(A-B)
유럽연합(평균)	12.1	11.3	10.8	10.0	9.2	8.7e	–	–	–	–
오스트리아	5.9	5.4	4.7	5.4	4.9	4.6	3.9	3.7	–	2.3
벨기에	9.5	9.3	8.9	8.1	8.2	7.6b	7.3	6.4	5.6	4.3
불가리아	45.7	45.2	45.2	44.7	35.9	34.9	33.1	25.1	7.9	10.4
크로아티아	18.6	19.1	18.2	16.9	14.2	12.9	13.1	11.0	7.0	7.1
사이프러스	19.3	16.4	14.1	15.4	13.9	10.5	11.9	–	6.9	–
체코	10.4	9.3	7.3	7.0	5.6	4.9	4.3	3.7	–	2.0
덴마크	6.8	6.2	5.9	5.7	5.8	5.7	5.2	5.1	2.8	4.4
에스토니아	10.7	8.5	9.7	8.3	6.8	6.7	6.0	4.0	7.1	3.0
핀란드	4.8	3.8	4.2	3.6	4.9	4.3	4.5	3.1	2.8	1.9
프랑스	7.3	6.3	6.3	5.6	7.0	7.9	7.4b	–	7.2	–
독일	7.8	8.4	8.4	7.5	6.6	5.7	8.1b	7.1	–	4.0
그리스	22.8	23.3	23.9	24.3	19.5	19.4	18.2	16.6	7.0	2.6
헝가리	29.0	25.6	21.2	20.2	15.2	12.8	12.6	–	12.8	–
아이슬랜드	4.9	5.5	5.1	2.9	1.7	–	–	–	–	–
아일랜드	16.0	16.3	12.3	10.3	8.1	11.0	8.5b	8.0	–	5.6
이탈리아	14.3	13.6	14.3	13.3	11.6	11.5	8.4	8.2p	8.6	3.1
라트비아	27.0	23.4	19.6	16.7	14.5	12.5	11.0	8.3	11.4p	4.6
리투아니아	22.3	24.9	21.4	19.3	17.5	14.9	12.4	–	–	–
룩셈부르크	2.9	2.6	3.8	2.0	2.1	1.7	2.2b	–	4.4	–
몰타	15.5	12.8	8.5	6.8	7.0	8.6	8.2	–	–	–
네델란드	7.0	5.0	5.9	4.8	4.6	5.0	4.0	3.6	–	3.0
노르웨이	3.0	4.8	4.8	6.0	4.7	6.2	5.2	–	–	–
폴란드	15.9	13.0	11.3	10.7	9.3	7.1	5.1	–	–	–
포르투갈	14.3	12.7	11.6	10.4	9.2	8.7	7.6	–	5.2	–
루마니아	30.6	25.6	25.7	23.6	20.4	18.2	16.8	16.0	–	5.3
세르비아	39.7	40.3	32.2	31.2	31.3	26.3	26.6	–	–	–
슬로바키아	11.6	12.5	10.8	9.4	9.7	10.9	9.5	–	–	–
슬로베니아	11.9	10.4	9.1	8.1	7.6	5.6	7.2	–	–	–
스페인	9.1	8.0	7.9	7.6	8.4	7.5	9.6	10.8	3.7	5.2
스웨덴	2.8	2.9	3.5	3.3	3.8	3.2	3.9	3.9	–	3.0
스위스	2.1	2.1	2.6	1.6	3.6	3.6	2.0	–	–	–
영국	11.4	9.4	8.9	7.4b	7.7	–	–	–	–	–

주: 1) 16-64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2018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6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2020년 이후 유럽연합평균는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의 격차가 큰 국가들을 살펴보면,
  • 불가리아(10.4%p), 크로아티아(7.1%p), 아일랜드(5.6%p), 루마니아(5.3%p), 스페인(5.2%p)순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1.9%p), 체코(2.0%p), 오스트리아(2.3%p), 그리스(2.6%p)는 비율의 격차가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하여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의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2020년도 33.1%에서 2021년도 25.1%로 심각한 물질절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이 8.0%p 낮아진 반면, 스페인의 경우 2020년 9.6%에서 2021년 10.8%로 1.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urope 2020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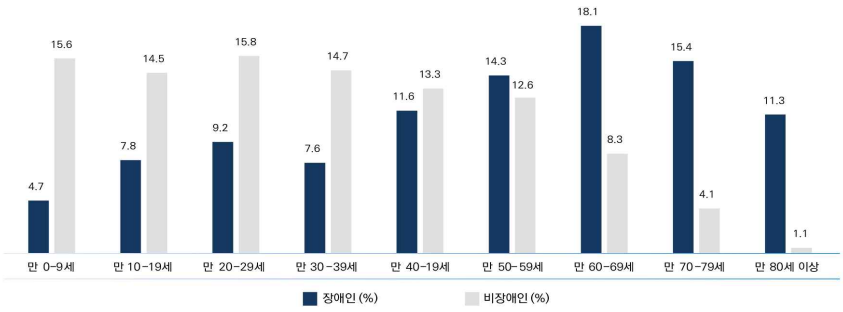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적으로 부족한 가구 비율을 나타낸다.

1.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체납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다음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9. 가정 내 적정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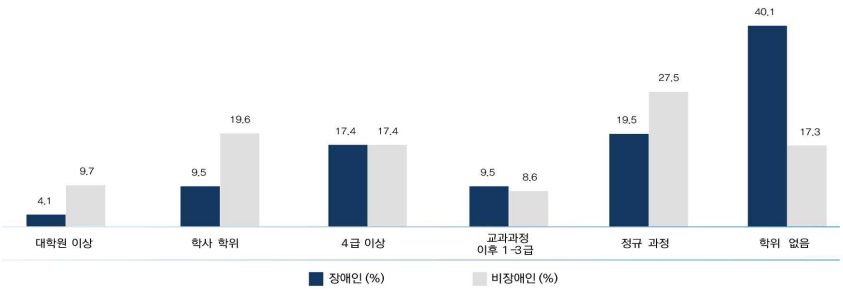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뉴질랜드

[그림 3-3-1] 장애인 및 비장애인 현황 - 연령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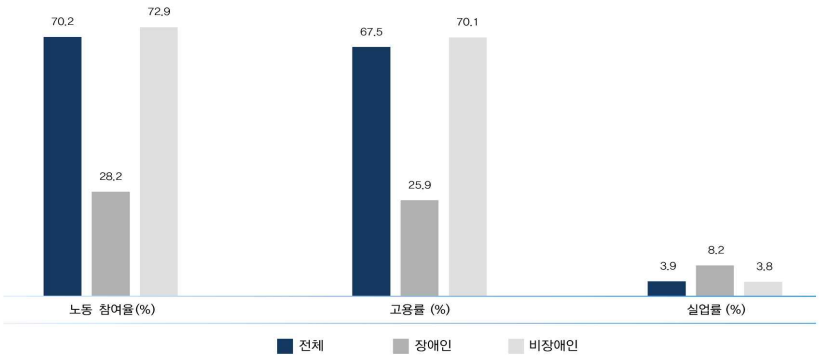
[그림 3-3-2]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최고 학력 현황(2021년)



- 2018년 기준 뉴질랜드의 총 장애인구는 약 1,150,000명으로,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만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12.4%, 만 20-59세 성인은 42.8%, 만 60세 이상은 44.8%임
  - 비장애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만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30.1%, 만 20-59세 성인은 56.4%, 만 60세 이상은 13.5%임

- 2021년 기준 뉴질랜드의 만 15세 이상 장애인(40.1%)은 만 15세 이상 비장애인(17.3%)에 비해 학위가 없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장애인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비율(13.6%)이 비장애인(29.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과정이 최고 학력인 비율 역시 장애인(19.5%)이 비장애인(27.5%)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3-3]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장애유무별(2021년)



- 2021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노동 참여율은 28.2%로 비장애인 72.9%에 비해 44.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은 25.9%로 비장애인 70.1%에 비해 44.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은 8.2%로 비장애인 3.8%에 비해 4.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6-1-1〉 장애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 연령별(2001/2013년)

(단위: 명, %)

구분	만 0 ~ 14 세		만 15세 이상		계	
	장애인구 수	비율	장애인구 수	비율	장애인구 수	비율
2001	92,000	11	669,000	23	762,000	20
2013	95,000	11	967,000	27	1,062,000	24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표 16-1-2〉 장애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 -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장애인구 수	비율	장애인구 수	비율	장애인구 수	비율
만 15세 미만	60,000	13	35,000	8	95,000	11
만15-44세	138,000	16	145,000	16	283,000	16
만 45-64세	149,000	28	165,000	28	314,000	28
만 65세 이상	169,000	58	201,000	60	370,000	59
모든 연령	516,000	24	545,000	24	1,062,000	24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 2013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총 1,062,000명으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24%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4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 장애인 수와 비율 모두 기존 2001년 조사보다 높게 조사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증가함
  -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구가 전체 인구의 59%로 조사된 반면, 만15세 이하의 아동은 11%로 조사됨
- 연령에 따른 성별의 차이 또한 확인됨
  - 만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확률(각 13%, 8%)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만 1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장애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기적인 제한을 주는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결정됨
- '장기 '는 6개월 이상으로 정의됨
- 보조 장치(예: 안경 또는 목발 등)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표 16-1-3〉 2018년 장애인 및 비장애인 수 추정 결과 - 연령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계	1,151,018	100.0	3,643,334	100.0
만 0-9세	53,660	4.7	566,560	15.6
만 10-19세	89,208	7.8	526,972	14.5
만 20-29세	105,842	9.2	576,121	15.8
만 30세-39세	87,656	7.6	536,707	14.7
만 40세-19세	133,675	11.6	485,963	13.3
만 50-59세	165,161	14.3	458,284	12.6
만 60-69세	207,953	18.1	302,374	8.3
만 70-79세	177,463	15.4	149,174	4.1
만 80세 이상	130,400	11.3	41,179	1.1

자료: CCS Disability Action (2019).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 CCS Disability Action이 2018년 뉴질랜드 인구 결과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추정치를 사용하여 2018년도 장애인 인구의 대략적인 수를 추정해본 결과, 2013년 대비 약 133,000여명의 장애인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2018년의 총 장애인구는 약 1,150,000명으로,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만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12.4%, 만 20-59세 성인은 42.8%, 만 60세 이상은 44.8%임
  - 비장애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만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30.1%, 만 20-59세 성인은 56.4%, 만 60세 이상은 13.5%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1-4〉 넓은 범위의 장애 유형별 장애 인구 - 성별, 연령별 (2013년)

(단위: 명)

구분	전체	감각	지체	지적	정신	기타
계	1,062,000	484,000	632,000	89,000	242,000	358,000
남	516,000	258,000	266,000	56,000	119,000	196,000
여	545,000	226,000	366,000	33,000	123,000	162,000
만 0-14세	95,000	18,000	13,000	22,000	38,000	70,000
만 15-44세	283,000	98,000	122,000	37,000	102,000	106,000
만 45-64세	314,000	162,000	190,000	17,000	67,000	93,000
만 65세 이상	370,000	206,000	307,000	13,000	35,000	88,000

주: 1) 2013년 기준
2) 모든 응답자는 하나 이상의 장애 유형에 속할 수 있음
3) '감각 장애는' 청각 및 시각 장애를 모두 포함함
4) '지체 장애'는 이동성과 운동 능력 손상을 모두 포함함
5) '기타'는 0-14세 아동의 언어, 학습, 발달 지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의 경우 언어, 학습, 기억 장애를 포함함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 장애 유형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신체 장애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14%(632,000명)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 15세 이상의 성인이 경험하는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장애 유형임
  -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확인 가능함

넓은 범위의 장애
- 감각, 지체, 지적, 정신, 기타로 나누어짐

상세 범위의 장애
- 청각, 시각, 이동, 민첩성, 지적, 정신/심리적, 언어, 학습, 기억력, 발달 지연으로 세분화됨

〈표 16-1-5〉 장애 발생 요인별 장애 인구 - 성별, 연령별 (2013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질병 및 질환	사고	선천적	노화	기타
계	1,062,000	42,000	320,000	142,000	290,000	283,000
	(100)	(41)	(31)	(14)	(28)	(24)
남	516,000	175,000	191,000	86,000	112,000	130,000
	(100)	(35)	(38)	(17)	(23)	(23)
여	545,000	245,000	129,000	57,000	199,000	153,000
	(100)	(46)	(24)	(11)	(34)	(26)
만 0-14세	95,000	21,000	3,000*	42,000	-	36,000
	(100)	(25)	(3)*	(49)	(-)	(33)
만 15-44세	283,000	93,000	83,000	61,000	10,000*	105,000*
	(100)	(34)	(31)	(22)	(4)*	(34)
만 45-64세	314,000	123,000	122,000	29,000	85,000	79,000*
	(100)	(40)	(40)	(10)	(28)	(23)
만 65세 이상	370,000	182,000	113,000	10,000*	194,000	63,000*
	(100)	(50)	(31)	(3)*	(53)	(16)

주: 1) 발생 요인은 하나 이상일 수 있음
2) 표시된 비율은 성별, 연령별 특정 장애원에 따른 인구 비율임.
3) 무응답 제외
4) '노화'는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에게만 질문됨
5) 응답자에게 적용 가능한 상위 범주의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결과가 산출됨에 따라 표시된 비율의 합산이 총계와 같지 않을 수 있음
* 상대표본오차: 30%이상 50%미만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 장애의 주요 원인은 질병 또는 질환으로 나타남
  - 장애 인구의 41%는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성인 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큰 장애 원인(42%)으로 조사됨
-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있으며, 성인 장애인 중 34%가 사고에 의한 결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성인의 약 절반 정도 (47%)가 직장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함
- 성인 장애의 세 번째로 큰 원인으로 '노화'(31%)를 들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53%가 노화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됨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선천적 원인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49%), 약 33%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발달 지연, 난독증 및 실행 장애 등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음

2) 교육

(1) 최고 학력

〈표 16-2-1〉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최고 학력 - 성별, 연령별 (2013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위 없음	1-4급 학교	교과과정 이후 1-6급	학사 학위 이상
장애인	계	839,000	275,000	272,000	193,000	99,000
		(100)	(33)	(32)	(23)	(12)
	남	400,000	127,000	120,000	110,000	43,000
		(100)	(32)	(30)	(27)	(11)
	여	439,000	148,000	151,000	83,000	57,000
		(100)	(34)	(34)	(19)	(13)
	만 15-44세	254,000	60,000	104,000	54,000	36,000
		(100)	(24)	(41)	(21)	(14)
	만 45-64세	291,000	90,000	88,000	73,000	39,000
		(100)	(31)	(30)	(25)	(13)
	만 65세 이상	294,000	124,000	80,000	66,000	24,000
		(100)	(42)	(27)	(22)	(8)
비장애인	계	2,427,000	362,000	900,000	564,000	601,000
		(100)	(15)	(37)	(23)	(25)
	남	1,188,000	179,000	432,000	301,000	276,000
		(100)	(15)	(36)	(25)	(23)
	여	1,238,000	183,000	468,000	263,000	324,000
		(100)	(15)	(38)	(21)	(26)
	만 15-44세	1,414,000	168,000	574,000	283,000	390,000
		(100)	(12)	(41)	(20)	(28)
	만 45-64세	774,000	114,000	253,000	227,000	180,000
		(100)	(15)	(33)	(29)	(23)
	만 65세 이상	238,000	80,000	73,000	55,000	30,000
		(100)	(34)	(31)	(23)	(13)

주: 1) 1-4급 자격은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과 해외 학교 학력이 포함됨
2) 졸업 후 1-6급 자격은 1-4자격증과, 5-6급 전문대 졸업을 포함함
* 상대표본오차: 30%이상 50%미만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 2013년 장애인 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의 67% 공식적인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비장애인(85%)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격차는 학사 학위 이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12%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25%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 결과,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큰 것으로 확인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공식적인 학위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2%), 만 45세에서 64세는 31%, 만 15세에서 45세는 24%로 조사됨
  - 특히, 만 65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했을 활률이 약 7%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았음
  -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장애인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비장애인 보다 낮은 최고 학력 수준을 보여줌

〈표 16-2-2〉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최고 학력 비율 -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

구분		대학원 이상	학사 학위	4급 이상	교과과정 이후 1-3급	정규 과정	학위 없음
전체	2017	8.2	18.0	16.1	10.1	28.2	19.4
	2018	8.5	18.8	16.4	10.2	28.1	18.1
	2019	9.3	18.7	16.3	10.2	27.5	18.2
	2020	9.7	19.2	16.7	9.8	27.1	17.5
	2021	9.3	18.9	17.4	8.7	27.0	18.6
장애인	2017	3.2	7.8	15.9	10.8	20.7	41.6
	2018	2.5	7.6	16.2	11.9	21.2	40.6
	2019	2.7	6.8	16.0	11.0	20.9	42.6
	2020	3.2	9.2	17.0	10.6	19.6	40.4
	2021	4.1	9.5	17.4	9.5	19.5	40.1
비장애인	2017	8.5	18.6	16.2	10.0	28.7	18.0
	2018	8.8	19.4	16.4	10.1	28.4	16.8
	2019	9.7	19.4	16.3	10.1	27.8	16.7
	2020	10.0	19.8	16.7	9.8	27.5	16.1
	2021	9.7	19.6	17.4	8.6	27.5	17.3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3)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가장 최근 조사된 2021년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장애인(40.1%)은 만 15세 이상 비장애인(17.3%)에 비해 학위가 없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 2021년 장애인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할 비율(13.6%)이 비장애인(29.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 과정이 최고 학력인 비율 역시 장애인(19.5%)이 비장애인(27.5%)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의 학사 학위 이상 비율이 11.0%였던 2017년 보다는 학위 취득률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2) 특수교육

〈표 16-2-3〉 ORS 지원을 받는 학생 수 - 지원 필요 수준별, 성별, 연도별 (2018-2021)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계	9,377	100.0	9,718	100.0	10,160	100.0	10,496	100.0
높음	7,059	75.3	7,276	74.9	7,634	75.1	7,917	75.4
매우 높음	2,284	24.4	2,430	25.0	2,526	24.9	2,579	24.6
확장	34	0.4	12	0.1	–	–	–	–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2021)

〈표 16-2-4〉 4분위 이하 학교 학생 수 (2009/2018년)

(단위: %)

구분	2009	2018	Change between 2009 and 2018
ORS 받는 학생	43.3	48.6	4.5
특수학교에서만 ORS 받는 학생	54.1	60.0	5.8
학생 전체	32.1	31.6	-0.5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2021)

- Ongoing Resourcing Scheme (ORS)는 특수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극소수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ORS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지원 필요 수준을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으로 구분하고,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됨

- 뉴질랜드는 모든 학교를 학교 주변 지역의 5가지 사회경제적 지표 (가구 소득, 부모의 직업군, 가구 밀집도, 부모 학력, 부모, 정부 지원 수혜 여부) 측정을 통해 1에 10까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며, 등급에 따라 정부의 지원 비중이 결정됨
- 2018년 CCS Disability Ac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RS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4분위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일 확률이 모든 학생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수학교의 등급 평가의 경우, ORS를 받는 학생들로부터 결정되는데, 이는 특수 학교의 대부분 학생이 ORS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특수 학교의 등급을 통해 ORS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특수학교에서만 ORS 지원을 받는 학생 중 4분위 이하 학교에 다닌는 비율은 60.0%로 전체 학생 31.6%에 비해 약 1.9배 높게 나타남

3) 고용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표 16-3-1〉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 실업자 수 및 비율 -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천명, %)

구분		노동시장			노동 비참여자 수	노동 가능 인구	노동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자 수	실업자 수	계					
전체	2017	2,548.6	125.9	2,674.5	1,145.6	3,820.0	70.0	66.7	4.7
	2018	2,642.2	122.5	2,764.7	1,139.5	3,904.2	70.8	67.7	4.4
	2019	2,680.2	109.0	2,789.1	1,183.6	3,972.7	70.2	67.5	3.9
	2020	2,723.6	111.8	2,835.4	1,239.1	4,074.5	69.6	66.8	3.9
	2021	2,770.4	111.3	2,881.7	1,224.5	4,106.1	70.2	67.5	3.9
장애인	2017	52.0	6.7	58.7	170.8	229.5	25.6	22.6	11.4
	2018	46.9	5.5	52.3	155.9	208.2	25.1	22.5	10.4
	2019	52.7	5.1	57.8	167.0	224.7	25.7	23.4	8.8
	2020	52.3	4.2	56.5	175.9	232.4	24.3	22.5	7.4
	2021	64.1	5.7	69.8	177.3	247.1	28.2	25.9	8.2
비장애인	2017	2,490.1	118.9	2,609.0	972.4	3,581.4	72.8	69.5	4.6
	2018	2,588.7	117.0	2,705.7	982.1	3,687.8	73.4	70.2	4.3
	2019	2,620.5	103.8	2,724.3	1,015.5	3,739.9	72.8	70.1	3.8
	2020	2,667.3	107.6	2,774.8	1,060.0	3,834.8	72.4	69.6	3.9
	2021	2,699.8	105.6	2,805.4	1,044.4	3,849.8	72.9	70.1	3.8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인구만 포함함
3)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력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임
4) 고용률은 고용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임
5) 실업률은 총 실업인구를 노동력으로 나눈 값
6)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7)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2021년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28.2%, 비장애인은 72.9%로, 44.7%의 큰 격차를 보임
- 고용률 역시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은 25.9%, 비장애인의 경우 70.1%로 44.2%의 격차를 보임
- 실업률 또한 장애인 8.2%, 비장애인 3.8%로, 양 4.4%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고용율 역시 3.3% 상승하였음
- 실업률의 경우 2020년 대비 2.1% 하락했으며, 2017년 대비 5.8% 하락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3-2〉 장애인 고용률 및 실업률 - 장애유무별, 성별, 연도별

(단위: %)

구분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2017	76.0	64.3	72.5	61.2	4.6	4.8
	2018	76.1	65.7	72.9	62.6	4.2	4.7
	2019	75.0	65.6	72.3	62.8	3.6	4.2
	2020	74.7	64.6	72.1	61.7	3.5	4.4
	2021	75.2	65.3	72.5	62.6	3.7	4.1
장애인	2017	28.7	22.6	25.8	19.7	10.0	13.1
	2018	26.8	23.6	23.9	21.3	10.9	10.0
	2019	29.7	21.7	27.1	19.9	9.0	8.6
	2020	26.0	22.7	24.6	20.5	5.5	9.4
	2021	31.8	24.9	29.0	23.1	8.9	7.3
비장애인	2017	78.9	67.0	75.4	63.9	4.5	4.6
	2018	78.8	68.1	75.6	65.0	4.1	4.6
	2019	77.7	68.2	75.0	65.3	3.5	4.1
	2020	77.7	67.2	75.0	64.3	3.5	4.3
	2021	77.9	68.0	75.1	65.2	3.5	4.0

주: 1) Disabled people are those who have at least a lot of difficulty seeing or hearing (even with glasses or hearing aids), walking or climbing stairs,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self-care, or communicating.
2) Those who have not specified a disability status are included in the totals only.
3)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2021년 발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남성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46.1%, 여성의 경우 43.1%로 남성 사이의 활동율 격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고용률 또한 남성의 격차가 46.1%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42.1%) 사이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 역시 남성(5.4%)이 여성(3.3%) 보다 큰 격차를 보임

(2) 고용 현황 및 근로 형태

〈표 16-3-3〉 만 15세 이상 업종별 고용률 -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6.1	6.2	6.1	5.9	6.1	8.5	10.2	10.8	8.5	9.6	6.1	6.2	6.0	5.9	6.0
제조 및 전기,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11.0	10.8	9.9	10.5	10.2	9.3	12.9	13.0	12.6	9.7	11.0	10.8	9.8	10.5	10.2
건설	9.4	9.4	9.3	10.0	10.3	11.7	8.5	10.6	9.1	8.5	9.4	9.4	9.2	10.0	10.3
도매 무역	4.6	4.2	4.0	4.0	4.0	3.1	3.5	3.0	2.6	2.8	4.6	4.2	4.1	4.0	4.0
소매업, 숙박 및 식품 서비스	14.7	14.5	15.3	14.4	14.3	14.2	11.3	12.7	11.6	14.6	14.8	14.6	15.3	14.5	14.3
운송, 우편 및 창고 보관	4.3	4.3	4.6	4.5	4.4	5.8	4.5	4.4	5.3	4.8	4.2	4.3	4.6	4.5	4.4
정보 매체 및 통신	1.8	1.8	1.5	1.5	1.4	S	2.8	S	S	S	1.8	1.8	1.5	1.5	1.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0	2.9	3.1	3.3	3.1	S	S	S	2.4	2.6	3.0	2.9	3.1	3.3	3.2
임대, 고용 및 부동산 서비스	2.0	2.0	2.2	2.0	2.4	2.5	2.4	2.8	2.8	3.7	2.0	2.0	2.2	2.0	2.3
전문, 과학, 기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12.5	13.0	13.5	12.7	12.2	9.2	11.9	11.2	11.3	10.8	12.6	13.0	13.5	12.7	12.2
행정 및 안전	5.5	5.8	5.8	6.2	6.0	3.5	4.4	5.5	4.3	4.2	5.6	5.8	5.8	6.3	6.0
교육	9.2	9.0	8.6	7.8	8.3	9.4	7.7	6.1	9.7	9.4	9.2	9.0	8.7	7.8	8.3
건강 관리 및 사회 지원	9.9	10.6	10.1	11.0	11.0	12.1	13.2	13.0	12.8	10.7	9.8	10.5	10.1	11.0	11.0
예술 및 기타	6.0	5.6	6.0	6.2	6.4	7.4	5.5	4.1	5.9	7.4	6.0	5.6	6.1	6.2	6.4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각 업종은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산업 분류, 2006을 사용하여 분류됨
3) 잔여 범주에 고용된 직원은 표에 표시되지 않음
4) 데이터의 신뢰성의 이유로 통합된 업종이 있음- 뉴질랜드 표준 산업 산출 범주(NZSIOC)에 부합하도록 통합됨
5)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6) 각 연도 6월 기준
S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억압됨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2021년 조사 결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소매업, 숙박 및 식품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전문, 과학, 기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10.8%), 건강 관리 및 사회 지원 (10.7%), 제조 및 전기,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9.7%) 순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과학, 기술, 관리 및 지원 서비스 (12.2%), 건강 관리 및 사회 지원 (11.0%), 건설 (10.3%)로 순으로 업종별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3-4〉 만 15세 이상 취업자 취업 형태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유급	고용주	자영업자 (직원 없음)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2017	81.8	6.1	11.3	0.7
	2018	81.9	6.2	11.1	0.8
	2019	81.7	6.1	11.5	0.7
	2020	80.2	6.2	12.7	0.8
	2021	80.0	6.8	12.4	0.8
장애인	2017	75.3	6.9	16.0	S
	2018	73.2	6.6	16.9	3.3
	2019	71.3	9.3	16.3	3.1
	2020	69.5	10.2	18.2	2.1
	2021	72.1	7.0	18.6	2.3
비장애인	2017	81.9	6.1	11.2	0.7
	2018	82.1	6.2	11.0	0.8
	2019	81.9	6.1	11.4	0.7
	2020	80.5	6.1	12.6	0.8
	2021	80.2	6.8	12.3	0.7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무응답 제외
3) '고용주': 자기 사업에 타인을 고용하는 자
4) '무급가족종사자': 가족 사업 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5)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6)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유급 형태의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의 유급 취업자가 7.1%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유급을 제외한 고용주, 직원 없이 운영하는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비율은 2017년부터 꾸준히 관찰됨

〈표 16-3-5〉 만 15세 이상 취업자 근로형태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일제	시간제	1인당 평균 주당 근무 시간	
		비율		실제 평균	
				%	시간
전체	2017	78.7	21.3	34.0	37.5
	2018	79.2	20.8	34.9	37.7
	2019	79.9	20.1	34.4	37.9
	2020	80.0	20.0	30.9	37.7
	2021	79.5	20.5	34.5	37.7
장애인	2017	66.5	33.5	27.4	33.5
	2018	63.4	36.6	29.2	33.4
	2019	69.4	30.6	29.3	35.4
	2020	68.5	31.5	25.5	35.0
	2021	66.9	33.1	28.8	34.8
비장애인	2017	79.0	21.0	34.2	37.6
	2018	79.5	20.5	35.0	37.8
	2019	80.1	19.9	34.5	38.0
	2020	80.2	19.8	31.0	37.7
	2021	79.8	20.2	34.6	37.7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시간제근로자: 통상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
3)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4)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전일제 근로자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이 장애인 대비 높으며,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시간제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주당 근무 시간 또한 비장애인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비율 및 평균 시간에 관련한 결과는 2017년부터 꾸준히 비슷한 결과를 시사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3) 실업

〈표 16-3-6〉 실업자 주요 활동 - 장애유무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양육	돌봄 (노인)	가사	자원봉사	학업 또는 훈련	자유 활동	자가 간병	그 외
전체	2017	11.8	2.2	20.2	3.1	20.3	31.3	7.9	3.2
	2018	11.9	2.2	21.9	2.5	19.5	32.5	7.1	2.5
	2019	12.5	2.2	20.4	2.6	18.8	31.0	7.9	4.5
	2020	13.1	1.9	18.2	1.6	18.0	36.4	7.9	2.9
	2021	12.8	2.1	21.1	2.4	17.3	32.8	8.0	3.4
장애인	2017	2.7	1.4	18.3	1.9	3.0	42.1	26.7	3.8
	2018	3.9	2.0	17.5	2.4	2.8	42.9	25.5	3.0
	2019	4.6	1.9	15.8	2.3	3.2	39.2	26.2	6.8
	2020	4.6	1.5	14.8	0.9	3.0	42.9	29.0	3.3
	2021	4.2	1.8	18.6	2.2	3.4	38.7	26.0	5.0
비장애인	2017	13.5	2.3	20.5	3.3	23.3	29.4	4.6	3.2
	2018	13.2	2.2	22.5	2.5	22.1	30.9	4.2	2.5
	2019	13.8	2.3	21.2	2.7	21.4	29.6	4.9	4.2
	2020	14.5	2.0	18.8	1.7	20.5	35.3	4.3	2.8
	2021	14.2	2.2	21.6	2.4	19.7	31.8	4.9	3.2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3)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실업자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자유 활동이 연도 및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자가 간병 (26.0%), 가사 (18.6%)가 뒤를 이었음
  - 비장애인의 경우 가사 (21.6%), 학업 또는 훈련 (19.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장애인 실업자 중 학업 또는 훈련을 주요 활동으로 보고한 비율은 3.4%에 불과함

4) 재정

(1) 장애 복지 관련 지출

〈표 16-4-1〉 장애 복지 관련 지출

(단위: 100만 NZD)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가 급여지원 수당 (SLP)	1,533	1,541	1,556	1,650	2,825
장애 지원	377	379	386	395	409
국가 장애 지원 서비스	1,183	1,256	1,358	1,599	1,659
특수 교육	410	429	447	515	641

자료: The Treasury (2021). 「Half Year Economic and Fiscal Update」

- 2021년 뉴질랜드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장애 복지 관련 지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재가 급여 지원 수당은 84.2%, 장애 지원은 8.5%, 국가 장애 지원 서비스는 40.2%, 특수교육 관련 지출은 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재가 급여지원 수당 (Supported Living Payment)
- **장애 및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향후 2년 이내에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또는 돌봄 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주당 수급임**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t)
-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등을 포함함
- 장애 정도가 심각한 개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자산 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됨

국가 장애 지원 서비스 (National Disability Support Services)
- 주거 요양, 지역사회 돌봄, 환경 지원 기금, 가족 돌봄 지원금, 기타 장애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함

(2) 장애 복지 관련 예산

〈표 16-4-2〉 장애인부 (Ministry for Disabled People) 설립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사회 개발	–	32.975	27.772	23.418	23.694	107.859	–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표 16-4-3〉 가구 내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급금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건강	–	11.000	17.000	22.000	22.000	72.000	–
사회 개발	–	6.000	9.000	12.000	12.000	39.000	–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표 16-4-4〉 뉴질랜드 소득 보험제도 수립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노동 시장	2.200	1.800	–	–	–	4.000	–
Tagged Contingency	–	47.150	4.950	2.050	2.050	56.200	0.350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표 16-4-5〉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 접근성 확대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사회 개발	–	2.000	3.000	3.000	3.000	11.000	–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표 16-4-6〉 장애 지원 서비스 비용 압박 해소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노동 시장	–	176.000	176.000	176.000	176.000	704.000	–
Tagged Contingency	31.000	–	–	–	–	31.000	–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표 16-4-7〉 장애 지원 제도 전환

(단위: 100만 NZD)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Operating Total	Capital Total
Tagged Contingency	–	14.600	17.500	27.400	40.500	100.000	

자료: New Zealand Government (2022). 「The state of wellbeing and equality for disabled people, their families, and whānau Wellbeing Budget 2022: A Secure Future」

- 2022년 5월 뉴질랜드는 정부예산안을 발표함
- 본 발표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공준 보건 기관 설립, 전문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의 가용성 증대,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계 사람들을 위한 1차 및 지역 사회 치료에 대한 투자, 장애 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 등의 국가 보건 시스템 변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장애인부 (w Ministry for Disabled People)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본 부처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융합 정책을 주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부는 2022/23년 3297만5000 NZD, 4년 간 총 1억 7859 NZD를 투자할 계획임
- 장애인부처 설립 외에도 장애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구 내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급금, 소득 보험제도 수립,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성 확대, 장애 지원 서비스 비용 압박 해소, 장애 지원제도 전환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3/24년부터 매년 370곳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장애 지원 서비스가 직면한 규모 및 비용 압박을 해소하고 추가 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위해 7억 3,500만 NZD를 투자할 계획임
- 장애 당사자 및 가족의 삶 및 지원 관련 선택권/통제권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전환을 위해 1억 NZD를 지출할 예정임

가구 내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급금

- 장애인부 또는 보건부를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장애 당사자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닌 가족 구성원에서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소득 보험제도

- 해고 또는 건강 및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상에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 (ACC))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ACC가 소득 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예정임
- 2024년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성됨

5) 복지

(1)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표 16-5-1〉 보건부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성별, 연령별 (2016/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6	증감률
	여성	남성	계	%		
계	15,747 (41)	22,595 (59)	38,342 (100)	100	36,047	6.4
만 0-4세	396	737	1,133	3.0	1,039	9.0
만 5-14세	2,783	7,034	9,817	25.6	8,606	14.1
만 15-24세	2,476	4,837	7,313	19.1	6,768	8.1
만 25-44세	3,111	3,913	7,024	18.3	6,793	3.4
만 45-64세	4,820	4,554	9,374	24.4	9,303	0.8
만 65-79세	2,078	1,465	3,543	9.2	3,447	2.8
만 80세 이상	83	55	138	0.4	91	51.6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 2018년 9월 기준 한 개 이상의 보건부 지원 장애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38,342명으로 집계됨
  - 2016년 이후 6.4%의 증감률을 보임
- 남성(59%) 이용자 수가 여성(41%)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서비스 이용자의 중위 연령은 26세로, 2014년 31세보다 낮아짐
- 2016년과 2018년 사이의 증감률은 젊은 연령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6년 이후 연령별 이용자 수의 가장 큰 변화는 14.1%의 증감률을 보인 만 5-14세 연령에서 나타남
  - 만 24세 이하 이용자 수가 40% 증가함
- 전체 뉴질랜드 전체 인구 대비 보건부에서 지원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만 5- 24세 연령이 집중되어 있음
  -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중, 남성의 경우 여성 이용자 대비 젊은 연령 층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남성 이용자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부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더 작게 나타남
  - 2018년 만 65세 이상의 보건부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총 3,681명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9.6%를 차지한 반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비율은 15.3%임

〈표 16-5-2〉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서비스 유형별 (2016/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8 이용자 수	2016 이용자 수	증감률
행동 지원 서비스 (BSS)	3,334	2,557	30.4
간병인 지원	21,233	19,539	8.7
지역사회 생활 (CiCL)	216	172	25.6
지역사회 재활	86	104	-17.3
지역사회 시설	6,782	6,791	-0.1
데이캐어 서비스	1,653	1,889	-12.5
강화된 개별 지원금(EIF)	396	432	-8.3
가족 지원 (FCC)	431	318	35.5
High and complex (H&C)	304	293	3.8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HCSS)	8,890	10,626	-16.3
개별 지원금 (IF)	5,338	3,483	53.3
임시 간호	3,740	2,544	47.0
생활 지원	4,215	3,705	13.8
노인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	878	838	5.1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 보건부의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거주 시설 배치 및 데이 케어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속적인감소 추세를 보임
- 개별 지원금 및 가족지원을 받고 있는 이용자 수는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건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가족 및 기타 비공식저인 지원 의존성에 눈에 띄는 전환점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임시 간호 서비스 이용 관련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이용자 수가 증가함
- 가정 및 기역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의 감소는 이용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뉴질랜드 보건부는 판단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5-3〉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2016/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6	증감률
	여성	남성	계	%		
계	15,747 (41)	22,595 (59)	38,342 (100)	100	36,047	6.4
지적	8,200	11,027	19,227	50	18,548	3.7
감작	540	556	1,096	3	1,125	-2.6
지체	4,975	3,687	8,662	23	8,824	-1.8
신경	140	163	303	1	333	-9.0
자폐 스펙트럼	1,765	7,093	8,858	23	7,014	26.3
그 외	127	69	196	1	203	-3.4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표 16-5-4〉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 지원 패키지 할당 수준별 (2016/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6	증감률
	여성	남성	계	%		
계	15,747 (41)	22,595 (59)	38,342 (100)	100	36,047	6.4
매우 높음	4,504	6,232	10,736	28.0	9,670	11.0
높음	5,773	8,290	14,063	36.7	12,831	9.6
중간	4,948	7,163	12,111	31.6	12,061	0.4
낮음	481	657	1,138	3.0	1,194	-4.7
매우 낮음	8	16	24	0.1	30	-20.0
정의되지 않음	33	237	270	0.7	261	3.4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 보건부 지원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50% 이상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비율은 2016년 51.5%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임
  - 이 이용자들 중 대부분은 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장애가 지체 장애인 이용자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4년 30.1%에서 2016년 24.5%로, 20108년 조사에서는 22.6%로 나타남
- 반면, 자폐 스펙트럼을 주요 장애로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비율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2014년 15.7%에서 2016년 19.5%로, 2018년에는 23.1%로 조사됨
  -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년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함
- 남성은 지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주요 장애가 신체적 장애인 이용자 수의 57%를 차지함
- 이용자의 4% 미만이 감각 또는 신경계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원 패키지 할당(SPA)'은 서비스 니즈 평가 및 서비스 조정 기관에서 이용자의 장애 지원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할당된 지원금 및 지원 서비스 범위를 나타냄
  - 서비스 할당은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지원 수준에 따라 분류됨
- 매우 높음 및 높음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낮음, 매우 낮음 수준의 이용자 비율은 감고하는 추세임
  -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중간, 높음, 매우 높음 수준의 지원을 받는 이용자 수가 증가함
  - 지원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은 이용자의 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남성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6) 사회적 환경

(1) 사회적지지

〈표 16-6-1〉 장애 복지 서비스 이용자 결혼 상태- 성별 (2016/2018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6			증감률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계	15,747	22,595	38,342	15,275	20,772	36,047	6.4
	(41)	(59)	(100)	(42)	(58)	(100)	
기혼/ 파트너 있음	1,073	669	1,742	1,077	665	1,742	0.0
파트너 없음/ 이혼	590	269	859	571	268	839	2.4
파트너 없음/ 미혼	3,958	5,842	9,800	3,715	5,404	9,119	7.5
무응답	10,126	15,815	25,941	9,912	14,435	24,347	6.5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표 16-6-2〉 지난 4주간 외로움을 느낀 정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혀 없음	53.0	61.7
아주 가끔	22.1	22.4
가끔	16.5	12.8
대부분/ 항상	8.3	3.1

자료: Statitics NZ (2018). 「General Social Survey 2018」

〈표 16-6-3〉 주요 공공시설 이용 어려움-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마트	병원	공원	대중교통	마트	병원	공원	대중교통
매우 편리	51.2	37.7	55.5	28.0	58.9	46.5	67.4	38.3
편리	33.7	41.1	34.1	30.3	33.9	41.5	29.1	29.5
어렵지도 쉽지도 않음	7.8	12.6	5.9	9.4	5.2	8.7	2.7	9.8
어려움/매우 어려움	7.3	8.7	4.5	32.3	2.0	3.3	0.9	22.3

자료: Statitics NZ (2018). 「General Social Survey 2018」

-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결혼을 하거니 파트너가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약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2016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미혼 및 파트너가 없는 장애인의 수는 2016년 9,119명에서 2018년 9,800명으로 약 7.5% 증가함

- 장애인이 비장인 대비 외로움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4주간 장애인의 8.3%가 외로움을 '대부분.항상' 느꼈다고 응답한 반면 비장애인은 3.1%로 조사됨

-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대비 주요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가장 큰 격차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및 의료기관 또는 병원 접근성에서 나타남
  -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다른 주요 시설에 비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음

〈표 16-6-4〉 지난 12개월 간 차별 경험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있음	23.0	16.9

자료: Statitics NZ (2018). 「General Social Survey 2018」

〈표 16-6-5〉 지난 12개월 간 차별 경험 빈도 – 성별, 연령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없음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3번 이상
계	861,000	737,000	21,000	35,000	67,000
남	406,000	344,000	1,000*	15,000	36,000
여	455,000	393,000	10,000*	20,000	31,000
만 15-44세	261,000	202,000	9,000	17,000	32,000
만 45세 이상	600,000	534,000	12,000*	18,000	35,000

* 상대표본오차: 30%이상 50%미만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차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됨
  • 23.0%의 장애인이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한 반면 비장애인은 19%가 차별을 경험함
  •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3번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주거환경

〈표 16-6-6〉 만 5세 이상 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 소유 주택 거주 비율 – 연령별 (2018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계	61.1	67.4
만 5-14세	47.5	64.5
만 15-29세	45.2	51.3
만 30-64세	55.5	70.7
만 65 이상	72.4	82.2

자료: Statitics NZ (2018) 「2018 Census」

〈표 16-6-7〉 보건부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 인구 주거 형태 – 성별 (2016/20108년)

(단위: 명, %)

구분	2018			2016	증감률
	여성	남성	계		
계	15,747 (41)	22,595 (59)	38,342 (100)	36,047	6.4
자가 또는 가족 소유 집	7,456	11,294	18,750	17,255	8.7
임대	2,653	3,774	6,427	5,449	17.9
정부지원 숙소	1,041	1,299	2,340	2,117	10.5
지역사회 주거용 주택	2,537	3,629	6,166	6,135	0.5
요양원/요양병원	379	344	723	652	10.9
은퇴촌	50	15	65	56	16.1
기숙/하숙	151	199	350	344	1.7
고정된 거처 없음	7	17	24	19	26.3
감옥	13	24	37	23	60.9
기타/ 알 수 없음	1,460	2,000	3,460	3,997	-13.4

자료: Ministry of Health. (2019).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2018 update」

- 2018년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은 61.1%로 조사됨
  - 비장애인은 67.4%로, 6.3%정도의 차이를 보임
-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연령은 만 5세에서 14세 층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아동의 절반 미만 (47.5%)이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64.5%의 비장애 아동의 가구와 17.0%의 격차를 보임
- 주택 소유 비율의 격차가 가장 적은 연령은 약 6.1%로의 격차로, 만 15에서 29세 층에서 나타남
  - 해당 연령대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조사됨

- 보건부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48.9%의 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6년 대비 8.7%의 증감률을 나타냄
  - 자가 또는 가족 구성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60%는 남성임
  - 그 뒤로 임대, 지역사회 주거용 주택, 기타/ 알 수 없음, 정부 지원 숙소 순으로 나타남

〈표 16-6-8〉 주택 가격 적정성 평가 - 장애유무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만 15-64세	65세 이상	만 15-64세	65세 이상
0-3	17.2	7.6	10.6	6.4
4-6	42.8	39.4	39.5	35.7
7-8	21.4	27.6	31.1	30.5
9-10	18.7	25.4	18.8	27.3

자료: Statitics NZ (2018). 「General Social Survey 2018」

〈표 16-6-9〉 습기 및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사는 인구 - 장애유무 (2018년)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습기	29.0	22.8
곰팡이	24.0	18.5

자료: Statitics NZ (2018) 「2018 Census」

- 자가 또는 임대 주택 가격의 적정성(임대료 또는 대출, 주택 유지 관리 비용, 보험, 전력 및 요금과 같은 주택 비용 모두 포함)을 0에서 10도 척도(10: 매우 적정, 0: 너무 비쌈)로 측정한 결과, 만 65세 미만 장애인의 60%가 6점 이하로 평가하였으며,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의 경우 50.1%가 6점 이하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함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3점 이하로 평가할 확률이 비장애인 대비 약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 65세 이상의 인구 사이의 불평등은 만 65세 미만의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연령층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주택 가격의 적성성을 낮게 평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습하고 곰팡이 문제가 있는 가구에 생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24.0%)이 비장애인 (18.5%) 보다 A4 크기 이상의 곰팡이가 핀 집에 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끔 또는 항상 습한 가구에 거주할 확률 역시 장애인(29.0%)이 비장애인(22.8%)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소득 수준

〈표 16-6-10〉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소득 수준

(단위: NZD)

구분		Median Income					Mean Income				
		주당				시급 및 급여	주당				시급 및 급여
		자영업	임금 및 급여	정부지원	모든 공급원		자영업	임금 및 급여	정부지원	모든 공급원	
전체	2017	700	960	336	623	24.40	1043	1106	314	814	28.81
	2018	729	997	341	675	25.00	1129	1139	322	862	29.69
	2019	767	1016	341	708	25.55	1150	1165	330	882	30.57
	2020	671	1062	364	665	27.00	1018	1209	355	868	32.09
	2021	767	1093	371	770	27.76	1233	1248	364	953	33.26
장애인	2017	420	852	341	342	21.24	663	908	349	458	25.55
	2018	575	863	350	360	23.50	899	967	359	493	26.92
	2019	575	920	360	391	23.50	841	974	370	506	27.21
	2020	500	900	390	400	25.00	892	1031	393	524	28.53
	2021	345	957	391	411	25.50	838	1006	395	549	30.33
비장애인	2017	710	960	335	665	24.47	1053	1110	308	837	28.87
	2018	729	997	341	720	25.00	1134	1142	316	882	29.73
	2019	767	1020	341	750	25.57	1159	1169	324	905	30.64
	2020	671	1065	360	724	27.00	1022	1212	348	889	32.14
	2021	767	1098	370	809	27.81	1246	1253	359	979	33.31

주: 1) 본 설문에서 장애인은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명시됨
2) 정부 지원은 지원금, 가족 세금 공제, 유급 육아 휴가, 학생 수당, 뉴질랜드(국가) 연금, 퇴역 군인 및 전쟁 연금 등을 포함함
3) 장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총 합계에만 포함됨
4) 각 연도 6월 기준

자료: Statistics NZ (2021).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June 2021 quarter」

-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고소득 비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만 15세 이상의 임금 및 급여를 받는 근로 장애인의 주급의 중앙값은 약 $957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비장애인 대비 $141 적은 수준임
- 시간당 수당에서 역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임금 및 급여를 받는 근로 장애인의 시급 중앙값은 $25.50로 비장애인 ($27.81) 대비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6-11〉 빈곤 기준 이하 가구 소득

(단위: %)

구분	장애자녀가 있는 가구	장애자녀가 없는 가구
25,001 NZD 이하	13.9	9.6
30,00 NZD 이하	17.7	10.8
40,000 NZD 이하	27.8	18.3

자료: Statistics NZ (2014). 「Disability Survey: 2013」

〈표 16-6-12〉 일상생활 관련 소득 적정성 평가

(단위: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만 15-64세	65세 이상	만 15-64세	65세 이상
충분하지 않음	24.9	9.4	10.1	6.4
겨우 충족됨	37.7	30.4	27.2	23.2
충분함	29.0	43.8	43.8	51.9
충분 이상	8.5	16.4	19.0	18.6

자료: Statitics NZ (2018). 「General Social Survey 2018」

- 뉴질랜드의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 대비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장애인 조사 결과,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1.4에서 1.6배 정도 빈곤 기준 이하 가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 대비 소득 적정성을 2.5배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구의 사이의 소득 관련 적정성 격차는 만 65세 미만의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남

7) 정신건강

(1) 서비스 이용자

〈표 16-7-1〉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마오리	태평양계	아시안	그 외
전체		184,711	53,236	10,819	9,283	111,373
성별	남자	94,978	28,929	6,506	4,241	55,302
	여자	89,733	24,307	4,313	5,042	56,071
연령별	0-	1,770	559	159	167	885
	5-	8,543	2,440	439	396	5,268
	10-	17,372	5,773	995	765	9,839
	15-	22,790	7,128	1,458	1,160	13,044
	20-	19,154	6,489	1,332	1,049	10,284
	25-	19,400	6,613	1,352	1,118	10,317
	30-	17,339	5,758	1,161	1,068	9,352
	35-	13,820	4,332	912	873	7,703
	40-	12,000	3,644	747	595	7,014
	45-	12,205	3,387	671	445	7,702
	50-	10,488	2,718	513	390	6,867
	55-	8,797	1,960	366	336	6,135
	60-	6,225	1,065	254	283	4,623
	65-	4,160	559	157	206	3,238
	70-	3,419	357	117	158	2,787
	75-	2,777	219	89	110	2,359
	80-	2,135	148	52	104	1,831
	85+	2,317	87	45	60	2,125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2019/20년에는 총 184,711명의 이용자가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이용함
  - 이 중 남성이 94,978명(51%), 여성은 89,733명(49%)으로 집계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2〉 인구 대비 서비스 이용자 비율-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마오리	태평양계	아시안	그 외
전체		3,630.5	6,256.6	3,152.3	1,097.3	3,654.2
성별	남자	3,760.2	6,831.3	3,751.8	1,011.3	3,663.2
	여자	3,502.6	5,687.2	2,540.0	1,181.9	3,645.4
연령표준화율(ASR)		3,860.2	6,400.7	3,133.5	1,139.1	4,177.7
연령별	0-	579.8	662.6	542.1	274.4	677.0
	5-	2,586.7	2,770.2	1,373.2	691.7	3,444.0
	10-	5,224.5	6,496.0	3,092.9	1,686.9	5,922.8
	15-	7,135.5	9,170.2	4,665.6	2,410.6	8,037.5
	20-	5,732.5	9,208.2	4,149.5	1,573.2	6,237.3
	25-	5,112.9	9,823.2	4,499.2	1,173.9	5,522.4
	30-	4,717.8	9,949.9	4,700.4	1,082.1	5,021.2
	35-	4,141.9	9,193.5	4,359.5	997.3	4,325.6
	40-	3,889.4	8,056.6	3,718.3	961.1	3,868.7
	45-	3,648.4	7,056.3	3,365.1	888.2	3,557.7
	50-	3,188.4	6,053.5	2,645.7	924.6	3,086.7
	55-	2,683.5	4,650.1	2,269.1	878.7	2,652.4
	60-	2,143.3	3,261.9	2,125.5	879.7	2,163.6
	65-	1,672.9	2,390.9	1,704.7	809.7	1,698.5
	70-	1,602.9	2,330.3	1,836.7	967.5	1,590.0
	75-	1,886.9	2,372.7	2,264.6	1,160.3	1,894.3
	80-	2,190.0	2,954.1	2,311.1	1,635.2	2,183.1
	85+	2,611.0	2,735.8	3,082.2	1,500.0	2,652.9

주: 1) 연령별 비율은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 이용자 수 빈도를 측정한 값임
2) 연령표준화율(ASR)은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세계 인구 기준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임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세계 인구 기준 표준화된 인구집단별 10만 명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마오리족이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오리족은 마오리 인구 10만명당 6,400.7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아시안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1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7-3〉 지역 보건 위원회 (DHBs)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마오리	태평양계	아시안	그 외
전체		149,086	39,304	8,834	8,056	92,892
성별	남자	77,174	21,538	5,298	3,724	46,614
	여자	71,912	17,766	3,536	4,332	46,278
연령별	0-	1,459	414	135	157	753
	5-	7,316	1,979	395	371	4,571
	10-	13,557	3,792	717	681	8,367
	15-	18,413	5,273	1,125	1,043	10,972
	20-	15,914	5,099	1,131	941	8,743
	25-	15,578	4,972	1,131	967	8,508
	30-	13,597	4,166	952	911	7,568
	35-	10,853	3,155	748	723	6,227
	40-	9,430	2,637	605	475	5,713
	45-	9,727	2,522	565	361	6,279
	50-	8,318	1,980	424	312	5,602
	55-	6,956	1,467	293	282	4,914
	60-	4,982	779	194	244	3,765
	65-	3,394	405	137	190	2,662
	70-	2,924	291	109	139	2,385
	75-	2,482	174	82	102	2,124
	80-	1,977	127	48	98	1,704
	85+	2,209	72	43	59	2,035

주: 일부 이용자는 NGO와 지역 보건 위원회(DHB)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함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4〉 NGOs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마오리	태평양계	아시안	그 외
전체		77,007	27,834	4,484	2,966	41,723
성별	남자	39,377	14,940	2,709	1,341	20,387
	여자	37,630	12,894	1,775	1,625	21,336
연령별	0-	360	163	26	11	160
	5-	1,807	651	58	43	1,055
	10-	6,171	2,776	371	149	2,875
	15-	9,284	3,639	599	290	4,756
	20-	8,331	3,423	529	340	4,039
	25-	8,970	3,647	563	391	4,369
	30-	8,243	3,288	560	386	4,009
	35-	6,591	2,490	445	369	3,287
	40-	5,763	2,121	358	253	3,031
	45-	5,779	1,928	324	191	3,336
	50-	4,933	1,543	249	163	2,978
	55-	4,138	1,077	171	134	2,756
	60-	2,844	571	125	103	2,045
	65-	1,622	277	58	65	1,222
	70-	1,036	120	23	45	848
	75-	592	62	15	16	499
	80-	325	37	5	13	270
	85+	218	21	5	4	188

주: 1) 일부 이용자는 NGO와 지역 보건 위원회 (DHB)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함

3) 일부 NGO는 2019/20년 사이 보고를 시작하거나 중단했으므로, 본 표가 모든 조직의 전체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2019/20년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는 총 149,086명이며, NGO 이용자 수는 77,007명으로 조사됨
  - 일부 이용자는 지역 보건 위원회와 NGO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7-5〉 지역박탈 5분위 서비스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계	1	2	3	4	5	Unkonown
전체		184,711	26,482	31,794	38,371	52,686	63,470	954
성별	남자	94,978	12,717	15,991	19,455	27,571	34,455	564
	여자	89,733	13,765	15,803	18,916	25,115	29,015	390
연령별	0-	1,770	262	298	331	402	556	9
	5-	8,543	1,496	1,549	1,817	1,958	2,280	12
	10-	17,372	3,007	3,102	3,393	3,974	5,285	24
	15-	22,790	4,037	4,241	4,702	5,956	7,231	98
	20-	19,154	2,740	3,368	4,036	5,885	7,300	122
	25-	19,400	2,480	3,203	4,056	6,089	7,656	161
	30-	17,339	2,266	2,905	3,555	5,212	6,666	97
	35-	13,820	1,752	2,307	2,943	4,257	5,096	103
	40-	12,000	1,487	1,925	2,474	3,618	4,512	71
	45-	12,205	1,567	2,023	2,443	3,684	4,333	90
	50-	10,488	1,338	1,729	2,054	3,179	3,645	56
	55-	8,797	1,050	1,408	1,818	2,593	2,987	55
	60-	6,225	754	982	1,324	1,812	1,978	23
	65-	4,160	569	691	884	1,208	1,246	17
	70-	3,419	535	594	744	962	922	6
	75-	2,777	402	541	678	745	716	3
	80-	2,135	345	418	529	534	543	3
	85+	2,317	395	510	590	618	518	4

주: 1) 지역박탈 분위는 2013년 인구 및 주거 조사의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작은 지리적 영역에 대해 계산된 사회경제적 상태의 척도임
2) 일부 이용자가 2019/20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deprivation quintiles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본 표에 표시된 deprivation quintiles의 합계는 같은 기간의 서비스 이용사 수보다 많게 나타남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6〉 인구 대비 지역박탈 5분위 서비스 이용자 비율 - 연령별, 성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1	2	3	4	5
전체		2537.1	3097.2	3796.7	5260.2	6335.3
성별	남자	2439.9	3122.0	3868.5	5564.6	6986.1
	여자	2633.9	3072.5	3725.6	4962.2	5704.3
연령표준화율(ASR)		2921.1	3411.1	4058.9	5490.4	6522.0
연령별	0-	491.4	533.8	568.5	658.0	723.0
	5-	2155.5	2484.5	2992.8	3250.8	2996.1
	10-	4120.0	4793.0	5587.9	6691.6	7092.9
	15-	6345.7	7194.7	8167.0	9422.7	9701.6
	20-	5278.2	5775.6	6028.3	7651.5	8635.1
	25-	4428.6	4438.0	4958.0	7080.1	9073.8
	30-	3656.5	3847.4	4423.5	6460.4	8940.5
	35-	2555.0	3291.6	4245.5	6495.8	8309.4
	40-	2057.4	2893.2	4043.1	6420.8	8660.2
	45-	1916.4	2801.5	3775.4	6328.0	7881.5
	50-	1678.0	2444.9	3214.1	5507.3	6754.7
	55-	1332.6	1988.1	2834.9	4402.4	5638.6
	60-	1088.1	1560.6	2288.4	3421.4	4201.5
	65-	997.4	1288.4	1770.3	2590.2	3121.1
	70-	1178.8	1317.8	1706.7	2274.7	2558.4
	75-	1406.4	1784.7	2222.0	2357.0	2817.2
	80-	1951.0	2157.0	2593.1	2417.9	3163.4
	85+	2556.9	2997.7	3150.6	2838.2	3370.8

주: 1) 연령별 비율은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 이용자 수 빈도를 측정한 값임
2) 연령표준화율(ASR)은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세계 인구 기준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임
3) 1) Deprivation quintiles은 2013년 인구 및 주거 조사의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작은 지리적 영역에 대해 계산된 사회경제적 상태의 척도임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지역 박탈지수 5분위에 사는 사람들은 1분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2.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박탈 지수 5분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6522.0명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박탈지수 1분위의 경우 10만 명당 2921.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7-7〉 서비스 제공 팀별 이용자 수 - DHB/NGO (2020년)

(단위: 명, %)

구분	DHB		NGO	
	명	%	명	%
입원팀	10,599	5.9	12	0
지역사회 팀	112,922	63.3	51,359	58.7
알코올 및 마약 팀	30,041	16.8	22,872	26.1
범의학 팀	7,193	4	750	0.9
주거팀	47	0	6,651	7.6
중복문제 팀	1,122	0.6	1,630	1.9
지적장애 이중진단 팀	701	0.4	2	0
전문팀	7,546	4.2	1,403	1.6
산모 정신건강 팀	3,970	2.2	1,335	1.5
섭식장애 팀	1,446	0.8	91	0.1
니즈 평가 및 서비스 조정 팀	1,385	0.8	1,163	1.3
전문심리치료팀	157	0.1	0	0
조기 개입 팀	1,332	0.7	297	0.3

주: 1) 하나 이상의 팀 유형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는 각 관련 팀 유형에 표기됨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는 이용자 63%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사회 팀에서 제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코올 및 마약팀(17%)에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남
- NGO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팀은 이용자 59%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사회 팀이었으며, 알코올 및 마약팀이 이용자에 26%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8〉 서비스 장기 이용자 수 - 연령별, 성별 (2020년)

(단위: 명)

구분	전체	1년 이상	2년 이상
계	57,380	35,502	21,878
남	30,181	18,341	11,840
여	27,199	17,161	10,038
만 0-19세	7,751	5,908	1,843
만 20-64세	45,183	26,891	18,292
만 65세 이상	4,446	2,703	1,743

주: 1) 2020년 6월 30일 기준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정신건강 및 중독 관련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2019/20년 35,50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1,878명이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 이용자 분포는 만 20세에서 64세 사이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 수는 만 0에서 19세가 만 65세 이상의 2.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년 이상 이용자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16-7-9〉 DHB 제공 활동 유형별 이용자 및 활동 수 (2020년)

(단위: 명, 개)

구분	이용자 수	활동 수
개별 치료 참석: 가족 부재	105,953	1,397,698
케어/조정 연락	80,302	440,700
정신 건강 급성 입원 환자	9,006	189,278
가족과의 접촉	43,721	180,836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출석	39,579	161,517
가족과의 접촉: 이용자 부재	38,327	151,354
불참	40,709	116,506
그룹 프로그램 세션 참석	11,251	86,694
분류 및 선별	36,181	68,276
중간 보안 입원	422	61,084
정신 장애 재활 입원	324	53,212
정신 건강 집중 치료 입원	4,144	52,154
메타돈 치료 전문 서비스 출석	4,011	46,903
휴가	4,155	36,946
통합된 마오리족 및 임상 개입	4,021	23,780
커뮤니티 지원 연락	2,785	20,136
최소 보안 입원	75	15,025
정신 건강 아급성 입원	577	13,387
주간 활동 프로그램 참석	448	9,983
취업 활동	742	9,584
동료 지원	671	8,524
입원	39	7,791
법원 연락관 출석	3,328	7,541
약물 남용 금단 관리/해독 입원 (의료)	872	6,543
범죄수사	36	4,871
메타돈 치료 전문가 서비스 출석	1,078	4,599
격리	1,212	3,654
마오리족 특정 개입	984	3,476
ECT	228	3,022
요구 사항 최종 평가	1,623	2,793
지역 사회 거주자 입원	43	2,306
위기 임시 간호	328	2,280
약물 남용 주거 서비스 이용자 입원	63	2,189
태평양계 및 그 외 집단 문화 활동	231	2,053
약물 남용 해독 출석(소셜)	480	2,049
기타 문화 관련 활동	404	2,039
주거 시설 이용	40	1,441
데이 케어 프로그램 참석	141	1,119
정신 질환 및 중독이 있는 부모를 위한 지원	235	670
가족지원	244	529
옹호활동	230	397
계획된 임시 간호	23	233
정신 질환 및 중독이 있는 부모의 자녀 지원	34	95

주: 1)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2) 일부 이용자는 NGO와 DHB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함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10〉 NGOs 제공 활동 유형별 이용자 및 활동 수 서비스 제공 기관별.

(단위: 명, 개)

구분	이용자 수	활동 수
지역사회 지원 연락	18,523	632,599
개별 치료 참석: 가족 부재	32,840	348,946
주거 시설 이용	838	215,178
케어/ 조정 연락	28,215	183,555
야간 대응이 가능한 주거 시설 입원	1,081	163,777
불참	26,046	107,029
약물 남용 주거 서비스 입원	1,686	106,526
그룹 프로그램 세션 참석	8,632	102,523
주간 활동 프로그램 참석	4,865	94,150
계획된 임시 간호	1,771	87,215
동료 지원	4,891	65,855
취업 활동	3,330	49,341
가족 접촉: 이용자 부재	11,234	48,885
가족 접촉	10,689	45,059
분류 및 선별	17,640	43,740
지역 사회 거주자 입원	144	41,304
마오리족 특정 개입	3,125	35,008
위기 임시 간호	3,890	33,895
정신 건강 위기 출석	12,545	26,723
통합된 마오리족 임상 개입	3,216	23,052
휴가	833	19,837
가족 지원	2,464	16,641
데이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참석	1,242	12,560
정신 건강 아급성 입원 환자	49	9,094
범죄수사	40	8,695
중복 장애 주거 서비스	84	8,351
옹호활동	1,965	7,181
약물 남용 금단 관리/해독 입원(의료)	830	6,882
최소 보안 입원	21	6,784
요구 사항 최종 평가	1,899	4,364
법원 연락관 출석	909	3,876
정신 장애 재활 입원	48	2,717
정신 질환 및 중독이 있는 부모의 자녀 지원(COPMIA)	249	1,445
태평양계 및 그 외 집단 문화 활동	324	1,255
정신 질환 및 중독이 있는 부모를 위한 지원	163	889
기타 문화 관련 활동	327	780
약물 남용 해독 출석(소셜)	154	253
정신 건강 급성 입원	6	68
메타돈 치료 전문 서비스 출석	23	34
메타돈 치료 전문가 서비스 출석	2	2
정신 건강 집중 치료 입원	3	0
입원	2	0

주: 1)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2) 입원 활동의 활동수 가 0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활동수가 아닌 입원 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임- 입원 시간이 자정을 넘기지 않음
3) 일부 이용자는 NGO와 DHB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함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2019/20년에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제공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활동(또는 서비스)은 가족이 부재한 상태의 '개별 치료 참석'이었으며, 이는 지역 보건위원회에서 제공된 모든 서비스의 44%를 차지함
- 반면, 같은 시기 NGO가 제공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활동/서비스는 제공된 전체 서비스의 25%를 차지한 '지역사회 지원 연락'인 것으로 조사됨

〈표 16-7-11〉 정신 건강법, 특수환자, 약물중독법 상의 이용자 수

(단위: 명)

구분		정신건강법		특수 환자		약물중독 (SACAT) 법	
		명	연령표준화율(ASR)	명	연령표준화율(ASR)	명	연령표준화율(ASR)
2008/09	계	7,354	147.1	347.00	8.5	–	–
	남성	4,295	183.3	291.00	12.9	–	–
	여성	3,059	113.9	56.00	2.8	–	–
2009/10	계	7,937	159.8	369.00	8.5	–	–
	남성	4,664	200.7	312.00	14	–	–
	여성	3,273	122.2	57.00	3.1	–	–
2010/11	계	8,300	168.6	363.00	8.4	–	–
	남성	4,887	212.6	307.00	13.6	–	–
	여성	3,413	128.2	56.00	3.4	–	–
2011/12	계	8,151	167.2	349.00	9.1	–	–
	남성	4,786	210.8	298.00	14.7	–	–
	여성	3,365	127	51.00	2.4	–	–
2012/13	계	8,612	177.7	338.00	7.6	–	–
	남성	5,106	226	287.00	13.3	–	–
	여성	3,506	133.1	51.00	2.2	–	–
2013/14	계	9,180	188.2	388.00	8.7	–	–
	남성	5,474	240	334.00	15.3	–	–
	여성	3,706	139.7	54.00	2.3	–	–
2014/15	계	9,333	188.4	397.00	9.6	–	–
	남성	5,525	234.9	339.00	15.2	–	–
	여성	3,808	144	58.00	3.2	–	–
2015/16	계	9,716	192.3	374.00	8.5	–	–
	남성	5,758	237.5	318.00	13.8	–	–
	여성	3,958	148.8	56.00	2.3	–	–
2016/17	계	10,176	198.8	375.00	9.4	–	–
	남성	5,987	241.9	326.00	14.7	–	–
	여성	4,189	156.5	49.00	2.1	–	–
2017/18	계	10,474	202.6	399.00	9.4	37	1.1
	남성	6,138	244.1	340.00	13.9	24	1
	여성	4,336	161.2	59.00	4.4	13	0.8
2018/19	계	10,832	209.9	388.00	9.1	86	1.7
	남성	6,396	253.6	331.00	13.4	45	1.8
	여성	4,436	166.1	57.00	4	41	1.5
2019/20	계	11,139	213.7	418.00	8.8	68	1.3
	남성	6,539	254.9	350.00	14	35	1.4
	여성	4,600	172.1	68.00	3	33	1.2

주: 1) 각 회계 연도 간 법적 지위를 가진 이용자 수
2) 연령표준화율(ASR)은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세계 인구 기준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임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남성이 여성보다 정신건강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9/2020년에 정신건강법에 따른 법적 지위 관련 남성의 연령 표준화 비율은 100,000명당 254.9명이었으며, 여성 100,000명당 172.1명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6-7-12〉 격리 대상자 수 -성별, 인구집단별 (마오리), 연도별

(단위: 명)

구분	계		마오리		마오리 외	
	명	연령표준화율(ASR)	명	연령표준화율(ASR)	명	연령표준화율(ASR)
2009/10	946	20.4	358	61.7	588	14.3
2010/11	1,179	25.8	432	72.5	747	18.5
2011/12	1,109	24.6	437	69.4	672	17.1
2012/13	1,113	25.2	461	70.9	652	16.8
2013/14	1,056	23.6	464	69.4	592	15.2
2014/15	981	21.6	438	63	543	14
2015/16	986	21.2	444	62.3	542	13.7
2016/17	957	20.2	446	60.2	511	12.7
2017/18	964	20.1	432	56.9	532	13
2018/19	1,134	23.5	526	67.5	608	14.7
2019/20	1,212	24.9	596	75.2	616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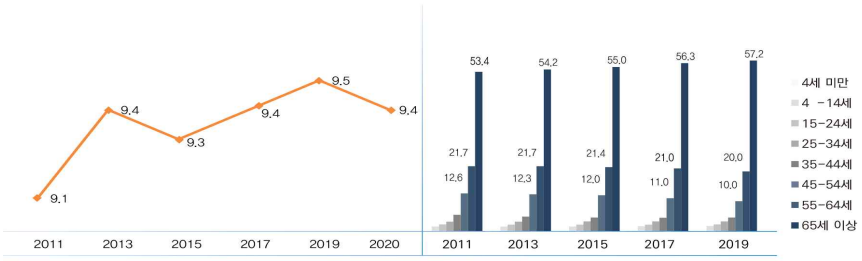
주: 1) 하나 이상의 회계 연도에 격리된 대상자는 각 관련 연도에 표가됨
2)연령표준화율(ASR)은 세계보건기구(WHO) 표준 세계 인구로 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임
자료: Ministry of Health (2021).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 use 2019/20」

- 격리는 이용자가 지정된 공간/구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혼자 두는 것을 의미함
  - 명시된 공간/구역에서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벗어날 수 없음
- 2019/20년에 총 1,212명의 이용자가 격리 조치되었으며, 총 3,654건의 격리 사례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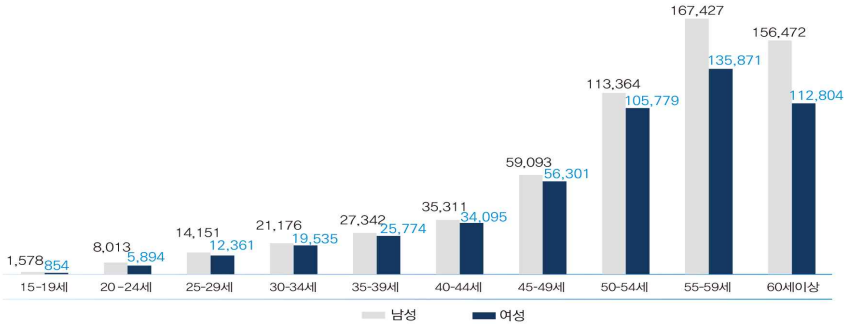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독일

[그림 3-4-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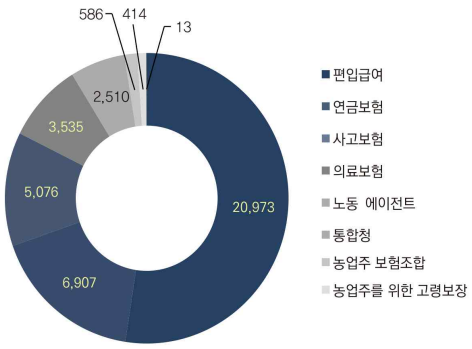
[그림 3-4-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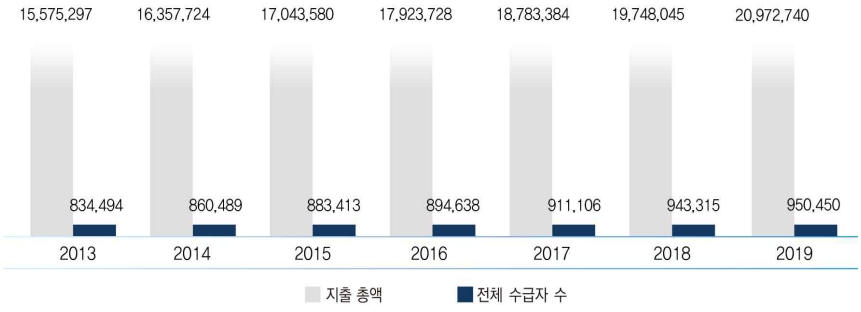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지난 2009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 전체 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약 9.4%로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57.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5세~64세 사이의 중중장애인이 21.1%로 나타나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 장애인 중 79%(2019년에는 77.2%)에 해당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2019년 평균 1,113,281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생산가능연령인 20~59세의 장애인이 약 75.6%(841,539명)를 차지함
  -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연령(50-59세)에서 가장 높은 46.9%(전년도에는 50.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연령과 40대 연령(40-49세)에서 각각 22.2%(전년도 23.2%)와 16.6%(전년도 17.4%)를 차지함
  - 성별 고용현황으로는 남성장애인(603,940명)이 여성장애인(509,274명)보다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근로활동 비율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여성장애인의 고용활동은 남성장애인의 고용활동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그림 3-4-3]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현황(2020년)



[그림 3-4-4] 중증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의 장애인 재활급여의 총 지출은 40,411백만 유로로 이는 2019년의 40,012백만 유로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장애인재활급여 중 '편입급여' 지출이 21,631백만 유로로 총 지출액 중 거의 절반(약 5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담당기관'의 지출이 7,032백만 유로(약 17.4%), '사고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5,039백만 유로(약 12.5%), '의료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3,122백만 유로(약 7.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로서 2020년부터는 독립된 고유의 급여로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됨

1) 장애인구

(1) 중증장애인

〈표 17-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11
전체 인구(A)		80,327,746	80,767,463	82,175,700	82,521,653	83,166,711	
중증장애인(B) 비율(B/A)		7,289,173 (9.1)	7,548,965 (9.4)	7,615,560 (9.3)	7,766,573 (9.4)	7,902,960 (9.5)	7,795,340 (9.4)
성별	남성	3,733,913 (51.2)	3,851,568 (51.0)	3,866,994 (50.8)	3 928 519 (50.6)	3,983,749 (50.4)	3,917,360 (50.3)
	여성	3,555,260 (48.8)	3,697,397 (49.0)	3,748,566 (49.2)	3 838 054 (49.4)	3,919,211 (49.6)	3,878,025 (49.7)
연령별	4세 미만	14,194 (0.2)	13,928 (0.2)	14,703 (0.2)	15,495 (0.2)	17,008 (0.2)	15,995 (0.2)
	4-14세	112,364 (1.5)	113,956 (1.5)	116,119 (1.5)	121,972 (1.6)	131,235 (1.7)	135,730 (1.7)
	15-24세	162,679 (2.2)	161,857 (2.1)	161,688 (2.1)	166,216 (2.1)	173,157 (2.2)	175,385 (2.2)
	25-34세	223,679 (3.1)	236,602 (3.1)	245,741 (3.2)	251,261 (3.2)	255,356 (3.2)	251,065 (3.2)
	35-44세	390,234 (5.4)	363,342 (4.8)	345,138 (4.5)	342,298 (4.4)	353,716 (4.5)	360,280 (4.6)
	45-54세	916,329 (12.6)	931,886 (12.3)	910,665 (12.0)	860,586 (11.0)	790,371 (10.0)	700,760 (9.9)
	55-64세	1,579,000 (21.7)	1,635,787 (21.7)	1,629,214 (21.4)	1,634,544 (21.0)	1,664,445 (20.0)	1,643,550 (21.1)
	65세 이상	3,890,694 (53.4)	4,091,607 (54.2)	4,192,292 (55.0)	4,374,201 (56.3)	4,517,672 (57.2)	4,512,565 (57.9)

주: 1) 독일전체인구 중 2011년 이전의 인구수는 이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서독 1987년, 동독 1990)를 근거로 한 추정치이며, 2011년 이후에는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 독일 전체 인구수를 추정함
2) 중증장애인 수는 원호청(Vorsorgungsamt)에서 법적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수치를 근거로 매 2년(홀수년도)마다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자료: 1) 연방건강보고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통계

- 독일의 중증장애인 수는 2021년에 7,795,340명으로 독일 전체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인구 비율은 약 9.4%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인구 중 약 10명당 1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의 중증장애인 수치는 2011년 대비 약 6.9% 증가하였지만, 2017년과 비교한다면 108,100명(약 1.4%)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니더작센주(Niedersachen)의 행정적 통계 정리를 통하여 파악된 중증장애인의 수가 121,000 여명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니더작센주를 제외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 중증장애인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약 50.3%)이 여성(약 49.7%)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이후 중증장애인의 남녀 성별 비율을 분석한다면 남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57.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5세~64세 사이의 중증장애인이 21.1%로 나타나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 장애인 중 79%(2019년에는 77.2%)에 해당함
  - 이러한 결과는 의학적 발전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중증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독일 중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도에서 45~54세의 중증장애인은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에서의 중증장애인은 2011년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음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2018년에 개정된 사회법전(제9권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서적, 지적 또는 감각 침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침해가 인식과 환경으로 인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6개월 이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 법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dB: Grad der Behinderung;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 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장애정도가 GdB 50 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음
  -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최소한 GdB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GdB 20이 되지 못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함. 그러나 GdB30~40까지의 장애인은 노동현장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적인 권리(예:해고보호 조치 등)를 행사할 수 있음

〈표 17-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계		7,289,173 (100.0)	7,548,965 (100.0)	7,615,560 (100.0)	7,766,573 (100)	7,902,960 (100)	7,795,340 (100)
장애 정도 (GdB)	50	2,286,617 (31.4)	2,410,406 (31.9)	2,479,064 (32.6)	2,556,693 (32.9)	2,632,239 (33.3)	2,677,655 (34.3)
	60	1,173,261 (16.1)	1,202,750 (15.9)	1,203,371 (15.8)	1,217,048 (15.7)	1,217,037 (15.4)	1,194,030 (15.3)
	70	809,208 (11.1)	830,074 (11.0)	833,863 (10.9)	847,880 (10.9)	858,322 (10.9)	841,845 (10.8)
	80	876,456 (12.0)	904,636 (12.0)	915,363 (12.0)	935,474 (12.0)	962,219 (12.2)	949,255 (12.2)
	90	375,098 (5.1)	358,292 (4.7)	386,687 (5.1)	391,097 (5.0)	396,678 (5.0)	380,195 (4.9)
	100	1,768,533 (24.3)	1,815,807 (24.1)	1,797,212 (23.4)	1,818,381 (23.4)	1,836,465 (23.2)	1,752,355 (22.5)
장애 형태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64,332 (0.9)	62,390 (0.8)	59,625 (0.8)	55,766 (0.7)	52,778 (0.7)	49,895 (0.6)
	사지의 기능장애	976,663 (13.4)	985,086 (13.0)	959,762 (12.6)	912,339 (11.7)	885,014 (11.2)	838,860 (10.8)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867,029 (11.9)	906,221 (12.0)	886,920 (11.6)	852,252 (10.9)	824,598 (10.4)	795,155 (10.2)
	전맹과 시각장애	350,655 (4.8)	357,018 (4.7)	354,569 (4.7)	350,822 (4.5)	349,036 (4.4)	334,600 (4.3)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305,135 (4.2)	315,799 (4.2)	319,351 (4.2)	317,748 (4.1)	321,627 (4.1)	318,880 (4.1)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79,391 (2.5)	180,697 (2.4)	179,436 (2.4)	178,313 (2.3)	181,968 (2.3)	182,620 (2.3)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1,806,355 (24.8)	1,870,556 (24.8)	1,899,752 (24.9)	1,935,064 (24.9)	2,003,278 (25.3)	2,003,250 (25.7)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459,841 (20.0)	1,539,007 (20.4)	1,598,275 (21.0)	1,661,143 (21.4)	1,756,976 (22.2)	1,786,335 (22.9)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279,772 (17.6)	1,332,191 (17.6)	1,357,870 (17.8)	1,503,126 (19.4)	1,527,685 (19.3)	1,485,740 (19.1)

자료: 연방건강보고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에서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GdB)별 현황으로 GdB50인 중증장애인이 약 3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GdB 100이 약 22.5%를 차지하고 있어 두 그룹이 전체 장애인의 56.8%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이후 장애정도별 순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GdB50를 판정받은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GdB60과 GdB100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장애형태별 현황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약 58%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
  - 신체적 장애는 세부적으로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25.7%)', '사지의 기능장애(10.8%)', '척추, 몸통 장애(10.4%)',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0.6%)'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신체적 장애 다음으로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가 22.9%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와 신체장애 중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및 장애유형
- 한 개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2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증가함
  - 장애정도가 GdB 50이상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장애정도가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함
- 독일의 장애형태는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55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짐
  - 장애유형의 9가지 범주는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사지의 기능장애, 척추, 몸통의 기능 장애 및 흉부계 기형, 전맹과 시각장애,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기타 유방장애, 내부기관 또는 기관 시스템 기능 장애, 하반신마비, 뇌병변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가 속함
- 독일의 장애유형 구분은 원인적 질병(예: 다중경화증)진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능제한(기능변화)을 토대로 이루어짐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17-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1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정도(GdB)					
		50	60	70	80	90	100
계	7,795,340	2,677,655	1,194,030	841,845	949,255	380,195	1,752,355
	(100)	(34.3)	(15.3)	(10.8)	(12.2)	(4.9)	(22.5)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	49,895	9,920	5,610	7,350	7,940	4,485	14,590
	(100)	(19.9)	(11.2)	(14.7)	(15.9)	(9.0)	(29.2)
사지의 기능장애	838,860	307,370	162,545	113,015	93,295	45,440	117,195
	(100)	(36.6)	(19.4)	(13.5)	(11.1)	(5.4)	(14.0)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795,155	371,040	150,280	95,470	69,025	32,720	76,620
	(100)	(46.7)	(18.9)	(12.0)	(8.7)	(4.1)	(9.6)
전맹과 시각장애	334,600	53,590	29,615	30,130	29,120	23,515	168,630
	(100)	(16.0)	(8.9)	(9.0)	(8.7)	(7.0)	(50.4)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318,880	87,835	48,670	44,335	41,515	20,155	76,370
	(100)	(27.5)	(15.2)	(13.9)	(13.0)	(6.3)	(23.9)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182,620	77,865	39,020	15,330	20,930	6,030	23,450
	(100)	(42.6)	(21.4)	(8.4)	(11.5)	(3.3)	(12.8)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 장애	2,003,250	663,220	314,855	194,180	277,910	99,540	453,545
	(100)	(33.1)	(15.7)	(9.7)	(13.9)	(5.0)	(22.6)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786,335	591,765	225,540	183,915	230,425	75,850	478,835
	(100)	(33.1)	(12.6)	(10.3)	(12.9)	(4.2)	(26.8)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485,740	515,045	217,895	158,125	179,095	72,460	343,115
	(100)	(34.7)	(14.7)	(10.6)	(12.1)	(4.9)	(23.0)

주: 1)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통계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2) 각각의 비율은 전체 중증장애인 수를 모수로 하여 산출함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2) 연방건강보고(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의 '중중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 장애정도(GdB)별 현황으로는 전체 중증장애인 중 GdB50이 2,677,655명(3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GdB100을 판정받은 중증장애인이 1,752,355명(22.5%)으로 두 번째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유형 현황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와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중독장애' 유형이 전 중증장애인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를 제외한다면 '사지의 기능장애', '척추, 몸통의 기능장애 및 흉부계 기형',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기타 유방장애', '내부기관, 또는 기관시스템 기능장애','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에서 GdB50을 판정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 반면에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과 '전맹과 시각장애'에서는 GdB100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두 번째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장애정도로는 '언어장애, 전농 및 청각장애, 평형장애', '하반신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에서 GdB100이며,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GdB50 또는 GdB60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팔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 손실'과 '전맹과 시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많은 침해가 발생하기에 중증아인 중 가장 높은 장애정도를 판정받는 경향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17-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단위: 명,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계	7,289,173	7,548,965	7,615,560	7,766,573	7,902,960	7,795,340
	(100)	(100)	(100)	(100)	(100)	(100)
선천적 장애	301,368	298,308	290,248	258,517	257,541	253,450
	(4.1)	(4.0)	(3.8)	(3.3)	(3.3)	(3.3)
산업재해	69,069	67,190	63,585	57,994	55,774	53,000
	(0.9)	(0.9)	(0.8)	(0.7)	(0.7)	(0.7)
교통사고	38,925	38,172	36,594	30,818	30,031	28,985
	(0.5)	(0.5)	(0.5)	(0.4)	(0.4)	(0.4)
가정 내 사고	7,332	7,205	6,870	6,051	5,785	5,545
	(0.1)	(0.1)	(0.1)	(0.1)	(0.1)	(0.1)
그 외의 사고	25,175	24,731	23,688	20,942	20,315	19,455
	(0.3)	(0.3)	(0.3)	(0.3)	(0.3)	(0.2)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	46,357	34,171	24,425	17,106	13,192	10,565
	(0.6)	(0.5)	(0.3)	(0.2)	(0.2)	(0.1)
일반적 질병	6,079,359	6,416,813	6,583,463	6,855,042	7,062,264	7,013,055
	(83.4)	(85.0)	(86.4)	(88.3)	(89.4)	(90.0)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	721,588	662,375	586,687	520,103	458,058	411,285
	(9.9)	(8.8)	(7.7)	(6.7)	(5.8)	(5.3)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통계

- 2021년도 중증장애인의 장애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병(예, 척추질환으로 인한 기능제한, 만성질환, 암 등을 통한 내장기관장애)이 중증장애의 가장 큰 원인(90.0%)으로 드러남
  - 이것은 장애 원인 중 '선천적 장애(3.3%)'와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5.3%)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질명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90.0%)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장애 원인으로서 질병의 높은 비율은 독일의 폭넓은 장애 개념의 결과로서 추론할 수 있음. 왜냐하면 장애를 건강상의 침해와 그 침해를 바라보는 인식과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바라보는 독일의 사회적 장애 개념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기능 제한과 인식 및 사회적 장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의 두 번째 큰 원인으로는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5.3%) 및 '선천적 장애'(약 3.3%)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두 명중 한 명씩 선천적 원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남
-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 을 통한 장애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기타 및 불분명한 원인' (5.3%)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및 '가정 내 사고'의 비율은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에 기인한 다양한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는 반면 후천적인 원인 중 사고 예방과 사회적 환경 내 안전 조치의 강화로 인하여 장애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2) 교육

(1) 특수교육

〈표 17-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2013/14	2015/16	2016/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장애학생 비율	계	6.8	7.1	7.2	7.2	7.4	7.6
	특수학교 재학비율	4.7	4.4	4.2	4.2	4.2	4.2
	일반학교 재학비율	2.1	2.7	3.0	3.0	3.2	3.4
통합교육비율		31.4	37.7	39.3	41.2	42.3	43.9

주: 1)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특수학교(Sonderschule)' 또는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불리었으나 그 명칭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변하고 있음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학생)'으로 부르고 있음
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은 전체 장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의 통계적 출판(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an Schulen)

- 2019/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6%이며 그 중 특수학교에서 재학중인 장애학생과 일반학교에서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각각 4.2%와 3.4%를 차지하고 있어 통합교육 비율은 43.9%를 보이고 있음
  - 전체 학생 중 장애학생의 비율은 2012/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2/2013년 대비 2019/2020년 수치는 0.8% 증가하였고 2018/2019년 대비 0.2%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장애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에 있어서 2013/2014년의 31.4%에서 2019/2020년도에는 43.9%로 12.5% 증가하여 통합교육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12/2013년 이후 4.7%에서 4.2%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학교에서 재학하며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1%에서 3.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형식으로 재학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통합교육이 일반교육 시스템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7-2-2〉 특수교육적 지원의 장소별 현황-연도별

(단위: 명, %)

년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특수교육적 지원 총 수치		학교별			
			특수학교		일반학교(통합교육)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3/14	500,544	100.0	343,343	71.8	157,201	28.2
2014/15	508,386	100.0	334,994	68.6	173,392	31.4
2015/16	517,384	100.0	322,518	62.3	194,866	37.7
2016/17	523,796	100.0	317,985	60.7	205,811	39.3
2017/18	539,965	100.0	317,480	58.8	222,485	41.2
2018/19	556,317	100.0	320,992	57.7	235,325	42.3
2019/20	571,671	100.0	325,368	56.1	246,303	43.9

주: 1) 독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전통적으로 특수학교(Sonderschule)', '장애인학교(Schulen für Behinderte)'라는 명칭으로 지칭했지만 그 명칭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분리시켜 낙인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현재 '촉진학교(Förderschule)' 또는 '특수교육적 촉진학교(Schule mit onderpädagogischem Förderschwerpunkt)'로 명칭이 변하고 있음

2) 특수교육적 지원은 장애등록여부와 학습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을 현재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또는 학생)'으로 부르는 경향을 보임

3) 독일의 학기제는 신학기가 가을학기(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여름학기에 종료하는 두 학기로 구성되어 표에서 두 개의 년도를 함께 표기함

4)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의 총 수치 비율, 특수학교 비율, 일반학교(통합교육)의 비율은 전체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5) 모든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중 통합교육 비율은 전체 장애학생 대비 통합교육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의 통계적 출판(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an Schulen)

- 2019/20년에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수는 2012/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71,671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19년 대비 15,354명(약2.7%)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특수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2013/2014년 이후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일반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보다 여전히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43.6%에서 12.2%)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10명 중 약 4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교육을 받으며 2013/14년 대비 2.5명에서 약 2명이 증가한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독일에서 2013년 이후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2-3〉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지원영역 변화 (2018/2019 대비 2019/2020년)

(단위: 명, %)

구분	2018/2019년			2019/2020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전체 수	556,317			571,671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습	85,196	107,404	192,600	85,968	114,147	200,115
시각	4,590	4,795	9,385	4,640	4,976	9,616
청각	10,455	11,420	21,875	10,542	11,493	22,035
언어	28,696	27,649	56,345	29,023	28,155	57,178
신체 및 운동발달	23,866	13,795	37,661	23,748	14,042	37,790
지적 발달	81,519	12,673	94,192	83,579	13,602	97,181
정서 및 사회적 발달	41,439	54,326	95,765	42,679	57,142	99,769
복합적 지원(*)	14,129	2,734	16,863	2,896	960	3,856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19,954	0	19,954	20,086	0	20,086
지원요구 분류 어려움(*)	–	–	–	10,786	1,338	12,124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11,148	529	11,677	11,473	448	11,921
합계	320,992	235,325	556,317	325,368	246,303	571,671

주: 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함
2)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와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되기도 함
3) '(*)' 는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지원요구 분류 어려움'은 2018/2019까지는 '복합적 지원' 안에 포함되어 함께 집계되었지만 2019/2020년도부터는 분리되어 별도로 통계가 산출됨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의 통계적 출판(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an Schulen)

–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는 2019/20년에 총 571,671명으로 2018/19년에 비하여 15,354명의 학생이 증가함
- 2019/20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중 학습영역이 200,115명(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추론 가능함
- 다음으로 '정서 및 사회적 발달'과 '지적 발달' 영역이 각각 99,769명(17.5%)와 97,181명(17.0%)로 지원영역의 상위에 위치함. 그 반면 시각장애 영역과 '분류 어려움'의 경우 각각 9,616명(1.7%)와 3,856명(0.7%)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9/2020년도를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분류 어려움'을 제외한다면, '학습' 영역과 '청각,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 세 영역에서의 통합교육 경향을 알 수 있음
- 반면 다른 영역들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신체 및 운동발달'과 '지적발달' 영역에서는 특수학교에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음

– 2019/2020년의 특수교육적 지원영역을 2018/2019년과 비교해 본다면 '학습' 영역(7,515명),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영역(4,004명) '지적발달' 영역(2,989명)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몇 년간 동일한 경향을 보임. 이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수교육적 요구 안에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추론 가능함

〈표 17-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학교 수		3,191	3,117	3,011	2,913	2,865	2,835	2,819
학급 수	소계	36,079	35,086	33,871	33,196	33,305	33,483	34,487
	학습영역 학급 수	11,989	11,075	10,100	9,378	8,270	8,118	10,007
	기타 영역 학급 수	24,090	24,011	23,771	23,065	24,029	24,347	23,343
	질병 영역 학습 수	-	-	-	753	1,005	1,019	1,137
학급당 학생 수		9.5	9.5	9.5	9.5	9.5	9.6	9.5
교사 수		63,814	62,752	61,111	60,588	60,501	60,279	61,808
교사 당 학생 수		5.4	5.3	5.4	5.2	5.2	5.3	5.3

주: 1) 학습영역의 학생 수와 기타영역의 학생 수 통계에 있어서 튀링엔 주(Thüringen)의 경우 지원영역을 나누지 않고 통계를 내기에 그 수치는 제외함
2) 기타 영역이란 특수교육적 지원 중 '학습'영역과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영역을 제외한 ,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 영역을 의미함
3) 질병 영역의 학급 수는 2015/16학기부터 별도로 통계를 수집하고 있음

자료: 1)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의 통계적 출판(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an Schulen)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촉진학교(Förderschule)' 통계

- 2019/2020년 특수학교 현황 통계로 학교는 2,815개(2018/2019년 2,835개), 학급은 34,487개(2018/2019년 33,483개), 교사는 61,808명(2015/2016년 60,27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학교 수는 2018/19년과 비교한다면 1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2013/14년 이후 372개소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학급 수는 2013/14년도(36,079학급) 대비 1,592 학급이 감소하였지만 2018/19년과 비교한다면 1,004학급이 증가하여 대조적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전년도 대비 학급 수의 증가는 특히 학습영역에서의 증가로 기인하고 있으며 2018/19년 대비 2019/20년의 학급수가 1,889개소가 증가한 현황을 보임. 이는 학습영역에서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서 추론할 수 있음
  - 특수학교의 교사 수 또한 2013/14년부터 진행된 특수학급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8/19년 대비 특수학급의 증가와 상응해서 1,529명의 교사가 증원됨
  - 학급당 학생 수와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3/14년 이후로 거의 변동 없거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각각 9.6명, 5.3명으로 나타남
  - 특수학교 현황 결과는 비록 2019/20년 대비 학급 수와 교사 수는 증가하였지만 2013/14년부터 2019/20년까지의 통계적 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수학교 중심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3) 고용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표 17-3-1〉 중증장애인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용현황	의무고용 사업장	152,538	156,306	160,220	164,631	168,693	171,599
	전체 근로자	26,338,012	26,808,329	27,457,750	28,195,647	29,048,664	29,585,005
	(법적)의무고용인원	1,071,737	1,089,978	1,115,615	1,146,111	1,178,857	1,199,025
	(실제)의무고용인원	1,042,889	1,057,978	1,078,433	1,101,131	1,128,771	1,146,459
고용률	전체 고용률	4.7	4.7	4.7	4.6	4.6	4.6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1	4.1	4.1
	공공부문 고용률	6.6	6.6	6.6	6.5	6.5	6.5

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내용 중 '(실제)의무고용인원'은 장애정도(GdB) 30-100 사이의 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통계

– 독일의 연평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0%(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0%)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수와 법적의무고용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9년을 기준으로 의무고용 사업장은 171,599개소로 전체 29,585,005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그 중 중증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인원은 1,199,025명에 해당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146,459명으로 299,347명의 인원이 미달하고 있음
- 2019년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2018년 대비 17,688명(2017/18년에는 32,746명 증가)이 증가하였지만 중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법적 의무고용률인 5.0%에 약간 못 미치는 4.6%로 나타나 2018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부문별로 본다면,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의 민간부문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1%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6.5%로 나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독일의 고용의무제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하면 연평균 매달 20인 이상 규모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사업주는 최소한 근로자 일자리의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4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은 민간부문과 같이 근로자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0%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

– 의무고용 예외규정으로서 소규모의 기업, 20-40인 사이의 규모를 가진 고용주는 1인의 중증장애인을, 40-60인 사이 규모의 고용주는 2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함

더블카운트 제도, 트리플카운트 제도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표 17-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2019년 평균)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113,281	603,940	509,274
연령별	15세 미만	4	4	–
	15-19세	2,433	1,578	854
	20-24세	13,910	8,013	5,894
	25-29세	26,515	14,151	12,361
	30-34세	40,715	21,176	19,535
	35-39세	53,119	27,342	25,774
	40-44세	69,407	35,311	34,095
	45-49세	115,400	59,093	56,301
	50-54세	219,154	113,364	105,779
	55-59세	303,318	167,427	135,871
	60세 이상	269,290	156,472	112,804
	분류 제외	15	10	5
고용대상	직업훈련생	7,444	4,360	3,083
	중증장애인	908,020	491,079	416,885
	동등그룹	196,816	107,502	89,304
	기타그룹	1,001	*	*
	분류제외	-	-	-
산업부문	농업 및 임업	2,019	–	–
	광산, 에너지, 수도	3,488	–	–
	제조업	272,287	–	–
	에너지관리	1,341	–	–
	상수도;하수도/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제거	1,893	–	–
	건축업	14,628	–	–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39,991	–	–
	운수 및 유통업	19,030	–	–
	요식 및 숙박업	8,368	–	–
	정보 및 통신	17,805	–	–
	은행, 회계 및 보험	7,117	–	–
	토지 및 주택	1,740	–	–
	프리랜서/학문적 및 공학 서비스	44,185	–	–
	기타 경제적 서비스	32,104	–	–
	공공업무/국방/사회보장	10,588	–	–
	교육 및 교습업	5,330	–	–
	건강 및 보건	22,904	–	–
	예술 및 여가	*	–	–
	기타 서비스	6,331	–	–
	가계, 조합	*	–	–
	기타	4	–	–

주: 1) 근로자 현황과 업종별 현황 통계는 사회법전 제80조 제2항의 '고지절차'에 의한 연방노동에이전트의 통계로 2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2018년 평균 수치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율'과는 차이가 있음
2)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3) 고용대상 중 '동등그룹'이란 GdB 30-40의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공학 기기 신청'과 '해고보호 조치'와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짐
4) 산업 부문에 따른 중증장애인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평균화된 수치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5) 제조업은 원재료와 중간상품을 가공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해 내는 분야로 원자재, 투자재 생산, 소비재 생산 기업, 그리고 식량 및 기호품 생산 기업이 여기에 포함됨
6) 공공업무는 국가기관 및 정부기관과 같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가 포함됨
7) 기타 산업근무(시간제 포함)는 대여업, 노동중개업, 여행업, 보안업, 건물관리 및 정원 또는 조경관리업 등이 포함됨

자료: 1) 통합청(https://www.bih.de/bih/)의 통합청연례보고(BIH-Jahresbericht)
2)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통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2019년 평균 1,113,281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생산가능연령인 20~59세의 장애인이 약 75.6%(841,539명)를 차지함

- 연령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연령(50–59세)에서 가장 높은 46.9%(전년도에는 50.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의 연령과 40대 연령(40–49세)에서 각각 22.2%(전년도 23.2%)와 16.6%(전년도 17.4%)를 차지함
- 이것은 청 · 중년층(20–39세)보다는 장년층(40–59세)에서 더 많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증장애인이 고령화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고령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고용현황으로는 남성장애인(603,940명)이 여성장애인(509,274명)보다 더 많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근로활동 비율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여성장애인의 고용활동은 남성장애인의 고용활동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고용대상별로는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GdB50~100)이 908,020명(81.6%, 전년도에는 약 8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법적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노동현장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경증장애인(GdB 30~40)이 196,816명(약 17.7%, 전년도에는 17.4%)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모습으로 여전히 독일의 장애인 고용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부문별 중증장애인 고용현황을 본다면 '제조업', '프리랜서/학문적 및 공학 서비스', '상업 수선 및 자동차 수리' 업무 순으로 중증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전체의 24.4%인 272,287명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중증 장애인의 4명 중 1명이 제조업 부문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 이것은 독일 민간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발한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년도에서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 수치를 보였던 공공업무 부문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분에서의 자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감소한 결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표 17-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9년)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의무고용 사업장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실제 고용률
			고용주	전체 근로자	(법적)의무 고용인원	(실제)의무 고용인원	미고용	
2019년	전체		171,599	29,585,005	1,199,025	1,146,459	299,347	4.6
	민간부문		160,241	23,588,902	941,279	814,139	280,951	4.1
	공공부문	소계	11,358	5,996,103	257,746	332,320	18,396	6.5
		연방 최고기관	18	60,688	2,775	5,262	*	9.5
		연방기관*	20	239,703	13,164	19,742	-	9.0
		주(지방) 최고기관	180	1,909,703	84,067	95,375	7,535	5.7
		기타 공공기관	11,128	3,647,787	150,145	198,294	10,855	6.5
		기타 공공기관*	12	138,222	7,595	13,647	*	10.8
2018년 대비 2019년 비교	전체		2,906	536,342	20,168	17,688	4,409	
	민간 부문		3,875	654,525	25,454	25,384	5,029	
	공공부문	소계	-969	-118,183	-5,286	-7,696	-620	
		연방 최고기관	-1	3,515	138	375	*	
		연방기관*	-5	-521	-83	-353	-1	
		주(지방) 최고기관	-7	-52,926	-2,727	-4,796	196	
		기타 공공기관	-885	-43,695	-1,394	-2,095	-742	
		기타 공공기관*	-71	-24,556	-1,220	-826	*	

주: 1)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항목들은 중증장애인(GdB 50~100)뿐 아니라 고용현장에서 중증중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GdB 30~40 사이의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2) 연방최고기관이란 연방대통령기관, 독일연방의회기관(하원에 해당)와 독일연방참의원(각 주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 해당)기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상급법원, 연방재판소(연방검찰청 포함), 연방철도공사를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3) 주 최고기관은 주의회기관, 회계검사기관, 주 법적기관, 복합적 주민행정기관 등을 의미함(사회법전 제9권 제71조)

4) *표시가 있는 연방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사회법전 제 9권 제15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기관, 공공재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기관 및 주정부기관 중 1999년에 이미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를 달성한 기관으로 계속 6.0%를 유지하는 기관을 의미함

5) 2018년 대비 2019년 비교 내용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 유형별 인원수 차이와 증감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 2019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는 1,146,459명으로 독일 전체근로자(29,585,005명)중 법정의무고용률인 5.0%(1,199,025명)보다 299,347명이 부족한 4.6%에 그치고 있음
  - 민간부문의 경우 법정의무고용 인원보다 약 280,951명이 부족한 약 81만 4천명(4.1%)을 고용한 반면에 공공부문의 경우 74,574명을 초과하여 약 33만 2천명(6.5%)이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2019년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약 1.6%(17,688명)가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 2018년 대비 3.2%(25,384%)의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 반면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전년도 대비 -2.3%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16년까지는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결과와는 다르게, 2017년도부터는 정체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9년의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율의 감소는 일자리 수의 감소(-969자리, -7.9%)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8년 대비 2019년의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방최고기관이 7.7%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주(지방)최고기관의 경우 -4.8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이것은 주(지방)최고기관의 전체근로자와 법정의무고용인원 수가 각각 감소(-52,926명, -2,727명)한 반면에 연방최고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원들이 각각 증가하여 그에 따라서 실제의무고용인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지만, 모든 공공부문에서 2000년 이후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5%를 넘어 6%~9%대의 높은 고용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최고기관과 연방기관의 경우 각각 법정의무고용율인 6%보다 훨씬 높은 9.5%와 9.0%의 고용률을 보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3-4〉 의무고용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용주 및 사업장 수(2019년)

(단위: 명)

구분		조정금 납부 고용주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한 고용주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고용주	조정금 납부의무 없는 고용주	조정금1	조정금2	조정금3
민간부문		160,241	117,559	42,682	60,164	65,125	18,722	16,230
공공부문	소계	11,358	10,244	1,114	6,943	3,285	729	401
	연방 최고기관	18	18	–	*	*	*	*
	연방기관*	20	20	–	20	–	–	–
	주(지방) 최고기관	180	*	*	144	31	*	*
	기타 공공기관	11,128	10,016	1,112	6,755	3,250	725	398
	기타 공공기관*	12	*	*	*	*	–	–
전체		171,599	127,803	43,796	67,107	68,410	19,451	16,631

주: 1) *는 정보보호와 수치비밀유지 이유로 1 또는 2의 수치와 정보들 중에서 그러한 수치로 포함될 수 있는 정보들은 익명으로 표기됨
2) 조정금 납부 사업장 수의 조정금 금액은 실제 조정금 납부 액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통계

– 독일에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 수는 전체 171,599명(전년도 156,366명)으로, 그 중 중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127,803명(74.4%, 전년도에는73.3%)이며, 중증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42,682명(25.6%, 전년도에는 26.7%)에 해당함

– 조정금 납부현황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무고용 사업장의 고용주의 약 39.1%(67,107명)가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약 60.9%는 (실제)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조정금을 납부하고 있음
- 조정금 1은 실제고용률이 3~5%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125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40.6%(63,490명)에 해당함
- 조정금 2는 실제고용률이 2~3%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22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11.7%(18,319명)에 해당함
- 조정금 3은 실제고용률이 2%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고용인원 1인당 320유로의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고용주의 약 10.2%(15,989명)에 해당함

조정금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부담금'을 의미하며, 조정금의 액수는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산정됨. 20인 미만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됨

– 조정금은 1, 2, 3 세 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부담기초액'을 의미함
- 조정금 1: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3~5% 이하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125유로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위한 부담완화기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연평균 40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가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못하거나 연평균 60인보다 적은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1명보다 적은 의무고용을 하고 있다면 각각 125유로와 220유로를 납부해야 함. 그 외 연평균 40인 이하의 근로자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1명 이상만 고용했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음. 또한 연평균 60인보다 적은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명 이하의 1명을 의무고용하고 있다면 125유로를 납부해야 하지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음
- 조정금 2: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2~3%의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 만큼 한 명당 220유로를 납부해야 함. 또한 연평균 40~60인 사이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함
- 조정금 3: 20인 이상의 근로자 일자리를 가진 사업장에서 2% 미만의 중증장애인 (실제)고용률을 보이는 경우에 미달한 고용인원만큼 한 명당 320유로를 납부해야 함

– 조정금은 2020년도부터 각 조정금이 약 8.7%~10.3% 증가하여 조정금 1은 140유로, 조정금 2는 245유로, 조정금 3은 360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3) 고용 관련 지출

〈표 17-3-5〉 연방 통합청(Integrationsamt) 지출 현황(2018/2019년)

(단위: 백만 유로, 건, 수)

구분		2018년		2019년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지출금액	건수/대상자
총합계		575.66	–	586.53	–
고용주에 대한 급여	전체	208.52	57,944	218.03	55,851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14.55	1,773	12.53	1,716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26.97	8,671	26.57	8,399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166.02	47,105	177.95	45,311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0.82	395	0.92	425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0.16	–	0.06	–
통합사업체 지원		93.99	13,000	102.01	13,550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48.93	–	50.28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급여	전체	55.39	10,262	57.40	10,642
	공학적 근로지원	5.08	1,880	5.37	1,849
	근로사업장으로의 이동지원	5.48	932	4.35	909
	경제적 자립 지원	0.61	118	0.46	112
	장애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0.51	121	0.47	130
	직업적 자식 및 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5.03	1,947	5.04	2,167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2.26	1,148	2.25	1,149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35.10	3,702	38.14	3,938
	지원고용	1.32	414	1.32	388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 급여		94.80	67,800	94.29	62,400
제도적 지원(기관 지원)		45.12	424	37.56	336
정보제공과 (직업)교육		7.35	34,300	6.78	34,143
기타 급여		2.49	–	1.88	–
모델계획 및 연구		18.59	–	17.98	–
포괄적 개인예산		0.48	–	0.44	–

주: 1)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은 사회법전 제9권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기관임
2) 연방통합청의 주된 기능은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연방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3) 연방통합청의 지출항목 중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4)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5) 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 등)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두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6) '통합프로젝트'는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함
7)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은 장애인작업장, 기숙시설작업장 등 장애인고용기관의 지원을 의미함

자료: 1)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2) 통합청(https://www.bih.de/bih/)의 통합청연례보고(BIH-Jahresbericht)

– 연방통합청의 2019년 총 지출은 약 586백만 유로로 2018년도에 비해 약 2%가 증가함
  • 이러한 수치는 2017/2018년 지출 증가율인 약 3.6%에 비해 증가폭이 적지만 연방통합청의 지출과 대상인원 모두 증가하여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 '고용주에 대한 급여'가 전년도(2018년)와 비슷하게 가장 큰 부분(약 37.2%)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합사업체 지원비용' (약 17.4%)과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의 통합전문가 및 상담전문가들의 운영비용'(약 11%)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대비 2019년의 연방통합청의 지출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통합사업체 지원비용'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반면에 장애인 보호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기관 지원)' 지출은 약 16.8%(약 7백만 유로)가 감소한 결과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일반고용시장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통합사업체 지원' 비용의 증가는 일반고용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의 결과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의 대안적 형태로서 독일 고용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포괄적 개인예산' 항목이 2015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어 2018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장애 노동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및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개인예산제가 고용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주에 대한 급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지출(177백만 유로, 45,311건)이 가장 많은 비중(고용주에 대한 급여 중 약 81.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조성을 위한 지출(약 26백만유로, 8,399건)이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고용주에게는 새로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동기를 부여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상황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서 연방통합청의 전체 지출 중 약 9.8%로 전년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중 '근로보조인 지원'(약 38백만 유로, 3,938건)이 약 66.4%(전년도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근로사업장 이동지원' (약 5백만 유로)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출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여 있으며 중증애인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8년 대비 2019년의 통합청의 지출에 있어서 '제도적 지원(기관지원)'의 지출금액과 지원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 2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장애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잔통적인 보호고용 형태 대신에 일반고용을 강화하고 편입되고 있는 경향으로 추론 가능함

(4)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표 17-3-6〉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2014년	2,898,388	181,110	6.2
2015년	2,794,664	179,809	6.4
2016년	2,690,975	170,508	6.3
2017년	2,532,837	162,373	6.4
2018년	2,340,082	156,621	6.7
2019년	2,266,720	154,696	6.8

주: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매년 합계를 낸 평균화된 수치를 의미함
자료: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표 17-3-7〉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전년도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 증감비율
전체		2,266,720	154,696	-1.2
성별	남성	1,262,887	92,577	-1.1
	여성	1,003,830	62,119	-1.4
연령	25세 미만	205,384	5,352	2.5
	25-54세	1,561,737	81,307	-3.2
	55세 이상	499,450	68,037	0.9
국적	독일	1,623,654	134,500	-2.0
	외국인	636,014	20,041	3.9

주: 전체 실업률과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연평균을 의미함
자료: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통계

- 2019년에 154,696명의 중증장애인이 실업자로 등록하여 독일 전체 실업자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18년 대비 1,925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전년도보다 0.1% 증가한 결과를 보임
  - 2014년 이후 분석해 보면 전체 실업자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독일 전체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음

- 2019년의 중증장애인의 실업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남성의 실업율(92,577명, 59.8%)이 비장애인 남성의 실업율(1,262,887명, 55.7%)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와 중증장애인 실업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25~54세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전체 68.9%, 중증장애인 52.5%)을 보이고 있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68,037명(44.0%)로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 실업률(22%)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2007년까지 지속되었던 노령인구를 위한 특별조항(사회법전 제3권 제 428조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은 노령층은 조기퇴직 조건으로 인정하여 연금과 같은 급여를 쉽게 신청하고 이들은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의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실업 형황을 2018년 대비 비교한다면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1.2% 감소하고 있으며 성별과 관련해서 중증 장애인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음. 그러나 연령대에 있어서 2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그룹과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그룹의 실업률은 각각 2.5%와 0.9% 증가하여 대조를 보임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3-8〉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2019년 평균)

(단위: 명, 주, %)

구분			2018년	2019
실업자 수			156,621	154,696
장기실업자 비율			67,953(44.3)	64,364(41.6)
평균적 실업지속기간(주)			84.7	81.9
실업지속기간(비율)	12개월 이내	1개월~3개월	115,488(31.0)	118,804(31.9)
		3개월~6개월	57,067(15.3)	58,252(15.6)
		6개월~12개월	59,911(16.1)	59,483(15.9)
		진술 기간 없음	48,032(12.9)	47,363(12.7)
	12개월 이상		91,862(24.7)	89,085(23.9)

자료: 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ür Arbeit)의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 2019년 중증장애인의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전체 154,696명의 중증장애인 중 약 41.6%가 장기 실업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실업지속기간은 81.9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대비 2019년의 중증 장애인의 장기실업자 비율과 평균적인 실업지속기간이 각각 2.7%와 2.8주 감소하여 중증장애인의 실업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지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2개월 이상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실업기간이 각각 15.9%와 15.6%의 순으로 나타남
  - 실업지속기간을 2018년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3개월 이하의 실업지속기간과 3개월~6개월 사이의 실업지속기간이 각각 0.9%와 0.3% 증가한 반면에 6개월~12개월 사이의 실업지속 기간은 0.2%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장기실업상태 비율의 감소와 상응하여 비등한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실업을 경험한 이후 재취업 기간이 중증장애 근로자의 상황(연령, 근로능력, 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2018년 대비 실업지속기간이 약간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을 경험한 중증장애인 중 장기실업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4명당 1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함

4) 재정

(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

〈표 17-4-1〉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출(2020년)

(단위: 백만 유로, %)

담담기관에 따른 급여항목	2019	2020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의료보험	3,535	3,122	-11.7
시설관련 재활 전체	1,908	1,788	-.6.3
시설 재활 전체	500	394	-21.2
부모를 위한 재활	7	4	-47.2
외래 재활 전체	141	125	-11.7
재활을 위한 사고보험 분담금	62	83	34.5
재활스포츠/기능훈련	293	137	-53.3
기타 보충급여	113	102	-9.7
사회소아과 병원 급여	271	267	-1.5
(근로)부담능력시험 및 노동치료	0.60	0.58	-3.10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급여	165	143	-13.7
재활 보충급여	15	12	-22.1
개인예산제	58	67	15.3
연금보험	6,907	7,032	1.8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4,633	4,903	5.8
노동생활 참여를 의한 급여(LTA)	1,289	1,237	-4.1
§ 31 SGB VI에 따른 기타 급여	590	514	-12.9
사회보험 분담금	394	377	-4.3
개인예산제	0.50	0.52	3.10
농업주를 위한 고령보장	13	13	-20.2
사고보험	5,076	5,039	-0.7
외래치료 및 의치	1,764	1,726	-2.1
병원 치료 및 가정 환자돌봄	1,271	1,238	-2.6
부상지원금과 특히 지원	827	842	1.8
기타 치료비용	1,047	1,068	2.0
노동생활 참여를 의한 급여(LTA)	167	165	-0.8
농업주 보험조합	414	428	3.3
개인예산제	1.92	1.94	1.20
노동 에이전트	2,510	2,567	2.3
LTA의 의무급여	2,384	2,446	2.6
LTA의 심사급여	111	108	-3.5
개인예산제	14	14	-0.9
통합청	586	583	-0.5
노동생활의 수반지원	471	488	3.5
노동시장프로그램	50	42	-16.3
기타급여:	65	53	-17.9
(그 중) 개인예산제	0.44	0.23	-47.60
편입급여(*)	20,973	21,631	3.1
의료적 재활을 위한 급여	42	48	12.3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5,339	5,061	-5.2
(그 중) 공인 장애인작업장(WfbM) 급여	5,288	5,022	-5.0
교육참여를 위한 급여	–	1,841	–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	14,279	–
(그 중) 지원인 급여	–	11,146	–
편입급여의 기타 급여	–	402	–
지출 전체	40,012	40,411	1.0

주: '(근로(부담)능력 시험 및 노동치료'는 의료적 치료 후 직업활동으로 재편입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점진적인 의학적 조치로서 예를 들면 의사의 감독하에 최소한의 노동시간으로부터 근로부담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지원임
(출처: https://www.bgw-online.de/DE/Leistungen-Beitrag/Rehabilitation/Zurueck-ins-Berufsleben/Belastungserprobung/Belastungserprobung_node.html)
(*) 편입급여 영역의 지출 통계방식이 2020년부터 변화되어 2019년의 통계현황과 상이한 모습을 보임
자료: 재활을 위한 연방노동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e. V.: BAR)의 '재활정보(Reha-Info)'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에 해당되는 독일의 장애인 재활급여의 총 지출은 40,411백만 유로로 이는 2019년의 40,012백만 유로 대비 1.0%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장애인재활급여 중 사회부조 성격을 가지는 '편입급여' 지출이 21,631백만 유로로 총 지출액 중 거의 절반(약 5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 담당기관'의 지출이 7,032백만 유로(약 17.4%), '사고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5,039백만 유로(약 12.5%), '의료보험담당기관'에 의한 지출이 3,122백만 유로(약 7.7%)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재활담당기관의 증감의 변화는 '농업주 보험조합'의 지출을 제외한다면 '편입급여'와 '노동에이전트'의 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증가율(3.1%과 2.3)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연금보험' 지출이 1.8% 증가하였음
  • 그 반면에 2018년 대비 2019년에 '농업주 고령보험'이 -20.2%로 가장 많이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의료보험'에서의 지출이 -11.7% 감소한 결과를 보임. 또한 '사고보험'과 '통합청'의 지출이 각각 -0.7%와 -0.5%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영역들이 증가함

– 장애인 재활급여를 개별으로 본다면 편입급여 영역에서 '사회참여 급여'와 '근로생활 참여급여'가 각각 14,279백만 유로(총 재활급여 지출액의 약 35.3%)와 5,061백만 유로(총 재활급여지출액의 12.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금보험의 '의료적 재활급여 항목'의 지출이 4,903백만 유로(12.1%)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 급여 중 많은 지출을 보인 '사회참여 급여'의 경우 '지원인 급여'가 11,146백만 유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생활 참여급여'애서는 '장애인작업장 지원'이 5,022백만 유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9년 대비 개별적인 장애인 재활급여 항목을 살펴본다면 의료보험 영역에서 '재활을 위한 사고보험 분담금'(34.5%)과 '개인예산제' 항목의 지출이 15.3%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출항목으로 나타남. 그 반면에 의료보험 영역에서 '재활스포츠/기능훈련'과 '부모를 위한 재활' 항목의 지출이 각각 -53.3%와 -47.2%의 감소를 보여 개별항목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인 항목으로 밝혀짐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재활급여 중 '의료보험'의 재정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5) 복지

(1)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표 17-5-1〉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천유로,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출 총액		17,923,728	18,783,384	19,748,045	20,972,740	21,630,687
전체 수급자 수		894,638	911,106	943,315	950,450	939,680
성별	남성	529,785	540,847	561,598	566,624	559,230
	여성	364,853	370,259	381,717	383,826	380,450
연령	18세 이하	251,917	258,484	276,045	278,974	274,095
	18~39세	264,270	266,569	270,217	270,908	267,450
	40~64세	329,201	333,730	339,872	341,964	338,210
	65세 이상	49,250	52,323	57,181	58,604	59,930

주: 1)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은 2019년 동안 편입급여를 받았던 모든 사람의 수치임
2) 장애인 편입급여 현황에서 전체수급자 수은 편입급여 수급장소(재가, 시설)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요청할 수 있기에 한명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나온 수치임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사회적급여 통계-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통계;
2) 연방건강보고(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의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통계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장애인 편입급여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중증장애인이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참여에 있어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제공하는 급여임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는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의 한 형태에 속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독립된 고유의 급여로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으며 통계 작업 또한 사회부조 통계에서 '사회법전 9권에 따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nach dem SGB IX)' 이란 항목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 18~64세 사이의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감소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급여로서 '장애인 편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정해짐. 이때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함

- 2020년 장애인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930,680명의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편입급여 지원이 제공되었음
  -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 중 성별로는 남성(59.5%)이 여성(40.5%)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대로는 40~60세 사이의 연령대(36%)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대(6.4%)에서는 가장 적은 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편입급여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의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 가능 연령대의 중증장애인에게 더욱 많은 급여지출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장애인 편입급여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총 지출금액과 수급자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0년에는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 2020년의 장애인 편입급여의 지출 총액은 총 21,630,687천유로로 2019년 대비 657,947천유로가 증가한 결과를 보임
  - 편입금여의 이용자는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0,770명이 감소하여 -1.2%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는 남성은 7,394명, 여성은 3,376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감소 인원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두 배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2019년과 비교한다면, 18세 이하(-4,878명), 18~39세(-3,458명), 40세~64세(-4,754명)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1,326명 증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5-2〉 장애인 편입급여 항목별 이용자 및 지출액(2020년)

(단위: 명, 천유로)

편입급여 항목	이용자	지출액
편입급여 합계	939,680	21,630,687
의료 재활 급여	19,265	47,563
노동 생활 참여 급여	287,175	5,060,668
공인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위한 급여	285,280	5,021,786
다른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위한 급여	600	9,134
민간 및 공적 사업주 급여	1,975	29,748
교육 참여 급여	92,305	1,841,071
사회 참여 급여	698,385	14,279,052
주거급여	33,820	220,986
다른 성인이 부재한 자가 주거 급여	5,155	22,185
특별한 주거형태에서의 주거 급여	28,245	183,874
부부, 생활동반자, 주거공동체에서의 주거 급여	440	6,997
지원인(보조인)급여	473,530	11,146,414
특수교육 급여	175,880	1,363,223
실제적 지식과 기능 획득과 유지를 위한 급여	79,225	1,473,583
이해 촉진을 위한 급여	780	7,993
자동차 급여	920	6,097
이동 급여(이동서비스)	21,970	45,419
사회 참여 안에서의 보조기기	5,700	6,373
방문 지원	17,665	8,964
기타 편입급여	28,575	402,334

주: 1) 편입급여의 통계는 2019년까지 사회부조 통계 안에서 산출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사회법전 제9권에 속하여 독립된 통계로 산출됨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사회적급여 통계-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통계;

2) 연방건강보고(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의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통계

※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항목

– 편입급여의 주요 지원은 크게 '의료 재활 급여', '노동생활 참여 급여', '교육 참여 급여', '사회 참여 급여'로 다양하게 구성됨(사회법전 제9권 제42조–제88조). 이러한 편입 급여는 현물 지급 형태, 현금 지급에 기반한 개인예산제(현물 대신에 현금을 주어 장애인의 자기결정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또는 현물과 현금의 혼합 형태로 지원함

- 의료재활 급여: 장애인과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 만성적 질병 또는 장애의 예방, 제거, 완화, 상쇄, 악화의 예방, 둘째, 노등기능과 돌봄기능 제한의 예방, 사회적 능력의 조기 예방 및 완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는 조기진단과 조기교육, 다양한 치료를 포함한 치료방안, 의사 치료 등이 포함됨(사회법전 제9권 제42조)
- 노동생활 참여 급여: 장애인과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능력을 획득하고 개선하고 유지하며 노동생활 참여를 가능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급여로서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사업주를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음(사회법전 제9권 제49조)
- 교육 참여 급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서 취학 전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지원, 학교내 직업교육 지원, 고등교육 지원, 대학 내 직업 후속 교육 지원이 포함됨(사회법전 제9권 제75조)
- 사회 참여 급여:공동체 삶의 동등한 참여를 용이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들의 주거공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책임하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급여임.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인(보조인) 급여, 특수교육적 급여, 실제적 지식과 기능 획득과 유지를 위한 급여, 이해 촉진을 위한 급여, 자동차 급여, 이동지원서비스, 사회 참여안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이 포함됨 (사회법전 제9권 제76조)
  -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가능한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책임하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임(주거지의 구입, 개조, 유지 등)
  - 지원인(보조인) 급여: 일상구조와 일상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하의 영위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 가정생활과 같은 일반적인 일상영위, 사회적 관계 형성, 개인적 생활계획, 공동체적이고 문화적 삶의 참여,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 및 의사처방의 영향에 대한 보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함
  - 특수교육적 급여: 미취학 연령의 아동들에게 장애 위험 예방, 장애 진행의 완화 또는 장애 영향의 제거 및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으로 비처방적인 치료적, 특수교육적, 심리적, 심리사회적인 지원과 상담을 포함함
  - 실제적 지식과 기능 획득과 유지를 위한 급여: 수급권자가 공동체 삶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정생활기능을 포함하여 실제적 생활기능을 학교교육, 촉진그룹 및 유사한 방안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는 급여임. 그래서 이것을 통해 노동 생활의 참여를 준비하고 언어와 의사소통의 향상, 타인의 도움 없이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이해 촉진을 위한 급여: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진 수급권자에게 특별한 계기로 환경과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지원으로 수어통역사 또는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포함함
  - 자동차 급여: 이동지원의 하나로서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거나 보장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운행하는 것과 이동지원서비스(특별교통운송수단)만으로 부족할 대 제공하는 지원으로 여기에는 자동차 구입, 추가 장비 설치, 운전면허증 획득, 검사비, 자동차 운행 및 관리 관련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됨
  -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으로 인하여 대중공공교통수단의 이용을 기대할 수 없을 댄 제공하는 급여임
  - 사회 참여 안에서의 보조기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 삶의 동등한 참여의 제한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급여로서 예를 들면 배리어프리 컴퓨터 등이 포함되며, 보조기기의 사용, 유지 및 대체 등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됨
  - 방문 지원: 수급권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상호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야간 지원하는 급여임

– 2019년도 장애인의 편입급여는 930,68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1,630,680천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1인당 평균 편입급여 액수는 약 23유로에 이르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편입급여 지출목록 중 '사회참여급여'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의 약 66%인 약 14,279,052천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동 생활 참여 급여'지출액이 23.4%로 5,060,668천유로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에 가장 중요한 고용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별항목 지출별로는 노동 참여 급여에서는 '장애인작업장 급여'가 편입급여 전체 지출금액의 약 23.2%(약 502만 천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참여 급여에서는 '지원인(보조인) 급여'가 약 55%인 약 1,146만 천유로가 지출하고 있음
- 편입급여 지출 항목별 이용자를 살펴보면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사회참여 급여' 이용자가 698,385명, '노동생활 참여 급여'가 287,175명, '교육참여급여' 가 92,305명 순으로 나타남. 이는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편입급여의 목적에 상응해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개별적인 이용자 현황으로는 사회 참여 급여에서는 473,530명의 이용자가 '지원인(보조인)' 급여를 받고 있으며 노동생활 참여 급여에서는 '공인 장애인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위한 급여'를 285,280명의 이용자가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보조인과 노동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을 중요하게 지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6) 정신건강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표 17-6-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편입급여 수급자 현황(2020년)

(단위: 명)

구분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	12월 31일 시점의 급여
합계		40,496	32,764	98,833
성별	남성	27,968	22,567	71,400
	여성	12,528	10,197	27,433
연령별	6세 이하	1,350	403	1,523
	6~8세	10,285	2,969	12,949
	9~11세	12,942	8,540	33,010
	12~14세	7,416	8,612	26,644
	15~17세	4,650	6,210	14,654
	18세 이상	3,853	6,030	10,153
장소별	외래/부분병동	33,177	26,065	82,387
	돌봄지원인	323	326	1,072
	생활시설	6,996	6,373	15,474

주: 1)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는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부조) 제35조에 근거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부조 중 하나로 정서적 아동 및 청소년에게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w[공하는 독립적인 급여 형태임
2)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두가지 기준을 충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음, 즉 '정서적 건강이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정의함
3)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으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ADHD, 섭식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및 정신장애, 인격장애, 중독증이 포함됨
4)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제공함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특수교육적 수업),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아동 및 청소년급여 통계(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사회법전 제8권 제35조에 따른 편입급여' 통계

- 2020년도에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12월 31일 시점에서 98,833명(전년도 92,483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편입급여를 새로 수급하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은 40,496명(전년도 41,005명)이고 편입급여 제공이 끝난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32,764명(전년도 31,853명)으로 나타남
  - 편입급여 이용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12월 31일 시점으로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약 72.2%, 27.8%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분포로는 12월 31일 시점과 새로 시작된 급여에서 모두 9~11세가 가장 높은 수치(각각 33,010명, 12,942명)를 보이고 있으며 끝난 급여에서는 12~14세에서 가장 많은 수치(8,612명)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12월 31일 시점에서는 12~14세가 각각 26,644명으로 나타났으며, 새로 시작된 급여에서는 6~8세 사이에서 10,285명으로 두 번째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
  - 장소별로는 12월 31일 시점, 새로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에서 모두 치료와 강좌를 제공받는 외래 지원과 학교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병동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생활시설에서의 지원이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생활시설 뿐 아니라 사회참여 및 통합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음

(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수

〈표 17-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수 및 병상 수(2020년)

(단위: 개)

병원 수				
구분			2019	2020
전체			1,914	1,903
일반병원			1,576	1,558
기타 병원	기타병원 전체		338	345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정신의학과 전체	276	282
		99병상 이하	120	124
		100~199병상	72	71
		200~499병상	73	79
		500 이상 병상	11	8
	주간 또는 야간 병동		62	63
국군병원			5	4
병상 수				
전체			494,326	487,783
일반병원의 병상			448,042	441,818
정신의학 관련 병원	정신의학과 정신요법 전담 병원 또는 정신의학, 정신치료 및 신경학적 또는/그리고 노인의학 병원의 병상		46,284	45,965
	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		5,636	5,859
	100개~1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		9,934	9,761
	200개~4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		27,473	25,236
	500개 병상 이상이 있는 병원		7,241	5,109
	순수 주간 및 야간 치료		–	–
군병원의 병상			1,026	937

주: 1)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병원은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이며 기타병원은 주로 정신의학관련 병원(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원)을 의미하며 그 외 국군병원도 포함함
2) 병상 수는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규정된 병원의 모든 침대를 의미하며 매달 존재하는 침대 수를 조사하여 연 평균수를 구한 수치로 부분입원, 외래치료실에 있는 침대, 연구용 침대, 특별한 목적 공간에 있는 침대,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위한 침대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병원기본통계(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독일 병원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1,903개소로 전년의 1,914개소에 비해 11개소가 감소됨
  - 전체병원 중 일반병원은 1,558개이고 기타병원은 345개로 그 중 정신의학 관련병원은 282개, 주간 또는 야간병동은 63개로 나타남. 2019년 대비 2019년도의 일반병원은 18개소가 감소하였지만, 기타병원은 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정신의학과 병원 또한 6개소가 증가하였음
  - 정신의학과 관련 병원만을 본다면 99이하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124개소(44.0%)이고 다음으로 100~199개의 병상과 200~499병상을 가진 병원은 각각 71개소(25.2%)와 79개소(28.0%), 500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8개소(2.8%)로 드러남
  - 2019년 대비 정신의학과 병원은 99이하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4개소, 200~499병상을 가진 병원이 6개소 증가한 모습을 보임. 반면에 100~199개의 병상을 가진 병원과 500이상의 병상을 가진 병원은 각각 1개소와 3개소 감소하였음
- 2020년의 병상 수는 전체 487,783개이며 그 중 일반병원의 병상 수는 441,818개이며 정신의학관련 병원은 45,965개를 차지하고 있음
  - 정신의학 관련 병원의 전체 병상 수 중 200개~4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에서의 병상 수는 25,236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개~1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에서의 병상 수가 9,761개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500개 병상 이상이 있는 병원에서의 병상과 99개 병상까지 있는 병원에서의 병상이 각각 5,109개와 5,809개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대비 2020년 결과를 본다면 전체 병상 수는 6,534개, 일반병원의 병상 수는 6,224개 감소하여 큰 감소폭을 보인 반면에 군병원을 제외한 정신의학병원의 병상 수는 319개만 감소하여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99개까지의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의 병상 수가 223개가 증가하여 다른 병상 수 범위대의 병상 수는 감소한 수치와 대비를 이루고 있음. 이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병원과 병상수가 대형화를 지양하고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표 17-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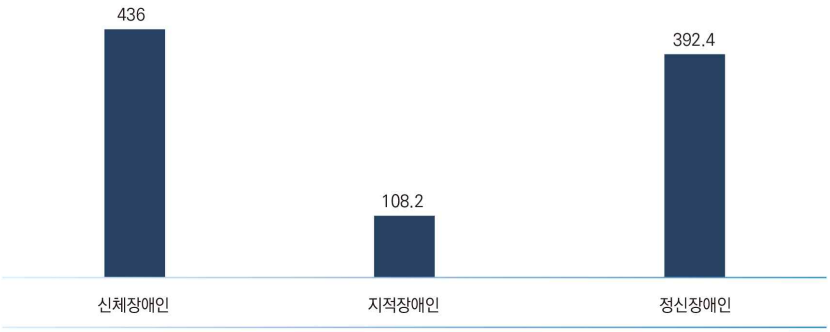
구분	환자입원				환자퇴원					
		그 중			그 중					
	입원 병동 치료	다른 병원으로부터 입원	동일병원의 일시입원으로부터 입원	입원병동으로부터 퇴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예방 및 재활기관으로의 이송	돌봄기관로의 이송	동일 병원의 부분입원 병동으로 이송	사망	평균 치료 기간
병원 전체	16,765,401	627,291	10,056	16,396,090	660,738	323,576	396,249	8,974	426,433	7.2
일반 병원	16,247,948	579,207	8,738	15,877,184	634,871	314,982	376,857	5,745	424,282	6.5
정신 의학과 전체	517,453	48,084	1,318	518,906	25,867	8,594	19,392	3,229	2,151	26.2
99병상 이하	49,508	2,235	30	49,326	1,219	1,105	379	283	44	33.0
100~199 병상	107,972	9,978	124	109,639	5,022	1,178	2,982	684	372	26.9
200~499 병상	294,610	29,361	969	299,236	16,106	5,159	12,133	2,013	1,350	25.3
500 이상 병상	65,363	6,510	195	60,705	3,520	1,152	3,898	249	385	24.2
주간 또는 야간병동	–	–	–	–	–	–	–	–	–	–

주: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형황에서는 전적으로 입원병동에 입원한 환자들만을 산출한 것으로 부분입원이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한 수치임, 그리고 환자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는 것은 새로 입원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음. 환자입원은 병원의 전일입원형태로 입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자퇴원은 입원병동으로부터 퇴원하거나 입원하는 동안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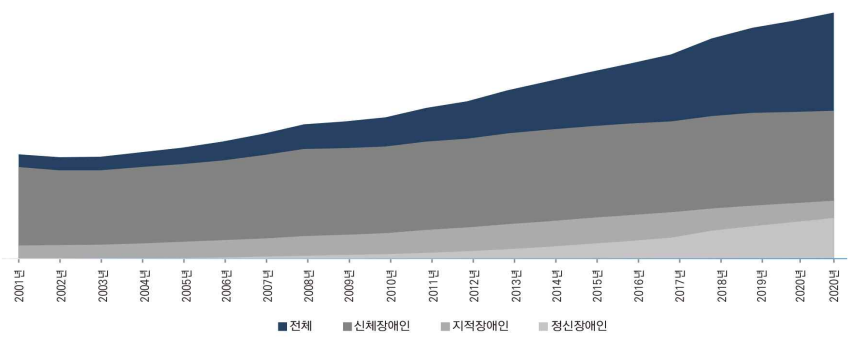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병원기본통계(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5. 일본

[그림 3-5-1] 일본 장애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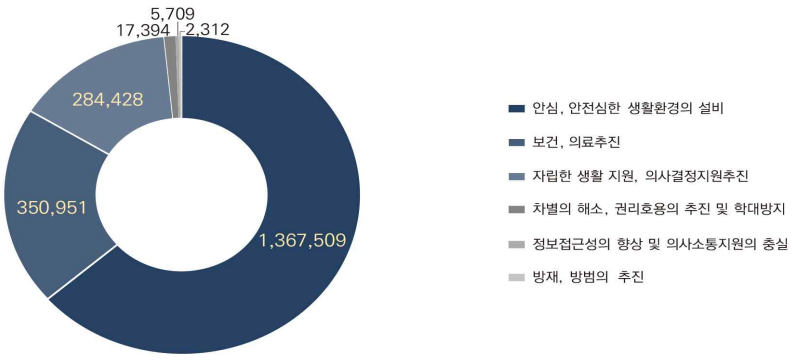
[그림 3-5-2]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각 세그먼트의 장애인수는 신체장애인 (신체장애 아동을 포함함. 이하동일) 436만 명, 지적장애인 (정신지체아동 포함. 이하 동일) 108만 2천명, 정신장애인 392만 4천명임

-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 법정고용률 2.2%)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578,292..0명으로 전년보다 4.8%(25,839명)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56천명(전년대비 2.3%증가), 지적장애인은 128천명(5.8% 증가), 정신장애인은 11천명(16.4% 증가)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폭이 컸음

[그림 3-5-3]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2022년)



– 2022년 기준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총 금액은 2,595,801백만엔으로 안심, 안전심한 생활환경의 설비 예산이 전체 예산 중 55.6%를 차지하며, 자리한 생활 지원, 의사결정 지원 추진 예산 17.7%, 보건 의료추진 예산 16.3% 순임

1) 장애인구

〈표 17-1-1〉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2	6.8	0.4
	18세 이상	419.4	412.5	7.0
	연령미상	9.3	9.3	–
	전체	436	428.7	7.3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5	21.4	1.1
	18세 이상	85.1	72.9	12.2
	연령미상	1.8	1.8	–
	전체	109.4	96.2	13.2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27.6	27.3	0.3
	20세 이상	391.6	361.8	29.8
	연령미상	0.7	0.7	0.0
	전체	419.3	389.1	30.2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 「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8).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표 17-1-2〉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성	전체	장애자수첩 소지자	장애자수첩 정류 (복수회답가능)			수첩비소지 및 자립지원 등을 받는 자
				신체장애자 수첩	양육 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65세 미만	전체	2,382	2,237	1,082	795	594	145
	남성	1,359	1,280	593	497	307	79
	여성	1,014	950	486	295	282	64
	미상	9	8	3	3	5	1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전체	3,550	3,358	3,205	168	247	193
	남성	1,756	1,691	1,627	89	106	64
	여성	1,772	1,645	1,565	73	130	127
	미상	23	21	13	5	11	1

자료: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3〉 일본 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2	6.8	0.4
	남성	–	3.2	–
	여성	–	3.4	–
	미상	–	0.1	–
	18세 이상	419.5	412.5	7.0
	남성	–	215.8	–
	여성	–	196.3	–
	미상	–	0.3	–
	연령미상	9.3	9.3	–
	남성	–	2.9	–
	여성	–	5.4	–
	미상	–	1.0	–
	전체	436.0	428.7	7.3
	남성	–	222.0	–
	여성	–	205.2	–
	미상	–	1.5	–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5	21.4	1.1
	남성	–	14.0	–
	여성	–	7.3	–
	미상	–	0.1	–
	18세 이상	85.1	72.9	12.2
	남성	–	44.1	–
	여성	–	28.8	–
	미상	–	0.1	–
	연령미상	1.8	1.8	–
	남성	–	0.6	–
	여성	–	0.6	–
	미상	–	0.5	–
	전체	109.4	96.2	13.2
	남성	–	58.7	–
	여성	–	36.8	–
	미상	–	0.8	–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27.6	27.3	0.3
	남성	17.8	17.7	0.1
	여성	10.4	10.2	0.2
	20세 이상	391.6	361.8	29.8
	남성	155.1	141.5	13.6
	여성	236.8	220.6	16.2
	연령미상	0.7	0.7	0.0
	남성	0.3	0.3	0.0
	여성	0.3	0.3	0.0
	전체	419.3	389.1	30.2
	남성	172.2	158.5	13.7
	여성	247.1	230.7	16.4

주: 1)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 「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8).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의한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또는 「환자조사」에 근거해 추정된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게재
-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3가지 구분에 대해 각 세그먼트의 장애인수는 신체장애인 (신체장애 아동을 포함함. 이하동일) 436만 명, 지적장애인 (정신지체아동 포함. 이하 동일) 108만 2천명, 정신장애인 392만 4천명임
- 이를 인구 천 명당 인원수로 보면 신체장애인은 34명, 지적장애인은 9명, 정신장애인은 31명임. 여러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합계에 무리가 있지만, 전체 국민의 약 7.4 %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셈. 또한 해당 장애인 수 및 지적장애인 수는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조사」를 근거로 추정 된 것임. 한편 정신장애인 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정신장애인의 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있을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전체	1,408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0~17세	94	-	93	81	82	82	93	73	68
18세~64세	872	1,150	1,346	1,333	1,246	1,218	1,237	1,111	1,013
65세~	442	826	1,068	1,330	1,587	2,004	2,211	2,655	3,112
미상	-	-	-	58	99	22	35	25	93

주: 1980년에는 신체장애인 (0-17세)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5〉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전체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시각장애	357	311	306	315	316	312
청각/언어장애	369	366	361	360	324	341
지체부자유	1,602	1,698	1,797	1,810	1,709	1,931
내부장애	476	639	863	1,091	930	1,241
미상	-	-	-	-	585	462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16년
전체	297	329	419	622	962
0~17세	86	94	117	152	214
18세~64세	188	212	274	408	580
65세~	8	14	12	58	149
미상	16	14	12	4	18

자료: 1)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7〉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중 증	그 외	미 상
2016년	962	373	555	34
2011년	622	242	303	77
2005년	419	165	204	50
2001년	329	138	151	40
1996년	297	128	159	10
1991년	284	124	146	14

주: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후생노동성(2016).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7-1-8〉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92년	1995년	199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223.9	267.5	290.0	287.8	361.1	389.1
0-24세	22.8	27.2	27.7	27.9	36.3	38.5
25세-34세	34.9	39.5	35.8	33.7	36.2	36.2
35-44세	34.2	46.2	50.0	50.4	58.5	58.2
45-54세	36.8	37.7	41.6	40.2	52.4	63.9
55-64세	33.8	39.7	43.3	37.8	45.5	47.7
65-74세	32.0	36.0	39.9	33.3	47.8	51.4
75세-	28.9	40.6	51.4	64.2	84.9	93.3
미상	0.5	0.5	0.6	1.0	1.0	0.7

주: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미야기(宮城)현의 일부와 후쿠시마(福島)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표 17-1-9〉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남성	178(64.5%)	1,551(39.6%)
여성	104(37.7%)	2,368(60.5%)
소계	276(100%)	3,916(100%)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성	1,187(46.4%)	542(33.2%)
여성	1,379(53.9%)	1,093(66.9%)
소계	2,559(100%)	1,633(100%)

자료: 후생노동성(2017). 「환자조사」

- 재택장애인 428만 7천명의 연령계층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68,000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101만 3000명, 65세 이상 311만 2천명이며, 7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경우에도 253만 6천명으로 조사됨
- 일본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조사 시점인 2016년 기준 27.3%에 달함(총무성, 「인구추계」, 2016년 10월 1일 기준 확정치)
- 재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65세 이상 인구에서 재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는 30%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는 70% 정도까지 상승함

- 재택 지적장애인 96만 2천명의 연령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21만 4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58만명, 65세 이상이 14만 9천명임. 18세 미만의 비율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의 비율은 낮은 점에 특징이 있음
- 지적장애 인구는 2011년과 비교하여 약 34만명 증가함. 지적장애는 보통 발달기에 나타나며, 이후에 새롭게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지적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요육수첩(지적장애아의 치료교육에 관한 기록장) 보유자의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 2014년 기준 외래진료 정신장애인은 총 361만 1천명으로, 이중 25세 미만은 36만 3천명, 25세 이상 65세 미만은 192만 6천명 65세 이상은 132만 7천명으로,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이 비율은 상승하고 있음

- 연령에 따른 정신장애인 성비 변화를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135만 9천명, 여성이 101만 4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은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75만 6천명, 여성이 177만 2천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신체장애자 수(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59만 3천명, 여성이 48만 6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62만 7천명 여성이 156만 5천명임
- 지적장애자 수(요육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49만 7천명, 여성이 29만 5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8만 9천명, 여성이 7만 3천명임
- 정신장애자의 남녀별 수에 대해 2017년에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 17만 8천명 대비 여성 10만 4천명이었고, 20세 이상에서는 남성 155만 1천명 대비 여성 236만 8천명임

2) 교육

〈표 17-2-1〉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838,838	6,379,989	3,275,607	3,173,977	14,668,411
특별지원학교	1,329	46,273	30,649	66,572	144,823
	(0.07%)	(0.73%)	(0.94%)	(2.10%)	(0.99%)
특별지원학급	–	218,036	84,437	–	302,473
		(3.42%)	(2.58%)		(2.06%)
합계	1,329	264,309	115,086	66,572	447,296
	(0.07%)	(4.14%)	(3.51%)	(2.10%)	(3.05%)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842,228	6,440,317	3,278,467	3,252,168	14,813,180
통급지도를 받는 학생	–	116,633	16,765	787	134,185
		(1.81%)	(0.51%)	(0.02%)	(0.91%)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 2020년도의 통급지도를 받는 학생수는 다음해에 수치를 파악함으로 2021년도분에 개재 예정

〈표 17-2-2〉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단위: 백만엔)

항목	2019년도 예산금액	2020년도 예산금액
특별교육지원의 충실 등	2,487	2,454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부담 등	12,164	12,397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 등 보조	4	3
의무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111,624	113,071
공립학교시설설비	–	–
사립고등학교경상비조성비 등 보조	7,776	7,820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운영비 등	1,083	1,103
합계	135,138	136,848

주: 복수의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각각의 장애유형에 따라 중복 포함됨
자료: 문부과학성(2019). 「특별지원교육자료」

– 전체 학생 수 14,937,299명 중,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는 14,378명(전체의 1.0%),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 수는 123,095명(전체의 3.5%)
  • 특별지원학교 :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가지는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화 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교육 욕구와 장애 상태를 반영하여, 특별지원학교 및 초 · 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이나 통급에 의한 지도에서 특별교육과정, 소규모학급, 특별히 배려해서 만들어진 교과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직원, 장애에 대해 배려된 시설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인 : 양쪽 눈의 시력이 대략 0.3미만 또는 시력 이외의 시각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중, 돋보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문자, 도형 등의 시각적 인지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
  • 청각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대략 60데시벨 이상인 사람들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말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것
  • 지적장애인
– 지적 발달의 지체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
– 지적 발달의 지체 정도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중,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
  • 지체부자유자
– 보장구를 사용해도 도보, 필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의 부자유
– 지체부자유 상태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중 상시 의학적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자유
  • 병약자
– 만성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 신생물, 기타 질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질병 보유자
– 신체 허약 상태가 계속해서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2-3〉 특별지원학교의 재학생, 단임교원, 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합계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합계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지적장애	20,694	96,639	9,305	40,648	213	700	30,212	138,232
지체부자유	2,339	3,505	836	1,150	17	26	3,192	4,685
병약 · 신체허약	1,893	3,050	804	1,256	11	13	2,708	4,312
약시	402	456	157	185	2	1	561	643
난청	939	1,400	383	553	10	8	1,332	1,965
언어장애	568	1,279	142	198	5	12	715	1,495
자폐증 · 정서장애	22,013	110,409	9,003	39,822	211	704	31,227	151,141
총 합계	48,848	216,738	20,630	83,802	469	1,464	69,947	302,473
담임 교원 수(명)	52,310		22,655		507		75,472	
설치학교 수(개)	16,484		7,950		107		24,541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4〉 특별지원학교 수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1991년	960	70	107	193	193	97
1996년	975	71	107	511	191	95
2001년	996	71	107	525	198	95
2006년	1,006	71	104	543	197	91
2011년	1,049	86	118	673	314	138
2012년	1,059	87	120	681	324	139
2013년	1,080	85	120	706	334	143
2014년	1,096	85	118	725	340	145
2015년	1,114	83	118	745	345	145
2016년	1,125	84	120	761	349	149
2017년	1,135	82	116	776	350	149
2018년	1,141	81	117	781	350	152
2019년	1,146	82	118	786	352	151
2020년	1,149	86	119	790	352	158

주: 2006년 까지는 학교별로 집계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복수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각각의 장애별로 중복해서 집계 함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 초 · 중학교 중 특별지원학교가 설치되어있는 학교 수는 24,393개이고, 교실의 수는 총 63,374개소임. 또한 담임교원의 수는 68,266명, 학생 수는 총 256,671명임
- 특별지원학교는 1991년에 960개였지만, 2019년에는 1,146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1991년에는 193곳 이었으나, 2019년에는 786개소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7-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전임교원수	1,517	84,112	304	85,933
겸임교원수	225	5,784	61	6,070
전임직원수	164	13,764	99	14,027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합계
1998년	1,685	1,000	473	3,158
2003년	1,447	803	1,038	3,288
2008년	1,399	768	957	3,124
2013년	1,443	832	940	3,215
2017년	1,240	782	806	2,828
2018년	1,242	769	869	2,880
2019년	1,247	754	822	2,823
2020년	1,187	719	784	2,690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85,336명, 겸임교원 수는 6,120명, 전임직원 수는 14,082명임
  -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 향상은 시급한과제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하여 특별지원학교 교사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 향상을 위해, 채용, 교육, 배치 등에 있어 면허증의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것 등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각 도도부현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초 · 중 · 고 모든 학교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방문교육 : 심신의 장애가 중증 또는 중복 (복수의 중증장애)이기 때문에, 특별지원학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아동 ·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병원 · 시설 등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함. 1969년 치바, 카나가와의 양현에서 시작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1974년에는 전 도도부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방문지도원의 경비 보조를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시작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2-7〉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언어장애	39,106	556	29	39,691
자폐증	21,237	4,051	347	25,635
정서장애	15,960	3,091	104	19,155
약시	191	27	4	222
난청	1,775	423	9	2,207
학습장애	17,632	4,631	126	22,389
주의력 결핍 타동성 장애	20,626	3,933	150	24,709
지체부자유	82	38	4	124
병약/신체허약	24	15	14	53
합계	116,633	16,765	787	134,185

주: 1) 자교통급(自校通級)·타교통급(他校通級)·순회교육(巡回指導)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합산함
2) 위 표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전 사전과정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문부과학성(2019).「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8〉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 학교 수

(단위: 개소)

구분	통급(通級)지도교실 설치학교수 (장애별)			
	초등학교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합계
언어장애	932	17	–	949
자폐증	118	18	–	136
정서장애	196	42	–	238
약시	11	2	11	24
난청	73	17	42	132
학습장애	164	54	–	218
주의력결핍,타동성장애	140	28	–	168
지체부자유	3	0	6	9
병약/신체허약	2	2	4	8
복수장애대응	3,471	681	17	4,169
합계	511	861	80	6,051

자료 : 초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2019) 「통급에의한 지도실시 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표 17-2-9〉 통급(通級)에 의한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19년
언어장애	20,461	27,718	29,860	33,606	38,754	39,691
자폐증	–	–	7,047	12,308	24,175	25,635
정서장애	2,320	4,184	3,589	8,613	16,072	19,155
약시	152	162	153	179	214	222
난청	1,403	1,581	1,915	2,044	2,122	2,207
학습장애	–	–	3,682	10,769	20,293	22,389
주의력결핍,타동성장애	–	–	3,406	10,324	21,300	24,709
지체부자유	6	1	14	26	134	124
병약/신체허약	–	6	19	13	31	53
합계	24,342	33,652	49,685	77,882	123,095	134,185

주: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또는 "학습장애", 그리고 "자폐증"이 2006년부터 새롭게 통급지도 대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규정 (2005 년도 이전에는 주로 "정서장애"의 통급지도교실 로서 대응)
2) 본교통급, 타교통급, 순회지도 중 복수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은 해당되는 모든 방법에 중복 합산함
3)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전 사전교육과정 포함

자료: 1) 문부과학성(2019).「특별지원교육자료」
2) 초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2019) 「통급에의한 지도실시 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 2019년 현재 통급에 의해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합쳐서 134,185명임
- 1998년에는 24,342명이었던 통급에 의해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2019년에는 134,185명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

통급(通級)

- 초 · 중학교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언어 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L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각 교과 등의 지도를 일반 학급에서 실시하고, 장애에 근거한 학습 또는 생활의 어려움 개선 · 극복에 필요한 특별지도를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교육 형태
- 장애아동에게는 특별지원학교 및 초 · 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등 다양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이중 통급에 의한 지도내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초 · 중학교 등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2016년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시작함
- 또한 2018년 3월에 고등학교 표준 시행령을 개정해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위한 가배(加配) 정수조치(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수 배정제도)를 가능하게 함.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은 학습지도요령 등에 대해 개별지도 계획 또는 개별교육지원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개별 아동 학생의 장애상태에 따른 지도 내용 및 방법의 연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2-10〉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시각장애	217	76	35.0	13	6.0	15	6.9	96	44.2	16	7.4
청각장애	470	160	34.0	24	5.1	179	38.1	85	18.1	18	3.8
지적장애	19,654	83	0.4	252	1.3	6,754	34.4	11,744	59.8	757	3.9
지체부자유	1,799	38	2.1	23	1.3	110	6.1	1,530	85.0	96	5.3
병약/신체허약	375	18	4.8	27	7.2	74	19.7	207	55.2	48	12.8
합계	22,515	375	1.7	339	1.5	7,132	31.7	13,662	60.7	935	4.2

주: 1) 표는 2020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3) 중학교 특별지원학급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4)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국립, 공립, 사립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시각장애	217	76	35.0	13	6.0	15	6.9	96	44.2	16	7.4
청각장애	470	160	34.0	24	5.1	179	38.1	85	18.1	18	3.8
지적장애	19,654	83	0.4	252	1.3	6,754	34.4	11,744	59.8	757	3.9
지체부자유	1,799	38	2.1	23	1.3	110	6.1	1,530	85.0	96	5.3
병약/신체허약	375	18	4.8	27	7.2	74	19.7	207	55.2	48	12.8
합계	22,515	375	1.7	339	1.5	7,132	31.7	13,662	60.7	935	4.2

주: 1) 표는 2020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갱생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3) 중학교 특별지원학급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4)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2〉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단위: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문적/기술적	4	1	5	1	–	1	26	21	47	–	1	1	–	1	1	31	24	55
사 무	1	1	2	10	22	32	313	148	461	30	21	51	4	4	8	358	196	554
판 매	–	1	1	1	4	5	348	210	558	1	–	1	9	2	11	359	217	576
서비스	–	2	2	5	8	13	607	387	994	7	2	9	7	7	14	626	406	1032
보 안	–	–	0	–	–	0	6	–	6	1	–	0	1	–	0	8	–	8
농 업	–	–	0	5	–	5	90	21	111	1	–	1	1	1	2	97	22	119
어 업	–	–	0	–	–	0	6	–	6	–	–	0	–	–	0	6	–	6
생산공정	1	–	1	62	32	94	997	278	1275	7	1	8	13	5	18	1080	316	1396
운송/기계운전	–	–	0	–	–	0	26	5	31	–	–	0	–	–	0	26	5	37
건 설	–	–	0	1	–	1	65	4	69	–	–	0	6	–	6	72	4	76
운반/청소	1	1	2	2	4	6	957	263	1220	1	–	1	3	2	5	964	270	1234
기 타	–	–	0	3	1	4	110	55	165	1	1	2	–	–	0	114	57	171
합계	7	6	13	90	71	161	3551	1392	4943	49	26	75	44	22	66	3741	1517	5258

자료: 문부과학성(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7-2-13〉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항목	2019년도 예산금액	2020년도 예산금액	2021년도 예산금액
특별교육지원의 충실 등	2,487	2,454	3,546
특별지원교육취학장려비부담 등	12,164	12,397	12,413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 등 보조	3	4	6
의무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111,624	113,071	113,229
공립학교시설설비	–	–	–
사립고등학교경상비조성비 등 보조	7,776	7,820	8,000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운영비 등	1,083	1,103	1,101
합계	135,138	136,848	138,295

자료 : 문부과학성 (2020) 「특별지원교육자료」

- 중등부의 졸업생의 98.4%는 진학하고, 고등부의 졸업생은 61.1%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31.2%가 취업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이 평생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에의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적인 자립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자 중 복지시설 등 입소자의 비율이 약 62%에 달하는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약 30%를 보여, 직업 자립을 도모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3) 고용

〈표 17-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구분		근로자수 명	고용 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관 수 개	기업 수 개	달성비율 %
민간기업	2021년	27,156,780.5	597,786.0	2.20%	50,306	106,924	47.0%
	2020년	26,866,997.0	578,292.0	2.15%	49,956	102,698	48.6%
	2019년	26,585,858.0	560,608.5	2.11%	48,898	101,889	48.0%

자료 :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구분	전체 천명	신체장애인 천명	지적장애인 천명	정신장애인 천명	실고용율 %
2001년	253	222	31	–	1.49
2002년	246	214	32	–	1.47
2003년	247	214	33	–	1.48
2004년	258	222	36	–	1.46
2005년	269	229	40	–	1.49
2006년	284	238	44	2	1.52
2007년	303	251	48	4	1.55
2008년	326	266	54	6	1.59
2009년	333	268	57	8	1.63
2010년	343	272	61	10	1.68
2011년	366	284	69	13	1.65
2012년	383	291	75	17	1.69
2013년	409	304	83	22	1.76
2014년	431	313	90	28	1.82
2015년	454	321	98	35	1.88
2016년	475	328	105	42	1.92
2017년	495	333	112	50	1.97
2018년	534	346	121	67	2.05
2019년	560	354	128	78	2.11
2020년	578	356	134	88	2.15
2021년	598	359	140	98	2.20

주: 1) 민간기업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1년 4월 1일부터 2.3%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2.0%, 50명 이상)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 1993년~2005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 2006년~2010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 2011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3) 각 연도 6월 1일 기준.
자료 :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 법정고용률 2.2%)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578,292..0명으로 전년보다 4.8%(25,839명)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56천명(전년대비 2.3%증가), 지적장애인은 128천명(5.8% 증가), 정신장애인은 11천명(16.4% 증가)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폭이 컸음
– 실제 고용률은 8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 2.11%(전년 2.05%)를 기록하며, 법정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8.0%(전년 45.9%)임

장애인 고용 제도

- 직원이 일정 수 이상인 규모의 사업주는 직원이 차지하는 신체장애인 ·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고용" 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음(장애인고용촉진법 43조 제 1항)
- 직원을 45.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구분	기업 수 개	근로자 수 명	고용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업 수 기업	달성비율 %
규모 합계	106,924 (102,698)	27,156,780.0 (26,866,997.0)	597,786.0 (578,292.0)	2.20 (2.15)	49,956.0 (49,956)	47.0 (48.6)
43.5~45.5명 미만	2,657 (-)	117,789.5 (-)	2,080.0 (-)	1.77 (-)	932 (-)	35.1 (-)
45.5~100명 미만	52,219 (50,544)	3,428,602.5 (3,348,466.5)	62,175.0 (58,350.0)	1.81 (1.74)	23,855 (23,224)	45.7 (45.9)
100~300명 미만	36,803 (36,787)	5,682,382.5 (5,677,127.5)	114,905.0 (113,199.0)	2.02 (1.99)	18,614 (19,274)	50.6 (52.4)
300~500명 미만	6,983 (7,078)	2,478,229.0 (2,511,339.5)	51,657.5 (50,824.5)	2.08 (2.02)	2,911 (3,122)	41.7 (44.1)
500~1000명 미만	4,810 (4,818)	3,092,099.0 (3,090,963.5)	67,920.5 (66,588.0)	2.20 (2.15)	2,063 (2,252)	42.9 (46.7)
1000명이상	3,452 (3,471)	12,357,678.0 (12,239,100.0)	299,048.0 (289,330.5)	2.42 (2.36)	1,931 (2,084)	55.9 (60.0)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 수는 45.5~100명미만의 규모 기업에서 56,679.5명, 100~300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111,128.0, 300~500인 미만의 기업은 49,399.0명, 500~1000명 미만의 기업은 65,439.5명, 1,000명 이상의 기업은 277,962.0명으로 모든 기업 규모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수가 전년보다 증가함
- 실제 고용률은 45.5~100명미만의 규모 기업은 1.71%, 100~300인 미만은 1.97%, 300~500인 미만은 1.98%, 500~1000인 미만은 2.11%, 1,000명 이상은 2.31%임
- 또한 민간기업 전체의 실고용률 2.05%와 비교하면 500~1,000인 미만과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실제 고용률 이상으로 나타남
- 법정고용률 달성기업 비율은 45.5~50명 미만의 규모 기업은 34.0%, 50~100인 미만이 45.4%, 100~300인 미만이 50.1%, 300~500인 미만이 40.1%, 500~1,000인 미만이 40.1%, 1,000인 이상이 47.8%로 모든 규모의 구분에 있어서 전년보다 감소함

〈표 17-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구분	기업 수 개	근로자 수 명	고용장애인 수 명	실고용율 %	달성기업 수 개	달성비율 %
산업 합계	106,924	27,156,780.5	597,786.0	2.20	50,306	47.0
농·임·어업	415	45,295.5	1,061.5	2.34	235	56.6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76	10,755.0	225.0	2.09	39	51.3
건설업	4,775	848,091.0	16,690.5	1.97	2,262	47.4
제조업	25,772	7,074,417.0	156,881.0	2.22	13,816	53.6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280	215,587.5	5,036.5	2.34	126	45.0
정보통신업	6,034	1,663,143.0	29,890.0	1.80	1,585	26.3
운수업, 우편업	7,625	1,637,091.5	37,145.0	2.27	4,059	53.2
도·소매업	16,445	4,354,457.0	88,772.5	2.04	6,099	37.1
금융·보험업	1,447	1,166,607.0	25,616.5	2.20	563	38.9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071	488,030.5	9,070.0	1.86	660	31.9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3,446	1,205,918.0	25,139.0	2.08	1,143	33.2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123	762,022.0	16,304.5	2.14	1,441	46.1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3,034	503,049.0	11,760.5	2.34	1,260	41.5
교육, 학습지원업	2,323	503,449.5	8,832.0	1.75	836	36.0
의료, 복지	18,208	3,095,914.0	88,103.5	2.85	10,811	59.4
복합서비스사업	900	294,115.0	6,128.0	2.08	368	40.9
서비스업	10,950	3,288,838.0	71,130.0	2.16	5,003	45.7

주: 2020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0).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구분	기업 수 개	근로자 수 명	고용장애인 수 명	실고용율 %	달성기업 수 기업	달성비율 %
제조업 합계	25,772	7,074,417.0	156,881.0	2.22	13,816	53.6
식료품, 담배	4,125	924,425.0	22,783.5	2.46	2,616	63.4
섬유, 의복	950	138,965.5	3,285.5	2.36	574	60.4
목재 가구	554	79,184.5	1,842.0	2.29	340	61.4
펄프, 종이, 인쇄	1,967	381,927.0	7,993.0	2.07	1,008	51.2
화학 공업	2,757	877,094.5	18,991.5	2.16	1,296	47.0
요업 · 토석	750	135,830.5	2,820.5	2.06	401	53.5
철강	542	149,718.0	3,201.0	2.17	296	54.6
비철금속	469	135,983.0	2,980.5	2.16	251	53.5
금속 제품	2,713	369,263.5	7,500.0	2.03	1,398	51.5
전기 기계	2,530	1,227,918.5	27,818.0	2.28	1,386	54.8
기타 기계	5,774	1,980,625.5	42,721.0	2.18	2,937	50.9
기타	2,641	691,924.0	14,944.5	2.16	1,313	49.7

주: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산업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모든 업종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 산업별 실고용률은 "의료복지"(2.73%),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2.32%), "농림어업"(2.54%)이 법정 고용률을 상회함

〈표 17-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구분		전체	43.5~45.5미만	45.5~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이상
미달성 기업 수		56,618	1,725	28,364	18,189	4,072	2,747	1,521
부족인원	36,201	36,201	1,725	25,938	6,999	858	509	172
	11,458	11,458	–	2,426	7,367	900	540	225
	4,269	4,269	–	–	2,677	861	523	208
	2,450	2,450	–	–	914	838	468	230
	1,945	1,945	–	–	232	609	650	454
	249	249	–	–	–	6	57	186
	36	36	–	–	–	–	–	36
	10	10	–	–	–	–	–	10
고용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32,644	1,679	36,201	4,857	39	6	1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구분	기업 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 중도신체장애인 중도지적장애인	Ⓑ 중도신체/지적 장애인 단시간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 합계
	개	명	명	명	명	명	명
특례자기업	562	42,007.0	10,739	187	19,870	367	41,718.5
	(542)	(39,366.5)	(10,276)	(201)	(18,022)	(287)	(38,918.5)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장애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은 1명,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1명으로, 중증 이외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각각 산정함
3) 2021년 6월 1일 기준 현황.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의 상황
  • 2018년 법정 고용률 미달성기업은 54,369개. 그중에서 부족수가 0.5명 또는 1명인 기업(1명 부족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30,638개이며, 미달성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임
– 특례 자회사(모회사(親会社)의 실고용률에 산입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에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의 상황
  • 2019년 6월 1일 현재 특례자회사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517개사(전년 대비 31개사 증가)으로 고용된 장애인의 수는 36,774.5명임
  • 고용자 중 신체장애인은 11,939.5명, 지적장애인은 18,885.5명, 정신장애인은 5,949.5명

'특례자회사' 제도란?

  • 일본의 '특례 자회사'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특례자회사 인증 요구사항

  • 모회사의 요구 사항: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등)을 지배하고 있을 것.(구체적으로는 자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것 등)
  • 자회사의 요건

①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구체적으로는 모회사에서의 임원 파견 등)

② 고용 된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며, 전체 직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된 장애인이 차지하는 중증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③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전임 지도원의 배치 등)

④ 기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이 확실하게 달성 될 것으로 인정될 것

〈표 17-3-8〉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율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국가기관	45	329,989.5	9,336.0	2.83	44	97.8
도도부현기관	159	355,407.5	9,699.5	2.73	142	89.3
시정촌기관	2,465	1,301,788.5	31,424.0	2.41	1,741	70.6
도도부현등 교육위원회	101	729,491.0	14,956.0	2.05	39	38.6

자료: 후생노동성(2020).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율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개소	명	명	%	개소	%
전체	46	339,099.5	9,605.0	2.83	46	100.0
행정기관	37	309,694.0	8,813.5	2.85	37	100.0
입법기관	5	4,002.0	109.0	2.72	5	100.0
사법기관	4	25,403.5	682.5	2.69	4	100.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5%임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9,605.0	5,831.5	270.0	3,503.5
행정기관	8,813.0	5,264.0	258.0	3,291.5
입법기관	109.0	60.0	10.0	39.0
사법기관	682.5	507.5	2.0	173.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5%임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은 모두 전년보다 높음
  - 국가: 고용 장애인 수 9,605.0명, 실고용률 2.83%
  - 도도부현: 고용 장애인 수 10,143.5명, 실고용률 2.81%
  - 시정촌: 고용 장애인 수 2만 8,978.0명(2만 7,145.5명), 실고용률 2.41% (2.38%)
  - 교육위원회: 고용 장애인 수 1만 3,477.5명(1만 2,607.5명), 실고용률 1.89% (1..90%)

〈표 17-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관 수 개소	근로자수 명	고용 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관 수 개소	달성비율 %
전체	160	361,308.0	10,143.5	2.81	143	89.4
도도부현 지사부국	47	282,885.0	7,988.5	2.82	43	91.5
기타 도도부현 기관	113	78,423.0	2,155.0	2.75	100	88.5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0,143.5	8,464.0	240.5	1,439.0
도도부현 지사부국	7,988.5	6,655.0	210.5	1,123.0
기타 도도부현 기관	2,155.0	1,809.0	30.0	316.0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6%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개소	근로자수 명	고용 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관 수 개소	달성비율 %
시정촌 기관	2,477 (2,465)	1,329,895.5 (1,301,788.5)	33,369.5 (31,424.0)	2.51 (2.41%)	1,763 (1,741)	71.2 (70.6%)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정촌 기관	33,369.5	27,273.0	1,323.5	4,773.0

주: 1) 시정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9,033.0명으로 전년보다 788.5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61%로 전년에 비해 0.17%p 상승함. 지사부국은 47기관중 33기관이 달성, 지사부국 이외는 111기관 중 89기관이 달성함
- 시정촌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8,978.0명이며, 전년보다 1,832.5명 증가. 실제 고용률은 2.41%로 전년에 비해 0.03%p 상승함. 2,441기관 중 1,766기관이 달성함

〈표 17-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개소	근로자수 명	고용 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관 수 개소	달성비율 %
전체	99	729,403.0	16,106.5	2.21	50	50.5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47	639,627.0	14,108.0	2.21	23	48.9
시정촌 교육위원회	52	89,776.5	1,998.5	2.23	27	51.9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5 %임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6,106.5	12,429.0	808.0	2,869.5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14,108.0	10,951.0	655.5	2,501.5
시정촌 교육위원회	1,998.5	1,478.5	152.5	368.0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5%임
2)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3,477.5명으로 전년보다 8,700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1.89%(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1.87%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2.03%)임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47기관 중 23기관이 달성하며,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52기관 중 27기관이 달성

〈표 17-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구분	기업 수 개소	근로자수 명	고용 장애인 수 명	실고용률 %	달성기관 수 개소	달성비율 %
전체	364	455,189.0	12,244.5	2.69	284	78.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91	215,385.0	6,069.0	2.79	80	87.9
국립대학법인	89	149,847.5	3,998.5	2.67	70	78.7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184	87,957.0	2,176.0	2.47	134	72.8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7-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고용 현황 - 장애별

(단위: 명)

구분	장애인 수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2,244.5	8,126.5	1,734.0	2,384.5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6,069.5	4,418.0	409.5	1,242.0
국립대학법인	3,998.5	2,285.0	1,001.5	712.0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2,176.5	1,423.5	323.0	430.0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3%임
3) 2021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독립행정법인 등(법정고용률 2.5%)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11,612.0명으로 전년보다 6,020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63%로 전년에 비해 0.09%p 상승함
- 독립행정법인 등(국립대학법인 등을 제외)은 91법인 중 83법인이 달성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 등은 90개 법인 중 72개 법인이,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은 171개 법인 중 127개 법인이 달성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3-19〉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취업률	전년대비
	건	%	명	%	건	%	%	%
2010년	132,734	5.4	169,116	7.1	52,931	17.0	39.9	3.9
2011년	148,358	11.8	182,535	7.9	59,367	12.2	40	0.1
2012년	161,941	9.2	198,755	8.9	68,321	15.1	42.2	2.2
2013년	169,522	4.7	207,956	4.6	77,883	14.0	45.9	3.7
2014년	179,222	5.7	218,913	5.3	84,602	8.6	47.2	1.3
2015년	187,198	4.5	231,066	5.6	90,191	6.6	48.2	1.0
2016년	191,853	2.5	240,744	4.2	93,229	3.4	48.6	0.4
2017년	202,143	5.4	255,612	6.2	97,814	4.9	48.4	△ 0.2
2018년	211,271	4.5	272,481	6.6	102,318	4.6	48.4	0.0
2019년	223,229	5.7	300,518	10.3	103,163	0.8	46.2	△ 2.2
2020년	211,926	△ 5.1	331,266	10.2	89,840	△ 12.9	42.4	△ 3.8
2021년	223,985	5.7	358,554	8.2	96,180	7.1	42.9	0.5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7-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별(2021년)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전체	211,926	△ 5.1	331,266	10.2	89,840	△ 12.9
신체장애인	58,033	0.6	113,195	5.6	20,829	4.0
지적장애인	34,651	1.0	54,618	4.5	19,957	0.8
정신장애인	108,251	13.5	163,064	12.8	45,885	13.0
기타	23,050	△ 6.1	27,677	1.8	9,509	1.3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23,229건으로 전년 대비 5.7%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취업 건수는 103,163건으로 전년 대비 0.8%의 증가를 기록함. 이 중 정신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107,495건으로 전년 대비 6.1%의 증가, 취업 건수는 49,612건으로 전년 대비 3.3%의 증가를 기록함
- 취업률(취업 건수 / 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6.2%로 전년 대비 2.2p 감소

Hello Work(공공직업안내소)

-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후생노동성)가 설치하는 행정기관. 공식적인 명칭은 공공직업안정소이며, 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있음. 헬로우 워크의 기본적인 업무는 구직자와 기업의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알선을 할 수 있음. 고용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구인 소개, 상담창구에서 상담, 자기분석 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이력서작성 지원, 면접 대책, 추천서 발급 등
- Hello Work에서는 이처럼 구인 정보를 소개 할뿐만 아니라 전직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Hello Work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용 정보는 Hello Work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검색 · 열람이 가능. 또한, 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에 게재 된 구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방출되어 민간이 운영하는 전직 사이트 등에 개제되는 경우도 있음. 기타 직업 소개 이외의 고용 보험 제도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

〈표 17-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수	장애종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08년	2,774	1,856	795	123
2009년	2,354	1,561	711	82
2010년	1,333	773	492	68
2011년	1,253	852	342	59
2012년	1,539	1,002	394	143
2013년	1,248	732	376	140
2014년	1,192	714	379	99
2015년	1,448	723	395	330
2016년	1,335	588	428	319
2017년	2,272	714	735	823
2018년	1,980	782	607	591
2019년	2,074	844	636	594
2020년	2,191	951	641	599
2021년	1,656	718	468	470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7-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이유별

(단위: 명)

구분	사업 폐지	사업 축소	기타	합계
2021년 4월	34	89	18	141
2021년 5월	144	56	16	216
2021년 6월	30	44	13	87
2021년 7월	85	42	12	139
2021년 8월	122	131	12	265
2021년 9월	36	66	26	128
2021년 10월	52	35	7	94
2021년 11월	64	34	7	105
2021년 12월	26	20	6	52
2022년 1월	33	45	6	84
2022년 2월	54	63	10	127
2022년 3월	115	89	14	218
연도 합계	795	714	147	1,656

주: ( )내는 전년도 수치임
자료: 후생노동성(2021).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장애인위원회 해고 수가 2008년 2,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후 2017년에 증가하여 2018년에 다시 감소했으나 2019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Hello Work에 신고된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2,074명 이었음(2018년도는 1,980명)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4) 재정

〈표 17-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1~2022년도

(단위: 백만)

구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총 금액	2,415,629	2,595,801	180,172
분야별 시책 합계	2,415,578	2,595,747	180,169
[안심, 안전심한 생활환경의 설비]	1,367,509	1,442,676	75,167
1. 주택의 확보	1,367,227	1,442,538	75,311
2. 이동하기 쉬운 환경정비	65	62	-3
3. 접근성에 배려한 시설, 제품등의 보급촉진	13	58	45
4. 장애인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	204	18	-186
[정보접근성의 향상 및 의사소통지원의 충실]	6,083	5,745	-338
1. 정보통신에 있어서 정보접근성 향상	5,340	4,944	-396
2. 정보제공의 충실	740	798	58
3. 의사소통의 충실	-	-	-
4. 행정정보 접근성의 향상	3	3	0
[방재, 방범의 추진]	2,537	2,795	258
1. 방재대책 추진	-	-	-
2.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재해로부터의 구제의 추진	2,171	2,048	-123
3. 방범대책 추진	356	737	381
4. 소비자 문제 방지 및 피해애서의 구제	10	10	0
[차별의 해소, 권리호용의 추진 및 학대방지]	19,501	19,121	-380
1. 권리 옹호의 추진, 학대 방지	620	584	-36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	18,881	18,537	-344
[자립한 생활 지원, 의사결정지원추진]	366,140	459,257	93,117
1. 의사결정지원 추진	-	-	-
2. 상담 지원 체제 구축(내각부 · 후생노동성)	1,721	1,653	-68
3. 지역 이행 지원 재택 서비스 등의 충실(후생노동성)	9,960	10,022	62
4.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충실(내각부 · 후생노동성)	337,641	430,930	93,289
5.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후생노동성)	1,196	1,203	7
6. 복지 용구 기타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기기의 보급 촉진 · 연구개발 및 장애인 보조견 육성 등(후생노동성 · 경제산업성)	15,622	15,449	-173
7. 장애 복지를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 · 확보(후생노동성)	-	-	-
[보건, 의료추진]	414,447	423,843	9,396
1. 정신 보건 · 의료의 적절한 제공 등(법무부 ·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26,778	26,114	-664
2. 보건 · 의료의 충실 등(후생노동성)	243,300	243,492	192
3. 보건 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 (후생노동성 · 경제산업성)	11,272	11,248	-24
4. 보건 · 의료 지원 인력의 육성 · 확보(후생노동성)	48	38	-10
5. 난치병에 대한 보건 · 의료 시책의 추진(후생노동성)	133,049	142,951	9,902
6.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 · 치료(후생노동성)	-	-	-
[행정 배려의 충실]	589	600	11

구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1. 사법 절차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경찰청 · 법무부 · 후생노동성)	589	600	11
2. 선거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총무성)	–	–	–
3. 행정기관 등의 배려와 장애인 이해의 촉진 등(전 부처)	–	–	–
4. 국가 자격에 대한 배려 등(전 부처)	–	–	–
[고용/취직, 경제적자립의 지원]	212,888	213,634	746
1. 종합적인 취업 지원(후생노동성)	24,361	22,777	–1,584
2. 경제적 자립 지원(전 부처)	180,820	183,992	3,172
3. 장애인 고용 촉진(전 부처)	3,697	3,591	–106
4. 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 (총무성 · 후생노동성 · 농림 수산 · 국토교통성)	4,010	3,274	–736
5. 복지적 취업 끌어 올리기(후생노동성)	–	–	–
[교육의 진흥]	24,693	26,911	2,218
1.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의 추진(문부과학성)	24,137	26,366	2,229
2. 교육 환경의 정비(문부과학성)	6	6	0
3. 고등 교육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추진(문부과학성)	36	36	0
4. 평생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의 충실(문부과학성)	514	503	–11
[문화예술활동/스포츠등의 진흥]	1,143	1,119	–24
1. 문화 예술 활동, 여가 · 휴양 활동의 충실을 위한 사회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 · 후생노동성)	339	300	–39
2.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장애인등 경쟁 스포츠에 관한 대책 추진(문부과학성)	804	819	15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연계의 추진]	48	46	–2
1. 국제 사회를 향한 정보 발신의 추진 등(내각부 · 외무성)	48	46	–2
2. 국제적인 틀과의 연계 추진(내각부 · 외무성)	–	–	–
3.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의 추진 등(외무성)	–	–	–
4. 장애인의 국제 교류 등의 추진(내각부 · 외무성 · 후생노동성)	–	–	–
시책의 원활한 추진	51	54	3
[연계/협력의 확보]	28	26	–2
[이해촉진/홍보계발의 추진]	23	28	5

주: 1) 표는 장애인 기본 계획 (제4차) <2018~ 2022년도〉 의 분야별 시책 추진 체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
2) 표는 백만엔 미만은 반올림해서 백만 단위로 나타내고 있음
3)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결산 금액 총계」 항목은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있는 시책/사업에 합계액임
4) 장애인 시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없는 시책/사업은 '-'로 표기함
5) 각 분야별 시책 등에 관한 재계 분은 계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내각부(2021). 「2021년 장애인백서」

5) 복지

〈표 17-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단위: 호)

구분	공영주택건설호수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우대조치호수
2004년	132	2,157
2005년	128	1,282
2006년	107	1,663
2007년	66	686
2008년	70	537
2009년	102	674
2010년	97	387
2011년	83	144
2012년	36	213
2013년	20	103
2014년	59	67
2015년	54	183
2016년	49	36
2017년	31	32
2018년	46	244
2019년	11	43
2020년	77	227

주: 1)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우대조치호수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포함가구등에 대한 우대조치호수도 포함
2)우대조치내용은 당첨되는 확률을 일반보다 20배 높이고 있음
자료: 내각부(2021). 「2021년 장애인백서」

공공 임대 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신설되는 모든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개량주택 및 공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의 특성에 따른 설비 등의 설치에 배려해, 배리어프리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개축 혹는 개선을 함으로써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을 위한 공영주택의 건설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것이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따른 조성의 한도액을 특례적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 한 주택 스톡 형성 추진

-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을 배려한 주택 스톡을 형성하기 위해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설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체기능이 저하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고려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증권화 지원사업의 '플랫35S'는 배리어프리성이 우수한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의 인하를 실시하고 있음

〈표 17-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구분	총시설 수			이동 원활화기준			총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철도역	3,251	3,580	3,588	3,090	3,288	3,243	95.0%	91.8%	90.4%
버스터미널	36	41	47	34	39	44	94.4%	95.1%	93.6%
여객선터미널	8	13	14	8	13	14	100.0%	100.0%	100.0%
공항	16	38	37	16	33	32	100.0%	86.8%	86.5%

주: 총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1) 내각부(2021).「2021년 장애인백서」
2) 국토교통성(2021).「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표 17-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구분	총시설 수			이동 원활화기준			총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철도역	3,074	3,340	3,343	2,832	2,956	2,901	92.1%	88.5%	86.80%
버스터미널	27	32	40	27	27	30	81.5%	84.4%	75.00%
여객선터미널	8	13	12	8	13	11	100.0%	100.0%	91.70%
공항	16	38	37	16	37	34	100.0%	97.4%	91.90%

주: 총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1) 내각부(2021).「2021년 장애인백서」
2) 국토교통성(2021).「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 2018년도 일본에서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철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 4가지 시설 중에서 단차의 해소는 여객선터미널이 100% 실행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은 78.6%로 실행비율이 가장 낮았다.
-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한 기본 방침에 의해서, 하루 평균 이용객 5,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에 대해 2010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책을 추진해왔음. 하지만, 목표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본 방침을 개정(2011년 3월 31일 고시)하며 하루 평균 이용객 3,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에 대해 2020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17-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구분		총 차량 수			이동 원활화기준을 따른 차량 수			차량 총수에 대한 비율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철도		52,645	52,648	52,763	40,027	39,287	38,564	76.0%	74.6%	73.2%
버스	논 스텝 버스	46,226	48,025	46,872	29,489	29,373	27,574	63.8%	61.2%	58.8%
버스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	11,688	13,517	13,530	674	746	696	5.8%	5.5%	5.1%
여객선		668	686	666	356	332	308	53.3%	48.4%	46.2%
비행기		641	667	655	639	661	643	99.7%	99.1%	98.2%

자료: 1) 내각부(2021). 「2021년 장애인백서」
2) 국토교통성(2021). 「이동원활화실적보고서」

〈표 17-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단위: 기)

구분	기 수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령자 등 감응 신호기	6,557	6,638	6,655	6,724	6,771
보행자 감응 신호기	1,221	1,261	1,308	1,331	1,346
시각 장애인 용 부가 장치	20,621	20,301	20,013	19,680	19,483
음향 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3,569	3,559	3,516	3,469	3,409
보행자 지원 장치	534	510	506	534	536

자료: 내각부(2021). 「2021년 장애인백서」

- 2016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감응 신호기는 6,771기, 보행자 감응 신호기는 1,346기,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는19,483기,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는 3,409기, 보행자 지원 장치는 536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 됨. 2017년도에는고령자 감응 신호기는 6,724기, 보행자 감응 신호기는 1,331기,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는19,680기,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는 3,469기, 보행자 지원 장치는 534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 됨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신호기 등의 설치

- 음향을 이용해서 신호 표시 상태를 알려주는 음향식신호등, 신호 표시판에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 및 파란불의 남은시간을 표시하는 경과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보행자용 조명 장치, 보행자 등과 차량이 통행하는 시간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보/차분리형 신호 등의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6) 정신건강

〈표 17-6-1〉 정신과병원의 상황 (병원수 · 병상수 · 병동수 · 휴상중병동수)

내용	병원수	허가병상수	신고 병상수				정신 병상수	휴상중
			계	야간개방	종일폐쇄	이외		
특별기능병원	71	3,042	2,866	792	1,905	169	93	1
지역의료지원병원	99	4,818	4,401	812	3,424	165	115	7
일반병원	281	50,372	48,541	11,273	34,178	3,090	955	21
정신병상만을 보유하는병원	1,024	235,358	230,571	48,169	171,979	10,423	4,344	74
해당 없음	79	18,050	17,726	3,669	13,596	461	338	8
합계	1,554	311,640	304,105	64,715	225,082	14,308	5,845	111
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등	130	17,773	15,730	1,905	13,268	557	389	31
지정병원	944	223,727	220,940	46,308	165,212	9,420	4,171	46
비지정병원	480	70,140	67,435	16,502	46,602	4,331	1,285	34
합계	1,554	311,640	304,105	64,715	225,082	14,308	5,845	111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1)」

〈표 17-6-2〉 정신과 병원의 개황

	병원 수	병상 수
특정 기능 병원	71	2,866
지역 의료 지원 병원	99	4,401
일반 병원	281	48,541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1,024	230,571
비해당	79	17,726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130	15,730
지정 병원	944	220,940
비지정 병원	480	67,435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1)」

- 특정 기능 병원:고도의 의료의 제공, 고도의 의료 기술의 개발 및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능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서, 제2차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 2005년부터 제도화
- 지역 의료 지원 병원 : 의료 시설 기능의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환자에게 친밀한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소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의료 기기 등의 공동 이용 실시 등을 통해 , 제 1 선의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 의사 등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는 병원으로서 적절한 구조 설비 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가 개별적으로 승인
- 일반병원 : 상기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상 이외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
-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모든 병상이 정신병상인 의료기관
- 비해당: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7 제2항에 근거하는, 나라,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 이외의 지방 공공 단체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 가 설립 주체인 의료 기관(모든 병상이 조치 입원의 수입 가능 병상)
- 지정 병원: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8에 근거하는 지정 병원(일부의 병상이 조치 입원의 수입 가능 병상)
- 비지정 병원: 조사표에서 비지정 병원 혹은 비해당이라고 회답한 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Ⅳ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2. 국외통계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Ⅳ.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나뉨 •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 가구조사, 장애판별조사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3년 주기로 산출함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이 있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등이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1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 현금, 현물, 사적·공적 이전소득은 포함하며, 바우처 금액은 제외함 ▪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월평균 가구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과금, 내구재구입, 부채 및 이자 납부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 ▪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 ▪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조사항목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등이 있음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직장건강보험: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2종: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 1종·2종에 가입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 • 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됨 • 교육: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 • 자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함 • 이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들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조사주기	– 1980년 이후 5년 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총 11차례 실시(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정보출처	– http://stat.mw.go.kr – http://www.kihasa.re.kr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나뉨
조사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생활체육 참여형태** ▪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 안에서 운동하는 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cst.go.kr – http://www.kosad.or.kr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건강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함
-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제시하고 보급하는게 주된 목적임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사망현황'으로 나뉨

조사기관

- 국립재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실시범위 및 대상: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9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2년에 1회

▪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인원/건강검진 대상인원*100

– 암검진 수검률

▪ **실시범위 및 대상**

검진종류	검진대상
위암	· 만40세 이상인 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 자 전체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인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

– 구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인원/구강검진 대상인원*100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진료실 인원: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 입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 1회당 진료비: 총진료비/입내원일수

–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본인부담금: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rc.go.kr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개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조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로 나뉨 • 가구 구성표 : 가구 구성, 가구 특성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 기타 일반사항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 • 만 9~24세 청소년 자녀 :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 • 활동 상태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조사주기	– 3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gef.go.kr – http://www.kwdi.re.kr/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주택법」 제5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 있음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춤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춤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점유형태 •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주거지원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가 포함됨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 •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임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조사주기	– 1년 주기(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에 실시) – 특수조사 대상으로는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장애인가구, 임대주택가구, 저소득가구가 있음 • 노인가구·장년가구·시설거주 노인 : 2007년 실시 • 장애인가구 : 2009년, 2015년, 2019년 실시 • 임대주택가구 : 2011년 실시 • 저소득가구 : 2013년 실시 • 신혼부부가구(패널) : 2014년, 2015년 • 주택이외의 거처: 2017년 실시
정보출처	– http://www.molit.go.kr – http://www.onnara.go.kr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개요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육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진학률, 취업률** ▪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 •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e.go.kr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조사개요	–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 산업, 직업** ▪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 구직단념자**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기업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를 포괄할 수 있으며, 국내 여타 조사의 '사업체'를 단위로 하므로 비교 시 유의 ▪ 상시근로자 • 해당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산정기초일이 월16일 이상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산입) ▪ 장애인 고용기업체 • 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기업체 ▪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체 ▪ 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 •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 장애인 고용률 • 상시근로자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조사주기	– 2년 주기 / 2019년부터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kead.or.kr

○ 중소기업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조사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조사주기	– 2년 주기
정보출처	– www.smba.go.kr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개요	–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함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 소비지출액** ▪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 비 소비지출액**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 소비지출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kostat.go.kr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편의시설 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편의시설 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조사주기	– 5년 주기 – 총 5차례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http://www.koddi.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조사개요	– 사회보장의 근간인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통계자료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분야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 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06호
조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연도별 보험급여실적(장애인보조기기등)** ▪ 연도별 보험급여실적: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을 연도별로 수록하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건수와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hira.or.kr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개요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 저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특별 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eak.mltm.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개요	– 시계열적 조사 · 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세부지수** ▪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디지털정보역량지수(0.4)+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로 측정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개요	–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 인식의 용이성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자동 재생 금지, 콘텐츠 간 구분 ▪ 운영의 용이성 • 키보드 사용 보장, 초점 이동, 조작 가능, 응답 시간 조절, 정지 기능 제공,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 이해의 용이성 •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 선형 구조, 표의 구성, 레이블 제공, 오류 정정 ▪ 견고성 마크업 오류 방비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기타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등급심사** ▪ 2007년 4월 중증장애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급심사는 의사중심의 체계로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심사 인원이 적은 편이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함으로 장애 등급심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란** ▪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	2.5%	2.7%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	2.5%	3%

– 장애인 고용 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함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장애인연금**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잦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이면 예외로 인정함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임 3급에 대항하는 장애 외 장애가 하나이상 추가되면 3급 중복장애주된장애가 3급이며 그 외 부장애가 4-6급인 경우)임 그러나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는 제외함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5년 기준은 단독가구 930천원 부부가구 1,488천원임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정해짐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임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읜 1,2,3급 등록장애인을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애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
- 만 6세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환 결과 220점인 경우에 선정함,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함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함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산에서 제외됨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무료 이용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 등록장애인(정원의 30%이내)
-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일부 지역주민(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진료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 종류: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함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 12조 제1항의 시설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 사회복귀시설로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이 있음 ▪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 응급알림 e서비스** ▪ 응급알림 e서비스는 위험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제도별 사업안내서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 국외통계 지표

1) OECD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개요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빈곤위험률** ▪ 빈곤율 =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els/disability

○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별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정신건강 지출** ▪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 ▪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조사주기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자발적 민간(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Public Social Expenditure)을 포함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과 사회보험급여, 공기업의 교통 및 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사회복자보건·노동과 관련된 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현금 + 현물급여) 비율 ▪ 9개 항목 중 장애인복지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로서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현금급여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산재보험(산재보험)(pensions: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상병급여(산재보험)(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기타상병보조금(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 – 기타 현금급여
	현물급여	– 거주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 기타 현물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비율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물급여
▪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출현율**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For at least the past sic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졸업 인구 중 장애인 비율 ※ 학력수준은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 제공 –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는 목적을 가짐 – '장애 고용'조사는 2011년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ad-hoc module)임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정의** **▪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뻗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 – 고용률 ▪ 장애인(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 장애인(15-64세 인구)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실업자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 EU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출현율** ▪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For at least the past sic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만성질환자 비율** ▪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박탈율** ▪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비 과다부담률**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 **– 교육 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 18-29세 인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둔 비율 ▪ 고등교육 이수율: **30-39세 이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비율** **– 고용 관련 지표: 고용률,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 빈곤 관련 지표** ▪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낮은 노동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적으로 부족한 가구 비율을 나타냄** 1. 대출금, 임대료, 공과금 등 체납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다음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9. 가정 내 적정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조사주기	– 1년
정보출처	–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ANED) –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ANED)

3) 뉴질랜드

○ Disability Survey: 2013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장애의 유형 및 발생 원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유형, 비장애인과 비교 했을 때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등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조사기관	– Statistics New Zealand
장애판별 기준	–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기적인 제한을 주는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결정됨 – '장기 '는 6개월 이상으로 정의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2013년 진행된 장애인 조사는 뉴질랜드 장애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실태를 담고 있음 ▪ 서비스 욕구 및 필요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어려움에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요 사회 및 경제적 현황 관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음 ▪ 경제적활동 현황, 소득 및 교육 수준 외에도 장애인이 느끼는 지역사회 내 안전감, 사회적 접촉의 빈도, 여과 활동 및 범죄 경험에 관련한 내용을 조사함 ▪ 설문조사는 개인 가구 또는 그룹홈,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조사주기	– 비주기적 ▪ 다음 조사는 2022년 실시 예정
정보출처	–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disability-survey-2013

○ 2018 Cencus

조사개요	– 본 조사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임 – 사회의 한 시점에 대한 장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음
조사기관	– Statistics New Zealand
장애판별 기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뉴질랜드 인구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2018년 발표된 자료는 34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담고 있음 ▪ 본 조사 결과는 정부 기관, 지방 당국, 기업, 지역 사회 조직 등위 의사결정에 사용됨 ▪ 특히, 건강, 교육, 주택 및 교통 분야에서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결정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본 조사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민족, 문화, 정체성, 가족 및 가정생활, 건강, 주택, 이주, 근로형태, 수입 및 무급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조사주기	▪ 5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www.stats.govt.nz/2018-census/

○ General Social Survey

조사개요	**– 본 조사는 뉴질랜드의 만 15세 이상의 인구의 웰빙에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됨**
조사기관	– Statistics New Zealand
장애판별 기준	– Washington Group에서 제공하는 질문을 기반으로 장애를 판별함 – 보기, 듣기, 걷기, 인지, 자기 관리 및 의사소통 관련 총 6개의 질문 중 매우 어려움'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표시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본 조사의 목적은 사회복지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정부 기관 및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음 ▪ 노동 상태,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건강, 주택, 인권 및 인간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함 ▪ 본 조사에서 수집된 지표는 인구 특성에 따른 집단(연령, 성별, 장애여부, 민족 등)간의 비교가 가능함
조사주기	– 격년
정보출처	–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wellbeing-statistics-2018

○ Labour market statistics (disability)

조사개요	– 노동 시장 통계(장애)는 뉴질랜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시장 관련 현황을 비교/분석함
조사기관	– Statistics New Zealand
장애판별 기준	– 보거나 듣는 것(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도), 걷거나 계단 오르기, 기억 또는 집중, 자기 관리 또는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노동 시장 통계의 목적은 노동자, 실직자, 실제 근무 시간, 노동 종사자 수, 평균 시간당/주당 임금, 평균 주당 굽여 지급 시간, 기본급 및 동상임금 변화 추이, 초과근무 임금 변동, 자영업자 및 정부 보조금에 따른 평균 및 중위소득 등에 관련한 뉴질랜드의 공식적 자료 제공임 ▪ 본 지표는 장애인 인구와 비장애인 인구의 노도 시장 참여율 및 고용률, 급여의 차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조사주기	– 매해 8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labour-market-statistics-disability-june-2021-quarter

○ The Ongoing Resourcing Scheme (ORS)

조사개요	– Ongoing resourcing scheme (ORS)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함
조사기관	– Ministry of Education
장애판별 기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본 자료는 시간 및 다양한 특성(예: 지역, 학교 권위, 민족성)에 따른 학생 수를 간단하고 분석에 사용하기 편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조사주기	– 매년 7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statistics/ongoing-resourcing-scheme

○ Demographic Report for Clients Allocated the Ministry of Health's Disability Support Services

조사개요	–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구 통계 정보를 제공함
조사기관	– Ministry of Health
장애판별 기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본 보고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간병인 지원, 생활 지원, 임시 간호, 행동 지원, 지역사회 생활 선택, 개별 기금, 강화된 개별 기금, 기금을 받는 가족 돌봄, 지역 사회 거주,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한 특정 서비스 유형과 관련된 인구 통계를 제공함 ▪ 서비스 이용자의 나이, 성별, 민족집단, 결혼 여부, 주거 형태 및 지역, 장애유형, 지원 패키지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신체, 지적, 자폐 스펙트럼, 신경 및 감각 장애를 포함한 특정 장애 유형별 인구 통계 정보를 제공하며 2016년에 발행된 교육부의 장애 인구 통계 보고서와의 비교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조사주기	– 비주기적 ▪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진행됨
정보출처	– https://www.health.govt.nz/publication/demographic-report-clients-allocated-ministry-healths-disability-support-services-2018-update

○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019/20

조사개요	– 본 자료는 2019/20 회계연도(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기준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조사기관	– Ministry of Health
장애판별 기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이용자 인구 통계 및 지리적 위치, 이용 경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 결과, 법적 지위 및 진단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히, 2008/09년부터 해당 회계연도 사이의 주목할 만한 추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음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health.govt.nz/publication/mental-health-and-addiction-service-use-2019-20-tables

4) 독일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

조사개요	– 독일의 정치, 행정, 경제 및 시민 등 객관적이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 통계적 정보들을 제공 및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50 이상(GdB500이상)으로 중증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장애인(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 ▪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침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침해가 사회적 관점과 환경에 근거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6개월 이상 사회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조사주기	– 매2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조사개요	– 독일 인구의 건강상황과 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 국민보건의 전제조건, 건강 상황, 건강행동과 건강의험요소, 건강문제와 질병, 보건 관리, 보건 및건강지출, 비용 그리고 국민보건재정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 DESTATIS) –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의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과 동일 –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장애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 편입급여는 장애인만을 위한 공적급여로서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18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자격이 확대됨
조사주기	– 온라인정보시스템: 수시 업그레이드 – 출판물(중점보고서, 논문, 간행물 등): 정기(매달) 또는 비정기
정보출처	– https://www.gbe-bund.de/gbe/

○ 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

조사개요	– 독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Der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어 "Kultusministerkonferenz")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와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됨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및 교육배치 비율 ▪ '장애학생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 ▪ '특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일반학교재학비율'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지원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통합비율'이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수 중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내용' 이란 특수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의 교육적 지원 내용을 의미
조사주기	– 매년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 2년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ohne Förderschulen)
정보출처	– https://www.kmk.org/dokumentation-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html

○ BIH Jahesbericht–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 – 중증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급여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여기에서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5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조사주기	– 매년 발행 ▪ BIH Jahesbericht 2014/2015 (2015년 11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5/2016 (2016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6/2017 (2017년 10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7/2018 (2018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8/2019 (2019년 8월 발행) ▪ BIH Jahesbericht 2019/2020 (2020년 12월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jahresberichte/

○ ZB Info-Behinderung und Beruf

조사개요	–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고용 관련 지출** ▪ 연방통합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의미 ▪ 동 지표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통합프로젝트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제도적 지원, 기타급여를 포함함. ① 고용주에 대한 급여 :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②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③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 공학적 근로지원,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직업적 지식×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지원고용 ④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⑤ 제도적 지원 ⑥ 기타 급여 ※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으로 인한)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근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두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 연방통합청 ▪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 주된 기능으로는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 (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포함하며, 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조사주기	– 매년 3~4회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zb-info/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조사개요	–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시장의 현황 관찰 – 다양한 근로그룹(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실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젠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실업률**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조사주기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 매년 발행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

○ 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Jahreszahlen)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젠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중증장애인 실업**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 노동정책 ▪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과 방안에 대한 분석
조사주기	– 매년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Themen-im-Fokus/Menschen-mit-Behinderungen/Menschen-mit-Behinderungen-Nav.html

○ Bundesagentur fuer Arbeit (Statistik)–Arbeitsmarkt in Zahlen

조사개요	–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현황 총괄
조사기관	– 연방노동에이전트(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조정금 납부 수준**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과 동일한 기능을 함 ※ 조정금 액수 ▪ 60인 이상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율 중 실제 고용율에 따라서 115유로에서 290유로까지 다양하게 산정 ▪ 60인 미만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
조사주기	– (일반적) 고용통계: 매달 – 사회보장의무대상자 현황: 매 3개월 – 고용지속기간과 노동급여 현황: 매년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Fachstatistik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장애인 편입급여의 수급자와 지출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편입급여** ▪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이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제공하는 급여임 ▪ 편입급여는 2020년부터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의 계획에 따라서 사회부조에서 하나의 독립적 형태의 급여로 분리되어 18살 이상의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로 변환되었으며 통계 또한 '사회법전 9권에 따른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 nach dem SGB IX)' 이란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산출됨 ▪ 장애인 편입급여의 산정 •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확정함 ▪ 편입급여제공형태 • 장애인 편입급여는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함
조사주기	– 매 2년(홀수년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조사개요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편입급여**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는 '청소년부조(사회법전 제8권)'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부조의 한 형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예: 독자성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임 •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급여 중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기관임 ▪ 편입급여제공형태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변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야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조사주기	– 매년 –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SiteGlobals/Forms/Suche/Servicesuche_Formular.html?documentType_=publication&templateQueryString=Eingliederungshilfe+f%C3%BCr+seelisch+behinderte+Kinder+und+Jugendliche

○ 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조사개요	– 독일의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실태,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병상수치, 그리고 의료기관형태에 다른 의료기계 등에 관한 통계정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병원형태: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함** ▪ 일반병원: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 ▪ 기타병원: • 전적으로 정신의학적 또는 정신요법적인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신경학적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순수한 주간 또는 야간병원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Gesundheit/Krankenhaeuser/_inhalt.html#sprg234206

○ Reha-Info

조사개요	– 독일의 재활관련 공적기관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 재활급여(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급여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각 재활담당기관
장애판별 기준	–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급여는 사회법전 제9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의료적 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급여 ▪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생계지원 및 보충적 급여: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급여 – 급여기관으로는 법정의료보험담당기관(연방보건부 소속), 연방노동에이전트, 법정사고보험담당기관,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전쟁희생자원호와 전쟁희생자복지, 사회부조기관(연방노동사회부), 아동 · 청소년 조력담당기관 (연방가족 · 고령자 · 여성 · 청년부 소속), 통합청(연방노동사회부 소속)으로 구분
조사주기	– 일년에 6회 온라인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ar-frankfurt.de/service/reha-info/

5) 일본

○ 2016년 생활하기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전국재택장애아 · 장애인 등 실태조사) 결과의 개요 – 平成28年
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全国在宅障害児・者等実態調査） 結果の概要

조사개요	– 장애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택 장애 아동과 등 (난치병 등 환자와 지금까지의 법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함)의 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사회 · 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기획과
장애판별 기준	▪ 전국 약 2,400 센서스 조사구 ▪ 1에 거주하는 재택 장애 아동과 장애인등 (장애인 수첩 소지자) ▪ 2 의사로부터 난치병 진단 된 자, 장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하고 괴로움이 있는 자 – 조사표 배포 수 12,601 명, 조사표 회수 수 7,179 명 (회수율 57.0 %), 유효 회답 수 6,175 명이었다. ▪ 1 돗토리현 구라요시시는 돗토리 현 중부 지진의 영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2 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또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 3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안경 등을 사용해도 보이지 않는다"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 "걷거나 계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기억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곤란하다" 등의 답변이 있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재택장애인 수첩소지자 (추정치)는 428.7 만명, 요육수첩소지자 (추정치)는 96.2 만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 (추정치)는 84.1 만명으로 모두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증가 – 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의 추계치 총 593.2만명 (2011年 511.2만명) 障害者手帳所持者 장애인 수첩소지자 559.4만명 (2011年 479.2만명) 身体障害者手帳所持者신체장애인 수첩소시자 428.7만명 (2011年 386.3만명) 療育手帳所持者요육수첩 소지자 96.2만명 (2011年 62.2만명) 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所持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소시자 84.1만명 (2011年 56.8만명) 障害者手帳非所持者で´自立支援給付等を受けている者 장애인수첩 비소지자중 자립지원혜택을 받은자 33.8만명 (2011年 32.0만명) –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수첩 소지자중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5세 미만은 32.1 %, 65 세 이상은 19.8 %임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list/seikatsu_chousa_b_h28.html

○ 특별지원교육자료 – 特別支援教育資料 (2021년도)

조사개요	– 조사의 목적 ▪ 특별 지원 교육의 실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을 향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발달 지연은 아니지만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학생의 실태를 밝히고, 향후 시책의 본연의 자세 나 교육의 본연의 자세 검토의 기초 자료로 함
조사기관	– 문부과학성 초중등국 특수교육과
주요 지표 및 내용	– 특별지원학교 수, 학교 설치 기준 학급 수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 국 · 공 · 사립 합계 – – 특별지원학교 지원 장애종별 학교 수, 설치 학급 기준 학급 수 및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국 · 공 · 사립 합계– – 특별지원학급 수, 특별지원학급 재적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특별 지원 학급 설치 학교 수 – 국 · 공 · 사립 – –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통급 지도 설치 학교 수 – 공립 – –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아동 학생 수

	– 특별지원학교 (학교 설치 기준) 장애 종별 중복 장애 학급 재적 비율 추이 – 국·공·사립 계 –
조사주기	– 매년 5월1일
정보출처	– http://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material/1406456.htm

○ 환자조사 – 患者調査

조사개요	– 이 조사는 병원 및 진료소 (이하 "의료 시설"이라한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내원시의 상황과 환자 이름 등의 실태를 밝히고, 아울러 지역별 환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의료 행정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 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추정 환자 수:** 조사당일, 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에서 진료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추정 퇴원 환자 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9월 1일 ~ 30일)에 병원, 일반 병원을 퇴원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퇴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조사 대상 기간 중 (2014년 9월 1일 ~ 30 일)에 퇴원 한 환자의 입원 일수의 평균임 – **진료율:** 추정 환자 수를 인구 10 만 대로 나타낸 숫자임 ▪ 진료율(인구 10 만 대) = 추정 환자 수 / 추계 인구 × 100,000 – **총 환자 수 (병상별 추계):** 조사 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 일에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함)의 수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추정 한 것임 ▪ 총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초진 외래 환자 수 + (기존 외래 환자 수 × 평균 진료 간격 × 조정 계수 (6/7)) **– 병상의 종류** ▪ 정신 병상: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감염 병상:"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998년 법률 제 114호)에 규정하는 일류 감염, 2 류 감염 (결핵을 제외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 및 새로운 감염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결핵 병상: 결핵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요양 병상: 병원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을 제외함) 또는 일반 병원의 병상 중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일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 요양 병상 이외의 병상을 말함
조사주기	– 3년마다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anja/14/index.html

○ 의료시설 (동태) 조사·병원보고의 개괄 – 医療施設 (動態) 調査·病院報告の概況

조사개요	– 이 조사는 전국의 의료 시설 (의료법에 규정 된 병원·진료소)의 분포 및 정비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시설의 진료 기능을 파악하고 의료 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총괄관
주요 지표 및 내용	Ⅰ 의료 시설 조사 – **시설 수:** 시설의 종류별로 본 시설 수, 개설자별로 본 시설 수, 병상의 규모별로 본 시설 수, 진료 과목별로 본 시설 수 – **병상 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병상 수, 개설자별로 본 병상 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의 병원 병상 수 Ⅱ 병원보고 ▪ 환자 수: 1일 평균 입원·신 입원·퇴원 환자 수, 병원의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병상 이용률** – **평균 입원 일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 **병원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100 병상 당 상근 환산 종사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 상근 환산 의사 수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www.agefiph.fr/

○ 장애인백서 – 障碍者白書

조사개요	– 장애인 백서는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 제 13 조에 따라 1994 년부터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 임
조사기관	– 일본 내각부
	–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기타의 심신 기능의 장애가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제 1 장 :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 새로운 장애인 기본 계획 (제 4 차)의 책정 – – 제 2 장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 제 3 장 : 사회 참여 향한 자립 기반 조성 – 제 4 장 : 일상생활의 기반 만들기 – 제 5 장 : 살기 좋은 환경의 기반 조성 – 제 6 장 : 국제 활동
정보출처	– 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h30hakusho/zenbun/index-w.html

○ 장애인고용상태 – 障害者雇用状況

조사개요	– 현재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 상황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에 보고를 요청하여 집계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민간 기업〉 (법정 고용률 2.0 %) **– 고용 장애인 수, 실 고용률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 ▪ 고용 장애인 수는 49 만 5,795.0 명, 전년 4.5 % (2 만 1,421.0 명) 증가 ▪ 실제 고용률 1.97 %, 전년 대비 0.05 포인트 상승 ▪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50.0 % (전년 대비 1.2 % 포인트 상승) 〈공공 기관〉 (동 2.3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 ※ ()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국가 : 고용 장애인 수 7,593.0 명 (7,436.0 명), 실 고용률 2.50 % (2.45 %) ▪ 도시 : 고용 장애인 수 8,633.0 명 (8,474.0 명), 실 고용률 2.65 % (2.61 %) ▪ 시정촌 : 고용 장애인 수 2 만 6,412.0 명 (2 만 6,139.5 명), 실 고용률 2.44 % (2.43 %) ▪ 교육위원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4,644.0 명 (1 만 4,448.5 명), 실 고용률 2.22 % (2.18 %) 〈독립 행정법 인 등〉 (2.3 %) ※ ()는 전년 값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고용 장애인 수 1 만 276.5 명 (9,927.0 명), 실 고용률 2.40 % (2.36 %)
조사주기	– 매년 6 월 1 일에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87661.html

○ 장애인의 취업소개 상태 등 – 障害者の職業紹介状況等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상황을 정리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02,143 건으로 전년 대비 5.4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취업 건수는 97,814건으로 전년 대비 4.9 %의 증가를 기록함** ▪ 이 중 정신 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93,701 건으로 전년 대비 9.0 %의 성장률을 기록, 또한 취업 건수는 45,064 건으로 전년 대비 8.9 %의 증가를 기록함 **– 취업률 (취업 건수 / 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8.4 %로 전년 차이 0.2 포인트 감소함** **– 취업 건수 취업률** ▪ 신체장애인 26,756 건 44.2 % ▪ 지적장애인 20,987 건 58.7 % ▪ 정신장애인 45,064 건 48.1 % ▪ 기타장애인 5,007 건 41.2 % ▪ 합계 97,814 건 48.4 %

	– 산업별 취업 건수는 많은 순으로 "의료 복지" (35,566 건, 구성비 36.4 %), "제조업"(13,595개, 동 13.9 %), "도매, 소매업" (12,412 건, 동 12.7 %), "서비스업" (10,288 건, 동 10.5 %) 순임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헬로우 워크에 신고가 있던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2,272 명 이었다 (2016 년도는 1,335명)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208340.html

○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 社会福祉施設等調査

조사개요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 재소자, 종사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회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시설 수 · 정원 ▪ 시설의 종류별 시설 수를 보면, "보육 등"은 27,137 시설로 전년에 비해 872 시설, 3.3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13,525 시설로 전년에 비해 955 시설, 7.6 %증가. 시설의 종류별로 정원을 보면, "보육 등"은 2,645,050 명으로 전년에 비해 87,917 명, 3.4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518,507 명으로 전년에 비해 35,715 명, 7.4 % 증가 – 경영 주체 별 시설 수 ▪ 시설의 종류별로 경영 주체별 시설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외한 각 유형에서 "사회 복지 법인"의 비율이 가장 많아지고 있음.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제외)는" 비영리법인 (회사)"가 82.6 %로 가장 많아짐 ▪ 사업소 수 ▪ 사업의 유형으로 사업소 수를 보면, "주택 개호 사업"이 23,074 사업소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131 사업소,0.6 % 증가함. 다음으로 많은 것은 "중도 방문 개호 사업"이 20,952 사업소이며, 전년에 비해 98업소 0.5 % 감소함. 또한 전년 증가률을 보면,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 사업"이 20.4 %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이 20.0 %임 –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 ▪ 사업 유형별로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단기 입소 사업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이 74.8 %로 가장 많으며, 주택 개호 사업, 중증 방문 개호 사업, 동행 원호 사업에서는 "영리 법인 (회사)"가 가장 많고, 각각 68.1 %, 69.2 %, 70.4 %임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7/index.html

○ 공공교통이동 등 원활화 실책보고 – 公共交通移動等円滑化実績報告

조사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3 조에 따라 공공교통기관 등은 국토교통장관에게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등으로부터 제출 된 이동 등 원활화 실적 등 보고서의 집계 결과임
조사기관	– 일본 국도교통성 교통소비자행정/공공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주요 지표 및 내용	– 대중 교통의 배리어 프리 화의 진행 상황 – 여객 시설의 배리어 프리 화의 추이 – 차량 등의 배리어 프리 화의 추이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sosei_barrierfree_mn_000003.html



2022 장애통계연보

발 행 일 : 2022년 9월
발 행 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누보

ISBN 978-89-6921-444-7(933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